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미술·기타

2-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미술·기타

2-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Contents

87

016	편집의 방향과 원칙
017	일러두기
020	87·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
020	1. 의결주문
02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요지
022	제1절 조사 개요
022	1. 조사 취지
023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024	제2절 조사 방법
024	1. 자료 조사
026	2. 참고인 조사
027	제3절 조사 결과
027	1. 사건 개요
031	2. 작품 수정 요구와 전시 외압에 대한 조사
057	3. 민간인 사찰 지시 및 이행에 대한 조사
062	4.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의혹에 대한 조사
073	5. <세월오월> 사건 관련 민간인 피해 사례 조사
076	6. 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진 사항 및 규명되지 않은 사항
078	제4절 결론

88

082	88·국립현대미술관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082	1. 의결주문
08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083	제1절 조사 개요
083	1. 조사 취지
083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084	제2절 조사 경과
084	1. 문건 등 자료조사
085	2. 대인 조사
085	제3절 조사 내용
085	1. 조사 배경
085	2. 조사 결과
087	3. 2016년 배제 실행
090	제4절 조사 결과
090	1. 진상규명 사실



89

094 **89·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취소 사건**

094 1. 의결주문

09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095 **제1절 조사 개요**

095 1. 신청인 취지

095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096 **제2절 조사 경과**

096 1. 문건 등 자료조사

098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099 **제3절 조사 내용**

099 1. 기초 사실

100 2.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공모 선정 사실

102 3.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기획안 검토

106 4. 전시 진행 및 취소 과정에 관한 이메일 검토

110 5. 전시 취소 이유에 관하여

117 6.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에 대하여

119 **제4절 결론**

119 1. 진상규명 사실

122 2. 행위 사실

123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쟁점과 사실

90

126 **90·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

126 1. 의결주문

12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28 **제1절 조사 개요**

128 1. 신청 취지

128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129 **제2절 조사 방법**

129 1. 자료 조사

130 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130 **제3절 조사 결과**

130 1. 사건 개요

134 2. <시대정신>전 당시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 교체 경위

139 3. 청와대의 작품 교체 외압 여부

146 4.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147 **제4절 결론**

Contents

91

152	91·베를린 한국문화원 ‘코리안 방주’ 지원 취소 사건
152	1. 의결주문
15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53	제1절 조사 개요
153	1. 신청인 취지
153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154	제2절 조사 경과
154	1. 문건 등 자료조사
155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156	제3절 조사 내용
156	1. 기초 사실
157	2. ‘코리안 방주(Korean Ark)’ 전시 관련 지원약속과 취소 관련 검토
163	3. 독일한국문화원의 최순실 국정농단 부역 의혹
164	제4절 결론
164	1. 진상규명 사실
164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92

168	92·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
168	1. 의결주문
16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69	제1절 조사 개요
169	1. 신청의 취지
170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171	제2절 조사 경과
171	1. 문건 등 자료조사
17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72	제3절 조사 내용
172	1. 기초 사실
178	2. 대구광역시(주최)의 역할 및 권한
179	3.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181	4. 박문철에 대한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
195	5. 신청인 윤동희 관련 검열 의혹의 점
200	6. 신청인 이은영 관련 ‘배제’ 의혹의 점
206	제4절 조사 결과
206	1. 진상규명 사실
210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210	3. 이 사건의 성격



93

214 **93·홍성담의 전시회 무산, 보수단체 시위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214 1. 의결주문
21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16 **제1절 조사 개요**
216 1. 신청의 취지
216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217 **제2절 조사 경과**
217 1. 문건 등 자료조사
219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19 **제3절 조사 내용**
219 1.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221 2. 2012년 평화박물관 전시회 보수단체 시위 및 고발 관련
225 3. 2015년 독일 nGbk 전시회 작품 운송 거부 관련
230 4. 2015년 서울 시립미술관 길드 아트 페어 그림 철거 관련

238 **제4절 조사 결과**
238 1. 진상규명 사실
240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241 3. 이 사건의 성격

94

246 **94·(사)우리만화연대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배제 의혹 사건**

246 1. 의결주문
246 2.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49 **제1절 사건 개요**
249 1. 신청의 취지
250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50 **제2절 조사 경과**
250 1. 문건 등 자료조사
25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52 **제3절 조사 내용**
252 1. 기초 사실
262 2. 조사 내용

296 **제4절 조사 결과**
296 1. 진상규명 사실
298 2. 조사의 한계 및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Contents

95

302	95·이하 작가의 정치풍자 예술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302	1. 의결주문
30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03	제1절 사건 개요
303	1. 신청의 취지
304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05	제2절 조사경과
305	1. 문건 등 자료조사
306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07	제3절 조사 사항·내용
307	1.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 조사·기소에 관한 점
331	2. 사진 페스티벌에서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가려진 채로 전시된 점
346	제4절 조사 결과
346	1. 진상규명 사실
354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96

358	96·미술인 양희성의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358	1. 의결주문
359	제1절 조사 개요
359	1. 신청 취지
359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360	제2절 조사 경과
360	1. 문건 등 자료조사
361	2. 대인 조사
361	제3절 조사 내용
361	1. 기초 사실
366	2. 조사 내용
368	제4절 조사 결과
368	1. 진상규명 사실
368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368	3.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97

98

372 97·미술가 김수정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 372 1. 의결주문
- 37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73 제1절 사건 개요

- 373 1. 신청의 취지
- 374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74 제2절 조사경과

- 374 1. 문건 등 자료조사
- 375 2. 신청인 등 대인조사

375 제3절 조사 사항·내용

- 375 1.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이하 '민미협')
- 376 2.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 382 3. 공모사업 지원 배제 사실

383 제4절 조사 결과

- 383 1. 진상규명 사실

388 98·퍼포먼스 활동가 박성수의 정치풍자 전단 배포 및 살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 388 1. 의결주문
- 38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요지

390 제1절 조사 개요

- 390 1. 신청 취지
- 390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391 제2절 조사 경과

- 391 1. 문건 등 자료조사
- 392 2. 신청인, 참고인 조사

393 제3절 조사 내용

- 393 1. 사건 배경
- 398 2. 조사 결과

405 제4절 결론

- 405 1. 주요 쟁점에 대한 진상규명 사실
- 408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Contents

99

412	99·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을 통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412	1. 의결주문
41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14	제1절 조사 개요
414	1. 직권조사 및 신청 취지
415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416	제2절 조사 경과
416	1. 문건 등 자료조사
418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420	제3절 조사 내용
420	1. 기초 사실
423	2. 국가기관 모태펀드 개입 및 실행
457	3. 특정 영화 및 영화인에 대한 투자 지원 및 배제
486	제4절 조사 결과
486	1. 진상규명 내용
498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499	3. 추가 조사의 필요성

100

502	100·최OO 등의 인사개입을 통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502	1. 의결주문
50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03	제1절 사건 개요
503	1. 신청의 취지
503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504	제2절 조사 경과
504	1. 문건 등 자료조사
505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506	제3절 조사 내용
506	1. 기초 사실
506	2. 최OO의 인사개입 의혹에 대하여
523	제4절 조사 결과
523	1. 진상규명 사실
524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101

102

528 **101·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 528 1. 심의사항
- 528 2. 관련규정
- 528 3.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요지

530 **제1절 조사 개요**

- 530 1. 조사 취지
- 530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531 **제2절 조사 경과**

- 531 1. 문건 등 자료조사
- 533 2. 대인 조사

534 **제3절 조사 내용**

- 534 1. 사건 배경
- 536 2. 신청인 주장과 확인 사항
- 550 3. 문화전당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

558 **제4절 조사 결과**

- 558 1.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 560 2.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564 **102·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관련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 564 1. 의결주문
- 56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66 **제1절 조사 개요**

- 566 1. 조사 취지
- 566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567 **제2절 조사 방법**

- 567 1. 자료 조사
- 567 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568 **제3절 조사 결과**

- 568 1. 사건 배경 - 청와대의 '左성향 문예계 정상화 대책' 요구
- 570 2. 청와대 지시에 대한 문체부의 대책
- 575 3.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지자체·지역문화재단 사례
- 577 4. 대구 민예총 신청사건 조사 결과
- 582 5. 규명하지 못한 사실

583 **제4절 결론**

Contents

103

586	103·배우 유정숙(가극단 미래 대표)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586	1. 의결주문
58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587	제1절 조사 개요
587	1. 신청 취지
588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589	제2절 조사 경과
589	1. 문건 등 자료조사
590	2. 대인 조사
591	제3절 조사 내용
591	1. 기초 사실
593	2. 조사 내용
601	제4절 조사 결과
601	1. 진상규명 사실

104

604	104·대전문화관 운영팀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604	1. 의결주문
60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606	제1절 사건 개요
606	1. 신청의 취지
606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607	제2절 조사 경과
607	1. 문건 등 자료조사
608	2. 신청인 등 대인조사
608	제3절 조사 사항·내용
608	1. 신청인의 채용 및 근무실적평가 등
613	2. 신청인과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615	3. 대전문화관과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616	4. 신청인의 근무실적평가에 대한 조사
617	제4절 조사 결과
617	1. 신청인과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
617	2. 대전문화관과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
618	3. 신청인의 근무평가실적에 관하여
618	제5절 결론



105

622	105·충북문화재단 대표 내정자 강태재에 대한 사찰 및 탄압 사건
622	1. 의결주문
62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623	제1절 조사 개요
623	1. 신청 취지
624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625	제2절 조사 경과
625	1. 자료조사
626	2. 신청인 등 진술조사
626	제3절 조사 내용
626	1.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 경위
627	2. 내정자 강태재의 자진사퇴 경위
631	3. 내정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동향보고 여부
632	제4절 조사 결과
632	1. 진상규명 사실
633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106

636	106·문화재위원 임명자 김규호의 임명 취소 사건
636	1. 의결주문
63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637	제1절 조사 개요
637	1. 신청 취지
637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638	제2절 조사 경과
638	1. 문건 등 자료조사
639	2. 대인 조사
640	제3절 조사 내용
640	1. 기초 사실
642	2. 조사 내용
659	제4절 조사 결과
659	1. 진상규명 사실
660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661	3.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Contents

107

664	107·임정희 및 문화연대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664	1. 의결주문
66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665	제1절 조사 개요
665	1. 신청 취지
665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666	제2절 조사 경과
666	1. 문건 등 자료조사
666	2. 대인 조사
667	제3절 조사 내용
667	1. 기초 사실
671	2. 조사 내용
675	제4절 조사 결과
675	1. 진상규명 사실
676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677	3.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108

680	108·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집회·시위 불참 조건부 지원 요구 사건
680	1. 의결주문
68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681	제1절 조사 개요
681	1. 신청 취지
683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683	제2절 조사 경과
683	1. 자료조사
688	2. 참고인 등 진술조사
689	제3절 조사 내용
689	1. 기초 사실
690	2. 확인서 요구 및 철회 경위
695	3.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 중 보조금지원 제한 규정 신설 경위
699	4.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를 특정하게 된 경위
702	5. 신청인들의 피해 내용
704	6. 다른 정부기관의 유사한 사례
712	7. 관련 법규의 개정 경위
714	제4절 조사 결과
714	1. 진상규명한 사실
715	2. 이 사건의 성격
716	3. 권고사항



109

720	109·박근혜 정부의 마을라디오 활동 외압 의혹 사건
720	1. 의결주문
72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722	제1절 사건 개요
722	1. 신청 취지
723	2. 조사개시의 근거와 규명과제
724	제2절 조사 경과
724	1. 문건 등 자료조사
725	2. 대인 조사
725	제3절 조사 내용
725	1. 기초 사실
728	2. 공동체라디오 및 마을라디오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의 실행 또는 실행 여부
731	3. 신청인 및 피해자 소속단체의 피해 여부
734	제4절 조사 결과
734	1. 공동체라디오 및 마을라디오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의 실행 또는 실행 여부
735	2. 신청인 및 피해자 소속단체의 피해 여부
736	3. 마을라디오에 대한 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연관성 유무
737	제5절 결론

110

740	110·한국예술종합학교 최현수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740	1. 의결주문
74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741	제1절 사건 개요
741	1. 신청의 취지
742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743	제2절 조사 경과
743	1. 문건 등 자료조사
744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745	제3절 조사 내용
745	1. 기초 사실
750	2. 신청인의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에 대한 비판활동
751	3. 블랙리스트 존재에 관한 점
754	4.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에 관한 점
755	5.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한 점
765	제4절 조사 결과
765	1. 이 사건의 성격
766	2. 진상규명 사실
768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Contents

111

772	111·(재)국악방송 사장 선임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772	1. 의결주문
77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773	제1절 사건 개요
773	1. 신청의 취지
774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774	제2절 조사 경과
774	1. 문건 등 자료조사
775	2. 신청인 등 대인조사
776	제3절 조사 내용
776	1. 국악방송 사장 선임 과정
783	2. 신청인 유은선과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785	3. 김상률 교문수석, B 예술정책관의 개입 여부
788	제4절 조사 결과
788	1. 신청인과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789	2. 김상률 교문수석, B 예술정책관의 개입 여부

112

792	112·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의혹 사건
792	1. 의결주문
79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793	제1절 조사 개요
793	1. 신청 취지
794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795	제2절 조사 경과
795	1. 자료조사
795	2. 신청인 등 진술조사
796	제3절 조사 내용
796	1. 기초 사실
799	2. 대통령 경호처에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한 경위
800	3. 대통령 경호처의 전화통화 목적
801	4. 과거 광화문북측광장에서 서울변방연극제 공연 여부
802	제4절 조사 결과
802	1. 진상규명 사실
803	2. 이 사건의 성격

113

808	113·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블랙리스트 배제 의혹 사건
808	1. 의결주문
80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809	제1절 사건 개요
809	1. 신청의 취지
810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113

810 제2절 조사 경과
810 1. 문건 등 자료조사
81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811 제3절 조사 내용
811 1. 기초 사실
813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사실
817 3. 이 사건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823 제4절 조사 결과
823 1. 진상규명 사실
823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114

828 114·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828 1. 의결주문
82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829 제1절 조사 개요
829 1. 신청인 취지
830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830 제2절 조사 경과
830 1. 문건 등 자료조사
833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835 제3절 조사 내용
835 1. 기초 사실
837 2.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853 제4절 결론
853 1. 주요 쟁점에 대한 진상규명 사실
856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115

860 115·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인사농단 의혹 사건
860 1. 의결주문
86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861 제1절 사건 개요
861 1. 신청의 취지
861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862 제2절 조사 경과
862 1. 문건 등 자료조사
86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863 제3절 조사 내용
863 1. 기초 사실
864 2.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
869 제4절 조사 결과
869 1. 진상규명 사실

Ⅰ 편집의 방향과 원칙 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었다. 1권은 『위원회 활동 보고서』, 2권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3권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4권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으로 구성되었다. 1권에서 3권까지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집필을 담당하였다. 3권 말미의 별첨 부분에는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수많은 토론회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들의 옥고들이 참고 자료로 수록되었다. 4권에는 주로 외부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다각적으로 조망하였다. 외부 필진이 집필한 부분은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

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의 부록으로 기관별, 분야별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전문이 총 6권으로 편집되었다. 부록 1권은 기관별, 부록 2권과 3권은 공연 분야, 부록 4권은 문학·출판 분야, 부록 5권은 영화 분야, 부록 6권은 시각예술 및 기타 분야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이다. 직접 조사를 담당했던 전문위원(조사관)들이 방대한 양의 관련 문서들과 수많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고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신청 사건들은 주로 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자들의 조사 신청에 의해 다루어졌고, 직권 사건들은 조사 과정에서 개별 사건들의 범주화 또는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사건명을 설정하였다.

이 백서에서 피해자들의 이름은 대부분 실명으로 표기되었으나 블랙리스트 실행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 때문에 비실명 처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실행 범칙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되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장관, 차관 및 각 기관장들은 실명을 공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5급 사무관 이상은 직급과 성까지만 표기하였고, 6급 이하는 직급만 밝히고 완전히 비실명 처리하였다. 산하기관의 경우 본부장과 부장 또는 팀장까지는 직급과 성까지 표기하였고, 그 이하는 직급만 밝히고 완전히 비실명 처리하였다. 직급은 사건 발생 당시의 직위를 명시하였다.

문체부는 백서 1차 편집이 완료된 후 관련 당사자들에게 가편집본을 열람하도록 하여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사자로부터 문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전문위원 확인, 당사자 소명, 사실 재확인 과정을 거쳐 백서의 최종 수정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문체부는 2018년 9월 13일에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나 문화예술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재검토 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 31일에 최종 이행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역사적인 백서가 나오기까지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발간 소위원회 위원장 **김 미 도**

일러두기

분류	원 명칭	약칭
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조특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특별검사, 특검, 박영수특검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법, 특검법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의 기소 사건 중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기소 사건 재판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재판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공운법
법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증언·감정법
법령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 보호법
법령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문예진흥기금 운영규정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문예진흥법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법령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영화진흥심사규정
청와대	청와대	BH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소통비서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교문수석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산하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비서관
청와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대수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실수비
국회	국회 국정감사	국감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문위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기재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국정원
정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문화부, 문화관광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복지부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행안부
정부부처	행정자치부	행자부
정부부처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실
유관기관	대한승마협회	승마협회
유관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등위
유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
유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예경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 문예위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공연예술센터, 한팩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문연
유관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복
유관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총
유관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원
유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진원
사업·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예기금
사업·기금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	세종도서
사업·기금	영화발전기금	영화기금
기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
기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기타	심의위원 후보단	심의위원 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87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



87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시1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요지

가. 조사 취지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은 일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주요 국가기관이 예술작품의 사전검열 및 전시 관련 외압, 민간인 사찰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었다. 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국가기관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2014년 <세월오월> 사건은 ‘대통령 모독’과 ‘유사 사건 재발방지’ 등을 이유로 작가와 큐레이터가 협의하여 제작한 작품의 전시를 못하도록 국가기관이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예산 분배 권한을 무기로 (재)광주비엔날레를 통제할 것을 지시한 사건이다.

당시 광주시가 ‘작품을 절대 전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재)광주비엔날레 측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 관료가 문체부와 행사부 등을 통해 광주시 공무원과 윤장현 시장을 압박하도록 지시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세월오월> 작품은 전시되지 못하고 특별전 개막식은 파행되었다. 이외에도 홍성담 작가에 대해서 김기춘이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에게 ‘경찰과 국정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추적하여 응징하라’고 지시한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월오월>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여론동향 보고가 확인되었고,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러 차례 홍성담의 동향이 언급된 점, 김기춘의 지시가 있는 직후에 우익단체에서 홍성담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점 등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일부 실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전 31억 원에서 13억 원이 삭감된 18억 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기재부는 「국제행사관리지침」의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김기춘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관 단체들을 보조금 축소·중단 등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고, 문체부가 이에 대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등을 수립·보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광주비엔날레의 예산 삭감은 기재부 등의 무리한 규정 적용 등이 의심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붙임 :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시1,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

제1절 | 조사 개요

1. 조사 취지

2014. 8. 8.경 개최 예정이던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 달콤한 이슬’에 전시될 걸개그림 〈세월오월〉에서 홍성담 작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한 부분 등을 문제 삼아 주최 측이 수정 요구를 하였다. 작가가 이를 최종적으로 거부하자 광주시는 동 작품의 전시불가를 발표하였고, 논란 끝에 결국 위 작품은 전시되지 못하였다. 그 여파로 이에 반발하는 등 특별전 참여 국내외 작가들의 출품작 자진철회 및 항의성명, 예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항의 등이 잇따랐다.

위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후인 2016.11.14.경 윤장현 광주시장은 위 〈세월오월〉 작품 전시와 관련하여 김종 당시 문체부 차관이 압력을 가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시인했다. 그리고 2016.말경 공개된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위 사건에 대한 대응팀 구성 및 민간인 사찰을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지시하는 등 국가 권력기관의 특별 조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한편 2017 ~ 2018년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전 31억 원에서 13억 원이 삭감된 18억 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에 앞선 2016. 3.경 기재부가 광주비엔날레 등 3개 행사를 특정하여 국제행사 심의대상 탈락을 통보했음이 확인되었다. 이 부분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재)광주비엔날레 측이 예산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다.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이하 〈세월오월〉 사건이라 함)은 일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주요 국가기관이 예술작품의 사전검열 및 전시 관련 외압, 민간인 사찰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국가기관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 근거

본 사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제1호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 제18차 전원위원회(2017.12.8.)에서 직권조사개시결정으로 의결되었다(의안번호 17-109).

나. 조사 목적

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규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표현의 자유 침해

홍성담 작가는 (재)광주비엔날레 측과 출판 계약을 체결하고 <세월오월> 작품을 제작하던 중, 주최측과 광주시 등의 수정 요구를 수차례 걸쳐 받았고, 협의 하에 ‘허수아비’로 표현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닭 그림’으로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가 유보되었다. 작품의 제작 과정 및 전시 유보 과정을 확인하고 이 부분이 사전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전시 관련 외압 사실

<세월오월> 작품의 전시와 관련하여, 책임 큐레이터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문체부, 청와대 등이 관여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다. 전시 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광주비엔날레 및 책임 큐레이터에 대해 국가기관이 어떠한 외압을 행사하였고, 이것이 권한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3) 민간인 사찰 지시 및 이행

2016년 말경 공개된 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민간인 사찰 지시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이행되었다면 해당 기관 및 이행 방식 등도 조사하고자 하였다.

4)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등 피해 사실

2017 ~ 2018년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고 지원 삭감 경위를 조사하여 이것이 <세월오월>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제2절 | 조사 방법

1. 자료 조사

자료 조사는 먼저 사건경위와 관련하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발간한 『<세월오월> 자료백서』를 중심으로 (재)광주비엔날레와 광주광역시에서 생산한 기록을 주로 검토하였고, 둘째, 민간인 사찰 및 외압 여부와 관련하여 『김영한 업무일지 사본』, 『김희범 진술조서』 등 법원의 형사소송기록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문체부와 기재부, 광주광역시 등의 기록을 검토하였으나, 일부 자료만을 확인하는 데 그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자료 조사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1] 자료 조사 주요 목록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생산일	비고
1	<세월오월> 자료백서	광주시립미술관, 5·18기념재단	2017.3.31.	
2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 등	광주광역시	2015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안건으로 문체부에 제출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생산일	비고
3	2014년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전 및 국제학술회의」 출연금 교부결정 통지 첨부1: 보조금 교부결정서 첨부2: 보조금 교부조건	광주광역시	2014.7.7.	
4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관련 광주시의 입장	광주광역시	2014.8.6.	보도자료
5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관련 조치 요청	광주광역시	2014.8.7.	
6	2015년 광주비엔날레 종합감사 결과	광주광역시	2015.	
7	광주비엔날레 일몰제 해제 건의 - 광주비엔날레 국비지원 일몰제 진행 현황 - 광주비엔날레 일몰제 적용 해제 사유 - 광주비엔날레 행사비 내역(연도별)	(재)광주비엔날레	2017	
8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책임규레이터 협약서	(재)광주비엔날레	2014.1.6.	
9	문예계 내 여성향 세력 現況 및 고려사항	국정원	2014.3.19.	BH보고서
10	대통령님 비방 친북화가 홍성담 대상 지원금 회수 여론	국정원	2014.8.8.	BH보고서(필사본)
11	2014년 국고지원 시각예술분야 평가보고서	문체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제공 자료
12	국제행사 지원현황(비엔날레 및 국제영화제)	문체부	2018.1.29.	제공 자료
13	[대외비]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문체부	2016.	
14	문화예술계 균형지원 관련 보고	문체부	2016.9.9.	
15	건전생태계 진흥방안(수정)(대외비)	문체부	2014.10.22.	
16	2016년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결과 통보	기획재정부	2016.3.31.	
17	2016년 국제행사 심사 신청 및 승인 현황	기획재정부	2018.2.1.	제공 자료
18	2014년도 국정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광주광역시 국정감사)	국회사무처	2014.10.16	김재연의원
19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및 제5차)	국회사무처	2016.12.	국정조사 청문회 회의록
20	수기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	특검 6-2	2015.1.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생산일	비고
21	김영한 업무일지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소송기록 중 증거기록 제28권	2017.	
22	김희범 진술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소송기록 중 증거기록 제11권	2014.12.31.	
23	김희범 주거지 압수물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소송기록 중 증거기록 제10권	2017.	업무수첩 사본
24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서울고등법원	2017.	
25	오OO 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2017.10.15.	

2. 참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는 대상자들의 지방 거주 관계로 주로 면담조사(녹취) 위주로 진행하였다. 먼저 홍성담 작가를 면담하여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청취하였고, (재)광주비엔날레와 광주광역시의 당시 관계자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사건 경위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화 조사를 진행한 기재부 및 문체부 공무원 일부는 참고할 만한 진술 내용이 없어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2014년 당시 청와대 및 문체부 소속 관련자 일부는 현재 구속 상태에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참고인 진술의 인용은 사건과의 관련성을 우선하였으며, 혹시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비교하여 보다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진술을 인용하려 노력하였다. 참고인 조사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2] 참고인 조사 목록

연번	성명	관련 사항	조사 내용
1	홍성담	특별전 참여 작가(2014)	면담조사(녹취)
2	윤OO	특별전 책임 큐레이터(2014)	"
3	윤장현	광주광역시장(現)	"
4	오OO	광주광역시 부시장(2014)	"
5	이OO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실장(2014)	"
6	박OO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과장(2014)	"
7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2014)	"
8	장OO	특별전 협력 큐레이터(2014)	"

연번	성명	관련 사항	조사 내용
9	이OO	광주비엔날레 상임대표(2014)	전자우편 조사(중국 상해)
10	김OO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2014)	면담조사(녹취)
11	한OO	광주비엔날레 전시팀장(2014)	"
12	조OO	광주비엔날레 기획실장	"
13	OOO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주무관	면담조사
14	임OO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
15	최OO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2016.2.6. 전화조사
16	OOO	기재부 중기재정전략과 주무관(2014)	2018.2.5. 전화조사
17	홍OO	기재부 중기재정전략과 사무관(2014)	2018.2.5. 전화조사

제3절 | 조사 결과

1. 사건 개요

가. <세월오월> 사건 개요

1)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달콤한 미술 - 1980 그후’

가) 광주비엔날레 개요

광주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현대미술제로서 1995년 광복 50주년과 ‘미술의 해’를 기념하고 한국 미술문화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한편, 광주의 문화예술 전통과 5·18 광주민중항쟁 이후 국제사회 속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광주 민주정신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창설 취지문에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민족정신을 존중하며 지구촌시대 세계화의 일원으로 문화생산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해 왔음”을 밝히고 있으며, 2018년 제 12회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¹⁾

1) 출처: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발췌. <http://www.gwangjubiennale.org>. (2018/2/5-접속날짜)

나)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달콤한 이슬 - 1980 그후’²⁾

‘달콤한 이슬, 1980 그후’는 광주비엔날레 창립 20주년을 맞아 예술비엔날레 전시(본 전시)와 함께 개최된 대규모 특별 프로젝트이다.

1980년 5월 광주항쟁 이후 광주라는 이미지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 되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이름에 이례적으로 정신이라는 개념을 붙이는 ‘광주정신’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특별 프로젝트는 ‘광주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며, 국가폭력과 상처를 증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를, 궁극적으로는 미래 지향적인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달콤한 이슬’은 망자에 대한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감로도(甘露圖)에서 빌린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광주정신’을 탐색해 나가기 위해 전시, 강좌, 퍼포먼스의 3개 방식으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전시는 8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되었으며, ‘국가 폭력’을 주제로 광주와 유사한 경험을 지닌 오키나와, 타이완, 제주의 작품을 연결하였다. 또 저항미술 작가 케테 콜비츠의 작품과 루신

2) 홍성담은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달콤한 이슬’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걸개그림 〈세월오월〉에 새겨진 文身 ‘계엄령과 야스쿠니’』,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374~375쪽 참조. “서구 미술시장이 풍요를 구가하는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비엔날레〉는 퇴조하기 시작했다. 화상과 컬렉션과 미술브로커들이 주도하는 〈아트페어〉가 〈비엔날레〉의 필요성을 용도폐기한 셈이다. 바로 그 무렵인 1995년에 제1회 광주비엔날레가 출범했다.

광주는 정치적, 경제적 소외를 받는 대신에 〈문화〉를 선택했고, 이것은 지역민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정치권력이 별다른 무리 없이 적은 예산으로 광주지역민들에게 베풀 수 있었던, 즉 광주의 소외를 달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기도 했다.

그래서 1980년대 내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흘렸던 광주시민들의 땀과 피 대신에 받은 집단 보상이 바로 〈광주비엔날레〉라고 광주시민들은 믿고 있다. 이점은 ‘광주비엔날레 출범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광주비엔날레 선언문 중) 그만큼 光州精神(또는 五月精神)은 광주비엔날레의 근간이자 역사이며 창조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비엔날레의 횡수가 거듭할수록 서구미술계가 제시하는 미술양식과 전시형식에 매몰되기 시작했다. ‘光州性’이라는 정체성이 글로벌이라는 미명아래 퇴색되었고 광주비엔날레 시스템은 세계 미술기획자라고 하는 미술브로커들끼리 서로 돌러가면서 대접받는 잔칫상이 되고 말았다.

광주비엔날레 20년이 되도록 아시아적 전시 양식과 형식은 커녕, 오히려 서구미술의 선전장이 되었다. 그래서 광주시민들은 광주비엔날레의 존폐여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으며, 광주정신을 되찾는 비엔날레가 되기를 권고했다.

이러한 광주시민들의 비판을 눈속임하기 위해서 비엔날레 재단은 비엔날레 본전시를 광주정신의 이름 위에 올려놓는 대신에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프로젝트’라는 행사를 시의 예산 지원의 도움으로 따로 계획하고 ‘光州精神特別展-달콤한 이슬’이라는 전시회를 끼워 넣게 된 것이다.”(홍성담, 2014.10.)

의 판화 100점도 선보였다. 강좌는 2014년 1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각 섹션의 해당 전문가와 시민이 토론을 진행하며, 광주비엔날레 폐막식에 맞춰 광주발 매니페스토 형태로 선포될 예정이었다.³⁾

2) <세월오월> 사건 개요

2014.8.8.경 개최 예정이던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 달콤한 이슬’에 전시될 걸개그림 <세월오월>에서 홍성담 작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한 부분 등을 문제 삼아 주최 측이 수정 요구를 하였다. 작가가 이를 최종적으로 거부하자 광주시는 동 작품의 전시불가를 발표하였고, 논란 끝에 결국 위 작품은 전시되지 못하였다. 그 여파로 이에 반발하는 등 특별전 참여 국내외 작가들의 출품작 자진철회 및 항의성명, 예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항의 등이 잇따랐다.

위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후인 2016.11.14.경 윤장현 광주시장은 위 <세월오월> 작품 전시와 관련하여 당시 김종 문체부 차관이 압력을 가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시인했다. 그리고 2016.말경 공개된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위 사건에 대한 대응팀 구성 및 민간인 사찰을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지시하는 등 국가 권력기관의 특별 조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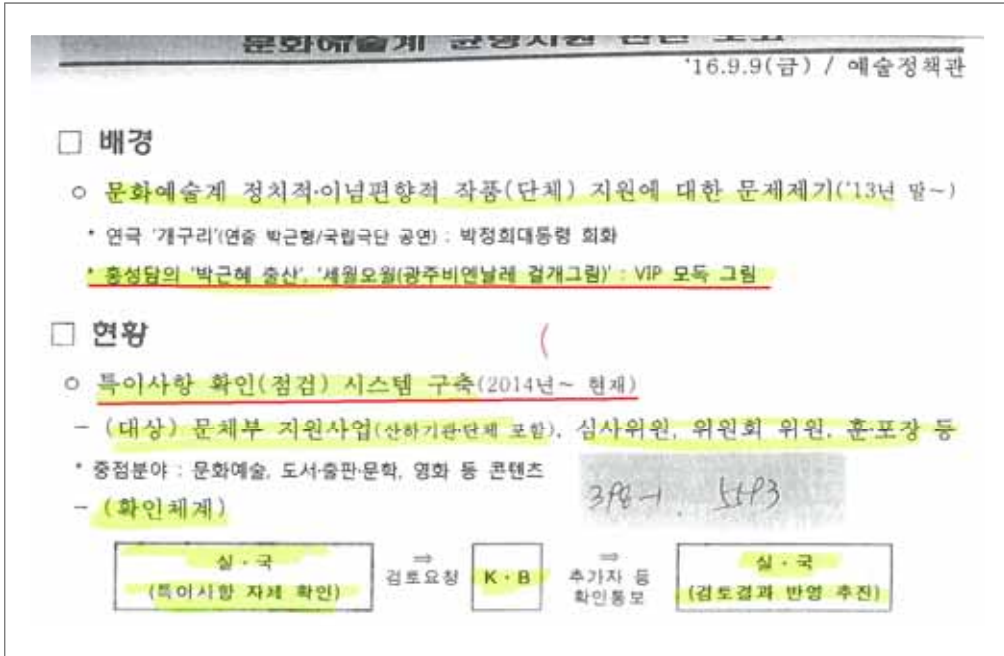
한편 2017 ~ 2018년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전 31억 원에서 13억 원이 삭감된 18억 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에 앞선 2016. 3.경 기재부가 광주비엔날레 등 3개 행사를 특정하여 국제행사 심의대상 탈락을 통보했음이 확인되었다. 이 부분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재)광주비엔날레 측이 예산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다.

<세월오월> 사건은 박근혜 정권 시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정책’을 추진하게 한, ‘대통령 모독’의 본보기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다음 [그림-1]은 문체부가 작성하여 2016.9.9.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이다. 홍성담의 <세월오월>은 여기서 ‘대통령 모독’ 사례로 소개되고 있고, 문체부는 이러한 ‘특이사항’이 발생할 때 K(국정원)과 B(청와대)의 검토를 거쳐 문체부 각 실·국이 검토 결과를 반영·추진하는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⁴⁾

3) 「윤OO 책임큐레이터 에세이 ‘달콤한 이슬, 1980 그후’」,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74쪽 참조.

4) 「문화예술계 균형지원 관련 보고」(2016.9.9. 예술정책관), 법원 1심 형사소송기록 중 증거기록 제

[그림-1] 「문화예술계 균형지원 관련 보고」(2016.9.9. 예술정책관)



나. 홍성담

홍성담은 조선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후 민중미술을 계속해 왔다. 1989년 ‘동학농민운동부터 6·10항쟁까지’를 그린 ‘민족해방운동사’ 작품을 제작하고, 그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냈다가 체포되어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죄’로 3년간 복역하였다. 그는 박근혜가 아직 대통령 후보이던 2012.11.경 소위 ‘박근혜 출산 그림’이라 불리는 ‘골든타임 - 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를 하다’를 그려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요주의 대상이 되었다. 아래 [그림-2]에서 보는 것처럼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서 홍성담은 ‘A급’으로 취급되었다.⁵⁾

11권, 5,593쪽.

5) 「국정2-1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 붙임16,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2017.10.31.) 43쪽.

[그림-2]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74	미술	허달용	민예총 이사	C
75	미술	홍선웅	10.10 「노나메기재단」 설립 추진위원	B
76	미술	홍성담	前민족민중미술운동 전국연합 공동대표	A
77	연극	권병길	임수경 후원사업회 회원	B
78	연극	김경원	08.2 MB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C

2. 작품 수정 요구와 전시 외압에 대한 조사

가. ‘문화예술의 자유’ 와 국가기관의 책무에 대한 관련 규정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하며(문화기본법 제3조 정의),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1조 제1항, 제22조, 문화기본법 제4조 국민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문화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과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문화기본법 제7조 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서, 여기에서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하였고, 또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그리고 동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들을 요약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국제교류·협력 포함)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의 (재)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근거하여 문체부가 광주시에 그 권한을 위임하였고,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인 광주시가 (재)광주비엔날레의 사무를 검사, 감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광주시에게 감독 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법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종합감사 등과 같은 사후 관리 방식을 통하여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이어야 하지, 직접적으로 업무에 개입하여 전사와 같은 법인 고유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것은 권한남용 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세월오월> 작품의 수정 및 전시 외압과 관련 등의 조사를 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였다.

나. <세월오월> 작품의 제작 및 수정 경위

1) 작품 제작 과정

가) 작품 개요

홍성담이 광주비엔날레 측에 제출한 「작가출품동의서」의 ‘걸개그림 제작 레지던시 구상안’⁶⁾에 기술된 작품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6) 「작가출품동의서, 별첨: 걸개그림 제작 레지던시 구상안 및 지원내역」(2014.7.5.),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45쪽.

(1) 제작 방향

걸개 그림 〈세월오월〉은 1980년 5월 항쟁(민주화운동)과 그 이후의 진상규명 투쟁과 1987년 시민항쟁을 거쳐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중요한 사건을 주 내용으로 하며, 충분한 형상화로 감상자의 상상력에 의해 추상성이 드러나도록 하고, 죽음과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 극복하는 과정에 내용을 집중하고 정의가 결국 승리하는 모습과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인권·평화·환경)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아냄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 아이콘이 되도록 한다.

(2) 제작 형식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조선 민화, 그리고 1980년대 목판화 운동에서 획득한 민족적 형식을 기본 토대로 하며, 한국적 팝아트와 전통 수묵화 형식을 포함하고, 광주 화단이 이룩한 현대 미술의 여러 중요한 형식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예: 강영균, 황영성 등).

(3) 진행 방식 및 양식

한국 민중미술에서 이룩한 걸개그림 양식인 ‘강한 먹선과 오방색’의 전통을 따르되, 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한 먹선을 중심으로 하는 대신에 오방색감을 절제하여 오방색이 화면에 기운으로 추상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선 탕화 괘불’ 전통에서 비롯된 1980년대 걸개그림에서 나아가 괘불양식과 벽화양식(7폭)을 상호 결합 시켜 화면의 입체적 변용과 가변이 전시 상황에 따라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어 ‘무엇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또한 주필(主筆, 홍성담) 외에 보필(補筆, 협업작가)을 선정하여 함께 작업하며, 일반시민도 수시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미술적 성격을 유지한다. 전체 규격은 〈세로 260cm, 가로 1050cm〉의 벽화 양식으로, 이것을 〈260×150cm〉규격의 캔버스 7장을 이어 붙이는 연속 그림 파노라마 양식으로 한다.

[그림-3] <세월오월> 작품 완성본(수정 전)⁷⁾



나) 작품 제작 과정

<세월오월> 작품은 광주광역시 금남로에 위치한 메이홀 4층에서 제작을 진행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제작은 홍성담 외에 여러 협업작가들이 진행하고, 또 이 과정에 시민들과 단체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날짜별 제작 내용 및 수정 과정은 아래 [표-3]과 같다.⁹⁾

[표-3] <세월오월> 제작 및 수정 일지

날짜(2014)	세부 내용	비고
7. 4.	- 주필 홍성담, 메이홀에서 광주시각매체연구회 소속 협업작가들과 제작 착수 - 작품에 반영할 내용과 소재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세월호 시민상주 모임', '5·18 당사자', '전교조' 회원들이 참석
7. 5.	- 캔버스 밀칠	
7. 6.	- 스케치 시작	
7.17.	- 최초의 작품 수정 요구	윤OO 책임큐레이터, 장OO 협력큐레이터 요구

7) 홍성담의 그림창고, <http://www.damibox.com/>(접속일자-2018.2.7.)

8)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전시 공간, 작업실 등 창작 생활 공간을 지원해 작품 활동을 돕는 사업을 말한다.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해 국내외에 활성화됐으며, 입주 작가 프로그램이라고도 한다. 레지던시(residency)라는 말뜻처럼 예술가는 특정 공간에 '거주'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다른 예술가나 미술계 인사와 교류하며 창작 활동에 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08544&cid=43667&categoryId=43667>(접속일자-2018.2.7.)

9) 「결개그림 <세월오월> 사건일지_2014년」,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57~67쪽 참조.

날짜(2014) 세부 내용		비고
7.18.	- 작품 수정 자체 논의	국내외 작가 공동 작업 계속
7.24.	- 국가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을 진혼하는 콘서트 개최	일본 가수 '미카미칸' 초대
7.28.	- 위 두 큐레이터의 작품 수정 재차 요구에 대하여, 홍성담이 '허수아비'로 묘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① 흰색으로 지우거나, ② '닭 그림'으로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닭 그림'으로 수정하는 데 합의	
7.31.	- 걸개그림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에 대한 퍼포먼스 및 그림주막 <판갈이> 행사 진행	'한국 팝아티스트 협동조합' 초청
8. 1.	- '닭 그림' 채색 완료	
8. 3.	- 장OO, 작업장에서 '닭 그림'도 불가하다는 광주시 관료의 입장을 전달하고 수정 재요구했으나, 홍성담 거절	
8. 5.	- 이날 밤 윤OO와 장OO 두 사람이 홍성담을 다시 방문하여 수정 촉구, 홍성담은 이뿐만 아니라 이후 모든 수정 요구 또한 거부하고 '닭 그림'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겠다는 의사 표명	
8. 5.	- 진혼굿 퍼포먼스 <세월아 네월아 오월아> 진도 팽목항에서 진행	시민들과 작업 참여 작가, 책임큐레이터 등이 참여
8. 6.	- 광주시, <세월오월> 작품 전시 불가 공식 발표 - 이날 오전 윤OO 큐레이터, 홍성담 방문. '닭 그림'으로 수정하면 책임지고 전시 의견 전달. 홍성담 수락	
8. 7.	- 윤장현 광주시장, 북경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표명	광주시의 입장 변경
8. 8.	- 오전. 홍성담, 공식 기자회견을 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닭 그림'으로 수정하는 퍼포먼스 진행 - 작품 수정본, 시립미술관 수장고에 입고 - 오후 7시 개막식. 작품은 '전시유보'로 전시되지 못하고, 행사에 윤장현 시장 불참 - 오후 5시 도청 앞 분수대 퍼포먼스, 오후 6시 30분 개막식장 퍼포먼스, 오후 9시 도청 앞 금남로 퍼포먼스 <100인 릴레이 아트> 계획대로 진행	퍼포먼스는 모두 예정된 행사

2) <세월오월> 수정 경위

가) 작품 수정 요구 배경

작품의 수정과 관련하여 먼저 출품 작가에 대해 광주비엔날레 측이 수정 요구를 할 권한이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광주비엔날레 측과 홍성담이 계약한 「작가 출품 동의서」 중 〈계약의 파기〉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표-4] 홍성담의 「작가 출품 동의서」¹⁰⁾

〈계약의 파기〉

작가가 광주비엔날레와 합의한 작품제작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광주비엔날레의 관련 업무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아래와 같이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프로젝트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작가관련 출품동의서, 대여협약서 등과 재단과 합의된 일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 제출 자료의 기한을 지키지 않아 관련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재단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켰을 경우
- 전시기획과 크게 반한 출품작에 대한 변경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파기된 경우, 출품자는 광주비엔날레가 지원한 작품제작 지원금 전액과 기자재 등의 전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윤OO 책임큐레이터가 (재)광주비엔날레 측과 맺은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프로젝트 책임큐레이터 협약서」에 첨부된 〈직무수행서〉 제1조(권한 및 의무)와 제3조(기획 및 실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표-5] 윤OO의 「책임큐레이터 협약서」¹¹⁾

[별첨] 〈직무수행서〉

제1조 권한 및 의무

2. '계약상대자'는 재단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전시기획 및 실현을 총괄하고 협력큐레이터들의 대표로서 아래 주요 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1) 프로젝트 전시 기획·구상·실행

10) 이 계약서는 (재)광주비엔날레 이사장 윤장현(당시 광주시장)과 출품자 홍성담 사이에 체결되었다. 「작가 출품 동의서」(2014.7.5.),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40~41쪽.

11) 이 계약서는 (재)광주비엔날레 이사장 강운태(당시 광주시장)와 윤OO 교수(가천대) 사이에 체결되었다. (재)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 책임큐레이터 협약서」, 2014.1.6.

- 4) 프로젝트 관련 참여 작가 협약 및 작품 활동 지원
- 9)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작가와 재단의 분쟁 조정

제3조 기획 및 실현

3. 참여작가 추천 등

- 2) 재단에 의해 선정된 작가가 아래 사항에 의해 전시추진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각 응해야 한다.
 - ① 「작가 출품동의서」 또는 「작품 대여협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을 지나치게 위배할 경우
 - ③ 재단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④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켰을 경우

위 두 건의 계약서를 살펴봤을 때, 작가는 특별전의 전시 기획에 반하지 않는 작품을 제작하도록 해야 하고, 책임큐레이터는 전시 기획과 실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작가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며, 만약 작가와 재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작가 출품동의서」에는 '전시 기획과 크게 반한 출품작에 대한 변경에 응하지 아니하여 프로젝트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큐레이터가 작가에게 수정을 요구할 권한의 소지가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규정된 바에 따라 큐레이터들이 작가에게 작품 수정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홍성담의 작품이 기존에 제출한 「작가 출품동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지나치게 위배하였거나, 작가의 작품이 큐레이터의 전시 기획에 크게 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지나치게 위반' 또는 '크게 반하는'이라는 조문의 정확한 판단 기준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특별전 전시 기획에 대한 작가와 큐레이터들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하였다.

홍성담은 특별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그 해 4월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을 목도한 때문이라고 하였다.¹²⁾ 그는 '세월호 참사'를 타락한 사회시스템과 국가폭력에 의

12) 「걸개그림 <세월오월>에 새겨진 文身 '계엄령과 야스쿠니」(2014. 10.),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375~376쪽.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세월호(世越號)'가 침몰되었다. 나는 다음날 즉시 안산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세월호 침몰 현장인 진도(珍島) 팽목항(澎目港)으로 달려갔다.

승무원들은 선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라고 몇 번이나 강조한 뒤에 해

한 학살이라고 판단하고, 특별전 걸개그림 프로젝트를 통해 오월광주와 세월호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였으며, 권력자들을 풍자함으로써 그러한 부당한 국가 폭력에 항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세월오월〉 작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¹³⁾

“걸개그림 〈세월오월〉은 자신도 치유 받지 못한 광주시민군들이 부러진 총으로 비유된 목발을 짚고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 가야 하는 우리 현실의 슬픈 드라마가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들어 올려 수많은 아이들을 우리들의 품으로 귀환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정치역사에서 가장 슬픈 여인이며, 이 어둡고 캄캄한 인연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운명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 박근혜’의 눈물을 닦아 주려고 시민군들이 절뚝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월오월〉은 조선후기 민화의 화려한 채색 뒤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극의 아우라를 품고 있습니다.”

책임큐레이터이자 특별전의 기획자였던 윤OO는 홍성담과 특별전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특별전의 취지를 5·18 항쟁의 정신을 기리되, 너무 5·18에 머무는 그런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승화하는 미래지향적인 전시를 만들자. 그게 중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의 개념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 유행했던 감로도에서 주개념을 따와서 감로. 달콤한 이슬이라고 제가 결정한 거죠. 그렇게 힐링에 입장을 주다 보니까 일단은 5·18 때에 상징적인 도상이 일단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짚어주고, 앞으로 치유 쪽으로 가서 미래

경 구조선을 타고 제일 먼저 빠져나갔다. 배에 남겨진 아이들과 승객들은 강화유리창을 두들기면서 구조해달라고 외쳤으나 배는 무심하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광경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TV 생중계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했다.

34년 전, 1980년 광주오월학살이 정권장악에 눈이 먼 신군부에 의해 총칼로 재빨리 이루어진 학살이었다면, 오늘 ‘세월호 사건’은 타락한 사회시스템이 전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300 여명의 승객을 천천히 약 이틀 동안 아주 천천히 물고문으로 학살한 것이다.

광주오월학살 이후 34년, 한 세대만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국가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세월호 학살사건’을 나는 목격하게 된 것이다.”

13) 『홍성담 전시 사진철회 기자회견문』(2014.8.24.), 위의 책, 6~7쪽.

지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18 때 시각 부분에서 대표적인 게 광주시민 판화운동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80년대 미술운동에 걸개그림이 유행했고, 또 여러 작가들이 광주 지역에서 활동했지만 또 홍성담이라는 상징성 있는 작가가 있고. 그래서 판화와 걸개와 홍성담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코너를 만들면 그 당시를 좀 아우르는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¹⁴⁾

즉 윤OO는 5·18 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과거를 치유·승화하여 미래지향적인 전시를 추진하는데 홍성담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홍성담은 특별전 프로젝트를 통하여 5·18 항쟁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승화하고자 하였으므로 프로젝트 초기 기획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품 제작 및 수정 과정에서 윤OO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윤OO는 “걸개 그림이 내부 전시 작품 중의 하나였으면 상관없지만, 특별전의 대표적인 도상(圖像), 외벽에 거는 대표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¹⁵⁾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의 학예연구관으로 근무하던 보조큐레이터 장OO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미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전시회에서 홍성담 작품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다른 작품으로 교체한 적이 있었다.¹⁶⁾ 홍성담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던 장OO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걱정이 많았고, 〈세월오월〉 작품 밑그림을 보니, 현직 대통령이 허수아비로 풍자된 데다가, 박정희 前 대통령, 김기춘 당시 대통령

14) 윤OO 녹취록, 2018.1.2. 2쪽~3쪽.

15) 위 녹취록. 4쪽.

16) <‘4대강 사업 비판’ 미술작품 교체 논란>, NEWSIS, 2012.9.12.자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09964>(접속일시-2018.2.9.)

2010년 4월 광주시립미술관은 5·18광주민중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하여 ‘흰빛 검은물’을 주제로 홍성담 초대전을 하면서 작품 1점을 교체했는데, 당시 교체된 작품은 ‘칸코쿠 야스쿠니’로 이명박 대통령과 완장과 채찍을 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표현한 것이었다.

또한 2012년 6월, 광주시립미술관은 개관 20주년을 기념한 ‘진(進).통(通).-199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 개막을 앞두고 홍성담의 작품을 갑자기 교체했는데, 이 작품은 ‘4대강 레퀴엠(진혼곡)-첼로 소나타(194×400cm)’로 이명박 대통령이 삼을 악기 삼아 첼로 활로 연주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등이 허수아비 형상으로 뒷편에서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4대강 사업 비판 작품이었다. 당시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광주시장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부처를 오가는 상황에서 홍 작가의 작품이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전체 주제와도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교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서실장 등이 표현되어 있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고 한다. 그는 즉시 윤 OO에게 연락하여 함께 흥성담을 찾아가 수정 요구를 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는 이 당시 “광주정신을 생각하면 이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옳지만, 2015년에 개최되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예산과 광주시 기초생활자 지원 예산 등이 삭감될 것을 생각하면 이런 표현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장OO는 적극적으로 <세월오월>의 전시에 반대하였고, 그것이 광주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였다.¹⁷⁾

당시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광주비엔날레 상임대표 이OO 또한 ‘특별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작품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¹⁸⁾

“저는 흥성담씨의 작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당시 작품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시를 담당하던 큐레이터들이나 재단 내 전시부서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흥성담씨가 제작한 박근혜대통령, 박정희 前 대통령을 희화한 그림은 예술작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작품을 그대로 전시할 경우 이는 주제의식과 상충이 예상되며, 당시 박근혜 정부나 기타 관련인사, 단체들과의 직접적 충돌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픈 광주역사와 기억을 비엔날레라는 예술축제를 통하여 치유한다는 20주년 기념행사의 취지와 배반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술은 사회참여, 저항도 있지만 역사적 상처나 소외에 대한 치유의 기능을 갖는다.’는 주제 ‘감로탕’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나) 작품 수정 요구 과정

<세월오월>에 대한 수정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표현하고, 박정희 前 대통령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 7월 17일 최초의 수정 요구에 대하여 흥성담은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다음 날 내부 회의를 거쳐 7월 22일 ‘닭 그림’을 스케치 하였다. 7월 28일 윤OO, 장OO 두 큐레이터와 만난 자리

17) 장OO 녹취록, 2018.1.10.

18) 이OO 전자우편 답변서, 2018.2.6. 3쪽.

서 홍성담은 ① 박근혜 대통령을 흰색으로 지우는 것과 ② 박근혜 대통령 대신에 ‘닭 그림’을 그리는 안을 제시하였고, 두 큐레이터는 ②안에 찬성하였다.¹⁹⁾ 수정된 그림은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세월오월> 작품 수정 전(좌)과 수정 후(우) 이미지²⁰⁾



그런데 작품 수정 문제에 대하여 작가와 광주비엔날레 측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광주시 측은 장OO와 이OO를 통하여 <세월오월> 작품의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시립미술관 공무원(학예직)이었던 OOO와 책임큐레이터 윤OO에게 작품 수정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광주시 문화관광실장이었던 이OO은 윤OO와 장OO를 직접 만나 수정을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다.²¹⁾

“이건 좀 작품성보다는 이거는 국가원수에 대한 너무 지나친 모독 아니냐? 그래서 이걸 좀 수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광주시... 물론 예술가 이런 거를 떠나서 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당장에 비엔날레 지원 예산이 깎일 거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아드대회 예산이 다 깎여 버릴 텐데 좀 당신들이 책임지고...’ ‘모든 책임은 큐레이터한테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차 한 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그 분들한테 했거든요.”
또 당시 주무 과장이었던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장 박OO은 <세월오월> 작품 제작 초

19) 「결개그림 <세월오월> 사건일지_2014년」,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62쪽.

20) 홍성담의 그림창고, <http://www.damibox.com/>(접속일자-2018.2.7.)

21) 이OO 녹취록, 2018.1.12. 1쪽 ~ 2쪽.

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허수아비’로 표현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OO 문화관광실장, 오OO 행정부시장, 윤장현 시장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이 그림은 전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취지로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²²⁾

하지만 ‘허수아비’를 ‘닭 그림’으로 교체하자 광주시 공무원들의 반발이 더 거세졌고, 이런 압력에 8월 3일 윤OO와 장OO는 다시 홍성담의 설득에 나섰지만, 홍성담은 이를 거부하고 다시 작품을 ‘허수아비’로 복구하겠다고 선언하였다.²³⁾

8월 5일,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세월오월> 작품 소개와 함께 최초로 발표되었고,²⁴⁾ 다음 날이 되자 전국의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8월 6일, 책임큐레이터 윤OO가 홍성담을 찾아 와 “‘허수아비 그림’을 ‘닭 그림’으로 고쳐주면 책임지고 전시하겠다.”라고 하자, 홍성담은 이를 수락하고 수정된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 상황에 대해 윤OO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²⁵⁾

“시에서는 ‘절대 못 건다.’ 그 입장을 계속 압력 비슷하게 주니까 기획자로서

22) 박OO은 광주시에서 문화예술계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였으며, <세월오월> 작품의 전시는 광주시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전시불가’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한다. 박OO 녹취록, 2018.1.11. 참조.

“광주시가 방향을 정할 때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거를 대단히 우려를 했어요. 박근혜가 좋고 정부가 좋아서가 아니라 광주시가 자꾸 저런 일에 얽혀서 저런 그림이 걸려지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통쾌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막상 저러한 그림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예술작가들, 또 양동시장이나 이런 데서 매일 생선을 팔고 그날그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받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저도 공직을 40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지만, 뭐 달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작은 애항심이라고 하면 애항심일 수도 있고… 물론 그 외에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 ‘아, 그래. 국가의 원수를 풍자한 것이 뭣이 잘못이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현행 권력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아이, 저것들 예산 주지 마.’ 이렇게 되면,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법적 의무적 경비야 다 골고루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무슨 사업예산을 따오거나 이런 걸 보면 ‘그게 안 됩니다.’ 아니, ‘안 됩니다.’도 아니고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죠?’가 됩니다.”

23) 「결개그림 <세월오월> 사건일지_2014년」,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62쪽.

24) < [단독] 홍성담, ‘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논란 >, 노컷뉴스, 2014.8.5.
<http://www.nocutnews.co.kr/news/4069182>(접속일시-2018.2.11.)

25) 윤OO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윤OO 녹취록, 2018.1.2. 참조.

는 그게 간판인데, 간판 빼놓고 전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충안을 만든 거지. 그럼 이쪽에서도 성의를...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문제 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성의 표시라도 하면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절충안을 만든 건데, 결국은 절충안도 효과가 없었던 거죠.”

같은 날, 광주시는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관련 광주시의 입장」을 발표하여, ‘〈세월오월〉 작품의 시립미술관에 전시 또는 외벽 게시를 불허하고, 걸개그림 관련자에 대하여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²⁶⁾ 이제 사건은 〈세월오월〉 작품의 ‘수정’이 아니라 ‘전시’ 문제로 변화되었으며,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 홍성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최고 권력이 관심을 가지고 작품 전시를 못하도록 압박하는 사안으로 확대되었다.

다. 〈세월오월〉 작품 전시 외압 사실

1) 작품 전시 취소 과정

〈세월오월〉 작품은 결국 전시되지 못하였다. 홍성담이 작품 전시 자진 철회를 발표하는 8월 24일을 전후한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²⁷⁾

[표-6] 〈세월오월〉 작품 전시 취소 일지

날짜(2014)	세부 내용	비고
8. 6.	광주시, 〈세월오월〉 작품 전시불가 공식입장 발표	오OO 행정부시장 전결
8. 7.	광주시, 광주비엔날레 측에 공문 발송하여 전시취소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시 교부금을 반환케 할 것이라고 통보	위와 같음
”	윤장현 광주시장, 북경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표명	광주시의 입장 변경
”	윤장현 광주시장, 홍성담의 지인에게 ‘전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 발송	
8. 8.	홍성담, ‘허수아비’를 ‘닭 그림’으로 수정하는 퍼포먼스 진행	

26) 광주시 보도자료,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관련 광주시의 입장」, 2014.8.6.

27) 「걸개그림 〈세월오월〉 사건일지_2014년」,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57쪽 ~ 67쪽.

날짜(2014)	세부 내용	비고
(개막식)	후 수정본 출품(시립미술관 수장고 입고)	
"	윤OO 책임큐레이터 및 협력큐레이터 3인이 전시여부에 대해 회의를 열었으나, '전시유보'로 결정	찬성 - 윤OO, 미OO(2인) 유보 - 정OO 반대 - 장OO
"	도청 분수대에서 퍼포먼스 진행후, 시립미술관 외벽에 게시될 <세월오월> 프린트 본 현수막이 개막식 현장에 도착했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걸지 못함. 극단(신명)과 시민들이 시립미술관 앞에서 퍼포먼스 진행	
"	개막식 파행됨	윤장현 광주시장 불참
8.10.	윤OO 책임큐레이터 자진 사퇴 기자회견	
8.11.	<세월오월> 전시유보에 항의, 특별전 참여작가 작품 철회	이윤엽, 홍성민, 정영창 등 3인
8.12.	특별전 참여 오끼나와 작가들 전시요구 항의 성명	
8.13.	문체부, <세월오월> 작품 전시유보 사태 진상조사 착수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예총 등 전시요구 성명	
"	특별전 참여작가 13인 작품전시 및 책임큐레이터 복귀를 주장하는 탄원서 발표	윤광조, 오원배 등
"	광주비엔날레 재단, 특별프로젝트 기획자 6인회의 결과 9.16. 대토론회 개최 후 전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	
"	광주시립미술관장 황영성 사퇴의사 표명	
8.18.	이OO 광주비엔날레 상임대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성명 발표	
8.21.	홍성담, 이OO, 윤OO 3인 회동. 전시 자진철회 조건으로 책임큐레이터 복귀, 시장 사과성명, 걸개그림 반환 등을 요구하기로 합의	
8.22.	위 3인과 윤장현 시장 회동. 전시 요구에 대하여 윤장현 시장은 '광주비엔날레 측에서 공문을 보내오면 판단하겠다'고 언급	
8.23.	윤장현 시장 사과 성명	
8.24.	홍성담, 전시 자진철회 기자회견	

2) '전시유보' 결정 경위

8월 8일 개막식 직전, <세월오월> 작품을 홍성담으로부터 접수한 광주비엔날레 측은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실 부속 회의실에서 작품의 전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큐레이터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회의에는 윤OO 책임큐레이터와 협력큐레이터인 미OO, 정OO, 장OO 등 총 4인이 참석하였으며, 관장실에는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과 이OO 광주비엔날레 상임대표가 있었고, 관장실 밖의 복도에는 광주비엔날

레 재단과 시립미술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²⁸⁾

회의 결과, 윤OO와 미OO은 찬성, 정OO은 유보, 장OO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다수결에 의해 ‘전시 결정’이 되지 못하고 ‘전시 유보’로 결정되었다. 윤OO는 이 회의 결과에 반발하여 책임큐레이터 직을 사퇴하였다.

회의 결과가 ‘전시 유보’로 결정된 데에는 장OO가 전시를 강하게 반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지만,²⁹⁾ 이OO는 이 회의가 전시를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라, 큐레이터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³⁰⁾

“전시결정을 위한 다수결 표결’이라는 말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엔날레재단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합하던 과정에서 전시기획의 책임을 지고 있던 큐레이터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비엔날레의 입장에 대하여 큐레이터들은 현실적 고충을 이해하였고 여기서 소외되거나 반대한 큐레이터는 없었습니다. 의견표현 과정에서 처음에는 전시 찬성 한 사람, 유보 두 사람, 반대 한 사람이었으나, 재토론 과정에서 유보의견을 가졌던 큐레이터 한 분이 찬성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2대1대1이라는 의사결정을 위한 등식화이기보다는 전시기획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당시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의견수합이 홍성담씨의 작품을 전시하게 하는 여론적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본인의 제안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은 전시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광주시는 재단 내 파견공무원들과 전시장소인 광주시립미술관에 전시불가라는 말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윤OO는 그 자리에서 책임큐레이터로서 전시를 하지 못하게 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³¹⁾

28) 김OO·한OO 녹취록, 2018.1.4. 10쪽 ~ 15쪽.

29) 장OO 녹취록, 2018.1.10. 21쪽.

30) 이OO 전자우편 답변서, 2018.2.6. 7쪽.

31) 「책임큐레이터 윤OO의 사퇴 성명」,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323쪽~324쪽. 윤OO는 면담조사에서도 전시를 결정하는 회의 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

“저는 책임큐레이터로서 ‘전시 가능’을 주장하고, 관객의 객관적 평가를 받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개막 행사시간이 다가오도록 전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루게 되자, 회의석상에 비엔날레재단 간부들이 합석했습니다. 광주시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은 전시불가의 입장을 이미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광주비엔날레의 명예를 환기시키고, 예술탄압이라는 오명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정신의 예술적 구현과 특별전의 원만한 개막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작품 완성을 위한 작가의 다양한 시도와 수정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제출된 최종 완성작은 문제가 되는 부분의 특징인이 없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전시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전시여부를 결정하는 회의 자리에서 저는 전시 총괄 책임자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말로만 ‘책임’큐레이터이지 무엇을 ‘책임’지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광주시의 ‘전시불가’ 방침의 원안을 엮을 힘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당시 광주시립미술관장이었던 황영성은 ‘작품은 개인이 하지만, 전시하는 문제는 큐레이터에게 전적으로 권한이 있다.’면서도 당시에는 전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³²⁾

“그 당시에 결정을 못했죠. 말하자면 장OO도 시의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쪽으로 결정을 못했겠지. 장OO 의견이기보다도 시의 부시장이나 그 쪽에서 그런 소리가 오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안 거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관장이니까, 시의 방침을 수용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시가 돈을 다 대주고 하는.

큐레이터 탄 분들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니까, 객관적으로 나도

다. 윤OO 녹취록, 2018.1.2. 9쪽 ~ 10쪽.

“내가 책임 큐레이터니까 모든 것은 내 책임인데, 왜 이 사람들을 들러리 세워가지고 다수결 표결을 하는지... 그런 구도를 만든 그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 이OO 대표한테도 그걸 항의를 했죠. 그 구조를 내가 불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나 큐레이터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관철이 안 되니까. 그럼 나 사퇴하겠다.’라고 나온 거지, 회의석상에서.”

32) 황영성 녹취록, 2018.1.11. 8쪽 ~ 9쪽.

결면 좋지만은, 시의 입장에서는, 관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었고. 이OO 씨도 아마 그랬을 거고. 이OO 씨도 본래 큐레이터이고, 평론가였으니까. 그 분도 아마 ‘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비엔날레 책임자고 다 예산하고 관계하고, 시하고 연관되니까 그렇게 얼른 결정하기가 어려웠겠죠.”

3) 광주시의 전시 외압 사실

가) 기자회견과 공문을 통한 압력

8월 6일 광주시가 ‘전시를 불허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던 당시 윤장현 시장은 중국 북경에 공무출장 중이었다.³³⁾ 따라서 당시 광주시의 전결권자는 오OO 행정부시장이었는데, 오OO 부시장은 위 입장이 실린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8월 7일에는 광주비엔날레 측에 ‘특별전 작품중 걸개그림의 일부 내용이 귀 재단에서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목표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즉시 출연금 교부목적에 맞게 추진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상기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호에 의거 이미 교부한 출연금의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³⁴⁾

위 공문에서 밝힌 ‘출연금 일부 반환’의 근거인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확인해보면 다음 [표-7]과 같다.

33) 윤장현은 당시 ‘2014 한·중 문화교류의 밤’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이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14_0014515587&cID=10809&pID=10800(접속일자- 2018.2.12.)

34)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관련 조치 요청」(문화예술진흥과-7597, 2014.8.7. 시행). 오OO 광주시 행정부시장 전결로 처리된 이 시행문은 〈세월오월〉 사진 당시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 해 가을 광주시 국정감사 도중 통진당 국회의원 김재연에 의해 공개되었다. 「2014년도 국정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광주광역시 국정감사, 2014.10.16.)」, 국회사무처, 2014. 참조.

[표-7]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시행 2010.6.30. 광주광역시조례 제3833호)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 따르면, 제7조 ①항은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7조의 1호에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여기서 광주시가 광주비엔날레 측에 제시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4년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전 및 국제학술회의’ 출연금 교부 결정 통지」(문화예술진흥과-6481, 2014.7.7. 시행)의 첨부 문서인 「보조금 교부조건」에 적시되어 있다.³⁵⁾ 이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교부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조항은 제7항인데, 이 제7항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결정을 취소하거나 교부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위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례나 「보조금 교부조건」의 조항들은 사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의 조문들을 그대로 요약·적용한 것이며, 또한 ‘위법·허위·부정’ 등의 방법 이외에 보조금을 반환받는다든 조항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광주시의 공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광주비엔날레 측이 <세월오월>의 전시와 관련하여 ‘위법·허위·

35) 「2014년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전 및 국제학술회의’ 출연금 교부 결정 통지, 첨부: 보조금 교부조건」, (문화예술진흥과-6481, 2014.7.7. 시행), 광주광역시청. 2014.7.7.

부정' 등을 저질렀으므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규정의 무리한 적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윤장현은 당시 북경에 공무 출장 중이었는데, 광주시가 이러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오OO 부시장이 본인과 협의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³⁶⁾ 그는 다음 날인 8.7. 언론사와의 국제전화를 통해 “기본적인 문화정책에 대해 광주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작품 전시 여부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전시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³⁷⁾

나) 광주시의 직접적인 전시 불허 압력

광주비엔날레 상임대표였던 이OO는 ‘전시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자신이 아니라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이며, 비엔날레를 지원·감독하는 기관의 장인 광주시장이 이를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하면서, 광주시 고위관계자의 실질적인 압력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³⁸⁾

“오OO 당시 행정부시장은 재단의 이사지만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중심에서 있었고, 홍성담씨의 작품전시 문제가 확산되면서 내게 두, 세 차례 전화를 걸어 홍성담의 그림 <세월오월>은 내용상 절대 전시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전시를 한다 해도 전시장소가 시 산하기관인 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미술관측에 명하여 전시를 못하게 한다는 설명이 따랐습니다. 작품이 전시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광주시의 예산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심지어 비엔날레의 예산도 향후 중앙정부로부터 삭감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통화과정에서 고성과 항의, 설명, 시의 입장 전달 등 다양한 이야기가 개진되었습니다.

36) 윤장현 녹취록, 2018.1.12. 2쪽 ~ 3쪽.

“전혀 협의 없이 그 일들을 그런 식으로 결정할 일이… 협의나 제 지시 없이 그런 일들이 이뤄진데 대해서 경악을 했죠.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사람이 독자적으로 그런 일을 했을지’ 하는 생각이… 물론 아시다시피 행정부시장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37) <윤장현 “차 허수아비 그림 전시, 광주비엔날레가 결정할 문제”>, 노컷뉴스, 2014.8.7.자.

<http://www.nocutnews.co.kr/news/4070354#csidx9911edc3d80f34ea54f13f0f59cb9a8>(접속일자-2018.2.23.)

38) 이OO 전자우편 답변서, 2018.2.6. 8쪽 ~ 9쪽.

이 예산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전시 불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처럼 지적되었으나 본인은 예산문제 때문에 전시를 포기한다면 광주의 저항정신을 예산과 바꿔치기한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OO는 또한 광주시에서 광주비엔날레에 파견된 사무처장 김OO(3급 공무원) 역시 공식 석상에서 ‘전시 절대 불가’를 언급한 사실도 밝힘으로써 광주시 측의 ‘전시불가’ 입장이 전방위적이고 매우 강경했음을 강조하였다.³⁹⁾

“본인의 사퇴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 이후 당시 광주비엔날레재단 김OO 사무처장(광주시청 파견 3급 공무원)은 비엔날레 정례 간부회의에서 ‘시청 파견공무원으로써, 대표이사의 회견내용과 상관없이 흥성담씨의 작품을 절대 전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비엔날레재단 부장급 간부들에게 향후 자신의 업무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OO의 진술에 따르면, 광주시와 비엔날레 측(파견공무원)이 이미 내부적으로는 ‘전시불가’를 강행하도록 상황 공유가 있었다고 하는데,⁴⁰⁾ 이는 이OO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개막일인 8.8.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장 박OO은 전시 장소인 광주시립미술관에 직접 나가 현장을 지휘하였으며, 걸개그림이 외벽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구 봉쇄를 지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⁴¹⁾

“이거는 광주시의 주무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저 그림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직원들하고 또 미술관에 가서 뭐... 우리 직원 많이 데리고 가봐야 뭐해요? 몇 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제 상황을 보고. 이제 막으라고 했죠. (출입구 봉쇄에 대해) 거기 미술관에 있는 지휘계통을 통해서 ‘못 들어오게 문 막아라.’ 하여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39) 위 답변서. 2쪽.

40) 오OO 녹취록, 2018.1.30. 13쪽.

“이미 내부적으로는 그쪽하고 비엔날레재단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못 걸게 하는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박OO 과장한테 들었나? 뭐 어떻게 들었나 해가지고.”

41) 박OO 녹취록, 2018.1.11. 26쪽 ~ 28쪽.

개막식 직전, 시립미술관 공무원인 장OO는 전시여부를 결정하는 큐레이터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고, 파견공무원(3급)인 광주비엔날레 재단 사무처장은 그 근처에, 문화예술과장 박OO은 걸개그림을 외벽에 걸지 못하도록 출입구 봉쇄를 지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날 오전 열렸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미 광주비엔날레에 <세월오월>의 전시불가가 보고되었다.⁴²⁾ <세월오월>이 전시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걸개그림을 걸기위해 인부들이 옥상에 올라가 있었지만, 출입문 봉쇄로 외벽 전시가 불가능해지자 극단 <신명> 단원들과 광주시민들은 현수막 걸개그림을 들고 시립미술관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다. 광주시장 윤장현은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았다.⁴³⁾

4) 청와대의 <세월오월> 사건 외압 사실

가) <세월오월> 전시 관련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내용

2016년 말에 공개된 「故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의 2014.8.6.자에 따르면, 그날 오전에 있었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이 언급되었다.⁴⁴⁾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광주시장(윤장현)’이라는 메모인데, 이를 통해 청와대가 홍성담의 <세월오월> 작품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7일의 회의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가운데, <세월오월> 작품과 관련하여 홍성담에 대해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지시하여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불법적 민간인 사찰 정황이 확인되었다.⁴⁵⁾

그리고 8월 8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보다 명확한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가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42) 「김영한 업무일지 사본」, 법원 1심 형사소송기록 증 증거기록 제28권, 2017. 8.8.자 메모에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엔 걸지 않기로-광주시장’이라고 되어있다.

43) 「걸개그림 <세월오월> 사건일지_2014년」,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62쪽.

44) 「故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에서 2014.8.6.~11.26.기간 동안 총 10차례의 홍성담 관련 기록이 확인되었다. 「김영한 업무일지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25 1심 형사재판기록 제28권, 2017. 참조.

45) 위의 자료, 2014.8.7.자. 이 부분은 아래 민간인 사찰 관련 조사 결과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표-8] 2014.8.8.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⁴⁶⁾**〈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14.8.8 국정기획수석(기획비서관) - 공유(수석)**

□ 금일(8.8일, 08:30~09:45)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별첨 안건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④ 오늘부터 국민세금 37억원(국비 21억원과 시비 16억원)을 지원하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 행사(8.8~11.9)과 관련, 광주시가 소위 걸개그림 작가 **홍성담의 〈세월오월〉(VIP 풍자그림)이 전시하기에 부적절한 작품이라고 판단, 작품설치를 불허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도 국민혈세의 낭비를 방지하고 광주비엔날레의 권위 유지를 위해서도 예술을 빙자한 저급한 정치성 작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해 가야함

- 따라서 동 작품의 전시 금지(광주시 조치)는 물론이고 문체부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국비지원을 재고 또는 축소하겠다는 뜻을 광주비엔날레 주최측에 경고**해 두어야 할 것임(교문수석)

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세월오월〉 작품에 대해 광주시는 ‘전시금지’를 확실히 하고, 둘째, 문체부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비지원을 향후 재고 또는 축소하겠다는 경고를 하라고 교문수석에게 지시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날 수석회의의 참석자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은 「업무수첩」에 ‘광주비엔날레-개막식엔 걸지 않기로-광주시장(市長)’이라고 메모하였다. 이어 ‘장(長)’ 표기 아래 ‘4.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 사이비예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라고 기술하였는데⁴⁷⁾, 이 메모의 기술이 위 수석비서관회의의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으므로 이 회의가 실제로 존재하였고, 고(故) 김영한 「업무수첩」 또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6)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2014.8.8.),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2017노2425(병합), 항소심 증거기록, 2017. 26,325쪽~26,326쪽.

47) 「김영한 업무일지 사본」, 법원 1심 형사소송기록 중 증거기록 2017노2425 제28권, 2017, 2014.8.8.자

나)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문체부와 행사부 등의 외압

2016.11.14. 광주시장 윤장현은 2014년 <세월오월> 전시와 관련하여 김종 문체부 제2차관으로부터 전화로 외압을 받았음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 기자회견에서 윤장현은 “당시 중국 베이징 출장인 상태에서 광주시청 담당공무원 휴대전화를 통해 김종 차관이 전화를 걸어와, 세월오월 작품이 전시될 예정인 비엔날레 특별전에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것이 적절한지 우려를 표한 것으로 기억한다. 김종 차관의 전화가 전시철회에 영향이 있었다”⁴⁸⁾고 하여 문체부 고위 간부의 외압이 <세월오월>이 전시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시인하였다.

한편 2014년 당시 문체부 제1차관이었던 김희범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조사 당시 특검에 출두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⁴⁹⁾

문 : 송광용, 김상률 교문수석과 직접 연락하는 일이 많았나요?

답 : 송광용 수석은 2014.8.경 제가 장관 대행을 하고 있을 때 <세월오월>의 작가 홍성담 문제로 한 번 전화로 연락을 해왔고, 광주비엔날레에서 <세월오월>이 전시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최OO 기초 실장이 저에게 광주시장 전화번호를 알아다주어, 제가 전화를 하여 <세월오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 특검 수사관의 김희범 관련 수사보고(2016.12.29.)에 기술된 내용이다.⁵⁰⁾

48) 「윤장현 “김종 차관, ‘朴 풍자작품 전시말라’ 압력」, 노컷뉴스, 2016.11.14.자.
<http://www.nocutnews.co.kr/news/4684597#csidxe08895677f49e318c5c64fff6abbb28>(접속일자-2018.2.13.)

49) 「김희범 진술조서」(2016.12.31.), 법원 1심 형사소송기록 중 증거기록 2017노2425 제11권, 2017.

50) 「수사보고 ‘김희범 압수물 사본 첨부」(2016.12.29.), 법원 1심 형사소송기록 중 증거기록 2017노2425 제11권, 2017.

[표-9] 「수사보고 ‘김희범 압수물 사본 첨부’」(2016.12.29.)**홍성담 관련**

Q: 광주시장과 통화한 적이 있나.
있다.

내가 전화한 적도 있고 본인이 전화를 걸어 온 적도 있다.

Q: 청와대 지시가 있었나.
지시가 있었다.

Q: 어떤 내용이었는가.
현지 상황을 문의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그런 대화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Q: 압력을 가했는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선에서 전화통화를 가진 것이 전부이다.
모든 것은 시장님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위 특검이 압수한 김희범의 수첩에서 “윤OO curator 사퇴, 회의, viennale, 전시유보” 등의 메모⁵¹⁾가 확인되었는데, 이상의 자료는 당시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이 당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청와대의 지시로 광주시장과 통화하는 등 〈세월오월〉의 전시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와 문체부가 각각도로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당시 문체부 제1차관 김희범은 특검 조사로, 제2차관 김종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기자회견으로 윤장현과 각각 〈세월오월〉 전시 문제로 통화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윤장현은 2018.1.12. 면담조사에서 ‘김희범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김종 차관과는 2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⁵²⁾ 이에 반해 김종은 당시 언론에 ‘나는 문화가 아닌 체육을 관장하는 2차관이어서 비엔날레 문제로 광주시장과 논의할 일이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없으며, 윤 시장이 뭔가 큰 착각을 한 것 같다’라고 주장한 바

51) 「수사보고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 수첩 발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25 1심 형사재판기록, 제10권, 2017. ‘viennale’는 ‘biennale’의 오타로 보임.

52) 윤장현 녹취록, 2018.1.12. 15쪽.

있다.⁵³⁾ 김중은 2018.2월 현재 구속 수감 중이어서 이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한편 당시 광주시 행정부시장 오OO은 <세월오월> 작품 전시와 관련하여 행자부와 문체부 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오OO은 문체부에서 전화한 것은 당시 문체부 기조실장인 최OO⁵⁴⁾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하였으나, 행자부 쪽에서 전화를 해 온 사람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였다. 오OO은 또한 상부의 압박에 임명직 부시장으로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⁵⁵⁾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이 (출장)간 다음에 여러 가지 위에서 벌써 체크가 들어오잖아요. 위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도 “시장이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부시장이 그것도 못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조직에서는.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그게 잘못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공무원이라면 다 알죠, 누구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OO 부시장을 포함한 광주시 공무원들은 <세월오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윗선’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화로 외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전시불가 결정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이러한 입장은 2014 광주비엔날레 행사가 끝난 후 광주시 감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2015년에 있었던 (재)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감사

53) 「종합2보, 尹 광주시장 “세월오월’ 전시 불가, 김중 차관 전화 영향」, 뉴시스, 2016.11.1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14_0014515587&CID=10809&pID=10800(접속일시 - 2018.2.13.)

54) 최OO 진술요지(2018.2.6.), 「조사보고」(2018.2.20.). 최OO은 오OO 전 광주시 부시장과 통화했던 것을 시인하고, “오OO과는 행사 동기여서 친한 사이로서, 당시 광주 상황을 파악해서, 김희범 차관에게 보고하는 정도였고, 이와 관련한 특별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55) 오OO 녹취록, 2018.1.30. 17쪽~22쪽. 오OO은 통화상대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2013년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광주시 전공노 가입 문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서류조작 파문 등 중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행자부와 수많은 통화를 해왔었고, 이런 이유로 3년 여 전에 정확히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는 문체부 기조실장이었던 최OO과의 통화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결과, “광주광역시장은 전시기본구상과 크게 반하여 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작품 제작과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고 작품전시도 하지 못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에 ‘기관경고’ 합니다.”라는 처분을 내렸다.⁵⁶⁾ 이는 <세월오월> 사건 당시 광주시 공무원들이 취한 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광주비엔날레의 자율성을 한층 침해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라. 소결

홍성담의 작품 <세월오월>은 5·18 광주 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극복·승화하려는 의도에서 기획·제작되었다. 그러나 작품 제작과정에서 박근혜를 ‘허수아비’로 표현된 부분 등을 문제삼아 주최측과 광주시 측에서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작가와 큐레이터의 협의하에 ‘허수아비’를 ‘닭 그림’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지만, 이 와중에 작품이 언론에 공개되어 사건이 크게 확대되었다.

홍성담과 책임큐레이터 윤○○, 비엔날레 재단 상임대표 이○○ 등은 ‘닭 그림’으로 수정하면 전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공무원인 보조큐레이터 장○○와 광주시 공무원들은 ‘절대 전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작품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또한 청와대 측은 문체부와 행안부 등을 통해 광주시 공무원과 윤장현 시장을 압박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세월오월>은 전시되지 못하고 특별전 개막식은 파행되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월오월>의 전시를 막은 것은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의 차별’에 해당한다. 더구나 (재)광주비엔날레와 큐레이터의 고유 권한인 전시 여부에 대하여 광주시가 개입하여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김기춘을 비롯한 청와대의 고위 관료들이 <세월오월>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무기로 (재)광주비엔날레 측에 외압을 가하려는 정황도 확인되었다.

56) 「광주비엔날레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 업무 추진 부적정」, 『2015년 (재)광주비엔날레 종합감사 결과』, 감사기간: 2015.2.25.~3.6.(8일간), 공개일자: 2016.8.20.

이 메모는 허수아비 그림(光州)과 관련,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비서관 재임기간 2014.5.13. ~ 2015.1.23.)에게 첫째, 애국단체 명예훼손으로 고발토록 하고, 둘째, 국정원과 경찰로 팀을 구성하여 목록을 만들고, 추적하여 처단(處斷)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구성할 경찰·국정원 팀은 국정원 2처(국내수집 담당) 산하 제6국 국장급으로 하라는 구체적 지시 또한 확인된다.

위 8.7일자 메모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2차 2016.12.7.)에서 김기춘은 이용주 의원이 위 故 김영한의 메모를 보여주며, "이런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민정수석 산하에 우병우 비서관이 있고 이랬습시다 마는 거기에 있는 모든 기록을 다 하나하나 제가 지시했다고는 생각이 나지 않고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관련성을 회피하였다.⁵⁸⁾

그리고 우병우는 2016.12.22.에 열린 위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박범계 의원의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으로 우병우 팀에 홍성담 화백 등에 대해 경찰과 국정원이 정보수집팀을 만들어서 처단하고 응징하라는 지시를 내렸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우병우 팀이라고 전에 청문회도 해서 봤는데 저는 민정비서관이었지, 우병우 팀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 실체를 부인하였다. 또한 그는 홍성담의 <세월오월> 작품에 대해 지시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느냐'는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병우팀이라는게 저도 저기 고(故) 김영한 수석 비망록에 나온다 그래서 처음 안 거지, 제가 5월 달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관이 됐는데, 저 때가 3개월도 채 안 된 상태인데 왜 저것을, 우병우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이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였다.⁵⁹⁾

58)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2차 청문회, 2016.12.7.), 국회사무처. 2016.

59) 위 회의록, 제5차 청문회, 2016.12.22. 이날 청문회에서 박범계 의원에 의해 김기춘이 공식 직제인 특감반이 아니고 별도 조직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민간인 사찰' 때문이 아닌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우병우는 국정원 제6국장(나중에 제8국으로 변경) T(2014.8월 청와대에서 국정원으로 복귀)로부터 정보보고를 받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였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은 우병우팀에 대해 "국정원 T 6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꾸리는 것이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여기서 갖다 쓴다"고 주장하였다.

나. 민간인 사찰 이행 여부

위와 같이 2014.8.7.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이 ‘우병우팀’에 지시한 민간인 사찰에 대하여 김기춘과 우병우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지만, <세월오월> 사건 이후 ‘국가원수 모독’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사회적 통제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음을 당시 언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4.9.16. 제40회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도를 넘었다.”라고 언급한 직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설치하고 온라인 공간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수사에 나서는 등 정부는 ‘국가원수 모독’ 관련 사안에 강력히 대처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의혹에 대하여 기사를 쓴 산케이 신문의 가토 지국장이 2014.10.8.에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으며,⁶⁰⁾ 같은 해 10.1에는 우익인사가 한 언론의 만평가를 상대로 박 대통령을 ‘닭’에 비유한 만평을 그린 것을 문제 삼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하였다.⁶¹⁾

이처럼 당시 상황은 ‘국가원수 모독 건’에 대해서는 김기춘이 ‘우병우 팀에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을 지시하고, ‘목록을 만들고, 추적하여 처단(處斷)할 것’을 또한 지시했던 것처럼 ‘대통령을 비난하면 제3자가 대신 고발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사법처리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으려 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부분의 정보기관들이 사회 전 부분에 걸쳐 민간인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철저히 했을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특히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2014.8.6.자부터 동년 11.19.자까지 총 10차례 홍성담 관련 메모가 지속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월오월> 전시가 무산된 이후에도 홍성담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과 보고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외에 김기춘의 사찰 지시와 관련하여 확인된 국정원이나 우익단체의 활동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60) 고(故)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2014.8.10.자에는 ‘외교문제X, 특정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法), 언론자유 이름으로 국가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김영한 업무일지 사본」(2014.8.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25 1심 형사재판기록, 제28권, 2017.

61) 「‘박 대통령’ 만평 그린 화백도…명예훼손 3자 고발 급증», JTBC 2014.10.24.자 보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16660.(접속일시 2018.2.22.)

1) 국정원의 <세월오월> 사건 관련 보고

아래 [표-11]은 국정원이 <세월오월>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님 비방 친북화가 흥성담 대상 지원금 회수 여론’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여론동향 보고자료이다.⁶²⁾ 이 자료에서 국정원은 ‘흥성담이 전시를 강행하는 이유는 제작비 반납 압박 때문이며, 광주시를 압박하여 작품 제작비 반납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 ‘광주지역 건전인사들의 제언’이라고 보고하였다.

[표-11] <세월오월> 관련 국정원 여론동향 보고

< 대통령님 비방 친북화가 흥성담 대상 지원금 회수 여론 > 2014.8.8.(날짜 가필)
광주지역 건전인사들은 ‘2014 광주비엔날레(9.5~11.9)’에 친북화가 흥성담이 대통령님 비방 내용의 <세월오월>(가로 10.5m × 세로 2.5m, 걸개그림) 출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이OO)가 국비 21억원·시비 16억원을 지원받아 흥성담에게 작품제작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 흥성담이 광주시의 전시 거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출품을 강행하려는 데는 출품 무산시 작품제작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성담은 전시 거부 항의 차원에서 8.8.부터 구 전남도청 앞에서 그림을 들고 거리행진 계획 • 차제에 유사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문체부에서 국비 감액 입장을 광주시에 전달, 작품제작비 반납을 관철해야 한다고 제언

그러나 위 보고는 광주지역 건전인사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세월오월> 사건 당시의 광주시 공무원들의 논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8.8. 개막식까지도 윤장현 시장은 전시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월오월> 작품의 전시를 막으려는 입장이었던 광주시 관계자들은 국정원 보고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노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세월오월> 사건의 파장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국정원의 동향 보고서가 수시로

62) 「조사보고: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등 간담회 결과 보고」, 2018.1.22. 이 자료는 국정원이 사본을 제공하지 않아 사본을 보고 필사한 것이다.

작성·보고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위원회가 국정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는 [표-11]의 보고서 1건에 불과하다.

2) 우익단체 명예훼손 고발(8.8.)⁶³⁾

한편 김기춘이 8.7. 우병우팀에 지시한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은 실제로 이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김기춘의 지시 하루 뒤인 8.8. 보수국민연합 등 우익단체들이 홍성담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홍 씨의 작품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패륜행위’라는 것이 이유였다.⁶⁴⁾ 위원회는 김기춘과 우병우가 현재 구속 상태이고 우익단체들 또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위와 같은 우익단체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3) 기타 의혹 사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 이외에도 민간인 사찰을 의심할 만한 몇 가지 진술을 청취할 수 있었다.

먼저 홍성담은 금남로에 위치해 있던 <세월오월> 작업실 인근 카페에서 기관원으로 추정되는 한 두 명이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유리창 밖으로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⁶⁵⁾

“그 통유리 너머에, 그리고 우리가 점심 때 점심 먹으러 나오면 또 보고, 어디 가면 어디 갈 때마다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가 시내 한 가운데라 차 탈 일이 별로 없어. 그리고 숙소도 우리가 가까운데 잡아가지고 골목길로 이렇게 걸어오면 되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선가 딱 보면 짹새 알잖아. 안기부 직원이나. 냄새가

63) ‘보수국민연합’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과 함께 활동 해 온 우익단체로서, 2010.1.22. ‘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판결 판사 사진 화형식’, 2014.11.24. ‘통진당 해산 판결 촉구 기자회견’ 등의 활동이 확인되었다.

64) 「'박 대통령 풍자' 홍성담 작가 명예훼손 고발 당해」, 광주드림, 2014.8.9.자.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58343(접속일자-2018.2.22.)

65) 홍성담 녹취록, 2017.12.22. 72쪽 ~ 76쪽 참조.

나. 달라. 그리고 같은 얼굴이야. 매일 같은 얼굴에 꼭 그놈이 거기가 있을 까닭이 없잖아. 어쩔 때는 한 명, 어쩔 때는 두 명. 7월 하순경부터 그런 것 같아.”

또한 특별전의 개막식 당일 (재)광주비엔날레 전시팀장으로 개막식장에 나가 있던 한 OO은 ‘무전기를 들고 잠바를 입은 7~8명의 일반인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⁶⁶⁾ 위원회는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문의하였으나 별 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국정원 또한 이와 관련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 소결

김기춘이 <세월오월>의 ‘전시불가’를 지시한 정황뿐만 아니라 홍성담 작가에 대해서도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에게 지시하여 경찰과 국정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추적하여 응징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김기춘과 우병우가 이 사실에 대해 부정한 바 있고,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세월오월>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여론동향보고가 확인되었고,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러 차례 홍성담의 동향이 언급되고 있는 점, 김기춘의 지시가 있는 직후 우익단체에서 홍성담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점 등이 확인되었다.

4.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의혹에 대한 조사

가. 광주비엔날레 예산 지원 절차 및 2018년도 행사 예산 삭감 과정

광주비엔날레의 예산은 일반적으로 행사 2년 전에 결정된다. (재)광주비엔날레 측이 「광주비엔날레 개최계획(안)」과 「광주비엔날레 현황」 등이 포함된 「○○년도 광주비엔날레 개최계획서」를 행사주관기관인 광주시(주무부서: 문화예술진흥과)에 제출하면, 광주시는 이를 검토·보완하여 주무부처(주무부서: 시각예술디자인과)인 문체부에 제출한다. 문체부는 이를 심의·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개최 계획서」, 「타당성 검토 의견서」, 「타당성조사 신청서」 등을 제출한다.⁶⁷⁾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

66) 김OO·한OO 녹취록, 2018.1.24. 24쪽 ~ 26쪽 참조.

67)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기재부는 「국제행사

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 및 「국제행사관리지침(기재부 훈령)」 등에 근거하여 해당 국제행사를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국고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6] 국제행사 관리 절차⁶⁸⁾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에 각각 근거하여 광주비엔날레 행사를 심의·심사하고 지원예산을 결정한다.

68) 「국제행사관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311호) 참조. 당 지침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후, 2016.11.24. 일부 개정된 것으로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심의시의 지침과 비교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내용상 큰 차이는 없음.

2016년 열린 제11회 광주비엔날레의 총 사업예산은 약 100억 원 규모로 준비년도인 2015년 10억 원, 행사년도인 2016년에 21억 원, 총 31억 원의 국비예산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2018년 제12회 광주비엔날레의 예산은 아래 [표-12]에서 나타난 것처럼 2017년 9억 원, 2018년 9억 원으로 13억 원이 삭감된 총 18억 원만 배정되었다.⁶⁹⁾

[표-12] 광주비엔날레 국비지원내역⁷⁰⁾

(단위: 백만 원)

구분	행사비				
	계	국비	시비	자부담	
합계		115,663	37,700	20,034	57,929
제1회	소계	11,740	4,000	7,740	0
	1995년	11,740	4,000	7,740	-
제2회	소계	10,639	3,000	1,800	5,839
	1996년	1,603	-	-	1,603
	1997년	8,073	3,000	1,800	3,273
	1998년	963	-	-	963
제3회	소계	10,477	1,400	0	9,077
	1999년	2,601	-	-	2,601
	2000년	7,876	1,400	-	6,476
제4회	소계	9,143	2,000	0	7,143
	2001년	2,846	-	-	2,846
	2002년	6,297	2,000	-	4,297
제5회	소계	8,771	4,000	494	4,277
	2003년	1,492	-	-	1,492
	2004년	7,279	4,000	494	2,785
제6회	소계	9,551	4,000	0	5,551
	2005년	1,854	1,000	-	854
	2006년	7,697	3,000	-	4,697

69) 광주비엔날레의 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이다. 문체부가 아닌 기재부가 배분하기 때문에 문체부는 행사계획을 검토하는 수준이며, 기재부의 심사와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인데, 즉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예산 배분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권을 가지고 재단 운용 등에 대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70) 「광주비엔날레 국비지원내역」, (재)광주비엔날레, 2017.

구분	행사비				
	계	국비	시비	자부담	
	소계	9,528	4,000	0	5,528
제7회	2007년	1,911	1,000	-	911
	2008년	7,617	3,000	-	4,617
	소계	8,938	4,300	300	4,338
제8회	2009년	1,602	1,000	-	602
	2010년	7,336	3,300	300	3,736
	소계	9,134	3,000	1,500	4,634
제9회	2011년	2,096	1,500	-	596
	2012년	7,038	1,500	1,500	4,038
	소계	8,752	3,100	1,400	4,252
제10회	2013년	2,361	1,000	1,000	361
	2014년	6,391	2,100	400	3,891
	소계	9,690	3,100	2,900	3,690
제11회	2015년	3,211	1,000	1,000	1,211
	2016년	6,479	2,100	1,900	2,479
	소계	9,300	1,800	3,900	3,600
제12회	2017년	2,400	900	900	600
	2018년	6,900	900	3,000	3,000

2018년 제12회 광주비엔날레 국비지원예산이 삭감된 것은 2016년 초 기재부의 결정에 따른 것인데, 기재부 측의 설명에 따르자면, 이는 「국제행사관리지침」의 “4. 관리 일반 -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원칙” 항목의 “7회 이상 국제행사 심사를 거쳐 국비(10억 원 이상)를 지원받은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⁷¹⁾ 이 규정에 따라 기재부는 「2016년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결과 통보」(중기재정전략과-80, 2016.3.31. 시행)라는 공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송하여,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2018부산비엔날레’와 함께 ‘제12회 광주비엔날레’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탈락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아래의 [그림-7]은 위 공문에 첨부된 문서인 「2016년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결과(문화체육관광부)」이다.⁷²⁾

71) 이○○ 진술요지(2018.1.17.), 「조사보고」(2018.2.20.). 기재부 지출혁신과 사무관 이○○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위 “7회 이상 국제행사 심사를 거쳐 국비(10억 원 이상)를 지원받은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라는 규정의 적용이 맞으며, 이를 ‘일몰제 적용’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였다.

[그림-7] 「2016년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결과(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요구 5건 → 선정 2건, 미선정 3건			
(단위: 억원)			
연번	국제행사명	총사업비 (국고)	조사기관
<선정 2건>			
1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98 (28)	KIEP
2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100 (30)	KIEP
<미선정 3건>			
1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125 (15)	-
2	2018부산비엔날레	45 (17)	-
3	제12회 광주비엔날레	100 (30)	-

이러한 결정은 문체부가 2015.1.27.자로 기재부에 「국제행사개최계획서(2018 광주 비엔날레발송)(시각예술디자인과-244, 2016.1.27. 시행)을 발송하고⁷²⁾, 기재부가 2016.3.29.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사업을 심사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⁷⁴⁾

그런데 문체는 기재부가 위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따른 ‘일몰제 적용’을 대상 기관에 ‘왜 사전에 통보해 주지 않았는지’ 하는 것이다. 2015년 하반기부터 (재)광주비엔날레와

72) 「2016년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결과 통보」(중기재정전략과-80, 2016.3.31.), 기획재정부, 2016.

73) 「국제행사개최계획서(2018 광주비엔날레)」(시각예술디자인과-244, 2016.1.27.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2015. 이 문서에는 ‘1. 「2018 광주비엔날레」 국제행사개최계획서, 2. 「2018 광주비엔날레」 타당성 검토의견서, 3. 「2018 광주비엔날레」 타당성조사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다.

74) 「제96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개최」(중기재정전략과-67, 2016.3.24.시행), 기획재정부, 2016. 참조. 이 문서에 따르면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7명이 ‘2016년도 국제행사 심사요청 사업(15건) 중 「국제행사의 유치·관리에 관한 규정」, 「국제행사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타당성조사 등의 대상사업을 선정’한다고 되어있다.

광주시가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문체부가 이를 심의하여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다시 기재부에 제출(2016.1.27.)하기까지의 수개월 동안 기재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다가 3.31.에 별 다른 설명도 없이 갑자기 미선정되었다는 통보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기재부의 담당 주무관이었던 000은 “2016년 초에 갑자기 관련 업무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에서 재정기획국 중기재정전략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업무인수인계 등으로 정신이 없어서 미처 통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⁷⁵⁾

그러나 (재)광주비엔날레 측의 주장은 기재부의 설명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재)광주비엔날레 측은 문체부가 기재부로 2016.1.27.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한 이후, 2016.2.12. 예산 설명을 위해 업무를 새로 이관 받은 기재부 중기재정전략과를 방문한 바 있고, 이후 동년 2월 ~ 3월 사이에 추가 요구 자료 등을 작성·제출하는 등 실무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고 한다. 특히 광주비엔날레는 2015.11월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워크숍’에 국제행사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를 진행한 바 있고, 문체부의 ‘2014년 국고지원 시각예술분야 평가사업’에서도 높은 평점으로 ‘우수’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기재부가 적용한 「국제행사관리지침」의 “7회 이상 국제행사 심사를 거쳐 국비(10억 원 이상)를 지원받은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라는 규정은 2013.12.에 추가된 규정이고, 이를 광주비엔날레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이며, 더구나 이를 심사신청이나 추가 자료 제출시 전혀 언급한 바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광주비엔날레 측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에 따라 국제행사 심사를 받아 온 2010년도부터 7회가 되는 2024년도 행사에야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⁷⁶⁾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기재부 측의 주장과 무리한 규정 적용이라는 (재)광주비엔날레 측의 주장이 각각 존재하고,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이 삭감된 점, 2014.8.8.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비지원을 향후 재고 또는 축소하겠다는 경고를 하라’고 교문수석에게 지시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2018 광주비엔날레의 예산 삭감에 기재부 측의 주장과 다른 별도의 이유가 존재하는지 조사하였다.

75) 황OO 진술요지(2018.2.5.), 「조사보고」(2018.2.20.). 2016년 당시 기재부 재정기획국 중기재정전략과는 현재 재정혁신국 지출혁신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76) 「광주비엔날레 국비지원 일몰제 진행 현황」, (재)광주비엔날레, 2017. 참조

나. 예산 삭감 관련 조사 결과

1) <세월오월> 사건 이후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정책의 변화

2014년 <세월오월> 사건 이후 광주비엔날레의 다음 행사는 2016년에 개최되었다. 그런데 2016년 행사 예산은 <세월오월> 사건 이전인 2014년 초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비엔날레 예산 재고 또는 축소'에 대한 지시사항 이행 여부는 2018년도 광주비엔날레 예산 심사에 국한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어떻게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되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나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1심 판결문」 등을 통해 문체부의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정 및 정책 기조 등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었다.

2014.8.23.에 열린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비서실장 지시사항이 확인되었다.

[표-13]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2014.8.23.)⁷⁷⁾

<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 14.8.23. 국정기획수석(기획비서관)

□ 금일(8.23., 10:00~11:05)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별도 안건 없이 향후 국정운영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③ 각 부처마다 산하기관,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일부 기관, 단체의 경우 정부 철학과 배치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얼마전 광주비엔날레 걸개그림 전시시도 사례도 그렇고 최근 태권도연맹 총재가 통일부의 사전 접촉 승인 없이 북측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같은 사례

- 이러한 기관 단체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수단은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 과 예산권이므로 앞으로 보조금 축소·중단 등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수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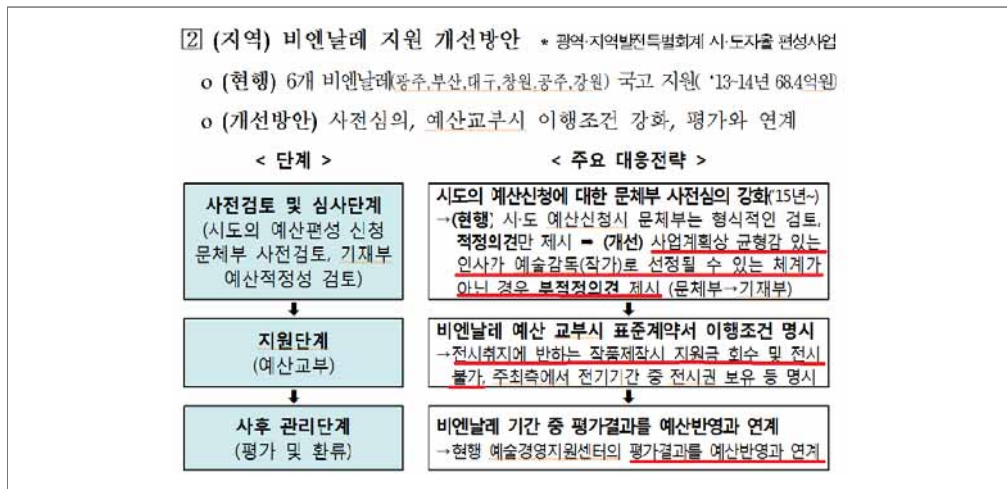
//끝//

77)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2014.8.23.),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2017노2425 (병합), 항소심 증거기록, 증거기록, 2017. 26,330쪽.

위 자료에서 보이는데로 김기춘은 이 회의에서 ‘광주비엔날레 걸개그림 전시시도 사례’를 ‘정부 철학과 배치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로 파악하고 향후 인사권과 예산권을 무기로 ‘보조금 축소·중단’을 통해 ‘건전한 방향으로 통제’하라고 수석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회의에 참석했던 故 김영한은 「업무수첩」 8.23.자에 ‘소관부처 산하단체 통제 難, 인사와 예산 통제수단, 감독 철저, 법 제도로 통제’라고 메모하여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4. 10.경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송 OO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 받고, 동년 10.21.에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다.⁷⁸⁾ 이 보고서의 붙임 자료인 「분야별 세부 대응전략」에 ‘(지역)비엔날레 지원 개선방안’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그림-8]과 같다.⁷⁹⁾

[그림-8] 「문창1_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대외비)」(‘14.10.22.)



이 자료의 ‘주요 대응전략’에는 <세월오월> 사건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파악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25 1심 형사재판기록,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79) 「문창1_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대외비)」(‘14.10.22.), 문체부 창조행정담당관 수집자료. 2017.

첫째, ‘사전검토 및 심사단계’에서는 ‘사업계획상 균형감 있는 인사가 예술감독(작가)로 선정될 수 있는 체계가 아닌 경우 부적정 의견을 문체부가 기재부로 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윤OO 책임큐레이터의 사례처럼 예술감독이 정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부적정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안이다.

둘째, ‘지원단계(예산교부)’에서는 ‘비엔날레 예산 교부시 표준계약서 이행조건으로 전시취지에 반하는 작품제작시 지원금 회수 및 전시 불가, 주최 측에서 전시기간 중 전시권 보유 등 명시’ 하도록 하였다. 이는 또한 <세월오월>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시 즉각 ‘지원금 회수 및 전시 불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바꾸어 말하면 <세월오월> 사건은 이와 같은 조항이 부재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문체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비엔날레 평가 결과를 예산 반영과 연계’ 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인데, 이것은 기존에 추진하던 방식이므로 개선 방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체부에서는 김기춘의 지시에 따라 <세월오월>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비엔날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동일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린 것이지만, 이는 사실 광주비엔날레의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균형감 있는 예술감독의 선임’이라든지 ‘전시 취지에 어울리는 작품의 제작’은 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수개월 전에 결정되는 문제이고, 비엔날레의 예산은 본 행사 2년 전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광주비엔날레는 문체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국고지원 시각예술분야 평가사업’에서 수년간 ‘우수’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예산과 연계시키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비서실장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광주비엔날레의 예산 삭감을 위해서는 다른 ‘규정이나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 바로 기재부 「국제행사관리지침」의 “7회 이상 국제행사 심사를 거쳐 국비(10억 원 이상)를 지원받은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라는 조항(이하 일몰제)이 시의적절하게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국제행사관리지침」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⁸⁰⁾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국제행사의 내실 있는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

80) 이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은 원래 국무총리훈령이었다가 2008년 기재부 훈령으로 변경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http://www.law.go.kr/>(접속일자-2018.2.20.)

으로 2009.9.7.에 제정(기재부 훈령 제56호)되었고, 위의 일몰제 조항은 2013.12.10.에 「국제행사관리지침」을 전부 개정시(기획재정부훈령 제154호) 삽입되었다.⁸¹⁾

그렇다면 ‘2016년 광주비엔날레’의 예산심사가 있었던 2014년 초에 기재부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예산심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그 때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 초에야 비로소 광주비엔날레 등 3개 국제행사에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이 지침의 부칙에는 “2012. 1.27일 국제행사관리지침을 개정하였고,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발효 이전 국제행사 심사를 신청한 국제행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을 뿐, 2013년 개정된 위 일몰제 조항을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⁸²⁾

2) 타 국제행사와의 비교

위원회는 또한 광주비엔날레 외에 10억 이상의 국고 지원을 받은 국제행사 사례에 대해 찾아보았다. 다음 [표-14]는 2011년~2018년 문체부의 국제행사 지원 내역이다.⁸³⁾

[표-14] 문체부의 국제행사 지원내역(2011년~2018년)

국제행사명(시작년도)	지원예산액(백만원)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광주비엔날레(1995)	1,500	1,500	1,000	2,100	1,000	2,100	900	900
부산국제영화제(1996)	1,500	1,500	1,500	1,460	800	950	760	미정
부산비엔날레(2001)	500	1,500	700	1,260	50	1,300	50	950
대구사진비엔날레(2006)	-	800	80	700	80	480	80	480
공주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2004)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1999)		지원액	없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2001)		지원액	없음					
전주국제영화제(2000)	700	700	650	610	700	660	510	미정

81) 위의 홈페이지 참조.

82) 위와 같음. 그리고 「국제행사관리지침」의 일몰제 조항 중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부분과 관련 기재부가 규정을 너무 경직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다. 광주비엔날레 측은 예산 삭감이 결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사의 국제적 중요성과 지원의 당위성을 주무부처 등에 호소했다고 한다.

83) 「문체부 국제행사 지원내역」, 문체부 재정담당관실, 2018.

국제행사명(시작년도)	지원예산액(백만원)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1997)	500	500	550	550	600	700	540	미정
서울국제여성영화제(1997)	350	350	330	340	350	400	310	미정
제천국제음악영화제(2005)	250	250	290	200	350	400	310	미정
경주세계문화엑스포(1996)	4,000	-	4,800	-	3,240	-	2,800	-

※ 기재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일몰제 적용 예정임⁸⁴⁾

위 [표-14]에 나타나듯이 부산국제영화제는 2014년 '다이빙벨 상영' 사건의 영향으로 2015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었지만, 2016 광주비엔날레 예산은 2014년의 <세월 오월> 사건 관련 김기춘의 예산 축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별 차이가 없는데, 이는 2016년 광주비엔날레 예산지원이 2014년 초에 이미 결정되었고,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는 청와대와 문체부의 예산 삭감 지시에 의해 2015.4월경에 지원 예산이 최종 결정되었기 때문이다.⁸⁵⁾

그런데 다음 [표-15]에 나오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2017년까지의 지원내역을 보면 2003년 이후 총 7차의 심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1998년(120억 원)과 2000년(100억 원)의 지원을 포함하면 총 9차례 10억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다.⁸⁶⁾ 한편 같은 자료에서 광주비엔날레는 2008년부터 5차례 국제행사 심사를 받아온 것으로 다음 [표-16]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즉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2차례의 지원을 제외하고 심사받은 6차의 횟수로 2017년 예산에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광주비엔날레는 심사를 5차례 받았지만 이전까지 소급해서 적용한 부분이 확인된다.

[표-15]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고지원 내역

국제행사명	지원년도	1998	2000	2003	2006	2007	2011	2013	2015	2017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심사여부	-	-	○	○	○	○	○	○	○
	지원액(백만원)	12,000	10,000	6,000	2,000	2,000	4,000	4,800	3,240	2,800

84) 이○○ 진술요지(2018.1.17.), 「조사보고」(2018.2.20.).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25 1심 형사재판기록,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99쪽 ~ 100쪽 참조.

86) 「국제행사 심사 신청 및 승인 현황」,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 2018.

[표-16] 광주비엔날레 국고지원 내역

국제행사명	지원년도	1995	1997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광주 비엔날레	심사여부	-	-	-	-	-	-	○	○	○	○	○	미승인
	지원액 (백만원)	4,000	3,000	1,400	2,000	4,000	4,000	4,000	4,300	3,000	3,100	3,100	1,800

※ 비엔날레는 2년 마다 열리므로 2년치 예산을 함께 받음

이상에서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2017)’와 ‘2018부산비엔날레’ 및 ‘제12회 광주비엔날레(2018)’ 등 3개 국제행사가 2016년 초에 ‘일몰제’ 대상이 되어 예산이 삭감되었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총 9차례의 10억 이상 국고 지원을 받았으나,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국제행사는 국고지원이 10억 원 이상이 되지 않아서 국제행사 심사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상호 비교할 수 없었으며, 다만 매년 국고 지원액의 변동이 크지 않았다는 것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다.

다. 소결

2017 ~ 2018년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전 31억 원에서 13억 원이 삭감된 18억 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기재부는 「국제행사관리지침」의 ‘일몰제’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김기춘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관 단체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수단은 인사권과 예산권이므로 앞으로 보조금 축소·중단 등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는 지시를 수석들에게 내린 바 있고, 문체부가 이에 호응하여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등을 수립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초에 있었던 예산 심사에서 광주비엔날레의 예산 삭감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특히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총 9차례에 걸쳐 1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소급적용을 받지 않았고, 광주비엔날레는 소급적용을 받았다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5. <세월오월> 사건 관련 민간인 피해 사례 조사

2014.10.2.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아래 [표-17]과 같이 ‘홍성담 작품 전시 차단 등 상당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김기춘이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또한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10.2.자에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ex) 다이빙벨, 파주, 김현”이라는 메모에 의해 위 지시가 사실임이 확인된다.⁸⁷⁾

[표-17]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2014.10.2.)⁸⁸⁾

〈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 14.10.2. 국정기획수석(기획비서관)

- 금일(10.2일, 8:30~9:55)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별첨 안건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 ③ 그동안 정무수석, 교문수석 및 관련부처에서 광주 비엔날레에서의 홍성담 그림 전시 차단, 파주 북소리축제에서의 월북작가 홍명희문학제 개최 차단, 부산영화제에서의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온 결과, 실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음.
 - 앞으로도 문화영화예술 분야에서의 이념 편향적인 행태를 방관·좌시해서는 안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정무수석 교문수석) //끝//

이처럼 〈세월오월〉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소위 ‘좌편향 문화예술계 배제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거론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지 못한 홍성담 뿐만이 아니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현재 밝혀진 〈세월오월〉 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세월오월〉 관련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세월오월〉 또는 홍성담과 관련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관 또는 문화예술인은 아래 [표-18]과 같다.

87) 「김영한 업무일지 사본」(2014.10.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25 1심 형사재판기록 제28권, 2017.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25 1심 형사재판기록, 2017. 26,335쪽.

[표-18] 홍성담 관련 블랙리스트 등재자 및 기관

단체명 또는 인명	등재 사실
광주문화재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지역문화재단 (CNS)등재명 - 5명</p> <p>①진천문화재단은 인재를 출신 장을 인정 > 낙원산 서울문화재단 -②당장명 이사장 및 전로프, 장어전대 등 5명 이사 포함 -③문화재단(국립) 재직 연수/2차 선정(2,000만원) 지원 광주문화재단 -④재직 용어가 정을심 추모유치제 -⑤홍성담 활동 중인 광주인재용 지원 부산문화재단: 예술공연지원센터 개설하여 피안할 단체 후원 확대</p> </div> <p>※ 출처: 「리스트 - 2014/2015년도분(654명) - 확정」 중 '기존관리리스트-149명', 오OO 검찰 진술조서(제2차, 2017.10.15.), 2,692쪽.</p>
박OO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아시아문화원 간부권(1.19)</p> <p>○① ○○○ :민주통합당, 임수경방북지자, 노원추모공인기회, 친노/ 남편, 한겨레 활동 등)-1.27-K ○②박영택:경향, 미디어오늘 등 필진활동, 홍성담의 그림 옹호, 박정희시대 비판 등 ○③성우쌍:2009소고기반대 시국선언 1건-양해가능 ○④조현중 : 광주사태 연루, 복원됨 - 문제없음</p> </div> <p>※ 출처: 「리스트-'16.9.27.현재」 중 '2016 기타사항 확인리스트(K)', 오OO 검찰 진술조서(제2차, 2017.10.15.), 2,660쪽.</p>
홍OO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추가확인자: 전민규(민노당당원, 절대안됨)/ 홍성민(홍성담과 활동, 절대안됨) - 음악 : 없음 - 시각예술: 3명 · 자체확인자: 양혜규 · 추가확인자: 김승연(절대안됨)/ 안태성(절대안됨)</p> </div> <p>※ 출처: 「리스트 - 2014/2015년도분(654명) - 확정」, '⑧ 2015년 연중사업리스트 -262명' 중 '2015 국제교류 2차공모('15.5.27.)-36명', 오OO 검찰 진술조서(제2차, 2017.10.15.), 2,717쪽.</p>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광주문화재단은 '홍성담 활동 중인 광주민예총 지원'을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고, 박영택은 '홍성담의 그림 옹호'를 이유로 아시아문화원 간부진에서 배제되었으며, '2014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참여 작가이기도 한 홍성민은 '홍성담과 활동'을 이유로 '2015년도 국제교류 2차 공모'에서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그 외의 피해 사실

이외에 '2014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의 책임큐레이터였던 윤OO는 2015년경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에 위촉되었다가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화재위원에 위촉되었다고 임명장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을 종용하던 직원이 갑자기 그 전날 참석불가를 통지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이후 '청와대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전해줬다고 한다.⁸⁹⁾

“한국근대미술 부전공자로 근대문화분과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그동안 했어요, 위원 아닐 때도. 특히 지정할 때. 근대문화재 지정할 때라든가 하여튼 이러저러한 문화재청의 일을 많이 도와줬었는데, 한 번은 문화재 위원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담당 직원이 ‘임명장 수여식에 꼭 빠지면 안 된다’고 몇 번씩 확인을 했거든요. 그 전날까지 ‘꼭 오셔야 된다. 오셔야 된다.’ 그런데 그 전날 담당 직원이 ‘아, 내일 오시지 말라고.’, ‘이때까지 몇 번씩 꼭 와야 된다고 그 난리 치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 지금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임명장 수여식에 오지 마세요. 죄송해요.’ 나중에 들었는데, ‘청와대에서 이 사람 빼라고 했다’고 그 담당 직원이 나중에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1년까지는 아니고 두세 달쯤 뒤에”

6. 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진 사항 및 규명되지 않은 사항

위원회 조사 결과, <세월오월>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시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개입과 외압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진 사항 및 규명되지 않은 사항 등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19]와 같다.

[표-19] 조사 결과 일람표

규명 과제	성명 (기관)	사건 당시 직책	조사 결과 확인 사실	미규명 사실 및 참고 사항
전시 외압 의혹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실수비에서 <세월오월> 전시 금지 및 유사 사건 재발방지 지시	
	송광용	교문수석	·김희범에 전시 금지 지시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	·송광용 지시로 윤장현에 전화하여 ‘전시불가’ 요청	
	김 종	문체부 제2차관	·윤장현과 2차례 통화하여 외압	김종, 통화사실 부인
	최OO	문체부 기초실장	·윤장현 전화번호 김희범에 전달 ·OOOO과 통화 후 김희범에 보고	
	행자부		·OOOO과 여러 차례 통화	행자부 통화자 특정 못함
	윤장현	광주시장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원칙 표명 ·전시 관련 결정 없이 개막식 불참 ·김종과 통화사실 언론에 발표(‘16.11.)	김희범과 통화사실 부인

89) 윤OO 녹취록, 2018.1.2.

규명 과제	성명 (기관)	사건 당시 직책	조사 결과 확인 사실	미규명 사실 및 참고 사항
	오OO	광주시 부시장 광주비엔날레 이사	· 문체부 및 행안부 간부들과 통화 · (재)광주비엔날레에 '전시불가' 입장 통보 및 공문 발송 · 언론에 '전시 불허' 입장 발표	청와대-행자부-광주시 구체적 연결고리 확인 못함
	이OO	광주시 문화관광실장	· 특별전 주최측에 수정 요구	
	박OO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장	· <세월오월> 외벽 전시 못하도록 시립미술관 현관 봉쇄 지시	
	김OO	(재)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시청 파견)	· (재)광주비엔날레 직원들에게 전시불가 입장 및 관철 강조	
	장OO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관 특별전 보조큐레이터	· 전시 결정 회의에서 '전시불가' 표명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 '우병우팀'에 국정원·경찰 별도 조직 구성 후 홍성담 사찰 및 응징 지시 · 우익단체 명예훼손 고발 지시에 따른 이행 확인됨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성 부인
민간인 사찰 의혹	우병우	민정비서관	· 공식 직제인 '특감반' 외 별도 조직 구성 및 운용 의혹(재판중)	위와 같음
	국정원		· 청와대에 여론동향 보고	
	홍성담	<세월오월> 작가	· 작업실 근처 카페에서 기관원 추정 인물의 동향 감시 의혹 주장	확인 되지 않음
	한OO	(재)광주비엔날레 팀장	· 개막식에 7~8명의 무전기 소지한 정체불명의 인물들 목격 주장	위와 같음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 <세월오월> 사건을 사례로 각 부처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해 보조금 축소·중단 등을 통한 통제 지시(전 수석)	
예산 삭감 의혹	문체부	송OO 기조실장 등	·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 계획' 청와대 보고('14.10.) - (지역)비엔날레 지원 개선방안	문체부 이행 여부 확인 되지 않음
	기재부		· 2018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제행사관리지침'의 일몰제 적용 확인 - '14년 초 심사시 미적용, '16년 초 소급 적용 -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소급 적용 안함	기재부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김기춘 지시 이행 여부 확인 필요

제4절 | 결론

헌법과 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국제교류·협력 포함)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월오월> 사건은 ‘대통령 모독’과 ‘유사 사건 재발방지’ 등을 이유로 작가와 큐레이터가 협의하여 제작한 작품의 전시를 못하도록 국가기관이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예산 분배 권한을 무기로 (재)광주비엔날레를 통제할 것을 지시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세월오월> 사건 조사를 통해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와 ‘민간인 사찰 지시 및 이행 여부’ 및 (재)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예산 삭감 지시 및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달콤한 이슬 - 1980 그후’에 전시될 홍성담의 걸개그림 <세월오월>이 박근혜를 ‘허수아비’로 표현되었다는 이유로 주최 측에서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후 작가와 큐레이터의 협의하에 ‘허수아비’를 ‘닭 그림’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지만, 광주시 공무원들이 ‘작품을 절대 전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전시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와 행자부 등을 통해 광주시 공무원과 윤장현 시장을 압박하도록 지시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세월오월>은 전시되지 못하고 특별전 개막식은 파행되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이 <세월오월>의 전시를 막은 것은 헌법 등에 명기된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의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재)광주비엔날레와 큐레이터의 고유 권한인 전시 여부에 대하여 광주시가 개입하여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실은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 또한 김기춘을 비롯한 청와대의 고위 관료들이 <세월오월> 작품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무기로 (재)광주비엔날레 측에 외압을 가했다는 불법 정황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청와대에서 <세월오월>의 ‘전시불가’를 지시한 사실뿐만 아니라 홍성담 작가에 대해서도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김기춘은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에게 ‘경찰과 국정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추적하여 응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월오월>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여론동향 보고가 확인되었고,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러 차례 홍성담의 동향이 언급되고 있는 점, 김기춘

의 지시가 있는 직후에 우익단체에서 흥성담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점 등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일부 실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기춘과 우병우가 이 사실에 대해 부정한 바 있고,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2018년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전 31억 원에서 13억 원이 삭감된 18억 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기재부는 「국제행사관리지침」의 ‘일몰제’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김기춘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관 단체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수단은 인사권과 예산권이므로 앞으로 보조금 축소·중단 등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는 지시를 수석들에게 내린 바 있고, 문체부가 이에 호응하여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등을 수립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초에 있었던 예산 심사에서 광주비엔날레의 예산 삭감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특히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총 9차례에 걸쳐 1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소급적용을 받지 않았고, 광주비엔날레는 소급적용을 받았다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88

국립현대미술관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88

국립현대미술관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8직시1 [국립현대미술관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조사 취지

2017시3[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등 국립현대미술관 관련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위원회 직권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위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립현대미술관이 2015~2016년 운영자문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배제 지시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문체부 또한 이 과정에 개입하였음이 오OO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해 드러났다. 또한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이전 30주년 기념 포상을 위한 포상자 선정’과 ‘2016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에도 블랙리스트를 작동시켰음도 확인되었다.

붙임 : [국립현대미술관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8직시1, [국립현대미술관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제1절 | 조사 개요

1. 조사 취지

2017시3[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등 국립현대미술관 관련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위원회 직권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 근거

본 사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제1호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5차 전원위원회(2018. 5. 25.)에서 직권조사개시결정으로 의결되었다(의안번호 18-149).

나. 조사 목적

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규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2015년 배제 실행 의혹

〈2015년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선정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경위를 밝히 고자 하였다.

2) 2016년 배제 실행 의혹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선정,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건립 30주년 기념 포상〉,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등 3건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경위를 밝히고자 하였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검토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게재일/작성일
1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	감사원	2017. 8. 22.	
2	서울중앙지검 오OO 진술	오OO	.	2017. 10. 15
3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	문체부	2018. 3. 26.	
4	리스트-'16.9.27. 현재'	문체부	2018. 3. 26.	

2.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대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조사 형태	일자
1	오OO	참고인(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진술조서	2018. 2. 7.
			전화조사	2018. 4. 12.
2	김OO	참고인(문체부 시각예술정책과 국립현대미술관 담당 사무관)	전화조사	2018. 4. 12.
3	김OO	참고인(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과장)	전화조사	2018. 4. 13.

제3절 | 조사 내용

1. 조사 배경

[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2015~2016년 사이에 총 4건의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2. 조사 결과

가.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선정

1) 감사원의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 국립현대미술관의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대하여 2017. 1. 19. ~ 2017. 3. 10.까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별표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6개 기관 공모사업 신청자 등 부당 지원·선정 배제 명세’에 아래 [그림-1]과 같이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과 관련한 배제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 본문에는 이에 대한 사건 경위 및 감사 내용 등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림-1]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6개 기관 공모사업 신청자 등 부당 지원·선정 배제 명세’

연번	시행 기관명	공모 사업명	공모 마감일	신청자(대상자)	신청사업명	선정발표일	비고
26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	2016. 3. 4.	살현옥자 피리보존회(최경만)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	2016. 3. 23.	지원(선정) 배제
27	전통공연 예술진흥 재단	전통공물활성화사업	2016. 4. 15.	한국전통예술단 어울 (강주석)	전통공물활성화사업	2016. 5. 20.	*
*			전통예술원 관 (민대식)	전통공물활성화사업	*	*	
29		세계무형유산 활용 공연지원	2016. 5. 20.	정가익회(천재현)	세계무형유산 활용 공연지원	2016. 7. 4.	*
30	국립현대 미술관	운영자문위원	-	이영욱	운영자문위원	2015. 8. 10.	*
31	한국문학 번역원	해외교류기획 사업	-	최열	운영자문위원	*	*
32	한국문학 번역원	해외교류기획 사업	-	신경빈	해외교류기획사업	2016. 7. 26.	*
33	(사)한국 장애인문화회 협회	장애인문화예술대상	2015. 8. 21.	김미선	장애인문화예술대상	2015년 10월	*

또한 문체부에서 제출한 <문예6-5_리스트-'16.2.1 현재> 중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 의 <2015년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선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영욱(전주대학교수)과 최열(미술평론가)이 배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2] <문예6-5_리스트-'16.2.1 현재> 중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

8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 - 262명	
공연예술센터대학로 3관 대관(2차)('15.6.29) -1명	○ 박종우(청소년전문극단 진동)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15.6월) - 2명	○ 이영욱, 최열
작가장터 개설지원 ('15.5월) - 1명	○ 무미아트(민병동)

3. 2016년 배제 실행

가. 운영자문위원 선정 및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건립 30주년 기념 포상

문체부에서 제출한 「문예6-11_리스트-’16.9.27현재」에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선정 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검토를 받았고,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건립 30주년 기념 포상>에서도 국정원 지시로 ‘최열’을 배제하였음이 적시되어 있다. [그림-3]의 K는 국정원을 의미한다.¹⁾

[그림-3] 리스트-’16.9.27현재

리스트-’16.9.27현재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국립극단 비상임이사, 감사	○특이없음(K/7.14)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20)	○특이없음(K/7.2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후보	○특이없음(K/7.21)
2016문화예술발전유공자 포상(1차)	○특이없음(K/7.29)
현대미술관과천30주년기념포상	○최열(K/7.29)
시각예술 글로벌기획인력 양성사	○특이없음(B/3.29)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지검)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²⁾ “<현대미술관 과천30주년 기념포상>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건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현대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함으로써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 제고를 위한 것으로, 포상 규모는 총 8점(장관표창)인데 국정원으로부터 배제하라는 통보를 받아 최열을 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오OO 진술조서(2018. 2. 7.) 오OO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K는 국정원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2) 서울지검에서의 오OO 진술(2017. 10. 15.)

[그림-4] 서울지검에서의 오OO 진술 중

사업명	검토내용
현대미술관과천30주년기념 포상	○최열(K/7.29)
문	당시 위 사업의 경우 국정원으로부터 배제하라는 통보를 받고 최열을 배제한 것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과천관 건립 30년을 기념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의 <u>구조발전</u> 에 기 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함으로써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 제고를 위한 것으로 포상규모는 총 8점(장관표창)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국립현대미술관이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선정> 과정에서 국정원의 검토를 받았고,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건립 30주년 기념 포상>에서도 국정원 지시로 ‘최열’을 배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오OO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본인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직접 배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국립현대미술관과 직접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며, 아마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를 통해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³⁾ 그러나 2016년 당시 시각예술디자인과 국립현대미술관 담당 사무관 김OO은 ‘국립현대미술관 측의 사업이나 전시가 많고 그에 따른 담당자들도 많아서 그 당시 기억을 일일이 할 수 없으며,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⁴⁾

그리고 김OO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선정에 대해 “원래 3~4배수의 인원을 추천하면, 문체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김종덕 문체부 장관 재직시에는 아마도 장관이 직접 검토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관련성을 부인하였다.⁵⁾

3) 참고인 오OO 조사보고(2018. 4. 12.)

4) 조사보고, 김OO 전화조사(2018. 4. 12.)

5) 참고인 김OO 조사보고(2018. 4. 13.)

나. 2016년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문체부에서 제출한 「리스트-’16.9.27현재」에 ‘현대미술관 -현대카드컬처프로젝트,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신형철 - 특이 없음(K/6.21)’이 아래 [그림-5]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 이는 2016년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선정시에 국립현대미술관이 국정원에 작가 신형철의 배제 여부를 확인하였고, 전시 반 달 전인 2016. 6. 21.경에 ‘특이없음’으로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5] 「리스트-’16.9.27현재」

공예예술스튜디오 -공예기획 및 경영전문인력지원 (5.30)	○주다림치(이대현), 극단 청년극장(정창식), 문화예술교육 디렉트(이미희), (주)메우공동체거무리(김경수), (주)극단기분출출극장(이하나), 한국연극협회광주광역시지회(정순기), 거창 우리문화연구회(김현영), (사)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김덕수)-H/6.13(동명아이언어부 확인할 것) *이미희, 김경수, 동명아이언, 특이없음으로 처리 *꽃무늬사이리(김경수) : 양해될 ○장애인문화예술협회(과동업), (사)정기학회(원재현), 사회적협동조합 실관(전동일)-K/7.12)
현대미술관-현대카드컬처프로젝트,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신형철-특이없음(K/6.21)
신전극단 실험무대 신전단체예술가연계 기획공연(7.12)	○특이없음(B/7.22)

신형철은 2016년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에 <템플>이라는 작품으로 당선되었다. 이 작품은 건조된 지 35년 된 폐선을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뒤집힌 세월호를 연상시킨다.

[그림-6] 신형철의 <템플>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이 사건은 국립현대미술관 관련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2015~2016년에 걸쳐 4차례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음이 드러나 이에 대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는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 규정」 제12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관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미술관 운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고 되어있다.

즉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위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자문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배제 지시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문체부 또한 이 과정에 개입하였음이 오OO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해 드러났다. 또한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이전 30주년 기념 포상을 위한 포상자 선정’과 ‘2016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에도 블랙리스트를 작동시켰음도 확인되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89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취소 사건



89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취소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시1[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취소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노순택은 2016년 1월 22일 미국 뉴욕의 김OO 기획자로부터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참여 제안을 받고 관련 작품을 준비하였으나 알재단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전시 취소를 동년 4월 28일 통보 받았다. 신청인은 위 사건이 뉴욕한국문화원의 블랙리스트 실행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우리 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뉴욕한국문화원장 오OO는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작품 중 신청인의 작품에 주목하여 총영사관과 협의를 통해 전시 취소를 결정하고 알재단으로 하여금 작가들에게 전시 취소를 통보하게 했다.

문화원이 총영사관과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전시 작품 선정과 관련하여 외교적 고려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획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작품 교체를 큐레이터와 협의해도 되었다. 그러나 뉴욕한국문화원과 뉴욕총영사관은 ‘전시 취소’라

는 결정을 내려 오랜 기간 동안 예술가들을 후원해온 알재단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기획자와 전시 참여 작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붙임 :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취소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시1,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취소 사건

[신청인] 노순택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인 취지

신청인 노순택(이하 ‘신청인’)은 2016년 1월 22일 경, 미국 뉴욕의 김OO 기획자로부터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제안을 받고 참여하기로 하여 관련 작품 전시 준비를 하였으나 4월 28일 이유 없이 전시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알재단으로부터 받았다. 당시 일방적인 전시 취소로 인하여 동년 1월부터 전시를 위해 노력한 작가들과 기획자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기획자 김OO와 다른 작가들에게 혹여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론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국정농단사태 이후 ‘전시 취소’가 블랙리스트에 근거한 배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으며 JTBC 등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를 접하고 누가 어떤 이유로 전시를 취소 시켰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여 신청인은 위원회에 관련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 사건은 2017년 10월 13일 「10차 전원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뉴욕 한국문화원의 신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가 취소되었다는 의혹과 특정 사진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검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32의 문건 및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입수자료목록

연번	기록명	출처 등	입수일	비고
1	전시 기획관련 관련자 노순택, 김OO, 최OO, 오OO 이메일 17건	노순택	2017. 10. 13.	
2	뉴욕한국문화원 갤러리 평면도	노순택	2017. 10. 13.	
3	노순택 작가 출품 사진 5점	노순택	2017. 10. 13.	
4	전시제안서 ‘또 다른 한국전쟁’(2016. 1. 22.)	노순택	2017. 10. 13.	
5	전시제안서 ‘또 다른 한국전쟁’(2016. 3. 7.)	김OO	2017. 11. 5.	
6	뉴욕한국문화원 전시 취소 관련 경과 보고	뉴욕한국문화원	2017. 11. 15.	
7	2016 call for artists	뉴욕한국문화원	2017. 11. 15.	
8	전시제안서 ‘또 다른 한국전쟁’	뉴욕한국문화원	2017. 11. 15.	
9	최종전시 작품 리스트 (2015. 12.)	뉴욕한국문화원	2017. 11. 15.	
10	2014-2016 뉴욕한국문화원 ‘한국영화의 밤’ 사영 영화 목록	뉴욕한국문화원	2017. 11. 15.	
11	해명보도자료 2017. 1. 6. JTBC ‘해외 문화원에서도 블랙리스트...’	해외문화홍보원	2017. 11. 20.	
12	뉴욕 한국문화원 전시회 취소, 블랙리스트와 전혀 무관 2017. 1. 6.	문체부 정책브리핑	2017. 11. 20.	
13	해외 문화원서도 블랙리스트 외교라인도 개입 2017. 1. 5.	JTBC	2017. 11. 20.	

연번	기록명	출처 등	입수일	비고
14	뉴욕문화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제기 2017. 1. 6.	한국일보	2017. 11. 20.	
15	제35회 세종문화상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공적요약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심사위원명단, 공적심사 의결서(2016. 4. 20.) 2016. 5. 3.	문체부	2017. 12. 5.	
16	제35회 세종문화상 추천, 접수 보도자료 2015. 12. 10.	문체부	2017. 12. 5.	
17	제35회 세종문화상 수상자 선정, 발표 보도자료 2015. 5. 12.	문체부	2017. 12. 5.	
18	전시제안서 '또 다른 한국전쟁' (2015. 12.)	오OO	2017. 12. 14.	
19	최종전시 작품 리스트 (2016. 4.)	오OO	2017. 12. 14.	
20	블랙리스트 9473	한OO	2018. 1. 29.	
21	아카이브 전시 2부 기획안	이OO	2018. 2. 21.	
22	Call for Artists 2018 Guidelines	OOO	2018. 2. 33.	
23	Call for Artists 2018 지원양식	OOO	2018. 2. 33.	
24	2016 Unfamiliarity 전시기획안 2016. 10.	OOO	2018. 2. 33.	
25	뉴욕한국문화원 공모 당선 작가전 보도자료 2017. 5. 11.	OOO	2018. 2. 33.	
26	이메일 자료 4건 2016. 4. 5~9. 5. 19.	김OO	2018. 2. 28.	
27	주뉴욕 총영사관 공전 2016. 5. 3.	뉴욕한국문화원	2018. 3. 7.	
28	2017년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회의록	국회	2018. 3. 14.	
29	2018년 임OO 문화홍보관 귀임 기사	미주 한국일보	2018. 3. 14.	
3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2017. 2. 14.	국회 사무처	2018. 3. 14.	
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2017. 9. 19	국회 사무처	2018. 3. 15	
32	뉴욕한국문화원 위치 등	인터넷	2018. 3. 15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13인에 대하여 19회에 걸쳐 대인 조사를 진행 및 검토 하였다.

[표-2] 대인 조사자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노순택	신청인	진술서 (2017. 10. 13.)
2	김OO	참고인(또 다른 한국전쟁 큐레이터)	이메일 서면진술 (2017. 11. 5.)
3	김OO	위 같음	이메일 서면진술 (2017. 11. 16.)
4	오OO	뉴욕 한국문화원장	진술서 (2017. 12. 14.)
5	오OO	위 같음	진술조서 (2018. 1. 16.)
6	김OO	참고인(또 다른 한국전쟁 큐레이터)	이메일 서면진술 (2018. 1. 17.)
7	I	해외문화홍보원 사무관	진술조서 (2018. 1. 18.)
8	최OO	한불수교 기념행사 예술감독	진술조서 (2018. 1. 25)
9	OOO	해외문화홍보원 주무관	진술조서 (2018. 1. 29.)
10	노OO	뉴욕 한국문화원장 직무대리	진술조서 (2018. 2. 2.)
11	박OO	해외문화홍보원 사무관	진술조서 (2018. 2. 7.)
12	오OO	예술정책과 사무관	진술조서 (2018. 2. 7.)
13	조OO	해외문화홍보원 사무관	진술조서 (2018. 2. 16.)
14	이OO	알재단 회장	진술서 (2018. 2. 21.)
15	OOO	뉴욕 한국문화원 전시 담당자	진술서 (2018. 2. 23.)
16	노순택	신청인	전화면담 (2018. 2. 27.)
17	오OO	뉴욕한국문화원장	진술서 (2018. 2. 28.)
18	김OO	참고인(또 다른 한국전쟁 큐레이터)	이메일 서면진술 (2018. 2. 28.)
19	김OO	참고인(전 아르코 미술관 관장)	전화면담 (2018. 3. 5.)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뉴욕한국문화원

(1) 개요

뉴욕한국문화원은 460 Park Avenue 6th floor, New York, NY 10022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욕총영사관과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해외 한국문화원 27개국 31개소 중 하나이다. 문화원장은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외교관 신분을 갖고 있으며 ‘공사참사관’ 등의 직책을 부여 받고 형식상, 대사와 총영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문화원의 예산, 채용, 사업 운용 등에서 100% 전결권을 갖고 있다. 다만 매주 회의에 참석하여 총영사에게 현황을 보고를 하는 관계이다. 국정감사는 외교통일위원회(현지 공관 및 문화원 중심)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해외문화홍보원 중심) 두 곳에서 진행한다. 뉴욕 한국문화원 예산은 해외문화홍보원 1407억에 포함(2017년 기준)되며 외교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1] 명퇴·전보 등 인사조치현황 2016. 11. 04.(금)/운영지원과(인사)¹⁾

구분	현 직위	성명	인사조치대용			비고
			일자	발령사항	사유	
기타	뉴욕문화원장	오○○	15. 8.26	(제일기획 상무)→ 뉴욕문화원장	차은택 라인	
	파리문화원장	박○○	16. 1.18	(잡스 대표) → 프랑스문화원장	차은택 라인	

오○○는 2015년 8월 25일 뉴욕한국문화원장에 부임했으며 임명 과정에서 ‘역량평가’를 면제 받는 등 김종덕 장관의 지시로 이행된 뉴욕 한국문화원장 선발 제도 변경의 수혜²⁾를 받은 자로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동문이다.

1) 조윤선 장관 재직시 문체부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2) 갤러리 코리아

뉴욕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문화원 내부 전시공간으로 면적은 2000스퀘어피트(56.2평)이며 ‘Call For Artists’ 라는 공모 심사를 통해 전시 공간을 무료로 대여한다. ‘또 다른 한국전쟁’도 위 전시공간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나. 알재단

1976년 뉴욕에서 한국화랑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던 이OO가 2003년 재미한인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비영리 알재단을 설립하여 회장이 되었다. 정식 명칭은 AHL Foundation 이다.

이OO는 2016년 2월에 뉴욕한국문화원의 추천으로 제35회 세종문화상 포상 추천을 받았다. 동년 4월 20일에 선정되어 5월 3일 공식적으로 문체부에서 회람되었고 5월 12일 포상을 받았다. 포상 금액은 3천만원이다.

다.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알재단의 의뢰로 김OO 큐레이터는 ‘또 다른 한국전쟁’ 기획안을 작성하여 2015년 12월 뉴욕 한국문화원의 ‘2016 Call For Artists’ 공모 심사에 선정되었다. 즉,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는 알재단이 뉴욕한국문화원 공모에 지원하여 선정된 것이다. 2016년 4월 28일 작가들에게 취소 통보가 있었으며 전시 예정일은 2016년 6월 8일부터 7월 20일이었다.

2.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공모 선정 사실

가. 공모 선정에 관하여

(1) 2016 Call For Artists 공모전

뉴욕한국문화원이 2017년 11월 15일에 제출한 문서에서 ‘뉴욕한국문화원, ’16년 전

2) 오OO 관련 뉴욕한국문화원장 임명 등의 문제는 직특2 재외 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오OO는 제일기획 출신이며, 당시 제일기획 인맥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송성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홍탁 등이 있다.

시 및 작가 공모전(2016 Call For Artists)으로 알재단(AHL Foundation)에서 기획한 사진전 <The Other Korean War> 이 2015년 12월에 선정되었다'라고 밝혔다.

2016 Call For Artists 공모 서식³⁾ 주요 내용

- 공모마감 2015. 10. 23 제출된 자료는 2015년 11월 심사위원 검토.
- 2015년 12월까지 선정 통보. 아티스트에게 이메일로 통보.
- 갤러리 코리아는 보도 자료, 초대장(우편 엽서 및 이메일 인쇄), 리셉션 운영 및 연례 카탈로그 발간.
- 갤러리 코리아는 다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설치, 철거, 운송 등).
- 개인전과 그룹전을 구분함.

(2) 참고인 김OO(‘또 다른 한국전쟁’ 큐레이터) 서면진술 (2017. 11. 5.)

2015년 10~11월 경 알재단이 뉴욕한국문화원에서의 전시 기획(큐레이터 역할)을 요청하였고, 분단체제와 냉전을 폭넓게 다뤄보자는 취지로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를 기획(curated)하였다고 하고,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위촉한 외부 심사 결과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진술 하였다.

(3) 신청인의 전시 참여 사실

김OO가 제출한 전시 제안서⁴⁾와 뉴욕한국문화원이 제공한 ‘The Other Korean War’ Exhibition Proposal 문서⁵⁾로 신청인의 전시 참여가 확인된다.

(4) 신청인 피해사실 주장

신청인은 6월 초 예정된 전시를 위하여 5월 초에 미국에 작품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작품제작비로 300만원, 해당 기간 노동력을 400만원으로 산정하여 물질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다(신청인 진술서 2017. 10. 13.).

3) Call For Artists 2016 Applicationform, 뉴욕한국문화원, 조사기록 99~101쪽

4) 2016. 1.22자 수정 계획안으로 구분창작가가 빠지고 노재운작가가 추가 되어있다. 조사기록 68~71쪽

5) 뉴욕한국문화원 2017. 11. 15. 조사기록 102~119쪽

나. 전시 기간

신청인(진술서 2017. 10. 13.)은 1월 22일 경 전시 참여 제안을 받았을 때, 전시 기간이 6월 8일부터 7월 20일로 안내 받았다 했고, 최OO(알재단 실무자)이 OOO(뉴욕한국문화원 실무자)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6.)에서 동일한 날짜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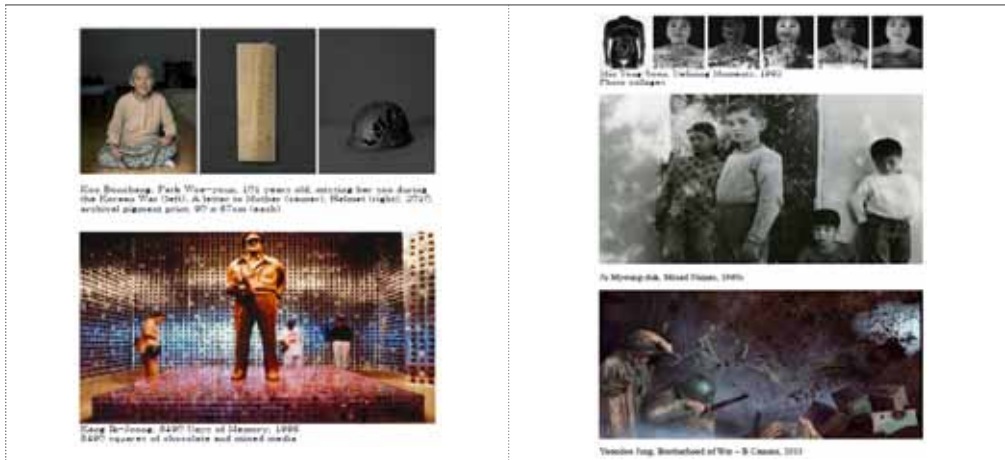
다. 전시 관련 계약서

2016 Call For Artists의 공모 선정과 관련하여 알재단과 뉴욕 한국문화원, 알재단과 김OO 큐레이터의 계약서는 존재 하지 않았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이OO(진술서 2016. 2. 23.)는 ‘전시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된 계약서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기획안 검토

가. 전시 기획안 예시 작품 변화

(1) 전시 기획안 예시 작품 (2015. 12.)



6) 리스트-'16.2. 1현재 문서(블랙리스트), '미술품해외시장 개척지원 -7명'에 등재되어 있다.

	<p>전시 제안서 작가 목록 성두경, 강운구, 주명덕, 노순택, 박찬경⁶⁾, 정연두, 구분창, 오형근, 송상희, 정은영, 강익중, 민용순 이 참여하는 계획안, 구분창, 강익중, 민용순, 주명덕, 송상희, 오형근 등 6인의 작가 작품이 첨부되어 있다.</p> <p>다수 작품이 리스트에 없기에 제안서는 최종 확정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p>
--	--

(2) 전시 기획안 예시 작품 (2016. 1. 22)

--	--	--	--

전시 제안서 작가 목록
 성두경, 강운구, 주명덕, 노순택, 박찬경, 정연두, 오형근, 노재운, 송상희, 정은영, 강익중, 민용순이 참여하는 계획안(구분창 제외, 노재운 추가).

노재운, 강익중, 민용순, 주명덕, 송상희, 오형근 등 6인의 작가 작품이 첨부되어 있다. 수정 계획안에서도 6인 작가의 기준으로 작품을 예시 하고 있다.

다수 작가들의 작품이 리스트에 없기에 제안서가 최종 확정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전시 기획안 예시작품 (2016. 3. 27.)



전시 제안서 작가 목록

주명덕, 노순택, 오형근, 송상희, 민용순 5인의 작가군으로 정리되었으며 이후 이상엽작가가 추가 된다.

민용순, 주명덕, 송상희, 오형근 4인의 기존 작품 리스트는 계속되고 있다.

4월 4일경 노순택 작가 사진 5점이 최종 확정⁷⁾된다.

(4) 전시 기획안 최종작품⁸⁾ 2016. 4. 9.

주명덕 6점, 민영순 6점, 노순택 5점, 오형근 4점, 송상희 1점, 이상엽 8점 등 30점.

기존 리스트에서 이상엽 작가가 추가 되었으며, 노순택 작가 사진이 확정되었다. 작가 구성으로 보면 6인 작가 구성은 처음 의도와 같으며, 전시 예시 작가 중에서 구분창과 김익중이 빠지고 노순택과 이상엽이 추가되었다.

나. 전시 기획안 문구 변화

(1) 전시 기획안 문구와 참여작가 수정 부분

시점	내용
(공모전 당선기획안) 2015. 12.	이 전시는 한국 전쟁(1950-1953)이 한반도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방법을 탐구합니다. 전쟁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 외에도 한국 전쟁은 남북 분단, 미군 캠프 타운, DMZ 등 한반도의 풍경을 변화 시켰습니다. 서양인에게는 한국 전쟁이 Margaret

7) 전시진행 상황 2016. 4. 4. 조사기록

8) 조사기록

시점	내용
	<p>Bourke-White와 David Douglas Duncan과 같은 유명한 포토 저널리스트를 통해 기념되었습니다. 1953년 휴전 협정을 맺은 후 전쟁은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습니다. 이 전시는 한국 전쟁이 한국과 남북의 지정학적 상상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p> <p>전시는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 전쟁의 여파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성두경>과 <강운구>, <주명덕>의 작품으로 시작됩니다. <노순택>과 <박찬경>의 작품은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 어떻게 상상되는지를 보여 주며, <정연두>, <구본창>, <오형근> 사진은 한국 전쟁이 매스 미디어와 군대 의무복무로 기억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다음 부분은 <송상희>와 <정은영>의 작품을 통해 군부대 마을에서 일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삶을 다룹니다. 또한 이번 전시는 한국 전쟁의 기억을 다루는 <강익중>과 <민용순>의 작품을 전시합니다.</p>
<p>(김OO가 노순택에게 전달한 기획안) 2016. 1. 22.</p>	<p>- 상단 동일 -</p> <p>이번 전시는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 전쟁의 여파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성두경>과 <강운구>, <주명덕>의 작품으로 시작됩니다. <노순택>과 <박찬경>의 작품들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 어떻게 상상되는지를 보여 주며, <정연두>, <오형근>의 사진은 한국 전쟁이 매스 미디어와 군대 의무복무로 기억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노재운은 한국에서 미군을 보여주는 할리우드 장르 영화를 탐구합니다. 다음 부분은 <송상희>와 <정은영>의 작품을 통해 군부대 마을에서 일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삶을 다룹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전쟁의 기억을 다루는 <강익중>과 <민용순>의 작품을 전시합니다.</p>
<p>(김OO 임의제출 기획안) 2016. 3. 27.</p>	<p>- 상단 동일 -</p> <p>이번 전시회는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 전쟁의 여파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주명덕>의 작품으로 시작됩니다. <노순택>의 작품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 어떻게 상상되었는지를 관찰하고, <오형근> 작품은 한국 전쟁이 매스 미디어와 군대 의무복무로 기억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다음 부분은 <송상희>의 작업을 통해 군대 캠프 마을에서 일한 여성의 삶을 다룬다. 이 전시는 또한 한국 전쟁의 기억을 다루는 <민용순>의 작품들을 전시합니다.</p>
<p>(최OO이 OOO에게 보낸 보도자료(안)) 2016. 4. 20.</p>	<p>- 보도자료(안)</p> <p>한국문화원과 알재단은 '또 다른 한국전쟁 (The Other Korean War)' 전시회를 6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OO박사가 기획한 것으로 한국전쟁이 전사자 추모위주로 기억되던 방식을 넘어 한국전쟁이 한반도에 끼치고 있는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사진작업들을 보여준다. <주명덕> 작가는 60년대 홀트시 고아원을 기록한 사진작업을 통해 전쟁고아를 보여주고, <오형근>은 군복무를 하고 있는 21세기 사병들의 초상사진을 통해 한국전쟁이후 휴전국가에서 의무복역을 하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여준다. <송상희>와 <민영순>은 여성의 몸으로 표상화된 전쟁의 모습을 각각 포토몽타주와 퍼포먼스 사진을 통해 다룬다. <이상엽>과 <노순택>은 한국전쟁이후 변모된 한반도의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하는데, 각각 DMZ의 풍경과 전시상황을 대비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기록사진을 통해 휴전의 현실을 드러낸다</p>

다. 김OO 큐레이터의 전시 기획 수정 이유

김OO는 뉴욕한국문화원으로부터 전시기획이 처음과 동일해야 한다는 사전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전시기획의 경우 작가와 작품 변화가 흔히 있는 것이라 문화원의 결정이

납득이 안되었다고 진술(2017. 1. 17)하였다.

박찬경 작가의 경우 전시희망 작품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작가 스스로 참여가 어렵다고 했고, 정은영, 강익중, 노재윤, 정연두 작가의 경우 불참의사를 보이거나 응답하지 않아서 제외되었으며, 성두경, 강운구 작가의 경우 기획자 의도로 후에 제외했고 후에 이상엽 작가가 추가 되었다고 진술했다(2018. 2. 27.).

라. 소결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기획안은 3차에 걸쳐 부분 수정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며 이는 작가의 교체에 따른 변화이고 전시 주제중 소주제가 일부 바뀌었으나 애초 기획안에 제시된 ‘이 전시는 한국전쟁이 한반도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방법을 탐구합니다. 전쟁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 외에도 한국전쟁은 남북분단, 미군 캠프 타운, DMZ 등 한반도의 풍경을 변화 시켰습니다.’ 라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처음 기획안에서 나타난 6인 작가에 대한 작품 예시는 꾸준히 계속 되었다.

2016 Call For Artists 공모 서식에서도 전시 기획 수정 불가 항목이 없고, 수정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없으며 관련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아 김OO 큐레이터가 전시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4. 전시 진행 및 취소 과정에 관한 이메일 검토

가. <전시 준비 과정> 신청인과 김OO(큐레이터) 관련

(1) 김OO가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2016. 2. 2.)

뉴욕한국문화원 갤러리, 전시 공간 평면도를 신청인에게 보내고, 알재단이 사례금(honorarium)으로 500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

(2) 김OO가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2016. 2. 29.)

전시를 후원하는 알재단에서 작품의 프린트 비용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3) 김OO가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2016. 3. 1.)

신청인의 작품을 5점 선정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작품의 사이즈는 130×190cm, 150×120cm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4) 김OO가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2016. 3. 25.)

알재단측에서 작가분들에게 artist fee를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과 더불어, 운송비 절감을 위해 유리 없이 작품당 30만원의 작품 제작비가 들 수 있는지 문의 했다.

(5) 김OO가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4.)

전시에 맞추어 재단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보험료 책정 관련하여 작품제작비가격으로 보험가로 정하는 문제, 작품 판매시 재단측과 5:5의 판매수익배분 의사를 전달하고, 신청인의 작품 5점을 확정 했다..

나. <전시 준비 과정> 최OO(알재단)과 OOO(뉴욕한국문화원) 관련⁹⁾**(1) OOO(뉴욕한국문화원 전시 담당)이 최OO(알재단 프로그램 감독)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4.)**

알재단과의 전시 관련하여 5-6월 뉴스레터에 들어갈 전시내용이 필요하다며 목요일(4월 6일)까지 전시내용과 대표 이미지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2) 최OO이 OOO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6.)

‘뉴욕 한국문화원은 AHL 재단이 주관하고 김OO 박사가 큐레이터 한 또 다른 한국전쟁을 소개합니다(이번 전시는 2016 콜 오브 아티스트 전시 시리즈의 일부로 진행됩니다). 6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리는 또 다른 한국 전쟁은 6명의 작가 (주명덕, 이상엽, 민영순, 노순택, 오형근, 송상희) 참여 합니다. 이 전시는 한국 전쟁 (1950-1953)이 한반도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방법을 탐구합니다. 전쟁 희생자들

9) 참조 수신인에 김OO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김OO로 부터 이메일 자료가 확보가 되었다.

과 그들의 가족 외에도 한국 전쟁은 남북 분단, 미군 캠프 타운, DMZ 등 한반도의 풍경을 변화 시켰습니다. 1953년 휴전 협정을 맺은 후 전쟁은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습니다. 이 전시는 한국전쟁으로 남북의 지정학적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 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아티스트와 대화는 6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에 개최됩니다.’ 라고 조OO의 요청에 따라 전시내용 설명안과 대표 이미지를 보냈다.

(3) 최OO이 OOO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8.)

OOO이 최OO에게 ‘아티스트 대화 장소가 어디냐’라고 묻자 ‘아티스트와의 대화는 코리아 갤러리(뉴욕한국문화원 전시공간)에서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만약, 확정되지 않았다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

(4) 최OO이 OOO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9.)

김OO가 최종적으로 큐레이트한 작품목록을 첨부 파일로 보내며, 체크 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모든 아트웍 세부정보가 수집, 완료되면 보내줄 것이라고 했다.

다. <전시 취소> 관련

(1) 최OO이 작가들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28.)

‘저희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해 부득이하게 6월달로 예정되어 있던 <또 다른 한국전쟁>의 전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도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전시 취소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전시 취소를 알렸다.

이메일을 보낸 날짜는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오전 3:34분이나 뉴욕시간으로 계산하면 뉴욕에서 2016년 4월 27일 오후 17시 34분에 보낸 것이다. 이OO(진술서 2018. 2. 21.)는 4월 27일에 작가들에게 취소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다. 진술과 이메일 시점이 일치 했다.

(2) 신청인이 최OO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28.)

‘이미 많은 과정이 진행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 하지 않고 짧은 메일 하나로

전시 취소 결정을 하는 것에 안타깝다'며 정확한 사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3) 김OO가 작가들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29.)

전시 취소 과정에 대한 내용을 작가들에게 메일로 보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뉴욕한국문화원에 2~3주 전 최종 전시 리스트를 보냈었고, 이후 총영사, 문화원장, 영사들이 전시를 다시 심사한다는 소식을 들은바 있고, 전시 취소 통보를 알재단이 받았는데, 문화원측에서 전시취소 책임은 알재단에 있다라고 했다며, 이런 메일을 보내는 것이 뉴욕에서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있는 알재단에게 누가 될 것이 두렵다는 내용과 전시 기획자로서 사과한다'는 내용이다.

(4) 최OO이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30.)

좋은 전시를 기획하고자 했던 의욕이 앞서 기획전시 시작부터 예산이 초과되어, 재단 이사회에서 더 이상 전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전시 취소 결정을 하였다.

(5) 김OO가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2016. 5. 3.)

문화원에서 검열의 문제로 전시를 취소했다는 어떤 공식적인 문서나 이메일도 없는 상황이라, 5월 4일 알재단측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6) 김OO가 작가들에게 보낸 이메일 (2016. 5. 5.)

알재단측이 전시취소 이유를 문화원측에서 전시는 최초의 기획서와 같아야 한다고 했다며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 내년으로 전시를 미루자고 했다.

(7) OOO이 알재단을 수신 참조하여 김OO에게 보낸 이메일 (2016. 5. 19.)

내부적으로는 심사때 중심이 되었던 작품들이 거의 빠져 있어 일단은 이 상태로 전시는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 알재단과 의논했고, 내년도에 다시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 했고, 작가분들과의 문제는 알재단에서 잘 해결하기로 했다.

라. 소결

전시 준비 과정(작가 섭외 및 작품 선정등)에서 김OO는 알재단 실무자 최OO과 협의하고 있었고 4월 경 부터 알재단은 뉴욕한국문화원 실무자 OOO과 협의하고 있었다. 김OO와 최OO의 이메일 과정으로 보면 전시 취소는 갑자기 취소된 것으로 보이며 OOO과 최OO의 이메일에는 전시취소 관련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5. 전시 취소 이유에 관하여

가. 전시 취소에 대한 입장과 견해

(1) 이메일에서 나타난 전시 취소 입장 부분

이메일 날짜	이름	핵심 내용
2016. 4. 28.	최OO (알재단)	어찌할 수 없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해 <부득이하게 전시 취소>를 하게 되었다고 전시 취소결정을 전달함.
2016. 4. 29.	김OO (큐레이터)	<총영사, 문화원장, 영사들이 전시를 다시 심사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었고, 알재단으로부터 설명 들었던 내용 중 <‘문화원이 전시 취소 통보를 했지만, 문화원측에서는 전시취소 책임이 알재단에 있는 것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작가들에게 전달함
2016. 4. 30.	최OO (알재단)	<재단 이사회에서 예산 초과 문제>로 더 이상 전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전시 취소 결정했다고 취소 사유를 밝힘.
2016. 5. 5.	김OO (큐레이터)	문화원측에서 전시 취소 통보 이유로, <처음 기획서와 전시가 다르다는 것>을 문제 삼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내년으로 전시를 미루자>고 했다는 알재단의 입장을 작가들에게 전함.
2016. 5. 19.	OOO (뉴욕문화원)	<심사 때 중심이 되었던 작품들이 거의 빠져 있어 일단은 이 상태로 전시를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 <알재단과 의논했고, 내년도에 다시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 했다고 밝힘.

(2)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S2596 대외비 전문(2016. 5. 3.)에 나타난 취소 사유

전문 of 핵심 내용은 첫째, ‘심사시 포함되지 않았던 다수의 작품이 북한 및 한미관계상 이슈가 될 만한 사진이 포함되었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될 것을 우려, 금년 전시를 취소하고 내년에 보완 개최하기로 알재단 대표와 협의했다’는 것. 둘째, ‘알재단 실무자가 마치 문화원이 일방적으로 전시를 취소한 것으로 잘못 통보했다’는 것. 셋째, ‘프레스리안 등 취재에 관하여 위 두 입장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라는 것 등이다.

(3) JTBC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의혹 (2017. 1. 5.)

JTBC는 미국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작품 공모 전시가 취소되었는데,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이 있으며, 김OO 뉴욕 총영사와 문화원장의 회의에서 취소 결정이 났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다.

(4) 전시취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입장 (2017. 1. 6.)

‘2016년 1월 5일 JTBC 뉴스 보도는 문화원장에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뉴욕총영사와 문화원장은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으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공모 당시와 실제 전시하려던 작품이 많이 달라진 문제점 때문에 알재단과 협의하여 2017년에 보완, 전시하기로 한 것으로, 블랙리스트나 예술가들의 사상 검증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5) 전시취소에 대한 뉴욕한국문화원 입장 (2017. 11. 15.)

‘당초 심사 시 미포함된 북한 및 한미관계의 이슈가 될만한 사진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16년 전시 취소 및 ’17년 보완 개최하기로 알재단 대표와 협의’ 한 것이고 ‘동 전시는 블랙리스트와 전혀 무관’하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외에 부정적인 이미지 부각 우려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6) 김OO 진술 (2017. 11. 15)

김OO는 4월 26일¹⁰⁾(뉴욕 시간) 알재단 이OO로부터 전시 취소에 대해 ‘문화원의 일방적인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고, ‘문화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시를 취소했지만, 이 전시의 취소는 알재단 측의 결정으로 해야 한다고 문화원측에서 요구했다’라고 하고 ‘문화원과의 관계를 생각해 재단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영사관의 관계자들의 회의에서 취소가 결정되었다’고 들었음을 진술하였다.

10) ‘김OO 박사에게 먼저 전시 소식을 알렸습니다(4/26/16).’ 이OO 진술서 2018. 2. 21.

(7) 오OO(뉴욕 한국문화원 원장) 진술

“당초 심사 시 미포함된 북한 및 한미관계의 이슈가 될만한 사진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16년 전시 취소 및 '17년 보완 개최하기로 알재단 대표와 협의한 것”이라 했으나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기획 관련하여 알재단에 취소 요청을 한 직원이 누구였냐고 질문하자 오OO는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OOO 큐레이터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진술서 2017. 12. 14).

또한 해외문화홍보원이나 국제문화과에서 전시 관련하여 연락받은 바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외교부청사 건물에서 하는 전시내용으로 미군 칼부림 난동사건 글귀가 있는 사진 등도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했다”라고 하고 “이를 국회에서 설명하여 의원들이 납득했었다¹¹⁾”고 하며, “전시 취소의 가장 큰 이유는 공모 심사시 제시 했던 내용과 실제 전시된 내용과 차이가 많았던 것”이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 1. 16.).

그리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OOO 큐레이터 보고 직후 관련해서 총영사 및 부총영사께 같이 보고 드렸고 당초 공모 심사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작품 내용이 국내외의 주한미군 주둔 및 한미 동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재단과 협의, 그 다음해에 보완개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전시 취소 관련하여 주뉴욕 총영사관 공전(S 2596: 2016년 5월 3일 접수)을 통해 외교부 및 문체부 관련부서에 임OO 문화 홍보관 기안, 문화원장 협조, 권OO 부총영사 결재, 김OO 총영사 최종 결재후 의사결정 내용이 발송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진술서 2018. 2. 27).

11) 위 진술의 신뢰성 검토를 위하여 제349회(임사회) 교문위 회의록(2017. 2. 14.), 2017년 국정감사 외통위 회의록(2017. 10. 15.)등을 확인한바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었다. 오OO의 진술은 주장일 뿐 공식 기록에 없다(조사보고 2018. 3. 14.).

[그림-2] 최종 전시 기획안 중 오승제(뉴욕한국문화원장)가 문제 삼은 노순택 작가 사진

5. The Wrong Island II #BDD0901, Pigment print, 2003, 108 x 77cm



(8) 이OO(알재단 회장) 진술서 2018. 2. 21.

“2016년 4월 25일(뉴욕 시간)OOO으로부터 전시 취소 요청을 받았고, 한국문화원의 입장에서 알재단이 추진했던 전시가 작가진과 전시작품의 면면이 확연하게 달라짐으로 인해 공모전에 응모하고 수상한 전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 그대로 전시 기회를 주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전시 취소에 관한 이유에 관해 한국문화원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고, 한국문화원이 가지는 우려 또한 납득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를 준비하며 알재단 내부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고 하며 “비영리 단체이자 소규모로 운영되어온 알재단의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이 작품 운송과 전시 준비를 위해 사용되었고, 알재단이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의 타격을 감안해야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알재단의 이사진이 우려를 표했고, 전시를 진행시키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9) 000 진술서 (2018. 2. 23.)

“전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및 진행 계획에 관한 구두 보고 과정에서 특정 사진에 대해 ‘오OO 원장이 원래 공모전 심사 과정에도 이런 작품이 있었냐’고 반문하셨던 것 같고 관련 작품이 외교공관인 문화원 전시에 적합한 것인지 총영사관 영사님들과 상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OO 원장님 포함하여 총영사관 영사님들 모두 작가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작가에 대한 검열이기 보다는 외교관 입장에서 다소 민감해 보이는 작품들이 최초 기획안에는 없었던 사실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하며 “알재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전시를 보완해서 다시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고 하였고 알재단에서도 충분히 문화원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지 전혀 몰랐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000은 “처음에는 저도 공모전 당선 전시이고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전시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의견을 문화원장에게 말 했다”라고 진술했다.

(10) I(당시 해외문화홍보원 사무관) 진술조서 (2018. 1. 18.)

전시 작품 리스트를 보고 “‘미군 칼부림...’ 글귀가 문제가 되었을 듯합니다. 문화원 공간에 전시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라고 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데 아직 홍보하지 못한 밝은 부분도 많은데 어두운 부분을 굳이 전시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 했다.

한편, 전시 취소 관련하여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알재단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했으나 ‘뉴욕한국문화원이 알재단에게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전시가 취소 되었겠는가’라는 질문에 “뉴욕한국문화원이 취소 요청을 안했다면 당연히 전시는 진행되었겠죠”라고 진술했다.

(11) 노OO(전 뉴욕 한국문화원 원장) 진술조서 (2018. 2. 2.)

전시 제안서와 최종 전시 기획안 두 종류의 사진들에 대하여 “두 부분 모두, 전시를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며 노순택 작가 사진들에 대하여 “그냥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가 못되고 하는 것은 아닐 듯 합니다.”라고 하며 ‘몇 개 작품이 문제가

있다고 전시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문화원의 보편적인 행정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못 들어 본 행정 방식입니다. 예술 작품은 관객이 스스로 해석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입니다.”라고 하며,

“전시 작품에 대해서 절차가 있고, 정해진 것이라면 전시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에 제안서를 낼 시점과 실제 전시까지는 시간적 간극이 있어서 주최측에서 작가 사진을 교체하기도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뀌기도 합니다. 계획서와 실제 전시가 일치해야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했다.

(12) 김OO 진술(독립 큐레이터) (2018. 3. 5.)

김OO은 아르코 미술관¹²⁾ 관장을 2014. 1. 27. ~ 2015. 1. 27. 까지 역임했고, 아르코 미술관 전시감독을 2015. 2. ~ 2015. 7. 까지 역임한 경험이 많은 큐레이터이다.

김OO의 기획안 수정 변화 과정과 최종 전시 리스트에 대하여 김OO은 ‘처음 기획안 자체가 러프한 형식으로 보였고,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최종안이 매우 훌륭하다라고 평할 수는 없지만, 전시를 못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 최종 전시 목록에 있는 6인의 작가는 전시에 손색이 없는 좋은 작가들이다.’라고 하며 ‘전시기획이 일부 수정되었지만 주제에 큰 변화는 없다. 이를 근거로 전시 개최에 임박하여 취소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고 ‘이런 변화로 전시가 취소되었다는 사례를 들어 본 바가 없다며, 처음 기획대로(작가, 작품) 모두 진행되어야만 전시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시 기획은 종종 수정되기도 한다’라고 진술했다.

나. 4월 28일 전시취소 이전 ‘전시 진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여부

이OO, 오OO, OOO 진술서 및 각종 이메일 자료에서 알재단이나 뉴욕한국문화원이 전시 진행과 관련하여 4월 28일 이전에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 김OO는 작가 작품 선정 관련하여 알재단에 참조 메일로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있었다.(2016. 4. 4.) 또한, 협의 내용을 작가들에게 알려주고 있다.(2016. 3. 1.), (2016. 2. 2.), (2016. 3. 25.), 알재단은 뉴욕한국문화원과 협의 하고 있었다.(2016. 4. 4~20.)

1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산하 전시지원시설인 미술회관으로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3에 위치하고 있다.

다. 공모에 당선된 전시 제안서대로 전시가 실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여부

(1) 2017년 ‘공모전 당선 작가전’(OOO 진술서 2018. 2. 23.)

OOO은 도록 제작 후 관련 서류를 폐기하여 2016년 이전 전시 제안서가 남아 있지 않다며 자료제출을 하지 못했고 2017년 ‘공모전 당선 작가전’〈In/visible: Things to Discussed〉 제안서와 보도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전시는 ‘또 다른 한국전쟁’과 같은 특정 주제에 관한 사진전이 아니었고, 6인 그룹전으로 회화와 사진, 설치 예술 작품이 전시되었다. 위 전시에서 유일한 사진작가 카이티 버루소의 작품은 공모 전시 제안서에 없는 작품이 보도 자료에 소개되었다.

(2) Shades of Time, 아카이브 전시 2부 기획안 (이OO 진술서 2016. 2. 21.)

이OO는 2014년 Queens Museum에서 열렸던 아카이브 전시 2부 기획안의 참여자 명단과 기획안을 제시하여 기획안과 최종 전시안의 일치를 입증하려 했다. 위 전시는 ‘또 다른 한국전쟁’과 같은 특정 주제에 관한 사진전이 아니었고 전시 작품 예시가 없어 어떤 작품이 소개되었는지 알 수 없다.

라. 전시회 취소 결정 과정

뉴욕한국문화원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전시 취소 결정하지 않았고, OOO의 보고를 받은 오OO가 뉴욕총영사 김OO에게 보고하고 영사들과 회의를 통해 전시 취소를 결정했다. 결정 시점은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는 진술은 없는바 4월 18일(월)부터 25일(월) 사이로 보인다(OOO 진술서 2018. 2. 23.), (오OO 진술서 2018. 2. 28).

알재단은 이사회에서 전시 취소를 결정했다는 자료와 진술은 없으며, 2016년 4월 25일 OOO의 취소 요청에 이OO가 동의를 하고 4월 26일 김OO에게 취소를 설명하고 4월 27일 작가들에게 전시 취소 이메일을 전송하였다(이OO 진술서 2016. 2. 21.).

마. 2017년 ‘또 다른 한국전쟁’ 사진전이 재추진 되었는지 여부

이OO는 2017년부터는 예산상의 이유로 주미한인작가들의 작품 소개에 주력하기로 하여 재추진 하지 않았다(이OO 진술서 2016. 2. 21.)고 하고 OOO도 알재단이 신청을

안했다고(000 진술서 2018. 2. 23.) 하였고, 두 주체 모두 재전시를 위한 노력과 흔적이 진술 및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6.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에 대하여

가. 리스트-16.2. 1현재 문서 등재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 - 262명 명단 중 '미술품해외시장 개척지원 -7명'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타 소관 확인 리스트 중 (해외홍보원)전시작가 2명 의뢰에 관하여 박OO(진술조서 2018. 2. 7.)은 2015년 12월경 한불 수교행사 제3차 공식인증 사업 때문에 오OO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하여, 신청인과 관계있는 항목은 아니었다.

미술품해외시장 개척지원 - 7명	①진리해(아트팩토리 출품 작가), ②양옥경(제이드플라워 갤러리 대표), ③강홍구(원연제이 갤러리 출품 작가), ④우찬규(학교계 갤러리 대표), ⑤이세현(학교계 갤러리 출품 작가) ⑥노순택(출품 작가), ⑦박찬경(출품 작가)	-전원제외
----------------------	--	-------

나. 9473인 블랙리스트¹³⁾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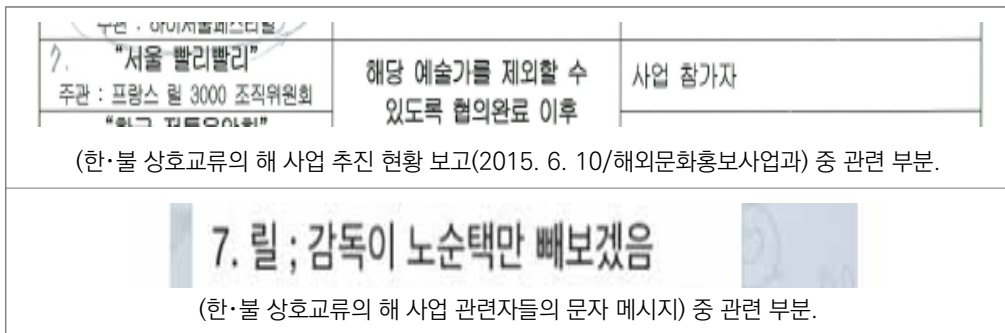
오OO은 9,473인 블랙리스트에 대하여 각 과에서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받아갔다고 했고(진술조서 2018. 2. 7.), 해외문화홍보원 조OO 사무관은 2015년 4월 말 해외문화홍보원 박OO 기획관의 지시로 위 문서를 2015년 5월 초, 오OO으로부터 전달 받아 000(해외문화홍보원 주무관)와 함께 한·불 수교 기념행사 배제 리스트로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위 문서는 2015년 5월 607일에 출력된 블랙리스트이다.

위 문서에 신청인은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13)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으로 구성.

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문서에 등재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 현황 보고(2015. 6. 10/해외문화홍보사업과)문서¹⁴⁾에서 언급된 ‘해당 예술가’는 노순택 작가이며 이는 관계자들의 문자 메시지, 진술서¹⁵⁾로 확인된다. 당시, 예술감독 최OO는 해외문화홍보원의 배제 지시를 받아 이후 수습과정에서 프랑스측을 설득하고, 아트선재 김OO 큐레이터가 신청인과 협의하여 작품을 교체하고 전시가 진행되도록 했다.



라. 문체부 영상콘텐츠과 관리리스트2 등재

신청인은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에 자료로 영상콘텐츠과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서에 등재되어 있었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5년 5월 17일 경이다.

14) 조사기록

15) 조OO, 한OO, 정OO, 최OO, 황OO

제4절 | 결론

1. 진상규명 사실

가.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하여

- 1)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오OO)은 전시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최초 심사에 미포함된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정적인 이미지 부각을 고려해 알재단과 협의하여 기획 사진전을 연기하였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 2)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뉴욕한국문화원의 공식입장과 달리 노순택 등 특정작가의 미군주제를 다룬 특정작품(The wrong IslandⅡ#BDD0901)을 문제 삼아 공모 전시회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① ‘또 다른 한국전쟁’의 경우 알재단이 전시 기획 과정에서 문제 삼은 적이 없으며 전시 기획의도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다. 또한, 초기부터 작가 중심이 아니라 주제에 맞추어 작가군을 선정했던 것이었다. 전시 제안서에서 (6가지 주제) 작품 예시로 보여주었던 6명의 작가 군 중 두명이 교체되었을 뿐 최종적으로 6명의 작가 군은 유지 되었다. 또한, 소주제 한 개가 바뀌었을 뿐이라는 점.
 - ② 알재단 측은 전시 내용 변화에 대하여 김OO와 이메일 등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고 전시 작가와 작품 변경 등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도 없었다는 점.
 - ③ 이OO, 김OO 모두 미국에서 ‘호국보훈의 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오OO는 6월이 미국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했으나 미국의 5월 마지막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2016. 5. 30.)의 착오로 보이며, 한국의 ‘호국보훈의 달’이라면 뉴욕에서의 전시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해명이 안 된다는 점.
 - ④ 알재단은 전시 취소 입장은 2016. 4. 28.(피치 못할 사정), 4. 30.(예산상의 이유), 5. 5.(기획안 변경)으로 바뀌었다. 당시 이OO는 뉴욕한국문화원의 추천으로 4. 20. 세종 문화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 또한, 알재단은 뉴욕한국문화원의 전시 공간을 종종 무료로 사용해오는 등 뉴욕한국문화원의 전시 취소 요청에 대하여 알재단이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 ⑤ 외교부청사 건물에서 하는 전시내용으로 ‘미군 칼부림 난동사건 글귀가 있는 사진’ 등도 정부적인 판단이 필요했다는 오OO의 진술이 있다는 점.

⑥ 뉴욕총영사관의 대외비 전문(S 2596 2016. 5. 3)에서 ‘심사시 포함되지 않았던 다수의 작품이 북한 및 한미관계상 이슈가 될 만한 사진이 포함되었고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동 전시를 추진할 경우 국내외에 주한민군 주둔 및 한·미 동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될 것을 우려, 금년 전시를 취소하고...’라고 기재된 점.

⑦ 2017년도에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를 보완하여 추진하라고 하였으나, 뉴욕한국문화원과 알재단은 이후 어떠한 논의와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특정 작품들’이 주요 원인이 되어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가 취소된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

나.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취소 결정 주체에 대하여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시 취소는 알재단이 아니라 뉴욕한국문화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① 000의 진술에 의하면 “오00가 000으로부터 ‘신청인의 문제작’ 등이 포함된 ‘또 다른 한국전쟁’ 최종 작품 리스트 보고를 받고, 관련 작품이 문화원 전시에 적합한 것 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뉴욕 총영사(김00) 및 부총영사(권00)에 보고”한 점.

② 보고하고 협의한 결과 ‘전시에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었다는 점.

③ 기획전 취소 관련한 뉴욕총영사관뉴욕총영사관의 대외비 전문(S 2596 2016. 5. 3)은의 최종 결재자는 김00이나, 문서를 적성했던 자는 문화홍보관 임00이며 협조자로 오00가 있다는 점.

④ 김00(뉴욕총영사)의 지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협의했다’ 라는 오00의 진술과 문화원 행정 관련하여 전결권을 오00가 갖고 있다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면 오00 뉴욕한국문화원장이 영사와 협의를 거쳐 전시회를 취소한 주체라고 인정된다.

다. 전시 취소가 블랙리스트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시취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① 신청인은 블랙리스트 문서 4건에 등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리스트-’16.2. 1현재’ 문서 등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 ②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김기춘외 6인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판결(2017노2425, 2017노2424 병합), 2018. 1. 23. 65~69면 등에서 “(김기춘 등 피고인들의 행위가)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및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 여부에 차등을 두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이러한 헌법상 원리들을 구체화한 문화기본법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타인의 명예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 다른 우월한 헌법적 가치나 법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¹⁶⁾.”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의 전시회 취소 사유가 특정 작가의 특정 작품 내용을 문제 삼고 있고, 전시 취소 사유를 삼은 ‘한미 동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부각 운운’은 노OO 뉴욕문화원장의 반대 진술이 있는바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 ③ 오OO는 결과적으로 김종덕 장관의 지시 하에 뉴욕한국문화원장 ‘역량평가 면제’ 등의 선발제도 변경의 수혜를 입어 원장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보다는 동조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진술내용을 보면 자기 확신을 갖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취소 사건은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건으로 인정된다.

라. 신청인의 피해사실

신청인은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개최가 임박한 시점에서 취소되어 뉴욕에서의 전시 준비를 위한 작품 제작 비용 등 물적인 손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①리스트-’16.2. 1현재, ②9473인 블랙리스트, ③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리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①문서를 통하여 ‘미술품해외시장 개척지원’에서 배제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며, ②문서 실행으로 ‘릴 3000’ 행사에서 작품이 검열 당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다.

16)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김기춘 외 6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판결(2017노2425, 2017노2424 병합), 2018. 1. 23. 65~ 69면, ‘문화 예술영역에서 이념적 성향, 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정부 조치의 위헌·위법성’ 기술 부분.

2. 행위 사실

가. 오OO(뉴욕 한국문화원장)

오OO는 2016년 4월 경 OOO으로부터 ‘신청인의 문제작’ 등이 포함된 ‘또 다른 한국 전쟁’ 최종 작품 리스트 보고를 받고, 신청인의 작품을 비롯한 작품이 문화원 전시에 적합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뉴욕 총영사(김OO) 및 부총영사(권OO)에 보고·협의하였다. 이후 동년 4월 25일(뉴욕 시간) ‘또 다른 한국전쟁’의 전시 취소를 OOO을 통하여 알재단 이OO에게 알렸다. 오OO는 문화원 운영에 관하여 전결권을 갖고 있음에도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외교라인을 개입시켰을 뿐 아니라 2017년 1월 5일 JTBC 보도에 대한 해명(2017. 1. 6.)에서 ‘외교부 라인의 개입은 없었다’라는 허위 보고를 하여 문체부의 공신력을 훼손하였다.

나. I (해외문화홍보원 사무관)

뉴욕총영사관의 대외비 전문(S 2596 2016. 5. 3)은 I가 해외홍보사업과 근무 시 수신 받았었음에도 JTBC 보도에 대한 해명(2017. 1. 6.)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 하였다. 오OO와의 공모가 있었는지는 확인 할 수 없으나 진술서에서 일관되게 오OO 측의 입장을 옹호한바 있다.¹⁷⁾

17) 이와 관련하여 I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의제기함(18. 11. 5.). : 만약 문화원이나 총영사관이 블랙리스트를 조직적·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면, 당초에 공모작으로 선정하지도 않았을 것임. 문체부나 해외문화홍보원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관련 블랙리스트에 있는 노순택 작가가 응모 때부터 계속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당선시키고 전시 준비를 계속 진행해 왔다는 점은, 이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안(검열에 의한 노순택 작가 또는 작품 배제)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임. 보고서 내용대로, 전시 등 문화원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 및 책임은 문화원장에게 있으나, 문화원은 직제상 재외공관에 소속된 기관으로, 운영 및 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인데,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만 특별한 외교라인 개입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지나침. 특히, 문화원 사업의 목적인 양국 간 교류 증진 및 한국문화의 우수성 홍보인데, 오히려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되면 이 부분에 대한 재외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고 생각함. 결국, 알재단은 예상과는 달리 대폭 늘어난 예산에 부담이 있었고, 문화원은 예술사상 검열 차원이 아니라 한미 관계에 부정적 이슈가 될만한 작품이 포함되었다는 외교·정무적 판단 하에 양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추후 보완 전시하기로 한 것임. 물론 문제 작품을 제외한 전시 검토 등을 통해 참여 작가들의 전시 취소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블랙리스트 관리 및 실행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조사보고서의 내용도 개연성에 대한 의혹제기일 뿐 직접적인 증거는 없음.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쟁점과 사실

블랙리스트 실행과정에서 김OO(뉴욕총영사), 권OO(뉴욕부총영사), 국정원 파견 뉴욕 총영사관 영사직원(신원불상) 개입이나 임OO(문화홍보관), I(해외문화홍보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술 및 추가 진술 확보가 필요하나 우리 위원회 활동 한계(2018년 4월 종료)와 권한 부족으로 외교부, 기재부 등의 공무원 조사 진행되지 못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90

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



90

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시3[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조사의 취지

신청인 임옥상은 2013. 11. 12.에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 <시대정신>전에서 전시작품으로 선정되어 진열된 본인의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며 국립현대미술관측이 전시 중 작품전시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정당하게 출품하여 전시한 예술작품을 정치적이고 부당한 이유로 전시가 취소된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취지로 2017. 10. 27. 우리 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위원회의 조사결과 첫째,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전시기획자 정OO과 계약 당시 첨부한 「과업지시서」를 통해 '작품 교체 권한'이 정OO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작품 교체 시기'는 정OO과 이OO 등의 진술에 의하면 개막식 직전 정OO의

지시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작품 교체 이유’는 정OO이 옆 작품과의 ‘크기와 색의 조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작품 교체와 관련한 외압 등의 정황’에 대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및 전시기획자 누구에게서도 이를 의심할 정도의 진술이나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2) 신청인의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본인의 작품이 교체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① ‘교체 외압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준 사람이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었던 OOO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OOO의 조사 거부로 인해 OOO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 ② 신청인은 정OO이 처음에는 ‘외압에 의한 작품 교체’를 인정하고 나중에 이를 부정하였다고 하고, 이 사실을 증명할 정OO과의 통화 중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를 조사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OO은 ‘외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 ③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 A,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서OO 등 사전 점검을 위해 미술관을 방문했다는 정부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외압 사실’을 부정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 또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④ 전시기획자였던 정OO은 만약 ‘민중 미술 작품’에 대한 청와대 측의 사전 검열이 있었다면 민정기와 김재홍 등의 민중 미술 계열 작품들이 <시대정신>전에 걸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정기와 김재홍 등은 민미협 회원이고, 특히 민정기는 국정원 블랙리스트 등재자임이 확인되었다.

붙임 : [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사건번호 2017시3[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

[신청인] 임옥상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임옥상은 2013.11.12.에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 <시대정신>전에서 전시작품으로 선정되어 진열된 본인의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며 국립현대미술관측이 전시 중 작품전시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정당하게 출품하여 전시한 예술작품을 정치적이고 부당한 이유로 전시가 취소된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취지로 2017.10.27. 우리 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 근거

본 사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제1호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 제16차 전원위원회(2017.11.24.)에서 조사개시 결정되었다(의안번호 17-079).

나. 조사 목적

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규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시대정신>전 당시 임옥상의 작품 교체 경위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서울관 개관전인 <시대정신>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작품을 교체한 경위를 조사함으로써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청와대의 작품 제외 외압 여부

신청인의 주장 및 당시 언론 보도대로 신청인 작품의 교체가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2절 | 조사 방법

1. 자료 조사

자료 조사는 주로 국립현대미술관 문서를 중심으로 문체부 감사관실 등의 문서를 참조하였다. 미술품과 관련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자료 조사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1] 자료 조사 주요 목록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생산일	비고
1	2012년 1,2분기 전시 기획회의 경과 및 결과보고	국립현대미술관	2012.5.30.	
2	서울관 소장품 특별전 전시 기획 제안 업무 보고	"	2013.5.21.	
3	서울관소장품전_경과보고	"	"	위 문서의 첨부
4	서울관소장품전_제안서	"	"	"
5	서울관소장품전_선정작품(안)	"	"	"
6	서울관소장품전_과업지시서(안)	"	"	"
7	자이트가이스트_개최계획안	"	2013.9.16.	위 문서의 첨부
8	자이트가이스트_개최계획 작품목록	"	"	"
9	자이트가이스트 소개	"		홈페이지 자료
10	국립현대미술관 11월 16일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보도 해명	"	2013.11.16.	보도자료
1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과 관련 문제점 지적에 대한 입장	"	2013.12.3.	"
12	2014년도 국립현대미술관 종합감사 자료	문체부 감사관실	2014.	
13	140410 국립현대미술관 처분요구서(최종)	"	2014.4.10.	
14	신청인 임옥상 제출 메모	신청인	2013.11.15.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생산일	비고
15	국정2-1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 붙임16,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국가정보원	2017.10.31. 입수	

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2] 참고인 조사 목록

연번	성명	관련 사항	조사 내용
1	임옥상	신청인	면담조사(녹취, 2013.3.5.)
2	정OO	〈시대정신〉전 전시기획자	면담조사(녹취, 2018.3.31.)
3	OOO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전시 담당자	서면조사(답변, 2018.3.22.)
4	최OO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면담조사(녹취, 2018.3.13.)
5	윤OO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전화조사(2018.3.26.)
6	박OO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설치 담당자	전화조사(2018.3.27.)
7	OOO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전화조사(2018.4.2.)
8	OOO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전화조사(2018.3.6.)
9	A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	서면조사(답변, 2018.3.23.)
10	서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전화조사(2018.3.9.)

제3절 | 조사 결과

1. 사건 개요

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 〈시대정신〉전' 개요¹⁾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내 미술계의 숙원이던 2013.11.12. 서울관 개관을 기념하여 준비한 이 전시의 정식 명칭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 〈시대정신〉전'이다. 전시 기

1)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mmca.go.kr/exhibitions/exhibitionsDetail.do?menuId=1010000000&exhId=201304030002910>(접속일시_2018.3.29.)

간은 2013.11.12. ~ 2014.4.27.으로, 전시기획자 정OO은 전시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한국현대미술의 면모와 방향성을 ‘사적(史的)’으로 접근하였고, 둘째, 미술과 사회에 대한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국제적 위상을 전제로 한 ‘과거보기’를 시도했으며, 셋째, ‘시대정신’의 ‘정체성(identity)’이 뚜렷한 작품들을 선정했다. 1980년대 초반, 독일의 신표현주의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와 미국 등 일련의 형상적·서사적 회화 작품들의 국제적 전시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라 지칭되었고, 이 명칭을 미술사적으로 차용하였다.

〈시대정신〉전은 서울관 개관특별전 총 5개 전시 중의 하나였으며, 이 전시에 사용된 작품들은 대부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거나 참여한 국내 작가의 작품들로서 총 38명의 작품 62점(대여 30점)이 전시되었다. 전체 전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특별전 전시 일람

전시명	전시 설명
자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 (Zeitgeist Korea)	-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미술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각 시대정신을 주제별로 나누어 ‘개념적(conceptual)·가상적(virtual)·물질적(material)’의 세 가지 핵심어로 구분하는 소장품 전시
연결_전개(Connecting_Unfolding)	- 각국의 우수한 큐레이터 7명이 각각 1명의 작가를 선정하고, 이들이 속한 고유한 문화의 특징과 동시대 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연결하고 전개
알레프 프로젝트 (The Aleph Project)	- ‘융합’을 주제로, 과학적 개념인 ‘복잡성 네트워크’, 현대 미술의 핵심어인 ‘관계성’, 현대 철학의 ‘리좀(rhizome)’ 개념을 바탕으로 미술과 과학의 접점에서 탐색
현장제작 설치 프로젝트(Site-specific Art Project)	- 서울관 개관에 맞춰 공간 특성이 반영된 작품을 제작·설치하는 프로젝트, 3명의 작가가 각자의 방법과 재료들(비디오 영상, 기계, 옷감 등)로 작품 제작
미술관의 탄생: 건립기록전	- 사진, 영상, 음향 등의 다양한 시청각적 매체로 서울관의 건립 과정을 담아낸 전시

나. 신청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 사건 개요

본 사건의 개요를 신청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건 개요

날짜 (2013)	내용	비고
11.7.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000, 임옥상 방문(소장품 아카이브 관련) - 000이 누군가에게 전화 받은 후,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섯 명 작가의 작품을 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작품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라고 언급	청와대 외압 사실 최초 인지 - 신청인 주장
	〈시대정신〉전 개막식	
11.12.	임옥상, 개막식 참석하여 본인 작품이 전시되지 않은 사실 확인 - 현장의 학예직 직원들,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 “할 말이 많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등의 표현 - 정OO 볼 수 없었고, 전화기 꺼져 있었음 - 정형민 관장과 마주쳤으나 모르는 척 함	신청인 주장
11.13.	임옥상, 오후 1시경 정OO과 통화 - 정OO이 “외압에 의해 전시 못한 작품은 두 점이며, 하나는 임옥상 선생 것이고, 하나는 이강우 작가의 사진 작품. 나머지는 통상적 큐레이터 작업으로 전시 진열과정 중에 날다 뺏다 했던 것”이라 했다고 주장	정OO이 외압 인정했다는 신청인 주장
	한겨레, 단독 보도 ²⁾ - 〈임옥상은 “믿을 만한 미술계 지인으로부터 개관전 직전 청와대 직원 여럿이 전시장을 돌아보고 내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 등 몇몇 작품에 대하여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실제 전시에서 내 작품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전시 기획자인 정OO 서울대 교수에게 12일 확인해보니 ‘솔직히 임 선배 작품과 이강우 작가 작품 두 점이 외압에 의해 빠졌다’라고 말했다.〉	신청인 주장 인용 보도
11.15.경	임옥상, 정OO, 정형민 3인 회동(가회동 카페) - 정OO, “외압 사실 언급한 적 없었다”고 임옥상에게 설명 - 신청인은 이를 두고 ‘정OO의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신청인 조사서)	정OO 주장
11.16.	국립현대미술관, 한겨레와 경향신문 보도 내용에 반박하는 보도자료 배포 -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시정 요구	

2) 〈(단독)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 직전 청와대 ‘일부 작품 제외’ 외압 의혹〉, 한겨레, 2013. 11.15.자. - 이 기사는 11.15. 최초 보도, 11.16. 수정되었음.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11365 (접속일시_2018.3.29.)

다. 신청인 임옥상과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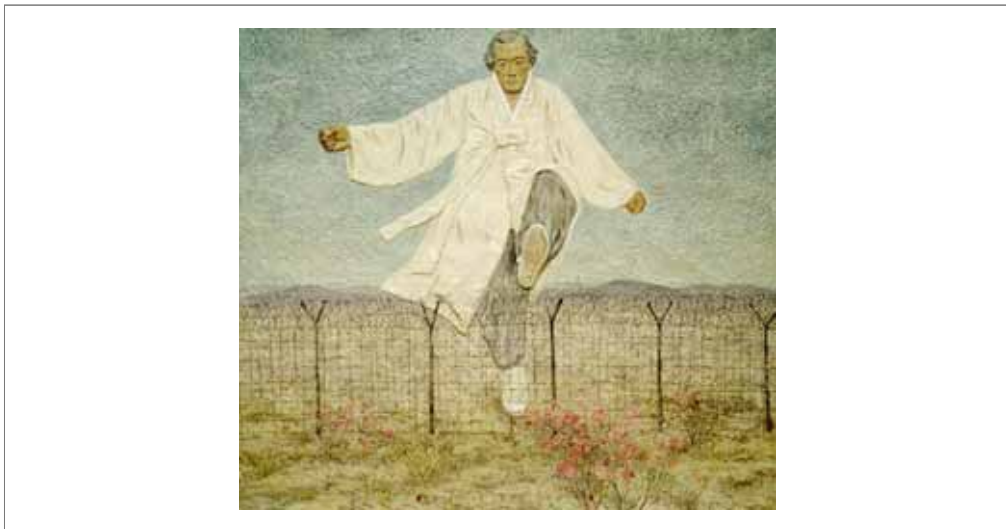
임옥상은 다음 [그림-1]과 같이 ‘1993년도 민족미술협의회 대표’로 국정원 블랙리스트3)에 등재되어 B등급 요주의 인물로 취급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림-1] 「국정원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67	미술	이석영	21세기청년작가회 회원	C
68	미술	이철수	민예총 부회장	B
69	미술	임옥상	93년 민족미술협의회 대표	B
70	미술	임정희	문화연대 공동대표	A
71	미술	정인숙	민예총 상임이사,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C

아래 [그림-2]가 ‘하나됨을 위하여’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종이부조에 채색 기법으로 1991년에 제작되었다. 2013.9.16. 국립현대미술관 담당자가 「〈시대정신〉 전 개최 계획」을 내부 보고할 때에도 작품 선정 목록에 올라있었음이 확인되었다.⁴⁾

[그림-2] 임옥상 <하나됨을 위하여>(크기 235×266×3cm)



3) 「국정2-1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 붙임16,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2017.10.31.)

4) 「서울관 개관특별전 《자이트 가이스트·시대정신》전 개최계획(안)」, 국립현대미술관, 2013.9.16.

2. <시대정신>전 당시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 교체 경위

가. <시대정신>전 준비 경과

국립현대미술관 측의 <시대정신>전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시대정신>전 준비 경과

날짜	세부 내용	비고
2012.4.2.	제1차 전시기획회의, 서울관 전시 계획 논의 시작	
2012.5.18.	2013년 서울관 개관 전시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시대정신>전을 준비	
2012.12.13.	전시외부기획자, 전시제안서 제출	정OO 교수
2013.5.21.	서울관 소장품 특별전 전시 기획 제안 업무 보고 - 서울관소장품전 경과보고 - 서울관소장품전 제안서 - 서울관소장품전 선정작품(안) - 서울관소장품전 과업지시서(안) 전시외부기획자와 계약(정OO)	학예연구 1팀 - 선정 작품(안) 목록에 임옥상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 포함됨 - 보고자: 학예연구사 OOO
2013.9.16.	<시대정신>전 개최계획안 보고	작품 목록 변동 없음
2013.11.11.	서울관 개관전 홍보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2013.11.12.	개막식	

그리고 당시 <시대정신>전 관계자는 최OO 학예연구실장이 <시대정신>전을 포함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의 총 책임자였고, 동 전시에 배치된 인원은 외부 기획자인 정OO 교수 이외에 학예연구실 주 결재라인에 OOO 학예연구사와 강OO 학예연구관, 최OO 실장이 포함되었고, 전시 절차와 실무에 따라서 당시 전시 디자이너, 혹은 다른 행정직 (예산 등)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며, 당시에 전시 실무를 보조한 인턴 1명도 전시 진행을 함께 도왔다고 한다.⁵⁾

5) 「이OO 답변서」, 2018.3.22. 이OO은 현재 미국 유학 중이어서 질의서를 통해 조사하였다.

나.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 교체 경위

1) 작품 교체 권한 소재

〈시대정신〉전의 작품 교체 권한이 전시기획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전시기획자 정OO과 계약 당시 첨부한 「과업지시서」에 나타나 있다. 아래 [표-6]에서 작품 선정 및 설치의 감독 권한이 전시기획자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소장품 특별전” 전시 기획 사업 과업지시서」

제1장 일반 사항

1. 과업명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소장품 특별전” 전시 기획 사업

2. 목 적

본 과업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소장품 특별전_자이트 가이스트·시대정신》』의 기획,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발 주 자 : 국립현대미술관(이하‘갑’이라 칭한다)

수 급 자 : 정 OO(이하‘을’이라 칭한다)

4. 과업범위 및 내용

서울관 소장품 특별전: 전시기획 및 작품선정, 전시기획 및 작품설명글, 전시 디자인을 위한 작업

가. 과업 범위

“을”이 제출하고 “갑”이 선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해 확정된 기획안의 제작, 설치과정 등을 거쳐 완성된 설치물, 연구, 기록물 등 모든 창작물을 말한다.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과업 내용

1. 기획자 명 : 정OO

2. 프로젝트명 : 《자이트 가이스트·시대정신》

3. 설치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제 1, 2 전시실

4. 면 적 : 345 m², 660.87 m²

5. 과업 내용

① 기획제반	- 전시 주제 및 기획안 작성 - 작가 및 작품 선정: 작품 선별·섭외
② 기획실무	- 전시 구성: 기획안에 따른 디스플레이 안 구성 - 실무 글 작성 및 감수: 홍보 글 전체 등 - 전시기획에 수반되는 교육, 홍보, 디자인 등의 회의 참석
③ 전시연구	- 전시 글 작성: 전시기획 설명, 작가·작품 설명 글 작성
④ 전시도록	- 기획: 도록 내용 기획 - 구성: 목차, 저자 선정 및 섭외
⑤ 부대행사	- 학술행사 등 부대행사 기획: 구성, 강연자 선정 등 - 교육 프로그램
⑥ 기타	-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시 관련 사항

5. 프로젝트 수행 일정

본 ‘프로젝트’사업의 수행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과 동시에 양 당사자는 일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1. 프로젝트 기획안 제출	전시 오픈 전 제출
2. 프로젝트 제작·설치 및 완료	전시 오픈 전 완료
3. 관련 자료 제출	프로젝트 제작 완료 후 7일 이내

6. 7. (생략)

8. 보안

“을”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갑”의 승낙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 기본방향

- 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방향에 맞는 조사 분석 후 전시 진행
 - 나. 전문가 연구 영역에 맞는 작품 선정 및 관련 연구 성과 발표
 - 다. 작품의 다양성 및 전시의 특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및 설치 감독
- (이하 생략)

2) 작품 교체 경위

〈시대정신〉전 전시기획자와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은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 교체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전시기획자 정OO의 진술

정OO은 임옥상의 작품을 교체한 이유로 먼저 이 전시가 작가에게 출품을 부탁하는 ‘기획 전시’가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전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했으며, 둘째, ‘서울관’의 전시 공간이 매우 커서 대작 위주로 설치하고자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출구 쪽 끝자락에 박생광의 작품 〈전봉준〉을 설치하고 처음에는 임옥상의 작품을 그 옆에 설치했는데, 두 작품의 ‘크기와 색의 조화’ 등을 고려했을 때 오원배의 〈무제〉가 더 어울린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⁶⁾

“제가 마지막에 박생광의 「전봉준」이 그림이 엄청 커요. 그런데 거기다가 임 선생님 그림…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 자리가. 임 선생님 그림을 여기에 딱 걸어놨더니 이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색깔도 알록달록 튀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놓으니까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 이게 박종철 고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물 양동이도 상징적으로 그려넣은 거라서. 뭐 자이트(Zeit)가 있으니 주제도 좋고 임옥상보다 훨씬 이거하고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바꿔라.’ 그렇게 된 거지.”

정OO이 말한 오원배의 작품 〈무제〉는 크기가 ‘225×680cm’로 〈하나됨을 위하여〉(235×266cm) 보다 훨씬 길다. 이 작품이 박생광의 〈전봉준〉(360×510cm)과 어울린다고 전시기획자가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두 작품의 전시 사진은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시대정신〉전 당시 박생광(왼쪽)과 오원배(오른쪽)의 작품 사진⁷⁾



6) 정OO 녹취록, 2018.3.31., 9~10쪽.

7) 「자이트가이스트전 결과보고서」, 국립현대미술관, 2014.9.5.

나) <시대정신> 전시담당자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000의 답변

000은 언론에 의해 ‘청와대의 압력으로 임옥상 작가 등의 작품이 행사 직전 교체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그런 압력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⁸⁾

“당시 정00 교수와 임옥상 작가 간에 연락이 있었고, 그에 관련하여 말이 오간 것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구체적인 외압에 관해서는 따로 직접적으로 지시 받은 바는 없습니다. 특히 외부기획자인 점을 존중하여, 작품의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정00 교수의 의견을 존중하였으며, 당시 정형민 관장과 정00 교수 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현장에서 여러 날에 걸쳐 디스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장에서 정형민 관장과 정00 교수 외의 다른 사람에게 작품 디스플레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지시 받은 바는 전혀 없습니다.”

다) 서울관 개관전 작품 설치 담당자 박00의 진술

박00(행정직)는 서울관 개관전 당시 <시대정신>전을 포함하여 여러 전시관의 설치 작품 확인 및 점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작품 설치는 외부 계약직이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임옥상의 작품에 대해서는 어느 날 보니 작품이 교체되어 있어서 당시 <시대정신전> 담당자인 이00에게 “작품이 바뀌었네?”라고 말한 기억이 있으며, 현장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청와대에서 왔었는지도 모르고, (외압에 의한 작품 교체라든지)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말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⁹⁾

라)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최00의 진술

최00는 작품 교체는 전시기획자의 전시 권한에 속하고, 개막식 전에 디스플레이 과정이 작가에게 전달되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¹⁰⁾

“전시기획자는 자기가 작품을 선택하고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완전 자율적인 권한이에요. 그 당시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 7,000점이 이미 넘어갔

8) 「000 답변서」, 2018.3.22.

9) 「조사보고」, 2018.3.27. ‘박00 전화조사 진술 요지(2018.3.22.)’

10) 최00 녹취록, 2018.3.13. 19쪽.

거든요. 그중에 이 전시회는 60~70점 작품이 골라져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7,000점에서 60~70점이면 1%가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작가가 자기 작품이 걸려 졌다가 내려진 것을 항의를 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거는 전시 권한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전시 개막 전이잖아요. 디스플레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디스플레이 과정이 작가한테 전달됐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OO에 따르면, <시대정신>전과 관련해서 2014년에 문체부 감사관실이 국립현대미술관 감사를 했는데, 감사 과정에서 전시관 내 CCTV 기록을 검토하였고, 여기에 임옥상의 작품뿐만 아니라 수십 점의 작품이 올려지고 내려지는 과정이 담겨있었다고 한다.¹¹⁾ 국립현대미술관의 규정에 따른 CCTV 영상정보의 보존기간은 90일이다.¹²⁾

다. 소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는 먼저 ‘작품 교체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전시기획자 정OO과 계약 당시 첨부한 「과업지시서」를 통해 ‘작품 교체 권한’이 정OO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작품 교체 시기’는 정OO과 이OO 등의 진술에 의하면 개막식 직전 정OO의 지시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작품 교체 이유’는 정OO이 옆 작품과의 ‘크기와 색의 조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작품 교체와 관련한 외압 등의 정황’에 대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및 전시기획자 누구에게서도 이를 의심할 정도의 진술이나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 청와대의 작품 교체 외압 여부

가. ‘청와대 외압’ 주장 및 언론 보도 경위

신청인에 따르면, ‘청와대가 작품 교체를 지시’한 것을 신청인에게 알려준 사람은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인 OOO이었다. OOO이 누군가에게 전화 받은 후,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섯 명 작가의 작품을 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작품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표-4] 사건 개요 참조). 따라서 신청인은 본인의 작품이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여겼으나, 개막식에 가보니 작품이 보

11) 위 녹취록, 2018. 3. 13.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국립현대미술관 종합감사」

이지 않아서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교체가 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¹³⁾

신청인이 제출한 2013.11.15.자 메모에는 개막식 당시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¹⁴⁾

미술관에 정OO은 보이지 않았고 끝내 전화도 통화되지 않았다. 강OO 큐레이터는 강한 제스처로 내 앞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은 많으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면서 자리를 떴다. OOO은 “참 어이없죠! 일이 이렇습니다.” 전시 중 마주친 정형민 관장은 태연했고 나도 아무 일 없는 듯 만났다. 정형민은 내가 아무런 내막도 모르는 것으로 알았고 나도 모르는 척 했다(2013.11.15.자 메모).

그런데 개막식에서 정OO을 만나지 못한 신청인은 다음 날 오후에야 정OO과 통화가 되었고, 정OO의 아래와 같은 발언을 통화 중 녹음하였다고 한다.

13일에도 나는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꺼졌다고 멘트만 나왔다. 그와 전화 통화한 것은 오후 한 시 이후다. “외압에 의해 전시 못한 작품은 두 점입니다. 하나는 임옥상 선생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강우 작가의 사진 작품입니다. 나머지는 통상적 큐레이터 작업으로 전시 진열과정 중에 넣었다, 빼었다 했던 것입니다.”(위와 같은 메모)

그리고 신청인은 이 사건을 ‘공적인 일’이라고 판단해서 <한겨레 신문>에 제보하였으며 이는 곧 기사화가 되었다. 여러 언론 보도가 있는 후 국립현대미술관 정형민 관장이 ‘외압이 절대 아니니 기사를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녹음 증거’가 있었던 신청인은 “아니, 그건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 그러면 고발하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증거도 있다.”라고 대응했다고 진술하였다.¹⁵⁾

“통화 중 녹음을 해서 녹음을 제가 받아냈거든요. 이 말을 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왜냐면 또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럴 수도 있잖아. 다시 확인을 하고 아무리 봐도 분명히 정확하게 멘트를 했거든요. 정OO이.”

그러나 위원회가 사실 확인을 위해 위 녹음 내용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의 공개거부 의사를 밝혀 정확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13) 임옥상 녹취록, 2018.3.5. 2 ~ 4쪽.

14) 신청인 임옥상 제출 자료, 2013.11.15.자 메모

15) 임옥상 녹취록, 2018.3.5. 5 ~ 8쪽.

나. 핵심 참고인 000의 조사 거부

한편 신청인에게 ‘청와대의 교체 외압 사실’을 알려준 000은 위 사실에 대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진술 및 면담을 거부하였다.¹⁶⁾ 다만 위원회는 000이 2013.11.7.에 신청인의 자택인 평창동으로 공무 목적 출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표-7]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000 출장 내역

소속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시간	출장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1실	학예연구사	000	소장품 이력조사 (임옥상)	2013.11.7(1일)	09:00~14:00 (05:00)	평창동

다. 청와대와 문체부의 사전 점검 경위

1) A의 답변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A은 ‘청와대 외압 사실’ 관련 질의에 대하여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사전 점검을 하기는 했지만, 사전 검열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¹⁷⁾

- 서울관 개관전 관련 사전 점검에 대해(현장점검 일자, 경호실, 의전실 소속 직원 등)
 - 두세 차례 사전 점검을 나갔던 것으로 기억. 통상적으로 대통령 행사를 위한 사전 점검은 의전비서관실과 경호실 주도로 이루어지며, 행사장 내 체류시간과 이동 동선 등을 점검함. 당시에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및 경호관 몇 명이 같이 갔었는데, 정확한 이름들은 기억나지 않음. 그리고 사전 방문 중 한 번은 모철민 교문수석과 김소영 비서관을 수행하고 간 적이 있음. 이 역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음
- 점검 현장에서 만난 문체부 직원이나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에 대해
 - 의전비서관실 및 경호실 관계자들과의 사전 점검 시 문체부 직원이 참석했는지의 여부는 기억나지 않음.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학예관(혹은 학예사) 한 두 명이 현장 안내를 위해 나와 있어서 만난 적은 있음

16) 「조사보고」, 2018.3.27. ‘000 전화조사 진술 요지(2018.3.6.)’

17) A 답변서, 2018.3.23.

3. '청와대의 압력으로 임옥상 씨 등의 작품이 행사 직전 교체되었다'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된 부분에 대해
 - 전시 작품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음. 전시 관련하여 정OO 교수와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도 없음

4. <시대정신>전의 '사전검열' 논란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로 미술계 인사들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청와대 대응에 대해
 - 관련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음.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시와 관련하여 문체부서관실 쪽에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기에, 당시에도 도대체 왜 이런 오해가 있었을까 하여 의아해했던 기억이 있음. 그래서 당시 상급자인 김소영 비서관에게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음

2) 문체부 관계자 진술

당시 주무부서인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서OO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라서 '수차례 현장점검을 나가긴 했지만, 작품 교체 등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나 요구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같은 과 직원이었던 사무관 이OO, 주무관 OOO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⁸⁾

라. <시대정신>전 주최 측의 주장

1) 국립현대미술관 측의 주장

가) 기획운영단장 윤OO의 주장

윤OO은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직 고위공무원으로서 서울관 개관 준비 상황을 준비해 왔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사전 점검과 관련하여, '문체부 직원들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라서 엄청 신경을 썼고, 한 달 전부터 현장 점검을 위해 수시로 방문했으며, 개관 직전 발생한 전시관 화재사건 등으로 인해 더욱 신경을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청와대 선임행정관 A과 관련해서 'A은 문체부 후배이기도 해서 만약 사전 검열 같은 문제가 있었으면, 사전에 본인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했을 것이지

18) 「조사보고」, 2018.3.27. 서OO 전화 조사 진술 요지(2018.3.9.)

만,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다.’고 기억하였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이 그 이전에도 진보적 전시를 한 적이 많았지만,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당시 정형민 관장은 프라이드가 강했던 사람으로 사전 검열 같은 문제가 불거졌으면 절대 용납이 안 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¹⁹⁾

나) 학예직 000의 주장

사건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직이었고, 개막식 당일 신청인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였다는 000은 개막식 당일 “임옥상 작가를 만났지만, ‘죄송하다’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은 없고, ‘내 그림 어디 갔어’ 하며 화를 내시길래, ‘죄송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하였다. 당시 본인은 서울관 개막전 뿐만 아니라, 과천관과 덕수궁관의 전시를 함께 준비하여 매우 바빴고, 서울관에서 ‘작품 교체’가 이루어진 부분은 보고를 받는 위치도 아니어서, “표현하자면 ‘그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게 맞다.”고 진술하였다.²⁰⁾

2) 전시기획자 정00의 주장²¹⁾

정00에 따르면, 언론 보도가 나가기 직전인 2013.11.15.경(추정) 정형민 관장과 함께 신청인을 가회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신청인이 ‘검열이 있었다는 게 사실인지’를 물었고, 본인은 “그런 얘기 없었다.”고 여러 번 신청인에게 얘기했으며, 신청인이 “언론에 발표 하겠다.”라고 하길래 “저는 아니니까 원하는 대로 하시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작품 교체와 관련하여, 위 ‘작품 교체 경위’에 기술된 내용 외에, 만약 민중 미술 계열의 작품에 대한 사전 검열이 있었다면, 다른 민중 미술 계열의 작품이 전시에 걸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민정기와 김재홍의 작품을 민중 미술 계열의 전시 작품 사례로 언급하였다.

이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대정신>전에서 민정기의 작품은 <영화를 보고 만족하는 K씨>와 <포옹>, 김재홍의 작품은 <아버지-장막1>로 확인되었다. 민정기의 <영화를 보고 만족하는 K씨>는 ‘현대 사회에서 감시당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그 사실조차 깨닫

19) 「조사보고」, 2018.3.27. 윤00 전화 조사 진술 요지(2018.3.26.)

20) 「조사보고」, 2018.3.27. 000 전화 조사 진술 요지(2018.4.2.)

21) 정00 녹취록, 2018.3.31.

지 못한 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해석되며, 〈포옹〉은 '휴전선 철책을 뚫고 대동강 부벽루를 연상시키는 강변에서 남녀가 포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작품이다. 김재홍의 〈아버지-장막1〉은 6·25 전쟁의 아픔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그림-4] 민정기, 〈영화를 보고 만족하는 K씨〉(위, 130×162×(2)cm, 1981년),
〈포옹〉(아래, 112×145.5cm, 1981년)



[그림-5] 김재홍, <아버지-장막1>(162×331cm, 2004년)



그리고 민정기와 김재홍은 모두 신청인처럼 국정원이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 단체’로 등재한 ‘민족미술인 협회(이하 민미협)’의 회원이다. 또한 민정기는 위 민미협의 회원이자 아래 [그림-6]과 같이 국정원의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²²⁾

[그림-6] 「국정2-1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 붙임16,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연번	분야	성명	특이사항	등급
56	미술	김홍모	06.12 실천연대 산하 그림공장 단원	A
57	미술	낸시랭	12.12 개인전 ‘내정간섭’展	C
58	미술	민정기	10.10 「노나메기재단」 설립 추진위원	C
59	미술	박재동	10.6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준비위원장	C
60	미술	박진화	민족미술인협회 회장	B

22) 「국정2-1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 붙임16,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2017.10.31.)

마. 소결

신청인의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본인의 작품이 교체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체 외압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준 사람이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었던 000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000의 조사 거부로 인해 000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신청인은 정00이 처음에는 ‘외압에 의한 작품 교체’를 인정하고 나중에 이를 부정하였다고 하고, 이 사실을 증명할 정00과의 통화 중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를 조사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00은 ‘외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 A,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서00 등 사전 점검을 위해 미술관을 방문했다는 정부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외압 사실’을 부정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 또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전시기획자였던 정00은 만약 ‘민중 미술 작품’에 대한 청와대 측의 사전 검열이 있었다면 민정기와 김재홍 등의 민중 미술 계열 작품들이 <시대정신>전에 걸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정기와 김재홍 등은 민미협 회원이고, 특히 민정기는 국정원 블랙리스트 등재자임이 확인되었다.

4.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실 선임행정관 A은 여러 차례의 사전 방문 중 한 번은 모철민 교문수석과 김소영 비서관을 수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외압 사실’ 관련 질의에 대하여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의전비서관실 및 경호실과 함께 행사장 내 체류시간과 이동동선 등을 점검하기는 했지만, 사전 검열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원회 조사 권한의 한계, 조사활동 기간의 부족, 일부 참고인의 조사 비협조 등으로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본인의 작품이 교체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제4절 | 결론

본 사건은 2013.11.1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 중의 하나인 <시대정신>전에서 신청인의 작품이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교체'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사건이다.

<시대정신>전을 전후한 2013년 가을은 소위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감시와 배제가 강화되고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연극 <개구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은 2013.9.9. 실수비에서 '종북, 친북 세력'을 적절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그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기조를 반영하여 동년 9.9. 문체부는 조현재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출범시키고 '문화예술계 내 좌편향 작품·행사·사업 등을 사전 스크린하고 보수지향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대응책을 논의'하였음이 최근 밝혀지기도 했다.²³⁾

또한 이 전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였으므로, 교문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와 문체부가 한 달 전부터 수시로 사전 점검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등재자인 신청인의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는 문익환 목사가 휴전선 철조망을 넘는 모습으로 이미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작품이라서 청와대와 문체부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신청인이 자신의 작품이 전시 예정이었다가 교체된 상황에 대하여 문의하자 '사전 검열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 일관된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대정신>전에서 신청인의 작품이 교체된 것은 블랙리스트 적용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의 신청인 진술과 제출 메모 등을 기초로 하여 당시 국립현대미술관과 청와대 및 문체부 관계자, 그리고 당시 <시대정신>전 전시기획자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청와대와 문체부 및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그리고 당시 <시대정신>전 전시기획자 등은 일관되게 '외압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할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둘째, <시대정신>전에서 신청인 외에도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다른 작가의 민중 미술 계열 작품들이 전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작품과 다르게 신청인

23) 「문체부, 左派 견제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지속 운영 방침」(2013.12.5.), 『국정2-1_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7.10.30.

의 작품이 배제된 기준이나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셋째, 신청인이 핵심 물증인 녹음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청와대의 외압 사실’을 제공한 참고인이 조사거부를 함으로써 ‘외압 사실’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이 사건 작품 배제가 청와대의 외압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91

베를린 한국문화원 ‘코리안 방주’ 지원 취소 사건



91

베를린 한국문화원 ‘코리안 방주’ 지원 취소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시41베를린 한국문화원 ‘코리안 방주’ 지원 취소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16년 8월 베를린 한국문화원(독일 한국문화원) 권OO 원장이 한독교류전 ‘코리안 방주’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후 취소했던 것이 예술 검열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전임 원장 윤OO이 승마에 관한 번역을 하는 등 최순실 부역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신청인에게 권OO이 650유로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다. 권OO은 독일 한국문화원장이라는 기관장의 지위에서 ‘지원 약속’을 했다가 이후 ‘지원 취소’를 했다.

권OO이 ‘박정희 사진’을 이유로 지원약속을 철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권OO의 진술 모두 일관되고, 각자의 주장과 진술 배경, 정황 등에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권OO의 지원철회 사유가 ‘박정희 사진’이

었다는 근거를 확인하기에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

제출된 이메일과 관련 자료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승마 관련 번역 자료는 독일 한국문화원의 최순실 부역 증거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붙임 : [베를린 한국문화원 ‘코리아안 방주’ 지원 취소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시4, 베를린 한국문화원 ‘코리아안 방주’ 지원 취소 사건

[신청인] 이 광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인 취지

신청인은 한독교류전 ‘코리아안 방주’ 기획자였다. 2016년 중순 베를린 한국문화원 권 OO 원장이 신청인에게 약속하였던 ‘코리아안 방주’ 지원을 취소했던 것은 예술 검열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전임 원장 윤OO이 승마에 관한 번역을 하는 등 최순실 부역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2017직특2[재외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사건]은 2017년 10월 13일 「10차 전원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3호(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위 사건은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시4[베를린 한국문화원 ‘코리아안 방주’ 지원 취소 사건]으로 사건명을 부여 받아 2017년 11월 27일 「17차 전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개시와 동시에 2017직특2[재외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 사건]에 병합되었다.

나. 조사 목적

‘코리안 방주’ 기획전에 지원 취소 과정에 ‘검열’ 및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지, 윤 OO 전 원장의 최순실 부역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21건의 문건 및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입수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출처 등	입수일	비고
1	베를린 리포트 자유게시판 게시물 1 2017. 2. 6.	베를린 리포트	2017. 9. 17.	
2	베를린 리포트 자유게시판 게시물 2 2017. 2. 24.	위 같음	위와 같음	
3	베를린 리포트 자유게시판 게시물 2 2017. 5. 21.	위 같음	위와 같음	
4	한독 국제 미술 교류전<코리안 방주>- 2014년 4월을 기억하며 2016. 8. 16.	교포신문	위와 같음	
5	문대통령 독일방문의 그늘: 주독 문화원을 둘러싼 논란 2017 8. 4.	민중의 소리	위와 같음	
6	2013~16. 한국영화의 밤 상영작 목록	독일 한국문화원	2017. 11. 17.	
7	현지 전시, 공연의 계약관련 캡춰, 링크 자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8	코리안 방주 관련 경위서 1	위와 같음	위와 같음	
9	코리안 방주 관련 경위서 2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0	독일 승마 관련 이메일 2015. 4. 14.	위와 같음	2017. 12. 14.	
11	스포츠 안전재단 공문 2015. 4. 14.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2	독일 승마시설 관련 규제 현황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3	주독 한국문화원 지원신청서 18건 2016. 2. 1. ~ 11. 3.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연번	기록명	출처 등	입수일	비고
14	코리안 방주 전시 팸플렛 2016. 8	이광	2017. 12. 19.	별책 자료
15	세월호 파시온 2017.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별책 자료
16	신청인과 권OO 이메일 8건	위와 같음	2017. 12. 24.	
17	쿤스트페어라인 64 국문 소개서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8	2016 한독교류전 국문홍보자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9	Art forum Rhee austellungs	위와 같음	위와 같음	
20	코리안 방주 전시 팸플렛 사본	위와 같음	2018. 1. 3.	
21	한독교류 보고전 '코리안방주' 해외이종교배	The ARTIST	2018. 3. 10.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7인에 대하여 8회에 걸쳐 대인 조사 및 조서 검토를 진행하였다

[표-2] 대인 조사자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권OO	독일 한국문화원장	진술서 (2017. 12.14.)
2	위 같음	위 같음	녹취록 (2017. 12. 19.)
3	이 광	신청인	녹취록 (2017. 12. 19.)
4	OOO	독일 한국문화원 직원	녹취록 (2017. 12. 19.)
5	OOO	독일 한국문화원 전 요가 강사	녹취록 (2017. 12. 19.)
6	유OO	독일 현지 큐레이터	녹취록 (2017. 12. 19.)
7	이OO	아트포럼 리 대표	전화면담 (2017. 3. 16.)
8	이OO	위 같음	전화면담 (2017. 3. 20.)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베를린 한국문화원

베를린 한국문화원(이하 독일 한국문화원 또는 문화원)은 4Leipziger Platz 3, 10117 Berlin에 위치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공식적인 표현은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이다.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해외 한국문화원 27개국 31개소 중 하나이다. 문화원장은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외교관 신분을 갖고 있으며 ‘공사참사관’ 등의 직책을 부여 받고 형식상, 대사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문화원의 예산, 채용, 사업 운용 등에서 100% 전결권을 갖고 있다. 다만 매주 회의에 참석하여 대사에게 현황을 보고하는 관계이다. 국정감사는 외교통일위원회(현지 공관 및 문화원 중심)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해외문화홍보원 중심)두 곳에서 진행한다. 독일 한국문화원 예산은 해외 문화홍보원 1407억에 포함(2017년 기준)되며 외교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코리안 방주’ 전시

(1) 개요

‘아트 포럼 리’의 ‘이종교배’와 ‘쿤스트 페어라인 64’의 ‘프로젝트 X’의 공동 프로젝트인 ‘코리안 방주’는 한국과 독일의 문화교류 기획 전시로 2016년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Gallery2, August Strasse 2 D-10117 Berlin에서 열렸다. 후원은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디포그(DEFORG) 였다.

(2) 아트 포럼 리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대안 공간 ‘아트 포럼 리(www.artforum.co.kr)’는 이OO가 대표이며 위 전시에는 작가 그룹 <커뮤니티 사슴사냥>의 박명래, 신익균, 유비호, 이능재가 참여 했다.

(3) 쿤스트 페어라인 64

‘쿤스트 페어라인 64 e.v.(www.kunstverein64.com)’ 2015년 3월 재독 작가 이광(신청인), 독일 작가 우도 저스크, 세바스찬 루드비히가 만든 국제 미술 협회로 베를린 Schlickweg에 위치하고 있다.

(4) ‘코리안 방주’ 팸플릿

이OO(아트포럼 리 대표)는 2016년 7월 말에서 8월 초순경 전시 팸플릿이 인쇄되었다고(조사기록 439쪽)했고 전문위원이 권OO에게 팸플릿을 제시하자 권OO은 7월 말경 신청인이 가져본 형식으로 보여 준바가 있다고 했다(조사기록 283~284쪽).



['코리안 방주 팸플릿' 크기 B5]

2. '코리안 방주(Korean Ark)' 전시 관련 지원약속과 취소 관련 검토

가. 신청인의 주장 중 권OO이 인정한 사실

신청인이 제출한 「2016년 이메일 자료 ① (2016. 7. 13.), ② (2016. 8. 19.)」(조사기록 355~357쪽)는 사건 관련 초기 자료이다.

- (1) ① (2016. 7. 13.)이메일은 ‘신청인이 권OO에게 8월 12일부터 20일로 예정된 한독교류전 ‘코리안 방주’ 재정지원과 전시 오픈식에 참석하여 인사를 부탁’하고 있고 이메일로 첨부한 ‘2016 한독교류전 국문홍보자료’에는 세월호 관련 내용은 없었고, 박정희 서거 관련 작품 이미지가 한 점이 있다. ② (2016. 8. 19.)이메일에는 ‘권OO의 요청대로 문화원 후원 로고를 뺐다는 내용과 다음번 전시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니 다음 전시를 도와주면 감사할 것이라 하고, 전시회에 문화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전 문화원장의 퇴임으로 약속되었던 개인전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신청인은 문화원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있다.
- (2) 권OO의 (2017. 1. 30.)이메일 (조사기록 359쪽)에서 구두약속과 취소에 대한 설명을 신청인에게 한바 있고, 「독일 한국문화원 답변자료 2017. 11. 17.」(조사기록 70쪽)에서 ‘문화원장이 ‘코리안 방주’ 전시를 구두로 후원해주기로 했으나 민원인이 지원에 필요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지원이 취소된 사실이 있음’이라고 밝혀 ‘지원 약속과 취소’라는 단순 사실은 상호 다툼이 없다.

나. 전시 취소 이유 등과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과 권OO의 입장 이메일 검토

신청인이 제출한 2017년 1월 이메일 자료 ① (2017. 1. 26.), ② (2017. 1. 26.), ③ (2017. 1. 27.), ④ (2017. 1. 30.)」(조사기록 359~365쪽)은 사건 관련 신청인과 권OO이 주장이 서로 상충하는 초기 자료이다.

- (1) 신청인은 권OO에게 보내는 ① (2017. 1. 26.)이메일에서 ‘박정희 사진을 원장님께서 언급한 걸로 기억하고, 그 순간 충격이 왔습니다. 잊었거나 제가 지어낸 기억 절대 아닙니다.’라고 하고 ③ (2017. 1. 27.)이메일에서 ‘(2016년) 8월 2일 권OO이 전화로 지원을 할테니 문화원에 오라하여 뒤셀도르프에 작가들과 목요일까지 일정이 있으므로 8월 5일 약속을 잡았고, 당일 도록인쇄 비용으로 650유로 지원을 약속하였고, 8월 5일 밤 이메일로 초대장 발송하였는데, 8월 6일 오전 8시경 급하게 권OO이 문자로 연락을 요청해서 전화를 했더니 첫마디로 박정희 사진이 왜 있냐고 물어보아 박명래 작가의 작품을 설명 하자 권OO 원장이 지원을 취소할 의사를 밝혀 윤OO 원장의 언론 검열 이야기를 언급하며 검열하시는 것이냐고 문자 권OO 원장은 그런 것은 아니고 돈이 없으며 다음에 해명하겠다고 해서 당일 8시 50

분 경 지원취소가 부당하다며 오늘 중 만나자고 했으나 답이 없었고, 8월 18일 권 OO 원장이 문화원 후원 로고를 지우라는 요청을 해서 8월 19일 답을 했다고 주장 했다.

- (2) 권OO은 신청인에게 보내는 ② (2017. 1. 26.) 이메일에서 ‘이광 선생님이 제가 거 짓말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광 선생님의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그 이전에 도록(명칭이 다를 수 있지만)을 가져다 주셨 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그때 지원불가를 이야기 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들으면 박정희 사진이 대단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어떤 희화화 나 비하된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이 작가들은 이미 예술위의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답신을 보냈다. 또한 ④ (2017. 1. 30.)이메일에서 ‘선생님께서 8월 전시와 관련하여 저를 찾아온 것은 7월 하순이었고, -중략- 당시 담당자인 이OO씨가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휴가 중 이라, 제가 혼자 선생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행사와 관련된 A4 반장 크기의 작은 책자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중략- 선생님께서 500유로는 너무 적 다고 하면서 650유로를 말씀하셔서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중략- 원칙적으로 전시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시 3개월 전에 정식으로 지원신청을 하고 전시회 1개월 전에 부서장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데, -중략- 어느 정도 원장의 재량으로 판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중략- 정 상적으로 지원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부서장 회의도 거쳐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자꾸 ‘검열’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는데 전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제 가 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생님께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겠습니 까. 그 후에 (아마도 7월말 혹은 8월초) 제가 전화를 먼저 드렸는지 전화를 받은 김 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지원신청서를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하시라고 전했습니 다. 그랬더니 다른 지방에 갈 일이 있으시다면 금요일(8월 5일)에 직접 오신다고 했 습니다. 당시에 저는 선생님께서 지원서를 직접 와서 쓰신다고 이해했고, 따라서 제가 만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지원담당직원(OOO씨)에게 물어보 니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하며 -중략- ‘저는 8월 5일 금요일에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다음주 일주일은 휴가였습니다. 그때만 해 도 저와 선생님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휴가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중략- 도록 인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쇄비가 얼마이며 그 중에서 몇 %

를 문화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지원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중략- 제가 8월 5일 선생님을 만나 인쇄 도록비 지원을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 주에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담당 직원에게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라고 하고 -중략- 그날(8월 6일) 아침 우연히 문화원 메일에서 선생님의 행사 소식을 접하고 아차 싶었습니다. 행사는 곧 시작되는데 그 전 주에 제가 부서장 회의를 여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휴가를 간 사이에 지원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부임한 이후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시스템을 강조했는데 이제 와서 직원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더구나 처음부터 규정에 맞지 않는 지원이라는 것도 한구석에 남아 있어서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지원을 연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중략-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검열하는 것이냐는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중략- 하지만 이날 가령 ‘어떻게 어제(8월5일) 약속한 것을 오늘 뒤집느냐’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계속 정중하게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웃을 것이라고까지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관련 절차를 확실히 하지 않은 채 원장 재량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입니다.’라고 답을 했다.

(3) 이메일에서 나타난 신청인과 권OO의 입장 차이점

	신청인	권세훈
만난 날짜	2016. 8. 5.	2016. 7. 하순
지원 약속 내용	도록인쇄비용 650유로	리셉션 비용 650유로
전시 취소 이유	박정희 사진	지원 신청서 미작성/행정 실수

다. ‘코리안 방주(Korean Ark)’ 전시 지원 취소에 관한 진술 및 자료 검토

(1) 신청인 녹취록 (녹취록 2017. 12. 19.)

신청인은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¹⁾을 제시하며 ‘8월 5일(금) 베를린 한국문화원(이하 독

1) “그러다가 8월 1일인가? 제가 뒤셀도르프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그전에도 제가 한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못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음료수 값이라도 도와주신다고, 한 500유로 정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전화로. 그래서 알았다

일 한국문화원)에서 권OO 원장을 만나(당시 OOO(문화원 데스크 직원)가 원장 방으로 안내 했었다고 주장하고, 도록 비용으로 650유로(약 85만원) 전시 지원을 확답 받았으나 다음날 권OO이 전화로 박정희 사진을 문제 삼으며 지원금을 못주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라고 하고, 결국 신청인은 8월 6일(토) 문화원에 신청서를 낼 것을 준비했으나 이후 내지 못하였다(조사기록 203~204쪽).

2016년 11월 한국에 귀국 하였을 때, 최순실 관련 소식과 촛불집회 등을 보고 (전시 지원 취소)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라 여기게 되었고 2017년 1월 경 JTBC에서 해외 한국 문화원을 조사 중이라 하여 인터뷰 요청이 있었고, 이후 문화원 앞에서 이슈가 되도록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하여 문화원에 갔다가, 권OO과 면담이 있었는데 권OO은 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조사기록 207~208쪽).

신청인은 문화원측이 8월 5일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CCTV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조사신청서 2017. 11. 1.), 1인 시위 할 무렵 당시 강OO가 8월 5일 자신을 만났었다는 것을 부인했었고, ‘CCTV가 (8월 5일) 그때는 고장 났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당시 OOO 옷차림새가 밝고 예쁜 옷이었다라고 기억하여 (8월 5일 만남을 입증하기 위해)문자를 보냈는데, 답신이 없었다고 하였다(조사기록 216~217쪽). 또한 현지에서 한겨레신문 기자와 만남바 있다고 진술했다(조사기록 222쪽).

신청인은 윤OO 원장시절 때부터 문화원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당시, 경험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문화원 요가 선생이 신청인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요가 교습에 나오지 말라’ 했고, 이 문제로 문화원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이후 독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며, 문화원 요가반에서 성추행 사건도 있었고, 요가 선생이 무마 했던 적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조사기록 209~211쪽).

(2) 이OO(아프포럼리 대표)의 진술 (청취진술청취(전화) 2018. 3. 5./3. 20.)

이OO는 “코리안 방주 팸플릿(소책자)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나왔던 것 같고, 8월 8~9일 이광 작가로부터 ‘박정희 사진’ 때문에 리셉션 지원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라고 하고 그 시점으로 짐작하는 이유는 전시 오프닝(12일) 3~4일 전에 들었던 것

고. 근데 제가 뒤셀도르프에 지금 작가들 데리고서 그쪽에 친구들도 있고 그쪽 근처에 돌아볼 데도 있으니 돌아오면 목요일이고, 목요일 날 돌아와서 제가 금요일 날 문화원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금요일 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8월 5일이예요.” 2017. 12. 19. 조사 기록 203쪽.

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원 관련 약속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라 당시에는 신청인도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은 것 같았다”라면서 “당시 전시회에 문화원장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과 “현지 예술가들과 독일 한국문화원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439쪽/448쪽).

(3) 권OO 진술서(2017. 12. 14.) 및 녹취록 (2017. 12. 19. 조사기록) 문화원 답변자료 (2017. 11. 17.)

권OO은 신청인이 7월 중순경 문화원에 와서 전시 후원 요청을 들었고 리셉션 비용 650유로 정도 지원하기로 수락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신청인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식요청하지 않았고 8월 6일(토) 경 이메일로 온 전시 홍보물에 독일 한국문화원 후원 문구가 있는 것을 보고, 공식적으로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아 지원을 다음에 해주겠다(8월 7일부터 휴가라 다음 주에 부재중이었던 상황)라고 했는데, 신청인 ‘세월호, 박정희 사진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따져 물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던 바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조사기록 275~276쪽). 신청인과 만났던 시점에 대한 권OO의 진술(조사기록 289~291쪽)은 위 이메일에서 언급한 (2017. 1. 30.) 내용 및 진술서(2017. 12. 14.)와 크게 다르지 않다(조사기록 289~290쪽).

권OO이 제출한 2016년 지원 신청서 19건 (조사기록 87~198쪽)은 문화원에 전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신청서를 받고 이후 심사를 통하여 지원을 결정을 할 때도 있고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청 사례로 (신청금 540유로~ 1천 유로 이상) 이중 19건의 신청 중 10건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Asian Art Show 2016’의 경우는 20여일 전에 신청서 작성되었다. ‘한·독미술축제-브뤼켄쿠스트’의 경우는 약 40일 전에 신청서가 작성되었다.

[표-3] 선정된 지원 사업 비교

행사명	신청서	전시 시기	지원금(euro)
존재와 몽환의 기억 그리고 기록	2016. 2. 1.	2016. 7.	1,080
Angaben zum Antragsteller		2016. 4. 1.~ 6.	990
Asian Art Show 2016	2016. 2. 21.	2016. 3. 17~ 6. 20.	2,500
Foreign body_solo	2016. 3. 7.	2016. 7. 8.~17.	2,040

행사명	신청서	전시 시기	지원금(euro)
Koreafestival Sankt Ottilien	2016. 4. 2.	2016. 6. 24.~25.	5,000
Antag auf Unterstützung...	2016. 5. 24	2016. 9. 16.~10. 9.	2,500
한·독미술축제-브뤼켄쿤스트	2016. 5. 2.	2016. 6. 11.~27.	1,125
Walls-Iphigenia in exile	2016. 6. 15.	2016. 10.23.	2,500
Musikalischer Schüleraustausch	2016. 7. 6.	2016. 10. 26.~11. 6.	1,650
제6회 동해 독도 세미나	2016. 8. 12.	2016. 9. 10.	1,000

문화원의 CCTV는 1달 이상 녹화되지 않기 때문에, 2017년 1월의 신청인 주장하는 조작 의혹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고, (조사기록 71쪽) 신청인의 제보로 한겨레신문 송호진 기자가 방문한 바가 있었고 ‘코리안 방주’ 사안에 대하여의 취재에 응했었다고 밝혔다(조사기록 72쪽).

(4) 000 녹취록 (2017. 12. 19)

신청인이 2017년 초경에 CCTV 녹화가 되느냐고 질문한바가 있어 전해 9월과 10월 경 CCTV가 고장난 적이 있었다고 한바 있고(조사기록 298쪽) 신청인이 8월 5일에 문화원에 왔다고 주장을 하여 구글 위치 기록으로 당일 자신의 행적을 살펴보았는데, 당일 자신이 문화원 근무를 한 것은 맞지만 신청인을 안내한 기억이 없고, 신청인이 주장한 자신의 옷차림새는 당일 약속 등으로 볼 때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조사기록 299쪽).

3. 독일한국문화원의 최순실 국정농단 부역 의혹

가. 스포츠 안전 재단 이메일과 독일 승마시설 규제 현황 자료 (2017. 12. 14.)

스포츠 안전 재단은 2015년 4월 14일 문체부의 예산을 받아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란 과제로 선진 사례 자료 요청 공문을 문화원측에 보내고 문화원은 5월 18일 ‘독일 승마시설 규제 현황 자료’를 보냈다. 자료에는 안전 기준과 관련 자율규제 사례, 책임과 보험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조사기록 78~85쪽).

제4절 | 결론

1. 진상규명 사실

신청인에게 권OO이 650유로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다. 권OO은 독일 한국문화원장이라는 기관장의 지위에서 '지원 약속'을 했다가 이후 '지원 취소'를 했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 (1) 권OO이 '박정희 사진'을 이유로 지원약속을 철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권OO의 진술 모두 일관되고, 각자의 주장과 진술 배경, 정황 등에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권OO의 지원철회 사유가 '박정희 사진' 이었다는 근거를 확인하기에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
- (2) 윤OO 전원장 최순실 부역 의혹에 대하여는 문체부의 요청에 의한 독일승마 관련 번역 자료만이 확보되었을 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92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



92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시5[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박문칠 외 4인은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YAP)' (이하 '청년미술프로젝트')에 작품 출품을 약정했던 영화감독, 미술작가 등으로 2017. 11. 3. 우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이하 '진상조사위')에 2017. 10. 13.자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회의 및 실무진 회의를 통해 작품 수정·교체·제외 등의 '권고'를 받은바, 이러한 권고는 특정 작가 작품의 정치적 성향이나 내용에 근거한 '배제'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에서 박문칠(영화감독), 윤동희(미술가), 이은영(미술가)에 대하여 작품의 정치성향을 근거로 부당한 배제 및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

하여 위원회의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 박문철의 경우, 2017. 10. 13.자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출품작(‘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주민께’)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드’를 특정 정치적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전시에서 부당하게 배제·차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신청인 윤동희의 경우 실무진 회의에서 박정희 前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작품 〈망령〉에 대한 제외를 요청받은 사실, 신청인 이은영 또한 실무진 회의를 통해 설치작품 〈바다 위로 밤이 걸어온다〉의 작가노트에서 ‘세월호’가 언급되는 부분에 수정을 요청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에서는 특정 작품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한 배제가 실행되었다고 판단된다.

**붙임 :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시5,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

[신청인] 박문철 외 4인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의 취지

박문철 외 4인은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YAP)’(이하 ‘청년미술프로젝트’)에 작품 출품을 약정했던 영화감독, 미술작가 등으로 2017. 11. 3. 우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이하 ‘진상조사위’)에 2017. 10. 13.자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회의 및 실무진 회의를 통해 작품 수정·교체·제외 등의 ‘권고’를 받은바, 이러한 권고는 특정 작가 작품의 정치적 성향이나 내용에 근거한 ‘배제’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에 따라 2017. 12. 22.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 (1) 청년미술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신청인들의 출판작에 대한 수정·교체·제외 등 ‘권고’는 특정 예술가 및 예술작품에 대하여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한 검열 및 배제가 진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기존의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블랙리스트 사건들과 동일한 유형의 사건으로 파악되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 (2) 따라서 신청인들의 조사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의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주최 측인 ‘대구시-주관단체인 대구미협-청년미술프로젝트의 전시감독’(‘권고’를 주장하는 측)과 ‘피해를 주장하는 작가들-협력 큐레이터’(‘배제’를 주장하는 측)두 그룹 간에 상반된 진술이 확보되어 입수된 문건 및 관여자들 간의 전화통화 녹취록 등을 중심으로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여 부당배제 여부를 조사하였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16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하였다.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조사신청서	박문철 외 4인	2017. 11.
2	2017. 10. 13. 대구아트스퀘어 2차 조직위원회 회의자료	김OO	2017. 11.
3	2017. 10. 13. 대구아트스퀘어 2차 조직위원회 회의록	대구미협	2017. 11.
4	대구미술협회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	대구미협	2017. 11.
5	김OO 전시감독이 YAP 참여작가들에게 보낸 2017. 10. 30.자 해명 이메일	김OO	2018. 1.
6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감독 선임절차의 건(공문)	김OO	2018. 1.
7	YAP 전시감독 김OO 계약서 사본	김OO	2018. 1.
8	YAP 협력 큐레이터 이민정 계약서 사본	이민정	2018. 2.
9	박문철 작품대여약정서	박문철	2018. 1.
10	윤동희 작품대여약정서	윤동희	2018. 1.
11	이은영 작품대여약정서	이은영	2018. 1.
12	2017 대구아트스퀘어 추진계획	대구시	2018. 1.
13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대구시 답변서	대구시	2018. 1.
14	박문철-김OO 2017. 10. 20.자 전화통화 녹취록	박문철	2017. 11.
15	박문철-조OO 2017. 10. 30.자 전화통화 녹취록	박문철	2017. 11.
16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도록	대구미협	2018. 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총 11인에 대하여 총 11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박문철 외 4인	사건 신청인	면담보고 - 피해자 면담보고(2017. 11. 8.)
2	김OO	전시감독	진술조서(2018. 1. 22.)
3	박문철	신청인(출품작가)	진술조서(2018. 1. 24.)
4	이민정	신청인(협력 큐레이터)	진술조서(2018. 1. 26.)
5	조OO	대구미협 사무국장	진술조서(2018. 1. 30.)
6	OOO	대구시 담당자	진술조서(2018. 2. 8.)
7	OOO	대구시 공무원	진술조서(2018. 2. 9.)
8	이은영	신청인(출품작가)	진술조서(2018. 2. 9.)
9	양OO	대구시 공무원	진술조서(2018. 3. 9.)
10	안OO	조직위원회 위원	진술서(2018. 2. 5.)
11	백OO	조직위원회 위원	진술서(2018. 3. 5.)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청년미술프로젝트는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대구광역시지회(이하 '대구미협')가 주관하는 행사로 대구아트페어와 연계하여 '대구아트스퀘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개최되며, 문체부와 대구시가 예산 약 4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¹⁾ 국내·외의 만 40세 미만의 청년작가들의 회화, 영상, 사진, 설치 등의 작품을 발굴하여 대중에게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사로, 2009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왔다.

나.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이번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는 8개국(한국, 러시아, 대만, 멕시코, 프랑스, 인도, 독

1) 2017 대구아트스퀘어 추진계획 2~3면.

일 미국 등) 총 27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였으며, 2017. 11. 8. ~ 12.까지 엑스코에서 진행되었다.²⁾ 전시제목은 〈A revolution from my bed(내 침대로부터의 혁명)〉³⁾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는 여러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사회적 예술’의 범주로 가져와 이를 통하여 세계가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하였다.⁴⁾

[표-3] 전시감독 김OO 작성, YAP 기획의도

청년미술프로젝트YAP'17

- 제목 : "a revolution from my bed (내 침대로부터의 혁명)"
- 컨셉 : '사회적 예술(Social artistry)'을 통해 세계가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에서 나타나는 물적(Physical), 심리적(Psychological)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삶을 위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 주목해 본다.
- 구성 : 주제전, 특별전, 부대행사

전시감독 김이삭

다. 사건개요

(1) 주요 관여자

[표-4] 주요 관여자

순번	이름	직책	관여사실
1	양OO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장	- 대구아트스퀘어 관련 결재자 - 2017. 10. 13. 조직위원회 회의 참석
2	OOO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	- 대구아트스퀘어 지원 담당자 - 2017. 10. 13. 조직위원회 회의 및 실무진 회의 참석

2) 청년미술프로젝트 YAP 홈페이지, <http://www.dg-yap.com/main.php>(접속일자: 2018. 3. 20.)

3) 전시제목인 'a revolution from my bed'는 존 레논과 오노 요코의 반전·평화 운동인 베드인(Bed-In) 퍼포먼스에서 존 레논이 할 말을 인용한 것이다(2017 대구아트스퀘어 2차 회의자료, 7면).

4) 2017 대구아트스퀘어 2차 회의자료 9면

순번	이름	직책	관여사실
3	OOO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	- 대구아트스퀘어 전임 담당자 - 2017. 10. 13. 실무진 회의 참석
4	조OO	대구미협 사무국장	- 2017. 10. 13. 조직위원회 회의 및 실무진 회의 참석
5	김OO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감독	- 2017. 10. 13. 조직위원회 회의 및 실무진 회의 참석
6	이OO	청년미술프로젝트 협력 큐레이터	- 2017. 10. 13. 조직위원회 회의 및 실무진 회의 참석 - 박문칠, 운동희, 이은영 작가에게 조직위 회의 '권고'를 전달 - 2017. 10. 19. 사직
7	박문칠	참여작가	- 작품 교체 및 제외 '권고'를 받음 - 이후 전시 보이콧
8	운동희	참여작가	- 작품 교체 및 제외 '권고'를 받음 - 이후 전시 보이콧
9	이은영	참여작가	- 작가노트 '수정' 요구를 받음 - 이후 전시 보이콧
10	안OO	대구 화랑협회장 및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	- 2017. 10. 13. 조직위원회 회의 참석
11	백OO	퍼블릭아트 대표 및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	- 2017. 10. 13. 조직위원회 회의 참석

(2) 개요

이번 사건에서 참여작가들에 대한 검열이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발생한 회의는 전시 개최를 3주 앞둔 2017. 10. 13.에 열린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회의⁵⁾(이하 '조직위원회') 이어서 열린 실무진 회의⁶⁾이다.

13일자 조직위원회에서는 “2017 대구아트스퀘어 추진상황 보고 및 세부사항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회의 전날인 12일 오후 늦게 회의자료('청년미술프로젝트' 부분은 김OO(전시감독)이 작성하여 조OO(대구미협 사무국장)가 취합하고 OOO(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담당자)에 송부)가 대구시 등 관계자들에게 회람되었고, 13일 회의에서 박문칠의 출품작 <100번째 촛불을 든 성주주민께>⁷⁾(6분 47초, 비디오)이 상영되었다. 상영

5) 참석자: 류OO(대구아트스퀘어위원장), 안OO(대구 화랑협회 회장), 박OO(대구 화랑협회 부회장), 권OO(대구 화랑협회 총무), 박OO(대구미협 회장), 조OO(대구미협 사무국장), 노OO(대구미협 기획이사), 허OO(주노아트대표), 백OO(퍼블릭아트 대표), 이OO(계명대 서양학과 교수), 노OO(대구예술대 서양학과 교수), 김OO(전시감독), 이민정(협력 큐레이터), 양OO(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장), OOO(대구시 예술진흥팀 대구아트스퀘어 담당) 등 총 15명

6) 참석자: 김OO(전시감독), 이민정(협력 큐레이터), 조OO(대구미협 사무국장), OOO(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 대구아트스퀘어 담당), OOO(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 총 5명

후, 박문철의 작품이 전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조직위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조직위는 박문철에게 작품의 수정(재편집) 및 제외 '권고'를 하기로 하고, 이를 협력 큐레이터인 이민정이 박문철 감독에게 전달하자 박문철 감독은 이에 반발하여 전시 참여 거부에 나아가게 되었다.

13일 조직위 회의 이후 이어진 실무진 회의에서는 윤동희, 이은영 작가에 대하여 각 작품 제외 및 작가노트 수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다. 실무진 회의에서의 이러한 '의견'을 이OO(협력 큐레이터)가 윤동희, 이은영에게 전달하였고 이 두 작가 또한 이에 반발하여 전시 참여 거부를 결정하였다.

(3) 쟁점

해당 사안은 청년미술프로젝트의 대구시(주최)-대구미협(주관)-김OO(전시감독)과 작품에 대한 수정·교체·제외 등의 권고를 받은 3명의 작가(박문철, 윤동희, 이은영) - 이민정(협력 큐레이터) 두 그룹 간에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아래와 같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바,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 2017. 10. 12. 회의자료 송부 후 박문철 작품에 대한 대구시 및 조직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를 주장하는 작가 및 협력 큐레이터 측은 조직위회의 및 실무진회의 전날인 2017. 10. 12. 회의자료 회람 후, 대구시 공무원 및 조직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가 조OO(대구미협 사무국장)에게 전화하여 회의자료에 있는 박문철 감독의 작품 스틸컷(사드반대 현수막을 들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조OO는 이민정(협력 큐레이터)에게 전화를 걸어 박문철 작품을 13일 조직위회의에서 상영하고 판단해야 할 것 같으니 작품파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최·주관 측과 전시감독 측은 회의자료가 부실하여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이지 박문철이라는 특정 작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조직위원회의에서 박문철에 대한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

대구시·대구미협·전시감독 측은 조직위에서 박문철 출품작에 대해 작품의 수정 및 제외 ‘권고’를 하게 된 것은 조직위에서 박문철 작품의 형식(다큐멘터리)이 미술전시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된 것으로 ‘사드’라는 주제 때문에 검열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문철 및 이민정(협력 큐레이터) 등은 박문철 감독의 작품이 사드라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하여 조직위 및 대구시 측이 부담을 느껴 해당 작품에 대해 제외 및 교체라는 ‘검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림-1] 조직위 회의자료 중 박문철 작품 스틸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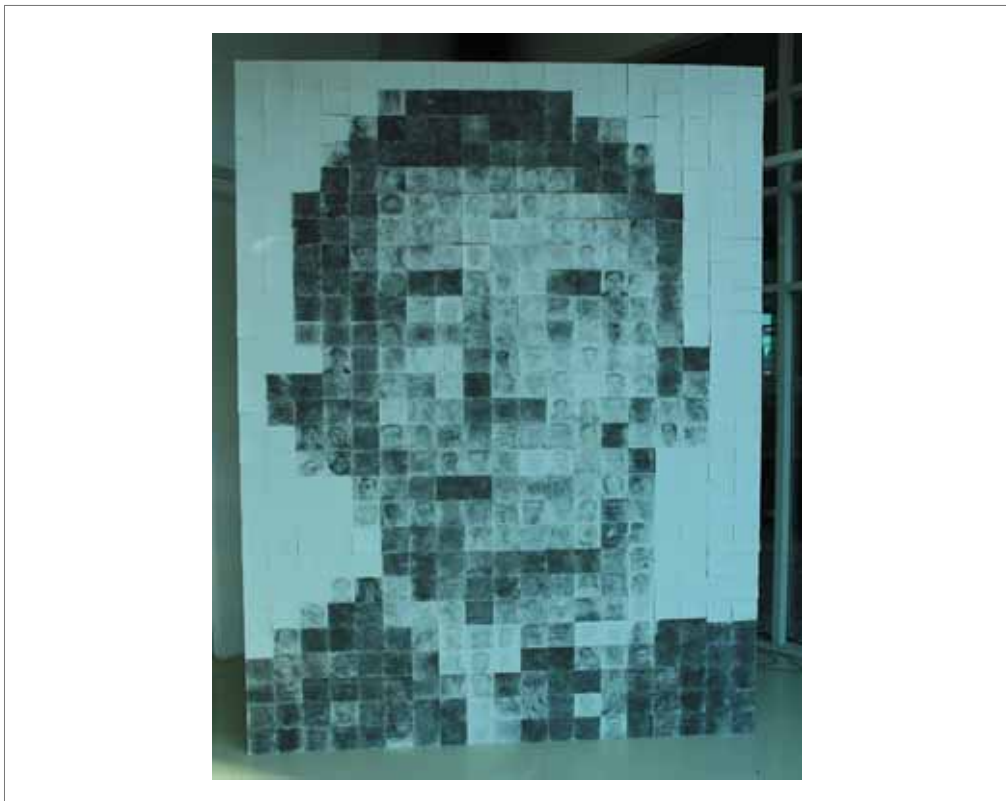
(다) 실무진회의에서 윤동희, 이은영에 대한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

윤동희 작가의 작품과 관련해서는 <망령>이라는 작품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작품은 여러 드로잉들을 합쳐 설치하면 박정희 前 대통령의 형상이 연상되는 작품으로 해당 작품에 대해서 실무진 회의에서는 해당 작가의 작품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작품 제외

요청을 작가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윤동희 작가 및 이민정 협력 큐레이터 측은 다른 작가들과 비교하여 작품수가 많지 않았으며 이미 9월 약정서에서 윤동희 작가는 3개 시리즈를 전시하겠다고 약정을 한 상태였으므로 이제 와서 작가의 작품수를 문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박정희 前 대통령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작품을 제외하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은영 작가의 논란이 된 작가노트 작품은 <바다 위로 밤이 걸어온다>로, 세월호 등의 사건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설치작품인데 작가노트에 이 작품이 세월호 사건에서 모티프를 가져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대구시, 대구미협, 전시감독 측은 이은영의 작가노트 '분량'과 관련하여 수정 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은영과 이민정(협력 큐레이터)는 분량과 관련된 수정요청은 이미 10월 초에 한 차례 있어 분량 조절은 끝났으며,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작가노트에서 '세월호'가 거론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를 수정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림-2] 윤동희, <망령>



[그림-3] 이은영, <바다 위로 밤이 걸어온다>

2. 대구광역시(주최)의 역할 및 권한

가. 역할 및 권한

대구광역시는 대구아트스퀘어의 행·재정 지원 및 상황관리, 유관기관 협력을 담당한다(2017 대구아트스퀘어 추진계획서, 7면). 대구시가 해당 행사에 예산집행 이외의 행사 내용 등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000(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 대구아트스퀘어 담당자)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타임라인에 따라 사업의 진행상황을 검토하는 정도라고 진술하였다(000 2018. 2. 9.자 진술, 진술조서 3면). 이에 대하여는 양00(당시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장) 또한 전시의 내용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전시감독과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양00 2018. 3. 9.자 진술, 진술조서 3면).

나. 대구시에서 2017. 10. 13.자 조직위원회의 및 실무진회의에 참석하게 된 경위

대구시에서 2017. 10. 13.자 조직위원회의 및 실무진회의에 참석하게 된 경위는 “대구시는 행사 주최기관으로서 전체적인 행사 진행상황과 행사 개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직위 개최시 배석해 왔음”이라고 진상조사위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회신하였다(대구시 2018. 1. 16.자 회신자료, 1면). 조직위원회에서 대구시가 맡은 역할에 대하여도 000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대구시는 배석을 합니다. 조직위

원회가 1년에 3번 정도 열리는데(연초, 행사 시작 전, 행사 직후), 행사진행과정을 주최자로서 파악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페어와 청년미술프로젝트 각 운영위원회에서 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각 운영 단위와 대구시가 일대일로 만나서 이러한 요청들을 해결하고자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운영단위가 통합된 조직위원회 자리에서 대구시가 배석하여 그런 요구들을 받고 해결을 해오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000 2018. 2. 9.자 진술, 진술조서 5면). 000 또한 행사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참관하고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000 2018. 2. 9.자 진술, 진술조서 5면).

실무진회의에 대구시 공무원 중 000은 대구아트스퀘어 담당으로 청년미술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 더디다고 판단하여 실무진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000 2018. 2. 9.자 진술, 진술조서 11면), 000의 경우 대구아트스퀘어 당시 담당자는 아니었으나 전임 담당자로서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어 회의에서 전시감독과 협력 큐레이터 간에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중재하고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000 2018. 2. 9.자 진술, 진술조서 8면).

3.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는 아트페어 측 운영위원과 청년미술프로젝트 측 운영위원들이 모인 20명 이내의 조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대구아트스퀘어의 기본방향 제시 및 주요안건 심의 기능을 하는 조직이다. 해당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하여 대구시 공무원과 대구미협 측에 진술조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참고인 김00은 2018. 1. 22.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진술조서 8면).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과 관련하여, 전시주제, 작가선정 등에 대한 전권은 전시감독에게 있으며, 이에 대하여 조직위원회는 의견을 줄 수 있는 조직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참고인 이민정은 2018. 1. 26.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진술조서 5~6면). 일반적으로 조직위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조직위의 역할과 권한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직위 회의는 아트페어와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의 진행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이며, 조직위원회가 전시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는 개입할 수 있지만 전시 고

유의 내용, 즉 작가 및 작품의 선정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전시와 관련된 작가선택의 문제는 전시감독과 협력 큐레이터 고유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참고인 조OO는 2018. 1. 30.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진술조서 5면). 조직위원회는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조직으로, 대구아트스퀘어는 2개의 프로젝트(아트페어, 청년미술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고, 전시컨셉이나 전시과정에 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는 기구라고 진술하였다. 작가선정과 관련해서는 조직위에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감독에게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참고인 OOO은 2018. 2. 9.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진술조서 4~5면).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자문' 역할이며,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감독 추천권 및 선임, 조직위원회는 전체적인 사업별로 토론 및 건의 등을 진행합니다. 큰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의결권은 없습니다. 의사결정권이 있지 않습니다. 의견제시 및 사업에 대한 홍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시에 있어서 구속력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종 권한은 전시감독에게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직위가 청년미술프로젝트의 전시내용, 작가선정, 작가의 작품 내용 등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개입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참고인 OOO 및 양OO은 각 2018. 2. 9., 2018. 3. 9.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OOO 진술조서 4면, 양OO 진술조서 3~4면). 조직위원회는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의 역할을 하는 기구이며 자문의 구속력 여부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며 전시의 내용에 대한 전권은 전시감독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박문철에 대한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

가. 13일 회의 전날(2017. 10. 12.), 박문철 감독의 작품 스틸컷(사대반대 현수막을 든 여성의 이미지)에 대하여 대구시 및 조직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여부

(1) ‘배제’를 주장하는 측(협력 큐레이터, 피해 작가)의 진술

(가) 참고인 이민정의 진술(2018. 1. 26.자 진술조서, 7~8, 11면)

- 1) 참고인 이민정은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의 협력 큐레이터로 근무하였던 자로, 전시감독 김OO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대구지역 작가들에 대한 섭외 및 선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참고인 이민정은 2017. 10. 13.자 조직위원회 회의 및 실무진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다.
- 2) 참고인 이민정은 2018. 1. 26.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은 12일에 회의자료가 대구시, 조직위 운영위원들에게 사전회람 되면서 박문철 감독 작품의 스틸컷(사대반대 현수막을 든 여성의 이미지)에 대하여 대구시와 조직위 운영위원들로부터 차례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조OO(대구미협 사무국장)로부터 들었고, 조OO가 13일자 회의에서 이 작품의 출품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처음에 문제제기를 한 대구시 공무원이 누구냐고 조OO에게 물었을 때 조OO가 OOO(대구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이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 3) 구체적인 전화통화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2일 오후 조OO 사무국장과 첫 번째 통화에서는 조OO 사무국장이 참고인에게 대구시 공무원으로부터 박문철 감독 작품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왔으니 박문철 감독 작품의 스틸컷을 회의자료에서 제외하자고 하였고, 한 시간 후 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 다른 조직위 운영위원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 박문철 감독 작품이 포함된 당초 회의자료로 13일 회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작품의 출품 여부에 대해 조직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아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조OO가 운동희 작가의 <망령>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OO가 13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박문철 작품의 영상을 상영해야 할 것 같으니 영상을 준비하라고 하여 당시 참고인이 박문철에게 연락하여 2개 작품의 영상 파일을 모두 받

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4) 참고인은 박문철 감독의 스틸컷이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사드배제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나) 참고인 박문철의 진술(2018. 1. 24.자 진술조서, 7~8면)

- 1) 참고인 박문철은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에 출품이 예정되어 있던 영화감독으로 13일자 조직위 회의 이후 권고의견을 전달받고 이에 대하여 이는 작품에 대한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전시참여를 거부한 자이다.
- 2) 참고인 박문철은 2018. 1. 24.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은 2017. 10. 12. 이민정으로부터 전화를 두 차례 받았는데, 첫 번째 통화에서는 다음 날(13일)에 예정된 조직위 회의자료에 있는 참고인의 작품 <파란나비> 스틸컷을 보고 대구시 공무원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어서 스틸컷을 회의자료에서 교체해야 할 것 같으니 다른 스틸컷을 보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몇 시간 후 두 번째 통화에서는, 다른 조직위 위원들로부터도 참고인 작품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어서 13일 조직위 회의에서 작품의 출품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스틸컷은 교체할 필요가 없으니 작품 영상 파일 2개를 모두 송부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때 참고인은 이에 대해 13일 조직위 회의에서 참고인의 작품에 대하여 수정 또는 제외 요청이 있을 경우 정치적 검열로 간주할 것이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박문철- 이민정 사이의 2017. 10. 12자 전시영상 제공 메일

2017. 10. 12.자 이민정의 요청에 따라,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주민계>, <파란나비> 영상을 첨부하여 보낸 메일이다. 해당 메일에서는 “담당 공무원이나 미술협회 관계자 분들께서 작품의 방향이나 홍보 방식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작품 자체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미, 제 작품이 ‘문제화’ 되고 ‘공론화’ 되어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부터가 참으로 안타깝고 불쾌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4] 박문칠- 이민정 사이의 2017. 10. 12자 전시영상 제공 메일

사실, 아까 두 차례의 전화를 받고, 예상하셨겠지만, 많이 당혹스럽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큐레이터님 개인에 대한 감정은 물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직도 벌어지는 것에 대한 당혹감입니다.

젊은 작가들의 '사회적 예술'을 보여준다는 좋은 취지에 동의해 전시에 함께 하기로 하였는데,
행정기관에서 전시 감독과 큐레이터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작가의 작품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문제 삼는 것은 '검열'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탄압과 블랙리스트로 그 어느 때보다도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제기되는 이 시점에
대구에서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이런 일이 관행처럼 벌어지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욱이 작품의 소위 '정치성'을 문제 삼는 것은 저에게 주셨던 전시 컨셉과 취지문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전시 컨셉에서는 "사회적 예술을 통해 세계가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에서 나타나는
물적 심리적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삶을 위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 주목"하겠다고 하셨고
취지문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노력을 통해 유아가에서 청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품 역시 성주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에 공감하면서 만들어졌고,
그들이 삶에서 겪고 있는 첨예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작품 못지 않게 전시의 취지와 컨셉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품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불편해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람객들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 행정관청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시가 잡음없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시의 취지대로 진정 "내 침대로부터의 혁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평온한 일상에 더 많은 잡음과 더 많은 소음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예술의 역할이고, 건강하고 명량한 민주주의의 밑거름 아닐까요?

담당 공무원이나 미술협회 관계자들께서 작품의 방향이나 홍보 방식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작품 자체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미, 제 작품이 '문제화'되고 '공론화'되어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부터가 참으로 안타깝고 불쾌합니다.
혹여 제 작품이 배제되거나, 더 이상의 부당한 간섭이 이뤄진다면,
저는 대구의 예술인 단체와 시민사회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옹호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들과 함께
연련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규탄하고, 항의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시 관계자와 협회 관계자들께서 스스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고,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권고'라고 주장하는 측(대구시, 대구미협, 전시감독)의 진술 및 관련 증거

(가) 참고인 조OO의 진술(2018. 1. 30.자 진술조사, 8~9면)

- 1) 참고인 조OO는 청년미술프로젝트의 주관단체인 대구미협 사무국장으로, 행사지원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 2) 참고인 조OO는 2018. 1. 30.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은 회의자료에서 박문칠 감독의 작품 스틸컷이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스틸컷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회의자료에서 청년미술프로젝트 측 부분이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박문칠 감독 작품의 경우 회의자료 송부 당시 전시감독(김OO)도 작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3) 박문칠 작품의 스틸컷에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참고인은 자신이 OOO(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으로부터 회의자료에 대하여 전화를 받은 것은 맞으나, 스틸컷을 문제 삼은게 아니라 회의자료 전반에 대한 이야기

였으며(9면), 이뿐만 아니라 박문칠 감독의 작품을 전시감독이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민정에게 13일에 있을 조직위 회의에 박문칠 감독의 작품 파일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000의 진술(2018. 2. 9.자 진술조서, 5~6면)

- 1) 참고인 000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으로, 대구아트스퀘어를 담당 하였던 전임자이며, 2017. 10. 12.에 조직위 회의자료에 대하여 대구미협 사무국장 조동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13일에는 실무진회의에 참석하였다.
- 2) 참고인은 13일 조직위 회의 전날(12일) 회의자료를 회람하고 이에 대하여 조OO에게 전화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000(주무관, 대구아트스퀘어 담당)으로부터 행사 진행 과정에 대한 우려를 듣고 함께 회의자료를 열람하였던 것이고,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되어 조OO에게 연락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3) 참고인은 회의자료에 실린 박문칠 작품 스틸컷은 기억을 하고 있으나, 이것을 특정하여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고 회의자료 전반에 대한 이야기만 조OO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 000의 진술(2018. 2. 9.자 진술조서, 6~7면)

- 1) 참고인 000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으로 대구아트스퀘어 담당자이다. 2017. 10. 13. 조직위 회의 및 실무진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다.
- 2) 참고인은 12일에 다음 날 조직위 회의자료를 미리 송부받아 회의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되어 전임자인 000에게 회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회의자료 열람 후 조OO(대구미협 사무국장)와 회의자료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한 사람은 000 주임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은 박문칠 작품 스틸컷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12일 회의자료 열람 후 대구시 공무원으로부터 조OO에게 박문칠 작품 스틸컷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참고인은 12일에 조OO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000이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000 또한 회의자료의 부실한 점을 조OO에게 지적한 것이지 특정 작가의 작품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참고인 양OO의 진술(2018. 3. 9.자 진술조서, 4~5면)

- 1) 참고인 양OO은 현재 대구광역시 대구콘서트하우스 관리과장이고,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장을 맡았던 자이다. 참고인은 2017. 10. 13. 자 조직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 2) 참고인은 조직위 회의 전날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회의자료를 열람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당일 조OO와 회의자료와 관련하여 통화한 사람은 참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박문칠 작품의 외부 협찬사인 '시네마달'의 로고가 홍보배너에서 삭제된 경위**(가) 참고인 이민정의 진술(2018. 1. 26.자 진술조서, 8면)**

참고인 이민정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박문칠 감독의 경우 시네마달이라는 외부 배급사에서 협찬을 받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명이 홍보배너에 들어가야 하는데, 12일 통화에서 조OO 사무국장이 이 해당 업체의 로고를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15일에 배너를 확인했을 때 해당 업체의 로고가 제외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은 이미 조직위 회의 이전에 시네마달 협찬 로고를 배제하고 홍보이미지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조OO의 진술(2018. 1. 30.자 진술조서, 10면)

참고인 조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은 박문칠 작품의 외부 협찬사인 '시네마달'의 로고가 홍보배너에서 제외된 경위에 대하여, 2017. 10. 12.에 자신이 보류조치를 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보류조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시 감독 김OO과 박문칠 감독의 작품 전시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전시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13일에 홍보배너가 인쇄되고, 14일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직위 회의 전날인 12일에 박문칠 감독의 작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 조치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10면).

나. 2017. 10. 13.자 조직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박문철의 <100번째 촛불을 든 성주주민께> 등에 대한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

(1) 2017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2017. 10. 13.자 2차 회의 회의록

2017. 10. 13.에 열린 2017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2차 회의 회의록에 보면 청년미술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정치적 성향이 강한 작품 내용 검토 후 권고”라는 회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5] 2017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2017. 10. 13.자 2차 회의 회의록

의제	대구아트스퀘어 최종 점검
안건	청년미술프로젝트-전시 주제 및 참여작가, 작품 설명 대구아트페어-참여화랑안내 및 특별전
	청년미술프로젝트 - 전시주제에 맞는 참여작가 구성, 작품 내용 최종 검토 정치적 성향이 강한 작품 내용 검토 후 권고 그 외 작가구성 및 작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의견


(2) 대구미협 작성,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의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2017. 10.)

2017. 10. 대구미협에서 발표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의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전시주제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배제하는 원칙”이 있었으며, 13일자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애초 주제와 취지에 맞지 않는 직접적인 현실정치를 반영하는 박문철 감독의 ‘파란나비’가 문제가 되어 동영상을 조직위원들이 감상하였고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조직위원들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전시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와 “현재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드배치에 대한 논란이 들어간 작품에 대한 전

시가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박문철의 해당 작품이 “본 전시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데에 조직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가에 다른 작품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입장발표문의 마지막에는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전원합의로 작품 교체를 제안 받은 박문철 감독의 ‘파란나비’ 이외에는 기획회의를 통해 감독이나 큐레이터가 얼마든지 결정할 여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6] 대구미협 작성,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의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2017. 10.)

<div style="text-align: center;">  <p>대구미술협회 약속과 실천의 동반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구광역시지회</p> </div> <p>수신자 : 청년미술프로젝트 참여작가님 (경유) 제목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의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p>
<p>2. 최초 1차조직위원회(4월 7일)에서 전시방향설정을 정하고 1차운영위원회의(5월 2일)에서 감독선정과정 <u>전시주제의 큰 원칙인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배제하는 원칙</u>을 다시한 번 강조하였고 그 내용을 다시 기획회의 때 전달한 바 있으며 전시주제와 작가선택의 전권을 기획자에게 양해하였습니다.</p>
<p>4. 이에 전시 개최 전 마지막 대구아트스퀘어(아트페어/청년미술프로젝트 2차조직위원회의(10월 13일)는 조직위원, 전시감독, 협력큐레이터가 참여하여 전시방향, 선정작가 소개와 더불어 아트페어와 청년미술프로젝트 양 행사의 상호협조 부분 등을 논의 하는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기획의 결과를 발표하는 정례적인 자리였으며 현재 문제 제기된 검열의 과정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회의에서 모든 위원들은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하거나 결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자는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u>그러나 설명과정에 애초 주제와 취지에 맞지 않는 직접적인 현실정치를 반영하는 박문철 감독의 ‘파란나비’가 문제가 되어 동영상을 조직위원들이 감상하였고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직위원들의 의견에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전시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함과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드배치에 대한 논란이 들어간 작품에 대한 전시가 타당한가의 두 가지 논점에서 접근하였고 본 전시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전원이 합의하여 작가에게 다른 작품을 대체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u></p>
<p>6. 본 전시는 국제그림전시로서 개인전이 아니므로 모든 전시는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시를 만들어 내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논의된 이야기들에 모두 ‘검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아트스퀘어의 최종결기구인 <u>조직위원회의에서 전원합의로 작품 교체를 제안 받은 박문철 감독의 ‘파란나비’이외에는 기획회의를 통해 감독이나 큐레이터가 얼마든지 결정할 여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u></p>

(3) 2017. 10. 20.자 박문철-김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3~4, 9면)

2017. 10. 20.자 박문철과 김OO(전시감독)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을 보면, 김OO은 “작가님은 다른 작품으로 참여를 하실 의향은 전혀 없으셨던 건가요?”라고 묻고, “여기 조직위원회에서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사드만 아니면 다른 이슈는 다 괜찮다였거든요.”라는 입장을 전한다(녹취록 1면). 또한 조직위원회에서 “이 작품을 바꿔 달라.”는 작품 교체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녹취록 3면). 김OO은 기획자로서 이러한 사회적 예술을 다룰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던 것이 자신의 판단이 미숙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 또한 하였다(녹취록 3-4면).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는 사드 밖에 없어요.”라는 이야기도 하였다(녹취록 9면).

(4) 2017. 10. 31.자 박문철-조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4면)

2017. 10. 31.자 박문철과 조OO(대구미협 사무국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을 보면, 조OO는 박문철에게 “근데 이게 조직위원회에서나 이런 거는 원래 대원칙에서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거는 배제된다는 그런 게 대원칙이 있어요, 저희가.”, “박문철 감독만 조금 현실 정치가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라서 그냥 그거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권고안을 제시한 거죠, 다른 작품으로 할 수 있는지.”라고 이야기하였다(녹취록 4면).

(5) 대구광역시 측 2018. 1. 16.자 회신자료(1면)

진상조사위에서 대구광역시 측에 2018. 1. 12.자로 보낸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대구광역시 측은 2017. 10. 13.자 조직위 회의에서 논의된 특정 작가의 작품에 대한 ‘권고’의 내용에 대하여, “청년미술프로젝트는 대구아트페어와 동시 개최되는 행사로 다른 미술전시회에 비해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으므로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작품은 지양하고, 일반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전시를 구성하자는 것이 당시 조직위원회에 참석한 대다수 조직위원들의 의견”이었으며, “순수미술 전시회인 청년미술프로젝트에 다큐멘터리 상업영화를 참여시키는 것은 형식상 맞지 않다는 조직위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기재하였다. “이에 조직위원회에서는 전시감독에게 논란의 우려가 있는 작품에 대하여 다른 작품으로 대체 가능한지 해당 작가와 협의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고 기재하였다.

(6) 박문철과 대구미협 측이 체결한 2017. 9. 11.자 작품대여약정서 및 첨부1. 대여작품 목록

박문철과 대구미협 측은 청년미술프로젝트 관련 작품대여약정서를 2017. 9. 11.에 체결하면서, ‘첨부1. 대여작품목록’에 보면 <파란나비>(2017, 비디오 8분 46초),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2016, 비디오 6분 38초)를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에 출품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7) ‘배제’를 주장하는 측(협력 큐레이터, 피해 작가)의 진술**(가) 참고인 이민정의 진술(2018. 1. 26.자 진술조서, 9-10면)**

- 1) 참고인 이민정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은 당시 13일자 회의에 협력 큐레이터로서 참석한 자로서, 13일자 조직위 2차 회의에서 박문철 감독의 작품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노OO 운영위원이 처음에 회의자료에 사드결사반대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작품은 무엇이나는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조직위회의 자리에서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주민께>를 상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후 회의에 있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류OO(예총 회장)은 해당 작품이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백OO(퍼블릭아트 대표)는 이민정에게 작가들과의 관계, 광주비엔날레처럼 작가들이 보이콧을 하고 기자회견을 할 경우 골치 아파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안OO(화랑협회장)은 개인적으로 본인의 갤러리에 전시는 가능하나 대구시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에 전시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허OO(주노아트 대표)도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이러한 작품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발언을 하였고, 당시 회의에 참관자로 참석하였던 대구시 양OO 팀장에게 류OO가 대구시 입장에 대해 물으니 해당 작품을 전시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시가 곤란해질 것 같다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3) 위 회의에서 박문철의 작품과 관련하여 예술성에 대한 논의내용을 없었으며, 주로 대구시가 사드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대부분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영화라는 형식이 현대미술전시에 적합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유경 교수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전시감독 김OO은 회의가 끝날 무렵 전시를

기획하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조직위원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문제없이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4) 참고인은 위 조직위 회의의 권고의견을 박문철에게 참고인이 직접 연락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박문철의 진술(2018. 1. 24.자 진술조서, 6, 9면)

- 1) 참고인 박문철은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에 출품이 예정되어 있던 영화감독으로 13일자 조직위 회의 이후 권고의견을 전달받고 이에 대하여 이는 작품에 대한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전시참여를 거부한 자이다. 참고인 박문철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참고인은 대구미협 측으로부터 전시 이전에 “정치적, 종교적 작품은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 공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김OO(전시감독)이나 이민정(협력 큐레이터)으로부터 참고인의 출품작이 다큐멘터리여서 전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3) 참고인은 14일 무렵 이민정으로부터 작품을 재편집하거나 다른 작품으로 교체할 수 없는지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직접 만나 조직위원회 회의 내용을 전달 받았으며, 참고인의 작품 중 <100번째 촛불을 든 성주 주민께>라는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직위 회의에서 상영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작품이 전시되면 시가 곤란해질 수 있다 등의 이야기가 오갔으며, 결론적으로 다수의 조직위 위원들이 전시를 반대하여 해당 작품을 편집하거나 다른 작품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8) ‘권고’라고 주장하는 측(대구시, 대구미협, 전시감독)의 진술 및 관련 증거

(가) 참고인 조OO의 진술(2018. 1. 30.자 진술조서, 11, 14~15면)

- 1) 참고인 조OO는 청년미술프로젝트의 주관단체인 대구미협 사무국장으로, 행사지원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참고인 조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참고인은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철의 작품에 대하여 사드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형식을 가진 작품이 이번 전시에 출품하는 것이 적합한지

에 대한 논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3일자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철의 작품을 두고 이 작품을 전시하면 아주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느냐에 대하여 참고인은 누구의 발언인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사드 관련 작품이 청년미술프로젝트에 전시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가족들이 관람하는 전시에서 이러한 주제가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 3) 참고인은 2017. 10. 대구미협이 발표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의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에서 “전시주제의 큰 원칙인 정치적이 것과 종교적인 것을 배제하는 원칙”에 대하여 공지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는 전시를 진행하는 전시감독에게 조언 차원의 이야기로 전달될 내용이지, 작가들에게 공지될 필요는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22.자 진술조서, 4~7, 13~14면)

- 1) 참고인 김OO은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의 전시감독이었던 자이다. 참고인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참고인은 청년미술프로젝트의 전시컨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사회적 예술입니다. <내 침대로부터의 혁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청년미술프로젝트에서 사회적 예술을 하기로 했던 이유는 청년작가들이 사회적 예술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가장 보수적으로 알려진 대구에서 기획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안서를 대구미협 측에 냈을 때도 이에 대해서 전혀 문제거리는 없었습니다. 본 ‘사회적 예술’의 범주에는 참여한 정치, 사회적 주제뿐만 아니라 환경 등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 3) 참고인은 박문철, 이은영, 윤동희 등 작가들이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를 보이콧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민정(협력 큐레이터), 박문철 등이 지역 작가들을 관리하며 전시감독인 참고인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검열 사건으로 규정하여 선동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진술하였다.
- 4) 참고인은 박문철 감독이 조직위 회의에서 작품에 대하여 권고의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는 예술에 있어서 블랙리스트라 함은 작가가 특정 정당의 소속이라고 하여 배제된다든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작가의 선정 여부

가 결정되는 것, 작가의 정치적 사상 등이 좌파라든가 하는 이유로 전시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화폭력이고, 저는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칠 감독의 경우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도 이 감독을 배제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게다가 이 감독은 영화감독이지 미술작가도 아닙니다. 따라서 검열 논쟁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13일자 조직위 회의에서도 박문칠 감독에 대해서는 “영화가 왜 순수미술전시에 들어왔느냐라는 질문”과 “작품에 대한 예술성과 다큐멘터리 형식에 대한 질의”였다고 진술하였다(6면). 참고인은 박문칠의 작품에 대해서 수정 및 교체 의견이 나온 것은 박문칠 작품의 예술성이 논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6면).

- 5) 참고인은 대구미협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작품은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하여 미리 숙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는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니라 대구미협에서 전시감독인 참고인에게 전달한 ‘조언’에 해당하는 이야기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6) 13일자 회의에서 대구시 공무원이 박문칠 작품에 대하여 “시 입장에서 민원을 받아 곤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민원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은 아니고 운영위원 중에 한 명이 사드와 관련해서 대구 시민들이 이 전시로 인해서 사회적인 위화감, 반목 등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의 말씀을 한 적은 있습니다. 참석한 대구시 공무원인 양OO은 다른 위원들의 이야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7) 참고인은 박문칠의 작품을 출품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이민정 큐레이터가 제안을 했고 저는 사드주제가 좋기는 하지만 전시여건상 그리고 다큐영화라는 장르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작가로서 참여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미술작가로서 참여한다는 것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순수미술 작품으로만 들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박문칠이 먼저 전시에 참여 지원을 해왔으며, 자신은 영화는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참여작가들을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영화를 상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아트페어에서는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참고인 000의 진술(2018. 2. 9.자 진술조서, 7~8면)

참고인 000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3일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칠 작품 출품 여부 논의에 대하여 자신은 그 회의에 참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 대구아트스퀘어의 경우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은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하는게 적합하냐는 의견이 있었다고는 들었다는 진술을 하였다(7-8면).

(라) 참고인 000의 진술(2018. 2. 9.자 진술조서, 9면)

- 1) 참고인 000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으로 대구아트스퀘어 담당자이다. 2017. 10. 13. 조직위 회의 및 실무진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다. 참고인 000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참고인은 대구미협이 발표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작품은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극단적으로 편향된 정치적, 종교적 작품은 안 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3) 13일자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칠의 작품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참고인은 청년미술프로젝트는 순수미술 전시인데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조직위원들 대부분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가족단위로 많이 관람하는 행사인데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박문칠 감독의 작품은 미술인지 아닌지 경계도 모호한데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드라는 주제보다는 형식이 문제”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편집이나 교체에 대해서 해당 작가에게 조직위의 의견을 전달할 때 작가가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4) 13일자 회의에서 대구시 공무원 양OO이 박문칠 작품의 전시 여부에 대하여 이 작품을 전시하여 민원이 들어오면 시가 곤란해질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시가 곤란해진다’는 발언의 취지는 회의에서 조직위원들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발언을 하자 이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의 발언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9면)

(마) 참고인 양OO의 진술(2018. 3. 9.자 진술조서, 7~8면)

- 1) 참고인 양OO은 현재 대구광역시 대구콘서트하우스 관리과장이고,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장을 맡았던 자이다. 참고인은 2017. 10. 13. 자 조직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참고인 양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참고인은 13일 조직위회의에서 박문칠 작품 출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참고인은 “작가와의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작품이 다큐멘터리로 보이고, 순수미술 작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발언과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다큐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 극장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여서 상업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청년 미술프로젝트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위원회 회의의 내용을 들으면서 위원들 간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전시에서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사드라는 주제를 다룬 작품이 전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문칠 감독의 작품에 대해 교체 및 편집이라는 권고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고사항은 작가와 협의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작가가 이를 거부했다면 결과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 진술하였다. 박문칠 작품의 작품성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참고인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은 박문칠 작품이 전시되어 시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조직위원 안OO(대구 화랑협회장) 작성, 2018. 2. 5.자 진술서(2~3면)

- 1) 진술인 안OO은 대구 화랑협회장으로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으로 2017. 10. 13.자 조직위 회의에 참석한 자이다.
- 2) 조직위 회의에서 위원 중 한 명이 “박문칠 감독의 스틸컷은 예민한 사드 문제인데 괜 찮을까요”라고 물으면서 해당 작품을 자세히 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다. 사드는 현재 거론하기에 너무 예민한 문제라는 발언들이 있었고, 박문칠의 다른 작품으로 대체하면 어떨지에 대한 의견이 나와 진술인은 이에 찬성하였다고 기재하였다.

- 3) 진술인은 박문칠 작품에 대하여 해당 작품을 이번 행사에 전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 발언은 청년미술프로젝트의 경우 대구의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여서 사드 반대를 주도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의미였다고 기재 하였다.
- 4)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장 양OO이 “시 입장에서 곤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반대하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다.
- 5) 당시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칠 작품의 출품 여부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전시불가의 입장이 정해졌는지에 대하여 회의에서 발언하였던 위원들이 전부 반대입장이어서 박문칠의 다른 작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통과한 것이라고 진술을 기재하였다.

(사) 조직위원 백OO(퍼블릭아트 대표) 작성, 2018. 3. 5.자 진술서(1~4면)

- 1) 진술인 백OO은 퍼블릭아트의 대표이자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으로 2017. 10. 13.자 조직위 회의에 참석한 자이다.
- 2) 진술인은 2017. 10. 13.자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의 작품에 대하여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진술인은 왜 대구아트스퀘어 최종점검 회의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며 의견을 묻는지 유감을 표명했고, 전시감독에게 권한을 주었으면 전시감독이 작가들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일이지 조직위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진술을 기재하였다.
- 3) 이외에는 다른 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

5. 신청인 윤동희 관련 검열 의혹의 점

가. 신청인 윤동희와 대구미협 간 2017. 9. 11.자 약정서

신청인 윤동희가 주관단체인 대구미협과 체결한 2017. 9. 11.자 약정서 ‘첨부1. 대어 작품목록’에 보면 <붉은 밤>, <망령>, <Flag1>, <Flag2>가 기재되어 있다.

[그림-5] 윤동희와 대구미협 간 2017. 9. 11.자 약정서

청년미술프로젝트 YAP'
YOUNG ARTISTS PROJECT

첨부1. 대어 작품 목록 / 작가명 : 윤동희

연번	이미지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cm)	보침가액(원)
1		붉은 밤	2017	붉은등, 전선, 벽위에 아크 릴페인팅	가변크기	1,000,000
2		망령	2012	516장의 드 로잉	2000x4000	1,000,000
3		Flag1	2017	미라볼위에 맵핑	영상설치	1,000,000
4		Flag2	2017	영상	영상설치	1,000,000
5						

나. 신청인 윤동희 2017. 11. 8.자 면담보고(2면)

2017. 10. 14. 협력 큐레이터 이민정으로부터 <망령>에 대한 제외 요청을 받았다. 다음 날 15일에 협력 큐레이터와 대면하여 직접 작품 교체, 제외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시 참여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다.

다. 2017. 10. 20.자 박문철-김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11-12면)

2017. 10. 20.자 박문철-김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11-12면에는 윤동희 <망령> 제외요청 정황과 관련하여 박정희라는 정치적 인물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7] 2017. 10. 20.자 박문철-김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김OO : 그런데 그 세 시리즈 중에서 「망령」이라고 해서… 뭐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작품은 「망령」이라고 해서 박정희 前 대통령의 얼굴을 아주 크게 그렇게 해서 한 작품이 있었는데, “세 시리즈 중에서 저는 그 시리즈를 빼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시리즈 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잘 얘기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도록에도 그 얘기는 안 나오고 나머지 ‘두 가지 시리즈가 서로 시너지를 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얘기를 다루고 넣어놨더라고요.

박문철 : 예, 예.

김OO : 그러니까 사실은 「망령」이 전시된다는 거는 저희는 몰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박문철 : 예,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전혀 박정희라는 어떤 정치적인 인물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김OO : **아니죠. 문제가 안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시리즈 중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어차피 줄여야 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정희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세 시리즈 중에서 고르자면.

라. 2017. 10. 30.자 박문철-조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9면)

2017. 10. 30.자 박문철, 조OO 간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운동회의 <망령>이 박정희 前 대통령의 얼굴을 연상시켜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8] 2017. 10. 30.자 박문철-조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박문철 : 근데 어쨌든 「망령」이 그래도 박정희 얼굴이 있어서 좀 빠자는 이야기가…

조OO :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걸 조절할 수 있나?**” 그러니까 기획회의에서 그냥 그렇게 나온 거지, 조직위원회의에서 검열하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마. 참고인 이민정의 진술(2018. 1. 26.자 진술조서, 8, 11~12, 17~18면)

(1) 참고인 이민정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 이민정은 조직위원회의 전달인 2017. 10. 12. 조OO(대구미협 사무국장)과 통화에서 조OO가 회의자료 중 박문철 작품의 스틸컷에 문제제기가 들어온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회 작가의 망령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통화에서 이 OO은 운동회의 <망령>도 회의자료에 포함되어 있냐고 조OO에게 물었으나 조

OO는 회의자료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이 조OO에게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되묻자 조OO가 박정희를 연상시킨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 13일 실무진회의에서 김OO(전시감독)이 조직위 회의에서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작품은 다 빼라고 했으니 운동회 작품도 빼야된다고 주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3) 참고인은 실무진회의에서 운동회 작가와 관련된 의견은 실무진 회의가 있었던 주 일요일에 바로 미팅을 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운동회 작가는 <망령>이 제외될 경우 전시의 내용 전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전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 (4) 참고인은 운동회 작가의 전시약정서 체결 당시에 이미 3개 작품을 출품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약정이 체결되었음에도 운동회 작가의 경우 작품수가 너무 많아서 망령에 대한 제외 요청을 하였다는 대구미협과 전시감독 측의 주장에 대하여 다른 작가들과의 공평성 측면에서 그러한 요청을 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다른 작가들 중에서도 몇 개 시리즈를 한꺼번에 출품한 작가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5) 참고인은 운동회 작가의 작품이 박정희 前 대통령의 형상을 가진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18면).

바. ‘권고’라고 주장하는 측(대구시, 대구미협, 전시감독)의 진술

(1)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22.자 진술조서, 17~18면)

- (가) 참고인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3일 실무진회의에서 운동회 <망령>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문제제기의 사유는 해당 작품이 지나치게 기성작가 스타일이고 독창성이 없는 작품이며, 작품의 수량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17면).
- (나) 운동회에게 위 내용은 이민정(협력 큐레이터)가 전달하였으며, 3개의 작품을 출품하기로 이미 약정이 되었던 것은 맞지만 공간의 문제로 인해 약정서 체결 이후에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다) 작품의 수량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 작가 당 한 시리즈만 전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약정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여 출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전시가능한 작품

을 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라) 또한 박문철과의 2017. 10. 20.자 통화에서 윤동희의 3가지 작품 중에 제외되어야 한다면 박정희 前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망령>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참고인 조OO의 진술(2018. 1. 30.자 진술조서, 18면)

- (가) 참고인 조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3일 실무진 회의에서 윤동희 <망령>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간과 관련된 내용의 문제제기였으며 한 작가 당 한 시리즈만 전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윤동희의 경우 3개 시리즈를 낸 상태여서 조정이 필요했다고 진술하였다. 박정희 前 대통령을 연상시켜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 (나) 윤동희와 2017. 9. 11.에 체결하였던 약정서에 대하여도 “약정서는 작가를 잡아두기 위한 관례이지, 약정서에 포함된 작품이 다 전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18면).

(3) 참고인 OOO의 진술(2018. 2. 8.자 진술조서, 11~12면)

- (가) 참고인 O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3일 실무진회의에서 윤동희 작가와 관련해서는 김OO(전시감독)이 왜 이렇게 작품 시리즈가 많냐고 이야기를 하였고 작품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나) 윤동희 <망령>의 경우 박정희 前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 작품은 이 날 보지도 못했으며 작품수만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4) 참고인 OOO의 진술(2018. 2. 9.자 진술조서, 9면)

- (가) 참고인 O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3일 실무진회의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며, 윤동희와 관련해서도 별 문제 없이 전시되는 것으로 결정난 사항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나) 윤동희 <망령>이 박정희 前 대통령을 연상시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참고인은 윤동희와 관련해서는 김OO이 망령에 대해서가 아니라 작품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6. 신청인 이은영 관련 ‘배제’ 의혹의 점

가.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 중 <바다 위로 밤이 걸어온다> 관련 부분

이은영 <바다 위로 밤이 걸어온다>의 작가노트에 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관련 언급이 기재되어 있다.

[표-9]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 중 <바다 위로 밤이 걸어온다> 관련 부분

<바다 위로 밤이 걸어온다>는 세라믹으로 바다의 수면들을 재현한 <2014년 4월 16일> <2014년 9월 14일> <2015년 4월 19일> <2015년 4월 20일> 등의 제목을 가진 연작 시리즈에서 출발한다. 각기 하나하나의 작품에 세부적으로 붙여진 이 날짜들은 세월호부터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선들이 전복되었던 날짜들이다.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내 개인의 기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보는 이의 기억과 상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이 날짜들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으로, 공적이면서도 사적으로, 무작위적이면서도 명시적으로 작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2014년 4월 이후, 그리고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려던 난민들에 대한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던 그 때 이후 다시 보았던 바다, 그리고 호수는 더 이상 예전에 내가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자유와 평화로움을 주던 수면의 모습들은 차마 위로조차 건널 수 없는 고통이 잠식되어 있는 검푸르고 깊은 슬픔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뭐라 표현 할 수도 없고 움직이기조차 힘든 슬픔의 이야기는 모든 시간과 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였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어떤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감히 어떤 언어로, 형식으로도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나. 김OO-이민정 간 이은영 작가노트와 관련하여 분량 조절 논의 2017. 10. 2.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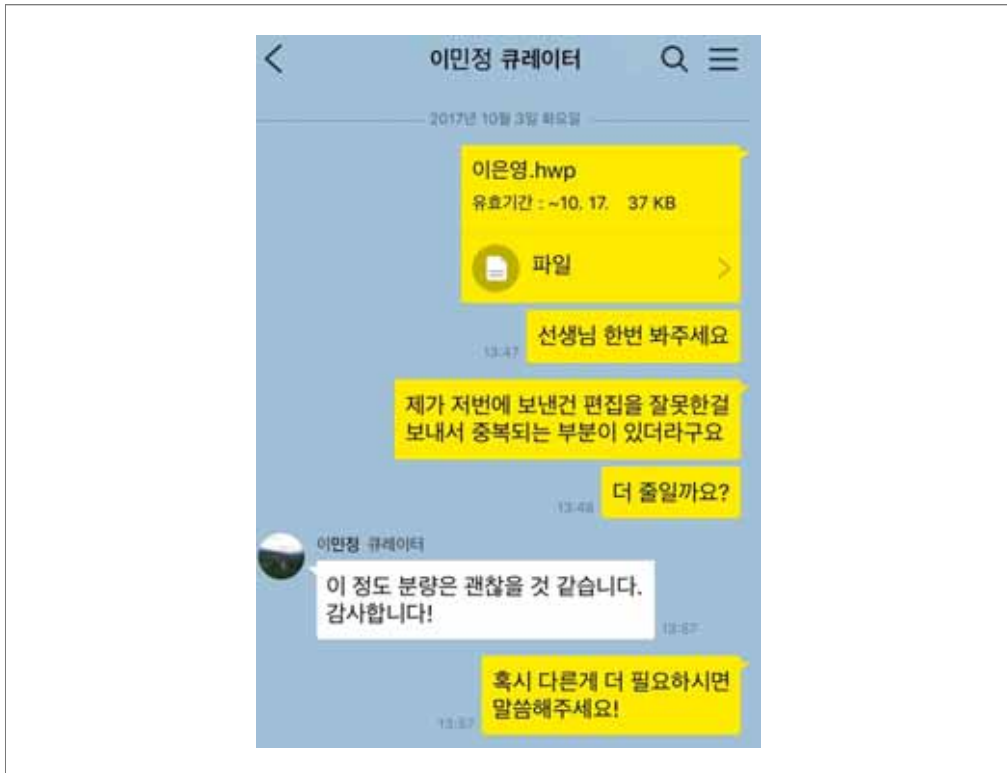
이메일 및 이민정-이은영 작가노트 분량조절과 관련한 2017. 10. 3.자 카카오톡 메시지

김OO(전시감독)과 이민정(협력 큐레이터)가 2017. 10. 2.자 메일을 통해 이은영의 작가노트 분량조절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이은영은 2017. 10. 3.에 이민정에게 분량을 조절한 작가노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다.

[그림-6] 김OO, 이민정 간 이은영 작가노트 분량 조절 논의 2017. 10. 2.자 이메일



[그림-7] 이민정-이은영 간 작가노트 분량조절과 관련한 2017. 10. 3.자 카카오톡 메시지



다. 2017. 10. 31.자 박문철-조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6~7면)

2017. 10. 31.자 박문철과 조OO(대구미협 사무국장) 간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실무진회의에서 이은영 작가노트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실무진회의에서 언급이 있었으며, 분량 조절 과정에서 "조금 더 유화스럽게 할 수 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0] 2017. 10. 31.자 박문철-조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박문철 : 그리고 저도 죄송하지만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민정 큐레이터님 얘기밖에 못 들었는데, 이어진 실무회의에서는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OO : 아, 세월호 부분에는 일단은 저희가 텍스트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리고 텍스트에서 세월호 부분이 나온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나오는 건 있었지만 그게 뭐고? 텍스트 양이 길어서 줄여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 중략

조OO : 그리고 거기는 나중에는 그냥 가도 무방하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박문철 : 전혀 그러면 세월호라는 얘기가 없었던 건가요?

조OO : 세월호라는 이야기는 있었죠. 있었지만 그걸 줄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유화스럽게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기획회의니까 모든 걸... 조직위원회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박문철 : 예.

(...) 중략

박문철 : 그러니까 세월호 표현을 조금 더 유화적으로 하고 길어도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OO : 예. 권고사항하고는 다른 이야기고, 그거는 기획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과정이었어요.

라. 2017. 10. 13.자 실무진회의에서 이은영 작가노트와 관련한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

(1) '배제'를 주장하는 측(협력 큐레이터, 피해 작가)의 진술

(가)참고인 이민정의 진술(2018. 1. 26.자 진술조서, 18~19면)

- 1) 참고인 이민정은 이은영 작가와 관련된 작가노트 수정요청 경위에 대하여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3일 조직위 회의 이어진 실무진 회의에서 이은영의 작가노트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고 작가노트에 '세월호' 언급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감독 김OO이 꺼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 OOO이 세월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고 물었고, 김OO이 작가노트에 언급이 된다고 하니, 이OO이 작가노트에서 ‘세월호’라는 단어를 빼면 되지 않겠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실무진회의에서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 수정요구 사항이 결정이 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실무진회의 이후 참고인은 이은영에게 위 수정의견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 참고인은 작가의 작가노트는 작품에 이미지로 표현이 안 되는 작가의 이야기가 담긴 것이고, 이 또한 작업의 연장선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 요구 또한 작가 작품에 대한 검열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3) 전시감독 및 전시주관·주최 측은 이와 관련하여 분량조절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참고인에 따르면 이미 2017. 10. 초에 김OO 감독과 협의하여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 분량조절 문제를 작가에게 요청하여 수정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참고인 이은영의 진술(2018. 2. 9.자 진술조서, 4~8면)

- 1) 참고인 이은영은 미술작가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참여가 예정되었으나 2017. 10. 13. 실무진회의 이후 작가노트에서 ‘세월호’ 관련 부분 수정 요청을 받고 전시참여를 거부한 자이다. 참고인 이은영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참고인은 위 전시참여를 거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7. 10. 16. 무렵 유선상으로 이민정 협력 큐레이터로부터 작가노트 수정 요청을 받았는데, 요청의 내용은 ‘세월호’라는 단어를 빼달라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4면). 참고인은 이민정에게 “사회적 예술”이라는 전시컨셉과 자신을 비롯한 특정 작가들에게 작품의 수정, 교체, 제외 및 작가노트 수정요구를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3) 이후 전시감독 김OO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김OO은 참고인의 작가노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민정 큐레이터가 말을 잘못 전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OO은 계속하여 작가노트에 대한 수정요구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였고, 통화하고 다음 날 참고인의 오픈 스튜디오에 찾아왔고 참고인이 13일 실무진회의에서 참고인의 작가노트에서 ‘세월호’라는 단어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전시감

독 김OO이 아니냐고 하자, 그제서야 김OO이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를 왜 작가에게 전달을 하나면서 낯빛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김OO은 계속하여 내부적으로 한 이야기이지, 작가에게 전달될 내용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4) 참고인은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 진행 과정에서 2017. 10. 초에 이미 이민정 큐레이터로부터 한 차례 작가노트에 대한 분량 조절 요청을 받아 수정본을 송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5) 참고인은 2017. 10. 18. 무렵, 대구미협으로부터 전시에 참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전시 참여 거부 의사를 재차 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6) 참고인은 작가에게 작가노트란 왜 이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작업에 임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작가노트 수정과 관련하여서도 통상적으로 분량이나 교정·교열의 문제이지, 이번 경우처럼 특정 단어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권고’라고 주장하는 측(대구시, 대구미협, 전시감독)의 진술

(가)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22.자 진술조서, 18~19면)

- 1) 참고인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7. 10. 13.자 조직 위원회의 이후 이어진 실무진회의에서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회의 이전 작가선정 당시에 이민정 큐레이터에게 대구에서 세월호 관련 전시를 해도 괜찮겠냐고 물은 적이 있고, 13일 실무진회의에서는 작가노트 분량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 이미 2017. 10. 초에 한 차례 분량과 관련하여 이은영 작가에게 요청을 하여 수정본을 받은 사실이 있지 않는지에 대하여는 10월 초에는 한 페이지 분량으로 작가노트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의 수정본을 받았기 때문에 분량 부분에 대하여 재차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조OO의 진술(2018. 1. 30.자 진술조서, 8~9면)

- 1) 참고인 조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7. 10. 13.자 조직 위회의 이후 이어진 실무진회의에서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분량조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8면).
- 2)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에 대하여 '세월호'라는 단어만 작가노트에서 제외하는 수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분량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여러 의견들 중 하나였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두는 것으로 진행했던 사항이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이 세월호 부분 수정 발언을 했었는지에 대하여, 참고인이 세월호 이야기를 했던 것은 맞지만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반복하였다. 또한 실무진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이민정 큐레이터가 작가에게 전달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3) 참고인에게 박문철과 2017. 10. 30.자 전화통화에서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 수정과 관련하여 세월호 부분을 좀더 '유화적'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 표현의 의미를 묻자, 참고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은 분량조절과 관련된 것이었지 세월호 부분을 삭제하라는 식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 OOO의 진술(2018. 2. 9.자 진술조서, 8~9면)

- 1) 참고인 O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 OOO은 2017 대구아트스퀘어의 담당자가 아니면서도 2017. 10. 13.자 실무진회의에 참석한 것은 당시 김OO 전시감독과 이민정 협력 큐레이터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정리하고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 수정과 관련하여서도 별 문제 없다고 결정되었다는 사실만 기억이 나고 이외의 논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참고인 OOO의 진술(2018. 2. 9.자 진술조서, 11면)

- 1) 참고인 O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이 2017. 10. 13.자 실무진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청년미술프로젝트의 경우 행사진척이 너무 늦어

행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등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 실무진회의에서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은영 작가 작품도 함께 보았습니다. 전시감독인지 큐레이터인지 작가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014. 4. 16.’이 세월호 사건이 난 날이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뭐가 문제냐, 그냥 하면 되지 하고 넘어갔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박문철에 대한 ‘배제’가 있었는지 여부

(1) 13일 회의 전날(2017. 10. 12.) 회의자료상 박문철의 작품 스틸컷에 대하여 대구시 및 조직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여부

참고인 이민정(협력 큐레이터)에 대한 2018. 1. 26.자 진술조서, 참고인 조OO(대구 미협 사무국장)에 대한 2018. 1. 30.자 진술조서, 참고인 OOO에 대한 2018. 2. 9.자 진술조서, 참고인 OOO에 대한 2018. 2. 9.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당시 13일 조직위 회의 자료가 회람되면서 OOO(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으로부터 조OO에게 회의자료와 관련된 내용의 전화가 왔던 사실은 확인되었다.

참고인 이민정과 위 다른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조OO-OOO 간 전화 통화의 내용인데, 참고인 이민정은 회의자료상 박문철 작품의 스틸컷에 대하여 대구시 공무원 및 조직위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조OO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참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회의자료가 부실한 점에 대한 지적이었지, 박문철 작품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조OO와 OOO의 전화통화에서 박문철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 일단 참고인 이민정은 12일 조OO로부

터 2차례 전화가 왔는데, 첫 번째 통화에서는 000으로부터 박문칠 작품 스틸컷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니 이를 회의자료에서 제외하자고 말하였고, 한 시간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조직위 위원들도 문제제기가 있으니 회의자료에서 제외하지 말고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칠의 작품을 상영하고 논의를 해보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민정에게 박문칠 작품의 영상을 13일 회의에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① 당일 이민정이 박문칠에게 연락하여 조00의 지시대로 작품 영상파일 2개를 송부받은 점, ② 그리고 영상 송부를 부탁하며 박문칠에게 조00와 대구시 및 조직위원 간에 있었던 상황을 전달하며 영상파일 전송을 요청하여 이에 대하여 박문칠이 영상을 이메일로 이민정에게 송부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메일이 있는 점, ③ 박문칠이 이민정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을 보면 “담당 공무원이나 미술협회 관계자 분들께서 작품의 방향”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적시한 점이 이민정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④ 참고인 이민정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민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박문칠 작품의 외부 협찬사인 ‘시네마달’의 로고가 홍보배너에서 삭제된 경위를 보면, 참고인 이민정과 조00의 진술이 12일 회의자료가 회람되었던 날 조00가 해당 업체의 로고를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민정에게 하였고, 조00도 12일에 자신이 홍보배너에 ‘시네마달’이 포함되는 것에 보류조치를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네마달’은 14일에 설치된 홍보배너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조00 또한 진술에서 박문칠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조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따르면 당시 회의자료에서 박문칠 작품의 스틸컷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이민정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2) 2017. 10. 13.자 조직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박문칠의 <100번째 촛불을 든 성주주민께> 등에 대한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

(가) ① 2017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2017. 10. 13.자 2차 회의 회의록상 “정치적 성향이 강한 작품 내용 검토 후 권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대구미협 작성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의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문에 따르면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배제하는 원칙”, “직접적인 현실정치를 반영하는 박문칠 감독의 ‘파란나비’가 문제가 되어 동영상을 조직위원들이 감상하였고 적합성에 대한 논

의가 있었으며”, “현재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드배치에 대한 논란이 들어간 작품에 대한 전시가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박문철의 해당 작품이 “본 전시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데에 조직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가에 대한 다른 작품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전시되어 있는 점, ③ 대구시 측 2018. 1. 16자 회신자료에 따르면 13일자 조직위 회의에서 논의된 특정 작가의 작품에 대한 ‘권고’ 내용은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작품은 지양”하자는 것이 조직위 위원들의 의견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2017. 10. 20.자 박문철-김OO(전시감독)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⑤ 2017. 10. 31.자 박문철-조OO(대구미협 사무국장)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⑥ 참고인 이민정, 박문철에 대한 각 2018. 1. 26., 2018. 1. 24.자 진술조서, ⑦ 조직위원 안OO, 백OO 작성 각 2018. 2. 5., 2018. 3. 5.자 진술서에 따르면 13일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철 작품이 상영되었고, 작품의 내용과 관련하여 전시출품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조직위의 ‘권고’ 의견으로 정리되어 박문철에게 이민정이 재편집 및 교체 요청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참고인 조OO, 김OO 등은 13일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철의 작품이 상영된 것이 이 작품이 영상작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당시 회의자료에 보면 박문철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의 영상작품이 5개 이상 발견⁸⁾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철의 작품만 상영된 점 또한 박문철 작품에 대한 검열 작동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당시 조직위 회의가 1시간 남짓 진행되었는데 이 중에 박문철의 작품은 당시 10분짜리로 이를 상영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회의시간의 대부분을 박문철 작품의 출품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이 또한 검열이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대구시 공무원 양OO의 박문철 작품에 대한 반대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① 참고인 이민정에 대한 2018. 1. 26.자 진술조서에서 “류OO가 양OO 팀장에게 대구시 입장을 묻자 만약에 이 작품을 전시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시가 곤란해질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22.자 진술조서에서 양OO이 사드와 관련된 작품의 전시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입

8) 2017 대구아트스퀘어 2차 회의자료 중 13면 심래정(영상), 15면 박제성(영상), 19면 방정호(영상), 장석준(영상), 21면 Marie Vic(영상, 설치), 22면 Jia-Jen Lin(영상), 23면 Vandana(영상, 설치), Joaquin Segura(영상, 설치) 등

장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참고인 000에 대한 2018. 2. 9.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양00이 박문칠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로 확인된다.

나. 윤동희에 대한 ‘배제’가 있었는지 여부

- (1) 신청인 윤동희와 대구미협 간 2017. 9. 11.자 청년미술프로젝트 작품대여 약정서, 2017. 10. 20.자 박문칠-김00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2017. 10. 30.자 박문칠-조00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참고인 이민정에 대한 2018. 1. 26.자 진술조서를 종합하면, 윤동희 <망령>에 대한 제외 요청은 해당 작품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참고인 김00, 조00, 000, 000 등은 윤동희 <망령>에 대한 제외요청은 작품 수량이 전시공간 및 다른 작가들과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미 2017. 9.에 체결된 약정서에 윤동희 작가는 총 3개 시리즈를 출품하기로 약정했던 점, 다른 작가들의 경우 3개 이상의 시리즈를 출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⁹⁾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이은영에 대한 ‘배제’가 있었는지 여부

- (1) 2017. 10. 31.자 박문칠-조00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참고인 이민정에 대한 2018. 1. 26.자 진술조서, 참고인 이은영에 대한 2018. 2. 9.자 진술조서를 종합하면, 실무진 회의에서 이은영 작가노트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은영에게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2) 참고인 조00, 김00, 000 등은 이은영 작가노트와 관련해서는 분량 조절의 문제였지, ‘세월호’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한 수정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00-이민정 간 이은영 작가노트와 관련하여 분량 조절 논의 2017. 10. 2.자 이메일 및 이민정-이은영 작가노트 분량조절과 관련한 2017. 10. 3.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미 2017. 10. 초에 분량조절이 있었던 사실, 당시 회의 참석자

9)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도록” 중 고윤정 작품 수 5개(16~19면), 김소연 작품 수 7개(24~27면), 박제성 작품 수 3개(44~47면), 박준상 작품 수 5개(48~51면) 등

인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 000의 진술을 보면 회의에서 세월호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 당시 협력 큐레이터였던 이민정이 2017. 10. 16. 이은영에게 2017. 10. 16. 작가노트 수정에 대해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분량조절이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라. 대구시의 개입 여부

- (1) 2017 대구아트스퀘어 추진계획서, 대구시 공무원인 참고인 000, 양00의 진술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아트스퀘어의 행·재정 지원 및 상황관리, 유관기관 협력을 담당하며, 예산집행 이외의 행사내용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2017. 10. 13.자 조직위 회의에 대구시에서 참여한 것 또한 전체적인 행사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관’한 것이었다.
- (2) 2017. 10. 13.자 조직위회의 및 실무진회의에서 전시내용과 관련된 발언이 대구시 공무원(양00, 000)으로부터 있었던 점, 조직위회의 전달인 12일에 회의자료와 관련하여 조00에게 이00이 전화를 걸어 특정 작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던 점 등을 보면 대구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선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대구시의 개입 정도와 관련하여 대구시장 등 문화예술정책과 상위 부서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검열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이후 2017년에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기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던 사건과는 시기적인 면에서 궤를 달리한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계 좌파배제라는 국정기조에서 출발하여 당시 야당지지, 정부비판 활동, 세월호, 용산참사 등 시국선언 참여자를 배제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검열 의혹 사건

또한 사드 반대, 세월호, 박정희 前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성향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전시의 주최, 주관 측이 모두 부담을 느껴 해당 작가들에게 작품의 수정, 교체, 제외 등을 요구한 사건으로 차별 사유 및 방식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시기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한 유형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은 피해 작가들이 청년작가들로 여러 정부비판적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력이 드러나지 않아 소위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연쇄작용에 따라 권력에 비판적인 의견과 행위를 한 문화예술인을 주최 측인 대구시에서 배제한 경우에 해당되며, 또한 주관단체인 대구미협 및 전시감독 측인 민간 영역에서 내재화된 블랙리스트 방식의 ‘배제’가 작동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93

홍성담의 전시회 무산, 보수단체 시위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93

홍성담의 전시회 무산, 보수단체 시위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시6|홍성담의 전시회 무산, 보수단체 시위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홍성담은 2012년 11월 평화박물관의 '유신의 초상전' 기획 전시회에 보수단체들이 전시장에 난입하여 시위를 하고, 2014년 8월 광주 비엔날래에 걸개그림 '세월 오월' 전시가 무산되고, 2015년 3월 독일 전시회에 초청되었으나 국내 운송사가 작품 운송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 전시회에서 신청인 동의 없이 그림이 철거되고, 보수단체들이 자택에 불법 난입하여 시위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는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보수단체들의 2015년 평화박물관 전시 방해 및 고발

2012년 평화박물관의 '유신 40년 기획 전시, 3부 유신의 초상'에 신청인은 박근혜 출산그림으로 알려진 '골든타임 - 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를 출품하였다. 이를 이유로 불명의 사람들이 신청인의 작품을 도용한 플래카드를 만들고, 불법적인 항의시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의로운 시민행동'의 정OO가 평화박물관을 기부금품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 또한 신청인의 작품 전시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정치적 작품이라서 운송을 거부당한 <세월오월>

범양해운은 독일 미술협회 nGbk와 계약을 맺고 <세월오월>을 포함한 신청인의 작품 5종을 독일까지 운송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운송품이 박근혜 풍자와 비판 내용의 정치적 미술작품인 것을 확인한 후 업체 운영에 애로점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nGbk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송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2015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철거된 '김기종의 칼질'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한 아트페어 '공허한 제국'에 신청인은 미 대사 니퍼트 피습사건을 소재로 한 그림 '김기종의 칼질'을 출품하였다. 이에 '어버이연합'은 전시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과 불법 시위 등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신청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품을 철거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2014년 8월 광주비엔날레 '세월 오월' 전시 무산과 관련하여 "2017직시1,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으로 직권 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본 사건의 조사 사항에서는 제외하였다.

**붙임 : [홍성담의 전시회 무산, 보수단체 시위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시6, 홍성담의 전시회 무산, 보수단체 시위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신청인] 홍성담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홍성담(이하 신청인)은 2012년 11월 평화박물관의 ‘유신의 초상전’ 기획 전시회에 보수단체들이 전시장에 난입하여 시위를 하고, 2014년 8월 광주 비엔날래에 걸개 그림 ‘세월 오월’ 전시가 무산되고, 2015년 3월 독일 전시회에 초청되었으나 국내 운송사가 작품 운송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 전시회에서 신청인 동의 없이 그림이 철거되고, 보수단체들이 자택에 불법 난입하여 시위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는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 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 결정 등)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2017년 12월 22일 제20차 전원위원회 의결(조사기록 103쪽)을 통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따라 ① 2012년 11월, 평화박물관 기획전시 과정에서의 보수단체 시위 경위, ② 2015년 3월, 독일 베를린 전시 과정에서의 국내 운송업체의 운송 거부 경위, ③ 2015년 9월,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관의 전시 과정에서의 작품 철거 경위 및

보수단체 시위 경위 등을 조사하였다.

단,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5년 광주 비엔날레에서의 걸개그림 ‘세월 오월’이 전시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2017직시1,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으로 직권 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본 사건의 조사 사항에서는 제외하였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 [표-1]과 같이 문서, 메일 등 모두 26건에 대하여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 1. 문건 등 자료 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nGbk와 신청인이 맺은 전시계약서 (2015. 2. 24.)	nGbk	2017. 12. 19.	
2	범양해운이 nGbk에 제출한 견적서 (2016. 7. 27. ~ 2016. 8. 16.)	범양해운	2017. 12. 19.	
3	범양해운과 nGbk가 주고받은 메일 (2015. 1. 29. ~ 2015. 3. 19.)	범양해운, nGbk	2017. 12. 19.	
4	신청인이 nGbk에 발송한 메일 (2015. 2. 24.)	범양해운, nGbk	2017. 12. 19.	
5	VERBOTENE BILDER BANNED IMAGES (2015년 nGbk 주최 전시회 도록) (2015. 3. 31.)	nGbk	2017. 12. 19.	2017시6 자료 - 1
6	2012년 평화박물관 전시 웹 포스터, 출품작(2012. 11. 30.)	오OO	2018. 1. 19.	
6	2012년 평화박물관 고발 관련 자료 (2012. 11. 30.)	오OO	2018. 1. 19.	
7	2015 SeMA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공허한 제국’ 전시회 도록 (2015. 9. 40)	서울시립 미술관	2018. 2. 7.	2017시6 자료 - 2
8	2015 SeMA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공허한 제국’ 후(後) 도록 (2016. 12.)	서울시립 미술관	2018. 2. 7.	2017시6 자료 - 3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9	2015년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총감독 협약서 (2015. 7. 1.)	서울시립 미술관	2018. 2. 7.	
10	참고인 김OO 진술서 (2018. 2. 15.)	김OO	2018. 2. 15.	
11	안산경찰서 집회 신고 사실조회 (2018. 2. 28)	안산경찰서	2018. 2. 28.	
12	2015년 nGbk 전시회 사진	유OO	2018. 3. 6.	
13	종로경찰서 집회 신고 사실조회 (2018. 3. 6.)	종로경찰서	2018. 3. 6.	
14	nGbk 전시회 당시 신청인이 그린 벽화, 작업과정 사진	nGbk	2018. 3. 6.	
15	Ok & Kim 블랙리스트 명단 (2015.1.)	특검 6-2	2018. 3. 16.	
16	리스트-2014 2015년도분(654명)-확정	문화체육관광부	2018. 3. 16.	
17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 붙임16, '문에게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2017. 10. 31.)	국가정보원	2018. 3. 16.	
18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공소장 (2017. 11. 6.)	서울지방검찰청	2018. 3. 16.	
19	[언론기사] [단독]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에 걸린 '리퍼트 美대사 테러' 옹호 그림 (2015. 9. 8.)	동아일보	2018. 3. 16.	
20	[언론기사] '김기종의 칼질' 홍성담 집 앞 항의 집회 (2015. 9. 21.)	데일리대한민국	2018. 3. 16.	
21	[동영상] 2015. 09. 18. 집회 촬영 영상	데일리대한민국사 이트	2018. 3. 16.	
22	[언론기사] 어버이연합, '김기종의 칼질' 전시 관련 홍성담 작가 아파트 항의 방문 (2015. 9. 20.)	경기일보	2018. 3. 16.	
23	[언론기사] 국정원 직원 "어버이연합 시위동원... 매달 200만~300만원 줘" (2018. 1. 15.)	news1	2018. 3. 16.	
24	[언론기사] 박원순 시장 "리퍼트 대사에 직접 사과할 것" (2015. 9. 10.)	동아일보	2018. 3. 16.	
25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2018. 3. 16.	
2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2018. 3. 16.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10인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대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홍성담	신청인	1회 진술녹음 (2017. 11. 22.) 조사기록 3 ~ 44쪽
2	유OO	nGbK 큐레이터	1회 진술녹음 (2017. 12. 19.) 조사기록 45 ~ 80쪽
3	오OO	평화박물관 사무처장	1회 면담 보고 (2018. 1. 19.) 조사기록 110 ~ 115쪽
4	오OO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1회 면담 보고 (2018. 2. 6.) 조사기록 132 ~ 134쪽
5	김OO	서울시립미술관장	1회 면담보고 (2018. 2. 8.) 조사기록 140 ~ 143쪽
6	최OO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장	1회 진술조서 (2018. 2. 9.) 조사기록 144 ~ 154쪽
7	홍OO	2015 공허한 제국 총감독	1회 진술녹음 (2018. 3. 3.) 조사기록 163 ~ 191쪽
8	김OO	범양해운 대표이사	1회 진술조서(2018. 3. 6.) 조사기록 195 ~ 205쪽
9	양OO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기획관	1회 진술서 (2018. 3. 15.) 조사기록 218 ~ 222쪽
10	이OO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1회 진술서 (2018. 3. 16.) 조사기록 223 ~ 2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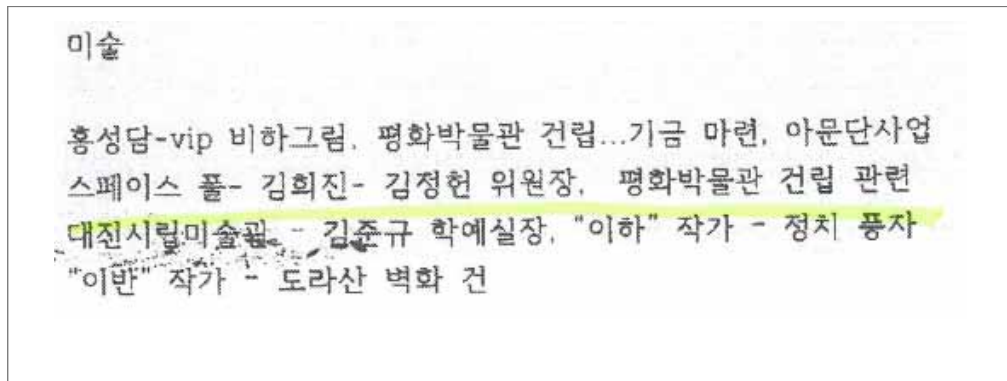
제3절 | 조사 내용

1.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신청인은 위원회 확보자료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건에서 ‘6. 기존관리 리스트 - 149명, 미술-4명 ①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 홍성담(작가, VIP 비하 그림)’(조사기록 279쪽)이라 등재되어있으며, [그림-1]의 ‘Oh & Kim’ 블랙리스트 명단1)

에는 ‘홍성담 - VIP 비하그림, 평화박물관 건립... 기금 마련’(조사기록 249쪽)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림-2]의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²⁾(조사기록 262쪽)에서 ‘A급’으로 분류, 등재되어 있다. 또한 신청인의 이름은 故 김영한 업무수첩에도 7차례나 등장한 것으로 봤을 때, 신청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요주의 문화예술인으로 지정,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Oh & Kim’ 블랙리스트 명단 중 신청인 이름이 등재된 부분



[그림-2]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중 신청인이 A로 분류, 등재된 부분

74	미술	허달용	민예총 이사	C
75	미술	홍선웅	10.10 「노나메기재단」 설립 추진위원	B
76	미술	홍성담	前민족민중미술운동 전국연합 공동대표	A
77	연극	권병길	임수경 후원사업회 회원	B
78	연극	김경원	08.2 MB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C

- 1)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이 작성한 후 2015. 7.경 오OO에게 인계한 문건으로, 특검 작성의 오OO에 대한 2016. 12. 27. 진술조서 제16쪽
- 2)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 붙임16,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2017.10.31.) 43쪽.

2. 2012년 평화박물관 전시회 보수단체 시위 및 고발 관련

가. 평화박물관의 유신 40년 6부작 유체이탈 전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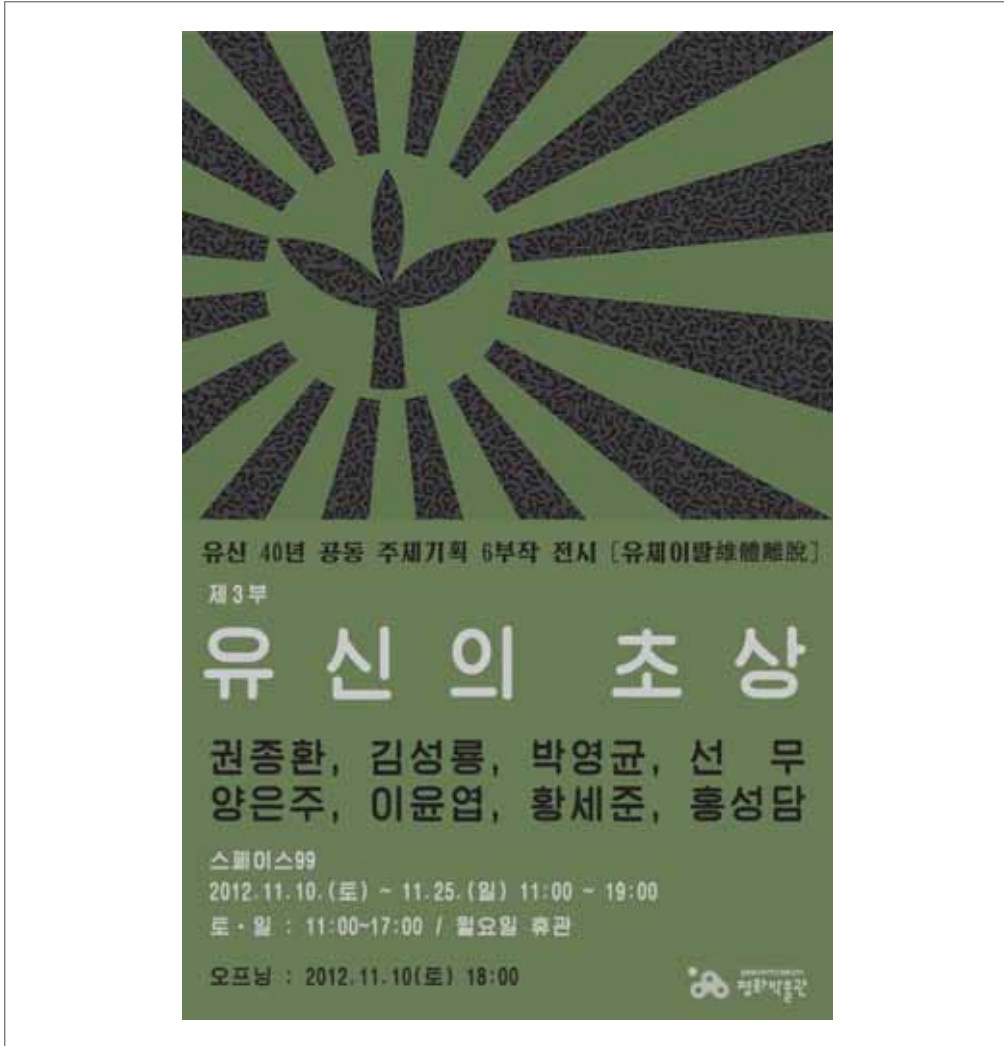
2012년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³⁾(이하 평화박물관)에서는 1972년 유신 선포 40년을 맞아 사단법인 아트스페이스 풀과 함께 ‘유신 40년 공동 주제 기획 6부작 전시 유체이탈(維體離脫)⁴⁾’을 진행하였다. ‘유체이탈’은 ‘10월 유신’이라는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몸과 마음에 남은 유신의 영향을 풍자, 성찰하기 위한 전시들이 기획되었다. 평화박물관에서 전시공간으로 운영하는 스페이스 99, 아트스페이스 풀,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였다.

1부 <국가의 소리>는 김정현, 양아치가 참여하였으며, 08. 28. ~ 09. 26. 진행되었다. 2부 <구국의 영단>은 한홍구, 최원준의 참여로 10. 17. ~ 11. 07. 진행되었다. 3부 <유신의 초상>은 신청인과 함께 김성룡, 박영균, 선무, 양은주, 이윤엽, 황세준 등 7명의 작가가 참여하였으며, 11. 10. ~ 11. 25. 진행되었다. 4부 <유신의 초상>은 김경호, 김동규, 권동현, 서평주, 이완, 정기훈이 참여하여, 11. 28. ~ 12. 13. 동안 진행되었다. 5부는 김소령, 지용일이 공동작업한 <지금 이곳에 어우리는 어떤 우연>과 권기예, 김규림이 참여한 <일방통행>이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유체이탈’ 전시 전기간에 걸쳐 09.20 ~ 12. 19 진행되었다. 6부는 10.17부터 진행하였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각지 미술공간들의 참여로 진행하였다.

3)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는 전쟁과 폭력의 고통을 기억하며 생명인권평화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시키기 위한 평화박물관 건립을 목적으로 2006년 2월 16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백낙청, 오수성, 이옥선, 김정현(상임대표)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문화예술 작품의 전시와 평화교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4) 유체이탈(遺體離脫)이 정확한 표현이나, ‘유신체제를 벗고 떠나다’라는 의미를 담아 ‘유체이탈(維體離脫)’로 표기한 것으로 추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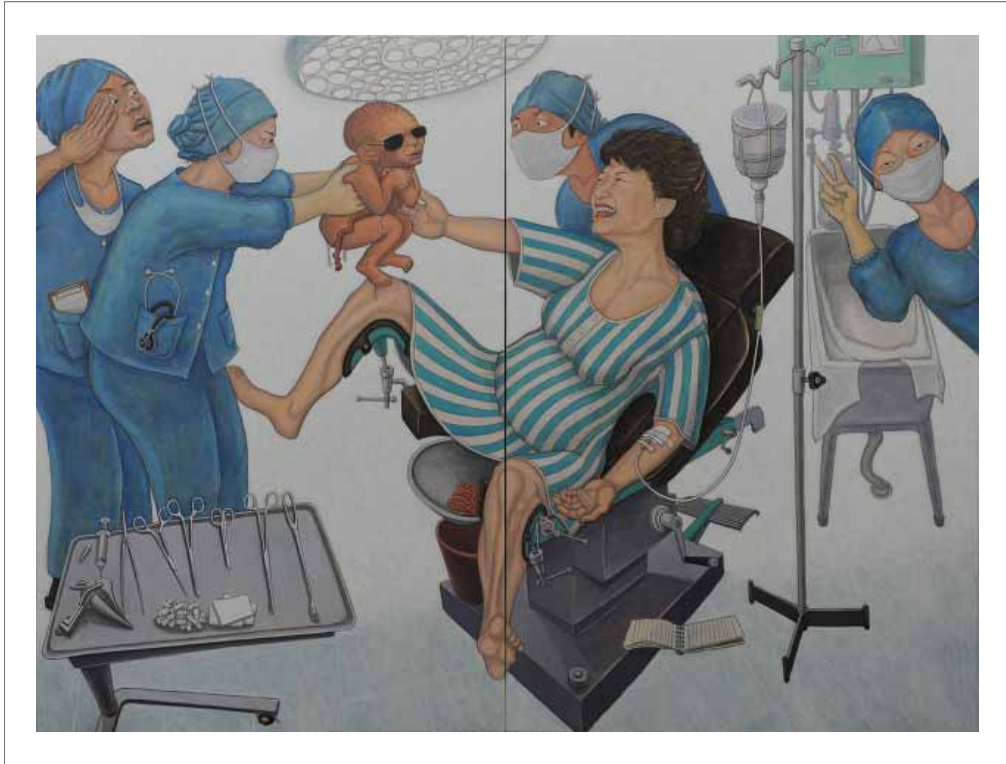
[그림-3] 유신 40년 공동 주제기획 6부작 유채이탈 - 3부 “유신의 초상” 웹포스터



나. 신청인의 출품작

신청인은 <유신의 초상> 전시에 이른바 ‘박근혜 출산그림’이라 알려진 ‘골든타임 - 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194×265cm, 캔버스에 유채, 2012)’과 함께, ‘바리깡I - 우리는 유신 스타일!(194×130.5cm, 캔버스에 유채, 2012)’, ‘바리깡 II - 우리도 유신 스타일!(162×130.5cm,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2)’ 등 총 3건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그림-4] '유신의 초상'에 출품한 '출산그림'으로 알려진 신청인의 작품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194×265cm, 캔버스에 유채, 2012)



다. 전시회 항의 시위 및 고발

(1) 전시회 항의 시위 단체 관련

참고인 오OO은 평화박물관 사무처장으로 2012년 당시 평화박물관이 참여한 유신 40년 기념 전시회 '유체이탈'을 총괄 담당자이다. 오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보수단체들이 신청인의 그림 전시에 대해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와 욕설이 섞인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조사기록 111쪽)을 하였다. 또한, 단체명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전시회장에 찾아와 신청인을 북한으로 보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펼치고 항의집회를 하였다고 하고, 마치 인증 사진 찍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였고 30분 정도 시위를 진행하고 철수하는 등 상당히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조사기록 111쪽)하였다.

또한 오OO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와 제출한 사진 자료(조사기록 113쪽)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그림을 도용하여 ‘예술을 위장한 친북좌익 정치예술가는 즉각 평양으로 가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만들어 시위하고 있는 모습과 실내에서 신청인 작품 관련 규탄 집회로 추정되는 모임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사진들에서 ‘범민족통일국민화합(범민단), 나라바로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 등의 단체명을 확인하였다.

[그림-5] 신청인 작품 관련 실내 규탄 집회로 추정되는 사진 - 평화박물관 오OO 사무처장 제출



‘범민족통일국민화합’, ‘나라바로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는 단체 인터넷 사이트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행정안전부 웹사이트(www.mois.go.kr)를 통해 사건이 발생하였던 2012년 당시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12. 12. 31.)’과 2018년 3월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위 단체들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임의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단체로 판단되며, 종로경찰서는 11월 경 평화박물관 전시관련 종각역 주변의 집회 신고 유무, 참여 단체 등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집회 시위 유무 확인되지 않음’의 답변(조사기록 194쪽)을 제출하였다.

(2) 평화박물관 고발 관련

오○○의 진술과 인터넷 사이트⁵⁾에 게시된 고발접수증(조사기록 126쪽), 언론보도⁶⁾ 등을 종합하였을 때, 2012년 11월 30일, ‘정의로운 시민행동 정○○’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평화박물관이 기부금품을 불법 모금한 것이라는 고발취지(조사기록 127쪽)를 밝히며, 이○○ 이사장, 한○○ 상임이사를 비롯하여 평화박물관 이사와 감사 등 14인을 피고발인으로 고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의 운영 사이트의 고발 자료(조사기록 126쪽)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한 결과, ‘정○○’는 물론 ‘정의로운시민행동’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이트에 게시된 고발접수증, 고발취지를 살펴보면, ‘정○○’가 고발한 사항은 평화박물관의 기부금품 모집 위반에 대한 내용임에 반해, ‘고발 취지’에서는 신청인이 평화박물관 전시에 출품한 작품을 언급하며 ‘박정희 낳는 박근혜 그림으로 알려져 세간의 물의를 일으킨 단체’로 평화박물관을 소개하고 있으며, ‘홍성담 문제 그림 관련 언론 기사’를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2015년 독일 nGbk 전시회 작품 운송 거부 관련

가. 독일 nGbk 전시회 개괄

신청인의 진술(조사기록 7쪽), 독일 교포로 nGbk의 운영위원인 참고인 유○○의 진술(조사기록 49쪽), 2015년 nGbk 전시회 도록(2017시6 자료 - 1), nGbk 웹사이트, Wikipedia 사이트 등을 통해 아래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Neue Gesellschaft für bildende Kunst(New Society for Visual Arts, 신사회미술협회)(이하 nGbk)는 1969년에 설립되었으며, 연간 10억 이상의 독일 정부의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미술협회다. 2015년, nGbk는 동북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 대만, 일본 등에서 정치적으로 탄압받거나, 시민사회와 충돌을 겪는 예술

5) <https://blog.naver.com/mutanavy> - 정○○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정의로운시민행동’ 블로그

6) 시사브리핑, 〈보수단체 대표의 고발과 수사기관의 무리한 압수수색 -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 회원 명부 압수수색은 과잉수사”〉, 시사브리핑, 2013. 5. 28.

<http://www.n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8>, 2018. 3. 10.

작가와 작품들을 선정하여 2015년 4월 18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VERBOTENE BILDER - Kontrolle und Zensur in den Demokratien Ostasiens (BANNED IMAGES - Control and Censorship in East Asian Democracies, 禁止 -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통제와 검열)”의 이름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시 홈페이지(<http://www.verbotenebilder.net>)도 개설하였다.

일본 식민지 정책과 천왕제 비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 운동 등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일본의 코미요마 타에코 작가와, 나카가키 카츠히사 작가가 참여하였으며, 미국 식민지, 미국에 대한 비밀경찰 이야기 등으로 알려진 대만의 첸치젠, 첸칭야오 작가가 초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탈북하여 남북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작품을 그려온 선무 작가와 박근혜 정부와 유신 시대의 부활 등을 비판해온 신청인이 참여하였다.

신청인의 작품 중 <세월오월>, ‘골든타임’, ‘닭대가리’, ‘바리깡’, ‘꽃놀이’ 등 5작품을 출품하기로 하고, 2015년 2월 24일 nGbk와 전시 협약서(조사기록 83쪽)를 작성하였다.

나. 운송회사 작품 운송 거부

신청인, 참고인 유OO, 김OO의 진술(조사기록 195쪽), 범양해운이 nGbk 측에 제출한 견적서(조사기록 85 ~ 92쪽), nGbk의 유OO, OOO, OOO과 범양해운 주식회사가 주고받은 이메일(조사기록 94 ~ 102쪽), 신청인이 유OO에게 발송한 이메일(조사기록 93쪽) 등을 통해 아래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1) nGbk와 범양해운의 작품 운송 추진 일정

nGbk는 신청인의 작품 <세월오월>의 큰 부피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신청인과 선무 작가의 작품을 해운을 통해 독일 전시장까지 운송하기로 하였다. 범양해운 주식회사(이하 범양해운)는 2014년 11월 3일 날짜가 기입된 4장의 견적서를 nGbk에 전달하고, nGbk의 운송 관련 담당자인 OOO이 2015년 1월 29일 운송 확정 메일을 전달하여, 작품 운송을 계약하였다. 2015년 1월 29일 Wibke Behrens과 2015년 2월 10일 유OO이 발신한 메일에는 4월 8일에서 13일 사이에 전시장에 작품이 도착할 수 있게 추진해달라는 내용이 범양해운에 전달되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독일까지 해운 운송이 35일에서 4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 범양해운에서는 3월 3일 배에 선적하기로 예정하고, 2월 24일 작가들의 작품을 수령하기로 예정하였다.

(2) 범양해운의 작품 운송 거부 통보

범양해운은 작품을 수령하기로 한 2월 24일 당일, 오전 9시 49분경,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회사 사정으로 운송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당일 범양해운의 'OOO'가 nGbk 운영위원 유OO에게 이메일을 통해 “본건을 당사에서 취급할 수 없음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진 등을 받고 추진 중에 회사 내부적인 판단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담당 중역의 통보로 이렇게 통보드리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카르네 서류 발급 과정과 통관과정에서 회사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회사 위선⁸⁾의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아마도 마스크에서 많이 회자된 사진이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저의 좁은 소견은 본 건은 외국계 회사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의 운송 거부 메일(조사기록 100쪽)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3월 19일 범양해운의 '김주영'이 nGbk의 대표 OOO과 운송 담당자 OOO에게 이메일을 통해 “Unfortunatly⁹⁾, we cannot handle this shipment because of our inner policy. The Art has relation with political issue, our managing team did not accept this shipment.”(번역- 유감스럽지만 회사 내부 정책상 이 운송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작품이 정치적 이슈와 관련이 있어 회사 경영팀에서 운송을 거부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조사기록 102쪽)을 발송하였다.

(3) 작품 운송 거부 결정권자

범양해운의 대표이사 OOO는 위원회 조사에서(2018. 3. 6. 진술조서, 조사기록 200쪽) 2월 24일의 운송거부 메일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메일이며, 대표이사면서 동시에 영업을 해야 하는 회사 사정상 'OOO'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해외영업부 팀장으로 당시 업무를 맡아 처리했다고 진술하였다. 메일에서 언급된 '담당 중역'은 OOO 자신이며, 3월 19일 영문 메일 또한 자신이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발송자로 기입된 'OOO'은 당시 해외영업팀 직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7) '말씀'의 오기로 보임.

8) '위선'의 오기로 보임.

9) 'Unfortunately'의 오기로 보임.

(4) 작품 운송 거부 사유

김OO는 위원회 조사에서 작품 운송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일회성 사업이기도 했거나와 해당 계약의 영업 이익도 크지 않았으며, 가격 조율과 통관을 위한 서류 준비 과정 등의 문제로 기일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특히 통관 서류 준비를 위해 작품 사진을 받아보니 언론에서 많이 회자된 박근혜가 선글라스 쓴 그림, 출산하는 그림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회사 입장을 고려하여 운송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운송 거부 통보 메일에 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런 그림이 아니고, 다른 작품이었다면 추진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문제의 소지가 너무나 클 것 같은 작품을 진행시키기에는 회사가 떠안아야 할 리스크가 많아 쉽지 않았습니니다.”(조사기록 201쪽)라고 진술하여, 작품 운송 거부의 핵심적인 사유가 기일 문제가 아님을 인정하였다.

2월 24일 메일에서 ‘외국계 회사에서 취급’을 권유한 이유는 작품 운송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통관을 추진하며 비용이 발생하는데, 세관에 물건이 묶여 운송 차질이 생길 경우 비용을 청구하기도 쉽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외국계 전시물 관련 전문 운송 업체들이 더 좋겠다는 제안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통관과정에서 회사에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운송업자 입장에서 세관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후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세관에 ‘리스트 업’ 기업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표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월 19일자 ‘The Art has relation with political issue’라고 적시한 이유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소재의 그림이라서 당시에는 간단하게 생각했고, 다른 업체를 찾겠거나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범양해운의 운송 거부 결정이 대표이사 겸 해외영업부 팀장인 OOO 개인의 판단일 뿐, 청와대나 국정원 등의 정부기관 개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운송 거부에 대한 nGbK의 대응

3월 19일, 범양해운으로부터 운송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nGbK는 당일 항의 메일(조사기록 102쪽)을 발송하였다. 항의 메일에는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메일에서 언급한 ‘political issue’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물음과 함께, “Is South-korea not a democracy that supports freedom of speech?”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범양해운은 일체의 언

급을 하지 않았으며,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겠다는 범양해운 대표이사 김OO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nGbK는 일정이 촉박하고, 포장 등의 문제가 까다롭기도 하여 작품 운송을 위한 다른 업체 선정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계약위반 관련 소송 문제도 검토하였으나, 국제법, 변호사 비용,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작품 운송이 불가능해지자, nGbK는 결국 해당 작가들을 독일로 직접 초청, 애초 작품을 전시하기로 한 위치에 벽화를 그리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신청인과 선무작가가 동의하여, 베를린 현지 전시 장소에 직접 벽에 그림을 그리기로 하고, [그림-7] '세월오월-베를린 버전'을 그려 전시회에 참여하였다.

[그림-6] 신청인이 독일 베를린 현지 전시장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는 장면



[그림-7] <세월오월>- 베를린 버전, 2015 VERBOTENE BILDER 벽화, 홍성담



4. 2015년 서울 시립미술관 길드 아트 페어 그림 철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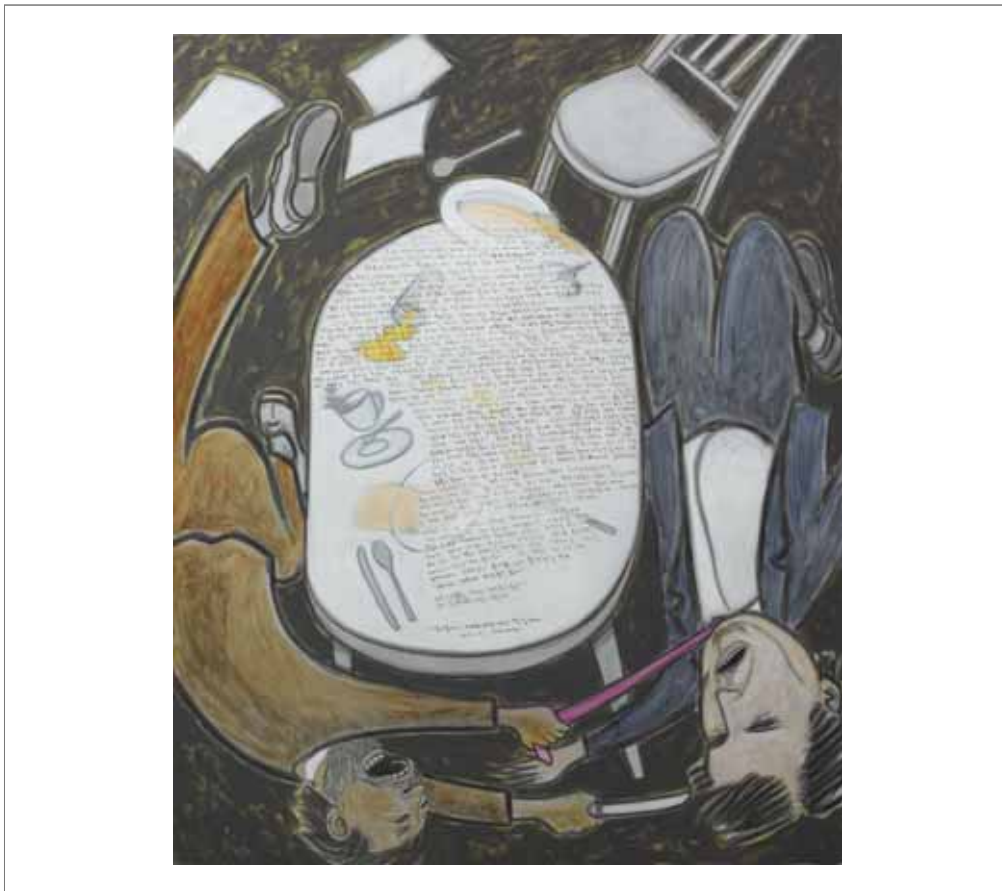
가. ‘공허한 제국’ 개요와 ‘김기종의 칼질’ 출품 과정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자생적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아트페어를 추진하였다. 시립미술관의 공공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아트페어의 형식을 벗어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 전시를 병행하여 ‘전시성’과 ‘시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립미술관은 홍OO 총감독을 위촉하고,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15〈SeMA¹⁰〉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 공허한 제국’(이하 공허한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립남서울생활미술관에서 개최하였다. 공허한 제국의 전시 컨셉, 작가 및 작품 선정 등 전시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홍OO 총감독에게 있고,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2015년 7월 1일 서울시립미술관장 김OO와 총감독 홍OO이 맺은 ‘2015〈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총감독 협약서’(조사기록 137쪽)를 작성, 체결하였다.

신청인 외 23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신청인은 2015년 3월경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김기종에게 피습당한 사건과 자신의 생각을 형상화한 ‘김기종의 칼질’과 ‘핵-거룩한 식사’ 등 2종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참고인 홍OO은 신청인의 참여를 본인이 직접 요청하였으며, 작품 선정도 스스로 했다는 취지로 출품 경위를 진술(조사기록 172쪽)하였다.

10) Seoul Museum of Art의 약자로, 서울시립미술관을 뜻함.

[그림-8] <김기종의 칼질> 162×130cm, Acrylic on canvas, 2015



나. 언론보도 및 보수단체의 항의

신청인과 전시 총감독 홍OO의 진술 녹음 녹취록(조사기록 168쪽), 서울시립미술관 장 김OO(조사기록 140쪽),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큐레이터 오OO에 대한 면담보고(조사기록 132쪽),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장 최OO 진술(조사기록 144쪽)와 2015년 9월 21일 데일리 대한민국¹¹⁾ <‘김기종의 칼질’ 홍성담 집 앞 항의집회>기사(조사기록 292쪽), 2015년 9월 18일 신청인 자택 앞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¹²⁾ 등을 통해 아래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11) <‘김기종의 칼질’ 홍성담 집 앞 항의집회>, 데일리대한민국, 2015. 3. 21.

http://www.dailykorea.kr/sub_read.html?uid=8376, 2018. 3. 9.

12) <‘김기종의 칼질’ 홍성담 집 앞 항의집회>, 데일리대한민국 2015. 3. 21. 기사에 첨부된 영상

(1) 전시회에 대한 항의와 언론보도

전시회 개막부터 ‘김기종의 칼질’ 전시에 대해 항의가 시작되었다. 특정할 수 없는 무리들이 전시회가 진행되는 장소에 찾아와 작품 철거를 주장하는가 하면, 서울시립미술관에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욕설이 섞인 항의와 협박성 전화를 걸고, 집회를 열어 전시회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엄포도 있었다.

‘공허한 제국’이 개막한지 4일째 되는 9월 8일, 동아일보 A8면에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에 걸린 ‘리퍼트 美대사 테러’ 옹호 그림〉의 기사¹³⁾가 실렸다. 김기종의 리퍼트 미 대사 피습행위를 옹호하는 그림을 신청인이 그렸으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이 그림을 전시작품으로 걸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이후, 여러 인터넷 언론사들에서 보도를 하였으며 공중파 TV 뉴스에서까지 다뤄질 정도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2) 신청인의 자택까지 찾아온 항의 시위

2015년 9월 18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신청인의 자택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버스 3대를 이용하여 찾아온 150여명의 사람들이 항의 시위를 진행하였다. “테러범 김기종을 안중근 의사로 비유한 인간 말종 홍성담을 미술계에서 퇴출시키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신청인의 자택에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막는 경찰들과의 몸싸움도 발생하였다. 집회 과정에서는 ‘반미 종북 선동꾼 홍성담 쫓아내자’, ‘인간 말종, 종북 그림쟁이 홍성담’, ‘북괴 김정은 어용 그림쟁이 안산에서 쫓아내자’ 등의 피켓들이 사용되었으며, ‘대한민국을 부정, 북한의 김정일을 추종하던 놈이 홍성담이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간성도 없는 쓰레기나 다름없는 인간이다.’, ‘그림은 천박한 쓰레기일 뿐, 개도 안 물어갈 작품’ 등의 발언과 구호들이 난무한 집회가 진행되었음을, 인터넷 언론매체 ‘데일리 대한민국’의 2015. 9. 21.자 〈‘김기종의 칼질’ 홍성담 집회 앞 항의집회〉 제목의 기사와 당일 촬영되어, 위 기사에 첨부된 영상(조사기록 297쪽)을 통해 확인하였다.

13)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에 걸린 ‘리퍼트 美 대사 테러’ 옹호 그림〉, 동아일보, 2015. 9. 8. 동아일보 A8면, <http://news.donga.com/3/all/20150908/73488493/1> 를 통해서도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음.

(3) 항의 및 집회에 참여한 단체 및 사람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였던 김OO, 최OO, 오OO 등 전시회 관계자들이 항의와 협박 단체를 동일하게 ‘어버이연합’이라고 진술하고, 9월 18일 집회 동영상 확인결과 플래카드 하단에 ‘경우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탈북어버이연합’, ‘한겨레청년단’ 등의 단체명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상 자막으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OOO’, ‘어버이연합 부회장 OOO’, ‘어버이연합 안산 사무국장 OOO’라고 소개된 사람들이 규탄 발언과 성명서 낭독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9월 20일자 경기일보는 <어버이연합, ‘김기종의 칼질’ 전시 관련 홍성담 작가 아파트 항의 방문> 제목의 기사를 통해 150여명이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기사¹⁴⁾(조사기록 290쪽)를 보도하였다.

언급된 ‘어버이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탈북어버이연합’, ‘한겨레청년단’는 단체 인터넷 사이트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행정안전부 웹사이트(www.mois.go.kr)를 통해 사건이 발생하였던 2015년 당시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과 2018년 3월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위 단체들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임의적으로 구성, 운영해왔던 단체로 판단된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 ‘허OO’ 공소장(조사기록 269쪽)과 언론사 news1의 2018. 1. 15.자 <국정원 직원 “어버이연합 시위동원… 매달 200만 ~ 300만원 줘>기사(조사기록 295쪽) 등을 확인한 바,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개인 및 단체를 ‘종북,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책에 우호적인 여론을 주도하는데 활용된 단체로 판단된다.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¹⁵⁾의 약칭으로, 집회 주최 및 참가 여부, 참석자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2015년 당시 근무자들이 전원 교체되었으며, 관련 기록을 검찰이 전부 압수하여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조사기록 192쪽)받았다. 참여 단체에 대한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참가 단체 및 참석자를 특정할 수는 없다. 2015년 9월 18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14) <어버이연합, ‘김기종의 칼질’ 전시 관련 홍성담 작가 아파트 항의 방문>, 경기일보, 2015. 9. 20.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4904>, 2018. 3. 9.

1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퇴직경찰들의 모임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02-2234-1881)에 위치하고 있으며, www.ex-police.or.kr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벌어진 집회와 관련하여 안산경찰서는 당시 접수된 집회신고 접수 사실이 없다는 결과(조사기록 162쪽)를 통보하였다. 그렇지만 위 동영상 확인 결과와 관련자들의 동일한 진술 등을 종합하였을 때, ‘어버이연합’이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항의와 협박, 신청인 채택 앞 불법 집회 등을 주도하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작품 철거 경위 및 사유

신청인, 참고인 홍OO, 최OO, 오OO, 김OO의 진술과 참고인 이OO, 양OO의 진술 등을 통해 아래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김기종의 칼질’ 철거 경위

9월 8일, 동아일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장 최OO는 오전에 홍OO 총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어버이연합’의 항의와 언론보도 등을 전하였다. 사태 파악 후 홍OO 감독은 신청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김기종의 칼질’ 철거를 결정하고 이를 최OO에게 통보하였다. 최OO는 오OO 큐레이터에게 그림 철거를 지시하였으며, 8일 오후, 오OO이 전시장에 가서 직접 작품을 철거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 측은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관계나 위치도 아니었으며, 작가와 작품 선정에 비롯한 전시와 관련된 결정 권한은 총감독에게 있어, 서울시립미술관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참고인들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홍OO 총감독도 이를 동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홍OO 총감독의 결정으로 ‘김기종의 칼질’이 철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립미술관 관계자들이 홍OO 총감독이 작품 철거를 결정하게끔, 종용하거나, 강제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전시회 이후 제작된 후(後) 도록(이하 후도록, 2017시6 자료 - 3) 13p에 기록된 “두 번에 걸쳐 그림이 철수되는 과정”이라 표현에 대해, 홍OO은 개막 전에 공간 배치 과정에 ‘김기종의 칼질’이 전시되지 않아 이를 지적하여, 다시 걸게 되었던 것이 생각나서 적은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전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최OO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설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공간 배치에 따른 실무적이고 사소한 문제라서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작품 철거 사유

작품 철거 사유에 대해 홍OO 총감독은 다른 참여 작가들까지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매도되는 상태에서 작가를 보호하고, 판로 개척이라는 아트 페어의 전시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감독의 권한으로 그림을 철거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블랙리스트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일 행사일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장 김OO는 ‘1. 아트페어라는 행사의 본질적 의도를 살리고 2. 이 일로 다른 여러 참여 작가에게 돌아갈 피해를 줄이고 3. 언론 보도로 서울시가 난처한 입장과 4. 공공미술관으로서 그들도 시민인 어버이연합의 다른 목소리를 전적으로 외면하기 곤란한 미술관의 입장에 대한 배려’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총감독이 작품 철거를 결단했다는 내용과, ‘일부 극우 보수단체의 강압에 의해 결과론적으로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 시대적 비극이라 여겨진다’는 내용의 진술서(조사기록 157쪽)와 ‘작가를 검열의 맥락에서 불이익 준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행사의 본질을 살리고, 미술관과 시(서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한 최선의 해결책이자,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조사기록 143쪽)을 제출하였다.

그렇지만, 홍OO은 후도록의 2017. 1. 9., ‘논란의 <공허한 제국>, 그 이후’에 “자본 못 지않게 포괄적 지배력을 지닌 이념이 상존하는 우리 사회 구조상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란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전’ 등의 과거 사례로 비춰 홍성담이라는 인칭명사 자체가 주목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했다. 미술계 삶 20여년, 모를리 없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논란이 됐다.’, ‘<김기종의 칼질>에 대한 쟁론이 무의미한건 아니었다. 예상대로 검열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고 예술의 사회성에 대한 고찰이 회자됐다. (...) 예술의 상징적 가치의 변이와 씩씩한 현실의 맥락화를 목도할 수 있도록 했다. (...) 어쨌든 지난 2015년 9월에 일었던 논란은 우리 사회구조상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김기종의 칼질>은 물리적 전시를 넘어 미래를 결정하는 현재를 설계하는데 있어 오히려 효과적이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난 지금도 예술가는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야하며 미술관은 그 자유로운 발언들을 한껏 수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김기종의 칼질>도 그 연장선 아래 있다. 설사 모두의 수용이 원만하지 않더라도.”라는 회고를 기록하였다.

(3) 신청인의 동의 없는 작품 철거

작품 철거 과정에서 당시 큐레이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신청인은 진술하고, 총감독 홍OO는 작품 철거에 대해 신청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작품 철거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홍OO 감독은 상의가 아니라 작품 철거 결정을 통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일 전화통화가 협의과정이었는지, 결정 통보의 자리였는지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

통상적으로 전시회에서 작품을 철거할 경우 작가의 사전 허락 및 협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전 서울시립미술관장 김OO는 작품 철거에 대해 해당 작가의 허락을 받는 것은 상식이며, 작가가 거부하였을 때 철거하는 경우는 없고, 작가와 협의는 필수적이라는 취지로 진술(조사기록 142쪽)하였다. 이에 반해 총감독 홍OO과 서울시립미술관 최OO 과장은 기획자의 판단이며, 작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닌 예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9월 8일, '김기종의 칼질' 철거를 결정하며 신청인과 홍OO의 협의 절차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협의절차가 필수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존재하나, 신청인의 반대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품 철거를 결정,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작품 철거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시 여부

전시회 관계자 전원이 청와대, 국정원,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지시는 없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립미술관장 김OO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김OO 자신은 미술계 종사자로 외교적인 문제는 국민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장 비서실의 우려가 자신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참고인 김OO는 진술 녹음을 거부하여, 면담 보고를 작성, 조사기록 142쪽).

이에 대해 서울시립미술관은 '공허한 제국' 전시와 관련 서울시 대책회의 참석 및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회신(조사기록 216쪽)하였으며, 당시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이OO, 문화본부 문화기획관 양OO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대책회의, 작품 철거에 대한 의견 전달, 업무 지시 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

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사기록 228쪽),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조사기록 231쪽)등에 근거하여 책임운영 기관¹⁶⁾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어 서울시에서의 업무 지시, 지휘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문화본부 소관업무를 총괄한 양OO는 “결재라인은 서울시립미술관장-부시장-시장임. 문화본부를 거치지 않음.”, “시립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관장의 상급자는 부시장, 시장임. 문화기획관은 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와 직급이 아님”(조사기록 222쪽)이라 진술하였다.

마. 작품 철거 이후 미 대사관측에 유감 표명

9월 8일 그림이 철거 된 이후,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은 9일 오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어쨌든 (그림을) 철거 했고, 미국 대사에게도 사과하는 뜻을 전달 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박원순 시장 “리퍼트 대사에 직접 사과할 것”>이라는 동아일보 기사¹⁷⁾(조사기록 289쪽)가 2015. 9. 10.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김OO 관장은 미 대사관의 문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미 대사가 당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소재로 쓰인 작품이 시립미술관에 전시된 것’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차원에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서울시로부터 미 대사관측에 사과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김OO는 박원순 시장이 곤혹스러웠을 것이라는 예상과 미술관의 수장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서울시 문화본부장 이OO, 문화기획관 양OO도 사과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총감독 홍OO은 미 대사관에서 사과한 사실을 추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6) 책임운영기관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관의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제2조(정의)

17) <박원순 시장 ‘리퍼트 대사에 직접 사과할 것’>, 동아일보, 2015. 9. 10. A14면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보수단체들의 2015년 평화박물관 전시 방해 및 고발

2012년 평화박물관은 ‘유신 40년 기획 전시 6부작 유체이탈’을 개최하였다. ‘3부, 유신의 초상’에 신청인의 작품, ‘골든타임 - 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를 전시하였다. 그 이후 불명의 단체와 사람들이 위 작품 전시를 항의하고, 신청인의 그림을 도용한 플래카드를 만들어 집회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11월 21일 평화박물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사실은 확인된다. 그렇지만 집회를 주도한 단체 및 관련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사진 자료에서 확인된 단체 - 범민족통일국민화합, 나라바로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 - 와 본 사건과의 관련성은 특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2012년 ‘정의로운 시민행동’의 000는 평화박물관을 기부금품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신청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찾기 힘들다. 다만, 신청인의 작품이 전시되었던 <유신의 초상>이 11. 10. ~ 11. 25. 끝난 직후 11. 30.에 고발이 진행됐던 점, 고발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고발 취지 등에 신청인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언급, 인용한 점 등으로 미뤄 평화박물관의 고발이 신청인의 작품 전시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치적 작품이라서 운송을 거부당한 <세월오월>

범양해운은 독일 미술협회 nGbk와 계약을 맺고 <세월오월>을 포함한 신청인의 작품 5종을 독일까지 운송기로 계약을 맺었다. 범양해운 대표이사 000는 화물이 박근혜를 풍자, 비판한 그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운송했을 경우 세관에 문제 기업으로 리스트 업되거나 이후 회사운영에 지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작가와 nGbk에 운송 거부를 통보하였다. 작품을 독일까지 옮길 수 없게 되자, nGbk와 신청인은 전시회 공간에 직접 벽화를 그리는 방편으로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범양해운 000는 해당 작품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였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운송 기일의 촉박함, 통관을 위한 서류 준비, 수금 문제 등이 운송을 거부한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허나, 2015년 당시 nGbk와 협의 과정에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4월 8

일에서 13일 사이에 전시장에 작품이 도착할 수 있게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1월말, 2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확인했던 점, 다른 그림이었으면 운송했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점, 범양해운이 nGbK에 보낸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작품이어서 취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메일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여타의 이유들은 변명에 불과할 뿐 핵심적인 운송 거부 사유는 신청인의 작품이 박근혜 풍자와 비판이라는 정치적 내용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다. 2015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철거된 ‘김기종의 칼질’

서울시립미술관은 2015년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립남서울생활미술관에서 ‘2015<SeMA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공허한 제국’ 아트페어를 진행하였다. 전시 총감독으로 선임된 홍OO은 신청인에게 참여를 권유하여, ‘김기종의 칼질’을 비롯한 2점의 작품 전시를 결정하였다. ‘공허한 제국’ 개막이후, ‘어버이연합’ 등의 단체와 사람들은 ‘김기종의 칼질’ 전시를 규탄하는 항의와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 9월 8일 동아일보에 ‘김기종의 칼질’이 서울시립미술관에 전시된 내용이 보도된 이후 이 사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여론이 집중되었다. 9월 8일 오전, 서울시립미술관 최OO는 언론동향, 여론 등을 총감독 홍OO에게 보고하였으며, 홍OO은 신청인의 반대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김기종의 칼질’ 철거를 결정하여 최OO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최OO는 다시 오OO에게 작품 철거를 지시, 오OO은 9월 8일 오후 작품을 철거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아트페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판단된다.

작품 철거의 사유에 대해, 홍OO은 아트페어라는 전시 취지를 살리고, 다른 참여 작가들까지 정치적이라고 매도되는 상황에서 작가를 보호하기 위한 총감독 자신의 결단이었으며 상급자 또는 기관의 외압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렇지만, 서울시립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관장의 상급자는 부시장, 시장이라는 참고인 양OO의 진술과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이 사안에 부담을 갖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꼈다는 김OO의 진술, 홍OO이 후도록에 논쟁과 논란을 예상했다는 기록과 특히 “예술가는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야하며 미술관은 그 자유로운 발언들을 한껏 수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김기종의 칼질>도 그 연장선 아래 있다. 설사 모두의 수용이 원만하지 않더라도”라고 적시하여 ‘김기종의 칼질’ 철거가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뉘앙스의 내용을 기록한 것들이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작품 철거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는 홍OO과 김OO, 최OO 등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홍OO은 총감독으로서

자신의 결정 이면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기 쉽지 않았을 것이며,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외부 인사를 총감독으로 위촉하고도 외압을 행사하여 총감독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양쪽 모두 허위 진술 했을 가능성이 높다 판단된다.

덧붙여, 전시회 방해 행위와 신청인 자택 앞 불법시위는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가 주도하여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대한 조사 불가

신청인은 박근혜가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부터 박근혜, 박정희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비롯하여, 세월호와 미 대사 피습 등과 같이 정치적인 문제들을 소재로 삼아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에 박근혜를 허수아비와 닭으로 묘사하여 故 김영한의 업무수첩에서 수차례 언급되어 보수단체에 고발당하고, 국정원 보고에서 ‘A’ 등급으로 분류될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다.

2012년 평화박물관 전시회에 박근혜 출산그림으로 알려진 신청인의 작품이 전시된 이후, 보수단체들에 의해 전시회 난입, 항의시위, 전시 주최단체인 평화박물관에 대한 고발 등의 행위들이 진행되었다.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에 전시회에서도 ‘김기종의 칼질’ 작품 전시로 인해 전시회를 방해하는 행위들이 자행되고, 신청인의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의 ‘어버이연합’으로 대표되는 보수단체들의 집요하고도, 지속적인 시비에 고통을 겪어왔다.

이 사건 조사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보수성향의 단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관계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평화박물관을 고발한 000,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000, 어버이연합 부회장 000, 어버이연합 안산 사무국장 000 등의 관련자 또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미 국정원 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국정원이 보수성향의 단체를 동원하여 현안 대응 시위, 성명발표 등을 진행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요주의 인물로 관리되던 신청인에 대한 사찰, 표적 시위, 자택 앞 불법 집회 등에도 이들 단체를 동원했을 거라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러한 단체들을 동원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나. 범양해운 관계자의 진술 외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없음

청와대 정무수석 故 김영한의 업무수첩에는 신청인이 참여한 전시회, 언론사 인터뷰 등의 세밀한 내용까지 청와대가 보고받고, 관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독일 베를린에 계 개최되는 전시회의 동향도 파악했을 것이며, 더욱이 전시하기로 한 그림은 ‘VIP를 모독’했다는, 박근혜가 허수아비와 답으로 묘사되어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세월오월>이었으므로, 전시회 참여를 가로막기 위한 방법들도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사건에 대한 조사는 nGbk와 범양해운 관계자 외의 참고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범양해운 000의 진술 외에 관련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정원 등의 정부기관이 범양해운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다. 서울시의 그림 철거 지시 여부 조사 필요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 그림 철거 과정에 서울시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은 있으나,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졌던 정황이 있는바, 이에 대해 수신인을 ‘서울특별시장’으로 경유자를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으로 하여 확인을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책임은 영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도리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회신 처리가 되었다. 답변 또한 ‘관련 사실이 없음’이 아닌 관련 회의에 참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지 않았다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한 것이다. 2015년 당시 서울시장, 부시장 또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이 사안에 대한 논의와 그림 철거 등의 업무 지시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3. 이 사건의 성격

가. 블랙리스트 범죄의 사회적 확산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블랙리스트, 좌파 문화예술인 배제라는 정권 차원의 범죄행위를 저질러왔다. 특정 문화예술인을 사찰하고, 관리하며, 지원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또 관변단체들을 동원해 ‘종북’, ‘빨갱이’로 낙인찍고 모욕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

하였다. 정권차원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위들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을 넘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검열 기재를 스스로 작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 곳곳에 검열을 내재화 시켜버린 정책의 파급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여타의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공공기관 지원 사업에서 배제, 탈락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단순히 보자면 민간 기업에서 이익이 크지 않고 업무처리가 번거로워 운송 계약을 철회한 것이며, 작품 판매라는 아트 페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시회 측에서 문제가 된 작품을 철거한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후 문제가 되어 세관에 리스트 업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욕설과 불법적인 시위를 벌이는 ‘어버이연합’ 조차도 시민의 의견으로 반영해야 하다는 정치적 입장, 사회적 분위기 상 서울시가 난처해질 것이라는 예상 등은 그 결정의 이면에 박근혜 정부가 벌인 정책 범죄의 여파가 확대, 재생산 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체 검열로 예술가의 창작, 전시 활동을 차단한 사건이며, 정권 차원의 범죄가 모방범죄를 낳아, 연쇄적인 사찰, 감시, 배제, 차별의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국 민주주의 수준

nGbk 전시 자체가 정치적으로 탄압받거나, 시민사회와 충돌을 겪는 예술작가와 작품을 다루는 것이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운송회사에서 작품 운송을 거부하고, 작가가 독일 현지까지 찾아가 벽화를 직접 그려 전시하는 모습은, nGbk측에서 보자면 전시 의도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아이টে이였을 것이다. 운송 거부 사유로 언급한 ‘political issue’는 이미 습성화되어버린 한국에서는 통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 허나, 신청인은 독일 사회에 이를 이해시키기 너무 어려웠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며, 독일 nGbk 관계자는 “Is South - korea not a democracy that supports freedom of speech?”라고 운송 거부를 항의하였다. 단순히 한 문화예술인이 겪은 피해가 아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속속들이 들추어진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다. 정치적인 ‘김기종의 칼질’ 철거 과정

서울시립미술관은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김기종의 칼질’을 선정했다.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작품을 선택한데에는, 전시의 손익계산과 함께 작가와 작품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겨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언론 보도 이후 고작 만나질 만에 의지는 꺾여

버렸다. 결국 작가는 작품이 철거되어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버렸으며, 서울시립미술관의 선택으로 전시하게 된 작품 때문에 ‘종북’, ‘인간말종’으로 신청인은 매도되게 되었다.

박원순 시장의 표현을 빌어 ‘어쨌든’ 그림은 내려졌다. 그림 철거에 대해 신청인에게, 그리고 전시회에 혼란을 빚은것에 대해 서울시민을 비롯한 이용자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사과를 받은 대상은 신청인과 시민이 아닌, 미 대사였다. 단순히 그림의 소재였을 뿐인 미 대사에게 유감의 뜻을 전달하라는 박원순 시장과 본인의 의지로 행했다고는 하나 직접 유감의 뜻을 전달한 서울시립미술관장의 행보는 상당히 ‘정치적’이다. 심지어 서울시립미술관장은 개인적으로 신청인에게 연락조차 취한 적이 없다.

또한 어버이연합의 항의 행태는 민주주의적 절차도 무시되고, 비법, 불법적이었으며, 내용 또한 올바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까지 시민의 의견이라며 고려하려는 태도는,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의 창작, 표현 등의 자유를 앞장서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정치적’ 행보로 비춰질 뿐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94

(사)우리만화연대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배제 의혹 사건



94

(사)우리만화연대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배제 의혹 사건**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시7[(사)우리만화연대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배제 의혹 사건]대한 별지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경정의 취지**

2018. 4. 27. 제33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나,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송부 받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8. 6. 8. 제37차 전원위원회는 재조사를 의결하였다. 이에 기 채택한 진상조사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로 기술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나.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

- 1) 기존 진상조사결과보고서는 우리만화연대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에 관하여 시점을 2014년 5월 26일 ‘월간희망만화 무크 보고’의 만평 발행 시점으로 기술하였으나 사실관계가 틀렸다. 우리만화연대는 국정원 문서 ‘문체부, left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2014. 3. 17.)’에 블랙리스트 단체로 이미 기재되어 있었

- 다. 이 내용 등을 추가하였다.
- 2) 기초 사실에 대한 기술, 문건 등 자료조사가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 3) 우리만화연대는 2014년 2~3월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폐지하는 방법으로 배제되었음이 확인되어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 4) 우리만화연대는 2015 예술위 융복합·다원예술 분야 공모 사업에서 배제된 사실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더 상세하게 추가하였다.
 - 5) 신청인 유승하 작가의 세월호 주제 만화 ‘끈’이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배제된 사실에 대하여 만화 내용 등을 추가 기재하였다. 한편, 위 만화를 1차 심사에서 4위로 기재하고 있었으나 3위였음을 확인하여 오류를 정정하였다. 한편,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세월호 관련 13건의 배제 사실을 기재하였다.
 - 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과정에서 1차 서면심사 이후 관련 심사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누락되어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의혹 부분을 추가하였다.
 - 7) 시간의 부족으로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의혹 내용을 보충하였다.
 - 8)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결과’ 내용에서 ①~③사항을 추가하였고, ④에서 세월호 부분을 추가하였다.

① 우리만화연대 및 신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확인

문체부, 左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복지지원사업’ 폐지 방침(국정원 2014. 3. 17.)에서 우리만화연대는 블랙리스트 단체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신OO 행정관의 진술로도 확인되고, 김희범 차관의 ‘우리만화연대’ 관련 메모(2014. 9. 16.) 김OO 예술국장이 김OO 행정관으로부터 받아 적은 수기로 기록한 블랙리스트(2015. 1. 9.) 오OO이 작성한 예술정책과 ‘리스트-’ 16.2.1(2015)’에 기재 되어 있다는 점, 문체부 김OO 사무관이 청와대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 9,473인 리스트 예술가들이 우리만화연대의 만화잡지 월간 만화 <보고>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우리만화연대는 블랙리스트 등재되어 있었으며 신청인 유승하 작가 또한 9,473인 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 ②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서 우리만화연대 등 좌성향 단체가 선정되자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웠고, 위 사업을 폐지하고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비판언론 및 진보진영에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면서 2014년 3월 중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고 추진할 복안을 세우고,¹⁾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술인들의 불행한 사고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 사항을 문체부와 협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²⁾ 문체부의 요청을 받은 예술인복지재단은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10억 원→0원)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22억 원→12억 원) 결정, 예술인긴급복지기금을 20억 증액(74억 원→94억 원) 의결하는 방법³⁾으로 우리만화연대 등을 지원 배제 하였다(2017직공3[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결과보고서 40쪽).
- ③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2014. 12. 19.) 등의 기록으로 2015 예술위 융복합·다원예술 분야 공모 사업에서 우리만화연대 ‘만화BOGO토크콘서트’가 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 ④ 신청인의 작품, 세월호를 다룬 만화 ‘끈’은 콘텐츠진흥원의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에서는 심사에서 최종 탈락하였다. 이는 ‘세월호’ 예술 작품들에 대한 다양한 배제 사례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우리만화연대의 2차심사 탈락작품 <끈> <명태> <광야>가 블랙리스트를 이유로 최종 탈락하여 작품연재의 기회를 잃었다. 신청인 유승하의 작품 ‘끈’은 기획의 우수성·작품의 우수성·매체의 우수성·홍보 및 유통계획·예산의 적정성과 재원마련 가능성을 평가한 1차 심사에서 3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 가능성·수행기관의 전문성·과제수행 능력·지속연재의 가능

1) 국정원 IO,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1-2쪽. 2014. 3. 17.

2) OOO,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2014. 3.12.

3) OOO,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2014. 3. 27.

성 등을 평가한 2차 평가에서 77개 작품 중 66위를 함으로써 최종탈락되었던바 해당 지원사업의 평균 지원금액인 4천만원 상당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된다. 기획·작품·매체가 우수하고 홍보·유통계획이 우수하기 때문에 1차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가능성과 수행기관의 전문성·과제 수행 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2차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동소이한 심사항목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세월호’를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의도 또는 담합에 의해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로 판단된다.

- 9)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부분에서 만화영상진흥원과 2015. 5. 6. 개정된 심사 규정에 따라 사업팀 이OO이 심사위원 추천에 개입할 여지가 있었고 이OO이 이OO과 고OO를 추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부분 등을 추가하였다.

**붙임 : [(사)우리만화연대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배제 의혹 사건](경정)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시7, (사)우리만화연대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배제 의혹 사건
[신청인] 유승하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유승하(이하 신청인)은 (사)우리만화연대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에 공모지원하였으나 최종탈락했다. 그 후 해당 사업의 심사위원 중 한명으로부터 하필 이 시점에 세월호 같은 내용을 그렸냐는 이야기를 들었고, 신청인과 우리만화연대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을 확인 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의 지원탈락이 블랙리스트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 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7. 1. 18.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되었다.

나. 조사의 목적

콘텐츠진흥원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에 공모지원한 (사)우리만화연대와 신청인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사업 심사위원 중 1인으로부터 신청인의 지원작품이 세월호 내용을 담고 있어 탈락되었다는 구체적 내용을 들었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었다. 이에 심사과정의 공정성 여부와 함께 블랙리스트 연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수기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	특검	2017. 11. 27.
2	2015 연재만화 제작지원 신청서	신청인	2017. 11. 28.
3	연도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관련자료	콘텐츠진흥원	2017. 12. 15
4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1부	특검	2018. 3. 15
5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 (15.1.15)1부	특검	2018. 3. 15.
6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 (15.1.27)1부	특검	2018. 3. 15.
7	만평 : 유신공주인형놀이	우리만화연대	2018. 3. 30.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8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 수첩 발췌	법5_1심 형사소송기록	2018. 4. 6.
9	오OO 2회 진술조서 2016. 12. 27.	특검	2018. 6. 8.
10	최OO 진술조서 2016. 12. 18.	특검	위 같음
11	유진룡 진술조서 2016. 12. 15.	특검	위 같음
12	모철민 2회 진술조서 2017. 1. 6.	특검	위 같음
13	송광용 진술조서 2017. 1. 2.	특검	위 같음
14	정관주 진술조서 2017. 12. 27.	특검	위 같음
15	신OO 진술조서 2017. 12. 17.	특검	위 같음
16	윤OO 진술조서 2017. 1. 29.	특검	위 같음
17	문체부 및 예술위 담당자정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리스트 첨부보고 2017. 1. 6.	특검	위 같음
18	2017문16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폐지및학습공동체 지원사업축소사건조사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	진상조사위	위 같음
19	2017공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선정 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	진상조사위	위 같음
20	월간희망 만화무크보고 창간호, 2호 등 총 6권	우리만화연대	위 같음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OO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사실확인서 (2018. 3. 18.)
2	강OO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과장	참고인진술서 (2018. 3. 22.)
3	김OO	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캐릭터사업팀 과장	참고인진술서 (2018. 3. 29.)
4	OOO	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캐릭터사업팀 주임	참고인진술서 (2018. 3. 30.)
5	이OO	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캐릭터사업팀 팀장	참고인진술서 (2018. 4. 4.)
6	김OO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참고인진술서 (2018. 4. 5.)
7	신OO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사실확인서 (2018. 4. 9.)
8	유승하	신청인	전화 면담 보고 (2018.4.10.)
9	김OO	우리만화연대 기획담당	진술청취 (2018. 6. 5.)
9	유승하	신청인	서면진술 (2018. 6. 6.)
10	조남준	신청인	진술서(2018. 6. 7.)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한국콘텐츠진흥원

(1) 연혁

2000년 12월 문화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에 ‘문화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01년 8월에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확대되었다. 2002년 10월 17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특수법인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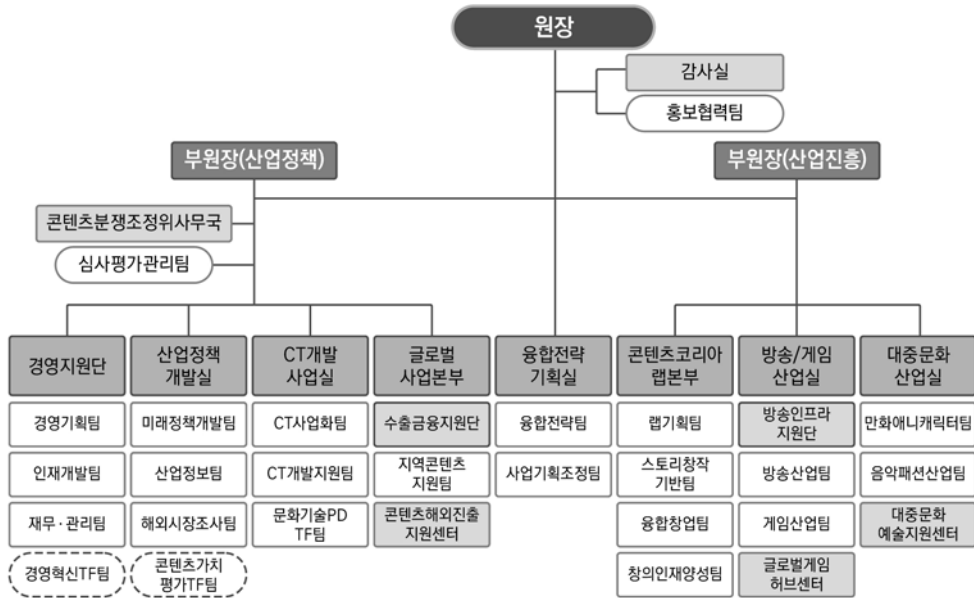
2009년 5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한국게임산업진흥원·문화콘텐츠센터·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5개 관련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다. 위 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이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4년 예산(안)은 약 2천 2백억원 규모, 2015년 예산(안)은 약 2천 4백억원, 2016년도 예산(안)은 약 3천 2백억원이었다. 2017년도 2018년도 모두 약 3천억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 조직 구성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직도는 매년 변동이 있으며 우리만화연대 관련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의 2015년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201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도, 7실·본부, 1단, 1국, 28팀



(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의 사업개요, 접수현황, 평가개요, 평가위원구성, 평가절차, 평가방법, 세부평가항목, 소요예산 등 이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2015만화콘텐츠창작기반조성 - 연재만화 제작지원
- 사업목적 : 우수만화의 연재지원을 통한 만화창작기반과 유통환경 강화
- 사업기간 : 2015. 3. 1 ~ 2016. 7. 31
- 지원예산 : 2,100백만원
- 지원대상 : 웹툰, e-book을 포함한 만화 연재매체를 보유한 사업자, 출판사, 에이전트, 만화가, 스튜디오 등 법인/개인 사업자
 - ※ 코믹스·그래픽 노블 형태는 300페이지 이상 분량
- 지원내용
 - 10개월 이상의 매체연재 조건으로 해당기간의 작가 원고료, 취재비, 작품 홍보·마케팅 비용 일부 지원
 - 과제당 40백만원 이내, 50개 과제 내외 지원(총 사업비의 80% 이내)

※ 주관 및 참여기관은 지원금의 90% 이상을 작가 고료 및 자료조사 등 작가비용으로 편성해야 함

□ 접수현황

- 접수마감 : 2015. 4. 17(금) 17:00
- 접수결과 : 연재만화 제작지원 174과제(별첨 참조)
 - ※ 총 169개 접수이나 다음카카오 6개 과제를 일괄로 접수(신청서 및 첨부자료는 6개로 작성)

□ 평가개요(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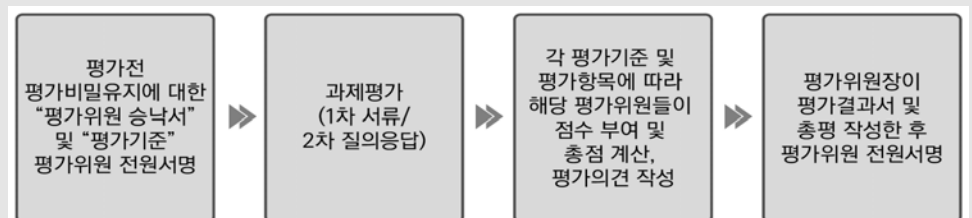
구분	서면평가(1차)	질의응답평가(2차)
연재만화 제작지원	·일시 : 2014. 4. 27(월), 28(화) 10시~17시 ※ 보안서약서 수령 등의 방법으로 심사결과 보안 유지 ·장소 : 역삼동 회의실 ·평가항목 기획의 우수성(20), 작품의 우수성(30), 매체의 우수성(20), 홍보·유통계획(20), 예산의 적정성과 재원마련 가능성(10)	·일시 : 2014. 5. 11(월), 12(화) 10시~17시 ※ 보안서약서 수령 등의 방법으로 심사결과 보안 유지 ·장소 : 역삼동 회의실 ·평가항목 성공 가능성(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 1차 평가 통과 작품에 한해 2차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위원 구성(심사평가관리팀 협조)

- 평가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성
- 평가위원회는 내부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 외부 전문가는 POOL에 등록되어 있는 인사 중 검사역실에서 무작위로 3배수 추출
- 학계·산업계·유관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 분야 : 만화, 스토리, 출판, 콘텐츠 기획 등 관련 전문가

□ 평가절차



□ 평가방법

- 평가위원장 1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총평을 작성
- 평가점수산정
 - 평가는 단계별 탈락제(70점 미만 탈락)로 진행하며 총 2단계 평가결과를 합산(1차 30%, 2차 70%)하여 과제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계산
 - 최종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2차 평가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으로 순위 결정
- 평가 시 후순위 예비과제를 2~3개 선정하여 협약미체결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
- 과제 선정에 중요사안 발생 시, 종합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최종선정 업체는 필요시 종합심의를 결정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 세부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서면평가	1. 기획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이 참신하고, 기획의도에 적합한 구체적인 소재와 설정을 제시하였는가 • 기획의도와 타겟에 맞는 시장 분석 및 타겟이 설정되어 있는가 	20
	2. 작품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가 참신하고 작품 성격에 독창성이 있는가 • 스토리가 재미있고 전개가 흥미로운가 • 작화가 우수하고 연출이 우수한가 		
		3. 매체의 우수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매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가 • 매체 운영 능력과 경력이 우수한가 • 매체가 안정적이며 투자여지가 있는가 • 만화편집 및 작가관리 능력이 있는가 	
4. 홍보·유통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가능성이 있는가 •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홍보계획의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 출판 및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20
5. 예산의 적정성과 재원마련 가능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계획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하고 있는가 • 자부담의 재원규모가 적정하고 재원조달 가능성이 있는가 			
질의응답 평가	1. 성공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 목표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성공 가능한 전략이 있는가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이 목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 향후 안정적인 매체연재이 가능한가 	
2. 수행기관의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우수한가 • 수행업체의 만화기획, 출판, 작가관리 능력이 있는가 	30
3. 과제수행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제작, 출판 등 일정 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가 • 적합한 추진일정 및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실현가능하고 유사경쟁사와 차별화 된 계획을 제시 하고 있는가 	20
4. 지속연재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연재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 작가와의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가? 	20
합계	100

● **참여제한에 대한 사항**

※ 만화 지원사업은 업체가 영세하고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제한적이며, 소수의 전문 만화출판사와 포털을 통해 연재하는 경우가 많아 주관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고자 함

①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참여제한**(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만화는 포탈 중심의 연재기반으로 대기업 참여가능)

②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거나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을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도 지원 가능.**

나.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1998년 11월 16일 부천시의 “부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 되고 12월 4일 부천만화정보센터가 설립되었다. 이것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모태 이며 이후 관련 조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되었다.

수입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재단 법인으로 ‘만화콘텐츠 창조인력 양성’, ‘만화기반 명품 콘텐츠 생산’, ‘국제 교류 활성화’, ‘부천형 중심 만화거점 확대’ 등이 주요 사업이다.

(재)한국문화영상진흥원 2015년 사업 계획서 중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재원·사업별		연도별	2015년 예산액①	2014년 예산액②	증감액 (①-②)	증감률 (①-②)/②	
수 입	합 계		11,530	11,722	△192	△1.6	
	출연금		4,638	4,051	587	14.5	
	자체수입		1,335	1,730	△395	△22.8	
	잉여금		135	358	△223	△62.3	
	보 조 금	소 계		5,177	4,847	330	6.8
		국비		3,710	3,380	330	9.8
		도비		440	440	0	0.0
		시비		1,027	1,027	0	0.0
		외부지원금		245	736	△491	△66.7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⁴⁾

예술위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전신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제2항⁵⁾과 제20조⁶⁾에 근거하여 2005년 출범하였으며, 문예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1) 예술위 주관 2015년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사업 공고

예술위가 주관하는 2015년 다원예술창작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개요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2015년 다원예술창작지원 관련 내용은 2017공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선정 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전체 인용함.

5)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6)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 사업목적: 사회문화적 통섭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다원적 예술의 담론생산과 창작 기반을 조성함
- 지원신청자격: 실험성과 다원적 예술 창작을 추구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대상:
 - 사업내용: 특정 예술 장르에 속하지 않는 다원적 특성을 가진 창작, 발표, 연구 사업 (예시) 내용과 형식, 매체실험 등 측면에서 실험적 예술,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새로운 예술활동, 장르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예술창작활동
 - 사업형태: 공연, 전시, 퍼포먼스, 다큐멘터리, 비평 및 연구, 워크숍 등 창작 및 표현 활동, 융복합형 예술창작을 증진하기 위한 실험성과 대안성이 강조된 프로젝트
- 유의사항: 다원예술분야 국제(해외개최)사업은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으로 신청, 일반적인 홈페이지 구축, 일반 정보화 사업, 단순 잡지발간 사업 제외.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과제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10백만원~65백만원)
 - 기간: 6개월~1년 이내
- 심사방법: 서류 심사 후 필요에 따라 2차 인터뷰 심사 추진
- 지원항목: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
- 중점심의 방향: 일회성 발표형, 단순 병렬형의 장르 결합 지양, 개별 장르들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복합형 예술활동 지원
- 지원심의 기준:

영역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단계 (P)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20%)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기획프로그램의 독창성(실험성)(30%)	사업계획의 주요 아이디어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이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은 실험적 예술 혹은 장르간 융합(협력)을 위해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한 주요 전문가들의 예술적, 전문적 기량은 우수한가?
집행단계 (D)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25%)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한 주요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가?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객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융복합 협업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영역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성과단계 (S)	발전에 대한 기여도의 파급효과(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는 않은가? - 세부예산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 개인, 기업 등 민간기부금 유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p>지원신청주체의 기존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p>
		<p>사업계획은 예술위원회의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여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p> <p>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 노력은 적정하며 그러한 실적은 있는가? <p>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참여자, 독자, 관객 등)들의 만족수준은 어떠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2) 심사 및 결과발표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 다원예술창작지원 분야 심사는 2015년 2월 5일 결과 발표되었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⁸⁾

- 일시: 2015. 1. 16(금) 10:00~17:00(1차)
2015. 1. 23(금) 10:00~17:00(2차)
-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1차) / 다목적실(2차)
- 심의위원: 이OO, 이O, 조OO, 최OO, 하OO
-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심의과정은 심의위원회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 총 194건이 지원 신청하였고 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29건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8)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 지원심의 결과 발표. '다원예술분야' 부분.

(3) 지원결정금액

이 사업 심사결과 지원 선정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 결정액은 최저 7,000,000만원(최진요의 <벼룩상자> 등)에서 최대 50,000,000원((사)페스티벌봄의 <페스티벌 봄 2015>)였다.⁹⁾

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술인복지재단)¹⁰⁾

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 11월 18일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2012년 11월 19일 설립되었다. 현재 조직 구성은 이사회, 대표, 운영본부(경영지원팀, 창작준비지원팀, 예술가치확산팀),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전략·홍보,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¹¹⁾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서 예술활동증명 사업,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영화·방송·전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자금심 고취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패스 사업,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와 창작안전망구축을 구현하고자 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 등)와 협업을 기반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대행하고 납부보험료를 50~90% 지원하고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사업,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¹²⁾

(1)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사업개요, 신청기간·방법 및 선정심사 일정 등과 관련하여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³⁾

9) 2015년 문예진흥기금 다원예술분야 심의결정서.

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2017직공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결과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전체 인용함.

1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1. 사업 목적

- 장르별로 특화된 현장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예술인에게 교육과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
- 장르별 예술활동의 성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장르별 현장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르별 예술단체들이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현장예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사업 개요

- 사업명 : 『현장예술인교육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2014년 12월
- 사업의 규모 : 예술장르별 최소 10개 단체 선정, 1,000명 이상 지원
- 지원신청자격 :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
 - (단체의 법적형태) 3개 이상의 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컨소시엄
 -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 컨소시엄 참여 단체별 역할이 명시된 협약서 상호체결 및 제출 필수
 - ※ 참여제한
 - 같은 연도 재단 타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2014년 11월까지
- 지원금액 : 최대 100,000,000원(금 일억원)

3. 신청기간·방법 및 선정심사 일정

- 신청기간 : 2014년 2월 12일(수) ~ 2월 28일(금)(17일간)
- 선정심사 기간 : 2014년 3월 3일(월) ~ 3월 6일(목)(4일간)
- 선정심사 방법 : 1차 서류심사(행정심사) 및 2차 심의위원회 심사(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 지원신청자격 검토 및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확인
 - 2차 심의위원회 심사 : 전문심의위원회를 통한 종합심사
- 선정심사 결과공고 : 2014년 3월 7일(금)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마. (사)우리만화연대¹⁴⁾

(사)우리만화연대는 1992년 12월 ‘건강하고 올바른 만화문화 정착을 지향하여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한 ‘우리만화 협의회’가 전신이며 2001년 1월 ‘우리만화연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바. 월간희망 만화무크 만화 보고(BOGO)

90년대 만화 잡지의 영화를 부활하려는 복고의 시도가 아니라, 건강한 만화 생태계를 위한 미래 실험이라는 목적으로 (사)우리만화연대는 2014년 2월 창간호를 발행하였으며, 2015년 8월 13호를 마지막으로 휴간되었다.

보고 창간호(1호) 목차	보고 창간호(13호) 목차
오프닝: 해파리의 꿈 - 최민호	표지 일러스트 — 최호철
참여 작가 / 참여 필진	책을 펴내며 — 편집부
만화: 목호 1회 - 정용연	참여작가 / 참여필진
커버스토리: 웹툰건문록 2014	만화 엄마들 : 마지막 화 엄마들 — 마영신
1) [출만만화와 웹툰과 손가락 운동에 관하여] - 굽시니스트	만화 비트 앤 파이어 마지막 회 — 김형배
2) [대담, 웹툰, 웹툰을 말한다]	커버스토리: [보고]에 대한 보고서 079
3) [웹툰의 시대, 만화의 새로운 문법] - 김창남	출판 백선생 — 설인호
4) [한국 웹툰 연표] - 서찬휘	월간만화 [보고] 평가 좌담회 — 편집부
	[보고]를 보다 — 백정숙

2. 조사 내용

가. 우리만화연대 블랙리스트 등재에 대하여

(1) ‘수사보고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 수첩 발췌¹⁵⁾’에는 ‘BH면담’ 자리에서 ‘우리만화연대’와 관련된 언급을 한 메모가 있으며, 문화비서실 우리만화연대 -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부천만화시민연대(재보조사업) 이 적혀있으며, ‘우리만화연대는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융복합분야 사업에서 배제대상으로 분류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메모는 2014년 8월 16일에 작성된 것이다.

14) <http://www.urimana.co.kr>

15)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년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2016. 12. 29.

(3)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문서는 2015년 예술위 공모사업 융복합분야에서 우리만화연대 ‘만화BOGO토크콘서트’가 배제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3 융복합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명						
연번	분야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개요 및 검토내용	진행상황
2	콘서트	(사)우리만화연대	차성재	만화BOGO토크콘서트	○심사 제외	

(4) 우리만화연대 회원 블랙리스트 등재

우리만화연대가 발행 하였던 ‘월간희망 만화무크 만화 보고(이하 ‘보고’)’ 창간호(2014. 2.)에 참여했던 정용연, 서찬휘, 최인선, 유승하 및 마지막 13호(2015. 8.)에 참여했던 김형배, 최호철, 하민석 등은 9,473인 리스트에 등재된 예술가들이었다.

신청인 유승하는 9,473인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

월간희망 만화무크 만화 보고 참여 예술인	9,473 리스트 중 상세 내용
정용연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 909명
서찬휘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 909명
최은선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 909명
유승하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 909명
김형배	2012년 12월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
최호철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
하민석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 909명

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잡지 월간희망 만화무크 보고’ 지원 배제 의혹

(1) 신청인 우리만화연대 조남준 대표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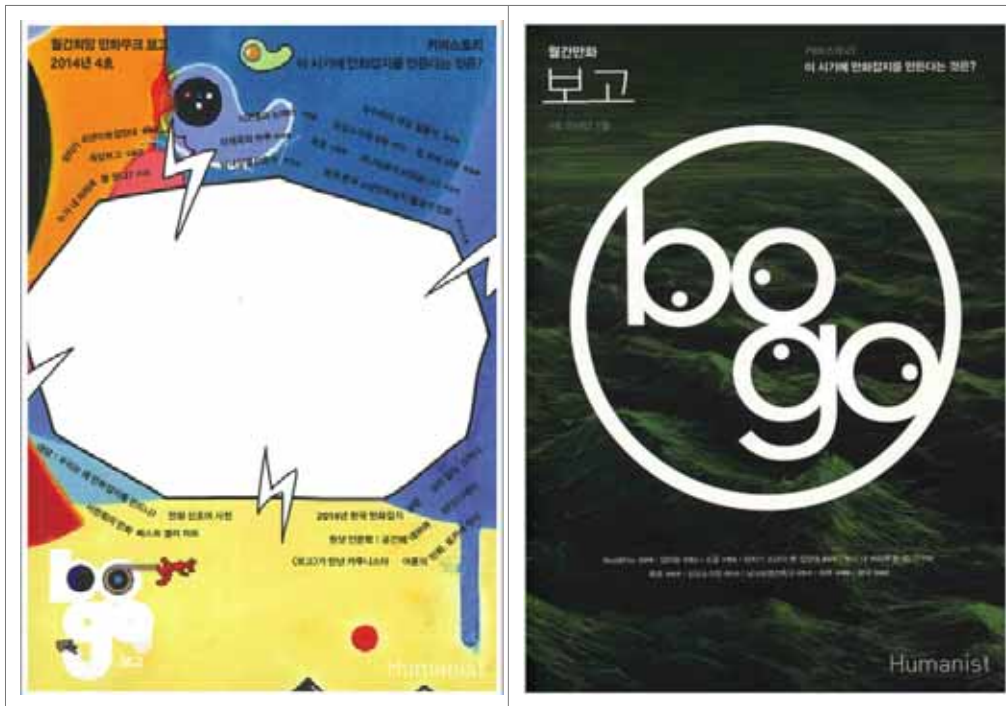
2013년 새로 발령 받은 대중문화산업과장(최OO)이 (사)우리만화연대 회장단과 면담 요청하여 문체부에서 회동하였는데, 주로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웹툰심의에 반

대하는 만화인들의 활동상에 대해 토의하던 중 만화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만화계의 자정과 정부의 강압적 심의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만화관련 리뷰나 평론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1997년 청소년보호법과 IMF로 인한 만화출판계의 시장붕괴로 인해 만화관련 지면들이 없어진 현실을 이야기 하던 중 담당과장은 (사)우리만화연대에서 만화잡지 발간하길 권유했고, 문체부 추경예산에 여유가 있으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통해 만화잡지 발간 지원을 하겠다고 담당과장이 답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만화연대는 2013년 말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의 '만화전문잡지 신모델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월간희망만화무크 보고를 발간하였고, 2014년 6월 12일 사업완료평가를 받아 별 이상없이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부터 확인 받았는데, 2014년 7월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부터 완료된 사업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엄포를 들었고, 발간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으므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보고 4호를 시중에 유통하지 말게 하겠다고 주장하였다(진술서 조남준(우리만화연대 대표)2018. 6. 7.).

- (2) 우리만화연대가 발행하는 만화잡지 월간희망 만화무크 보고 제2호(2014. 5. 26.)에 개재된 만평 유신공주인형놀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 안통하네뜨'라는 캐릭터로 등장하며 박정희를 연상시키는 소장 군복과 유체이탈 놀이용 옷, 김기춘을 연상시키는 김집사, 해외 순방복, 지방선거용, 대선용 인형 옷이 등장한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 신OO(사실확인서 2018. 4. 9.)은 “우리만화연대가 왜 문제단체로 지명되어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에 대해 언제인지 모르나 국정원 정보보고서에서 우리만화연대의 활동에 대해 언급된 적이 있고, 당시 대통령 비난 만화를 창작하는 작가가 우리만화연대의 회원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하고 유신공주인형놀이라는 만평 인지 여부에 대하여 “유신공주인형놀이는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다는 내용이 국정원 정보보고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4) 월간희망 만화무크 보고 제4호 발간 지연



2014년 7월 30일 가재 본 보고 4호는 이후 11월에 발행되었다. <1호 발행일 2014. 2. 24.>, <2호 발행일 2014. 5. 26.>, <3호 발행일 2014. 7. 7.>, <4호 발행일 11. 10.> 등으로 4호는 5달만에 발행되었다.

다. 예술인복지재단 2014 ‘현장예술인지원사업’ 우리만화연대 배제

우리만화연대는 월간 보고 2호 만평 게재 시점(2014. 5. 26.) 이전부터 국정원 문서에서 ‘左성향단체’로 기록되어 있었다.

(1) 문서 및 자료 조사

(가) 문체부, 左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국정원이 2014년 3월 17일 경 작성한 ‘문체부, 左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

업' 폐지 방침' 문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 지원사업'에서 민족미술인협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서울연극협회 등 좌성향 단체들이 대거 선정되자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웠고, 위 사업을 폐지하고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비판언론 및 진보진영에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면서 2014년 3월 중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고 추진할 복안을 세웠다.¹⁷⁾

<p>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p> <p>2014. 3. 17.</p> <p>1.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 민족미술인협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서울연극협회 등 좌성향 단체들이 대거 선정된 것과 관련 사업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p> <p>2. 關係 動向</p> <p>가. 문체부(당안·유선부)에서는</p> <p>1) 예술인 교육을 지원하는 '현장예술인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 공모제 총302.13~238 신청서 중40만 2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월초 심사를 실시, 10개 컨소시엄을 선정(3.5)하였는데</p> <p>2) 연극분야에 서울연극협회(대표기관) * 대한민국협회(사)한국회극작가협회 컨소시엄, 문화분야는 (사)한국작가회의(대표기관) * 한국문인협회·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컨소시엄,</p> <p>3) 미술분야에 (사)민족미술인협회(대표기관) * 경기·전북·강원 연맹회 컨소시엄, 만화분야는 (사)우리만화연대(대표기관) * (사)한국만화협회·한국만화스토리텔링 컨소시엄 등 7성향 단체가 선정되자</p> <p>4) 선정결과 발표(3.7) 계획을 중단하고, 교육지원보다는 예술인들에 대한 생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위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은 폐지키로 내부 방침을 결정</p>	<p>* 3.9 테러사건 '대포당' 중에 출현했던 배우 유동희의 생황교로 사상</p> <p>나. 이와 관련, 실무진에서는</p> <p>1)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좌성향단체인 한국작가회의의 경우 보수단체인 한국문인협회와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와,</p> <p>2) 우리만화연대(좌성향 단체)는 한국만화협회 및 한국만화스토리텔링, 서울연극협회(좌성향 단체)는 한국회극작가협회 등과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p> <p>3) 이념시비를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연합하는 양태까지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보수단체들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이르렀다며</p> <p>4) 위 사업을 폐지하고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비판언론 및 진보진영에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 입단속중</p> <p>* 3월중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 추진할 복안</p> <p>※ 붙임 :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공모문, 문.</p>
--	--

(나)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문체부는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술인들의 불행한 사고가 있었던 것

17) 국정원 IO,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1-2쪽. 2014. 3. 17.

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 사항을 문체부와 협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¹⁸⁾

(다)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예술인복지재단은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결정을 의결하였다.¹⁹⁾ 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 3월 21일 경제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안건 제12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4년 사업 점검에 관한 건'을 원안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예술인 복지사업 변경 계획(안)'의 추진 배경은 '○ 배우 우○○씨 자살, 송파 세모녀 자살 등 현행 복지 제도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한정된 예산 하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재설계 필요' 등으로 제시되었다.²⁰⁾

(라)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2014년 3월 21일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서, 이날 회의자료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하여 '○ 문제점: 2.24일 접수 시작 이후 신청자 수가 1,400명에 달하여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 등 지원기준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있음, 원로·경력단절 예술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은 자존심 또는 복잡한 서류 절차 등을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등을 이유로 예산을 20억원 증액(74억 원 → 94억 원)하면서 교육 지원 예산을 20억원 감액하기로 하고 있다.²¹⁾

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 문제점: 교육지원 사업 예산이 약 77억 원으로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은 기술 교육이 아니라 계약·저작권 등 예술활동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문제와 국가 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임'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변경

18)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2014. 3.12.

19) ○○○,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2014. 3.27.

20)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19쪽.

21)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19쪽.

내용으로는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과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32억 원 → 12억 원)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은 폐지(10억 원 → 0원)하고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은 축소(22억 원 → 12억 원)하였다.²²⁾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가) 000 진술조서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000은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심의 결과 시각·문학 분야(2014.3.4.)에서 민족미술인협회(경기 민예총, 전북 민예총, 강원 민예총)와 한국작가회의(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중예술분야(2014.3.4.)에서 우리만화연대(한국카툰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공연예술분야(2013.3.5.)에서 서울연극협회(대전연극협회, 한국희곡작가협회) 등이 선정되자 문체부가 선정 결과 발표(2013.3.7.) 계획을 중단하고 교육지원보다는 예술인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하고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은 폐지하라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지시한 사실에 대하여 그 당시 김OO 복지사업팀장, 유OO 기획관리팀장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²³⁾

000은 다만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이 폐지된 이유가 선정된 단체들이 좌성향 단체들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위 사업이 폐지된 것이 무언가 부당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였고,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촛불 이후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예술단체들이 대대적인 표적 감사를 받는 등 특정 정치 성향을 이유로 배제되는 사례들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000은 당시 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공석인 상태에서 김OO 복지사업팀장, 유OO 기획관리팀장 모두 난감해 했고, 예술인복지재단은 2013년 가을 “찍어서 자르겠다.”는 뉴스타파(10.29) 보도에서 확인된 것처럼 재단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문체부가 거의 직접적으로 예술인복지재단을 관리하다시피하고 있던 상황에서, 심의가 이미 끝난 사업에 대하여 문체부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독립기관인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개입하여 사업을 폐지시키는 상

22)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19-20쪽.

23) 000 1회 진술조서, 4쪽. 2017.12. 7.

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김OO, 유OO 두 팀장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²⁴⁾

(나) 000 진술조서

000 예술인복지재단 대리는 2014년 3월 27일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사업 폐지 및 2014년 4월 24일 예술인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축소 발표와 관련하여, 2014년 3월 21일 개최된 예술인복지재단 5차 이사회 회의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이 회의자료 중 ‘예술인 복지사업 변경 계획(안)’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문체부 000 주무관이 이메일로 보내준 내용을 자신이 편집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²⁵⁾

(다) 김OO 진술조서

예술인복지재단 김OO 복지사업팀장은 2014년 3월 경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문체부의 지시 사항은 모두 유OO 기획관리팀장에게 전달되었고, 유OO 팀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구조였는데, 그 당시 유OO 팀장으로부터 문체부 강OO 사무관이 현장 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반발하였다고 하였다. 김OO 팀장은 문체부 예술정책과 조OO 과장을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만났는데 조OO 과장은 당시 송파 세 모녀의 죽음과 배우 우OO의 자살을 얘기하면서 위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사업비를 예술인긴급복지사업을 확대(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고, 이후 자신의 요청에 따라서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공문을 예술인복지재단으로 보내주었으며, 2014년 3월 21일 경 개최된 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예술인긴급복지지원사업이 증액되었다고 진술하였다.²⁶⁾

김OO는 심사위원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문체부의 입장과 이사회 결정에 대하여 설명했고, 예술단체들에게도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현장 예술단체들이 의구심을 표하며 항의를 하겠다고 하여서 현장 예술단체들과 문체부 사이에 간담회가 열렸다고 진술하였다.²⁷⁾

24) 000 1회 진술조서, 4-5쪽. 2017.12. 7.

25) 000 1회 진술조서, 9쪽. 2017.12. 7.

26) 김OO 1회 진술조서, 3-6쪽. 2017.12.14.

김OO는 2014년 10월 22일 경 박계배 대표가 취임한 이후 대표가 부재하였던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상황 전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²⁸⁾

(라) 강OO 진술조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OO 사무관은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결과발표 중단 지시 경위와 관련하여,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선정 결과 서울연극협회, 한국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우리만화연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서울연극협회, 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분위기로 알 수 있었지만 우리만화연대는 콘텐츠국 소관이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문체부 콘텐츠국 담당 사무관에게 이 단체가 문제가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그 사무관이 본인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청와대에 물어보라고 하여서 청와대 신OO 행정관에게 우리만화연대를 지원해도 되는지 확인했더니, 신OO 행정관은 약간 부정적이었고, 그 뒤로 청와대 안에서 공유가 된 것 같고, 또 그 뒤로 조OO 예술정책과장이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강OO 사무관은 자신이 예술인복지재단에 위 사업 결과 발표 중단을 지시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자신이 그러한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⁹⁾

강OO는 사업폐지 및 예산 변경 명분과 관련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과 안에서 향후 조치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배우 우OO 자살 사건,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예술인긴급복지사업의 기금을 늘려야 하는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위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예술인긴급복지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³⁰⁾

강OO는 문체부가 예술인복지재단에 사업 재점검을 공식 요청하였던 경위와 관련해서는, 조OO 과장과 예술인복지재단 김OO 팀장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만난 사실이 있으며 두 사람이 만난 이후 문체부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2014.3.12.) 공문을 예술인복지재단으로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³¹⁾

강OO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경위와 관

27) 김OO 1회 진술조서, 7쪽. 2017.12.14.

28) 김OO 1회 진술조서, 8쪽. 2017.12.14.

29)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30)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31)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련하여, 2014년 3월 21경 개최된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예술인긴급복지지원 기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의 규모를 축소할까닭은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³²⁾

강OO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와 관련된 경위는 당시 김OO 예술정책관, 문체부 조현재 차관, 유진룡 장관 등에도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³³⁾

(마) 이OO 진술조서³⁴⁾

이OO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조OO 과장 재임 시기에 있었던 위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와 관련하여 조OO 과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형식적인 절차로서 결재를 하기는 하였지만 위 사업 폐지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⁵⁾

(바) OOO 진술조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OOO 주무관은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심사 결과 서울연극협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민족미술인협회 등이 선정되자 결과 발표를 중단하고 생계가 곤란한 예술인들을 긴급지원하기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고 예술인복지재단에 통보하였던 경위와 관련하여 “2014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일부를 폐지·축소하게 된 것은 당시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가 되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우리 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지원이 우선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른 업무지시를 받고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 등 관련 조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예산까지 축소 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2014년 2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 우리 부에서는 생계비 지원의 성격이 있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동 사업

32)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33)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34) 이OO 1회 진술조서. 2018. 2. 1.

35) 이OO 1회 진술조서, 3쪽. 2018. 2. 1.

의 예산을 축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를 확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어 생계지원이 급박한 예술인 등을 발굴하는 등 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³⁶⁾

(사) 조OO 진술조서

참고인 문체부 조OO 예술정책과장은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 3월 배우 우OO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하여 예술인 복지사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중 담당 사무관이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에 확인 차 전화를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이 이 건의 사업자 선정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내부에서 진행 과정은 모르고 당시 유진룡 장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다면서 어떤 사업인지 물었고, 이에 대해 예술인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한 상기 고민 사항을 유진룡 장관에게 말한 후 생계가 곤란한 예술인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⁷⁾

라. 2015년 융복합·다원예술 분야 공모사업 우리만화연대 배제

(1)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³⁸⁾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비판단체 지원 차단책 추진(2014. 9. 26.)

문체부가 2014. 9.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좌성향 단체 지원을 배제하는 방침을 세우고, 2015년 사업 심의시 신규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배제 명분을 마련하고, 문예진흥기금 사업 심사를 담당하는 책임심의위원들을 보수 인사로 선임한 후 책임심의위원들을 통해 문제 사업들을 제외시킬 계획을 세웠다.³⁹⁾

36) OOO 사실확인서, 2쪽. 2018. 3. 6.

37) 조OO 사실확인서, 1-2쪽. 2018. 3. 23.

38) 2017직공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2)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2014. 11. 21.)

2014. 11. 21. 개최된 대통령비서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문제작품(작가)을 배제하겠다고 하고 있다.⁴⁰⁾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사업 관리 강화

- '15년 예술위 정기공모 5개부문(문학, 미술, 공연, 복합, 국제교류) 18개 사업에 1,990건 452억 지원신청 접수('15.1월 신청결과 발표예정)
- ⇒ 신청 사업에 대한 단계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작품(작가) 배제
 - * 신청서 특이사항 검토(11월, 문체부) → 문제 작품 배제(12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회) → 심사결과 확인(12월, 문체부-예술위) → 최종 검토 후 의결(15.1월, 예술위 전체회의)

3)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2014. 12. 19.)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총 신청건수 1,990건 총 출자액 189억

1. 문체부관리

구분	특이사항	비고
문예사업	· 예술위원회 주관 사업	· 신청건수 1,990건
문화재단	· 문화재단 주관 사업	· 신청건수 1,990건

2. 지자체별관리

구분	특이사항	비고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주관 사업	· 신청건수 1,990건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주관 사업	· 신청건수 1,990건

3. 공연예술분야

구분	특이사항	비고
공연	· 공연 주관 사업	· 신청건수 1,990건
공연	· 공연 주관 사업	· 신청건수 1,990건

4. 국공립공연단

구분	특이사항	비고
국공립공연단	· 국공립공연단 주관 사업	· 신청건수 1,990건
국공립공연단	· 국공립공연단 주관 사업	· 신청건수 1,990건

5. 문화예술·다문화분야

구분	특이사항	비고
문화예술·다문화분야	· 문화예술·다문화분야 주관 사업	· 신청건수 1,990건
문화예술·다문화분야	· 문화예술·다문화분야 주관 사업	· 신청건수 1,990건

1. (가정) (사)우리만화연대 (차성재) 만화BOGO토크콘서트 심사에서 제외

39) 국정원,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비판단체 지원 차단책 추진', 1-2쪽. 2014. 9. 26.

40)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2014. 11. 21.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문서는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총 신청건수 1,989건 중 특이사항이 106건 있다고 하면서 문학분야, 시각예술분야, 공연예술분야, 국제교류분야, 융복합·다원예술분야 등으로 나누어 특이사항과 그에 대한 방안을 각각 기술하고 있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이 문서를 자신이 작성하여 김OO 예술국장에 주었고, 김OO 국장은 장관에게 보고한 후 문서 상단 수기 메모 “14.12.19. 8:50 장관보고필”을 하여서 다시 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¹⁾

4)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15.1.15.)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문서에서는 2015. 1. 15. 현재 다원예술분야에서 프린지페스티벌 등 ‘특이사항’ 11건을 전부 제외할 예정, 연극분야에서 ‘특이사항’ 12건 제외예정, 문학분야에서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배제를 위한 ‘별도 방안 마련’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15.1.15(월)			
□ 심사 현황			
분야	진행상황	검토	발표시기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심사완료	특이사항 없음	*15.1월말
시각예술	심사완료	심사완료후 1건 발생(연운기)	*15.1월말
소외계층문화수혜	심사완료	심사완료후 1건 발생(윤시중)	*15.1월말
다원예술	심사진행중	특이사항 총 11건 전부 제외예정 -프린지페스티벌 등	*15.1월말
연극분야	심사예정(1월3주)	특이사항 총 12건 전부 제외예정	*15.1월말
공간,국제지원-완료	공간,국제지원-완료	별도방안 모색 중(총 99건)	
문학분야	창작기금-심사중	-창작기금, 무기명 심사시 일부제외 예상	별도방안 마련
	문예지,행사지원-미경	-심사완료분야 4건추가 발생	
□ 특이사항 현황			
○ 1차: 연극 8건			
성명	단체	검토사항	
양정음 (연극)	배세도연극계	○B명단에 없으나 K명단에 존재 ○BH행사 참석 등 양호판단, 제외조치(B와 협의완료)	
윤시중 (연극)	하망새	○B명단에 없으나 K명단에 존재 ○심사완료(소외계층)된 분야 1건 발생, 심사전(연극) 1건 해당 ○2012문재인후보지지 활동 등으로 심사제외조치 예정	
○ 2차 : 문학, 다원, 시각예술분야 총 29명			
성명	단체	검토사항	
김주영 (문학)	장날 (북지재단이사장)	○B명단에 없으나 K명단에 존재 ○문학공간지원 선정완료된 상황 ○BH행사 참석 등 양호판단, 제외조치(B와 협의완료) - 2003년도현대문학단선과 위임사 준비위원회 위원 등	
민운기 (시각예술)	스페이스팀	○B명단에 없으나 K명단에 존재 ○시각예술 공간지원 선정완료된 상황 ○2012야권연대 공동선대위, 시민사의 멘토단 등 ○B 판단유보, 적의판단 필요	
김건호 (문학)	파주북소리조직위	○B명단에 없으나 K명단에 존재 ○문학국제행사지원 선정완료된 상태 ○노무현지지, 시극선연 중 ○B, 부정적 ○외주북소리축제:출판인쇄산업과 후원명칭사용 등 행정지원중	
김준식 한강 (문학)	개인 신청	○문학국제교류지원사업에 선정완료된 상태 ○문학분야 전체적으로 별도 조치방안 강구 필요 ○사업중단, 상반기 연기방안 등	

41) 오OO 1회 진술조서, 24쪽. 2018. 2. 7.

5)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지원 배제 개요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에서 2015년 문예기금 등 사업에서 지원 배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²⁾

2014. 10. 경 예술위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작가가 문학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시·시조·소설·희곡·아동문학·수필·평론 등 문학 분야 작가에게 문예기금에서 1인당 1,000만 원씩 총 99명에게 합계 9억 9,0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지원 신청을 공고하였고, 2014. 11. 중순경까지 총 959명이 지원신청을 하였다.

문체부 김OO 예술정책관은 그 무렵 예술위 이OO 예술진흥본부장 등 문예기금 공모사업 업무 담당 직원들을 세종 정부청사로 불러, 걸개그림으로 논란이 된 홍성담 작가를 예로 들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작가나 작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는 뜻을 전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문체부 김OO 예술정책관, 이OO 예술정책과장에게 예술위 심사 이전에 지원신청자 명단을 청와대로 송부하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과장·국장·차관 등을 거쳐 김종덕 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예술위로부터 2014. 11. 경 지원신청자 전체 명단 및 2015. 1. 경 1차 무기명 심사를 통과한 지원신청자 약 198명의 명단을 각 건네 받아 문체비서관실 김OO 선임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신동철은 소통비서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4. 10. 2. 경 정관주가 후임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하자 정관주에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인계하면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업무를 인계하였고, 피고인 김소영 문체비서관으로 하여금 정관주에게 지원배제 대상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소영은 문체부로부터 지원신청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다음 이를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며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선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정관주는 소통비서관실 R 행정관을 통하여 김성장 등 정부정책을 비판한 전력이 있거나 야권인사지시, 시국선언자 등 총 17명을 선별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통보하였다.

김OO은 정무수석실에서 통보받은 17명의 명단을 전화로 문체부 오OO 사무관에게 알려주었고, 오OO은 이를 김종덕 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예술위 이OO 예술진흥본부장, 장OO 창작지원부장 등 임직원들에게 고지하며 이들이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경로를 통해 예술위에 배제 대상자 명단을 수차례 추가 하달하였다.

예술위 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은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지원심의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심사 및 최종 선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위 위원들과 책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하면 윗선에서 아예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도 한다. 그건 결국 사업을 하지

42)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15-19쪽.

말라는 애기와 같다. 도와 달라'고 하면서 하달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지원배제를 위해 심사 일정을 연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오OO 사무관은 2015. 5.경 김OO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등 범주에 포함된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문체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한 후 송부하라는 지시를 받아 총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송부하였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사가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되는 과정에서 문체부와 예술위는 문예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파장내지 심각한 논란의 우려가 있거나 정부정책에 동조한 경력, 여권 인물에 대한지지 경력도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관련 설명자료를 작성해 청와대에 양해를 요청하였고 이를 청와대에서 수용함으로써, 예술위는 2015. 7. 중순경 청와대에서 하달된 5명을 심사과정에서 배제하고 지원금 수혜자를 당초 예정한 99명에서 70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2014. 10.경부터 2016.1. 경까지 사이에 예술위가 주관하는 2015년 문예기금 사업 등인 아르코대학교예술극장 정기대관 사업,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사업,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 문학행사 및 연구지원사업,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 우수문예지 발간지원사업, 교정시설·군부대·농산어촌·사회복지시설·임대주택 순회사업,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공연예술 창작산실(연극-시범공연)사업,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대학교예술극장 3관 대관, 공연예술 창작산실(연극-대본 공모)사업,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주목할만한 작가상 선정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예술계 지원·선정 배제 대상자 명단이 수시로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에 순차 하달되어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되었고,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과 같이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김기춘, 김상률, 김소영은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비서실장, 교문수서사, 문체비서관, 문체부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에 기재된 사업들에서 같은 일람표에 기재된 대상들을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인 이OO·장OO·이OO·이OO·양OO·강OO 등으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 심의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문예진흥기금 지원배제 대상자 검토 및 하달 과정 개요

한편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은 문예기금 지원배제 대상자의 검토 및 하달 과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⁴³⁾

43)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80-81쪽.

마) 문예기금 지원배제 대상자의 검토 및 하달

앞서 본 것과 같이 문체비서관실은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 당시 정무수석실의 소통비서관실과 협조하였고,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피고인 김소영은 모철민 교문수석의 지시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당시 신동철 소통비서관으로부터 배제 대상자 검토를 받았다. 피고인 김소영은 그 후에도 신동철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2014. 10. 2. 경 정관주가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 김소영이 배제 대상자 선별을 요청하기 위해 신동철을 찾아오자 신동철은 피고인 김소영을 정관주에게 안내하면서 앞으로 정관주에게 검토를 요청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김소영은 정관주를 찾아가 명단을 건네면서 배제대상자 선별을 요청하였다.

정관주는 소통비서관실 R 행정관에게 명단 검토업무를 맡겼는데, R은 정관주가 보여준 ‘문체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지침삼아 그 첨부 일람표의 ‘특이사항’, ‘비고’란에 기재된 지원배제 등의 사유를 반영하여 명단을 검토하고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문체부 오OO 사무관 등은 예술위로부터 공모신청자 전체 목록을 받아 이를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김OO은 이를 피고인 김소영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김소영은 피고인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정관주 소통비서관의 검토를 받은 배제 대상자 명단을 김OO을 통하여 문체부 김OO 국장, 이OO 과장, 오OO 사무관 등에게 개별 사업별로 전화로 불러주거나, 2주마다 비서관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하달하였다.

오OO 등은 위와 같이 공모신청 접수 후 공모신청자 목록을 청와대로 보내고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예술위에 하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배제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정리한 문예기금 등 공모사업의 신청현황,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김종덕 장관을 거쳐 교문수석실에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에는 각 사업별 신청현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의 내용(‘문재인 지지’, ‘노무현지지’, ‘야권연대 공동선대위 등’), 배제 사유 해당자를 선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심사 시 제외, 별도 사유의 제시, 사업 중단·연기) 배제가 부적절 또는 곤란하여 청와대의 양해가 필요한 사안 및 이유(청와대 행사 참석 등, 검열논란 이슈화, 예술계의 반발 등) 등이 있었다.

그 후 정관주는 2016. 2. 초경 문체부 제1차관으로 부임하였고, 교문수석실 행정관도 김OO에서 오OO로 변경되자, 오OO는 오OO에게 “정관주 차관에게 리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어보고 의견을 달라.”고 하였고, B 국장과 오OO이 정관주를 찾아가 리스트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묻자 정관주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청와대에서 안 된다면 보고를 해 달라.”고 하여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배제 업무가 계속 진행되었다.

한편 문체부는 청와대를 통하여 지원신청자 목록을 검토 받는 것과 별도로 국정원 연락관을 통하여 국정원에도 지원신청자 목록을 보내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따로 받기도 하였다.

마.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 우리만화연대 주요 작품 배제에 대하여

(1) 문서 및 자료 조사

(가) 사건번호2017고합77 증인 박민권 1차관은 녹취서 13면에서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산하기관에도 위와 같이 각 문체부 실무자들이 각 산하기관의 담당자들을 통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여 블랙리스트를 반영하여 지원 사업에 선정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문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산하기관에도 위와 같이 각 문체부 실무자들이 각 산하기관의 담당자들을 통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여 블랙리스트를 반영하여 지원 사업에 선정에 관여하였지요.
답	예.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가) 참고인 신OO의 사실확인서 (2018. 4. 9.)

“국정원 정보보고서에 우리만화연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에 문화체육비서관의 지시로 관련 내용을 공유한적이 있다. 그리고 비서관이 우리만화연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에 비서관 이해 참고용으로 우리만화연대가 어떤 곳인지 현황자료를 받아본 적은 있는 것으로 기억하며, 통상적으로 현황보고에는 관련 단체의 개요(설립일, 대표자, 주요회원), 정부 지원사업 현황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고 “하지만 동향을 보고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한 적은 없고”, “국정원 정보보고서는 수석비서관이 비서실장 주재회의를 마치고 한부를 받아와서 문화체육비서관에게 전달해 주면, 비서관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에게 한 장 씩 찢어서 나눠주고,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때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참고하도록 정보를 알려주는 식으로, 우리만화연대에 대한 정보보고서 내용에 대한 공유와 현황자료를 받아본 배경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당시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의 강OO 과장과 김OO사무관으로부터 우리만화연대에 대해 지원사업 배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지원배제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비서관이 국정원 정보보고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문화체육관광

부에 국정원 정보보고서에 000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라는 형식으로 유선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내부망 메일로 전달한 적이 있다”고 하고 “정보보고서에 언급된 개개 단체나 개인을 특정하여 지원하지 말 것을 지시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영화분야에서 일부 지시가 있었을 뿐”이라고 기재 하였다.

(나) 참고인 김00 (사실확인서 2018. 3. 18.)

김00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은 우리만화연대가 소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 “2014년 당시 블랙리스트는 없었고, 다만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우리만화연대 관련 현황보고를 지시한 바는 있다” 라고 하고, “우리만화연대에 대한 배제지시를 받은 경위에 대해, “당시 우리만화연대에서 제작하던 만화잡지 <보고>에 당시 박근혜 정권을 소재로 한 작품이 실려있었으며, 이와 관련 차년도 사업에서는 배제하도록 했다”고 하고 아울러 “청와대 문체비서관실과 직접 소통하였다고 했으며, 우리만화연대 발행 잡지 <보고> 관련 문제상황을 공유하고 당시 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메이션센터사업팀장 이00, 담당 과장 김00, 담당 주임 000과 협의하여 차년도에는 배제하도록 했고, 배제방법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다.⁴⁴⁾ 김00은 당시 콘텐츠정책관의 이름을 박00으로 기재하여 그 시기는 2014년 10월 10일에서 2014년 12월 사이의 일로 특정된다. 김00은 2014년 12월 경 휴직하였다.

44) 이에 대해 참고인 김00은 ‘2018.3.18. 사실확인서는 오랜 휴직으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사실 관계에 오해가 있던 상태에서 정확하지 않게 작성되어 2018.4.5. 위원회 조사에서 바로 잡았으나 반영이 되지 않은 채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보고’ 잡지 제작 지원을 한 사업 주관기관은 ‘콘텐츠진흥원’이 아니라 ‘만화영상진흥원’이며, 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전문잡지 다양성 지원사업(추경)’은 콘텐츠진흥원의 ‘다양성 만화잡지 제작지원사업’이나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함(‘18.11.14). 콘텐츠진흥원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에 대한 문체부 감사관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콘텐츠진흥원 담당자는 문체부 등 대내외로부터 우리만화연대의 지원배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8.7.31.).

<참고 : 우리만화연대 지원내역(2013 ~ 2015년)>

구분	주관기관	지원금액	지원내용
2013 만화전문잡지 다양성 지원(추경)	한국만화 영상진흥원	80백만원	• 만화잡지 <보고> 제작비
2014 만화 매체용 창작 및 연재지원	한국만화 영상진흥원	160백만원	• 7개 작품의 원고료 지원 (90% 이상 작가 분배 의무)
2015 연재만화 제작지원	한국콘텐츠 진흥원	40백만원	• 1개 작품의 원고료 지원 (90% 이상 작가 분배 의무)

(다) 참고인 김OO (진술조서 2018. 4. 5.)

김OO은 “만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 신OO과 연락을 했고, 신OO의 지시를 받아 우리만화연대 지원현황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하고 “우리만화연대 측에서 <보고> 잡지를 보내왔는데 잡지에 실린 내용을 보고 아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했으며, “만화영상진흥원에 연락하여 <보고>라는 잡지는 더 이상 지원하면 안되겠다고 말을 했고, 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우리만화연대와 더 이상 같이 일을 진행 할 수 없다. 지원할 수 없다”라고 했고 신OO 행정관으로부터 우리만화연대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배제지시를 받아 문체부 담당과장인 강OO과장과 진술인 등이 회의를 거쳐 관련기관인 콘텐츠진흥원, 만화영상진흥원에 배제지시를 한 것이 맞는가에 대해 “차년도 사업부터 우리만화연대 <보고> 잡지에 대한 계속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청와대로부터 우리만화연대 <보고> 잡지에 대해 지원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각 기관의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배제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참고인 강OO (진술조서 2018. 3. 22.)

강OO 문체부 대중문화예술과장은 “직접적인 배제지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만화잡지 <보고>에 실렸던 어떤 콘텐츠가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실질적으로 배제를 지시 받고 지시한 기억은 없다. 우리만화연대에 대해 배제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던 분의 기억이 맞다면 당연히 저에게 보고가 되었겠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참고인 김OO (진술조서 2018. 3. 29.)

김OO 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사업팀 과장은 “보고 잡지에 정황상 박근혜 대통령 얼굴로 보여지는 그림이 나와서 문제가 되었고 문체부에서 OOO 주무관과 김OO 사무관이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으며, 당시 문체부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멘트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고 “김OO 사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팀장도 공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팀장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며 “<보고>라는 만화잡지의 내용에 대한 우려와 지적으로 배제지시를 인식할 수는 있었지만, 심사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배제지시는 받았지만 심사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OO 팀장도 문체부로부터 우리만화연대 배제지시가 있었던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이OO 팀장도 알고 있었으며, 대화의 단어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배제지시에 대해서는 대화의 뉘앙스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바) 참고인 000 (진술조서 2018. 3. 30.)

000 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사업팀 주임은 “2013년에 제작지원사업을 했지만 2014년부터 다른 업무를 해서 우리만화연대 배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고 과장이나 팀장은 부서의 일을 전부 알고 있는 구조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참고인 이OO (진술조서 2018. 4. 4.)

이OO 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사업팀 팀장은 유신공주인형놀이와 고양이 동화를 본적이 있다는 질문에 “유신공주인형놀이는 본 적이 없으며, 고양이 동화는 팀내에 지나가는 말로 들었고, 사업 및 업무가 많아 전반적인 사업내용 부분을 세심하게 볼 상황은 아이어서 그냥 이렇게 있었다는 것만 아는 정도이며, 문체부로부터 혼났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은 없고 헤프닝 정도로만 기억난다”고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헤프닝이 있었냐에 대해 “캐릭터가 박근혜 대통령을 닮았다는 내용정도를 들었지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질책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김OO 사무관이 배제지시를 했고 김OO 과장도 배제지시를 받았다는 질문에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하고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 심사에서 세월호를 주제로 한 작품에 이OO 사업팀장과 심사위원 두명이 최저점을 준 것에 대해 “평가 기준 요소에 따라 평가를 했고 결과는 우연의 일치”라고 진술했다. 개별평가표를 보여주며 공정성에 대해 물어보자 “상업성 같은 부분을 고려했고 다른 심사위원들의 개인적 판단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며 “사업 목적 자체가 상업적인 성공가능성이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은 따로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김OO 사무관이 배제지시를 했다는 진술서를 보여줬음에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하고, “김OO 사무관과 통화 한 적도 없으며 배제지시에 대해 전달 받은 적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 문체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팀내 공유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모든 일을 팀장에게 보고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아) 참고인 김OO (진술청취 2018. 6. 5.)

김OO 우리만화연대 기획담당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 2차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이름을 알 수 없었으나 여자 심사위원 한명, 남자 심사위원 한 분 두 명의 심사위원이 이런 시기에 이런 민감한 작품을 내었느냐며 공격적인 질문을 받아 약간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끈’은 세월호 이야기를 담고 있고, ‘명태’는 북한 관련 이야기, ‘광야’ 라는 작품은 항일 운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추후, 들었는데, “콘진의 담당자 이OO이라는 사람이 당시 심사분위기를 주도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누가 이OO이었던 몰랐고, 얼굴을 알지 못하여 앞서 말한 심사위원 중에 한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고 하며 “2015년 사업 신청 결과가 나빠서, 이후 2016년, 2017년 콘진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당시 참여한 출판사 그룹들은 상업적 만화를 출간하는 곳이어서 주류인데, 서울 문화사, 대원, 학산 등을 빅3라고 합니다. 우리만화연대의 경우는 작가 중심 활동을 하는 곳이라 다른 상업 출판사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라고 하였다.

(자) 신청인 유승하 작가(서면 진술서 2016. 6. 6.)

신청인 유승하는 2016년 12월 경 우리만화연대 간사로부터 관련 의혹을 들었고 그래서 조사신청을 했으며 2015년 지원 신청 이외 어느 지원사업에도 참가한 적은 없다고 기재 하였다.

신청인은 연재 만화 <끈> 의 기획의도에 대하여 “손잡아주고 기억해주고 보듬어 안아 학부모들의 상처를 감싸는 만화” 라고 공모사업 기획신청서에 기재하고 있다.

(3) 우리만화연대 작품을 배제한 방법에 대하여

(가)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 자료조사

1) 이 사업은 10개월 이상의 매체연재 조건으로 해당기간의 작가 원고료, 취재비, 작품 홍보·마케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관 및 참여기관은 지원금의 90% 이상을 작가 고료 및 자료조사 등 작가비용으로 편성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내부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점수산정시 평가는 단계별 탈락제(70점 미만 탈락)로 진행하며 총 2단계 평가 결과를 합산(1차 30%, 2차 70%)하여 과제를 선정한다.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계산한다. 세부평가항목은 아래와 같다.

서면평가 (1차평가, 비중 30%)		질의응답평가 (2차평가, 비중 70%)	
기획의 우수성	20점	성공 가능성	30점
작품의 우수성	30점	수행기관의 전문성	30점
매체의 우수성	20점	과제수행 능력	20점
홍보·유통계획	20점	지속연재의 가능성	20점
예산의 적정성과 재원마련 가능성	10점		

2) 해당 사업은 2014년에는 1차 점수 40%, 2차 점수 60% 합산이었으나 2015년에 1차 점수 30%, 2차 점수 70% 합산으로 바뀌었으며, 콘텐츠진흥원은 2015년 5월 6일자로 사업팀에서 심사위원 2인을 3배수로 추천하도록 심사위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위 사업의 1차 서면평가는 4월 27~28일 이루어졌고 2차 질의 응답 평가는 5월 11~12일에 이루어졌다.

2015. 5. 6. 제규정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주요 개정내용 및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의 선발은 선정전담부서에서 최종선정 예정 위원 수의 3배수를 추천하고, 추천순위에 따라 3~5일전(토, 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통보하여 참가가능자순으로 7명 내외를 심사평가담당부서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평가위원의 세부 구성 및 선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5.XX.> 1. 평가위원의 세부구성은 해당사업담당부서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3명(내부전문가 포함), 선정전담부서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4명 내외를 합하여 제①항과 같이 총 7인 내외로 구성한다.

인행	개정(안)
	2. 해당사업담당부서와 선정전담부서는 각각 해당 외부전문가 구성인원의 3배수를 추천한다 3. 선정전담부서는 제2호 인원을 3~5일전(토, 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심사평가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하며, 심사평가담당부서는 통보받은 추천순위에 따라 참석가능자 순으로 7인 내외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2015년 연재만화제작 지원사업에는 총 174개의 신청작이 있었으며, 1차심사 통과 작품은 77개로 신청인 유승하의 작품 <끈>은 1차 심사 통과 작품 중 3등이었다. <끈>은 세월호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진술인의 신청서에 심사위원 중 한명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세월호야”라는 발언을 했다고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1차 평가에서 10위 안에 든 작품 중 유일하게 <끈>만 최종 탈락했다. 심사위원 7명 중 콘텐츠진흥원 사업팀장인 이OO을 포함해 3인이 <끈>에 최저점수를 줬으며, 50점대 점수를 두 명에게 받은 작품은 <끈>이 유일하다. 이OO팀장은 77개 작품 중 총 8개의 작품에 최저점수인 61점을 줬으며 이 중 우리만화연대 작품은 3개 작품이다. 이 3개의 작품 중 <끈>은 세월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명태>는 국정원 직원과 북한이 무대로 등장하고, <광야>는 일제 강점기가 시대배경으로 등장한다. 심사위원 7명 중 70점 이하로 평가한 4명의 평균점수는 58.75점이고, 70점 이상으로 평가한 3명의 평균점수는 81점이다. OOO 심사위원의 경우 본인의 최저점을 준 작품 두 개가 모두 우리만화연대 작품이다. <끈>의 경우는 1차평가 4등, 2차평가 66등으로 1차평가와 2차평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아래 표 참조.

[표-1] 우리만화연대 지원작에 대한 심사위원 2차평가 결과

업체명	사업명	이OO	이OO	고OO	윤OO	제OO	이OO	문OO	1차 평가순위	2차 평가순위	최종 평가순위
우리만화연대	끈	61	50	59	65	83	75	85	4	66	54
우리만화연대	광야	61	70	64	62	94	76	85	16	54	51

업체명	사업명	이00	이00	고00	윤00	제00	이00	문00	1차 평가순위	2차 평가순위	최종 순위
우리만화 연대	명태	61	60	59	64	75	83	85	74	68	72
우리만화 연대	건달농부 의~	70	80	64	72	75	80	80	25	32	31

* 최종순위 50위까지 지원

(4) 심사위원의 담합 의혹에 대하여

(가) 위 [표-1]과 아래 [표-2]는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 심사위원들의 개별평가표이다. 심사의 일관성과 심사위원 3명이 전체 심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 서울문화사와 우리만화연대를 예시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2] 서울문화사의 지원작에 대한 심사위원 2차평가 결과

업체명	사업명	이00	이00	고00	윤00	제00	이00	문00	1차 평가순위	2차 평가순위	최종 순위
서울 문화사	푸른유리	74	80	78	80	84	81	90	6	3	2
서울 문화사	김영자 부띠끄에 어서오세요	74	80	79	68	80	83	80	9	10	4
서울 문화사	신여성	75	80	78	84	79	81	90	45	4	5
서울 문화사	궁극의아이	81	80	77	84	79	77	90	52	5	9
서울 문화사	더 공쿠르	79	80	79	68	83	84	90	66	1	5
서울 문화사	양신의강림	76	80	77	64	77	77	90	66	17	26

[표-3] 심사위원 이00의 서울문화사에 대한 개별점수 결과표

업체명	과제명	성공가능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합계	*평가의견
서울 문화사	신여성	20	25	15	20	80	

업체명	과제명	성공가능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합계	*평가의견
서울 문화사	더콩쿠르	20	25	15	20	80	
서울 문화사	김영자 부띠끄에 어서오세요	20	25	15	20	80	
서울 문화사	푸른유리	20	25	15	20	80	
서울 문화사	궁극의아이	20	25	15	20	80	
서울 문화사	양신의강림	20	25	15	20	80	

* 평가의견은 6개 지원작 모두 같음

: 단단한 기획력과 매체유지로 만화산업을 이끌어가는 서울문화사에 가점

[표-3-1] 심사위원 이OO의 우리만화연대에 대한 개별점수 결과표

업체명	과제명	성공가능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합계	*평가의견
우리만화 연대	끈	10	15	10	15	50	1)
우리만화 연대	명태	10	15	15	20	60	2)
우리만화 연대	광야	20	25	15	10	70	3)
우리만화 연대	건달농부의 집짓는이야기	20	25	15	20	80	4)

* 평가의견

1) 재난, 사회적이슈를 만화로 끌어내는 시도가 긍정적 평가되지만 아직은 만화로 끌어내는 데는 시기상조라고 여겨짐.

2) 재난, 사회적이슈를 만화로 끌어내는 시도가 긍정적 평가됨.

3) 재난, 사회적이슈를 만화로 끌어내는 시도가 긍정적 평가됨.

4) 재난, 사회적이슈를 만화로 끌어내는 시도가 긍정적 평가됨.

(나) 위 [표-3] 이OO의 서울문화사 지원작에 대한 심사결과표를 보면 7개의 작품에 대해 항목별로 동일한 점수를 준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의견 역시 7개 작품 모두 '단단한 기획력과 매체유지로 만화산업을 이끌어가는 서울문화사에 가점.'으로 동일하다.

위 [표-3-1] 이OO의 우리만화연대 지원작에 대한 심사결과표를 보면 지원작

〈끈〉에 50점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50점은 이00의 당 심사 최저점수이다. 세월호를 다룬 ‘〈끈〉과 국정원과 북한 이야기를 다룬 〈명태〉는 성공가능성과 수행기관의 전문성에서 각각 우리만화연대의 다른 지원작 보다 10점이나 적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과제 수행능력은 〈끈〉이 다른 지원작 보다 5점이 적다. 지속연재의 가능성에서도 다른 지원작 두 작품 보다 5점이 적다. 〈끈〉에 대한 평가의견은 “재난, 사회적이슈를 만화로 끌어내는 시도가 긍정적 평가되지만 아직은 만화로 끌어내는 데는 시기상조라고 여겨짐.”이라고 하며 세월호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소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다) 아래 [표-4] 고00의 서울문화사 지원작에 대한 심사결과표를 보면 7개 작품에 대한 점수차는 2점이다. 성공가능성·수행기관의 전문성·과제수행능력은 7개 작품이 모두 같은 점수를 받았다. 주된 평가의견은 “회사경험 많음”이다.

[표-4] 심사위원 고00의 서울문화사에 대한 개별점수 결과표

업체명	과제명	성공가능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합계	*평가의견
서울 문화사	신여성	23	25	15	15	78	1)
서울 문화사	더콩쿠르	23	25	15	16	79	2)
서울 문화사	김영자 부띠끄에 어서오세요	23	25	15	16	79	3)
서울 문화사	푸른유리	23	25	15	15	78	4)
서울 문화사	궁극의아이	23	25	15	14	77	5)
서울 문화사	양신의강림	23	25	15	14	77	6)

* 평가의견

- 1) 회사 경험 많음. 1권 이미 출시. 캐주얼풍
- 2) 회사 경험 많음. 3권 이미 출시. 캐주얼풍
- 3) 회사 경험 많음. 4권 이미 출시. 캐주얼풍
- 4) 회사 경험 많음. 1권 이미 출시. 캐주얼풍
- 5) 만화 제작 진도가 어느정도 나감
- 6) 소설 원작. 원작-만화-회사간의 권리관계 명확치 않음.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감

아래 [표-4-1] 고OO의 우리만화연대 지원작에 대한 심사결과표를 보면 <끈>과 <명태>에 대해 다른 두 작품보다 적은 점수를 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끈>과 <명태>에 주어진 59점은 고OO의 최저점수이다. 서울문화사에 대해 성공가능성·수행기관의 전문성·과제수행능력에 대해 전 작품 동일한 점수를 채점해 수행기관이 같은 이유로 변별력이 없다면, 우리만화연대의 지원작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여야 한다. 평가의견으로 “민감한 소재.만화제작출시 실적에 그칠 우려가 있음. 시장활성화 의지가 미약. 연재매체의 파급력이 적고 홍보마케팅계획이 특징이 없음. 상업화효율성/대중성에 의문.”이라고 네 작품 모두에게 똑같은 평가의견을 달았다.

[표-4-1] 심사위원 고OO의 우리만화연대에 대한 개별점수 결과표

업체명	과제명	성공가능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합계	*평가의견
우리만화연대	끈	17	18	12	12	59	1)
우리만화연대	명태	17	18	12	12	59	2)
우리만화연대	광야	18	18	14	14	64	3)
우리만화연대	건달농부의 집짓는이야기	18	18	14	14	64	4)

* 평가의견

- 1) 민감한 소재. 만화제작출시 실적에 그칠 우려가 있음. 시장활성화 의지가 미약. 연재매체 파급력이 적고 홍보마케팅계획이 특징이 없음. 상업화효율성/대중성에 의문
- 2) 민감한 소재. 만화제작출시 실적에 그칠 우려가 있음. 시장활성화 의지가 미약. 연재매체 파급력이 적고 홍보마케팅계획이 특징이 없음. 상업화효율성/대중성에 의문
- 3) 만화제작실적에 그칠 우려가 있음. 시장활성화 의지가 미약. 연재매체 파급력이 적고 홍보 마케팅계획이 특징이 없음. 상업화효율성/대중성에 의문
- 4) 만화제작실적에 그칠 우려가 있음. 시장활성화 의지가 미약. 연재매체 파급력이 적고 홍보 마케팅계획이 특징이 없음. 상업화효율성/대중성에 의문

(라) 아래 [표-5] 이OO의 서울문화사 지원작에 대한 심사결과표를 보면 7개 작품에 대해 항목별로 1~2점 사이의 점수를 채점한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의견은 수행기관 전문성 양호, 작품 시장 가능성 양호, 작품기획 적정 등이다. 반면 [표-5-1]을 보면 <끈>, <명태>, <광야>에 대해 네 항목 모두 같은 점수를 채점했다. 세작품 모두

61점으로 61점은 이00의 최저점수이다. 우리만화 연대의 유일한 지원작을 보면 성공가능성에서 5점, 과제수행능력과 지속연재의 가능성에서 각각 1점씩을 더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의견은 상업적 요소가 약하며 연재매체가 다소 약해 보임. 작품소재가 다소 어렵고 작품소재의 차별성이 약하며 연재매체가 다소 약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표-5] 심사위원 이00의 서울문화사에 대한 개별점수 결과표

업체명	과제명	성공가능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합계	*평가의견
서울 문화사	신여성	24	20	16	15	75	1)
서울 문화사	더콩쿠르	26	22	16	15	79	2)
서울 문화사	김영자 부띠끄에 어서오세요	22	22	15	15	74	3)
서울 문화사	푸른유리	22	22	15	15	74	4)
서울 문화사	궁극의아이	27	22	16	16	81	5)
서울 문화사	양신의강림	24	22	15	15	76	6)

* 평가의견

- 1) 수행기관 전문성 양호
- 2) 작품 시장 가능성 양호
- 3) 작품기획 적정
- 4) 작품기획 적정
- 5) 원작 성과 우수. 만화화 이후 계획 필요
- 6) 원작과 연계된 작품 기획 양호

[표-5-1] 심사위원 이00의 우리만화연대에 대한 개별점수 결과표

업체명	과제명	성공가능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합계	*평가의견
우리만화 연대	끈	18	19	12	12	61	1)
우리만화 연대	명태	18	19	12	12	61	2)

업체명	과제명	성공가능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합계	*평가의견
우리만화 연대	광야	18	19	12	12	61	3)
우리만화 연대	건달농부의 집짓는이야기	25	19	13	13	70	4)

* 평가의견

- 1) 상업적 요소가 약하며 연재매체가 다소 약해 보임
- 2) 작품소재가 다소 어렵고 연재매체가 다소 약해 보임
- 3) 작품소재의 차별성이 약하며 연재매체가 다소 약해 보임
- 4) 작품소재는 양호하나 연재매체가 다소 약해 보임

(5) 심사결과표를 종합하면 이00, 고00, 이00의 점수만으로 심사결과 선정 및 탈락에 영향을 주었으며, 실질적으로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가 작품의 평가에 그대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주관기관에 따라 항목별로 일관된 점수가 채점된 것이 확인되며, 우리만화연대의 경우 소재의 문제가 지적되고 수행기관이 약해 보인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끈>의 경우 1차평가와 2차 평가의 항목이 대동소이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의원에 따라 전혀 다른 평점을 받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최종점수 산정에서 최저점수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00, 고00, 이00이 '끈'에 각자의 최저점수를 채점해 2인의 최저점수가 최종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6) '세월호' 관련 블랙리스트 주요 사건 목록

No.	분야	사건명	세월호 관련 내용	검열·배제 내역
1	공연	'안산순례길' 윤한솔 연출가 배제 사건	<안산순례길>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안산 시내를 걸으며 세월호를 기억하고 사유하는 공연. 윤한솔 총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위 '2015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순례길> 1차 심의 통과하고 2차 최종심에서 심의위원의 적극 추천을 받아 선정이 확실시 되었으나, 예술위 직원이 '세월호와 연관되어서 곤란하니 빼 줬으면 좋겠다.', '윤한솔 작품이 정치적이어서 청와대에서 싫어한다'고 하는 등 심의위원에게 선정 제의를 요청하여 결국 지원 배제됨
2	공연	팝업씨어터 블랙리스트 배제 사건	<이 아이> 예술위 공연예술센터 사업 '팝업씨어터' 공연 작품. 원작 중 일부 내용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방해 및 후속 공연에 대한 사전 검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내용이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2015. 10. 18 2회 공연 시, 예술위 직원들이 공연을 방해하는 한편, 후속 공연 예정이었던 연출가에게 대본제출을 요구해 사전검열을

No.	분야	사건명	세월호 관련 내용	검열·배제 내역
			노스페이스를 입은 아이 시체와 수학여행으로 각색	시도함
3	공연	2015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대극장 폐쇄 사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전문제를 거론,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폐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극제 대관 예정 아르코극장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4. 2 예술위, 서울연극제 개막 이틀 전,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소극장 공연) 공연 티켓판매 중단 및 시정조치 요청, 4. 3.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폐쇄 알림 공문 서울연극협회 앞으로 발송.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구동부의 중대한 이상으로 인한 긴급 점검 및 보수”를 사유로 2015.4.13.부터 2015.5.17.까지 대극장을 폐쇄한다고 통보.
4	공연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지원 배제 사건	〈서울프린지네트워크〉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열린 ‘서울프린지페스 티벌’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과 권력의 관계를 암시하는 포스터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진흥기금 등 다수 지원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지원배제 - 문체부 관리리스트에 ‘문화예술분야 영향력 있는 주요 정치적 편향단체 배제’ 사례로 ‘서울프린지페스티벌(다원예술)’ 적시
5	문학	2015-16 우수출판 콘텐츠 지원사업	2015년,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지원사업에서 세월호 연관 작품 다수 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출판콘텐츠지원사업 탈락 의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락 도서명 : 〈사회는 왜 아픈가〉 〈그것(거짓 말 같은 세월호 이야기)〉 〈세월호, 하얀배〉 〈반성문 : 희곡집(낮이 죽은 시간/일구야 놀자)〉 〈누나는 별이 되어〉 〈아무도 기다리지 마라〉 〈기록이 상처를 위로한다 : 아키비스트의 탄생〉 〈불신사회〉 〈그 호수에는 천 개의 달이 뜬다고 했다〉 〈푸른 바다의 기억〉 등
6	문학	한국문학번역원 블랙리스트 배제 사건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참여 문학인 지원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지원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시영 시인 등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문학인에 대하여 문체부 배제지시 번역원에 하달. - 해외교류사업에서 지원 배제 확인
7	문학	아르코 주목할만한 작가상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주목할만한 작가상에서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목할만한작가상이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처럼 공모로 진행할 경우 청와대·국정원 및 문체부의 배제지시를 실행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비공모사업’으로 진행함. 이 과정에서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 등이 활용됨.
8	전시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외압 사건	〈세월 오월〉 홍성담 작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취소 외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8월 광주비엔날레 측이 홍성담의 걸개 그림 〈세월오월〉 중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한 부분 등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작가가 이를 거부하자 전시불가를 발표.

No.	분야	사건명	세월호 관련 내용	검열·배제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장현 광주시장, <세월호> 전시에 대해 김종 당시 문체부 차관의 외압을 시인. - 2016년 3월경 기재부가 '제12회 광주비엔날레' 등 3건을 특정하여 년 10억 이상 지원불가 대상으로 통보했으며 2018년도 광주비엔날레 국고지원이 이전 31억 원에서 13억 원이 삭감된 18억원으로 결정됨.
9	영화	부산국제영화제 외압사건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중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제 감사 조치 및 지원금 삭감 - <다이빙벨> 상영 후, 부산시와 감사원 특별감사국은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이례적인 감사 실시. - 2015년 영화제 지원금 대폭 삭감 -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10	영화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사건	2015년 상반기 지원 배제 키워드에 '세월호'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진위 제작지원, 개봉지원사업 배제 - 세월호를 다룬 영화 <엄마가 팽목항으로 올 때면 난 엄마보다 먼저> 심사탈락 - <할매꽃2> 조별심사에서 84.7로 면접심사 대상이 되었으나, 면접심사 시 '세월호' 관련성 여부 확인, 심사탈락 - 성소수자와 세월호 다룬 <불온한 당신> 심사탈락
11	영화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지원배제	세월호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 개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 「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대외주의)」 중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선'에서는 지역으로 전용관 1곳을 이전하고, '인디스페이스' 운영 지원 중단 검토. - 청와대 <다이빙벨>을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지원 배제 방침 수립.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영진위에 지시 하달, 인디스페이스 2015년 지원(임대로 5천만원) 중단
12	영화	(주)시네마달 지원배제 사건	'시네마달' 세월호를 다룬 '다이빙벨' 및 정부비판적인 영화 제작 배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진위 제작지원, 개봉지원사업 배제 - 단체 및 대표 블랙리스트 등재 - 영진위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빛', 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연인들', 다양성영화개봉지원 '그림자들의 섬' 등 시네마달 제작·배급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 피해 확인.
13	영화	세월호 1주기 영화제 사찰 사건	세월호 1주기 영화제 추진동향 청와대 보고. 2015년 3월 19일 작성된 '세월호 1주기 영화제 추진동향'에는 각 영화가 다루고 있는 세월호 관련 내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영화 청와대 사찰 대상 - 사찰 대상 영화제: '4.16 추모기획전-우리 함께'(인디스페이스), '4.16 추모특별영화제'(강릉시네마떼끼) 등 - 사찰 대상 영화: '바다에서 온 편지', '생명의 노래', '잊지말아줘요', '기도', '다녀오겠습니다', '주홍조끼를 입은 소녀', '같이 타기는 싫

No.	분야	사건명	세월호 관련 내용	검열·배제 내역
			요약되어 보고됨	어', '스테이 스트롱', '어느 봄날', '유리창', '그날, 그때, 그곳에', '잊지 않을게', '꿈', '미안해 내가 못한 어른이어서', '2반의 바빠옹들', '잊지못할 세월', 'The Striker vol.2', '유가족, 직접 행동에 나서다', '화인' 등 19편임.
14	만화	우리만화연대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배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만화 <끈>이 편파 심사 등으로 탈락	<p>■ 세월호 연재만화 콘진원 연재만화지원 배제</p> <p>- 콘진원 연재만화 지원사업 심사에 콘진원 산업팀장이 참여해 세월호 참사를 다룬 만화에 최저점을 줘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대상 작품은 블랙리스트 단체이기도 한 우리만화연대 소속 만화가인 유승하의 <끈>으로 1차 서류평가에서 평균 78.6점을 얻어 심사대상 77편 중 전체 3위를 기록. 그러나 2차 발표평가에서 66위를 기록해 지원사업에서 탈락함.</p>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우리만화연대 및 신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확인

문체부, 左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복지지원사업' 폐지 방침(국정원 2014. 3. 17.)에서 우리만화연대는 블랙리스트 단체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신OO 행정관의 진술로도 확인되고, 김희범 차관의 '우리만화연대' 관련 메모(2014. 9. 16.) 김OO 예술국장이 김OO 행정관으로부터 받아 적은 수기로 기록한 블랙리스트(2015. 1. 9.) 오OO이 작성한 예술정책과 '리스트-'16.2.1(2015)'에 기재 되어 있다는 점, 문체부 김OO 사무관이 청와대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 9,473인 리스트 예술가들이 우리만화연대의 만화잡지 월간 만화 <보고>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우리만화연대는 블랙리스트 등재되어 있었으며 신청인 유승하 작가 또한 9,473인 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인한 배제

- (1) 우리만화연대는 국정원을 통해 청와대 수석회의에 보고되고 수석회의에서 문체부 서관실로 전달되었으며, 문체부서관실에서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로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만화영상진흥원으로 배제지시가 전달되었던 것이 김OO 사무관의 진술로 확인되었다.⁴⁵⁾
- (2)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서 우리만화연대 등 좌성향 단체가 선정되자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웠고, 위 사업을 폐지하고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비판언론 및 진보진영에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면서 2014년 3월 중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고 추진할 복안을 세우고,⁴⁶⁾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술인들의 불행한 사고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 사항을 문체부와 협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⁴⁷⁾ 문체부의 요청을 받은 예술인복지재단은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10억 원→0원)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22억 원→12억 원) 결정, 예술인긴급복지기금을 20억 증액(74억 원→94억 원) 의결하는 방법⁴⁸⁾으로 우리만화연대 등을 지원 배제 하였다(2017직공3[한국 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결과보고서 40쪽).
- (3)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2014. 12. 19.) 등의 기록으로 2015 예술위 융복합·다원예술 분야 공모 사업에서 우리만화 연대 ‘만화BOGO토크콘서트’가 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45) 이에 대해 참고인 김OO은 ‘당시에는 우리만화연대의 <보고> 잡지 제작 지원에만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만화영상진흥원으로 하여금 모든 사업에서 우리만화연대를 배제하라는 지시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함(‘18.11.14)

46) 국정원 IO, ‘문체부, 좌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1-2쪽. 2014. 3. 17.

47) OOO,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2014. 3.12.

48) OOO,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2014. 3.27.

(4) 신청인의 작품, 세월호를 다룬 만화 <끈>은 콘텐츠진흥원의 연재만화제작지원사업에서는 심사에서 최종탈락하였다. 이는 '세월호' 예술 작품들에 대한 다양한 배제 사례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우리만화연대의 2차심사 탈락작품 <끈>, <명태>, <광야>가 블랙리스트를 이유로 최종탈락하여 작품연재의 기회를 잃었다. 신청인 유승하의 작품 <끈>은 기획의 우수성·작품의 우수성·매체의 우수성·홍보 및 유통 계획·예산의 적정성과 재원마련 가능성을 평가한 1차 심사에서 3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 가능성·수행기관의 전문성·과제수행 능력·지속연재의 가능성등을 평가한 2차 평가에서 77개 작품 중 66위를 함으로써 최종탈락되었던바 해당 지원사업의 평균 지원금액인 4천만원 상당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된다. 기획·작품·매체가 우수하고 홍보·유통계획이 우수하기 때문에 1차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가능성과 수행기관의 전문성·과제수행 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2차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동소이한 심사항목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세월호'를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의도 또는 담합에 의해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로 판단된다.

2. 조사의 한계 및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 1) 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잡지 지원사업에는 문체부에서 직접 배제지시가 내려졌었고 당시 보고 4호 발행이 다섯달이나 걸린 점을 고려하면 배제 지시와 실행한 의혹이 있으나 만화영상진흥원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 2) 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심사위원 선정과정시 추천기록은 남아 있으나 추천과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화내역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선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2015. 5. 6. 개정된 심사 규정에 따라 사업팀 이OO이 심사위원 추천에 개입할 여지가 있었고 이OO이 이OO과 고OO를 추천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1년간만이라도 심사위원 선정 프로세스가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부서와 심사지원 평가팀의 일반회선 통화기록에 대해 자료요구 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들어 제출하지 않았다. 콘텐츠진흥원 사업과장 김OO의 경우 사업팀장 이OO과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OO의 경우 일관되게 배제지시나 내부 공유에 대해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 심사결과표 상에서는 심사위원의 의도적 담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심사위원들의 조사활동 비협조로 명확하게 확정지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95

이하 작가의 정치풍자 예술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95

이하 작가의 정치풍자 예술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4(이하 작가의 정치풍자 예술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이하(이하 ‘신청인’)은 2011년경부터 정치풍자 예술 퍼포먼스를 하였는데, 2012. 5. ~ 2015. 5.까지 경범죄처벌법위반,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16개의 공소사실에 관해 기소를 당하였다. 또 신청인은 2013 한국소개 명품사진 페스티벌에 작품을 전시하는 과정에서, 대전시립미술관 측으로부터 ‘수위조절’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대통령 박근혜의 얼굴을 가린 채 전시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본인의 이름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무리한 조사 및 기소를 당하고 위와 같은 압박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청와대·검찰·경찰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를 통해 ‘VIP·정부 등을 비난·회화’하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수사·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청인은 2013 한국소개 명품사진 페스티벌에 작품을 전시하는 과정에서,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이었던 김OO의 지시를 받은 학예연구사 OOO으로부터 ‘수위조절’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대통령 박근혜의 얼굴을 가린 채 전시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붙임 : [이하 작가의 정치풍자 예술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특4, 이하 작가의 정치풍자 예술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신청인] 이병하(예명 ‘이하’, 이하 ‘이하’)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이하(이하 ‘신청인’)은 2011년경부터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등을 풍자한 포스터와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배포, 살포하는 등 정치풍자 예술 퍼포먼스를 하였는데, 2012. 5. ~ 2015. 5.까지 경범죄처벌법위반,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16개의 공소사실에 관해 기소를 당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2013 한국소개 명품사진 페스티벌(부제: 미술관 속 사진 페스티벌, 이하 ‘사진 페스티벌’)에 작품을 전시하는 과정에서, 대전시립미술관 측으로부터 ‘수위조절’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대통령 박근혜의 얼굴을 A4 용지로 가린 채 전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신청인은 본인의 이름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무리한 조사 및 기소를 당하고 위와 같은 압박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7. 10. 13. 제10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되었다.

나. 조사의 목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신청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작품 내용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신청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수사·조치를 받고, 사진페스티벌에 신청인의 작품이 전시되는 과정에서 위 작품의 일부가 가려지는 등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제2절 | 조사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일부	김영한	2017. 11. 24.
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2015. 5. 11. 작성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오OO	2017. 11. 24.
3	'Oh & Kim' 블랙리스트 명단	오OO, 김OO	2017. 11. 24.
4	A에 대한 2016. 12. 29.자 진술조서 일부(A 경력 관련)	특검	2017. 11. 24.
5	김소영에 대한 2017. 1. 1.자 진술조서 일부(신청인 관련)	특검	2017. 11. 24.
6	오OO에 대한 2017. 1. 1.자 진술조서 일부(신청인 관련)	특검	2017. 11. 24.
7	2017도50 증거기록	검찰	2017. 11. 27.
8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굿모닝충정>, 2014. 1. 8.	굿모닝충정	2018. 1. 15.
9	관련 사진 6부	이하	2018. 1. 15.
10	사진과 사회 : 소셜아트 도록 일부	대전시립미술관	2018. 1. 29.
11	관련 후기 스크랩 4부	성명불상	2018. 1. 29.
12	관련 기사 스크랩 2부	디투뉴스, 시티저널	2018. 1. 29.
13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2015. 3. 4., 2015. 3. 16., 2015. 5. 18., 2016. 2. 10.)	대통령 비서실	2018. 1. 29.
14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발송한 공문 및 첨부 자료	대전시립미술관	2018. 2. 6.
15	'세상은 예술을 '예술'로 보지 않네' 동영상 및 관련 게시글	김양균	2018. 2. 13.
16	본건 관련 재판 판결문	법원	2018. 2. 13.
17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	조국	2018. 2. 13.
18	[단독]"대통령 비난 전단 처벌하라"…경찰지침 하달 '논란', <헤럴드경제>, 2015. 3. 13.	헤럴드 경제	2018. 2. 13.
19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서울지방경찰청	2018. 2. 13.
20	경찰 "대통령 비방 전단지 살포 땀 현행법 체포", <경향신문>, 2015. 3. 14.	경향신문	2018. 2. 13.
21	경찰청장 "김기종 국보법 적용, 오래 걸리진 않을 것", <헤럴드경제>, 2015. 3. 16.	헤럴드 경제	2018. 2. 13.
22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의견서, 질의서 및 첨부 문서	참여연대 등	2018. 2. 13.
23	미술관에서 그대와 함께 잠을?, <디투뉴스>, 2013. 12. 16.	디투뉴스	2018. 2. 25.
24	경찰청 공문	경찰청	2018. 2. 27.
25	사진 페스티벌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확정 및 통지 공문	문체부	2018. 2. 28.
26	사진 페스티벌 보조금 교부신청서	예술위	2018. 2. 28.
27	사진 페스티벌 기획(안)	운영위원회	2018. 2. 28.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28	사진 페스티벌 현장점검에 따른 출장비 지급요청서	문체부	2018. 3. 8.
29	[김규향의 좌판](29) '공무원 큐레이터' 김OO, <경향신문>, 2013. 1. 18.	김규향	2018. 3. 8.
30	[김OO의 사회예술 비평](1) 프롤로그 - 사회와 예술의 지형도 그리기, <경향신문>, 2015. 2. 27.	김OO	2018. 3. 12.
31	[김OO의 사회예술 비평](30) 사회예술의 시대, <경향신문>, 2015. 9. 21.	김OO	2018. 3. 12.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224 사건진행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2.
33	이하의 아트 뒷담화 27편-출국금지 그리고 전국풍자자랑	이하	2018. 3. 22.
34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문	헌법재판소	2018. 3. 22.
35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서울지방경찰청	2018. 4. 10.
36	출국금지 등 사실확인 회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018. 4. 1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이하	신청인	제1회 진술조서 (2017. 10. 12.)
2	OOO	신청인에게 국정원 직원을 소개한 조각가	진술청취 결과보고 (2017. 10. 18.)
3	이하	신청인	제2회 진술조서 (2018. 1. 15.)
4	김OO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제1회 진술조서 (2018. 1. 29.)
5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1. 31.)
6	OOO	사진 페스티벌 도록 제작 업체인 디투씨 대표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2. 7.)
7	오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진술조서 일부 (2018. 2. 7.)
8	박OO	사진페스티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2. 14.)
9	이OO	울산 동부 경찰서 정보과 형사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2. 19.)
10	O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주무관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2. 19.)
11	서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2. 21.)
12	OOO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소	녹취록 (2018. 2. 23.)
13	이OO	예술위 아코미술관장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2. 28.)
14	윤O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3. 8.)
15	김OO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제2회 진술조서 (2018. 3. 12.)
16	이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3. 13.)
17	이OO	예술위 아코미술관장	진술서 (2018. 3. 14.)
18	OOO	대전시청 문화예술과 대전시립미술관 담당 주무관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3. 15.)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9	OOO	대전시청 문화예술과 대전시립미술관 담당 주무관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3. 15.)
20	이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진솔소서 (2018. 3. 21.)
21	이하	신청인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3. 22.)
22	이OO	경향신문기자	문자메시지 (2018. 3. 22.)

제3절 | 조사 사항·내용

1.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 조사·기소에 관한 점

가. 관련 판결

연번	최종 사건번호	유·무죄	적용죄명	내용
1	2014도10183	유죄 벌금 10만 원 선고유예	구 경범죄처벌법 위반 ¹⁾	신청인은 2012. 5. 17. 주택의 담벽에 전두환 풍자 포스터 55장을 붙임
2			공직선거법 위반 ²⁾	신청인은 2012. 6. 28. 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부산 일대에 부착함
3	2013도15474	각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신청인은 2012. 11. 6. 문재인과 안철수의 얼굴이 반씩 합쳐진 풍자 포스터를 서울 일대에 부착함
4			공직선거법 위반	신청인은 2012. 11. 8. 문재인과 안철수의 얼굴이 반씩 합쳐진 풍자 포스터를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 건설현장 외벽에 부착함
5	•2017도50	각 유죄 벌금 200만 원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교사 ³⁾	신청인은 2014. 5. 19.경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이 그려진 스티커를 거리에 붙여줄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OOO에게 위 스티커 30장을 보내주었고, OOO은 2014. 5. 21. 강릉 일대에 스티커를 부착하였음
6			경범죄처벌법 위반교사 ⁴⁾	신청인은 2014. 10. 20. OOO, OOO에게 박근혜 대통령 풍자 전단지를 공공장소에 뿌리라는 취지로 말하고 건네주

연번	최종 사건번호	유·무죄	적용죄명	내용
				었으며, 000, 000은 같은 날 농협중앙회 건물 13층 옥상에서 위 전단지 1,950매를 뿌림
7			건조물침입 ⁵⁾ , 경범죄처벌법위반	신청인은 2014. 10. 20. 동화빌딩 21층 옥상에 들어가 위 전단지 4,500매를 살포함
8			경범죄처벌법위반방조	신청인은 2015. 2.경 민예총 소속의 배인석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메일을 통해 박근혜 및 이명박 풍자 전단지 그림 파일을 전송하였고, 000은 2015. 2. 12. 부산 도로를 오토바이로 운행하여 다니면서 위 전단지 8,000매를 살포함
9			경범죄처벌법위반, 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교사	신청인은 2015. 5.초 박근혜 풍자 전단지를 제작한 후 연극배우 한씨에게 대학로 근처에 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한씨는 2015. 5. 16. 위 전단지를 살포함
10			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	신청인은 2015. 5. 박근혜 풍자 전단지를 제작한 후 페이스북에서 2015. 5. 16. 00:00에 위 전단지를 살포해줄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5. 5. 16. 01:00경 서울 마포구 빌딩 8층 옥상에서 위 전단지 약 1,000장을 살포함
11			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	신청인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주었고,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6. 00:07경 서울 강남구 건물 옥상에서 위 전단지 약 200매를 살포함
12			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	신청인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주었고,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6. 04:22경 사당역 주변에서 위 전단지 약 122매를 살포함
13			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	신청인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주었고,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5. 23:52경 부산 동구 조방로 48(범일동) 자유도매시장에서 위 전단지 약 130매를 살포함

연번	최종 사건번호	유·무죄	적용죄명	내용
14			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	신청인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주었고,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6. 03:23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위 전단지 약 20매를 살포함
15			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	신청인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주었고,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6. 12:55경 광주시청 시의회동 국기게양대 앞에서 위 전단지 약 445매를 살포함
16			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	신청인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주었고,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7. 12:30경 일산동구청 주변에서 위 전단지 약 490매를 살포함

- 1)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3. (광고물 무단첨부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 2)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畫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첨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舉 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 3)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 16개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소되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의 공소사실에서 선고유예 또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형법 제31조(교사법)**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4)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料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제4조(교사·방조)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 5)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청와대의 前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

[표-1] 민정수석 故 김영한 업무수첩 및 실수비 결과 정리표

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연번	일자	내용
1	2014. 10. 31.	• 이병하, 엄마부대 고발(명예훼손)
2	2014. 11. 1.	• 대통령 모욕 전단 살포 건(경찰) - 이병하 - 건조물침입 의율 상태 - 경범죄법으로 즉결 처리 검토
2	2014. 11. 3.	• 대통령 모욕 전단 살포 행위 ① 건조물침입, ② 경범죄법 → 경범죄 법정형 상향 개정
3	2014. 11. 4.	[長] • 경범죄 - 유치 활용안
4	2014. 12. 29.	홍보: VIP 모욕 비라 살포, 낙서사건 유의, 조치
실수비 결과		
연번	일자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중심)
1	2015. 3. 4.	VIP 비방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경각심 주는 차원에서 범인을 색출, 강력 처벌할 것(정무수석, 민정수석)
2	2015. 3. 16.	3. 14일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대통령 비방 전단(약 200여장)이 배포되었다고 하는데(현재 모든 전단 수거 상태) 조속히 범인을 색출하여 의법처리할 것(민정수석).
3	2015. 5. 18.	최근 VIP를 비난하거나 풍자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사례가 있는 데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님. 민정수석은 관련자를 색출하고 수사해서 반드시 엄단토록 할 것(민정수석)
4	2016. 2. 10.	부산문화재단이 '14. 9월 유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행사(벽화예술품 설치)를 개최했을 당시 한 건물옥상에 그려진 'VIP 비방 벽화'가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는데, 철거하도록 조치할 것(교문수석, 정무수석)

위 내용은 2014. 11. 1. ~ 2016. 2. 10.까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이하 '실수비')에서 논의된 것이다. 위 기간 동안 비서실장인 김기춘(2013. 8. 5. ~ 2015. 2. 22.) 과 이병기(2015. 3. 1. ~ 2016. 5. 15.)는 대통령 모욕 전단 등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 행위 관련자를 색출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는 경범죄처벌 범위반죄의 법정형을 상향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실제로 경범죄처벌범위반죄의 법정형이 상향 개정되지는 않았다.

한편, 보수단체인 '엄마부대' 000, 000, 000, 000는 2014. 10. 29. 신청인의 행위가 대통령 박근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을 고발하였고, 201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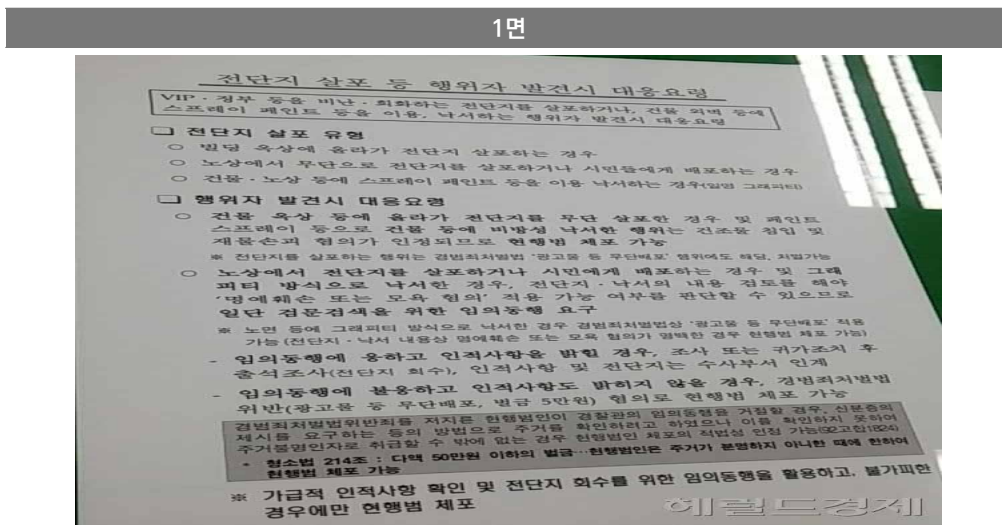
4. 서울중로경찰서 형사과에 임의출석하여 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 청와대는 ‘엄마부대’가 신청인을 고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2014. 10. 31.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즉, 청와대가 보수단체인 ‘엄마부대’에 신청인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나, 청와대에서는 본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으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비서실장(長)이었던 김기춘은 2014. 11. 4.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행위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신청인은 유치장에 유치되지는 않았다.

다. 경찰·국가정보원의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

(1)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지침

[표-2]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VIP·정부 등을 비난·회화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건물 외벽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 낙서하는 행위자 발견시 대응 요령

□ 전단지 살포 유형

- 빌딩 옥상에 올라가 전단지 살포하는 경우
- 노상에서 무단으로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 건물·노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 낙서하는 경우(일명 그래피티)

□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 건물 옥상 등에 올라가 전단지 등을 무단 살포한 경우 및 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 건물 등에 비방성 낙서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므로 현행범 체포 가능
 - ※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광고물 등 무단배포' 행위에도 해당, 처벌가능
- 노상에서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시민에게 배포하는 경우 및 그래피티 방식으로 낙서한 경우, 전단지·낙서의 내용 검토를 해야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단 검문검색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
 - ※ 노면 등에 그래피티 방식으로 낙서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등 무단배포' 적용 가능(전단지·낙서 내용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현행범 체포 가능)
 - 임의동행에 응하고 인적사항을 밝힐 경우, 조사 또는 귀가조치 후 출석조사(전단지 회수), 인적사항 및 전단지는 수사부서 인계
 - 임의동행에 불응하고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광고물 등 무단배포, 벌금 5만원) 혐의로 현행범 체포 가능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저지른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거절할 경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주거불명인자로 취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인정 가능(92고합1824)

- 형소법 제214조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 체포 가능

※ 가급적 인적사항 확인 및 전단지 회수를 위한 임의동행을 활용하고, 불가한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

2면

연번	처벌 규정	적용 여부	경도	비고
1	건조물침입 (刑法 5319.3)	건물주미 의사에 반하여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건조물 옥상에 침입하여 살포한 경우	중	건물 옥상에 올라가 살포한 경우
2	명예훼손 (刑法 5307.2)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된 경우 처벌 가능(반의사불벌죄)	중	
3	모욕 (刑法 5311)	전부에 대한 모욕은 성립하기 어렵으나, 전단지·그래피티 내용상 VIP에 대한 모욕은 성립 가능(간고죄)	중	전단지 살포 및 그래피티
4	재물손괴 (刑法 5366)	타인의 건물·물건 등에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낙서한 행위는 재물손괴 성립	중	그래피티
5	경범죄처벌법 (53.1, 9호)	전단지를 무단 배포하는 행위는 광고물 등을 할부로 무단 사람에게 배포하여 범죄성립	중	전단지 살포 및 배포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처벌법규

연번	처벌 죄명	적용여부 검토	비고
1	건조물 침입 (刑法 §319①)	건물주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건물 옥상에서 침입하였으므로 건조물 침입죄 성립	건물 옥상에 올라가 살포한 경우
2	명예훼손 (刑法 §307②)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는 경우 처벌 가능(반의사불벌죄)	전단지 살포 및 그래피티
3	모욕 (刑法 §311)	정부에 대한 모욕은 성립하기 어려우나, 전단지·그래피티 내용상 VIP에 대한 모욕은 성립 가능(친고죄)	전단지 살포 및 그래피티
4	재물손괴 (刑法 §366)	타인의 건물·물건 등에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낙서한 행위는 재물손괴 성립	그래피티
5	경범죄처벌법 (§3①, 9호)	전단지를 무단 배포하는 행위는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에 해당하여 범죄 성립	전단지 살포 및 그래피티

헤럴드경제는 2015. 3. 13. ‘전단지 살포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문건을 입수하여 기사화하였다⁶⁾. 위 문건은 2015. 2. 말경 서울에서 한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및 정부 비판 전단지를 살포한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로 하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 문건은 ‘전단지 살포’ 행위 중에서도 ‘VIP·정부 등을 비난·회화하는 내용의 전단지 살포’ 행위를 하는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때의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있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내용적 측면, 즉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를 예정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2015. 3. 14. 자 기사⁷⁾에서 위 문건 외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명의로 2015. 2. 경 작성되어 일선 경찰서로 하달한 ‘VIP(박근혜 대통령) 등 비방 전단지 배포 사건 파악 지시’ 문건을 추가 입수하였다고 밝혔다.⁸⁾ 위 문건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은 “2002년 대선 기간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전단지 배포 사건을 모두 파악하라”, “배포자의 배후 관계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보고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3. 13. “그런 문서를 만든 적도, 하달한 적도 없다”

6) [단독]“대통령 비난 전단지 처벌하라”...경찰지침 하달 ‘논란’, <헤럴드 경제>, 2015. 3. 13.

7) 경찰 “대통령 비방 전단지 살포 때 현행법 체포”, <경향신문>, 2015. 3. 14.

8)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이OO 기자는 “당시 자료를 찾아봤는데 저희 회사 데이터베이스가 기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당시 이미지파일이 현재 상태에선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기사에 첨부한 문건이 헤럴드경제 기사에 나와서 저희가 추가입수한 문건을 앞세우고 헤럴드경제 기사 내용을 덧붙여 썼던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가 추가입수한 문건은 출처 보안 때문에 내용만 일부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청장 강신명은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3. 16. “공문상의 지시가 아니고 회의 때 돌리는 대응요령 수준”이며 “검토차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해명하여 ‘전단지 살포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문건의 존재를 인정하였다⁹⁾. 또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시민단체들은 2015. 3. 말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위 문건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대해 “경찰관이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검문검색 및 임의동행·현행범 체포의 한계 등을 검토한 자료이며, 이는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법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라고 답변하여 위 문건의 존재 및 하달 사실을 인정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은 위원회에 발송한 공문에서도 위 문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4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시 대비경력에 대해 전단지 다수 발생 관련 교양자료로 자체 제작했던 사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¹⁰⁾라고 기재하여 위 문건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문건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소위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바 없음을 양지”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¹¹⁾.

(2) 적용 죄명 변경 시도에 관한 점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처음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몇 시간 지난 뒤 경찰로부터 “혐의가 바뀌었습니다. 건조물침입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²⁾

(나) 2017도50 증거기록

그러나 2017도50 증거기록 중 경찰 000 작성의 2014. 10. 20.자 진술서에는 “전단지 살포자 및 동행 기자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및 무단 전단지 살포 혐의를 고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 작성의 000¹³⁾에 대한 2014. 10. 20.자 피의자신문조서

9) 경찰청장 “김기종 국보법 적용, 오래 걸리진 않을 것”, <헤럴드경제>, 2015. 3. 16.

10) 경찰청 공문 및 서울지방경찰청 공문

1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의견서, 질의서 및 첨부 문서

12) 신청인에 대한 2017. 10. 12.자 제1회 진술조서

13) 신청인과 동행한 기자

(이하 ‘피신조서’)¹⁴⁾에는 경찰관들이 체포할 당시 신청인과 000에게 “건조물침입으로 체포한다고 말을 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신청인에 대한 2014. 10. 20.자 피신조서에도 “경찰관 3명 정도가...(생략)...광고물법 위반을 이야기하다가 건조물침입행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저와 000 기자를 연행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서 한 진술과 차이가 있다.

(3)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 조직사건화 시도

신청인은 2014. 10. 이후 신청인이 그린 그림을 재가공해 배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포경찰서 등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관련 CCTV 화면상의 관련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수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신청인이 “박근혜 풍자 전단지 배포 사건의 수괴이고 이걸 뿌리고 다닌 사람들이 조직원”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조직사건화하려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⁵⁾

(4)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 범죄화

신청인에 대한 2017도50 증거기록 중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경사 000 작성의 2014. 10. 24.자 통신자료제공요청 문건에는 ‘요청사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범죄명이 아니라 표현의 내용인 ‘대통령 비방’을 기준으로 하여 유인물 살포 관련 용의자를 특정하려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4) 15:10 조서작성 완료됨

15)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서(2017. 10. 12., 2017. 11. 28.)

(5) 신청인에 대한 과도한 내사

(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신청인은 조각가인 000가 신청인에게 국정원 직원을 소개시켜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⁶⁾ 이에 관해 000는 위 국정원 직원은 000의 지인으로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⁷⁾

(나) 경찰

①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2 ~ 2016년 예술 퍼포먼스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예술 퍼포먼스 방해 또는 내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¹⁸⁾

일시	퍼포먼스	내용
2012. 11.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포스터를 붙이기 위해 부산에 내려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진경찰서 경위 김00가 굉장히 여러 번 연락해서 '부산 어디에 포스터를 붙일 거냐', '안 붙이면 안 되냐', '붙이더라도 부산진 구역은 빼고 붙여 달라', '누구랑 붙이냐', '몇 장 붙이냐'는 등의 질문을 함. - 김00는 신청인에게 '부산 시내 대로변마다 경찰들이 잠복하고 있으니 포스터를 붙이지 말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결국 포스터를 붙이지 않았음.
2014	여우비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이 행진을 막음
2016	이하의 아트트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소마다 정보과 형사들이 나타나, '언제까지 있을 거냐', '이후에는 어디로 갈 거냐', '누가 도와주는 거냐', '앞으로 무슨 일 하냐', '다음에는 누굴 갈 거냐'는 등의 질문을 함 - 이후 국민TV와의 인터뷰에서 신청인은 "정보과 형사들이 와서 짐도 날라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행사를 도와주었다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 정보과 형사들이 한 동안 찾아오지 않았음. - 이후 다시 찾아온 정보과 형사들은 "국민TV에서 한 인터뷰도 뒷선에 보고가 되어, 뒷선에서 신청인을 찾아오지 말라는 오더를 내렸다", "신청인에 대한 이야기가 일일이 뒷선에 정보보고가 된다"고 이야기함

16) 신청인에 대한 2017. 10. 12.자 제1회 진술조서

17) 참고인 000에 대한 2017. 10. 18.자 진술청취 결과보고

18) 신청인에 대한 2018. 1. 15.자 진술조서

② ‘세상은 예술을 ‘예술’로 보지 않네’ 동영상 및 관련 글



‘세상은 예술을 ‘예술’로 보지 않네’ 동영상¹⁹⁾ 9분 14초 내지 11분 50초를 보면, 실제로 정보과 형사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신청인의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위와 같은 작품을 전시한 경위 등을 물어보거나, 신청인을 상당시간 동안 관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동영상을 촬영한 000은 2014. 8. 18. 작성한 관련 게시글에서, 정보과 형사들이 신청인의 모습을 어디론가 보고하거나, “따라붙으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③ 경찰의 주장

그러나 2016년 ‘이하의 아트트럭’ 행사 당시 울산 동부 경찰서 소속 정보과 형사였던 이00은 위 정보 수집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신청인이 이 00의 관할 지역에서 행사하기에 신청인을 만나 행사 내용을 물어본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²⁰⁾



19) <https://www.youtube.com/watch?v=0ctTHdPmpRM>

20) 참고인 이00에 대한 2018. 2. 19.자 전화면담결과보고

라. 검찰의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

(1)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사건 현황 파악


신청인에 대한 2017도50 증거기록 중 검찰서기 000 작성의 2015. 3. 12.자 수사보고(전국 유사 사건 현황표 첨부)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통령 비방 유인물 배포 사건현황표’가 첨부되어 있다. 위 문건의 제목은 ‘전국 유사 사건 현황표’ 첨부임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침입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의 사건 현황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박근혜를 비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 배포 사건 현황을 파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수신 검사 변수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주임검사</div> 
제목 수사보고(전국 유사 사건 현황표 첨부)	
2014. 5.경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된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그 사건현황을 표로 작성하여 첨부하였고, 사건 현황표 중 이병화가 그린 그림이 배포된 사건은 1번(강릉), 6번(부산), 16번(광주) 사건임을 확인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첨부	대통령 비방 유인물 배포 사건현황 1부. 끝.
2015. 3. 12. 위 보고자 검찰서기	
000 	

대통령 비방 유인물 배포 사건현황

2015. 3. 12. 기준

[11개청 16건]

번호	피혐의자	사건개요	수사단계	관할청	비고
1	○○○ (34세, 사진가)	14. 5. 21. 강릉 일대 가로등 등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VIP 비하 그림이 그려진 광고물 7장 부착	검찰 수사 중	강릉지청	이병하가 작성한 그림
2	○○○ (여 60세 무직)	14. 10. 23. 군산 인근에서 '○○○ 난감 자식갓고 장난하고....' 내용의 전단지 살포	검찰 수사 중	북부지검	
3	이병하 (46세 화가)	14. 10. 20. 서울 종로구 소재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대통령의 머리에 꽃을 꽂은 포스터' 4,500여장 지상으로 살포	검찰 수사 중	서울중앙지검	
4	 ○○○ (41세, 시민운동가)	15.1.6~8 군산 일원에 '○○○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정운회 임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하의 전단지 100여장 살포	경찰 수사 중	군산지청	
5	성명불상	15. 1. 14. 광주공항 내 제5항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 25매 배포	경찰 수사 중	광주지검	4번과 동일한 유인물
6	○○○ (45세, 직업불상)	15. 2. 12. 부산진구 유디스태화 백화점 앞 도로에 '경국지색 나라 풀 자-알 돌아간다'라는 제하의 전단지 600여장 살포	경찰 수사 중	부산지검	그림, 유인물 등은 이병하 박○○로부터 받았다고 진술

7	○○○(45세 녹색당원) ○○○(41세 시민운동가) ○○○(33세 민예총)	15. 2. 16. 대구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 제5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 2장 살포	경찰 수사 중	대구지검	사진 촬영 후 기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4번 피의 자가 작성 하여 4번 유인물과 거의 동일
8	성명불상	15. 2. 20. 대구 남구 주차장에서 제5항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 55매 유포	경찰 수사 중	대구지검	7번과 동일한 유인물
9	성명불상 (남자 2명)	15.2. 24. 영양군 영양읍 소재 주택가에 제5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2장 살포	경찰 수사 중	영덕지청	7번과 동일한 유인물
10	성명불상	15. 2. 25. 대구여고 후면 주차장 에서 제5항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 12매 유포	경찰 수사 중	대구지검	7번과 동일한 유인물
11	성명불상	15. 2. 25. 안동시의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제5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 11장 살포	경찰 수사 중	안동지청	지역지 기자가 경찰 신고 /7번과 동일한 유인물
12	성명불상	15. 2. 25. 서울 신촌역 인근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불법부정선거 의혹 사실로 확인, ○○○씨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라는 제하의 전단지 1,000장 살포	경찰 수사 중	서울서부지검	성명불상자 중 1명이 사진 촬영
13	성명불상	15. 2. 25. 경복궁 및 인근 도로 등에서 제12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 살포	경찰 수사 중	서울중앙지검	12번과 동일한 유인물

14	성명불상	15. 2. 26.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서 세금인상 등 정권규탄 내용의 전단지 살포	경찰 수사 중	서울중앙지검	
15	성명불상	2015. 3. 1. 인천 중구 동인천역광장 및 부근 인도에서 '부정선거 당선무효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이 기재된 유인물 1,000장 살포	경찰 수사 중	인천지검	
16	성명불상	2015. 3. 9.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 인근 산책로에서 제6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 300장 살포	경찰 수사 중	광주지검	6번과 동일한 유인물

한편, 2017도50 증거기록 중 검찰서기 000 작성의 2015. 3. 18.자 수사보고(유사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발부 사례 첨부)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에도 '대통령 비방 유인물 배포 사건'이 '유사사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박근혜 대통령 비방 유인물 배포 사건에 관련한 000(2회), 000(2회), 000, 000, 성명불상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발부 사례 총 7건이 첨부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주임검사



수 신 검사 변수량

제 목 수사보고(유사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발부 사례 첨부)

전국 청에서 수사 중인 본건과 유사한 대통령 비방 유인물 배포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나 피의자의 통화내역 등을 발취하기 위한 통신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본건 수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유사 사안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과 통신영장 등을 사본하여 첨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첨 부 :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영장 등 사본 각 1부. 끝.

2015. 3. 18.

위 보고자

검찰서기

위 수사보고 중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를 했던 박성수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피의자가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가 국가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기재하였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해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런데 ‘사안의 중대성’은 범죄 자체의 경중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현재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에서 오히려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된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보다 경한 범죄에 해당한다.

글을 보고 전단지를 요구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의자가 무료로 배송하여 대구, 광주, 영양군 등 전국적으로 배포된 점으로 보아 계속적으로 전단지가 배포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범행을 부추기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른 이들의 추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함.

3. 사안의 중대성

피의자가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는 개인의 신분이 아닌 국가의 봉치자임에도 이를 비하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안은 매우 중대함으로 인함.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1. 피의자 주소지 : 군산시 동아로
2. '금강인쇄기획' : 군산시 군산창길
3. ○○○()의 신체

압수할 물건

1. 현재 보관 중인 이 사건 전단지 자체
2. 위 '1'항전단지의 기안, 제작 및 배포와 관련된 메모, 노트 및 장부(대금결제 내역 기재 장부 포함)
3. 위 '2'항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 이동식 저장장치(USB)
4.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2) 신청인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

신청인은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224 형사재판²¹⁾ 제1심이 진행되던 중 2015. 12. 4. ~ 2016. 6. 2. 약 6개월간 형사재판계속중이라는 사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5. 12. 17.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가서야 위와 같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아래와 같은 공문과 등기우편영수증을 보내 신청인에게 2015. 12. 8.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통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1)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를 살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건조물침입죄,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17도50 사건의 제1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무부

법 무 부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

(경유)

제목 출국금지 등 사실확인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혁신행정담당관-266(18.4.10.)호와 관련하여, 귀 부에서 요청한 이병하의 출국금지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조회 대상자 : 이병하
- 조회 기간 : 2015.01.01.~2018.04.10.
- 출국금지 내역
 - 금지기간 : 2015.12.04.~2016.06.02.
 - 요청기관 : 서울중앙지검(공판제1부)
 - 요청사유 : 형사재판 계속 중
 - 해제일자 : 2016.01.18.(사유 : 국외여행허가)
- 출국금지 통지서 발송 여부 : 등기우편 발송
 - 통지서 발송 일자 : 2015.12.08.

붙 임 : 등기우편 발송 영수증 1부. 끝.

정부과천청사 우체국
 101-83-02925 ☎02-503-7757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고객문의 전화 및 문자상담 : 1588-1300
 평일(09~18시), 토요일(09~13시), 공휴일(ARS)
 영수증NO : 10163454
 접수일자 : 2015-12-08 15:42, 창구 0

<국내등기(통상/소포)우편물> *주입구*
 발송인 : 13809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1)

등기번호	요금	우편번호	수취인
14129-0152-5239	1,930	16273	이병하

신청인은 2015. 12. 21.과 2016.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해외여행허가신청을 제출하였다.²²⁾ 이에 따라 2016. 1. 18. 국외여행허가가 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이자 미국영주권자이며, 미국에 아내가 거주하고 있다.²³⁾ 그러나 관련 형사재판 도중 신청인이 해외도피를 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고, 본건 외에는 신청인이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일도 없다.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224 사건진행내용

23) 2017도50 증거기록 제430~431쪽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①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③ 출국금지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람. 다만, 기소중지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① 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한 경우: 출국금지 통지서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경우: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3. 법 제4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우: 출국금지 해제통지서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① 법 제4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3. 「군형법」 중 반란·이적의 죄
4.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출국금지 사유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 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정지 등 업무 처리 지침 제4조(출국금지조치시 유의사항)

①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유효한 여권의 소지여부,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은 아닌지 여부, 해외도피 가능성이 충분한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부당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출국금지대상자의 여권만료기간이 출국금지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여권만료기간까지 출국금지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출국금지신청시 통지유예요청은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 통보관련 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제550호, 2010. 8.25.제정)은 원칙적으로 고소·고발사건(기관고발 제외) 및 법정형이 장기 5년 이하인 사건은 통지유예 요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는 내용의 출국금지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제6조). 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제6조의5 제1항), 피고인이 해외에 연고가 있거나 사업기반을 두고 있는지 여부, 출국이 빈번한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관계기관의 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려면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밝혀야 하고, 당사자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 및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정지 등 업무 처리 지침 제4조 제1항에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해외도피 가능성이 충분한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부당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도 형사재판 중 출국금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형사공판사건 불구속 피고인의 수가 319,545명이었는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출국금지가 요청된 건수는 734건이었고 그 중 출국금지가 결정된 것은 714건에 불과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이를 확률로 나타내면, 0.22%²⁴⁾이다.

24) $714/319,545 \times 100 = 0.0022344$

2. 사진 페스티벌에서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가려진 채로 전시된 점

가. 사진 페스티벌 개요

사진 페스티벌은 2013. 8. ~ 2014. 4.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대전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총 4개의 미술관에서 각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전국 규모의 사진 페스티벌이다. 사진 페스티벌은 ‘국민의 사진예술 향유 및 참여를 증진하고, 사진예술을 활용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상과 트렌드를 조명하며, 사진매체의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목적으로 기획’²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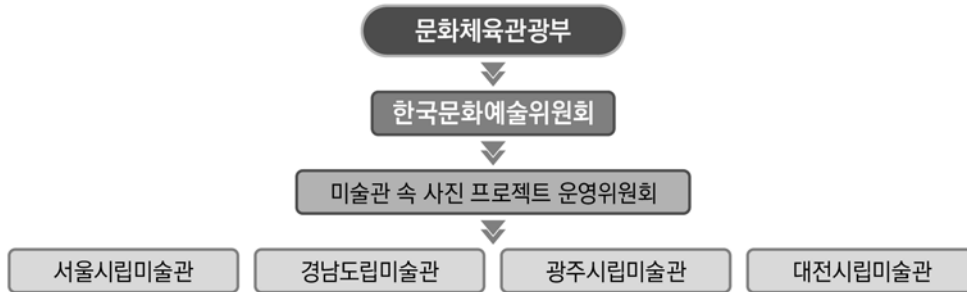
본 사업은 문체부에서 관광기금 5억 원을 지원하고, 예술위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추진된 기획형 보조 사업이며, 본 사업의 주관자는 ‘미술관 속 사진 페스티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다. 당시 아르코미술관 관장이었던 이OO은 2013. 6. 하순경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이OO 사무관으로부터 “2013년 관광기금에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 관광, 사진, 전국 단위의 페스티벌을 주제로 사업을 구상해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기간도 촉박하고, 예산이 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어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이OO는 2013. 7.초경 이OO에게 재차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결국 이OO은 운영위원회 관계자에게 연락을 하여 급하게 사진 페스티벌을 구성하게 되었다.²⁶⁾

사진페스티벌의 사업운영 체계, 각 미술관의 세부일정, 운영위원회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25) 보조금 교부신청서

26)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28.자 전화면담결과보고 및 2018. 3. 14.자 진술서,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21.자 진술조서

[그림-1] 사업운영체계



[표-3] 각 미술관의 세부일정 및 주제

기관명	전시일정	주제
대전시립미술관	2013. 12. 6. ~ 2014. 2. 16.	사진과 사회
경남도립미술관	2014. 1. 16. ~ 4. 16.	사진과 도시
서울시립미술관	2014. 1. 28. ~ 3. 23.	사진과 미디어
광주시립미술관	2014. 2. 4. ~ 4. 13.	사진과 역사
아르코미술관	2014. 1. 10. ~ 3. 21.	워크숍

[표-4] 운영위원회 조직도

직책	이름
위원장	박OO
상임위원	박OO
위원	김OO(대전시립), 윤O(광주시립), 정OO(경남도립), 조OO(서울시립), 이OO(아르코미술관관장), 천OO(작가), 신OO(평론)
행정간사	이OO
행정인턴	미정(1명)

대전시립미술관은 사진페스티벌의 주제로 ‘사진과 사회: 소셜아트’를 선정하여 2013. 12. 6. ~ 2014. 2. 16. 기간 동안 작가 26인의 사진작품 150여점, 아카이브 등을 전시하였다. 당시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이자 운영위원회 위원이었던 김OO는 전시서문에서 위 전시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전시는 사진이라는 사회적 소통의 언어를 미술관이라는 시각예술 제도공간에서 시민과 함께 나누는 예술적 소통의 장으로서 사진의 문화적 의미와 사진 예술의 비평적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이다. (중략) 행동하는 예술은 상징투쟁과

기억투쟁의 장으로서의 예술적 성찰을 바탕으로 하되 현실에 참여하고 개입하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술로서, 예술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지향한다. (중략) 스트리트아트와 디자인 기반의 구현주, 에이지아이, 이하 등은 사회현장에서 첨예한 의제를 생성한다. (중략) 사회적 예술은 사회의 구조와 현상을 의제화하는 예술이자,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전유와 전복의 예술이며,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예술적 소통을 추구하는 실천적 예술이다.”

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재

(1)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2015. 5. 11. 작성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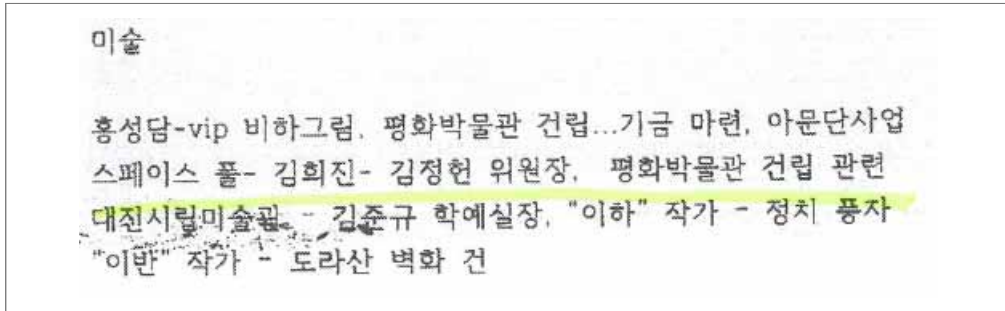
(예술위)	2013 한국소개 명품사진 페스티벌(부제: 미술관 속	1	1	김준기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VIP 비하그림을 그리는 이하(작가) 전시 포함
-------	-------------------------------	---	---	--

위 문건은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이 2015. 5. 11. 작성한 것이며, 과장, 국장, 장·차관, 청와대까지 보고되었다.²⁷⁾ 위 문건에는 소위 ‘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단체에 대한 주요 조치²⁸⁾ 실적, 주요 조치에 대한 평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향후 조치방안, 추진일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위 문건은 ‘참고4 개별 공모추진사업 현황’에서 스포츠포토 기금을 지원하여 예술위가 2013. 8. ~ 2014. 4. 시행한 ‘사진 페스티벌’ 사업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조치현황’에 VIP 비하그림을 그리는 이하(작가) 전시가 포함되었다는 내용과 당시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이었던 김OO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다.

27) 오OO에 대한 2018. 2. 7.자 진술조서 제21쪽

28) 배제 조치,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업구조조정 및 개선, 일부 사업 양해조치 등을 포함한다.

(2) 'Oh & Kim' 블랙리스트 명단



위 문건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이 작성한 후 2015. 7.경 오OO에게 인계된 문건에 해당한다.²⁹⁾ 위 문건을 보면, 이하 작가가 정치 풍자 활동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전시립미술관 김OO³⁰⁾ 학예실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의 작품 일부를 가리고 전시하게 된 점

(1) 대전시립미술관의 수위조절 요구

(가) 신청인의 주장³¹⁾

신청인은 2013. 여름 무렵, 당시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이자 사진 페스티벌 위원이었던 김OO에게 2013. 12. 6. ~ 2014. 2. 16. 소셜아트전에 참여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OO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알고 연락한 것이며, 원하는 그림을 전시해도 좋다’고 제안하였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김OO의 말을 믿고 이명박, 전두환, 박근혜 등을 풍자한 작품을 전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전시립미술관에 디스플레이를 하던 도중 대전시립미술관의 여성 큐레이터가 갑자기 “‘공적인 미술관이라 이런 그림(박근혜 풍자 그림)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그림을 떼어 달라’고 요구를 했”다. 위 큐레이터와 실랑이 끝에 신청인은 그림 앞에 ‘Sorry~ 사정상 이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

29) 특검 작성의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진술조서 제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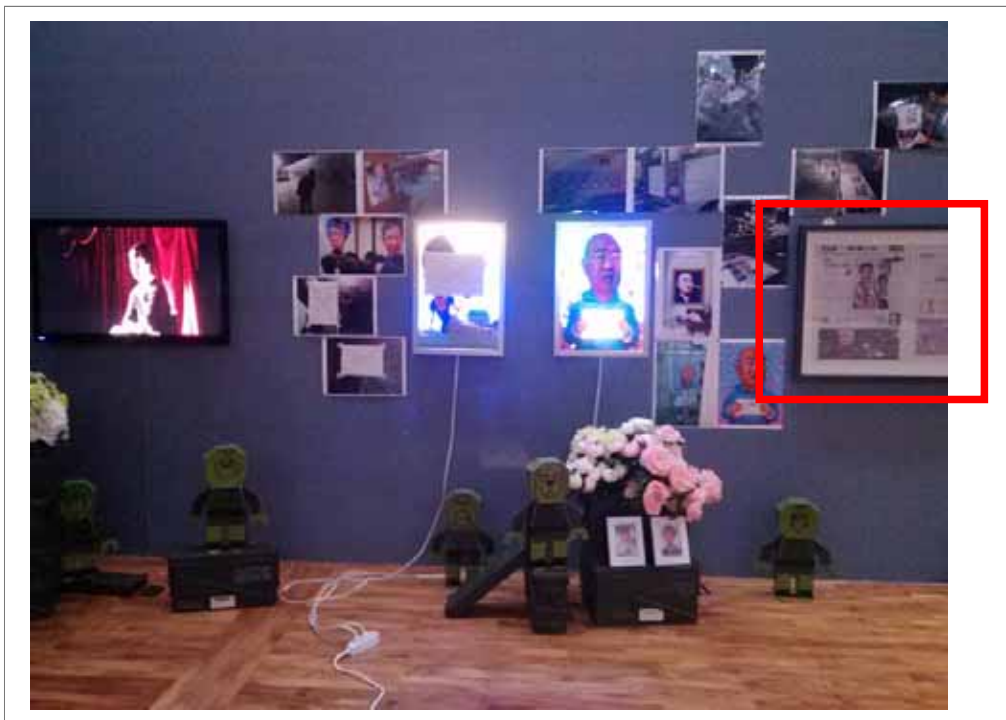
30) 원문에는 ‘김준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김OO’의 오기재로 생각된다.

31) 신청인에 대한 2017. 11. 28.자 진술조서, 관련 사진 등

다!’라는 문구를 적은 종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앞에 덧붙여 작품을 전시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신청인은 신문형식으로 제작된 작품 앞에 소셜아트전 리플렛을 붙인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서도 작품 앞에 소셜아트전 리플렛이 붙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도록에 실린 사진에는 신문형식으로 제작된 작품 앞에 소셜아트전 리플렛이 붙어 있다. 그리고 관련 기사에 실린 사진에는 위 도록에 실린 사진과는 다른 위치에 소셜아트전 리플렛이 붙어 있다.

[그림-2] 디스플레이 당시 신청인이 촬영한 사진



[그림-3] 도록에 실린 사진



[그림-4] 대전시립미술관 ‘못 보여주는’ 작품 전시, <디트뉴스>, 2014. 1. 10.



작가미하 씨가 조선일보를 패러디한 '조선구보'에도 전시회 리플릿이 붙어 있다.

(나)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의 주장³²⁾

당시 소셜아트전 담당자는 학예실장 김OO와 학예연구사 OOO이었다.

① OOO의 주장

OOO은 “(신청인이 작품을) 가릴 생각 없으셨던 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그 계 작가님들이 다른 데서는 그냥 제대로 전시를 하시는데, 또 더더군다나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이 미술관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란 말이죠.”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OOO은 “저는 이때 이하 작가님 얼굴 처음 보았거든요. 사실 이 그림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분이 그런 퍼포먼스하고 그러시는지 몰랐었는데. 그런데 그림 내리라고 한 적은 없었고 “수위 조절해야 된다.” 그런데 실장님이 농담처럼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수위 조절이라는 단어가 좀 제가 볼 때는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저희한테도 했었던 것 같은데, “수위 조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작품 내리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수위조절하라는 이야기는 농담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는지 묻는 질문에 “좀 해야 되다였어요. 해야 되다인데, 작품을 떼라던가 아니면 “얼굴을 가려야 된다.” 이런 직접적인 단어는 아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좀 너무 드러내지... 이미지 자체가 좀 세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피하는 쪽으로 방법을 생각해보자라는 투로 수위 조절이라는 얘기를 했지. 그림을 떼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리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작가님한테 수위 조절 얘기를 했었을 때 작가님이 주신 아이디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은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해도 뭐 보고(지시)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하거나, 그런데 이거를 전달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기억도 안 나... 이거는 그런데 제가 얘기할 급은 아니거든요. 제가 수위 조절을 얘기하고 그걸 급은 아니고 제가 들은 거는 실장님한테 작가님이랑 수위 조절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OOO은 신문형식으로 제작된 작품 앞에 소셜아트전 리플렛을 누가 붙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때 이걸 누가 붙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전시 중에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어서 다시 붙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2) 참고인 김OO에 대한 진술조서(2018. 1. 29.자 및 3. 12.자),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작성의 2018. 2. 6.자 공문, 참고인 OOO에 대한 2018. 2. 23.자 녹취록

② 김OO의 주장

한편 김OO는 “저는 사진 페스티벌 개최 전에 OOO에게 신청인의 작품에 관해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식의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OOO이 2013. 12. 5. 이전 디스플레이를 하였을 때 신청인의 작품을 보고 수위조절을 부탁하여 신청인이 작품의 일부를 가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고, 사진 페스티벌 개최 전 디스플레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가려진 것을 확인한 후, 이런 전시방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김OO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가려지게 된 경위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 ① “당시 신청인의 ‘유신 사과’ 작품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법원에 계류 중이었고, 2010년 분단미술 전시 때문에 국정원의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처리하면 괜찮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② “사실 공공미술관에서는 정치적으로 특정한 당 또는 인물에 대한 선호나 비난을 드러내는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 ③ “신청인의 ‘유신 사과’ 작품은 현직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공공미술관에서 전시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 ④ “(신청인은 자신의 작품의 일부를 가린 채로 전시하길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청인이 작품에 종이를 붙인 것이 예술탄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⑤ “(신청인에게 “원하는 작품을 전시하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당시 신청인의 작품은 아카이브 형태로 진행된, 설치미술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작품이 설치된 것을 보았을 때 수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 ⑥ “공무원으로서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념이나 이상을 전부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념이 걸려 있는 문제면 그걸 연성화해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분단미술전을 눈 위에 핀 꽃으로 처리한다거나, 대통령 얼굴을 가려 블랙유머로 간다거나, 하는 것은 현장의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청인이 탄압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탄압을 받았다면 전시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공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OO는 본건이 신청인의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 아니라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하였다. 오히려 김OO는 “상대적으로 덜 공인받는 작품을 공적인 공론의 장에 등재하는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신청인의 작품이 공공미술관에 전시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OO는 신문형식으로 제작된 작품 앞에 소셜아트전 리플렛을 누가 붙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운영위원회 관계자의 주장

① 박OO의 주장

당시 사진페스티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박OO은 사진 페스티벌 전시 첫 날 대전시립미술관을 방문하였더니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A4용지 등으로 가려진 채 전시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김OO에게 물어보았더니, 김OO가 현직 대통령에 관한 작품이라 민감한 사안인 것 같아 가렸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OO은 김OO가 이하 작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조치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겠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³³⁾

② 이OO의 주장

본건 발생 당시 아르코미술관 관장이었으며,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이OO은 소셜아트전 개최일 전날 대전으로 내려간 박OO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³⁴⁾

(2) 청와대 개입 여부

(가)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의 주장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이었던 김OO는 신청인의 작품이 가려지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³⁵⁾

33)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8. 2. 14.자 전화면담결과보고

34)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28.자 전화면담결과보고 및 2018. 3. 14.자 진술서

35) 참고인 김OO에 대한 진술조서(2018. 1. 29., 2018. 3. 12.)

한편 000은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가려진 채로 전시된 이후, 청와대가 대전시립미술관에 본건과 관련하여 전화를 해서 신청인 작품 전시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였는데, 청와대가 지역 미술관에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000은 청와대가 “어떻게 알고서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시장에 뭐가 걸려 있는지는 모르는 거 같고, 그래서 사이즈나 대략 출품점수, 그다음에 거기에 비슷한 류의 그런 장르의 작품을 하는 다른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작가도 있었지만 이하 작가에 대해서 물어본 거 보면 이 전시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 하지만 이하 작가라는 사람이 전시하는 걸 알고 그렇게 물어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전화는 “실장님께서 받으셨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000은 “국정원이 아니라 청와대일 거라고 제가 지금 기억되는 게 제가 너무 놀라서 부모님한테 “청와대에서 연락 왔대.” 막 이러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국정원이 뭐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고 왜 댓글 논란 있고 나서야 ‘아, 국정원이 그런 데구나.’ 근데 청와대였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연락 왔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나라에서 그런 거까지 체크를 하나?’ 그랬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김00는 위와 같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³⁶⁾

(나) 관련 기사

다만, 디트뉴스, 굿모닝충정, 시티저널 등 언론매체는 2014. 1. 8. ~ 10.경 사진 페스티벌에서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가려진 채 전시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하였다.³⁷⁾ 대전시립미술관을 방문하였던 방문객 일부도 사진 페스티벌에서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가려진 점을 지적하는 후기를 작성하였다.³⁸⁾

(다)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

당시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었던 김소영은 2014. 1.경 ‘이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는 정보보고 또는 실수비 논의가 있어,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대통령 패러디 작품이 전시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고, 이를 검토하여 담당행정관(A)이 문체부에 검토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하 작가 자신이 그림 위에 ‘사정상 보여줄 수 없다’는 종이를

36) 참고인 김00에 대한 진술조서(2018. 1. 29., 2018. 3. 12.)

37) 관련 기사 스크랩 2부

38) 관련 후기 스크랩 4부

붙여서 전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⁹⁾

(3) 문체부 개입 여부⁴⁰⁾

문체부 관계자와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김OO는 신청인의 작품이 가려지는 과정에 문체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본건 당시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이었던 이OO는 “이하 작가의 작품을 가리라고 말한 적은 전혀 없고, 언론에 위 내용이 보도된 이후 주무관 OOO이 이를 사실확인한 것이 전부입니다.”, “2014. 1.경 이전에는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이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했고, 이하 작가가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본건 당시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서OO은 2014. 1.경 당시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 A으로부터 ‘신청인의 작품이 사진 페스티벌에 전시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서OO은 위 전화를 받은 당일 담당 사무관인 이OO, 주무관인 OOO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면서, 박OO에게 대전시립미술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박OO은 위 전화가 온 당일 오후에 대전시립미술관을 방문하였다.

“예술위가 문체부의 예산을 사용하여 공립미술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주 많은데, 그렇게 현장점검을 나왔던 것은 제(김OO)가 기억하기로는 본건 외에는 없을” 정도로 문체부의 현장점검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OO는 직접 박OO을 안내하였는데, 박OO은 해당 작품이 전시된 경위와 가려진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후 서OO은 박OO로부터 본건에 대해 A4용지 1쪽 분량의 보고를 받았다. 당시 신청인의 작품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부분이 A4 용지로 가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에 관해 A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는 대전시립미술관에 현장점검을 간 날짜 이후로 추정되는 2014. 1. 14. 경남도립미술관, 2. 3. 광주시립미술관에 대한 사진 페스티벌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⁴¹⁾ 이러한 현장점검 역시 이례적인 일이었다.⁴²⁾ 현장점검 이유에 대해 이

39) 특검 작성의 김소영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제6074 ~ 6075쪽)

40) 참고인 서OO(2018. 2. 21.)·이OO(2018. 3. 13.)·박OO(2018. 2. 19.) 전화면담결과보고, 참고인 김OO에 대한 진술조서(2018. 1. 29., 2018. 3. 12.),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21.자 진술조서

41) 사진 페스티벌 현장점검에 따른 출장비 지급요청서 공문

OO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상 아마 본건이 문제가 되었으므로 다른 참가 미술관들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는지 현장점검차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⁴³⁾

(4) 예술위 개입 여부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예술위에서 오더가 내려와 신청인의 작품을 치우라고 했다”, 예술위에서 “이런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를 예술위가 지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김OO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⁴⁴⁾

(나)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의 주장

김OO는 예술위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⁴⁵⁾

(다) 예술위 관계자의 주장

이OO은 소셜아트전 개최일 전에는 신청인의 박근혜 대통령 관련 작품이 소셜아트전에 전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⁴⁶⁾

(5) 대전시청 개입 여부

(가)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의 주장⁴⁷⁾

김OO는 대전시청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전시가 보도가 되고 청와대에서 알게 되어 난리가 났다”며, “어떻게 이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일부가 가려진 것인지 경위

42) 참고인 윤OO에 대한 2018. 3. 8.자 전화면담결과보고,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21.자 진술조서

43)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21.자 진술조서

44) 신청인에 대한 2017. 11. 28.자 진술조서

45) 참고인 김OO에 대한 진술조서(2018. 1. 29., 2018. 3. 12.)

46)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28.자 전화면담결과보고 및 2018. 3. 14.자 진술서

47) 참고인 김OO에 대한 진술조서(2018. 1. 29.자 및 3. 12.자), 참고인 강OO에 대한 2018. 2. 23.자 녹취록

서를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서면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000은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면 그냥 메신저로 보내도 되면 그렇게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경위서나 사유서 같은 경우는 온나라라고 저희 기안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도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시청에서 사유서를 그냥 그렇게… 왜 그런지 그거를 문서화 시켜서 이렇게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기안문에 그렇지 않아도 찾아봤어요. 저 공문 받은 거에 시청으로 보낸 거나 이런 거 남아 있냐고. 그런데 봤을 때는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작성하셨어도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을 입장은 아니니까 실장님 선에서 적당하게 있는 그대로 기술하셔서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듣다)”고 하며, 대전시청에서 “그렇게 막 관심을 갖거나 그러지 않았었다”고 진술했다.

(나) 대전시청 관계자의 주장⁴⁸⁾

대전시청 문화예술과 대전시립미술관 담당 주무관은 2014. 2. 13.까지는 000, 2014. 2. 14.부터 약 1년간은 000였다.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근무하였을 때는 대전시립미술관에 사진 페스티벌에 신청인의 박근혜 대통령 풍자 작품이 전시된 경위 또는 위 작품이 가려진 경위에 대한 경위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000는 위와 같은 경위서는 공문으로 받는 것이 원칙인데, 대전시청 내부 문서에 위와 같은 경위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로부터 본건 관련하여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도 주장하였다.

000은 대전시청에서는 위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공식입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신청인 이병하의 박근혜 대통령 풍자작품을 보고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권인데 박근혜가 그려진 작품을 전시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했다.

48) 참고인 000 및 000에 대한 전화면담결과보고(각 2018. 3. 15.)

라. 신청인의 그림을 사진 페스티벌 도록에서 제외하라는 압박이 가해진 점

(1) 신청인의 주장⁴⁹⁾

신청인은 예술위가 사진 페스티벌에 관한 도록을 만들 때, 위 도록에 신청인의 작품을 넣지 말라고 간섭했고, 결국 신청인의 작품은 종이에 가려진 상태대로 도록에 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2)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의 주장⁵⁰⁾

김OO와 OOO은 신청인의 작품을 도록에 게재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3) 운영위원회 관계자의 주장

박OO은 문체부 담당국장 및 과장에게서 신청인의 작품을 도록에서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문체부가 이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거절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⁵¹⁾ 그러나 운영위원회 위원이었던 윤OO은 신청인의 작품을 도록에서 빼라는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들은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⁵²⁾

(4) 문체부 관계자의 주장

서OO은 사진 페스티벌 도록 제작 과정에서 사진 페스티벌 운영위원장이었던 박OO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의 작품을 빼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⁵³⁾ 박OO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⁵⁴⁾ 그러나 이OO는 위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⁵⁵⁾

49) 신청인에 대한 2017. 11. 28.자 진술조서 및 사진과 사회 : 소셜아트 도록 일부

50)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참고인 강OO에 대한 2018. 2. 23.자 녹취록

51)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8. 2. 14.자 전화통화결과보고

52) 참고인 윤OO에 대한 2018. 3. 8.자 전화면담결과보고

53) 참고인 서OO에 대한 2018. 2. 21.자 전화면담결과보고

54)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13.자 전화면담결과보고

55)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21.자 조사결과보고

(5) 예술위 관계자의 주장

이○○은 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⁵⁶⁾

마. 콜로키움 학술행사 데이터가 사진 페스티벌 도록의 별책으로 분리되어 제작된 점

(1)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의 주장⁵⁷⁾

김○○은 예술위가 당시 기획사였던 사진기획전문회사 디투씨에 연락해서 콜로키움 학술행사 데이터를 사진 페스티벌 도록 안에 넣지 말고 별책으로 분리하여 제작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큐레이터 경력상 학술행사 데이터가 도록에 실리지 않은 적은 없었기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밝히며, 당시 콜로키움 학술행사에 김호기, 서동진 등 소위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이 참가한 것 때문에 위와 같은 압력이 행사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은 콜로키움 학술행사 데이터가 별책으로 분리되어 제작된 것은 자료가 “방대해서. 그거를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녹취를 한다고 그러면 1시간 동안을 다 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한번 편집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읽어보고 교정하고 이렇게 틀린 거 그런 거 보다 보니까 늦어졌지,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운영위원회 관계자의 주장⁵⁸⁾

박○○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사진 페스티벌 관련 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했기 때문에 참고인 박○○이 위 데이터를 별책으로 분리하여 발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록제작업체 관계자의 주장⁵⁹⁾

도록제작업체인 사진기획전문회사 디투씨의 대표인 ○○○은 위 도록 제작 과정에서

56) 참고인 이○○에 대한 2018. 2. 28.자 전화면담결과보고

57) 참고인 김○○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및 대전광역시립미술관장 작성의 2018. 2. 6.자 공문, 참고인 ○○○에 대한 2018. 2. 23.자 녹취록

58) 참고인 박○○에 대한 2018. 2. 14.자 전화면담결과보고

59) 참고인 ○○○에 대한 2018. 2. 7.자 전화면담결과보고

예술위, 문체부, 국정원 등 관련자에게 압박을 받은 바는 전혀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업체에 도록 제작을 주문할 때부터 콜로키움 학술행사 데이터는 별책 발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위와 같이 별책 발간하기로 결정된 것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사진 페스티벌 관련 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했기 때문으로 이해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 수사·조치에 관한 점

(1)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

본건에서 신청인은 신청인의 행위 태양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기소되었다. 그런데 청와대 및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은 위와 같은 범죄 행위 자체보다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신청인의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여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의 경우와는 달리 광범위하고 집요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에 대해 차별대우가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기관은 이를 통해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고(Chiling Effect)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

민정수석 故 김영한 업무수첩 및 실수비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이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를 할 무렵인 2014. 11. 1. ~ 2016. 2. 10.,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및 이병기는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수비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개정, 유치 활용안 등을 논의하고,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를 한 자를 색출하여

강력 처벌할 것을 민정수석⁶⁰⁾ 및 교문수석에게 지시하였음이 확인된다.

즉, 그 무렵 청와대에는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를 강력하게 수사·조치하여야 한다는 기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비서실장은 민정수석과 교문수석에게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조치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는 신청인에 관한 2017도50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보수단체인 ‘엄마부대’가 신청인을 모욕죄로 고발하였다는 내용까지 보고받았다.

비서실장 이병기 역시 재임기간 동안 수차례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색출처벌을 지시하였는데, 우리나라 형법에는 ‘국가원수 대상 풍자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명예훼손죄 등 다양한 형법조문의 활용이 검토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죄 등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보고되거나 강력하게 수사·조치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을 정도로 중하지 않은 범죄임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와대의 수사·조치 지시는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Chilling Effect) 시도에서 이루어진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찰·국가정보원의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

(가)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지침

관련 경찰청 지침 및 관련 기사, 공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전단지 살포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및 ‘VIP(박근혜 대통령) 등 비방 전단지 배포 사건 파악 지시’ 문건을 일선 경찰서로 하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위 문건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3. 13. 위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다가 2015. 3. 16.에 이르러서야 위 문건의 존재를 인정한 점, ② 위 문건은 전단지 살포 행위 중 ‘VIP·정부 등을 비난·회화’하는 내용의 전단지 살포 등 행위를 특정하여 대응요령을 기재하고 있는데,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에는

60) 민정수석비서관 밑에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두고, 국정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동향 점검 등 공직기강, 부패근절, 국민권익 증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현 내용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는 점, ③ 대응의 객체로 ‘VIP·정부 등을 비난·회화’하는 표현행위를 설정하고, 위 표현행위의 유형을 제시한 후, 각 표현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처벌법규를 검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를 통해 ‘VIP·정부 등을 비난·회화’하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지침을 작성·하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적용 죄명 변경 시도에 관한 점

신청인은 처음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몇 시간 지난 뒤 건조물침입죄가 문제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도50 증거기록에 나타난 신청인, 경찰 000, 000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은 신청인과 000을 현행범 체포할 당시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점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정수석 故 김영한 업무수첩에 따르면이라도 前 비서실장 김기춘에게 신청인의 행위에 관하여 건조물침입죄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고가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본건에 관해 경범죄처벌법으로 즉결 처리할 것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에게 적용된 죄명이 소위 ‘윗선’의 지시에 의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 조직사건화 시도

신청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를 조직적 사건으로 규율하려고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신청인의 그림이 배포된 경우, 경찰은 정범을 특정하여 처벌하기보다는 신청인을 교사법 및 방조범 등으로 조사하였고, 박근혜 대통령 대상 각종 풍자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림의 제작자인 신청인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신청인이 단체를 조직하여 특정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상 각종 풍자행위를 하였다는 식으로 신청인을 기소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신청인의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를 조직사건화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라)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 범죄화

신청인에 대한 2017도50 증거기록 중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경사 000 작성의 2014. 10. 24.자 통신자료제공요청 문건에 ‘요청사유’로 범죄명이 아니라 표현의 내용인 ‘대통령 비방’ 유인물 살포 관련 용의자를 특정하려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경찰은 ‘국가원수비방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국가원수를 비방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신청인에 대한 과도한 내사

신청인은 2012 ~ 2016년까지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본인에 대해 과도한 내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관해 신청인을 내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 이00은 본인은 상부의 지시로 신청인을 내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한 관련 동영상과 동영상에 관한 게시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경찰은 신청인을 상당기간 내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신청인에 대하여는 구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의 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가 문제되었을 뿐인데, 위와 같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위와 같이 장기간 내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로부터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내사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000가 신청인에게 소개시켜준 국정원 직원은 본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소결

그렇다면 경찰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를 통해 ‘VIP·정부 등을 비난·회화’하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처분·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검찰의 前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신청인은 [표-3]과 같은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 16개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소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의 공소사실에서 선고유예 또는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신청인이 선고유예 또는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사실

은 전부 구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죄, 건조물침입죄의 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2015. 3. 12. 작성된 수사보고(전국 유사 사건 현황표 첨부)에서 위 문건의 제목은 ‘전국 유사 사건 현황표’ 첨부임에도 불구하고, 위 문건은 건조물침입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의 사건 현황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前 대통령 박근혜를 비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 배포 사건 현황을 파악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2015. 3. 18. 작성된 수사보고(유사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발부 사례 첨부)에서 ‘전국 청에서 수사 중인 본건과 유사한 대통령 비방 유인물 배포 사건’과 관련하여, 이에 관여한 000(2회), 000(2회), 000, 000, 성명불상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발부 사례 총 7건을 파악하여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에도 ‘대통령 비방 유인물 배포 사건’이 ‘유사사건’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수사보고 중 前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를 했던 박성수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은 범죄 자체의 경중을 내용으로 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 ‘피의자가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가 국가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기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224 형사재판 제1심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던 중 형사재판 계속 중이라는 사유로 2015. 12. 4. ~ 2016. 6. 2. 약 6개월간 출국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받았고, 2015. 12. 17.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가서야 위와 같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2015. 12. 8.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도피 가능성이 충분한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신청인은 미국영주권자이며, 미국에 아내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① 신청인의 범죄 혐의는 전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죄, 건조물침입죄의 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 등 비교적 중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점⁶¹⁾, ② 신청인은 유

61) 참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1호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 한하여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최종적으

사한 행위로 기소된 2014도10183 및 2013도15474 형사재판에서 해외도피를 시도한 정황이 없었던 점, ③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은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을 합헌으로 판단하며, 그 근거 중 하나로 형사재판 중 출국금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는 점, ④ 신청인은 자신의 행위를 처음부터 전부 인정하였던 점, 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 1. 18. 국외여행허가를 해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해외 도피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검찰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前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를 통해 ‘VIP·정부 등을 비난·회화’하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수사·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진 페스티벌에 관한 점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재

신청인의 이름은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2015. 5. 11. 작성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제16, 17쪽) 및 ‘‘Oh & Kim’ 블랙리스트 명단’에 기재되어 있다.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문건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배제조치 현황, 데이터베이스 관리 현황, 지원배제조치 계획, 지원배제조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문체부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 등으로 문화예술인·단체에게 차별대우를 하기 위해 작성하고 관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에 해당한다. ‘‘Oh & Kim’ 블랙리스트 명단’에도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문건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인의 그림 일부를 가리고 전시하게 된 점

신청인, 참고인 김소영, 참고인 박OO, 참고인 이OO, 참고인 OOO 등의 진술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소셜아트전에 작품을 전시할 2013. 12. 5. 무렵 본인의 작품 일부를 가릴 의도가 없었으나, 참고인 김OO가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암묵적 또는 직접적 지시를 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OOO이 신청인에게 요청하여 소셜아트전 디스플레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부분에 A4용지를 붙여 가리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문형식으로 제작된 작품 앞에 붙은 소셜아트전 리플렛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가린 방식이 다른 작품들과 다르고, 리플렛이 사진마다 다른 위치에 붙어 있으며, 신청인이 디스플레이 과정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붙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전시립미술관의 개입가능성이 있다.

OOO는 자신이 신청인에게 ‘수위 조절’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소셜아트전 담당자가 김OO와 OOO 2명뿐이었는데, 신청인이 ‘여성 큐레이터’에게 요청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OOO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이었던 김OO는 ‘수위 조절’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김OO를 제외한 나머지 참고인들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김OO는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이 포함된’ 신청인의 작품에 대해 부담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학예연구사인 OOO는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할 수 없는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가 소셜아트전의 책임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도무지의도적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가려져 있는 전시상황을 보고도 ‘이런 전시방향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OO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만, 당시 아르코미술관 관장이었던 이OO은 본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가, 소셜아트전 개최 전날인 2013. 12. 5.에서야 운영위원장인 박OO으로부터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인 김OO가 위와 같은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와 배치되는 진술 및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술위가 김OO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라고 외압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김소영은 본건에 관해 정보보고 또는 실수비 논의가 이루어진 2014. 1.경⁶²)에서야 당시 청와대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A에게 본건에 관하여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A은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의 과장인 서OO에게 ‘신청인의 작품이 사진 페스티벌에 전시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서OO은 같은 날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의 담당 사무관인 이OO, 주무관인 OOO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면서 OOO에게 대전시립미술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 박OO은 A의 전화가 온 당일 오후에 대전시립미술관을 방문하여 김OO와 함께 신청인의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전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서OO은 주무관인 OOO로부

62) 서OO, 이OO, 박OO 모두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터 A4용지 1쪽 분량으로 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당시 이미 신청인의 작품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부분이 A4 용지로 가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관해 A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

본 건에 관해 정보보고 또는 실수비 논의가 이루어진 날짜인 2014. 1.경은 본건이 문체되어 기사가 작성된 시기인 2014. 1. 8. ~ 10.와 부합한다.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서는 그 전까지는 본건에 대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에 사실 확인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역시 본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뒤 곧바로 대전시립미술관을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김OO에게 ‘수위조절’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는 이후 사진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미술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례적인 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자작품” 등 문제의 소지가 될 작품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와대 역시 2014. 1.경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인 김OO 등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 페스티벌에서 전시된 이하 작가의 작품 크기, 전시공간 면적, 작품의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문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셜아트전은 2013. 12. 6. 개최되었는데, 소셜아트전 디스플레이가 완료된 2013. 12. 5.경부터 前 대통령 박근혜의 얼굴이 가려진 채로 신청인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2014. 1. 8. ~ 10.경 이점을 문제 삼는 언론보도가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신청인의 작품이 전시된다는 사실을 청와대·문체부가 인지한 것은 2014. 1.경이므로 청와대·문체부가 신청인의 작품 중 前 대통령 박근혜의 얼굴을 가리라고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콜로키움 학술행사 데이터가 사진 페스티벌 도록의 별책으로 분리되어 제작된 점

참고인 김OO는 이에 관해 예술위가 당시 기획사였던 사진기획전문회사 디투씨에 연락을 해서 콜로키움 학술행사 데이터를 사진 페스티벌 도록 안에 넣지 말고 별책으로 분리하여 제작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참고인 박OO, 디투씨의 대표 박OO, OOO 등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사진 페스티벌 관련 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했기 때문에 콜로키움 학술행사 데이터가 별책 발간된 것이라는 취

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참고인 김OO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콜로키움 학술행사 데이터가 사진 페스티벌 도록의 별책으로 분리되어 제작된 사실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이에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신청인의 그림을 사진 페스티벌 도록에서 제외하라는 압박이 가해진 점

신청인 및 참고인 이OO은 신청인의 작품을 도록에서 빼달라는 연락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참고인 김OO, 이OO, 서OO, OOO 등은 위와 같은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당시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이었던 서OO과 예술위 이OO은 본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당시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이었던 이OO는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이야기된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외에 본건에 관한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체부 또는 예술위가 사진페스티벌 조직위의 위원장인 박OO 등에게 신청인의 그림을 도록에서 제외하라고 압박한 의혹이 있으나, 위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관계로 진상규명할 수 없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96

미술인 양희성의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96

미술인 양희성의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13[미술인 양희성의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양희성은 2013. 6.경 서울민족미술인협회에서 민중예술 활동을 시작했고 청소년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청소년회의'에서 역사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이일로 2013. 9. 교육부의 사찰을 받았다. 2014. 10. 군대에 입대 후 신청인의 성정체성과 사회활동 경력이 복무하던 부대의 상급자에게 알려졌는데, 신청인은 이를 '민주사회를위한청소년회의' 활동으로 사찰을 받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일어났다고 추정하며,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1,608인'에 포함된 신청인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붙임 : [미술인 양희성의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특13, 미술인 양희성의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신청인] 양희성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양희성은 2013. 6.경 서울민족미술인협회에서 민중예술 활동을 시작했고 청소년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청소년회의’(이하 민청)에서 역사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이 일로 2013. 9. 교육부의 사찰을 받았다. 2014. 10. 군대에 입대 후 신청인의 성정체성과 사회활동 경력이 복무하던 부대의 상급자에게 알려졌는데 신청인은 이를 민청 활동으로 사찰을 받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일어났다고 추정하며,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 사건에 대해 「15차 전원위원회」(2017. 11. 17.)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①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 및 경위 ② 신청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여부 ③ 블랙리스트를 이용한 차별 및 피해 여부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검토 자료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오OO	2018. 1. 31.
2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정관 및 협회 개요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2018. 3. 26.
3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8. 3. 26.
4	2013. 3. 15.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국정원	2018. 3. 26.
5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 일부	오OO	2018. 3. 26.
6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 일부	김OO	2018. 3. 26.
7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7. 4. 12.자 녹취서 일부	오OO	2018. 3. 26.
8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예술인 명단	한국일보	2018. 3. 26.

나. 신청인 임의 제출 자료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2] 신청인 제출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입수일	비고
1	뷰스앤_블랙리스트명단	양희성	2017. 10. 22.	
2	오마이뉴스_서울교육청,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선언 중고생 사찰 논란	양희성	위 같음	
3	오마이뉴스_입대하자마자 "너 성소수자라며"... 나는 사찰 당했다	양희성	위 같음	

2.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신청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대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조사 형태	일자
1	양희성	신청인	진술조서	2017. 11. 15.
			조사보고	2018. 3. 14.
2	오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서기관)	진술조서	2018. 2. 7.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이하 민미협¹⁾)는 “민족문화와 민족미술의 발전을 지향하는 미술인들의 상호연대와 공동실천을 통하여 한국예술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²⁾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현실과 발언, 임술년, 두령, 서울미술공동체 회원을 포함한 120여명의 미술가들은 1985. 11. 22.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모여 민미협을 창립하였다. 민미협은 기관지 『민족미술』을 창간하여 민중미술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한편, 전문 전시공간 ‘그림마당·민’을 개관(1986.)하여 이후 민중미술의 전시, 집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또, 민미협은 1987. 고(故) 박종철군 추모 ‘반 고문전’을 열어 인권회복과 고문근절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였고, 서울올림픽미술제 운영에 대한 비판활동을 하였다. 이후 전시회와 민족미술대토론회, 시민미술학교, 노동운동연대지원 활동 등을 통해 대중과의 결합을 모색하였다.

1) 민미협 홈페이지 협회개요(http://www.minart.org/new/sub1_01.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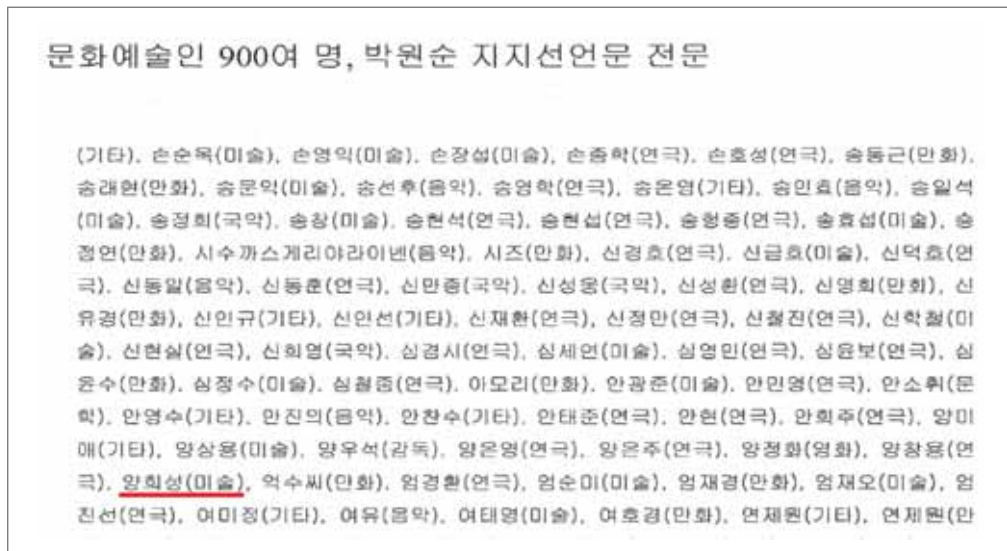
2) 민미협 정관 제3조

1990년대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를 필두로 충북, 대구, 제주, 인천 등지에서 지역 민족미술협의회가 결성됨에 따라 서울 중앙 중심의 민미협은 1995. 1. 해체되고, 지역연합 성격을 지닌 ‘전국민족미술인연합’으로 재편되었다.

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문건

[그림-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명단



위 문건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문화예술인 4,110인, 경남 문화예술인 869인, 전북 문화예술인 115인, 부산 문화예술인 423인, 서울연극협회 1,000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문화예술인 909인, 문화예술인 71인, 여성 문화예술계 628인)’ 총 9,473명에 대한 언론보도, 블로그 포스팅을 스크랩한 목록이다. 위 문건 중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문화예술인 909인)’ 명단에서 신청인의 이름이 확인되며, 위 문건에는 민미협 서울지부 소속 “미술계 김운성 작가 등 150여 명”이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동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 표지의 표를 작성하고, 관련 기사를 스크립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이다. 오OO은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위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2015. 5.경³⁾ 당시 김OO 청와대 행정관이 저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알려주며,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서 장관한테 보고하고 교문수석실로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더니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으로 확인이 되어 이 표로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⁴⁾

한편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은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본 문건에 대하여, 2015년 5월 경 김OO이 오OO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관련 문화예술인 명단을 뽑아서 장관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오OO에게 위 문건을 작성하게 하여 참고인 본인이 김종덕에게 이를 보고한 뒤 오OO을 통해 교문수석실로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⁵⁾

즉, 오OO은 김OO으로부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정부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 문건을 작성한 후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에게 보고하였다. 김OO은 위 문건을 직접 문체부 장관 김종덕에게 보고하였고, 오OO으로 하여금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인 김OO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게 하였다.⁶⁾

이후 청와대는 문체부에 위 문건을 ‘지원배제명단’으로 활용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위 문건이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워낙 명단이 방대하여 지원배제에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다.⁷⁾

위 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된 한국일보는 2016. 10. 12. 보도에서,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 6.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2012.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3) 단,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15. 5. 11.) 문건에서 “15.4월 현재 9,473건”이라는 표현이 확인되며, 공판에서 오OO이 9,473명의 확인 시기가 4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여(공판기록 1412), 9,473명에 대한 최초 파악시기가 5월이 아닌 4월일 가능성이 있다.

4)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4973~4974쪽)

5)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1313쪽)

6)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4973~4974쪽)

7)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7. 4. 21.자 녹취서 일부

6,517명, 2014.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 총 9,473명의 예술인에 대하여 청와대가 검열 용도의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보도된 내용과 실제 문건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다.).⁸⁾

2) 문체부 예술정책과가 2015. 5. 11. 작성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그림-2] 문예6-6_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대외비1-2)

-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자료 관리('15.4월현재 9,473건)
 -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선언(문화예술인 594인) *'15.5월초 추가
 - 세월호 시국선언(문학인 754인)
 -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6,517인/문화예술인, 경남·전북·부산예술인, 서울연극협회)
 -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1,608인/문화예술인, 여성예술인)

오○○은 위원회 조사에서 위 문건은 본인이 2015. 5. 11. 작성한 것이며, 과장, 국장, 장·차관, 청와대까지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⁹⁾ 위 문건에는 소위 ‘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단체에 대한 주요 조치¹⁰⁾ 실적, 주요 조치에 대한 평가, 블랙리스트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향후 조치방안, 추진일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위 문건의 제1쪽에서 ‘주요 조치 실적’으로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자료 관리(‘15.4월 현재 9,473건)’를 내세우고 있는데, 분류항목 중 하나인 ‘박원순 지지선언’ 참여자로서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은 1)항에서 살펴본바와 같다.

8)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2016/10/12 04:40, <http://www.hankookilbo.com/v/0abb634242a64afca79799b09f8564f4>

9) 오○○에 대한 2018. 2. 7.자 진술조서 제21쪽, 이○○에 대한 2018. 2. 1.자 진술조서 17쪽

10) 배제 조치,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업구조조정 및 개선, 일부 사업 양해조치 등을 포함한다.

3) 대1-7_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그림-3]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

左派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		
구분	단 체	조직 현황 및 주요동향
	민예총 이사장 : 정지창 영남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미협(미술) · 민음협(음악) · 민극협(연극) 등 10개 단체, 문화예술 종사자 3萬 5,000명으로 구성 ○ 범민련 · 실천연대 등과 연대해 평택기지 이전 · 4大江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반대 활동, 反美 · 反정부 투쟁을 통한 문화선동대 역할

위 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하여 2013. 3. 15. 대통령인 박근혜에게 보고하고, 비서실장 허태열, 민정·정무·교문수석에 전달한 것이다.¹¹⁾ 위 문건에는 “문화예술계 좌파(左派)들은 편중지원과 내부 결속력을 토대로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는 내용과 함께, <붙임> “左派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 표 중 “민예총”의 “조직 현황 및 주요동향”에서 민예총이 민미협(미술), 민음협(음악), 민극협(연극) 등 10개 단체, 문화예술 종사자 3만 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4) 국정원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보고서

[그림-4] 주요 좌 성향 문화예술단체 현황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現況		
연번	단 체 명	대 표
1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 정지창
2	문화연대	공동대표 : 강내희
3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 이시영
4	서울연극협회	회장 : 박장렬
5	민족미술인협회	회장 : 박진화

11) 2018. 1. 4.자 국정원 ‘업무협조 요청 회신’

국정원은 2014. 3. 19. 위 보고서를 통해 대표자 경력활동(정부비판 작품저술·시국선언·야권 인사지지 등) 등에 따라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단체 15개, 인물 249명’을 열거·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근절 미흡 원인’을 분석하고, 문예기금 선정기관에 좌성향 인물 배제,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을 통한 자금줄 차단 등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문체부 등을 통해 실행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의 기준점을 제시하였다.¹²⁾ 위 문건의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단체 15개 중 하나로 민미협이 등재되어 있다.

2. 조사 내용

가.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 및 경위

신청인은 2016. 10.경 한국일보 보도를 보고 본인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³⁾ 이는 2016. 10. 12.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예술인 명단’(이하 ‘박원순 지지 명단’)으로 이 박원순 지지 명단에 신청인의 성명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선언 관련 9,473명 명단’에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문화예술인 909인, 문화예술인 71인, 여성 문화예술계 628인)’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신청인은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과 같이 민미협 서울지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수정¹⁴⁾, 심세연, 박지나도 박원순 지지 명단에 기재되었으나 이 3명도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¹⁵⁾

이에 ‘선언 관련 9,473명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민미협 서울지부 김운성을 조사하였다.¹⁶⁾ 김운성은 2014. 박원순 지지 명단에 참여할 문화예술인들을 급하게 모집하게 되어 본인이 연락처를 알고 있던 민미협 서울지부 회원(신청인 양희성 포함) 등 문화예술인들에게 ‘박원순 지지 선언에 참가할 생각이 없으면 연락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

12) 국정원 적폐청산 T/F 작성의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2017. 10. 30.)

13) 신청인 양희성 진술조서(2017. 11. 15.)

14) 김수정은 우리 위원회 신청인(2017특14)으로 김수정도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15) 신청인 양희성 조사보고(2018. 3. 14.)

16) ‘선언 관련 9,473명 명단’에 “미술계 김운성 작가 등 150여 명”이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동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냈는데 회신이 오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낸 문화예술인 명단 전부를 박원순 지지 명단에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⁷⁾

나. 신청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여부

신청인은 2013. 9. 민청의 활동을 교육부에서 사찰하였다고 신청서에 기술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언론 보도를 참조하였다. 신청인이 역사 고문으로 활동한 민청이 2013. 9. 14. 출범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때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이 기자회견의 동향을 파악하고 언론에 보도된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수집해 당시 서울시교육감 문용린에게 보고 하였다고 보도하였다.¹⁸⁾

신청인이 역사 고문으로 활동한 민청은 블랙리스트와 관계가 없으며, 민청은 문화예술과는 관련이 없는 청소년 단체이다.

다. 블랙리스트를 이용한 차별 및 피해 여부

신청인은 2014. 10. 입대한 군 부대에 신청인의 성정체성과 사회활동이 공개되었는데,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민청 활동을 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성정체성과 사회활동이 공개된 신청인은 군대 복무 중 지속적으로 감시 받고 관리 대상이 되는 등 군대 생활이 힘들었고 주장하였다.¹⁹⁾ 그리고 신청인이 가명으로 진행한 인터뷰가 2017. 5. 4. 오마이뉴스에 보도되었는데 신청인은 이 인터뷰에서 국방부에서 신청인의 소속 부대에 보내온 신청인의 신상정보내역에 ‘성소수자’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²⁰⁾

신청인의 개인 신상정보가 군 부대에 공개되었지는 여부와 신청인의 군 부대에서의 피해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신청인이 소속된 부대의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국방부와 군부대를 조사할 권한이 없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17) 참고인 김OO 전화통화결과보고(2018. 3. 30.)

18) 서울시교육청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선언 중고생 사찰 논란, 오마이뉴스, 2013. 10. 24.

19) 신청인 양희성 진술조서(2017. 11. 15.)

20) 입대하자마자 “너 성소수자라며”... 나는 사찰 당했다, 오마이뉴스, 2017. 5. 4.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청와대, 문체부는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감시 사찰 차별 배제하기 위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정부 지원사업 등에서 실제로 배제하여왔다. 조사결과, 신청인이 자발적 의사로 박원순 지지 선언에 참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2014. 6. 3. 박원순 지지선언자 명단' 역시 청와대, 문체부 등에서 차별 배제를 위해 관리하여 온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감시 사찰 차별 배제의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가. 블랙리스트를 이용한 실제적 차별 및 피해 여부

신청인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신청인의 성정체성과 사회활동이 입대했던 부대에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군대 생활 내내 지속적으로 감시 받고 관리 대상이 되는 등 군대 생활이 힘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이 군대에 입대 후 피해를 당한 사실과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와의 연관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신청인이 복무했던 부대의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하지만, 우리 위원회 조사권한의 한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3.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1) 조사권한의 한계

위원회는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조직이 아니라 문체부 훈령(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2017. 7. 31.)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 타 부처나 기타 공적기관, 개인에 대한 강제조사권한이 없어 대상기관 및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군대에 입대 하여 받은 피해는 국방부와 군부대의 조사권한이 없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블랙리스트 등재로 인해 군복무 중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실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한 문제이므로 추후에라도 이 같은 사실이 실재했는지 밝혀야 한다.

2) 조사활동 기간의 부족

위원회는 최초 6개월 및 3개월의 기한 연장 등 총 9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은 2017. 11. 17. 조사 개시되어 자료 및 진술인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로 실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간 부족을 초래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97

미술가 김수정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97

미술가 김수정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14[미술가 김수정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김수정(이하 '신청인')은 2016. 10. 12. 기사를 통해 본인의 이름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이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신상을 사찰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여, 본인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목적,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에 대해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신청인은 '2014. 6. 3. 박원순 지지선언' 참여자 명단에 있다는 이유로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문체부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문건에 등재되어 있다. 당시 미술계 인사의 '2014. 6. 3. 박원순 지지선언'을 주도한 민미협 서울지부 소속 김운성은 신청인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위 지지선언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면 연락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회신을 한 기억이 없다. 김운성은 미회신을 참가의사로 오해하여 신청인을 위 지지선언 참가자 명단에 기재하였다. 신청인이 자발적 의사로 박원순 지지 선언에 참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2014. 6. 3. 박원순 지지선언자 명단' 역시 청와대, 문체부 등에서 차별 배제를 위해 관리하여 온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며, 신청인은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감시·사찰·차별·배제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붙임 : [미술가 김수정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특14, 미술가 김수정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신청인] 김수정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¹⁾

신청인 김수정(이하 '신청인')은 2016. 10. 12. 기사²⁾를 통해 본인의 이름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이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블랙리스트에는 민족미술인협회 소속 작가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고, 신청인 역시 2013년 여름경부터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까지 민족미술인협회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은 위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이름이 본인의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신상을 사찰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여, 본인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목적,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에 대해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2) [블랙리스트 명단]문화예술계 각계인사 총망라, <뉴스앤뉴스>, 2016. 10. 12.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7. 11. 17.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의결되었다.³⁾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여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목적,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 및 관리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제2절 | 조사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오OO	2018. 1. 31.
2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정관 및 협회 개요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2018. 3. 26.
3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8. 3. 26.
4	2013. 3. 15.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국정원	2018. 3. 26.
5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 일부	오OO	2018. 3. 26.
6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 일부	김OO	2018. 3. 26.
7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7. 4. 12.자 녹취서 일부	오OO	2018. 3. 26.

3) 제15차 전원위원회 의결서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8	[블랙리스트 명단]문화예술계 각계인사 총망라, <뉴스앤뉴스>, 2016. 10. 12.	뉴스앤뉴스	2018. 3. 26.

2. 신청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수정	신청인	진술조서 (2017. 11. 9.)
2	이OO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진술조서 (2018. 2. 1.)
3	오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서기관)	진술조서 (2018. 2. 7.)
4	양희성	동료작가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14.)

제3절 | 조사 사항·내용

1.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이하 '민미협')⁴⁾

민미협은 “민족문화와 민족미술의 발전을 지향하는 미술인들의 상호연대와 공동실천을 통하여 한국예술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⁵⁾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현실과 발언>, <임술년>, <두렁>, <서울미술공동체> 회원을 포함한 120여명의 미술가들은 1985년 11월 22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모여 민족미술협의회를 창립하였다. 민족미술협의회는 ‘깡순이 작가 이은홍 구속사건’, ‘신촌벽화 및 정릉벽화 파괴사건’에 대항하고 기관지 <민족미술>을 창간하여 민중미술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한편, 전문 전시공간 ‘그림마당·민’을 개관(1986년)하여 이후 민중미술의 전시, 집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민중미술 진영의 저항 거점을 형성하였다.

또, 민족미술협의회는 1987년 고(故) 박종철군 추모 <반 고문전>을 열어 인권회복과 고문근절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였고, 서울올림픽미술제 운영에 대한 비판활동을 하였다.

4) 민미협 홈페이지 협회개요(http://www.minart.org/new/sub1_01.html)

5) 민미협 정관 제3조

또한,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이어진 <통일전>을 비롯한 <여성과 현실전>, <정치선전전> 등의 전시회를 축으로 민족미술대토론회, 시민미술학교, 노동운동연대지원 활동 등을 통해 대중과 결합을 모색했으며 그 속에서 수많은 성과들을 쌓아 나갔다.

1990년대에는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를 필두로 충북, 대구, 제주, 인천 등지에서 지역 민족미술협의회가 결성됨에 따라 서울 중심의 민족미술협의회가 1995. 1. 해체되고, 지역연합 성격을 지닌 '전국민족미술인연합'으로 재편되었다.

2.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가.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문건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 909명

간성봉(미술), 강나루(기타), 강력(연극), 강명환(연극), 강보람(연극), 강성수(연극), 강소소(만화), 강신구(국악), 강애심(연극), 강요배(미술), 강유미(연극), 강제권(연극), 강지수(연극), 강지원(연극), 강지은(연극), 강진휘(연극), 강풀(만화), 강현아(만화), 강환규(무용), 고건령(연극), 고경빈(만화), 고아라(만화), 고연옥(연극), 고장환(만화), 고재귀(연극), 고준식(뮤지컬), 공상아(연극), 공재민(연극), 공재민(연극), 곽경목(기타), 곽대원(미술), 곽동현(연극), 곽영화(미술), 곽용수(영화), 구경(연극), 구근회(연극), 구민정(연극), 구분진(연극), 구영희(기타), 구지현(만화), 구태환(연극), 구혜미(연극), 권경민(기타), 권기대(연극), 권나연(연극), 권남희(연극), 권동희(기타), 권병길(연극), 권성선(연극), 권영석(미술), 권영심(국악), 권용택(미술), 권우경(기타), 권은경(만화), 권재현(기타), 권지현(뮤지컬), 권택기(연극), 권혁주(만화), 권형우(음악), 기국서(연극), 김건희(미술), 김경(만화), 김경래(만화), 김경익(연극), 김경일(만화), 김경주(미술), 김경진(애니메이션), 김경하(애니메이션), 김경호(만화), 김경희(국악), 김계도(연극), 김관(연극), 김근도(기타), 김기민(영화), 김기태(연극), 김기호(미술), 김나영(연극), 김낙균(연극), 김남수(미술), 김다솔(국악), 김달남(만화), 김대웅(기타), 김대현(기타), 김대호(애니메이션), 김덕수(기타), 김덕진(미술), 김도균(연극), 김도연(애니메이션), 김도영(연극), 김동순(연극), 김동완(연극), 김동욱(음악), 김동욱(연극), 김동원(연극), 김동원(음악), 김동찬(연극), 김동해(연극), 김동혁(기타), 김두범(성악), 김두성(미술), 김뢰하(연극), 김명기1(연극), 김명기2(연극), 김명정(연극), 김명집(사진), 김명집(연극), 김명현(만화), 김명환(연극), 김묘진(연극), 김무경(국악), 김미경(연극), 김미도(연극), 김미영(기타), 김미용(음악), 김미현(연극), 김미혜(미술), 김민정(연극), 김민정(작가), 김민지(기타), 김민하(연극), 김방죽(미술), 김병수(만화), 김보영(애니메이션), 김복만(기타), 김봉건(연극), 김상범(기타), 김상철(기타), 김상훈(국악), 김서경(미술), 김석원(애니메이션), 김석주(미술), 김선구(기타), 김선동(미술), 김선호(국악), 김성민1(기타), 김성민2(기타), 김성수(연극), 김성수(미술), 김성진(기타), 김성호(연극), 김세동(연극), 김수미(연극) **김수정(미술)** 김수진(연극), 김수현(애니메이션), 김숙진(전통예술), 김순복(성악), 김승룡(만화), 김승환(영화), 김신(만화), 김신기(연극), 김아람(연극), 김연수(만화), 김영(영화), 김영경(영화), 김영나(기타), 김영남(음악), 김영아(연극), 김영임(국악), 김영주(기타), 김영준(연극), 김영중(기획), 김영중(미술), 김영탁(출판), 김영훈(연극), 김예정(무용), 김왕근(연극), 김용(기타), 김용길(만화), 김용선(연극), 김용한(만화), 김우성(연극), 김

위 문건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문화예술인 4,110인, 경남 문화예술인 869인, 전북 문화예술인 115인, 부산 문화예술인 423인, 서울연극협회 1,000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문화예술인 909인, 문화예술인 71인, 여성 문화예술계 628인)’ 총 9,473명에 대한 언론보도, 블로그 포스팅을 스크랩한 목록이다. 위 문건 중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문화예술인 909인)’ 명단에서 신청인의 이름이 확인되며, 위 문건에는 민미협 서울지부 소속 “미술계 김운성 작가 등 150여 명”이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동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 표지의 표를 작성하고, 관련 기사를 스크랩한 자는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이다. 오OO은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위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2015. 5.경⁶⁾ 당시 김OO 청와대 행정관이 저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알려주며,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서 장관한테 보고하고 교문수석실로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더니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으로 확인이 되어 이 표로 작성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⁷⁾

한편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은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본 문건에 대하여, 2015년 5월 경 김OO이 오OO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관련 문화예술인 명단을 뽑아서 장관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오OO에게 위 문건을 작성하게 하여 참고인 본인이 김종덕에게 이를 보고한 뒤 오OO을 통해 교문수석실로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⁸⁾

즉, 오OO은 김OO으로부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정부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 문건을 작성한 후 문체부 예술정책관

6) 단,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15. 5. 11.) 문건에서 “15.4월 현재 9,473건”이라는 표현이 확인되며, 공판에서 오OO이 9,473명의 확인 시기가 4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여(공판기록 제1412쪽), 9,473명에 대한 최초 파악시기가 5월이 아닌 4월일 가능성이 있다.

7)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4973~4974쪽)

8)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1313쪽)

김OO에게 보고하였다. 김OO은 위 문건을 직접 문체부 장관 김종덕에게 보고하였고, 오OO으로 하여금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인 김OO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게 하였다.⁹⁾

이후 청와대는 문체부에 위 문건을 ‘지원배제명단’으로 활용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위 문건이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워낙 명단이 방대하여 지원배제에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다.¹⁰⁾

위 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된 한국일보는 2016. 10. 12. 보도에서,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2012년 대선 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시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 총 9,473명의 예술인에 대하여 청와대가 검열 용도의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보도된 내용과 실제 문건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다).¹¹⁾

나. 문체부 예술정책과가 2015. 5. 11. 작성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DB 관리(‘15.4월현재 9,473건)
 -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선언(문화예술인 594인)
 - 세월호 시국선언(문학인 754인)
 - 문재인후보 지지선언(6,517인/문화예술인, 경남·전북·부산예술인, 서울연극협회)
 - 박원순후보 지지선언(1,608인/문화예술인, 여성예술인)

오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위 문건은 본인이 2015. 5. 11. 작성한 것이며, 과장, 국장, 장·차관, 청와대까지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²⁾ 위 문건에는 소위 ‘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단체에 대한 주요 조치¹³⁾ 실적, 주요 조치에 대한 평가, 블랙리스트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향후 조치방안, 추진일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위 문

9)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4973~4974쪽)

10)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7. 4. 12.자 녹취서 일부

11)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2016/10/12 04:40,
<http://www.hankookilbo.com/v/0abb634242a64afca79799b09f8564f4>

12) 오OO에 대한 2018. 2. 7.자 진술조서 제21쪽, 이OO에 대한 2018. 2. 1.자 진술조서 17쪽

13) 배제 조치,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업구조조정 및 개선, 일부 사업 양해조치 등을 포함한다.

건의 제1쪽에서 ‘주요 조치 실적’으로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자료 관리(15.4월 현재 9,473건)’를 내세우고 있는데, 분류항목 중 하나인 ‘박원순 지지선언’ 참여 자로서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은 가.항에서 살펴본바와 같다.

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左派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

구분	단 체	조직 현황 및 주요동향
	<p>민예총 이사장 : 정치창 영남대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미협(미술)·민음협(음악)·민극협(연극) 등 10개 단체, 문화예술 종사자 3萬 5,000명으로 구성 ○ 범민련·실천연대 등과 연대해 평택기지 이전·4大江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반대 활동, 反美·反정부 투쟁을 통한 문화선동대 역할

위 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하여 2013. 3. 15. 대통령인 박근혜에게 보고하고, 비서실장 허태열, 민정·정무·교문수석에 전달한 것이다.¹⁴⁾ 위 문건에는 “문화예술계 좌파(左派)들은 편중지원과 내부 결속력을 토대로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는 내용과 함께, <붙임> “左派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 표 중 “민예총”의 “조직 현황 및 주요동향”에서 민예총이 민미협(미술), 민음협(음악), 민극협(연극) 등 10개 단체, 문화예술 종사자 3만 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14) 2018. 1. 4.자 국정원 ‘업무협조 요청 회신’

라. 국정원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보고서

연번	단 체 명	대 표
1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 정치창
2	문화연대	공동대표 : 강내희
3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 이시영
4	서울연극협회	회장 : 박장렬
5	민족미술인협회	회장 : 박진화

국정원은 2014. 3. 19. 위 보고서를 통해 대표자 경력활동(정부비판 작품저술·시국선언·야권 인사지지 등) 등에 따라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단체 15개, 인물 249명’을 열거·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근절 미흡 원인’을 분석하고, 문예기금 선정기관에 좌성향 인물 배제,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을 통한 자금줄 차단 등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문체부 등을 통해 실행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의 기준점을 제시하였다.¹⁵⁾ 위 문건의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단체 15개 중 하나로 민미협이 등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 진술¹⁶⁾

신청인은 2017. 11. 9.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민미협 활동은) 2013년 여름부터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 경까지 활동을 하고, 그만렸습니다.
- 현재는 작가명으로 활동하지만, 민미협으로 활동 당시에는 본명을 사용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지지, 박원순 서울시장지지 등은 해본적이 없고, 있다면 세월호 관련 서

15) 국정원 적폐청산 T/F 작성의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16) 신청인에 대한 2017. 11. 9.자 진술조서

명일텐데, 그것도 길거리에서 개인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민미협 차원의 명단을 그곳에 고스란히 베껴서 이름을 포함시킨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민미협에서는 전시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고양, 통영을 순회하며 위안부 관련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민미협에서 나온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촛불집회에도 참가했고, 작년 8월경에 시민청 갤러리에 싸드반대 관련 전시회에도 참가했습니다.

바. 참고인 양희성의 진술

참고인 양희성은 2018. 3. 14.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는데도, 2016. 10. 12. 한국일보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예술인 명단’ 기사에 이름이 기재되었으며 참고인 양희성과 같이 서울민미협에서 같이 활동했던 심세연, 박지나, 김수정도 박원순 후보를 지지 하지 않았는데도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알지 못한다.

사. 참고인 김운성의 진술

참고인 김운성은 2018. 3. 30.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김세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김운성은 「2014. 6. 3. 문화예술인 900여 명, 박원순 지지선언」에 참여하면서 위 지지선언에 함께 참여할 문화예술인을 급하게 모집하게 되었는데, 김운성이 연락처를 알고 있던 원로 문화예술인 몇 명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위 지지선언에 당연히 함께 참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위 이야기를 들은 김운성은 연락처를 알고 있던 민족미술인협회 서울지부 회원 일부 등 문화예술인들에게 “박원순 지지선언에 참가할 생각이 없으면 연락 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하였고, 위 문화예술인에는 김수정과 양희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박원순 지지선언에 참가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 오지 않자, 김운성은 본인이 문자를 보냈던 문화예술인 명단 전부를 위 지지선언문 참가자 명단에 기재하였다.

3. 공모사업 지원 배제 사실

가. 공모사업 지원 배제 여부

- 신청인은 2017. 11. 9.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⁷⁾
- 그 이후에 제가 ‘탄소’라는 작가명으로 활동했는데, 이후 공모전 등에 참여했는데, 본명으로 참여했다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작년과 올해, 인천문화재단에 ‘바로 그 지원’에 공모하여 지원받아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홍대 쪽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하는 공모전에 응모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 때는 탈락했습니다. 그때의 탈락은 블랙리스트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블랙리스트 관리, 검열, 사찰 등

- 신청인은 2017. 11. 9.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⁸⁾
-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부분에서의 피해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17) 신청인에 대한 2017. 11. 9.자 진술조서

18) 신청인에 대한 2017. 11. 9.자 진술조서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동명이인 여부

김운성은 '2014. 6. 3. 박원순 지지선언' 참가자 명단에 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은 미술 분야 참가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민미협 서울지부 소속이었던 양희성, 심세연, 박지나 등도 위 명단 미술 분야 참가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명단에 기재된 이름은 신청인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블랙리스트 등재 경위

- 1) 신청인은 '2014. 6. 3. 박원순 지지선언'에 참여할 내심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4. 6. 3. 박원순 지지선언' 참가자 명단에 있다는 이유로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문체부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문건에 등재되어 있다. 당시 미술계 인사의 '2014. 6. 3. 박원순 지지선언'을 주도한 자는 민미협 서울지부 소속 김운성이다. 김운성은 위 지지선언에 참여할 문화예술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던 문화예술인들에게 "위 지지선언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면 연락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회신을 한 기억이 없다. 김운성은 미회신을 참가의사로 오해하여 신청인을 위 지지선언 참가자 명단에 기재하였다.
- 2)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 김OO은 2015. 4.~5.경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에게 인터넷에서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의 명단을 확인해서 문체부 장관인 김종덕과 교문수석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오OO은 위 활동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의 명단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였는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이 확인되었다. 이후 오OO은 위 문건을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 및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으며, 김OO은 김종덕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이후 오OO은 2015. 5. 11. 문체부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을 작성하여 과장, 국장, 장·차관, 청와대까지 보고하였다. 위 문건에는 ‘선언 관련 9,473명 명단’이 소위 ‘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단체 데이터베이스로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된 사실과 함께, 위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배제조치 현황, 데이터베이스 관리 현황, 지원배제조치 계획, 지원배제조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다. 공모사업 지원 배제 여부

신청인은 2015년 이후 ‘탄소’라는 작가명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지원 배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수차례 지원금을 교부받아 작품전시 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됨으로 인해 공모사업에서 지원 배제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라. 블랙리스트 등재로 인한 피해

청와대, 문체부는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감시·사찰·차별·배제하기 위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 실제로 배제하여 왔다. 조사결과, 신청인이 자발적 의사로 박원순 지지 선언에 참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2014. 6. 3. 박원순 지지선언자 명단’ 역시 청와대, 문체부 등에서 차별 배제를 위해 관리하여 온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며, 신청인은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감시·사찰·차별·배제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98

퍼포먼스 활동가 박성수의 정치풍자 전단 배포 및 살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98

퍼포먼스 활동가 박성수의 정치풍자 전단 배포 및 살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18 [퍼포먼스 활동가 박성수의 정치풍자 전단 배포 및 살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14. 12.경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풍자·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제작·배포하였는데 신청인이 제작한 전단지가 대구에 배포된 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5. 5.경 구속되어 8개월간 수감되었다.

신청인은 전단지 배포로 인한 구속·기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한 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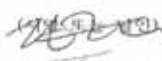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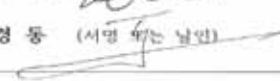
- (1) 명예훼손 당사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시적인 고소가 없었던 점,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8개월간의 구속, 그리고 청와대와 경찰의 문건에서 나타나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비판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국가기관의 무리한 대응이 있었다

고 보여 진다.

- (2) 신청인의 2심 판결문을 통해 신청인이 제작 배포한 전단지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단지 배포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보호 받아야 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붙임 : 1. 책임심의위원 검토의견서 사본 1부

2. [퍼포먼스 활동가 박성수의 정치풍자 전단 배포 및 살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진상조사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 (책임심의위원)	
사건번호/사건명	2017특18 퍼포먼스 활동가 박성수의 정치풍자 전단 배포 및 살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담당팀(전문위원)	4팀 최홍실 전문위원
심의 일정	1. 진원위원회 전세위원 심의시 취합 기간 : 2018. 3.13-16, 2. 책임심의위원 심의 기간 및 방법 : 2018.3.13.-3.16 3. 진상조사 소위원회의 안전 상정일 : 2018.3.19
조사 내용 등에 대한 검토 내용	이견 없음
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 내용	이견 없음
총합 의견	보고서상 의견란을 채워하고 진원위에 결과보고서로 상정하기로 심의함
책임심의위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center;"> <p>김 준 현 (서명 또는 날인)</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김 용 삼 (서명 또는 날인)</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송 경 동 (서명 또는 날인)</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이 우 성 (서명 또는 날인)</p> </div> </div>

[사 건] 2017특18, 퍼포먼스 활동가 박성수의 정치풍자 전단 배포 및 살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신청인] 박성수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박성수는 2014. 12.경 전북 군산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풍자·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이하 전단지)를 제작하여, 전단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우송하고 배포하였다. 2015. 1.초 군산경찰서 경찰은 “무슨 전단지를 뿌리고 있냐? 위에서 전화 온다”고 하면서 박성수에게 전단지 배포에 대한 확인을 했고, 2015. 1. 16. 군산경찰서 정보계장은 박성수의 전단지에 대해 별 문제 없는 전단지라고 얘기했다.

2015. 2.초 신청인이 대구로 우송한 전단지를 000, 000가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앞에서 배포했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 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신청인의 집을 압수수색 하였는데, 이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은 “대검에서 수사지휘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2015. 4. 28. 신청인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구호를 제창했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위반으로 체포되었고, 대구 수성경찰서에 인계되어 구속되었다.

신청인은 전단지 배포로 인한 구속·기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한 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 사건에 대해 「16차 전원위원회」(2017. 11. 24.)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① 전단지 배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 내용 ②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수사과 기소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확인 ③ 전단지 내용의 명예훼손 적용 및 배포의 위법성 여부 ④ 경찰청 문건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 시 대응요령’ 작성 경위 및 신청인에 대한 적용 여부 확인이 조사의 목적이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기관 자료 및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검토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게재일/ 작성일
1	김영한 청와대 전 정무수석 업무 일지 사본	특검 기록	2017. 10. 30.	
2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회의 자료	청와대	2018. 2. 12.	
3	대통령은 신성불가침? 위촉되는 표현·언론 자유	노컷 뉴스		2014. 12. 10.
4	[단독]경찰의 ‘전단지 살포 대응요령’ 문건 보니	헤럴드경제		2015. 3. 13
5	강신명 경찰청장 “박 대통령 비판 전단·현행법 체포 당연”	민중의 소리		2015. 3. 16.
6	[의견서]경찰청의 대통령풍자전단살포대응매뉴얼은 위법입니다	참여연대		2015. 3. 30
7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참여연대		2015. 9. 7
8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지 20만장 살포 강행	노컷뉴스		2014. 9. 21.
9	대한민국의 네 번째 정기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	유엔인권위원회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		2015. 11. 3.
10	대구법원 국감, ‘박근혜 전단지 배포’ 구속에 “원님 재판이나”	평화뉴스		2017. 10. 24.
11	‘박근혜 국정농단’ 4년전부터 전단지 뿌리며 비판한 시민들 있었다	경향신문		2018. 2. 6.

나. 신청인 임의 제출 자료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2] 신청인 제출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입수일	비고
1	신청인 박성수 2심 판결문 ¹⁾	박성수	2018. 1. 26.	
2	신청인 박성수 1심 판결문 ²⁾	박성수	2018. 2. 1.	
3	신청인 박성수 출석요구서	박성수	위 같음	
4	신청인 박성수 압수수색 영장 및 내용	박성수	위 같음	

2. 신청인, 참고인 조사

아래와 같이 신청인,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신청인·참고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조사 형태	일자
1	박성수	신청인	진술조서	2017. 11. 27.
2	OOO	참고인(전단지 배포자)	진술조서	2018. 2. 5.
3	OOO	참고인(전단지 배포자)	진술조서	2018. 2. 6.
4	OOO	참고인(전단지 배포자)	진술조서	2018. 2. 6.
5	OOO	참고인(당시 군산경찰서 경찰)	조사보고	2018. 2. 9.
6	OOO	참고인(당시 대구수성경찰서 경찰)	조사보고	2018. 2. 21.
7	OOO	참고인(당시 군산경찰서 경찰)	조사보고	2018. 2. 22.

1) 대구지방법원 2016노159

2)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834, 4616(병합)

제3절 | 조사 내용

1. 사건 배경

2014. 10. 20. 서울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000(일명 00)³⁾가 전단지 배포한 후, 2014.말부터 2015.말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제주 등 전국에서 전단지가 배포되었으며, 배포된 전단지 수는 수만장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단지 배포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⁴⁾

[표-4] 전단지 배포 현황

연번	날짜	장소	비고
1	2014. 10. 20.	서울시 동화면세점	이00 배포
2	2014. 10. 20.	서울시 신촌	
3	2014. 10. 31.	서울시 홍대	
4	2014. 12. 26.	서울시 홍대입구역	
5	2015. 01. 02.	전북도 군산	박성수 배포
6	2015. 01. 14.	광주시 광주공항 화장실 비품 보관함	박성수 전단지
7	2015. 02. 12	부산시 부산시청 주차장 앞 도로	이병하 전단지-윤철면 배포
8	2015. 02. 16.	대구시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앞	박성수 전단지-변홍철, 신동재 배포
9	2015. 02. 25.	서울시 신촌역 인근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2주년 관련 전단지
10	2015. 02. 25.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앞	위 같음
11	2015. 02. 26.	서울시 강남역	위 같음
12	2015. 02. 27.	서울시 명동	위 같음
13	2015. 02. 28.	서울시 한국은행 맞은편 건물 옥상	위 같음
14	2015. 03. 01.	인천시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15	2015. 03. 09.	광주시 서구 풍암동 저수지 산책로	
16	2015. 03. 14.	서울시 서교동	박성수 전단지
17	2015. 03. 2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공원	박성수 전단지

3) 000는 건조물침입죄, 경범죄처벌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4) 전단지 배포 현황은 인터넷으로 언론 기사를 검색하여 정리한 것으로, 이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인 박성수의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는 2015. 2. 20. 대구, 2015. 2. 24. 경북 영양, 2015. 4. 13. 경기도 파주 등에서 전단지를 유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되지 않았다. 2014. 12. 26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전단지 1만여장, 2015. 6. 10. 국회 인근 건물 옥상에서 전단지 4천장 등이 배포된 것으로 보아 배포된 전단지 수는 수만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번	날짜	장소	비고
18	2015. 04. 01.	광주시 서구 치평동 운천저수지	박성수 전단지
19	2015. 04. 02.	제주도 제주시 연동과 용담동 등	
20	2015. 04. 03.	부산시 부산경찰청앞	박성수 전단지 - 000 배포
21	2015. 04. 05.	대전시 대전 탄방동 로데오타운 앞	박성수 전단지
22	2015. 04. 13.	서울시 동대문구 경남기업 맞은편 건물 옥상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전단지
23	2015. 04. 16.	서울시 여의도 국회 맞은편 빌딩 옥상	세월호 참사 1주년 관련 전단지
24	2015. 04. 16.	서울시 코엑스 앞	상동
25	2015. 04. 16.	창원시 상남동 사거리	상동
26	2015. 04. 16.	대전시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상동
27	2015. 04. 24.	서울시 서울시청 인근	
28	2015. 04. 28.	서울시 총리공관 앞	
29	2015. 05. 15.	부산시 범일동 자유시장 부근	
30	2015. 05. 16.	서울시 홍대입구역 인근 건물 옥상	
31	2015. 05. 16.	광주시 광주시청 문화광장 주변	
32	2015. 05. 17.	광주시 금남로	
33	2015. 06. 05.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인근 한 빌딩	
34	2015. 06. 05.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35	2015. 06. 10.	부산시 부산진구 일대	
36	2015. 06. 18.	대구시 곳곳	
37	2015. 07. 17.	서울시 국회 인근 건물 옥상	
38	2015. 11. 0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K백화점 주차장	

000가 전단지를 배포 한 후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게 되는데,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000의 전단지에 대한 상황과 처리 검토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000의 전단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중 이병하 전단지 관련 내용

날짜	내용
2014. 10. 31.	000, 엄마부대 고발(명예훼손)
2014. 11. 01.	대통령 모욕 전단 살포건(경찰)-000, 건조물침입 의율 상태, 경범죄법으로 즉결 처리 검토
2014. 11. 03.	대통령 모욕 전단 살포 행위 ①건조물침입, ②경범죄법 →경범죄 법정형 상형 개정
2014. 11. 04.	[長] 경범죄 - 유치 활용안
2014. 12. 29.	홍보: VIP 모욕 비라 살포, 낙서사건 유의 조치

〈신청인 박성수 제작 전단지 정리〉

1면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2002년 5월 방북해 김정일과 만남.
“김정은 장군은 민을만한 파트너” 고무찬양의혹,
“국가보안법2조(반국가단체 정의)의 조항을 없앨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보법 부정.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 / 남이 하면 종북
/ 반국가행위

서울에서는 이런 전단지를 뿌렸다고 경찰서 강력계가
조사한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70년대 박정희 시대로
되돌아 간 것인가? 국민들을 짓밟으면 그냥 죽을 줄
아나!!!

▶ 국민을 길들이려는 그러한 추악한 행태에 열 받아
서 굳이 이 전단지를 만들.
법과 정치가 형평성 없이 당리당략적으로 적용되
니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이다.

2면

정윤희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박근혜에 비하면 이명박은 성군이네!

■ 탄생 :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정부지원 받는 보
수단체들의 관권선거로 만들어진 박근혜 정권

■ 짝기 : 불법선거를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 개
인사 들춰서 짝어냄

■ 무죄 :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총동원해서
“문재인은 빨갱이”라는 등의 글 수백만 건을 인터넷에 유포한 불법선거운동을 무죄판결 내림

■ 의혹 : 문화체육관광부 모 과장이 청와대 실세 논란
이 한창인 정윤희씨의 딸 특혜의혹을 처벌해야 한
다는 보고서 올리자 박근혜가 직접 경질지시. 도대
체 박근혜와 정윤희는 어떤 관계여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 7 : 조선일보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사라진 7시간
을 왜 못 밝히냐?며 성토. 산케이 신문에서 7시간
동안 박근혜와 정윤희의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
사를 썼다 고소됨. → 7시간 뭐 했는지 밝히면 될
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외국 언론을 청와대에서 고
발해서 세계적인 망신.

■ 종북 : 결국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벗어날 방법이 종
북몰이 밖에 없다는 판단인지 북한을 동반자로 여
긴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는 통진당을 해체함. 그렇
담 박근혜도 같은 법으로 처벌 할 것을 국민의 이름
으로 요구!

이 전단지는 구속될 각오를 하고 만든 전단지입니
다. 이명박 정권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 이따 나
라에서 밥먹고 사느니 차라리 즐거운 마음으로 감
옥 끌려 가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는 것
이 아닙니다. 나서서 이 미친 세상을 성토향시다!

2014. 9. 16.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
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
담팀’을 신설하였다. 이후 국내 모바일메신저가 검찰의 감청영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
려지면서 이는 사이버상의 검열로 받아들여져 국내 모바일메신저 이용자들이 대거 외국
모바일메신저로 이동하는 일명 ‘사이버 망명’이 일어났다. 이에 국내 모바일메신저 대표
는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시 노동당 부대표의

모바일메신저 지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2014. 9. 26. 시사만화가 손문상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공주님, 개 풀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시사 만평을 게재했고, 2014. 10. 보수 논객으로부터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과 합성한 피규어로 표현했다는 이유였다.⁷⁾

한편, 2014.부터 대통령을 풍자·비판하면 보수단체가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정부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들이 빈번하였는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2015.9.7.)에도 잘 나타나 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 개인 또는 국가기관이 직접적인 고소 없이 보수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기소할 경우 비판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도 국민의 비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어 우려 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⁸⁾ 이를 두고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박근혜 정부 풍자·비판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이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정부 비판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 유엔인권위원회의 ‘대한민국의 네 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장기 징역형을 포함해 법상의 형량이 가혹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한 진실인 언사마저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구사되지 않는 한 형사 처벌 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19조)’고 보고하였다.⁹⁾

7) 대통령은 신성불가침? 위축되는 표현·언론 자유, 노컷뉴스, 2014. 12. 10. ‘박근혜 정부의 명예훼손 고발 사례 발표회’는 2014. 11. 25.에 열렸으며 유승희, 이종걸, 노웅래, 문병호, 배재정 의원이 주최하였고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하였다. 신학림 미디어오늘 사장, 손문상 시사만화가, 김상호가 사례 발표 하였고 이병하가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시사만화가 손문상은 자신에 대한 고발 뿐 아니라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제3자가 대신 고발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사법처리하는 게 패턴화 돼 있다”며 우려했다.

8) 참여연대,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2015. 9. 7. 박근혜 정부 전반기(2013. 2.~2015. 8.)에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를 피해자로 간주하는 명예훼손, 모욕죄 수사 및 재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 22건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박성수의 전단지 배포도 포함되어 있다.

9) 유엔 인권위원회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 대한민국의 네번째 정기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 유엔인권위원회의 115차 회기에서 채택됨(2015년 10월 19일 - 11월 6일).

2. 조사 결과

가. 사건 경과

이 사건의 경과는 다음 [표-6]과 같다.

[표-6] 사건 경과

시기	내용	비고
2014. 12.경	신청인 박성수, 전단지 제작·배포	박성수는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단지를 우송하였는데 박성수의 1심 판결문에는 전국 29곳에 우송했다고 적시되어 있음.
2015. 1. 2. ~ 1. 14.	박성수, 전북 군산에 전단지 배포	전단지를 배포한 후 군산경찰서 정보 계장이 박성수에게 찾아와서 '별 문제 없는 전단지'라고 얘기했음
2015. 2. 16.	000·000, 새누리당 대구시당 건물 앞에서 전단지 배포	이후 박성수에게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출석명령 하였으나 거부했음
2015. 3. 12.	박성수 집에 경찰 압수수색	
2015. 4.경	박성수, 대구수성경찰서 출두	경찰 조사 중 담당 경찰이 조사 내용을 이상하게 물고 가서 소환장을 요구하고 조사 도중 경찰서에서 나옴
2015. 4. 28.	박성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제창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대검에 체포. 당일 저녁 대구 수성경찰서로 이송
2015. 5.초	박성수 구속	명예훼손죄로 구속되고, 6개월이 경과될 즈음, 집시법 위반으로 추가 2개월간 구속되어 8개월간 구속 수감
2015. 12. 22	박성수·000·000 1심 재판	박성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000 명예훼손 벌금 5백만원, 000 명예훼손 벌금 1백만원 선고
2015. 12. 22.	박성수 석방	
2018. 1. 25.	박성수·000·000 2심 재판	박성수·000·000 명예훼손 무죄. 박성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 선고

나. 전단지 배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

1) 청와대의 대응

2015. 3.경 전단지 배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에게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에서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실수비 자료에 기재된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7]와 같다.

[표-7] 실수비 자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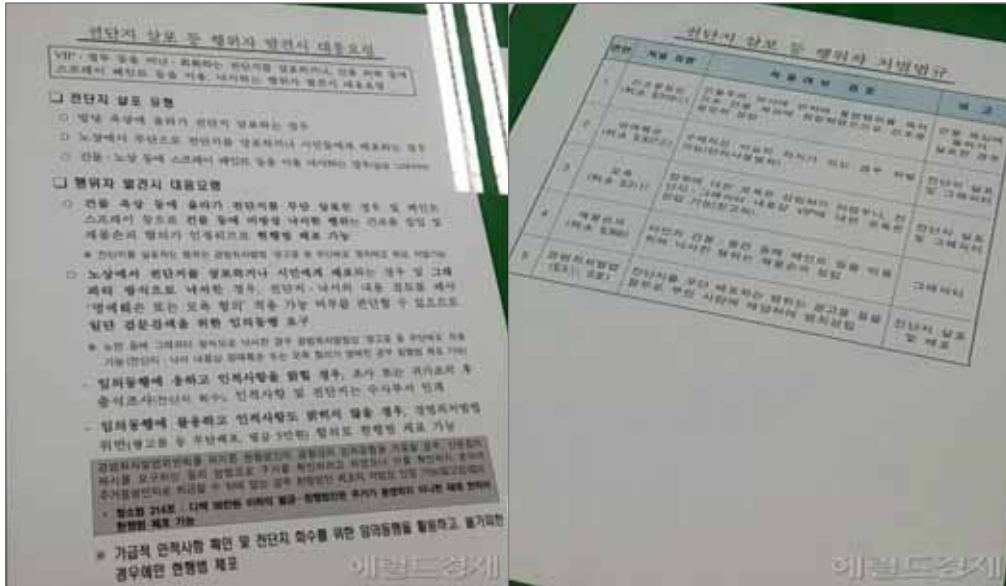
날짜	내용
2015. 3. 04.	VIP 비방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경각심 주는 차원에서 범인을 색출, 강력 처벌할 것(정무수석, 민정수석)
2015. 3. 16.	3. 14일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대통령 비방 전단(약 200여장)이 배포되었다고 하는데(현재 모든 전단 수거 상태) 조속히 범인을 색출하여 의법조치할 것(민정수석).
2015. 5. 18.	최근 VIP를 비난하거나 풍자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님. 민정수석은 관련자를 색출하고 수사해서 반드시 엄단토록 할 것(민정수석).

2)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경찰의 행동

위 2015. 3. 4. 실수비 자료에서 보이듯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은 경찰에게 전단지 배포자를 색출하여 강력 처벌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경찰은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 요령’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경찰서에 전단지 배포자를 발견했을 때의 행동 요령을 지시하였다.¹⁰⁾ 이 문서는 2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015. 3. 13. 헤럴드경제에서 보도한 문건의 내용은 다음 [그림-2]와 같다.

10) [단독]경찰의 ‘전단지 살포 대응요령’ 문건 보니, 헤럴드경제, 2015. 3. 13. 우리 위원회는 경찰청에 이 문건의 생산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요청한 문건은 경찰청에서 생산·배포한 바 없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 하였다(경찰청 형사과-444(2018. 2. 22.). 군산경찰서·대구수성경찰서에 박근혜 대통령 비방 전단 살포 관련 문서 및 지침 여부를 질의 하였으나 하달한 문서나 지침은 없다고 회신 하였다.(군산경찰서 경무과-1382(2018. 2. 21.), 대구수성경찰서 경무과-1370(2018. 2. 20.)) 그러나 이 문건에 대해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 하였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의견서]경찰청의 대통령풍자전단살포대응매뉴얼은 위법입니다’(2015. 3. 30.)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관이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검문검색 및 임의동행·현행법 체포의 한계 등을 검토한 자료’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이 문건은 실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2]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정리)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VIP·정부 등을 비단·회화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건물 외벽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 낙서하는 행위자 발견시 대응 요령

□ 전단지 살포 유형

- 빌딩 옥상에 올라가 전단지 살포하는 경우
- 노상에서 무단으로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 건물·노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 낙서하는 경우(일명 그래피티)

□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 건물 옥상 등에 올라가 전단지를 무단 살포한 경우 및 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 건물 등에 비방성 낙서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므로 현행법 체포 가능
 - ※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광고물 등 무단배포' 행위에도 해당, 처벌가능
- 노상에서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시민에게 배포하는 경우 및 그래피티 방식으로 낙서한 경우, 전단지·낙서의 내용 검토를 해야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단 검토

검색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

- ※ 노면 등에 그래피티 방식으로 낙서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등 무단배포' 적용 가능(전단지·낙서 내용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현행법 체포 가능)
- 임의동행에 응하고 인적사항을 밝힐 경우, 조사 또는 귀가조치 후 출석조사(전단지 회수), 인적사항 및 전단지는 수사부서 인계
 - 임의동행에 불응하고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광고물 등 무단배포, 벌금 5만원) 혐의로 현행법 체포 가능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저지른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거절할 경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주거불명인자로 취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인정 가능(92고합1824)

- 형소법 제214조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 체포 가능

※ 가급적 인적사항 확인 및 전단지 회수를 위한 임의동행을 활용하고, 불가한 경우에만 현행법 체포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처벌법규

연번	처벌 죄명	적용여부 검토	비고
1	건조물 침입 (刑法 §319①)	건물주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건물 옥상에서 침입하였으므로 건조물 침입죄 성립	건물 옥상에 올라가 살포한 경우
2	명예훼손 (刑法 §307②)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는 경우 처벌 가능(반의사불벌죄)	전단지 살포 및 그래피티
3	모욕 (刑法 §311)	정부에 대한 모욕은 성립하기 어려우나, 전단지·그래피티 내용상 VIP에 대한 모욕은 성립 가능(친고죄)	전단지 살포 및 그래피티
4	재물손괴 (刑法 §366)	타인의 건물·물건 등에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낙서한 행위는 재물손괴 성립	그래피티
5	경범죄처벌법 (§3①, 9호)	전단지를 무단 배포하는 행위는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에게 해당하여 범죄 성립	전단지 살포 및 그래피티

위 문건은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대응 요령과 처벌 죄명 적용여부를 설명하고, 전단지 내용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현행법 체포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위 문건에 대해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하였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8]과 같다.

[표-8]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 요령' 관련 언론 보도

날짜	언론사	기사 제목
2015. 3. 13.	헤럴드경제	[단독]경찰의 '전단지 살포 대응요령' 문건 보니
2015. 3. 13.	국민일보	"대통령 비난 전단 처벌 이렇게..." 경찰 내부 문건 논란
2015. 3. 14.	노컷뉴스	경찰, '정부 비판' 전단 살포에 '대응요령' 지침 세워
2015. 3. 14.	경향신문	경찰 "대통령 비방 전단지 살포 땀 현행법 체포"
2015. 3. 14.	한국일보	홍대입구역 인근서 대통령 비방 전단 수백장 또 살포
2015. 3. 15.	TV조선	홍대에서도 대통령 비방 전단지 살포돼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 간담회(2015. 3. 16.)에서 "(해당 문건에) 불법적이거나 무리한 부분은 없는 것 같다"며 "(박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자에 대한) 현행법 체포가 가능하며 현장 단속 조치 통고 처분을 거부할 경우 당연히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¹¹⁾, 이는 위 문건이 실재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수사 과정

1)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검찰의 경찰 수사 지시

박성수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전북 군산에서 2015. 1. 4. 전단지를 배포한 후 2015. 1. 16. 군산경찰서 정보 계장이 찾아와서 '별 문제 없는 전단지'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5. 2. 16. 000, 000가 대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후인 동년 3. 12. 박성수의 집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되는데 이에 항의하자 당시 군산경찰서 경찰이 대검찰청에서 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얘기했다고 한다.¹²⁾

2)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2015. 3. 12. 신청인 박성수의 집에 군산경찰서의 압수수색이 집행되는데 전단지, 박성수의 휴대폰, 전단지 관련한 박성수의 노트북 폴더 4개, 전단지 주문 인쇄 내역, 전단지 주문 내역 등을 압수수색 하였다. 박성수의 이메일·통장, 전단지를 우송한 군산우체국은

11) 강신명 경찰청장 "박 대통령 비판 전단' 현행법 체포 당연", 민중의소리, 2015. 3. 16.

12) 신청인 박성수 진술조서(2017. 11. 27.), '박근혜 국정농단 4년전부터 전단지 뿌리며 비판한 시민들 있었다', 경향신문, 2018. 2. 6. 당시 군산경찰서 정보과 정보계 오OO 경위와 통화 하였으나 이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대구 수성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다.

박성수의 2심 판결문에는 ‘박성수에 대한 이메일 목록 및 이메일에 게재된 수취인 명단, 계좌거래내역, 우편물 발송내역 등은 경찰이 팩스로 영장을 집행하는 등 위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에 의하여 획득한 증거 및 이를 분석한 자료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¹³⁾고 판단하였다.

또 박성수의 전단지를 우송받아 대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000의 주장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 경찰들이 000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3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언론사와 인권단체에 연락을 했고, 이후 기자와 인권단체 사람이 온 후 영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¹⁴⁾ 박성수를 비롯해 박성수가 제작한 전단지를 우송 받아 전단지를 배포한 000(대구), 000(부산), 000(일산)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기소되었다.

3) 신청인 박성수의 8개월 구속 수감

신청인 박성수는 2015. 5.초 구속되어 명예훼손으로 6개월 수감되고 집시법 위반으로 추가 2개월간 수감되었다. 박성수의 8개월간의 구속수감과 관련하여 2017년 대구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당시 김찬돈 대구지법원장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지 돌렸다고 8개월 구속시켰는데 6개월 채우니 무리하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하는게 대구지법에서는 흔한 일이나”며 김찬돈 대구지법원장에게 질의했고 이에 김찬돈 대구지법원장은 “1심 중 구속기간이 다 돼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가 구속하게 된 것은 우리 법원에서도 흔하지 않은 케이스가 맞긴 하다”고 해명했다.¹⁵⁾

13) 대구지방법원 2016노159

14) 참고인 000 진술조서(2018. 2. 6.)

15) 대구법원 국정감, ‘박근혜 전단지 배포’ 구속에 “원님 재판이나”, 평화뉴스, 2017. 10. 24.

라. 전단지 내용의 명예훼손 적용 및 배포의 위법성 여부

1) 전단지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

신청인 박성수가 제작·배포한 전단지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관권선거 의혹, 언론에 보도된 정윤희와 관련된 비선실세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다([그림-1] 참조). 박성수는 전단지 배포에 대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박성수에 대하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명예훼손은 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 하였다. 박성수, 000, 000에 대해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문에는 ‘전단지가 표현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은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관권선거, 언론에 보도된 정윤희와 관련된 비선실세,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거나 「이러한 의혹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들로서도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의혹이 존재하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그 내용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여 적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고 하였다.

한편 박성수의 1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선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은 박성수가 SNS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업로드한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단지 배포와는 상관이 없다. 또 집시법 위반은 박성수가 2015. 4. 28. 대검찰청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는데 이를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로 보고 옥외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단지 배포와는 상관이 없다.

2) 전단지 배포의 위법성 여부

신청인 박성수, 참고인 000, 참고인 000, 참고인 000은 전단지 배포를 퍼포먼스로 인식했는데 참고인 000, 000는 2015. 2. 16.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전단지

20~30매를 배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전단지 배포 장면을 사진 촬영해서 000의 SNS에 업로드 했다고 주장했으며¹⁶⁾ 참고인 000도 전단지를 퍼포먼스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¹⁷⁾ 참고인 000는 전단지 배포 사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각 지역에서 배포한다는 사실을 서로 알게 되면 힘도 받고 격려의 의미도 있어서 신상을 공개했으며, 단체나 조직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 개인이 자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동료 시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⁸⁾

제4절 | 결론

1. 주요 쟁점에 대한 진상규명 사실

가.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무리한 수사

신청인 박성수를 비롯해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무리한 수사는 신청인·참고인 주장과 실수비 자료, 경찰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이 전단지를 배포한 후 박성수의 집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되는데 이에 항의하자 압수수색을 한 군산경찰서 경찰이 대검찰청에서 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얘기했다고 한다.¹⁹⁾ 또 박성수가 제작한 전단지를 대구에서 배포한 참고인 000의 주장에 따르면 참고인의 집을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가 기자와 인권단체 사람이 온 후 영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²⁰⁾ 박성수를 비롯해 전단지를 배포한 000(대구), 000(부산), 000(일산)은 경찰의 압수수색 집행 후 기소되었다.

16) 참고인 000, 000 진술조서(2018. 2. 6)

17) 참고인 000 진술조서(2018. 2. 5)

18) 참고인 000, 000 진술조서(2018. 2. 6)

19) 신청인 박성수 진술조서(2017. 11. 27.), ‘박근혜 국정농단 4년전부터 전단지 뿌리며 비판한 시민들 있었다’, 경향신문, 2018. 2. 6. 당시 군산경찰서 정보과 정보계 000 경위와 통화 하였으나 이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20) 참고인 000 진술조서(2018. 2. 6.)

실수비 자료를 살펴보면 청와대에서는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강력 처벌·의법초치·반드시 엄단토록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경찰은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 요령’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현행법 체포가 가능하다고 전국 경찰에 전달하였고, 강신명 경찰청장도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현행법 체포가 가능하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신청인 박성수의 2심 재판부는 박성수에 대한 이메일 목록, 이메일에 게재된 수취인 명단, 계좌거래내역, 우편물 발송내역 등은 경찰이 팩스로 영장을 집행하는 등 위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라고 판단하였다.²¹⁾ 박성수의 2심 판결문을 통해 팩스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경찰의 위법하고 무리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가 확인된 것이다.

신청인 박성수는 2015. 5.초 구속되어 명예훼손으로 6개월, 집시법 위반으로 추가 2개월간 수감되었다. 박성수의 8개월간의 구속수감과 관련하여 2017년 대구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당시 김찬돈 대구지법원장에게 신청인의 8개월 구속에 대해 질의하자 김찬돈 대구지법원장은 추가 구속은 우리 법원에서도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고 해명했다.²²⁾

명예훼손 당사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시적인 고소가 없었던 점,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8개월간의 구속, 그리고 청와대와 경찰의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비판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국가기관의 무리한 대응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정부의 실정에 대한 개인의 의견 표명에 대해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문에서 확인되었듯이 전단지 배포자를 색출하여 강력 처벌하고 반드시 엄단토록 할 것 등의 청와대 지시에 경찰은 위법한 압수수색 집행을 하는 등 신청인을 비롯한 전단지 배포자들에게 공권력을 무리하게 적용한 점이 확인되었다.

나. 전단지 내용의 명예훼손 적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신청인 박성수가 제작한 전단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원의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의 2심 판결문에서는 전단지의 주요 내용이 박근혜 정부를 평가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여 적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박성수, 000, 000에게 명예훼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²³⁾

21) 대구지방법원 2016노159

22) 대구법원 국정감, ‘박근혜 전단지 배포’ 구속에 “원님 재판이나”, 평화뉴스, 2017. 10. 24.

위의 판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청인이 제작한 전단지에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을 비판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²⁴⁾

대통령의 풍자·비판을 표현의 자유로 보지 않고 대통령 모독으로 접근한 사실은 실수비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실수비 자료에는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강력 처벌·의법초치·반드시 엄단토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차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이를 풍자하는 전단지 배포 퍼포먼스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전단지 배포를 명예훼손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²⁵⁾,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²⁶⁾고 한 헌법과 문화기본법에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정부나 공직자들이 고소나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당사자들을 위축시켜 국민들의 공적 발언을 자제시키거나 비판적 여론 형성 자체를 차단·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또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 또는 손해배상 책임 판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국가기관 또는 공직자가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어

23) 대구지방법원 2016노159

24)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체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25) 헌법 제21조1항 언론출판의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유의 보장은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여러 견해의 자유로운 개진과 공개된 토론을 허용하고 이로써 보다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에 따른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다(대법원 2000다37524).

26) 문화기본법 제4조 국민의 권리.

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공직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이다.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방식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단지를 배포한 신청인과 전단지 배포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이상의 사실에서 신청인이 제작 배포한 전단지의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단지 배포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²⁷⁾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청와대의 검찰·경찰 외압 작동 여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청와대가 검찰·경찰에게 외압을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군산경찰서와 대구수성경찰서의 경찰들을 유선으로 조사하였으나 경찰청, 지방경찰청에서의 지침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²⁸⁾

하지만 실수비 자료에서 보이듯이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²⁹⁾에게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검찰과 경찰에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 문제 없는 전단지라고 얘기했던 경찰이 대검의 수사 지휘에 의해 신청인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보면 검찰의 지시가 있

27) 대법원 2000다37524.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28) 참고인 000 조사보고(2018. 2. 21), 참고인 000 조사보고(2018. 2. 22.)

29)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재임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병기 비서실장 2015. 3. ~ 2016. 5, 우병우 민정수석 2015. 1. ~ 2016. 10, 조윤선 정무수석 2014. 6. ~ 2015. 5.

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청와대가 검찰·경찰에게 외압을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기와 우병우 민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을 조사해야 하지만 현재 위 3명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우리 위원회 조사 권한의 한계로 청와대와 검찰, 경찰로 이어지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외압 작동 여부는 밝힐 수 없었지만,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므로 추후에라도 밝혀야 한다.

나. 경찰청 문건 작성 경위 및 신청인에 대한 적용 여부

경찰청 문건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 시 대응요령” 작성 경위 및 신청인에 대한 적용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청, 군산경찰서, 대구수성경찰서로 공문을 통해 위 문건의 존재 유무를 질의하였으나 찾을 수 없다는 회신이 왔고,³⁰⁾ 군산경찰서, 대구수성경찰서 경찰에게 질의하였으나 위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³¹⁾

하지만 다수의 언론에서 이 문건에 대해 보도하였고([표-8] 참고), 참여연대가 이 문건에 대한 의견서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관이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검문검색 및 임의동행·현행범 체포의 한계 등을 검토한 자료’라고 답변하였고, 당시 경찰청장인 강신명이 기자회견에서 “(해당 문건에) 불법적이거나 무리한 부분은 없는 것 같다”며 “(박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며 현장 단속 조치 통고 처분을 거부할 경우 당연히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듯이 이 문건은 실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건의 존재가 이 사건의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여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문건의 존재 여부에 대해 공문을 통해 확인하려 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문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자료이며,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후에라도 이 문건의 존재 여부를 밝혀야 한다.

30) 경찰청 형사과-444(2018. 2. 22.), 군산경찰서 경무과-1382(2018. 2. 21.), 대구수성경찰서 경무과-1370(2018. 2. 20.)

31) 참고인 000 조사보고(2018. 2. 21), 참고인 000 조사보고(2018. 2. 2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99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을 통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99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을 통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 관련 회사 및 진술자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나 개인의 이름, 영화·드라마 제목 등을 비실명화 처리하거나 진술내용 일부를 비공개 처리하여 편집함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특1[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을 통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사건번호 2017영6, 2017영8 병합)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의 취지

- (1) 위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대부분의 영화 투자자들은 우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좌파제작사에 자금 지원'이 문제점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자금을 '의도적으로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는 전략을 입안한 이래,
- (2)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영화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모태펀드의 운용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반하는 정서를 표출한 영화제작 종사자들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 지원에서 배제하는 한편 소위 '우파'라 칭하는 정부 친화적 영화에 대해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부당하게 정부기관에서 개입한 의혹이 상당한 사건이다.
- (3)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한 모태펀드의 운용과

정에서 심의와 인사, 제작비 지원 등을 위한 심의에서 영화의 내용 등에 개입하였던 정황이 확인되었고, 영화산업 등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의 기획의도에 맞는 작품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즉 자본을 통한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본 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해당 사업의 부당한 과정을 직권 조사하였다.

나. 신청 취지

손아람(2017영6), 한국영화제작가협회(대표 이은)(2017영8)는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과정에서 한국벤처투자(주)의 개입과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실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신청하였다.

다. 진상규명한 내용의 요지

- (1) 이 사건 조사결과, 청와대는 정부 성향에 맞은 영화제작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직접지원방식으로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좌파 모태펀드 운용사를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운용하였으며, 한국벤처투자(주)의 임원진을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개편하는 등 운용사 선정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 (2)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는 청와대가 한벤투를 통해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 운용사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창투사를 배제하는데 활용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체부는 청와대 지시를 통해 영진위에 모태펀드 선정 배제 창투사를 하달하고, 영진위는 모태펀드 출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를 실행했다. 다만, 최초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경제수석실이라는 것 외에는 실제 작성자 및 배제 사유와 구체적인 배제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 (3) 이와 같이 제도화된 구조는 합법적으로 영화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다. 결국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실행 방법이 비제도적 방법에서 제도적 방법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그 틈에서 특정인이 사익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모태펀드 출자심의과정에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여 특정 운용사를 배제하고, 한벤투 전문위원 제도를 통해 특정 영화 및 영화인에 대한 지원 및 배제를 실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인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였다.

(4) 그 결과 영화 ‘0000’, ‘000000’, ‘0000’, ‘000’과 드라마 ‘00 0000’ 등이 정부 지원을 통해 특혜를 받았고, 반면에 영화 ‘아가씨’, ‘덕혜옹주’, ‘밀정’, ‘판도라’ 등은 배제 조치를 당했다. 또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주)AB사는 2014~2016. 까지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배제를 당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영화 및 영화인의 정치적 성향을 구분하여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관리 대상으로 두고,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의도적인 지원 및 배제를 실행했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배제”, “특혜” 등은 청와대·국가정보원·문체부 등의 총체적 관여 아래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과 해당 창투사를 통한 직접 지시 및 한벤투출자심의위원회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붙임 :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을 통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특1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을 통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2017영6 영화계정 모태펀드 운용을 통한 영화인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병합)
 2017영8 영화계정 모태펀드 운영에 대한 한국벤처투자(주) 개입 사건(병합)
 [신청인] 손아람, 한국영화제작가협회(대표 이은)

제1절 | 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및 신청 취지

가. 직권조사 취지

(1) 위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대부분의 영화 투자자들은 우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좌파제작사에 자금 지원’이 문제점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자금을 ‘의도적으로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는 전략을 입안한 이래,

- (2)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영화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모태펀드의 운용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반하는 정서를 표출한 영화제작 종사자들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 지원에서 배제하는 한편 소위 '우파'라 칭하는 정부 친화적 영화에 대해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부당하게 정부기관에서 개입한 의혹이 상당한 사건이다.
- (3)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한 모태펀드의 운용과정에서 심의와 인사, 제작비 지원 등을 위한 심의에서 영화의 내용 등에 개입하였던 정황이 확인되었고, 영화산업 등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의 기획의도에 맞는 작품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즉 자본을 통한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본 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해당 사업의 부당한 과정을 직권 조사하였다.

나. 신청 취지

손아람(2017영6), 한국영화제작가협회(대표 이은)(2017영8)는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과정에서 한국벤처투자(주)(이하 한벤투)의 개입과 모태펀드블랙리스트 실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신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1) 2017직특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에 따라 2017. 9. 15.자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였다.

(2) 신청인 손아람, 한국영화제작가협회(대표 이은)의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및 병합 의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에 따라 조사 개시하고, 아래 사건들이 2017직특1(‘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을 통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병합을 의결하였다.

신청인 손아람의 신청 사건(2017영6)은 2017. 11. 10.자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및 2017직특1에 병합을 의결하였다.

신청인 한국영화제작자협회(대표 이은)의 신청 사건(2017영8)은 2017. 11. 27.자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및 2017직특1에 병합을 의결하였다.

나. 조사 목적

위 사건은 모태펀드 영화계정 투자 과정 중 ① 청와대 및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여부 ② 정부기관에서 모태펀드 영화계정 개입의 실행 및 특정 영화 및 영화인에 대한 투자 배제(특혜)여부 확인이 조사의 목적이다. 이 사건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출자한 모태펀드 영화계정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던 중 문체부에서 출자한 문화계정 투자내역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된 바,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문체부 등 기관 제출 및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모두 23건의 문건 및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입수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모태펀드 사업소개	한벤투 홈페이지	2017.09.20.	
2	콘텐츠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김OO(문체부 한국종합예술학교 사무국장)	2017.09.21.	
3	2010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	영진위	2017.11.07	
4	2017년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계획	영진위	2017.11.07	
5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청와대	2017.09.21.	
6	2009년 영진위 감사원 보고서	감사원	2017.09.21.	
7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 규약	중소기업청	2017.09.21.	
8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선정 관련	법원	2017.09.21.	
9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체부	2017.09.21.	
10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청와대	2017.09.21.	
11	피고인 김기춘 등 7명에 대한 의견서	특검	2017.09.21.	
12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업무 인수인계서	문체부	2017.09.21.	
13	한국모태펀드 2014년 1월 정시 및 9월 수시출자사업 계획 공고, 접수 결과, 선정 결과	한벤투 홈페이지	2017.11.08.	
14	한국모태펀드 2015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접수 결과, 선정 결과	상동	2017.11.08.	
15	한국모태펀드 2016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접수 결과, 선정 결과	상동	2018.11.08.	
16	모태펀드 영화계정 자펀드 현황	상동	2018.11.08.	
17	2009년 영화진흥위원회 공고 사업 안내	영진위	2017.11.07.	
18	영화 <사선에서> 제작 관련 문서 일체	영진위	2017.11.07.	
19	극영화 투자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영진위	2017.11.07.	
20	KT 1천억 펀드 조성으로 콘텐츠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2013.01.31.자 기사)	K-BENCH	2018.01.09.	
21	'13~'17.3. 문체부 출자 모태 자펀드 프로젝트 투자 현황 등	노웅래 의원실 등	2017.12.18.	
22	모태펀드 영화계정 투자 현황('15~'17)	영진위	2017.11.07.	
23	영진위,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가족영화의 설자리를 고민하다(보도자료, 2014.03.14.)	영진위 홈페이지	2018.05.23.	

나. 참고인 등 임의 제출 자료

아래와 같이 모두 2건의 신청인 및 참고인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2] 참고인 제출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입수일	비고
1	한국벤처투자(주)의 모태펀드 운용 창투사들에 대한 투자심의 지침에 관한 건	한국영화제작가 협회	2017.12.08.	
2	모태펀드 공문 관련 한국벤처투자 담당자 통화 녹취록	상동	2017.12.08.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참고인들에 대한 대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대인 조사자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OO	당시 영진위 사무국장	진술조서(2017.09.26.)
2	김OO	상동	전화면담보고서(2018.05.17.)
3	OOO	당시 AT사 대표	면담보고서(2017.09.27.)
4	OOO	당시 BB사 제작이사	진술조서(2017.11.10.)
5	OOO	상동	전화면담보고서(2018.04.10.)
6	손아람	직영6 사건 신청인(영화 시나리오 작가)	진술조서(2017.11.17.)
7	OOO	당시 BB사 프로듀서	면담보고서(2017.11.14.)
8	OOO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국장	녹취록(2017.12.08.)
9	OOO	당시 AH사 심사역	1회 진술조서(2017.10.17.)
10	OOO	상동	2회 진술조서(2018.02.05.)
11	OOO	상동	전화면담보고서(2018.04.26.)
12	문OO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장	1회 진술조서(2018.01.29.)
13	문OO	상동	2회 진술조서(2018.02.02.)
14	문OO	상동	전화면담보고서(2018.04.27.)
15	OOO	당시 한벤투 투자관리본부장	녹취록(2018.02.12.)
16	박OO	문체부 사무관	녹취록(2018.04.12.)
17	신OO	당시 청와대 행정관	진술조서(2018.05.04.)
18	이OO	당시 문체부 사무관	진술조서(2018.04.04.)
19	이OO	상동	면담보고서(2018.05.24.)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20	박OO	상동	진술조서(2018.05.02.)
21	OOO	당시 SH 필름 소속 프로듀서	전화면담보고서(2018.02.28.)
22	김OO	당시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2회 진술조서(2018.02.27.)
23	OOO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 주임	2회 진술조서(2017.12.08.)
24	OOO	상동	3회 진술조서(2018.01.22.)
25	윤OO	당시 문체부 콘텐츠산업실장	진술조서(2018.04.18.)
26	OOO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 팀장	2회 진술조서(2018.01.26.)
27	OOO	AL사 이사	전화면담보고서(2018.05.16.)
28	박OO	당시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진술조서(2018.04.19.)
29	박OO	상동	진술조서(2018.05.25.)
30	OOO	당시 국내진흥부 주임	2회 진술조서(2018.02.02.))
31	OOO	상동	3회 진술조서(2018.02.13.)
32	OOO	영진위 홍보팀장	3회 진술조서(2017.11.03.)
33	OOO	비공개	녹취록(2017.11.03.)
34	OOO	상동	2회 녹취록(2018.02.05.)
35	OOO	OOOOO협회 전무	녹취록(2018.02.14.)
36	OOO	한벤투 투자운용본부장	진술조서(2018.02.28.)
37	OOO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 팀장	1회 진술조서(2017.11.08.)
38	OOO	상동	전화면담보고서(2018.05.03.)
39	OOO	당시 CJ E&M(엔터테인먼트) 영화제작팀	진술조서(2018.04.09.)
40	OOO	상동	전화면담보고서(2018.04.10.)
41	OOO	AQ사 대표	전화면담보고서(2018.03.14.)
42	OOO	당시 AV사 상무	면담보고서(2018.02.02.)
43	OOO	BA사 대표	면담보고서(2018.05.25.)
44	OOO	당시 영진위 정책연구팀 주임	전화면담보고서(2018.05.28.)
45	OOO	당시 영진위 정책연구팀 팀장	전화면담보고서(2018.05.28.)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모태펀드

모태펀드란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개별펀드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로서, 전체 출자금을 하나의 모(母)펀드로 결성하고, 모(母)펀드를 통해 펀드운용사가 결성하는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한벤처 홈페이지/www.k - vic.co.kr).

정부는 2005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제4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 6천억 원, 정부재정 4천억 원 등 총 1조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어 2035년까지 30년간 운용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6월 모태펀드 투자관리 전문기관으로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주)(이하 한벤처)’가 설립되었고,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출심위)가 만들어졌다(김OO, 2014년 12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다(한벤처 홈페이지/www.k - vic.co.kr).

나. 모태펀드 운영체계

영화진흥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측은 모태펀드에 출자를 하고 수익을 분배받는다. 분배된 수익은 일반적으로 모태펀드를 통해 다시 투자된다.

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¹⁾으로 한벤처가 관리하며 출자대상 투자조합을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이에 따라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조합 해산 시 수익을 분배받는데 손실

1)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은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과 조합재산의 관리, 운용, 분배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조합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을 말한다(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규약).

이 나는 경우 손실도 함께 감수한다.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투자조합은 민간투자자의 출자를 받고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 투자 수익을 회수하게 된다(김OO, 2014년 12월).

한편 한벤투는 매년 모태펀드의 출자자들과 협의하여 ‘모태펀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모태펀드 출자금 운영 계획 공고」를 한 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조합 운용사를 선정하는 출자사업을 진행한다. 모태펀드 출자사업에는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등이 신청하게 되며 한벤투는 창투사가 제출한 투자조합 운영 제안서 등을 심사하는 1차 정량평가를 진행하고, 출자심의위원회 POOL 중 출자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심사보고서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설명에 질의·응답을 통해 2차 정성평가를 진행한다. 이러한 1차 및 2차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출자심의위원회에서 모태펀드 출자조합 운영사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운영사는 민간자금을 유치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조합 운영기간 동안 투자와 회수업무를 수행하며 조합의 존속기간이 도래하면 그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고 해산하게 된다.

위 운용체계 속에서 모태펀드는 문화계정, 증진계정, 영화계정, 특허계정, 보건계정, 엔젤계정, 지방계정, 관광계정, 스포츠계정, 과기계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한벤투 홈페이지/www.k-vic.co.kr).

다. 모태펀드 영화계정

영화계정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2항,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에 의해 한국영화에 결성액 10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2010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

해당 사업은 매년 100억 원을 출자해 상반기 내 모태펀드 영화계정을 통해 공고하여 신규투자조합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결성해서 운용을 시작한다. 투자조합 운용기간은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로 출자 한도는 결성 총액의 최대 60% 이내로 출자하고, 결성 총액의 100% 이상 한국영화에 의무 투자해야 한다. 2017년 영진위는 2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17년도 출자예산 180억 원과 영화계정 회수금 재투자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80억 원을 출자했다(2017년 영진위 사업계획).

한편, 문화계정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자하고 있다. 영화계정이 한국영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반면 문화계정은 일부 영화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김OO, 2014년 12월).

라. 영화 투자 절차

모태펀드를 통한 한국영화 투자는 운용사가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제작사와 투자조건 등을 협의한 후 투자심의위원회(이하 투심위)를 통해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투자대상 프로젝트 발굴은 수시로 이루어지며 제작사측에서 콘텐츠 제작보고서 혹은 사업계획서(영화 시나리오)를 운용사에 제안하면 담당 심사역²⁾이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운용사 내부 회의를 통해 투자 검토 여부를 판단한다. 제작사의 제작설명회, 기업실사, 투자조건 협상 등을 진행한 후 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용사 내부인력이 참석하여 1차 심사회의를 통해 투심위 상정 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투심위 개최 일주일 전에 한벤투가 자체 구축한 ERP(전사적통합시스템)³⁾에 투심위 심사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한벤투는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여 법령 또는 규정위반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이른바 ‘준법사항 체크리스트’로서 이 과정에 한벤투의 지적을 받게 되면 계획한 투심위는 철회해야 하고, 수정 보완해서 다시 ERP에 등록한다. 최종적으로 ERP를 활용한 한벤투의 승인이 나면 운용사는 일주일 후 투심위를 개최하고 최종 투자의사를 결정한다.

투심위는 창투사 임원 1인, 프로젝트 담당 심사역, 창투사가 운영하는 외부전문심사역, 준법 감사자, 한벤투 직원 1인이 참가하여 진행한다. 다만, 규정⁴⁾상 한벤투 직원 1인이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의결권 없이 참관 자격일 뿐이고, 사전에 한벤투 ERP를 통한 사전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다(OOO 진술조서 2017.10.17./전화면담 보고서 2018.04.26.).

이러한 투심위 구성원은 2015년에 변경되고, 2017년에 재차 변경이 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뒤의 ‘외부전문가 풀 제도’에서 후술하겠다.

2) ‘담당 심사역’은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재무상태, 완성도 심사할만한 내용을 투자심의위원회에 제안하고, 가결되면, 투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일괄적인 업무자를 통칭

대리급을 선임심사역, 과장 부장급을 책임심사역, 이사급을 수석심사역으로 지칭

3)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등 경영 활동 프로세서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는 시스템

4)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 관리 가이드 라인

2. 국가기관 모태펀드 개입 및 실행

가. 이명박 정부

1)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 2008. 08. 27.경 이명박 정부 시기 당시 대통령비서실 기획관리실에서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따르면 ‘대중이 쉽게 접하고 무의식중에 좌파 메시지에 동조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인 영화를 중심으로 국민의식 좌경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영화 투자 자본들은 우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좌파 제작사에 자금 지원’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건전 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기관의 내부에 좌파 실무자들의 인적 청산을 위해 위원장을 교체하고, 위원장이 이를 실행하도록 BH에서 지속적으로 감시 및 독려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균형화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한다는 전략 내용을 보고하였다.

한편, ‘우파 영화가 영화시장을 주도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고, 기존 영진위 기금을 활용하여 약 300억 원의 영화 펀드투자를 조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

- 당초 영진위는 2000.경 직접 출자해서 ‘중형 투자조합 출자사업’과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등 두 개의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즉, 영진위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출자사업을 관리하며 출자대상 투자조합을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등의 역할을 직접 수행했다.

해당 사업은 2008년 감사원⁵⁾으로부터 ‘유사목적의 출자사업을 기관별로 각각 운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중복지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영진위의 출자사업 재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하여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2009년 국정 감사 중 진성호 의원실에서 영진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문제제기하며 모태펀

5) 2009년 영진위 감사원 보고서 일부

드로 병합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 결과 2010. 1. 영진위 전체회의에서 모태펀드에 출자토록 하되 영화계정 별도 신설 등을 의결하고, 같은 해 2월경에 영진위는 모태펀드의 조합원⁶⁾이 되었다.

영진위 출자사업이 모태펀드로 이관된 과정 중 정부기관의 의도적 개입을 통해서 실행됐는지 여부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 다만, 당시 국내진흥부 문OO 부장은 2009년 국정 감사 중 진성호 의원실에서 영진위에 요청한 자료와 질의 사안에 대해 “당시 문화부와 영진위 집행부인 위원장과 사무국장, 새누리당의 의원 두 세명은 서로 간에 영진위 사업 관련해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진위 출자사업 관련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기하며 모태펀드로 병합할 것을 주문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김OO 국장(당시 영진위 사무국장)이 제안해서 영진위에서 처음 다양성 영화 제작 관련해서 KTB 다양성 펀드를 조성한 적이 있는데 당시 OOO 대표가 9인 위원회 위원이고 남편 분이 명필름 이은 대표인데 예비 심사위원 심사로 들어가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두 달 동안 출자자를 모집했는데 이때 명필름이 20억을 출자 했어요. 당시는 OOO와 같이 MK필름이라는 명의로 출자를 했는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다양성 영화 출자 경우 출자를 쉽게 하지 않았던 분야인데도 당시 국정감사에서 아내는 결정 심사하고 남편은 심사를 했다며, 국회에서 부도덕하다면서 질책을 했었습니다. 또한 최초의 투자조합인 드림벤처캐피탈이 이창동 감독의 초창기 감독 작품과 이스트필름, 유니 코리아 창투사와 연결이 되었는데 운영기간이 끝난 후 결과를 보니 약 50억의 손실이 났고 이를 유니 코리아 대표인 OOO개인 자본으로 손실액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영진위에서는 출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고 손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보면서 커넥션이 작동한 것으로 보고 국회 질의가 있었습니다. 향간에는 문화부 전 장관이었던 이창동 감독, 영진위 부위원장이었던 OOO, 이스트 필름 대표였던 OOO, 유니 코리아 대표 OOO이 관계를 맺어 펀드를 쥐락펴락 했다는 식으로 잡으려고 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모두 노무현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지지자 모임 성원이었던 이유가 컸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후로 영진위 출자사업은 결국 모태로 병합이 됐고 (...생략...)”라고 했다.
- 이어 위 문OO은 “당시에는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니 알 수가 없었으나 현재 상황을

6) ‘조합’이라함은 법과 본 규약에 따라서 설립된 조합인 ‘한국모태펀드(KFOF Korea Fund of Funds)’를 의미한다(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규약).

종합해 보면 ‘문화권력균형화전략’이 작동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진위 펀드의 모태에 병합이 목적이 아니라 무언지는 알 수 없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영진위에 크고 작은 문화부나 감사원, 그리고 국회에서의 영진위에 사업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는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했다(1회 진술, 2018.01.29.).

3)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이하 한벤투)

- 위의 보고서는 우파 자금 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을 위해 ‘대규모 문화자본과 정부 간 새로운 문화펀드를 조성’하고, ‘반정부적이지 않으면서도 작품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춘 우파 영화가 영화시장을 주도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 당시 한벤투 투자관리본부장이었던 000은 “노무현 정부 출범해서 한 3년차, 4년차 초반부까지는 철저하게 모태펀드의 운영은 한국벤처투자의 메니지먼트가 다했어요, 의사결정을. 그런데 MB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벤처투자의 자율권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최종의사결정은 각 정부부처가 최종 권편을 해야만 의사결정이 끝났어요 (...생략...)”라고 했다.

또한, 위 000은 ‘한벤투는 민간전문기구로 설립되었는데 모태펀드 운영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 신규투자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직접 배정함에 따라 한벤투의 조정 권한이 약화되었고, (...출처가 분분명한 내용으로 비공개...)는 얘기가 창투사로부터 들려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녹취록, 2018.02.12.).

- 또한, 해당 시기에 모태펀드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받은 영화가 확인되었고, 반면에 모태펀드 배제 지시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된바 이는 뒤의 ‘영화 지원 및 배제 사실’에서 후술하겠다.

나. 박근혜 정부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화계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을 살펴보면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의 임원 교체를 통한 대책 강구’에 대한 항

목이 있다. '친노(親盧) 계열 대기업(CJ·롯데)이 문화·영화 분야 모태펀드의 운용적 독식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한 문체부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이를 용인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위 공소장에는 2013. 8. 5. 임명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중복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휘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수차례에 걸쳐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문화계 권력을 좌파가 잡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나아가,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파는 배고프다, 잘해보라'며 친정부적 단체를 특별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지시는 2014. 4. 4.부터 5. 하순까지 당시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국민소통관비서관 등은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제출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영화계 개입

가) '모태펀드 개선방안'과 '건전영화 육성방안'

- 2013. 12. 18. 김기춘 비서실장이 CJ에서 배급한 영화 <변호인>이 흥행에 성공하자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위 영화의 엔딩 자막에 문체부가 투자했다고 나온 것 등을 질책하면서 'CJ에 대한 제재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

모철민은 이를 문체비서관인 김소영에게 전달하면서 문체부와 영진위가 협의해서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이후 모철민은 김기춘에게 '모태펀드 개선방안'과 '건전영화 육성방안'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1) '모태펀드 개선방안'

- 문체부는 모태펀드 개선방안으로 '투자조합의 업무 보고의 정례화 및 투자심사계획 등 수시 상황보고로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정책방향에 따라 투자조합 투자심의위원회 참석(옵저버),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안을 제출한다.
이 방안은 문체부 내에서 이념적으로 문제된 모든 내용에 대한 대응책으로 김기춘에게 보고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에서 언급되었는데 이보다 더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 청와대 교문수석 모철민은 특검 진술에서 영화 <변호인>의 엔딩크레딧에 문체부 이름이 있었던 것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정부기관이 정치편향적인 영화에 지원이 들어간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했는데 "(...생략...) 정부 심의위원 구성 시, 국정기조에 대한 이해가 높은 명망 있는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부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외 적극적인 대책으로 그래서 차라리 영화진흥기금 확충을 통하여 좋은 창작 작품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점도 보고 드렸습니다 (...중략...) 문체부와 협의하여 함께 추진한 것입니다 (...생략...)"라고 진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문체부 사무관 이OO은 "문산과에서 작성했습니다. 담당자인 박OO 사무관의 얘기에 의하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을 저에게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4.04.).
- 이에 대해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인 박OO은 "(...생략...) 13년 12월에 <변호인> 사태가 터져서 이때부터 몇 달 동안 3~4개월 난리가 났어요 (...중략...) '대책을 만들어라. 뭐라도 만들어라.' 막 했을 때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이때까지 15년 말까지 쓰였는데 (...생략...)"라고 했다(녹취록, 2018.04.12.).
-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신OO은 "모태펀드 개선방안으로 문체부로부터 초안을 받아서 제가 정리를 해서 모철민 수석님께 보고를 하고 이를 실장님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05.04.).

[그림-1]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정부 출자 펀드 부분

<p>④ 정부출자펀드의 영화투자</p>	<p>'06년부터 모태펀드에 총 4,143억원 출자 → 투자조합(투자심의위) 의사에 따라 투자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조합의 업무보고 정례화 (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 등 수시 상황보고, 투자심의위 참석 및 의견제시 등 • 투자심의위 결과 법령·규약 위배시 권고/재심의 요청
-----------------------	---	---

(2) '건전영화 육성방안'

- 한편, 문체부는 건전영화 육성방안으로 '건전애국영화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다.
- 위 신OO은 “일반적인 영화제작사업이 펀드를 통한 간접사업만 있었는데 비서관이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해서 정OO 과장과 통화를 해서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라고 하며, “문체부에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선례가 없어 시행이 어렵겠다고 했으나 비서관이 경제수석실과 협의를 해서 예산방안을 알아보겠다고 해서 정부 예산 수립할 때 신청을 하라고 전달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 조서, 2018.05.04.).
- 위 이OO은 특검 진술에서 “2014. 4. 경 '건전한 사고와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 긍정적인 소재와 내용의 영화'라는 '건전영화'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청와대 신OO 행정관에게 보낸 적이 있고, 실제로 이 방안이 영진위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국·과장에게 보고하였고, 장관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라고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 기록 중).
- 이에 대해 문OO은 '문체부 영상과에서 건전애국영화를 추경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여서 저희 영진위에서는 정책적으로 12세 이상 관람가나 전체 관람가 영화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한 것이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년 초에 문화부에서 영진위 정책연구팀에 제안해 와서 영화가 전체관람가, 각각 12세·15세·18세 관람가로 등급을 구분하는데 전체관람가가 차지하는 비중, 한국영화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분석해서 문화부 영상과에 제출했습니다. 애국건전영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명분도 안서고 보수의 이미지가 강해서 가족

영화라는 이름으로 순화시켰습니다. 이 제안이 가족영화제작사업 필요성의 근거로 작용했고 이 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 처음 기획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정책연구팀을 통해 진행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진흥부와 구체적인 사업의 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사업의 구체적인 기획은 저와 이OO 사무관이 진행했습니다(진술조서, 2018.01.29.).

- 당시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인 박OO은 “가족애나 애국심, 휴머니티를 보여주는 영화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김종덕 장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그 방안과 관련하여 모태펀드를 통해서도 지원을 확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영진위의 ‘가족영화’로 기억되는 사업을 신설하여 이러한 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했고, ‘이OO 사무관이나 정OO 과장에게 보고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04.19.).

(3) 소결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모철민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영화진흥기금 확충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문체부에서 ‘모태펀드 개선 방안’과 ‘건전영화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영화 <변호인>의 엔딩자막에 문체부의 투자가 확인된 것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정부기관이 정치편향적인 영화에 지원이 들어간 것에 대한 지적이 있자 문체부에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했고, 그에 대한 방편으로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투자조합 투자심의위원회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주요 내용으로 모태펀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에서 언급하기 전에 앞서 구상했었던 것으로 문체부에서는 2015년 까지 문체부 보고용으로 활용했다. 위 모태펀드 개선방안은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이 포함된 건전영화 육성방안과 함께 신OO 행정관이 문체부에서 초안을 받아 정리하여 모철민에게 보고하고 이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나)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2014. 5. 말경)

- 김기춘은 2014. 3. 14.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장을 통해 과거의 실적을 심사하라. 좌파활동 단체에 대한 지

원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그 무렵 박준우 정무수석에게 '수석실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 관련 비서관들을 모아서 TF를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그밖에도 김기춘은 신동철 비서관에게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민간지원 실태에 대하여 질책하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좌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비해 우파는 배고프다. 잘 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비서관은 소통비서관실 박OO 행정관에게 민간단체보조금 TF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에 따라 박OO가 2014. 5.말경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의 주된 내용 중 모태펀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고 내용의 '3.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에서는 문화·영화 계정에 투자되는 모태펀드가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 창구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면서, CJ·롯데 등 대기업과 친노 창투사인 (주)AB사 등이 참여정부의 후원으로 급성장하여 이러한 문화펀드 운용을 독식하고 있고 문체부가 독립성보장을 이유로 이를 용인하고 있으며 펀드 운용사들을 관리하는 (주)한국벤처투자가 이러한 좌편향 투자관행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한국벤처투자의 임원진을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교체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실제 위 보고 자료에 언급된 모태펀드 운용 창투사인 (주)AB사, (주)AA사 경우 모태펀드 운용사에서 배제되는 창투사 리스트에 오르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문체비서관 김소영, 문체비서관실 신OO 행정관의 각 진술 및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정OO 과장, 이OO 사무관의 각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결국 위 문건을 기초로 하여 이러한 '좌파 모태펀드 운용사'를 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운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⁷⁾

7) 피고인 김기춘 등 7명에 대한 의견서(특검기록), 157쪽

[그림-2]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중 3면

3.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

□ 모태펀드 운용상의 문제점

- 정부-민간이 함께 만든 모태펀드가 문화·영화계정에 투자되고 있으나, **과파 문화운동의 자금창구가 되는 사례** 빈번
 - Ex) 영화 <변호인>, <부러진 화살>, <화려한 휴가> 등 정치연방적 작품에 투자

(2014년도 모태펀드 계정별 출자계획)

계정명	계	총소액(억원)	연영	문화	특허	영화	비재	보건
출자규모(억원)	5,479	3,105	300	965	300	100	500	200
비중(%)	100.0	56.8	5.5	17.6	5.5	1.8	9.1	3.7

- [창업투자사] 親戚계열과 대기업(CJ동대)이 문화펀드 운용을 독식
 - ㈜유니온투자파트너스(1,730억원), ㈜MVP창업투자(240억원), ㈜케이탈론(130억원) 등이 참여정부의 후원으로 급성장했고 현재까지 대규모 문화펀드 운용 중
- [문제부]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사들의 독립성 보장을 내세워 창투자사들의 행태를 용인
-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사들을 실질적으로 선정·관리하는 기관이나 권한적 투자관행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상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8에 의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추진계획

- 창투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벤처투자의 임원진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 대폭 교체 권의
 - (대표이사) 전문성을 명분으로 금융권 출신에게 맡겨 왔으나 실제로 벤처창업투자 분야 경험이 없는 증권사 출신
 - (간부) 3명의 본부장급 간부에 의해 사실상 투자가 결정되는 상황으로 권원교체 필요 (기획조정실장, 투자운용본부장, 투자관리본부장)
 - (감사) 임기만료에 따라 내정인사에 대한 검증절차 진행 중

다)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 위 신OO은 “당시 김소영비서관님이 6개의 회사가 모태펀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 문체부도 알고 있으라고 전달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난거냐고 물으니 알 필요는 없고 문체부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전달은 했습니다. 재차 6개의 기준이 뭐냐 물으니 정확히는 모르는데 ‘야당 유력인 정치인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포함된 창투자 중에 한 곳은 야당 정치인의 일가라고 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출처가 분분명한 내용으로 비공개...) 명단을 작성했을 것 같습니다. 이 명단은 메모를 해서 정OO과장에게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5.04.).

위 신OO은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최초 전달받은 모태펀드 문제 회사는 AA사, AB사, AC사, AD사, AF사, AG사이고, 다만, 문체부에서 CJ 계열사인 AH사에 대해 문의해 온 적이 있다. AH사도 사실상 포함됐고, 이 명단이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비서관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5.17.).

한편, 특검 진술에서 위 신OO은 ‘6개였다가 4개로 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소 변동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이에 대해 특검 진술에서 청와대 김소영 비서관은 “2014년 하순경에서 2015년 초 순경 모태펀드와 관련하여 ‘AB사’ 등 회사가 운용사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실수비’ 전달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특검진술에서 위 이OO은 “AB사를 포함하여 총 4군데 창투사(①AB사, ② AJ사, ③ AC사, ④AA사)가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시받은 기억이 (…중략…) 2015. 3. 경 정OO 과장으로부터 받았던 지시였고 (…중략…) 정OO 과장은 윤OO 전 콘텐츠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라고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특검진술에서 문체부 영상과장 정OO은 “문화산업정책과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것인데 배제하라고 한 이유는 따로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태펀드를 담당한 박OO 사무관도 이 4개가 정확하게 어떠한 사유로 배제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고, 윤OO 당시 콘텐츠산업실장이 기재부에서 문화부로 넘어온 사람으로 경제수석실이나 모태펀드 쪽과 많이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개의 투자조합이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따로 설명해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이에 대해서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박OO은 “윤OO 실장으로부터 모태펀드 부적격 관리대상이라면서 4개 회사의 명단을 받았었고, 배제 회사 명단은 몇 번에 걸쳐서 변경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녹취록, 2018.04.12.).
- 당시 콘텐츠산업실장 윤OO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진술조서, 2018.04.18.).
- 한편, 위 문OO은 “이OO 사무관으로부터 모태펀드 2014년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AB사’를 지원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영화 <변호인>에 투자한 창투사가 문화계정에서 3개, 영화계정은 1개 회사인데 모두 배제 대상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2회 조서, 2018.02.02.).

- 위 진술을 종합하면 청와대에서 작성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는 영화인 <변호인>이 개봉한 후 2014. 초순 경 처음 언급되었고, 같은 해 중순 경 문서화 되서 분명치 않은 사유에 따라 명단을 변경해온 것으로 보인다. 최초 문서화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는 2014. 5.경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서 언급된 모태펀드 운용 창투사인 ‘AB사’, ‘AA사’, ‘AG사’ 3개사인 것으로 보이고, 2014. 하순에서 2015. 초순 경 김소영 비서관이 문체부에 하달한 ‘AA사’, ‘AB사’, ‘AC사’, ‘AD사’, ‘AF사’, ‘AG사’ 등 6개 회사이고, 추가로 ‘AH사’가 포함됐다. 이어 2015. 6경. ‘AB사’, ‘AJ사’, ‘AC사’, ‘AA사’ 등 4개사로 변경되어 문체부 문산과로 하달된 사실은 청와대에서 2016년까지 정치성향과 정권의 정서에 맞지 않는 창투사를 선별하고 리스트화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는 청와대가 한벤투를 통해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 운용사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창투사를 배제하는데 활용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체부는 청와대 지시를 통해 영진위에 모태펀드 선정 배제 창투사를 하달하고, 영진위는 모태펀드 출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를 실행했다. 다만, 최초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경제수석실이라는 것 외에는 실제 작성자 및 배제 사유와 구체적인 배제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실행 방안

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2014. 10. 경)

-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이념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 사업 중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고 문체부 김종덕 장관이 2014. 10.경 송OO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으로 보고받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은 문체부 내에서 이념적으로 문제된 모든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⁸⁾
-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송OO 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과장·사무관이 참여하는 ‘건전콘텐츠활성화TF’ 회의를 개최하면서 장관 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이를 김종덕 장관과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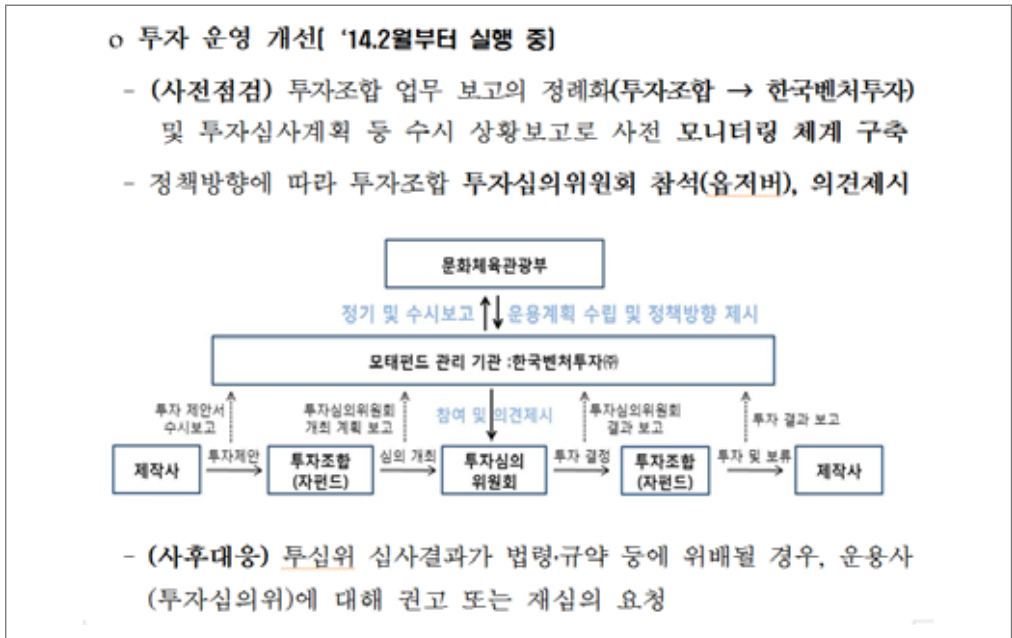
8) 위 판결문 79~80쪽

앞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로 문체부가 보고한 ‘모태펀드 개선방안’은 ‘정부 출자 펀드의 영화 투자 관련 개선방안’, ‘건전영화 육성방안’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지원 사업 개선방안’으로 진화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그림-3]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지원 사업 개선방안

- (현행 지원제도 건전화) 심사위원 인력개편 및 선임절차 강화를 통한 심사강화와 지원기준 균형성 확보를 통해 이념편향 배제
- (건전 영화제작 지원사업 신설) 한국적 정서를 지닌 건전한 영화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 지원
 - * 2015년부터 신설하여 상업영화 1편(25억원 규모), 예술영화 2편(10억원 규모)

[그림-4]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정부 출자 펀드의 영화 투자 관련 개선 방안 부분



- 위 보고서 내용 중 “건전영화 제작지원 사업 신설”과 관련하여 위 문OO은 “문체부 영상과에서 건전애국영화를 추경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여 영진위에서 정책

적으로 12세 이상 관람가나 전체 관람가 영화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한 것이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이다. 애국건전영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명분도 안서고 보수 이미지가 강해서 가족영화라는 이름으로 순화시켰다. 이 제안이 가족영화제작사업 필요성의 근거로 작용했고 이 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기획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정책연구팀을 통해 진행하고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국내진흥부와 구체적인 사업의 틀을 만들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기획은 저와 이OO 사무관이 진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01.29.).

- 특검진술에서 위 이OO은 투자 운영 개선 방안으로 “문체부의 모태펀드가 출자한 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창투사인 ‘AB사’의 경우, 영화 <변호인>에 투자하였는데 청와대에서 각종 정부의 모태펀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AB사로 하여금 향후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 비판적인 영화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개별 투자조합들의 투자심의 위원회(이하 투심위)에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문체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있던 박OO가 투자조합이 운영하는 투자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풀’에 개입하여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위 박OO은 “박OO 보좌관이 모태펀드에 관심을 가졌고, 그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적 있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제공한 적 있다. 위 문서가 보고되기 3~4개월 전 이었고, 운용사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제도 도입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녹취록, 2018.04.12.). 박OO 보좌관이 투자심의위원회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위 박OO 진술 외에는 확인하지 못했다.

나)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선정 관련(2015. 6. 경)

- 위 문서는 2015. 6. 19.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출처는 모르나 내가 모태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운용사(AD사)를 선정하라고 한 벤투 모태펀드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정보보고가 문체부에 왔다고 윤OO 콘텐츠산업실장에게 듣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해명한 자료이다. 2015. 3. 경 첫 번째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AD사와 AK사가 서류심사는 통과했지만

현장실사에서 모두 탈락하여 재선정(2차)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2차 선정 절차에서 4개 회사가 서류 심사를 받았고, AD사, AA사, ‘AB사’가 통과하였다. 운용사 부적격 대상인 AA사와 ‘AB사’를 제외하면 AD사가 남는데 영진위 모태펀드 담당자에게 1차 선정 과정 중의 탈락 사유가 보완되었는지 점검하라고 조언을 했다. 같은 해 6. 16. 경 영진위 담당자로부터 AA사가 부적격대상에서 해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신OO 행정관에게 확인하니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중소기업비서관(중기비서관실)실에 확인했는데 AA사가 부적격대상에서 해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재차 “영진위 담당자가 AA사 미해제 사실을 알려왔고, 직접 한벤투 이OO 본부장에게 경위를 파악하니 같은 해 6. 18. 경 BH담당과 한벤투 조OO 사장이 협의하여 해제한 것을 확인했다. 한벤투 사장 정도면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협의했을 것 같다”고 했고, 한편, “정OO 과장이 윤OO 콘텐츠산업실장에게 불러가서 제가 AD사를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로 선정하도록 압력행사를 했다는 정보보고가 왔다고 해서 본 경위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비서관실에 확인 결과 모태펀드 사장과 경제수석이 해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나 미확정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위 신OO은 “당시 이OO 사무관이 하나의 펀드가 6개의 명단에서 빠졌다면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와서 중기비서관행정관에게 물어보니 모르는 눈치인 것 같았고 알아봐 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답변이었고 한벤투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이OO 사무관에게 한벤투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니 신경 쓰지 마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당시는 한벤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받아 들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05.04.).
- 당시 영진위 모태펀드 사업담당자 OOO은 “1차 정시는 적격자 없음으로 끝나고, 2차 정시를 앞둔 6월 중순 경 이OO 사무관으로부터 AD사가 해결된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 정확한 확인을 하고자 한벤투의 이OO 본부장에게 ‘AD사가 해결 됐다라는 사무관의 연락을 받았는데 맞냐’라고 확인하니 ‘AD사가 아니라 AA사인데 사무관이 잘못 안거다. 기다려 봐라. 연락 갈 거다. BH에서도 알고 있는...’ 하면서 말을 흘렸다. 이OO 사무관에게 전화해서 ‘모태에서 AA사라고 하는데요.’ 라고 전했다. 며칠 뒤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격앙된 음성으로 ‘박OO 팀장이 다른 데 가서 내가 AD사를 밀고 있다고 그랬다면서요’ 하고 따졌다. 바로 제가 ‘무슨 소리

십니까. 사무관님이 AD사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셔서 확인 차 한벤투에 해결 여부를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무슨 권리로 사무관이 민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뭘 일을 겪으려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하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위 박OO은 2차 정시 과정에서 "심사가 2015. 6. 25.이었는데 며칠 전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AA사가 해결됐다'면서 사무국장에게 'AA사가 풀렸으니 AA사로 가는 거다 라고 전달해라. 판말 필요 없고 그렇게만 전달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국장에게 전달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AA사를 운용사로 선정하는 과정에 문체부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2회 진술조서, 2018.01.26.).

- 이에 대해 위 이OO은 '이미 AA사와 AB사는 운용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시를 이미 (청와대로부터)받았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AD사 뿐이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AD사는 이미 한차례 현장 실사 등에서 탈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진위 모태펀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탈락사유를 보완되었는지를 살펴보라는 취지로 연락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2차 선정 과정 중 영진위에 AA사가 해결되었다는 연락은 한 적 없다'고 했다(면담보고서, 2018.05.24.).
- 한편, 위 윤OO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정보보고 내용 관련 들어본 바도 없고 관련해서 정OO 과장에게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모르는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04.18.).
- 위 문서는 청와대가 직접 작성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활용하여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해 온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지원 및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청와대 경제수석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배제 리스트인 이른바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실과 청와대 경제수석실 중소기업비서관실 사이에 공유하였으며, 청와대에서 문체부와 한벤투를 통해 직접 특정 영화인에 대한 지원 배제 및 특혜 지시를 하달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와 한벤투는 모태펀드 배제 창투사를 관리하며 배제 지시를 영진위에 하달하고 영진위는 이를 실행했다. 나아가 위 문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청와대가 주도하여 블랙리스트 대상 창투사를 해제하고 지원할 것을 지시한 내용으로써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다.9)

4) 영화진흥위원회 실행 방안

가)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

- 위 나. 1)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해당 사업은 청와대의 '모태펀드 개선방안' 과 '건전 영화 육성방안' 에 대한 주문 결과 추진된 사업이다. 문체부의 직접 지시로 하달되어 영진위에서 시행된 과정은 아래와 같다.
- 위 문OO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문체부 영상과에서 건전애국영화를 추경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여서 저희 영진위에서는 정책적으로 12세 이상 관람가나 전체 관람가 영화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한 것이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년 초에 문화부에서 영진위 정책연구팀에 제안해 와서 영화가 전체관람가, 각각 12세·15세·18세 관람가로 등급을 구분하는데 전체관람가가 차지하는 비중, 한국영화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분석해서 문화부 영상과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사업 처음 기획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정책연구팀을 통해 진행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진흥부와 구체적인 사업의 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사업의 구체적인 기획은 저와 이OO 사무관이 진행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1회 조서, 2018.01.29.).
- 당시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은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은 저희 기반조성 본부의 사업은 아니지만, 당시 사업 개편을 주도한 문OO 부장 및 실무진들이 ‘정부가 싫어하는 <변호인> 등이 흥행하니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친정부성향의 건전영화들을 발굴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려고 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 (...중략...)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재정부에 올린다고 해서 예산안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1~2억 짜리도 아니고 50억짜리 사업이 계획안 하나로 바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 (...중략...) 그런데도,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은 영진위 전체 사업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50억의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위 문OO은 이 사업의 신설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2014년 문체부 영상과에서 추경으로 추진하다가 기재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예산안을 국회로 넘겨야 하는데, 기재부 문화예산과에서 완강히 버텼다

9)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정황만으로 당사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특정 창투사를 지원·배제한 것으로 단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함(18.11.6)

고 들었습니다. 추측하건데 (이하 추측성 진술로 비공개).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50억 중에 25억은 건전, 애국영화에 준다고 해도 나머지는 예술영화제작지원을 부활시켜 하자고 계획을 짰는데,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짤 때는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사업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투자배급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획안을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원래 투자배급사라는 의미는 완성보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일 믿음이 가는 곳은 4대 메이저 배급사이지만 연 100만 이상으로 해보았는데 4개 메이저 외에 2개 회사 밖에 없어서 50만 이상 동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제 추측인데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은 (... 추측성 진술로 비공개...) 그와 연관되어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1회 조서, 2018.01.29.).

- 위 이OO은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 편성 관련 “청와대에서 시켜서 했습니다. 영진위에서는 상업영화 제작지원을 안합니다. 영화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독립영화 뿐이고 상업영화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예산까지 만들어 준다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하며, “청와대발로 기재부에 50억 지원하라는 요청에 의해 예산이 확보되었고, 14년도에는 13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14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1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직접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라 알고 있고 14년도에 지시가 있었을 때 바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진술조서, 2018.04.04.).
- 이에 대해 문OO은 ‘이OO 사무관이 50억 예산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해야 하는데 형식은 전체/12세 관람가 영화 지원이지만 내용은 건전애국영화여야 한다고 했다. 도중에 당시 정부에서 선호하는 바람에 국뽕 영화라고 알려진 <OOOO>이 영화등급분류에서 15세 관람가로 판정받자 이OO 사무관이 15세/전체 관람가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사업은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은 예산 승인이 늦어져 사업 추진 상황이 불분명하다가 갑자기 성사됐다. 최종적으로 건전애국영화지원 사업은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2세/15세/전체 관람가 영화로 신청대상이 변경되어서 2015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4.27.).
-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 주임 OOO은 “9월쯤인가 14년도 중하순에 기재부 추경편성 기간이었는데 추경편성으로 자료를 먼저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OO 사무관이 문OO 부장에게 유선을 통해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는 상황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은 영진위 내부에서 논의 되고 추진되는 과정이 아니라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문OO 부장에게 직접 지시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넣으라고 해서 실무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왜냐하면 추경 결과가 9월 또는 10월에 나올 건데 사업공고를 최소 한 달 이상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지원금을 12월 연내에 집행할 수 없다’ 라는 의견과 ‘영화라는 게 한 달 만에 시나리오가 나올 수 없고, 제작지원사업 신청에 신청할 수준의 준비가 되어서 제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미 지원 영화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가 하고 개인적인 의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추경업무는 재무팀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다 ‘11월 쯤 그냥 내년에 합시다’라면서 어떤 회의나 논의도 없이 쉽게 결정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문OO 부장이 ‘내년에 사업계획에 넣자’라고 해서 갑자기 15년도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라고 했다.

위 OOO은 “지금 생각해 보니 건전영화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OOOO> 같은 영화를 지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다(2회 조서, 2018.02.02.).

- 문체부 사무관 박OO는 “처음에는 김기춘실장이 직접 <OOOO> 같은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 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화계도 공공기금에서 상업영화에 상당히 큰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비판이 있었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런 영화의 지원이 없어서 실패한 사업이었습니다. 즉, 사업 추진 시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와 영진위가 나서서 특정 영화를 지원하려는 의도를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5.02.).

나) 의혹 사항

- 한편, 문체부에서 작성된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업무 인수인계서(2014. 10. 15.)¹⁰⁾에서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영화 및 기획개발 펀드(국정과제)’ 사업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2014 영진위 모태펀드 영화계정을 통해 한국영화 투자 분야에서 추진

10)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업무 인수인계서(2014.10.15.)

되었고, 영화 <변호인>에 투자한 AB사가 참여하여 배제 지시된 때였다.

공교롭게도 위 이OO이 위 문OO에게 ‘전체/12세 관람가 영화 지원이지만 내용은 건전애국영화여야 한다’고 제안해서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한 시점보다 다소 앞선 시기이고, 사업 성격이 동일한 점이 발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 위 업무 인수인계서(2014. 10. 15.)에는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영화 및 기획개발 펀드(국정과제)’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 문서에는 출자 규모가 100억 원이고 결성액을 167억 원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투자대상으로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70% 이상 투자하고, 여성, 가족, 청소년, 아동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영화이어야 하며 한국영화 기획개발에 30% 이상 투자한다고 작성되어 있다. 위 사업은 영진위에서 한국영화(기획개발 및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분야에 100% 투자하는 것으로 기획하였고, 전체/12세 이상 관람가지만 영화 등급 분류 시 타 등급 분류를 받을 경우 총 투자 작품의 2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주목적 이외에 투자하는 경우 모태펀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¹¹⁾
- 해당사업에 대해 위 이OO은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7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사업은 건전영화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다. 당시 영진위 문OO 부장과 고안하여 추진했던 투자 사업이다.’라고 진술했다(면담보고서, 2018.05.24.).
- 위 문OO은 영진위에서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정확한 경로는 모르겠지만 2014년 초 문체부에서 정책연구팀에 전체/12세 이상 관람가가 차지하는 비중 및 한국영화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분석한 이슈 페이퍼를 작성할 것을 요청해 왔고, 이후 위 자료를 사업 기획의 근거로 삼아 저와 이OO 사무관이 전체/12세 관람가 영화이고 내용은 건전애국영화인 사업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착안한 사업이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영화 및 기획개발 펀드(국정과제)>사업과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이다. 다만,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영화 및 기획개발 펀드사업은 청와대의 직접적인 요청이 아닌 이OO 사무관과 제가 논의 과정에 착안한 사업으로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보다 먼저 구상했다. 당시 사업기획 논의를 상당히 긴밀하고 빈번하게 진행했었던 때로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4.27.).

11) 한국모태펀드 2014년 1차 출자사업 계획 공고(2014.3.14.)

- 당시 영진위 정책연구팀 주임인 000은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출처가 분분명한 내용으로 비공개...) 충분한 설명 없이 한국영화 및 외국영화의 상영등급별 편수, 관객수 등을 분석해서 통계화 할 것을 요청받았고, 2014. 2.말경에 완료해서 국내 진흥부에 제출했다. 이후 같은 해 3.경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영화 펀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5.28.).
- 당시 영진위 정책연구팀 팀장인 윤00는 ‘연구 자료 220페이지의 2013년 투자수익성 분석 데이터를 보면 등급별 수익성에 전체 관람가는 -62.3%로 4위, 12세 관람가는 6.1%로 2위, 15세 관람가는 23.7%로 1위, 청소년 관람불가는 -6.8% 3위로 기록되어 있다. 당 해년도 결과만 보면 12세 관람가 영화를 장려해야 할 만큼 수익성이 나쁜 결과가 아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전체 관람가의 경우 마이너스 수치니 지원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지만 12세 까지 특정 지어서 사업 추진의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5.28.).
- 한편, 영진위 2014.3.14.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가족영화의 설자리를 고민하다’라는 제목을 통해 ‘한국영화의 장기적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서는 어린이·가족관객 한국영화 제작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지원 마련과 기획개발단계에서 제작단계까지의 지원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가족용 영화를 위한 투자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작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사업이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위 박00는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가족 친화적인 영화에 지원하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전체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 펀드 추진이) 14년도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면서, “가족영화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양 방향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직접지원으로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간접지원으로 모태펀드로 지원한 것입니다. 두 사업 모두 영진위에서 진행했습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5.02.).
- 한편, 2014. 3. 경 모태펀드 영화계정을 통해 1차 사업공고를 시행하였으나 적격 운용사를 선정하지 못했고, 같은 해 10월 경 운용사 선정을 완료하였다. 이때 문체부에서 영진위에 ‘AB사’의 배제 지시를 하달했고, 창투사 AL사가 한국모태펀드 2014년 9월 수시 출자사업에서 조합명 ‘AL투자조합 2호’로 운용사에 선정¹²⁾되었다.

12) 한국모태펀드 자펀드 현황(한벤투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해당 운용사 이사인 000은 ‘모태펀드 출자사업 접수 시에는 조합명을 가칭 ‘AL투자조합 제1호’로 제출하여 운용사로 선정되었으며, 계약 과정에서 조합명을 ‘AL투자조합 2호’로 확정했다고 했고, 조합 결성일은 2015. 4. 경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5.16.).
- 위 투자조합에서 투자한 모태펀드 영화계정 결과 현황¹³⁾을 살펴보면,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운용기간은 2015.04~2022.04.경까지이고, 투자기간은 5년이다. 총 23개 프로젝트에 투자되었고, 영화 분야는 13개, 공연 분야는 8개, 방송콘텐츠 분야는 1개, 지분 투자는 1개인 것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위 영화계정을 통해서 투자된 13개의 영화 프로젝트 중 12세 이상 관람가는 2개에 불과하고, 15세 이상 관람가가 8개이며, 청소년 관람불가가 1개 포함되어 있고, 2개는 미개봉 상태다. 위 영화계정의 출자조건대로라면 12세 이상 관람가가 아닌 타 등급 판정을 받은 영화가 총 투자 작품의 20% 선을 훨씬 웃돌고 있고, 주목적 투자대상이 아닌 공연 및 방송콘텐츠 분야에서의 투자도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투자 행위가 2015년 4월 경 조합이 결성된 후 2017년 9월 말까지의 결과지만 해당 펀드가 출자조건에 주목적에 맞게 투자한 행위가 단 2건에 머무르고 있는 수치는 향후 제대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지 여부와 사전 승인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한벤투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다면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목적 투자대상 이외에 투자하는 경우 모태펀드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는 규정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지켜졌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5) (주)한국벤처투자(이하 한벤투) 실행 방안

위 ‘문제 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2014. 5. 말)’에서는 문화·영화 계정에 투자되는 모태펀드가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 창구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면서, CJ·롯데 등 대기업과 친노 창투사인 ‘AB사’ 등이 참여정부의 후원으로 급성장하여 이러한 문화펀드 운용을 독식하고 있고 펀드 운용사들을 관리하는 (주)한국벤처투자가 이러한 좌편향 투자 관행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3) 모태펀드 영화계정 결과 현황(영진위)

아울러 한벤투의 임원진을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교체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를 주문하고 있다.

한벤투는 실제 인사개편 및 운용사 선정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가) 인사개편

- 위 문서는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 대폭 교체 건의’할 것을 제시하며, 대상으로 대표이사가 금융권 출신에게 맡겨 왔으나 증권사 출신임을 지적하고, 사실상 투자가 결정되는 3명의 본부장급에 대해 전원교체가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으며, 감사는 내정인사에 대한 검증절차가 진행 중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정되는 한벤투 인사개편이 실제 이루어진다.¹⁴⁾

2014. 6. 경 KA가 감사로 임명되고, 같은 해 10월 23일. KC 전 BF사 대표가 한벤투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KC는 취임 후 1실 4본부 1부 체계로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기존 투자운영본부장은 두고, 투자관리본부장과 글로벌본부장, 앤젤투자본부장을 새로이 임명한다. 다음해인 2015년 1월 12일에는 상근 전문위원이 신설되고, KD가 임명된다.

- KC 대표이사에 대해 영진위 국내진흥부 주임인 000은 “KC 대표 강연이 한국경제와 벤처투자가 강연 주제였는데 실제로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박정희가 이끌었고 흑수저인 본인이 자수성가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를 잘 만난 덕분이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직원이 대부분 강의 내용에 대해 황당해 하면서 수군거리며 이야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고 하며, “당시 인사팀 교육 업무 담당으로 강연 준비를 했는데 강연 시작 한 시간을 남겨 두고 김세훈 위원장이 강연 촬영을 하라고 지시를 하자 시간 상 준비가 어렵다고 대답했고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KC 대표 강연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세훈 위원장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에 따라 사과를 했고, 사과 발언 이후 한 달 남짓 지나 부산 본사에서 서울 한국영화아카데미로 전보 발령받았다. 업무적인 잘못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처분을 내리면 되는데 화가 났으니 사과하라는 요구와 갑작스런

14)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인사개편과 해당 문서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대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인사개편과 연관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함(18.11.6)

전보발령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당황스러운 결정 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3회 조서, 2018.02.13.).

- KA 감사에 대해 영진위 홍보팀장 000은 “제가 들은 바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으로 비공개...). KA 씨는 제가 처음 만난 것은 국내진흥부 신입 사원 시기인데 그 때 투자조합에서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영진위원이 되었는데 정확히 그 시기를 기억은 못합니다. 그리고 이후 한벤투 감사로 가는데, 그 이전 투자조합에서도 뭔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에 AP사의 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운수 대의원 대회 시에 노조대표들을 만났다가 그 중 한 사람이 저에게 KA씨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는데, 그 대표가 있는 회사가 이 AP사였는데, 그곳 노조에서도 문제가 되는 인간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략...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것은 2015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때 노동조합에서 ‘국밥데이’ 행사를 하었는데 당시 초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김세훈 위원장이 박OO 사무국장과 KA를 대동하여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김세훈 위원장이 저와 KA가 아는 사이인지를 모르고 소개를 하여서 ‘저희는 이미 구면’이라고 하니 김세훈 위원장이 저에게 ‘여기 이 사람(KA)이 차기 영진위원장이 될 지도 모르니 잘 해 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3회 조서, 2017.11.03.).

나) 전문위원

- 전문위원은 원래 없던 자리다. 2015년 1월 12일 신설되어 임명한 KD는 2017년 1월 11일부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근전문위원 직위를 잃었다. 위 전문위원을 통해 특정 영화와 영화인에 대한 배제 지원 및 특혜가 이루어졌다.
- 00000협회 전무인 KH는 “‘전문위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거기만 전문위원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에 관련된 전문위원은 왜 없고, IT 쪽의 전문위원은 왜 없어도 되고, 왜 독특하게 문화콘텐츠 쪽에 이전까지는 없었던 그런 전문위원제도를 두고,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었죠 (...중략...)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전문위원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런데 문화콘텐츠 쪽의 전문위원이라 그래서 ‘왜 그런 제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죠.” 라고 하며, “한벤투에 ‘한벤투 전문위원의 역할이 뭐냐?’ 물었는데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것은 운용사를 선정하

는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역할이 뭐냐? 그냥 구체적으로 자기네들 포트폴리오를 투자하는 영화 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한국벤처투자에서 그거를 들여다보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사전 검열이라고 하면서, ‘그걸 왜 들여다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들여다보는 결과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만약에 들여다봤다 그러면 한국벤처투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그거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라고 진술했다(녹취록, 2018.02.14.).

- 당시 AM사 심사역 KJ는 “2015년 전문위원이 등장하면서 모태측이 주요한 투자자인데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소위 투자자로서의 “갑질”을 부리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투자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했다(1회 조서, 10.17.).
- 영진위 모태펀드 담당자 OOO은 “그런 정치적인 영화는 투자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2016년 2월 달에 선배에게 벤처투자 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 조심하라는 얘기를 듣고 모태펀드가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했고, “반반인데 운용사 쪽에서 자조합 영화를 받으려고 …중략… 보통 투자를 받을 때 배급사가 투자를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이 투자 받기 어렵습니다. 운용사 쪽에서 거절했을 텐데 벤처투자 핑계를 댔습니다. 영화인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모태펀드 쪽에 KD 전문위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1회 조서, 2017.11.8.).

다)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출심위)

-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 중 1차 정량평가를 마친 후 2차 정성평가를 진행하는데 이때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으로 7인이 구성된다. 이를 출자심의위원이라고 칭하고 문체부와 영진위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다. 영화계정 출심위 위원은 모두 7인으로 구성하고, 그 중 3인은 한벤투 직원, 3인은 출자심의위원 풀에서 한벤투가 정한 3인이 참석하고, 나머지 1인은 영진위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출심위가 열리기 전 한벤투 내부 ERP등록 단계에서 1차 정량평가인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고, 출심위에서 PT를 통해 사업설명을 듣고 2차 정성평가를 진행한 후 1차 평가 결과와 2차 결과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모태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 KC가 2014. 10.경 한벤투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출신위 성원은 4인이었고, 7인으로 늘린 것은 KC가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문체부 사무관 박OO은 진술했다. 같은 박OO은 “지금으로서 합리적인 추정은 (... 추측성 진술로 비공개...)” 알고 있는데요.”라고 했다(녹취록, 2018.04.12.).
-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신위 추천 관련 위 OOO은 “2015~2017년 영화계정 운용사 선정할 때는 저희가 출자심의위에 추천을 해 줍니다. 한벤투에서 3인이 들어가고 영진위 추천 심사위원이 3인이 들어가고 영진위 사무국장 1인이 들어갑니다. 문체부는 영화계정 쪽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니다. 한벤투에서 처음에 풀을 10명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추천을 하면 결국 한벤투에서 내부방식을 통해서 투자결정을 할 때 3인을 뽑는 겁니다. 한벤투 3인은 한벤투 임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계 심사위원 추천은 문체부 영상과에서 추천요청이 들어오는데 추천해서 영상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활용 여부는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문체부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의하는 수준에 불과한 거고 사실상 문체부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라고 진술했다(1회 조서, 2017.11.08.).
- 출신위를 통한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방식 관련 위 KJ는 “1차는 실적, 법적 제재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를 하고, PT, 질의응답 등을 통한 출자심의라고 하는 2차 정성평가를 합니다. 출자심의에서 모 창투사가 선정이 되면, 영화사, 배급사, 투자사 등에 제안하여 운용을 합니다. 투자하고 남은 수익을 다시 투자하고,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창투사는 정량평가는 수치로 표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정성평가는 심사위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에, 심사위원들의 성향도 반영될 것이며, 주관적일 수 있으며, 제 생각에는 모태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했다(1회 조서, 2017.10.17.).
- 2014년 출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한바 있는 당시 영진위 사무국장 김OO는 “사전에 ‘AB사’ 배제 지시를 받았고, 이를 ‘AB사’ 대표 KL과 공유하고 방도를 준비해서 출신위에 참석했었다. 당시 출신위 성원은 모두 4인으로 영진위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한벤투 대표이사가 참석하며 그 외 출신위 풀에 포함되어 있던 외부 전문가 중 2인을 한벤투가 정하여 참석했다. ‘AB사’를 포함한 두 개의 회사가 사업설명을 마친 후 심사평가 과정에서 ‘선정 대상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벤투 대표가 ‘잘하신 것 같다’고 동의를 해줘서 아무런 잡음 없이 심사를 끝냈다. 한벤투 대표도 ‘AB사’의 배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5.17.).

라) 외부전문가 풀 제도

(1) 개요

- 모태펀드는 자조합 결성 시 투심위에 ‘모태펀드 외부전문가 풀 내 1인 이상이 투심위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15년 2월 경 새롭게 만든 ‘외부 전문가 풀 제도’는 운용사 고유 권한인 투자 결정권과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외압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해당 제도는 2017년 2월 이후로 폐지되었다.

(2) 외부전문가 풀 제도 도입 경과

- 위 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 위 KJ는 “2015년 초경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한벤투에 출근하면서부터 라고 기억하고 있으니, 6월 전이라고 기억합니다.”라고 했고, 한벤투로부터 “팩스로 전달되어, 이 리스트를 활용하라고 지시만 내려왔습니다. 얼마 후 창투사에 ‘모태관리규정’이 내려왔는데 외부 전문가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태펀드는 창투사에게 창투조합 관련 관리 담당 회사로 ‘갑’과 ‘을’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창투사 내 심의위에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결국 창투사의 자율성을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였지만 돈을 주고 받는 ‘갑을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심사 풀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 못하고, 일방적인 ‘이런 제도 실행하세요’ 하는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외부심사 풀은 투자 심사 결정에 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정치적인 사안이 있는 프로젝트를 심사할 때는 설명할 때 위화감을 느끼는 것 같아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식의 투자 심사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섹션별로 2, 30명씩 됐는데, 한 두명만 추려서 투자심의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들 중 한명이 꼭 있어야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010년쯤에는 한벤투 투자관리 담당자가 배석을 하거나, 없이도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배석하지 않고 창투사 임원, 담당 심사역, 창투사가 운영하는 외부전문심사역, 준법감시자가 참가하여 진행했습니다. 외부전문가 풀이 생기면서는, 이 분이 있어야만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

니다. 스케줄이 맞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연기될 정도였습니다. 외부전문가 풀의 존재감이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실제 외부전문가가 참석한 투심위에서 특정 영화 및 영화인에 대한 배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이미 배제가 됐기 때문에 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리기 5영업일 전에 ERP에 올립니다. 내용적인 검토가 아닌, 절차와 규칙을 잘 따랐는지에 대한 확인 차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온 이후에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서 ERP에 올렸던 내용도 삭제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해, 투자심의위원회 전에 심의에서 배제되고, 심의과정에서 배제시키려는 의도일 때는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ERP에 올렸던 내용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15)”라고 했다.

외부전문가 풀의 구성원에 대해서 위 KJ는 “풀을 보면서 영화계에서 보지 못했던 명단으로, 전문성도 잘 모르겠고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외부전문가 풀 중에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은 KM 교수였습니다. KM 교수를 인터넷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뉴라이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외부전문가 pool 제도를 도입한 주된 이유에 대해 “CJ 회장이 욕고가 길어지면서, 영화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니까 <변호인>과 <광해> 때문 아닐까 싶었습니다. ‘영화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했다(1회 조서, 2017.10.17.).

- 당시 AN사 영화제작팀 KN은 “투심위를 하려면 창투사에서 한벤투에 투심위가 언제 열리고 어떤 영화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라는 심의위원회 내용을 사전에 한벤투 ERP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벤투에서는 사전에 모니터링을 하고, 창투사의 투자 제안서 내용을 스크린을 합니다. 한벤투는 운용사 선정 후 창투사 투심위에 대해서는 어떤 간섭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창투사의 고유 권한이고 다만, 투심위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있었을 때만이 한벤투에서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중략...) 창투사가 벤처투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차기 투자조합 결성을 선정하는데 한벤투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

15)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2016년 10월 이전의 ERP시스템은 운용사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후의 새로운 시스템은 투자심의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의 입력/변경 및 삭제 기록 전제를 보관중이며, 운용사가 임의로 직접 삭제할 수 없고 전산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에 요청하여 삭제가 가능한데 전산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도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함(18.11.6)

술 조서, 2018.04.09.).

- 위 KN은 “사전 검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전 검열 방식은 한벤투에서 전문위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투심 등록을 통해서 투심위가 상정이 되면 전문위원이 참석해서 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서술로 의견을 남기고 갑니다. 이 분들이 투자업계와 별로 관련이 없는 분인데 이 행위가 KD가 만들었다고 하는 절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투사에서 앞으로는 의결권은 없지만 한벤투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투심위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받았습니니다. 그 자문위원 파견이라는 게 유독 영화 투심위에만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의결권이 없지만 회의에 참석하고 개인 의견을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투심위에 상정했다는 자체가 이미 창투사 내부 심의에 통과됐다는 결과이기에 그래서 찬성 반대의 의결권이 없는 외부 전문가의 부정적인 역할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4.09.).
- 위 KH는 “일반적인 벤처 펀드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벤처투자가 운용사를 지정을 하잖아요. 운용사를 지정하면 그다음에 투자에 관련된 거는 다 운용사 책임입니다. 그거는 한국벤처투자에서 관여를 할 수도 없고, 사실 관여를 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모태펀드라고 하는 것은 운용사의 운용성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 운용사의 투자과정까지 사실 한국벤처투자가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거는 이쪽에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맞고, 이 한국벤처투자는 그 운용사들이 얼마큼 잘했냐. 예를 들어서 투자수익률도 문제지만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거는 운용과정에서 한국벤처투자가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업저버 자격으로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지만 거기 의사결정에 사실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운용사를 선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직접 하면 되지. 그러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만일에 성과가 잘못됐다 그러면 사실 책임 소재도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운용사가 다 그걸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책임도 운용사가 다 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벤처투자가 개입을 했다? 그러면 그 성과까지도 한국벤처투자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라고 진술했다(녹취록, 2018.02.14.).

(3) '외부전문가 풀' 제도 기획자

- 외부전문가 풀 제도 기획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위 박OO은 “처음에 그 제도가 되기 전에 한 3개월, 4개월 전에 장관 정책보좌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두 명 있었는데요 (…중략…) 박OO 보좌관이 모태펀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중략…) 벤처투자에도 전화해서 직접 연락을 해서 “이 정책보좌관님이 원하시는 자료 있으면 다 갖고 와라.” 그래서 아마 다 갖고 와서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하여간 제 기억에는 두 달 정도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제도가 나타나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장관님한테 박OO 보좌관하고 얘기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아니, 모태펀드가 문체부가 너무 아무 역할도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오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오더를 받았겠죠, 박OO 보좌관이.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더니 그 후에 이런 제도가 나와서 (…생략…)”이라고 진술했다(녹취록, 2018.04.12.). 이어 위 박OO은 “〈변호인〉 이후 BH에서 모태펀드 사업 관련해서 문체부 역할에 대해 질책이 있기 시작했는데 모태펀드 운용사 내부의 투심위에서 임의적으로 작품을 선정한다면서 질책을 받았다. 당시 문체부로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질책이 들어왔고, BH에서 질책이 계속 이어져 뭐든 해야 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모태펀드 개선방안을 비롯해 건전콘텐츠 TF를 통해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사실 실효성이 없었다. 투심위 결정은 운용사의 자율성이 보장된 것으로 문체부도 한벤투도 개입할 수가 없다 (…중략…) 수시상황보고, 사전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벤처투자 보고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실제 이를 한벤투 직원에 의견을 제시했더니 ‘우리는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라는 답변이었고, 그들은 문체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 강요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들어진 것이 외부전문가 풀 제도다. 각 부처에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시점에 기획된 것으로 보아 BH의 구도에서 기획된 것으로 생각한다. ‘문체부 공무원들도 못한다더라. 벤처투자 직원들도 이걸 못한다더라.’ 그러니까 묘수를 쓴 것이다. ‘그러면 전문위원 풀을 구성을 해서 다 던져서 애네들이 하게끔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게 누군가의 머릿속의 아이디어가 돼서 이게 15년도부터인가 시행이 됐다. BH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녹취록, 2018.04.12.).

(4) 외부전문가 풀 명단

- 영화계정에 속하는 외부전문가 풀 명단에 대해서 000 팀장은 “국회 질의 요청이 한벤투 문체부 영진위에 동시에 들어 왔는데 우리는 한벤투에 영진위는 추천한 적 없으니 자료를 달라고 하자 한벤투가 자료를 작성해서 짐작이지만 문체부와 논의를 해서 자료를 보내 주었고 이 자료의 명단은 문체부 그리고 한벤투와 동일한 자료였습니다.”라고 했다(1회 조서, 2017.11.08.).
- 위 문00은 “사업담당 팀장에게 한벤투로부터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풀 요청 관련 공문이 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벤투에서 펀드 운용사에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투자심사위에 참여케 하는 건 펀드의 독립적인 운영이나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아래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았고 임원진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2회 조서, 2018.02.02.).
- 위 000 팀장은 “15년 2월 경 한벤투에서 투자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풀을 달라고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를 문00 부장에게 보고했더니 ‘지금까지 요청 들어온 적도 없고 해준 적도 없이 지금껏 모태에서 알아서 해왔던 일인데 지금에 와서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문00 부장님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투심위 구성은 운영사에 일임한다. 풀은 추후에 주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한벤투의 KU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문화계의 심사위원을 써도 되겠다’라는 질문이 왔었고, 제 입장에서는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껏 알아서 해 온 상황이고, 쥐 본 적도 없고, 줄 의무도 없고, 우리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니 그쪽에서 결정 하세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근 씨네 21 기사를 보니 영진위에서 외부 전문가 풀 작성 시 영진위의 동의를 있었다고 인터뷰 했는데 아마도 전화를 통해서 얘기한 상황을 두고 동의했다고 한 것으로 짐작됩니다.”라고 했다(2회 조서, 2018.01.26.).
- 외부전문가 풀 구성에 대해 위 박00은 “(…생략…) 아마 이게 박00 보좌관이 관여를 줬겠죠.”라며, “자기 의견이라고 하기 에는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박00 보좌관도 누구한테 자료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나름대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받죠. 의견을 받았는데 의견이 이렇게 커트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메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갔는데, 문체는 그 사람들

한테 연락을 우리가 하지는 않았어요.”했고, “그 문서의 내용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쫓는데, 또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명단을 우리가 일일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한벤투에서 다 전화했어요.”라고 진술했다(녹취록, 2018.04.12.).

마) 영화 인센티브 제도

- 위 KJ는 “유명 배우들이 인센티브가 높는데, 총 이익의 몇 %를 추가적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수익지분을 가진 배우들이 참가한 영화에 모태는 지원 못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돌았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내용 관련 ‘좌담회’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무야 없어지기는 했지만, 정부 돈으로 자본의 갑질로 여겨질 수 있는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영화 산업계 안에서는 투자자, 배급사와 제작사 논의를 통해서 수익배분율을 조정하기도 하는 ‘동반상생협약’ 논의도 있었습니다. 배우 지분을 총비용으로 제하고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음에도, 모태가 이를 문제 삼아 업계의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모태도 문화콘텐츠 쪽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전문위원이 등장한 이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제출됐습니다. 대책들이라는 것들이 영화계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을 뒤집는 것이어서, 업계쪽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라고 했다(1회 조서, 2017.10.17.).

한편, ‘KD 전 전문위원이 나갔으니 배우 인센티브 관련된 지침들은 원상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배우 인센티브 지급이나 가족 관계 제작사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금지 관련 지침은 공문을 통해 내려온 게 아니라 전문위원 구도를 통해 전달됐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 보고서, 2018.04.26.).

- 위 000 팀장은 “서울에서 영진위 제작지원을 받던 분 중 한사람을 만났습니다 (...중략...) 당시 배우와 제작사 인센티브 관련해서 모태조합에서 못하게 한다면서 말이 안된다면서 알아보라고 하면서 신경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중략...) 당시 이 00 사무관과 인사를 했고 무슨 일 없냐 물어 와서 벤처 투자 인센티브가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영진위 정책팀장에게도 관련해서 물었더니 한벤투에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관 쪽 담당하는 분도 계셨는데 당시 한벤투의 KV 과

장과 통화해서 얘기를 했더니 모르겠다는 답변이었고, 이를 공문으로 요구할 생각은 못하고 유선으로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했고, 이어 “이〇〇 사무관이 관련 내용을 알아보라고 얘기를 해서 투자 운영사에게 문의했지만 관련해서 확인이 안됨을 보고하고 상생협력테이블기사를 메일로 보냈어요. 몇 주 후 한벤투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사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투자운용사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간혹 모태펀드에서 영화 투자 시 장난질을 한 것 같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2016년도에 모태 쪽에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운용사들이 저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〇〇 사무관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한벤투에서 운용사를 불러 단도리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했다(1회 조서, 2017.11.08.).

- 위 박〇〇은 “벤처투자회사 직원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시장의 관행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정책으로 문체부가 이거에 대해서 권한도 없지만 지도감독 하는 벤처투자가 이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의견을 얘기했던 거가 기억이 나네요.”하며, “배우 뿐만이 아니라 배우, 제작사. 남편은 감독하고. 배우뿐만 아니라 감독도 포함이에요, 여기는. 배우, 감독 인센티브가 있고, 또 부인은 제작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 돈 가지고, 정부 돈 가지고 이거를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라고 했다.

이어 당시 한벤투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첫 번째 출심위 인원 수, 두 번째 외부전문가 풀, 세 번째 영화 인센티브 제도 등인데 이 세 번째 제도는 문체부가 구체적으로 개입을 했을 근거도 없고 문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KD가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하는데, 제가 그거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이 3번에 대해서는 벤처투자한테 문의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흐지부지 됐을 걸요?”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녹취록, 2018.04.12.).

바) 그 외 한벤투 운영 관련

- 모태펀드 투자 관련 운용 결과 관련 위 000 팀장은 “2016년도 2월에 한벤투에 월별 투자 현황을 요청해서 간단히 요약 형태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벤투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국회 요구 자료를 주지 않았는데 출자자가 주라고 하면 주었습니다. 자료가 안 나가는 사유가 그 영화에서 영화계는 소문이 많이 돕니다. 투자 현황에 잡음이 생기면 수익에 문제가 발생해 투자 보호 측면에서 자료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국회자료는 벤처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못나간다고 하면 안 나가는 거고 예전에도 안 나갔어요 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수궁을 했고 내가 제출하게 되면 나가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벤처에서는 법 조항을 들먹이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규약에 보면 조합원의 지위를 통해 기득한 정보에 대해서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어 사실 모태펀드에 크게 업무할당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위 000 팀장은 “벤처에 투심위 자료를 요구했으나 공개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는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요구가 오면 한벤투에 자료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입수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벤투 자료 담당자는 힘들었겠지만 모든 자료를 다 총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조합비로 어떤 영화에 투자했고 전체 우리 자조합이 몇 개고 결성액이 얼마인지의 정도의 단순 자료만 2016년 2월에 2015년 12월 자료를 받았습니다. 통상 2016년 누계로 투자액과 회수액 자료를 요청하면 주는데 전산에서 뽑아서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자료 요청 시 문체부 쪽에도 준다 하면서 주겠다고 해서 2016년 2월부터 받았습니다. 모태펀드 운영 현황 관련해서 영진위 내부 문건을 통해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문체부나 영진위 내 성과자료에 모태펀드 결과보고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보관만 했는데 벤처에 경쟁위나 성과평가에 모태의 실적 자료로 대응하기 위해서 받아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경 영진위 내부의 선배 한 분이 ‘윗선에서 안좋은 소리가 난다. 벤처와 무슨 일이 있냐. 조심하라고 하더라. 너만 알고 있어라.’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는데 당시 영진위 분위기도 그렇고 돌아가는 분위기가 막연하게 ‘뭔가 외압이 있구나’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했다(1회 조서, 2017.11.08.).

- 위 KH는 “모태펀드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주목적은 독립성하고 전문성입니다. 그러

니까 펀드 운영은 상당히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산업의 어떤 중요한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독립성하고 전문성들이 얼마큼 잘 발휘되고 그게 유지되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아마 문화콘텐츠 분야의 그런 펀드도 이런 목적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화콘텐츠 분야도 결국에 독립성하고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문화콘텐츠 쪽은 독특한 어떤 전문성 때문에 문화부라든가 아니면 문화부를 비롯한 문화부의 정부출자기관이라든가 그런 쪽에 꽤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라고 했다(녹취록, 2018.02.14.).

- 위 KN은 “투자 심사와 투자 결정은 창투사의 고유 업무 행위인데 그 의사결정에 원래해야 할 위법 행위나 관례 행위가 아닌 내용적인 정성적인 문제에 한벤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래의 기능을 월권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벤투는 재무적 투자를 하는 창투사의 관리 감독 기관으로 투자의 수익성만 보고 투자 관리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 외적인 것 특히 정치적인 것으로 해서 영향과 외압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4.09.).

사) 소결

- (1) 2015년 한벤투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선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문화 콘텐츠에만 해당하는 전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운용사를 선정하는 출자심의위원회 성원을 4인에서 7인으로 늘리며, 외부전문가 풀 구성 및 영화 인센티브 제도 등을 추진했다.
- (2) 영화계정 출자심의위원을 4인에서 7인으로 늘려 그중 3인을 한벤투 임직원으로 구성하고, 3인은 출심위 풀에서 한벤투가 정하고, 나머지 1인만 영진위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구조는 한벤투 운용사 선정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에만 해당되는 전문위원이 영화 제작과 관련된 제작사 포트폴리오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전검열로 악용의 소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위 전문위원이 구상했다는 영화 인센티브 제도도 유의미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태펀드에서 이를 실행하려는 의도가 압박으로 작용하고, 기왕에 조

- 성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상생협약을 훼손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 (3) 한편, 투자심의 보고서를 출심위 일주일 전에 한벤투 ERP에 등록하는데 ERP에서 삭제되면 처음부터 등록한 적이 없는 상태가 되고, 제출자만 등록이 무산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부결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시스템 구조는 모태펀드 투자를 통한 검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 (4) 2014년 영화 <변호인> 개봉 이후 청와대에서 문체부의 역할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자 문체부는 대응방안으로 모태펀드 개선 방안 및 건전문화예술생태계진흥세부실행계획 등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 체계와 옴저버 자격으로 투자조합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제도를 구축한다. 이는 문체부와 한벤투에서 창투사의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인바 청와대 보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명무실한 제도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박OO의 개입을 통해 외부전문가 풀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전문가 풀 구성원도 박OO의 역할에 의해 청와대 개입을 통해서 구성했다고 보인다. 외부전문가 풀 제도는 '정부출자 펀드의 영화 투자 관련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강화해서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기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제도화된 구조는 합법적으로 영화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3. 특정 영화 및 영화인에 대한 투자 지원 및 배제

가. 특정 창투사 지원 및 배제

1) 영진위 2009년 다양성영화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¹⁶⁾

(가) 동 사업 개요

- 2009년 영진위 '다양성영화 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은 다양성영화 전문 펀드 결성을 통해 다양성영화 제작을 활성화하고, 배급 및 상영의 생태계 조성 및 연계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한 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한 개의 운용사를 선정한다. 2005년 신설될 당시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투자 재원 조달과 상업 영화에 대한 기획개발비 투자 재원을 마련¹⁷⁾하고자 기획된 사업이

16) 2017영9 유인택의 영화진흥위원회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지원 배제 사건(제34차 전원위원회 상정)

다. 위 사업을 실행하는 투자조합은 25억원의 영진위 출자금을 포함하여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 결성일로부터 7년 이내 운용하며 결성 총액의 100%를 다양성영화에 투자하도록 의무화¹⁸⁾되어있다.

- 해당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기간을 두고 지원 신청사를 접수 받은 뒤 심사일을 지정하고 심사위원을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병행한다. 운용사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평가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결정심사위원회(9인 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결정한다. 해당사업은 2009년에 3차에 걸쳐 공모하였으며 1차와 2차 사업에서 지원사가 선정되지 않았고, 3차 사업에서 선정되었다. 신청인은 2차 사업과 3차 사업에 지원하였고, 각각 신청인 회사를 비롯하여 모두 2개의 회사가 신청하였다.

(나) 해당 사건은 2009년 다양성영화 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2차) 예비심사에서 'AB사'가 선정되었고, 이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2009년 9월 28일 개최된 제17차 임시회의에 예비심사결과 심의 의결의 건'으로 상정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결정이 보류됐다. 이후 2009년 10월 6일 재소집되어 개최된 제18차 임시회의에서 예비심사결과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으나 회의 자리에서 조희문 위원장을 통해 문체부의 지원 배제 의견이 전달되었고, 표결에서 부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 예비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영진위 9인 회의에서 사실상 추인하는 형식으로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왔던 점, 예비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영진위 9인 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 2차 사업 예비심사에서 신청인이 탈락한 이후 3개월 만에 재공모한 3차 사업에서는 'AB사'가 선정된 점, 3차 사업 예비심사에서는 신청인이 자신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을 우려해 대표신청인으로 등재하지 않은 점, 2008년 이래 문체부가 영진위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간섭을 시작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사업 예비심사 과정에서 문체부의 배제 지시의견이 심사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2008년 8월 27일에 작성된 청와대 문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따라 "건전 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 및 "문화부 지원 사업에 대한 문화부 및 기재부의 엄격한 사업 결과평가를 통해 '09년부터 좌파단체 지원에 산을 근절"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AB사' 대표인 유인택의 활동 과정이 위 청와대

17) 참고인 진술조서 문OO(1회 조서, 2018.01.29.)

18) 2009년 영화진흥위원회 공고사업 안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생산 시기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고, 위의 국정원 ‘문화예술계 주요 左성향 문제 인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위의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에 등재되어 있는 점, 위의 문화부 ‘리스트-2014 2015년도분(654명) 확정’에 등재된 점, 참고인 이OO의 진술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유인택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활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정부지원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 당하였다.

2) 한국 모태펀드 2014년 1차 정시 출자사업 및 9월 수시 출자사업

(가) 해당 사업에서 영진위가 문체부로부터 ‘AB사’에 대한 배제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한 사건으로 해당 창투사가 영화 <변호인>에 투자했다는 이유다. 2014년 4월에 시행된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AB사’를 포함한 2개사가 신청하였으나 선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수시 출자사업에서 7개사가 신청하였으며, ‘AB사’는 1차 심의에서 탈락했고, ‘AL사’가 선정되었다.

(나) 위 창투사의 모태펀드 운용사 배제 실행과정을 살펴보면 위 문OO은 “2014년도 1차 정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OO 사무관으로부터 ‘AB사는 지원 배제하라’는 연락이 왔다. 출자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당시 김OO 사무국장에게 AB사 배제 지시를 전달했고, 김OO 사무국장은 ‘뭐야. 이제 펀드까지 해’하며 어이없어 하는 반응이었다. 1차 정시 전 이OO 사무관으로부터 변호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는 종종 들어왔던 차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2회 진술, 2018.01.14.).

(다) 당시 영진위 사무국장인 김OO는 “영화계에서는 AB사 LM 대표가 실적이 좋은데도 투자를 받지 못했다. 사전에 한벤처에서 영진위 국내진흥부 부서장을 통해 ‘이번 심사에 AB사를 선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국내진흥부장이 심사를 가는 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중략) LM 대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라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서 영화 변호인에 투자했던 AB사는 이번 영화 투자심사에서 배제를 했으면 좋다는 전언을 받았다고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B사 LM 대표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하면서 ‘이미 처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선정대상자 없음이라고 결

정을 내리면 된다'라고 팁을 줬다. 판을 뒤집을 수는 없다보니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너무 고마웠다.”고 했다. 실제로 ‘해당 출자사업에서 적격자 없는 것으로 운영사를 선정하지 않았고, 같은 해 9월에 수시 출자사업이 공고되었으나 ‘AB사’는 응모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진술조서, 2017.09.26.).

위 진술 중 사실 관계가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문OO 부장에게 ‘AB사’ 배제 지시를 하달한 기관은 한벤투가 아니고 문체부로 확인했다. 두 번째 한벤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AB사’는 2차 수시 출자사업에 응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차 심의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2차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했던 위 김OO는 ‘AB사’가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했다고 보인다.

- (라) 이에 대해 당시 문체부 영상과 사무관인 이OO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AB사’가 변호인에 투자한 것 때문에 배제 대상이었고 이 때문에 영화계정 뿐 아니라 문화계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건데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배제 지시를 여러 군데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하며, “펀드의 소관은 중기청, 한벤투이기 때문에 문체부 뿐 아니라 그쪽에서도 다 전달됐으리라고 보고 김OO 국장이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배제됐을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확인 차 배제상황을 챙기는 측면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04.04.).

3) 한국 모태펀드 2015년 2차 정시 출자사업(2015. 6. 26. 선정)

- (가) 앞서 서술한바 있는 2015. 6. 19. 문체부 작성 보고서인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선정 관련’은 위 해당 사업 시기에 발생한 사안이다.

위 문서를 통해 AA사를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하려는 경위는 확인되었지만, 모태펀드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던 AA사가 어떠한 사유로 해제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나) 위 출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에 영진위 사무국장 의전 자격으로 참석한 당시 사업담당자 박OO은 “1차 정시 출자심의회의에 참석하기 전 영진위에 두 개의 사업자가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회의 석상에서 한벤투의 본부장이라는 분이 두 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한 업체는 핵심관계자가 법적인 문제가 있고 다른 한쪽은 대표자가 문제가 있다며 법적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2차에서 결정

하는 게 어떠냐며 제안을 했고 별 문제없이 통과됐습니다. 2015년 1차 정시사업이고 회의는 3월경에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고 했다(2회 진술, 2018.01.26.). 이어 “1차 정시 때 가고 법적 해결이 된 후 2차 수시에도 의전으로 갔었습니다. 1차 정시 때 문제가 됐던 법적 상황에 대해서 해결 과정을 한벤투 직원이 설명을 했고 한 신청사가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한 개의 신청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할 때 거수로 뽑았습니다.”라고 진술했다(1회 조서, 2017.11.11.).

위 박OO은 2차 수시 출심위 참석 전에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심사가 2015년 6월 25일이었는데 며칠 전 전화가 와서 ‘AA사가 해결됐다’면서 사무국장에게 ‘AA가 풀렸으니 AA로 가는 거다. 라고 전달해라. 탄말 필요 없고 그렇게만 전달해라’라고 전화 왔고 저는 ‘아! 그래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2회 조서, 2018.01.26.).

또한, 위 박OO은 당시 출자심의위원 성원으로 “영진위 전 위원이었던 OOO, 임기 연장된 OOO가 기억납니다. 다만 당시 회의를 마치고 박OO 사무국장이 ‘회의가 이렇게 빨리 끝나냐. 영진위가 100억을 투자하는데 회의에서 우리 역할이 1/N밖에 안되는 거야.’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적 있습니다.”라고 하며, 이때 ‘AA사’가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진술했다(1회 조서, 2017.11.11.).

4) 한국 모태펀드 2016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가) 해당 사업에서도 ‘AB사’가 모태펀드 운용사 부적격 대상으로 배제됐다. 2016. 5. 23. 신청 접수 결과 모두 3개사가 신청했고, 같은 해 6. 24. AF사가 선정됐다.

(나) 위 박OO은 “모태펀드 선정 관련해서는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을 시 ‘AB사’가 선정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곳이 그전에 영화 <변호인>에 투자하여 찍힌 곳으로 선정이 되면 곤란하다. 선정 여부는 한벤투에서 알아서 다 정리할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선정 여부만 확인해 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진위에 OOO 팀장에게 전화해서 관련 내용을 아는지 물어 보았는데 AB사 배제 상황은 아는 듯 했고, 정OO 과장님에게 보고 해야 하니 최종 공고 전에 알려 주는 것으로 얘기를 끝냈습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5.02.).

(다) 위 OOO은 ‘전임자로부터 ‘AB사’가 배제 대상이라고 전해 들었다. 출자사업 출심위에 사무국장 의전 자격으로 참석한 적 있다. 영진위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회의

에 참석하지만 그 외 다른 권한이 크지 않다. 출심위 성원 중 3인이 한벤투 임직원이고 나머지 3인도 출심위 풀에서 한벤투에서 정하기 때문에 운용사 선정은 사실상 한벤투의 권한이 막강하다. 영진위가 특정 창투사를 배제를 하든 지원을 하든 역할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당시 출심위에 참석했을 때도 사실상 ‘AB사’ 배제는 정해져 있는 분위기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5.03.).

5) 소결

‘AB사’는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부적격 운용사로 지목되어 펀드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배제 지시가 하달된 회사다.

2009년에도 영진위 출자사업에서 제외된바 있는데 당시 공동대표인 유인택의 진보적 성향이 사유였다.

한편,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2014. 5. 말경) 중 모태펀드가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 창구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사례로 영화 <변호인>, <부러진 화살>, <화려한 휴가>등을 정치편향적인 작품이라고 제시했다.

영화 <변호인>의 투자사는 ‘AB사’ 외에도 4개의 회사가 참여했는데 부적격 운용사 중 유독 해당 투자사만 지속적인 피해를 받은 정확한 사유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AB사’는 영화 <변호인> 제작에 참여한바 있고, <화려한 휴가>는 위 공동대표였던 유인택이 영화사 대표로 재직 시 2007년에 제작한 영화다. 앞서 위 김소영 비서관이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사유 중 유력 정치인의 일가기 때문인 곳도 있다고 했는데 위 유인택은 당시 모 야당 유력 정치인의 일가이기도 하다.

나. 한벤투 전 전문위원 KD와 영화 ‘OOOO’

1) 개요

청와대의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을 교체하는 추가 조치 결과 KD BB사 대표가 2015년 1월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위 KD가 BB사 대표로 재직 중 저작권을 갖고 영화 제작을 추진하던 ‘OOO O’이 이후 제작자와 제목을 바꿔 ‘OOOO’로 제작됐다. 같은 영화는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부지원금이 43억원에 이르는바 영화 제작 경위에 대한 의혹이 있다.

2) 제작 현황¹⁹⁾

영화명	판권 소유자	제작사 및 대표	배급사	감독	주연	순제작비	총제작비
0000	KW	BA사, KR	AV사	LK	000	45억	65억

* 총제작비 중 20억은 영화 개봉 시 배급사인 AV사에서 마케팅비로 지원

3) 제작 추진 경과

[표-1] 영화 '0000' 제작 추진 경과

년도	구분	내용
2012.	영화 '000 O'	BB사의 대표 KD, 제작이사 LB, 감독 LK, LN이 준비하고, 최초 제작사로 영화수입배급업체 CD사와 계약(LN 면담보고서)
2015. 9. 1. /11. 1.	원작 사용 및 각본 계약	2015. 9. 1. BA사 대표 KR은 KW와 원작(0000 OO) 사용 계약서 체결, 같은 해 11월 1일 작가 LK와 각본(000 OO) 계약을 체결
2015. 11. 6.	기획개발 투자계약	위 KR, AA사와 문화계정 기획개발 펀드를 통해 1.3억 투자 계약
2015. 11. 9.	영화 '000 OO' 스텝 계약	위 KR, LK와 감독 계약 및 000과 프로듀서 계약
2015. 11. 10.	모태펀드 영화계정 투자	영진위 출자 모태 영화계정 자펀드 영화 '0000(구 000 OO)' 16.3억 투자
2016. 5. 10~12	영화 '0000' 투자 및 배급의향서 체결	AB사, AA사·AS사·AF사(20억)와 투자의향서 체결. CG사와 투자 및 배급의향서 체결
2016. 6~8.	영화 투자사 계약	(유)0000문화산업전문회사(대표 KR)와 AS사, FB조합, AF사 등과 투자계약서 체결
2016. 7. 4.	영진위 공모사업 선정	영진위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에 선정, 같은 해 7월 25일 약정서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에 보조금을 분할 지급받음
2016. 7. 4.~8.	배우 계약서 체결	배우 000, 000, 000 등과 계약
2016. 10. 14.	배급사 계약	AV사와 배급사 계약했으나 2017. 8. 경 계약 해지
2015. 8 ~2017. 11.	총 제작기간	·2015. 8. 준비 작업 ·2016. 9. 15. 크랭크 인 ·2016. 12. 5. 크랭크 업 ·2017. 6. 편집 완료 ·2017. 10. DVD 완성 ·2017. 11. 영진위에 DVD 및 정산보고서 제출

19) 영화 '0000' 제작 계획서 중 발췌

(가) 영화 'OOO O' 과 영화 'OOOO'의 동일성

- 영화 'OOOO' 초기 제작 추진 당시 BB사 소속 제작이사인 참고인 LB는 “2012년도에 (…중략…) 시나리오를 같이 봐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화 'OOOO'였습니다. KD가 처음 보여줄 때는 OOO의 자서전으로 'OOO O'이었는데 북에 두고 온 아내를 찾기 위한 줄거리였고 판권을 사서 영화를 하겠다며 보여줬습니다 (…중략…) LK라는 신인 감독과 저와 셋이서 시나리오 작업을 했습니다 (…중략…) 그 전에 작업을 해왔지만 잘 안되서 저에게 구조 요청을 해온 겁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7.11.10.).
- 위 BB사 소속 프로듀서인 참고인 LN은 '2012년 LK(감독)이 <OOO O>을 감독하겠다고 자청했고, KD가 이를 수락하여 시나리오 각색을 시작했다'고 하며, '최초 제작사로 영화수입배급업체인 CD사와 계약'을 했으나, '2015년 CD사 대표인 OOO과 KD 두 사람 모두 투자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결별' 했다고 했다. 당시 제작상황에 대해 LK에게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감독 계약서 없이 진행비로 월 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제작사가 영화제작 경험이 없고, 투자를 하지 않아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결국 '2015년 제작사가 영화수입배급업체인 BA사로 변경되었으나 KD의 개입 여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면담보고서, 2017.11.14.).
- 위 BB사의 또 다른 프로듀서인 참고인 LQ는 '첫 영화명이 <OOO O>로 시작하여 영어명, 독일어명 등으로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OOOO>로 결정' 되었으며, '소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화 제작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2014년 10월~11월 경 투자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으며 제작 작품이 없다보니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회사가 폐업'을 했고, 얼마 후 KD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전문위원으로 부임했다'고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2.28.).
- 한편, 위 [표-1]에서 2015. 11. 1. 작가 LK와 각본 계약 체결 시 각본 명이 'OOO OO'로 명시되어 있고, '문체부 출자 모태 자펀드 프로젝트 투자 현황' 20)에 따르면 2015. 11. 9. 영진위 출자 모태펀드 영화계정을 통해 16.3억원을 투자한 내역이 영화명 'OOOO(구 OOO OO)'로 명시되어 있다.
- 위의 진술과 관련 자료²¹⁾에 따르면 제작사가 CD사에서 BA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20) '13~17.3. 문체부 출자 모태 자펀드 프로젝트 투자 현황

KD의 역할은 확인되지 않으며, BA사 대표 KR이 2015년 9월 원작 ‘OOOO OO’ 사용에 대한 계약 체결과 2015년 1월 LK 감독과 영화명 ‘OOO OO’로 시나리오 각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도 KD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고, 당초 영화명인 ‘OOO O’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다만, 원작의 저자가 ‘OOO’이라는 점, 초기 제작 단계에서부터 ‘OOO O’ 시나리오를 각색한 ‘LK’가 KR과 시나리오 각본 및 영화 감독으로 계약을 했다는 점, 다수의 진술인이 영화명이 ‘OOO O’에서 ‘OOOO’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영화명을 최초 ‘OOO O’에서 ‘OOO OO’로 변경하고, 다시 ‘OOOO’로 변경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나) 국가기관 개입

- 위 LB는 KD에게 “(…생략…)이거 투자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생각하는 게 있다면서 ‘청와대 쪽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도와줄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략…) 영화계에 정부에서 우파 영화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KT를 통해 영화를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있던 터라 ‘아! 이거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 이때가 “2012년 하반기 쯤이다” 고 했다(진술조서, 2017.11.10.).
- 위 LQ는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교 선배인 국정원 직원 소개로 (2013년) KD 대표를 만나서 BB사 소속 프로듀서가 되었’으며, ‘국정원 직원인 선배와 KD는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로 꽤 친숙해 보였’다고 했고, 그 뒤로도 ‘서너 차례 술 좌석을 같이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같은 LQ는 ‘2014년 초순 경 국정원 선배의 제안으로 영화인 모임이라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국정원 직원 3명을 포함한 10여명의 영화감독이 모여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일면식 없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애국에 호소하는 영화와 특정인물을 대상으로 영화를 제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2.28.).
- 영진위 2013년 기반조성본부장인 참고인 김OO은 국정원의 동향보고 요청 목록 중 영화 ‘OOOO’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며, “일단 국정원에서 영화 목록을 전화로 불러 주며 상황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정책팀에 국정원에서 불러준 리스트를 주고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략 제작사가 선정됐는지, 시나리오가 완성됐는지,

21) 위 표1 참조, 원작 계약서, 각색 계약서, 감독 계약서 등

배우가 섭외됐는지 등을 기록해서 알려 주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김기춘 실장이 호국보훈영화를 장려해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정보파악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했고, “〈OOO O〉에서 나중에 〈OOOO〉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했다(2회 조서, 2018.02.27.).

- 문체부 사무관인 참고인 박OO는 “〈OOOO〉는 (…중략…) 영화별로 사회 이슈가 되는 영화 내용인 파일에서 본 것 같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주목받거나 어떠한 식으로든 관심을 받는 영화들을 사업 담당자들이 올려놓은 것으로 누적되어 있는 건데 (…중략…) 자료에는 간단한 개요와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특이사항에는 정부 성향과 배치되거나 부합하는 경우 관련 내용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고 하며, 2015년 이OO 사무관이 작성하여 저장한 것이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05.02.).
- 위의 LQ와 김OO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KD는 2013년 이전부터 국정원 직원과의 연계가 지속되어 왔고, 영화 ‘OOOO’ 제작 추진 중 이를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국고보조금 및 모태펀드 등 지원 현황

(1) 영화 ‘OOOO’의 지원 및 투자받은 총액은 모두 53억원으로 파악됐다. 그중 모태펀드 투자금액이 35억원, 영진위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8억원을 지원받아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부지원금은 43억원에 이르며 별도로 10억원의 기업투자펀드를 투자 받았고, 이 과정에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 및 실행을 위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국고보조금: 영진위 2016년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

① 심사 및 지원작 선정과정

- 「2016년도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결과」 등 이 사업 공모자료²²⁾를 보면, 이 사업은 총사업비 24.7억원으로 2편 내외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16. 5. 9.~5. 13.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모두 47편이 접수되었고, 결격 대상 작품은 모두 5편이었다. 심사일정은 2016. 6. 23.~6, 26, 3박4일 숙박심사를 가졌는데 당시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다.

22) 영진위 2016년 가족영화제작지원 심사계획(안) 보고 및 심사 결과 등

-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작품에 대해 지원토록 하였는데, <OO> 8.7억, <OOOO> 8억, <OOO> 8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표-2] 「2016년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계획(안) 보고」 중 심사위원 명단

분야	성명	경력	비고
감독	OOO	박대박, 수상한 이웃들, 타인의 멜로디 연출 등, 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감독	OOO	네발가락, 조폭마누라3, 꿈은 이루어진다 감독	
제작	OOO	영화사 커리지 대표, 해바라기, 미스터 소크라테스, 울학교선생 이티 제작	
제작	OOO	스파이 파파, 그림자, 개같은 날의 오후 프로듀서, 기적의 피아노, 여름속삭임 감독	여성
학계/평론	OOO	영진위 예술영화인정소위 위원,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등	여성

② 특혜 지원 여부

- 위 사업에 신청 시 지원신청서에는 제작계획서, 시나리오, 원작사용계약서, 각색 계약서, 배급사의 계약서 또는 계약 의향서, 투자사의 투자 의향서 등을 필수 첨부해야 한다. 위 3)의 제작 추진 경과를 보면, 위 영화의 제작사는 2015. 9. 1. 원작사용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1. 1. 각본 계약을 했다. 며칠 뒤 11. 6. AA사는 문화계정인 기획개발펀드²³⁾를 통해 1.3억원을 투자 계약하고, 이어 같은 해 11. 10. 영화계정을 통해 16.3억원을 투자²⁴⁾받았다. 2016. 5. 10~5. 12. 사이 AA사, AS사, AF사와 투자 의향서를 체결하며, CG사와 투자배급 의향서를 체결한다. 이로서 영화 'OOOO'는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 한편, 심사과정에 대해 당시 사업담당자인 참고인 OOO는 “2015년도에 비해 심사위원들이 좀 더 노골적으로 배치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2016년에는 위원장이 접수결과들에 대해서 김OO 본부장에게 주라고 지시하여 그러한 접수결과를 주기도 하였으므로, 사업부서를 제외하고 김OO 라인 등이 개입하여 더욱 노골적으로 배치되었을 것”, 위원장에게 섭외 결과를 보고하면 기다려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여 이 사이에 먼저 심사위원 선정이나 섭외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심사위원 선정기간이 오래 걸렸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재량이 있을 때는 가능한 일일 것이나 2016년도 추첨 순서까지 무작위 추첨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최용기

23) 기획개발펀드는 문체부에서 2014년 국정과제 일환으로 한국영화 기획개발에 30% 이상 투자하는 사업임(영상콘텐츠산업과장 업무 인수인계서, 2014. 10. 15.)

24) '13~'17.3. 문체부 출자 모태 자펀드 프로젝트 투자 현황

가 연속 2회 참여하고, 김OO의 경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은 특혜를 주거나 배제하기 위한 목적 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이와 같이 했을 리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위 OOO는 “OOO 감독이 심사위원이 되셨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도 심사를 오랜만에 하셨다면서 위원장님께 심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꼭 만나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다(…중략…) 당시 심사위원 중 유일하게 OOO 감독만 김세훈 위원장 부임 이후 처음 심사를 했던 사람이고 나머지 4인의 심사위원들은 계속 심사를 해왔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OOO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사위원 전원 위원장이 꽃았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2회 및 3회 조서, 2017.12.08./2018.01.22.).

- 위의 LB는 해당 영화가 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이 영화가 나중에 외국 나가서 촬영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급사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상식적이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배급사가 메인 투자자로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하고 영화를 배급해야 돈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정도 규모의 영화가 배급사를 끼지 않은 채 영화제작을 위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영화계에선 상식적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배급해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어 배급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은 이런 상황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가족영화지원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했고, “가족영화가 만들어진 것도 뜬금없었습니다. 영진위에서 제법 큰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 이해가 안됐습니다. 뭔가 있었구나 하고 추측을 한거죠(…중략…) 처음에 제도가 왜 만들어졌을까하고 의심이 갑니다. 뜬금없이 ‘웬 가족영화! 그런데서 지원을 받았다니, 이 제도가 만들어진 데는 뭐가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 영화에 투자한 회사도 정상적이하지 않고 영진위가 가족영화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한 것도 이상한 거죠. KD의 청와대 도움 얘기와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 얘기에서부터 차은택의 행위들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박OO이 얽힌 공연계 얘기를 들으면서 정황상 영화계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겠구나 하고 추측을 한거죠.”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7.11.10.).

- 위 사업부서 팀장인 참고인 000은 “2016년 선정작 <0000>의 경우에는 약정 체결을 하러갔는데 이미 해외로케가 예정되어 있었고 배우진이나, 배급사도 AV사로 확정이 되어서 매우 일하기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지금 현재 정황을 보건대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1회 조서, 2017.11.08.).
- 위 영화 <0000>가 KD가 2015년 1월 경 한벤투의 전문위원으로 취임하기 직전까지 3년 이상 영화 제작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2015. 8.경부터 시작된 제작 준비 작업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됐다. 특히, 모태펀드 투자는 2015년 11월 6일 첫 투자가 계약되고, 2016. 5. 10~5. 12. 사이 3개의 투자사 및 투자배급사와 계약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KD가 LB 감독에게 청와대 지원을 언급한 점, 국정원이 영진위에 제작 현황 점검 등의 동향보고를 요청한 점, 문체부의 관심 영화 폴더에 저장되었던 점, 위 000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위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지원 선정을 위한 부당한 지시가 실행됐을 것으로 보이나 사실 확인은 하지 못했다.

(3) 모태펀드 투자 경과

①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및 투자 현황

- 영화 <0000>는 투자사로부터 2015년과 2016년에 총 45억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중 모태펀드 투자는 총 35억 원이고, 기업투자펀드는 10억 원이었다.
- 특이한 점은 해당 영화에 투자한 창투사 중 AA사와 AF사는 2014년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하달한 모태펀드블랙리스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다. 또한, 위의 모태펀드 운용사들이 모두 2015년도에 선정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구나 해당 영화에 최초 투자한 AA사는 2015년 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영화계 정 운용사로 선정되었는데 앞서 2. 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와대의 개입을 통해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위 영화에 2015. 11. 06. 1.3억 원을 선행 투자했고, 2016. 08. 01. 13.7억 원을 후행 투자하여 2회에 걸쳐 총 15억 원을 투자했다. 해당 투자계약서²⁵⁾를 살펴보면 ‘투자사는 총제작비로 투자한 13.7억 원

25) 극영화 투자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투자사: FB조합 업무조합원 AA사 주식회사, 제작사: 유한회사 0000문화산업주식회사)

과 기 투자한 기획개발 투자금 1.3억 원을 포함하여 해당 영화의 투자지분으로 전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같은 출자사업에 문화계정 운용사로 선정된 AF사 역시 2016. 08. 05. 같은 날짜에 2개의 투자를 진행했다. 모태펀드를 통해 10억 원을 투자했고, 기업투자펀드를 통해 10억 원을 투자해서 총 20억 원을 투자했다. 기업투자펀드인 'FD펀드'는 2013년 KT그룹에서 영화, 드라마 등에 투자하는 영상투자펀드로 300억 원을 조성하였고, AF사가 운용²⁶⁾을 맡았다.

- 위 LB는 '통상 정부에서 정권 친화적인 영화를 제작하고 싶거나 정부 비판적인 영화에 대한 통제를 하려면 결국 자본을 활용한다. 독립영화는 영진위 등의 정부 지원을 배제하고, 상업 영화는 가장 규모가 큰 펀드인 모태펀드를 통해 지원 및 배제를 실행한다. 직접 펀드를 조성해 활용하기도 하는데 KT와 IBK 등 기업이 펀드를 조성케 하고 개입을 하는 방식이다. KT와 IBK는 사장 등 임원진을 정부 선호 인물로 선출하기 때문에 국정원과 청와대의 작용이 강력하다. 실제로 국정원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서 호국 보훈 관련 영화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4.10.).
- 한편, 영화계정을 통해 해당 영화에 투자한 내역을 살펴보면 '13~17. 3. 문체부 출자 모태 자펀드 프로젝트 투자 현황'에는 2015. 11. 10. 16.3억 원 투자한 것이 확인됐으나 영화계정을 통해 투자되었다는 정보 외에는 다른 정보를 찾지 못했다. 반면 영진위가 제출한 영화 투자계약서상의 영화계정을 통한 모태펀드 투자는 위 표-2와 같이 2016. 8. 1. AA사가 투자한 13.7억이다. 이는 문체부와 영진위가 각각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상이한바 투자사, 투자 날짜 및 투자액을 규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② 각 창투사의 투자 경위

- 2014년 모태펀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창투사가 다음 해인 2015년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문체부에서 작성한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AA사'는 청와대가 주도하여 블랙리스트에서 해제했다.
- 위 KJ는 "창투사는 모태펀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 모태 사업이 아니면 펀드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

26) 'KT 1천억 펀드 조성으로 콘텐츠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K·BENCH, 2013.01.31. 기사

- 태펀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조처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1차 심사는 정량적인 평가라 누구도 건들 수 없다고 하더라도 2차는 정성적인 평가라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여론의 힘이 작동하면 주도한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태에 대한 충성도나 확실하게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의 향방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라고 진술했다(2회 조서, 2018.03.09.).
- 이러한 투자 과정에 대해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장인 문OO은 “일반적으로 상업 영화의 경우 투자조합 운용사와 제작사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지만 투자조합운영사는 메인투자자(투자 배급사)와 제작사간에 계약서를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OOOO> 경우 제작사인 ‘OOOO문화산업전문회사’가 메인 투자사이고 AV는 순제작비는 투자하지 않고 단순배급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계약을 보니 OOOO문화산업전문회사 대표 명희와 제작사 대표 명희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메인 투자사는 사실상 제작사로 보입니다. 메인투자사가 제작사인 경우도 있는데 제작사가 완성이나 리스크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규모를 갖춘 경우에 투자를 하는데 <OOOO> 제작사 경우 저도 처음 들어본 제작사라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고 했다(1회 조서, 2018.01.29.).
 - 위 KJ는 “보통의 창투사가 영화를 투자할 때는 메인 투자 배급사가 없는데 단독으로 40~50%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OOOO>는 메인 투자 배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급의향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향서는 의무 조항도 없는 것이어서, 이를 믿고 투자하는 창투사는 없습니다. 정말로 시나리오가 좋았거나 아니면 투자의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라고 했다(1회 조서, 2017.10.10.)
 - 위 KN은 ‘배급사가 없는 경우 프로젝트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영화 배급이 전제되어야 원금 회수 및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급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투자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 또한, AA사와 AF사는 동일한 창투사에서 동일한 조합의 동일한 프로젝트에 2회 투자했는데 2회에 걸쳐 투자를 진행할 만큼 이 영화의 투자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요인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투자일이 다른 경우 선행 투자에 이어 후행 투자가 이루어지면 투심위에 제출하는 심사보고 상에 변수가 발생한 변동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

(감독 및 주요 배우 등의 교체), 아니면 변수가 발생하게 된 작용이 있었는지 등의 투자 결정 이유를 보고한다. 이를 통해 변동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4.10.).

- 배급사는 위의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후 2016. 10. 14.에 AV사와 계약했으나 2017. 8. 경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AV사 상무 KQ는 'BA사의 KR 대표가 진술인의 회사로 배급사 계약을 제안하는 연락을 해왔다. 계약 조건 중 배급 시기, 배급 규모, P&A 규모, 수익 정산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완성된 작품의 시사 후 최종 결정하기로 하는 등 배급사인 AW사가 유리하도록 계약 조건을 제시해 2016년 10월 투자 없이 배급사 계약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위 KQ는 '2016년 이후 영화 <OOOO> 관련 언론에서 정부에서 특혜를 받은 영화(화이트리스트)로 지목하고, 기사화하는 되는' 것이 회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어, '2017 8월 경 제작사 대표인 KR에게 배급사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하였고, KR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자체적으로 개봉을 추진하겠다고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담보고서, 2018.02.02.).

- 이에 대해 BA사 대표 KR은 '구두 상으로 계약 해지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 배급사에서 계약 해지 의지를 밝혀 오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렵다. 다만, 실제로 계약 해지 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계약이 유효한 상태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면담보고서, 2018.05.25.).
- 한편, 제작사에서는 배급사인 위 AV와의 계약 변동 상황에 대해 투자사 보고를 통해 투자 변경사유 절차를 준수했는지, 영진위에 보고할 의무는 지켰는지 등을 확인했으나 투자사 보고 여부는 우리 위원회 조사 한계 상 확인이 어려웠고, 영진위에는 보고하지 않았음을 확인²⁷⁾했다. 이 경우 제작사는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계약의 의무를 저버리고 영진위를 기망한 것이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한벤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 할 수 있다.²⁸⁾
- 해당 영화에 투자한 운용사가 모태펀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점, 리스크 감당 여부가 불투명한 메인 투자사(제작사)인데도 투자한 점, 수익 창출과 직접 연관되어

27) 당시 사업담당자인 이OO에게 유선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했음을 확인함

28)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자는 '모태펀드는 자조합의 개별 투자 건에 대해 법규 위반, 규약 위반 및 주요 재무상황 변경 등에 관한 내용 위주로 보고 받고 사후 검토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18.11.6.)

있는 투자 배급사가 없는 데도 투자한 점, 한벤처 전문위원인 KD가 해당 영화에 투자를 지시한 점 등 위 진술을 종합해 보면 해당 영화의 투자 과정에서 KD는 한벤처 전문위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투자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KD가 직접 투자 지시를 한 사실 및 사유 등에 대해서 해당 창투사로부터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해당 영화는 2017년 말 경 모든 영화제작 작업이 끝났고, 미개봉인 상태다. 배급사와의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은 개봉 여부가 더욱 어려워 졌고, 투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이는 운용사가 당초 메인 투자사와 투자 배급사가 없는 작품에 투자하는 등 상업영화인데 전혀 상업적이지 않은 투자를 함에 따라 리스크 발생 우려가 높음에도 한벤처는 운용사가 제대로 투자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⁹⁾

다. 특정 영화 지원 및 배제

1) 지원 영화

2014년 4월 김기춘 비서실장은 신동철 비서관에게 “죄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지원하라”고 지시한다. 이보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반정부적이지 않으면서도 작품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춘 우파 영화가 영화시장을 주도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를 위한 중점사업 방안으로 ‘영화제작은 자본의 힘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는바, CJ, KT, SKT 등 영화자본과 협력하여 투자방향을 긍정적 우파로 선회³⁰⁾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이러한 영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 방침에 의해 지원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화는 아래와 같다.

(가) 영화 ‘OOOO’(2015년 개봉)

- 당시 BB사 소속 제작이사인 참고인 LB 감독은 ‘국정원과 정부에서 호국보훈 분야

29)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투자 대상은 해당 자조합 운용사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모태펀드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함(18.11.6.)

30)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8.)’ 청와대 기획관리비서실 작성

제작 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고, 영화계에서는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독들의 관심이 많았다. 이 때문에 <OOOO>의 경우 LD 감독을 비롯한 다수의 감독이 제작 설계를 추진했으며 최종적으로 LF 감독의 버전이 채택되어 촬영된 작품이다'고 했으며, '당시 KT가 다양한 펀드를 조성하고 있던 때로 정부가 이 자금을 활용해 영화 제작을 장려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 2018.04.10.).

- 당시 AH사 심사역인 KJ는 “당시 소문으로 (... 출처가 불분명한 진술로 비공개...). 너무 느닷없이 툭 튀어나온 영화라는 인식이 컸습니다. 영화 기획단계에서 언론상으로 전해질 때 회자되던 이야기였습니다.”라고 했다(2회 조서, 2018.02.05.).
- 당시 AN사 영화제작팀 KN은 “(...생략...) 영화는 별로인데 제작사 대표가 너무 많은 수익지분을 요구해서 AN사는 투자를 철회했었습니다. 그런데 AT사가 덤석 했다고 해서 의아했었습니다. 사실 이미 촬영된 부문이 있었고 제작비는 큰 영화인데 AN은 감당하려고 했지만 제작사하고 감독이 수익지분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이렇게 까지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는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아래 투자를 철회했는데 바로 AT가 투자해서 이런 경우도 투자를 하는 것을 보고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짐작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정책인 창조경제에 이바지하는 일환으로 BC와 BD 은행 등이 영화에 투자를 시작했고 BC에서 <OOOO>에 투자를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04.09.).
-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 주임인 OOO은 “<OOOO>은 2012년 7월 12일 약정을 체결했고 (...중략...) 2013년 10월 11까지 총 15개월 간 작품을 완성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중략...) (작품이 완성되지 않아 1차 연장이 된 후) 주연 배우가 변경되는 경우 사실상 새로 찍어야 (...중략...) 그래서 담당사업자인 저나 문OO 부장님은 2차 연장을 불가하고 지원 취소가 될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정서에는 1회 연장만 명시되어 있고 2회 연장에 대한 계약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체부가 <OOOO>을 계속 지원하길 원한다는 얘기를 문OO 부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2회 연장 안에 대해서 9인 위원회에 연장 결정 안을 올렸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중략...) 그 뒤로 OO이나 BC에서 투자를 하고, 배급사도 AN에서 AT로 변경되어 아주 적극적으로 두 번째 촬영이 준비되었으며 각 분야에서 도와주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위 OOO은 “ (...생략...) 이 영화는 3D 제작지원작으로 처음에는 3D로 찍다가

한번 엮어지고 두 번째 촬영부터는 3D가 아닌 2D로 촬영 후 3D로 변환하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중략…) 3D로 영화를 찍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얘기했지만 문OO 부장은 워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2D로 찍고 3D로 변환하는 것을 승인해 주자라는 내용으로 9인 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당시 지원금액인 10억 중 8억은 현금 지원이고 2억은 3D 영화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기술사업부에서 현물을 지원했는데 3D로 찍지 않겠다고 하니 그 과정에 우리 부서와 기술사업부와 협의했던 것이 기억납니다(…중략…) 첫 번째 약정에 따른 첫 번째 연장 그리고 두 번째 약정에 따른 두 번째 연장의 과정이었습니다(…중략…) 확실한 건 1회 연장 결정은 다수 사례가 있지만 2회 이상 연장한 사례는 연평해전이 유일한 듯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생략…) 실무선에서는 지원 취소 결정을 내리려는 상황이었으나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영진위에서 지원취소를 하면 문체부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문OO 부장에게 들었습니다(…중략…) ‘문체부가 청와대에 찍힌다’라는 얘기를 문OO부장으로부터 듣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2회 및 3회 조서, 2018.02.02./2018.02.13.).

(나) 영화 ‘000000’(2016년 개봉)

- 위 KN은 “당시 AN사가 위기 경영으로 어려웠던 때라 이 영화에 배급이나 투자를 하면 당시 정부가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4.09.).
- 해당 영화에 투자한 내역을 살펴 보면 BC 은행은 26.25억 원, 국책방송사인 CA사와 CB사는 31.875억 원, 모태펀드 투자조합으로 BH투자조합 10억 원, BI투자조합 6억 원, BJ투자조합이 25억 원, BK투자조합이 5억 원 등 총 56억 원, AN이 25.875억 원, BL이 30억 원, BG가 5억 원을 투자했다. 모두 합쳐 175억 원이 제작비로 투입됐다.³¹⁾

2) 배제 영화

위와 같이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제작된 작품들과는 다르게 정부 비판적인 영화이거나 불분명한 이유로 모태펀드 배제를 당한 영화는 아래와 같다.

31) 김중대 의원실 자료

(가) 영화 <아가씨>(박찬욱 감독, 2016년 6월 개봉)

- 해당 영화를 배급한 AN사가 모태펀드에 투자를 신청했고, 모태펀드가 투입된 여러 투자조합 또한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영화 <아가씨>는 투자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위 KJ는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로는 모태펀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모태펀드에서는 ‘영화 <아가씨>는 안된다’라고 했고, 회사에서는 ‘왜, 안되냐. 정치적인 색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 하니 ‘감독 때문에 안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2회 조서, 2018.03.09.).

(나) 영화 <덕혜옹주>(허진호 감독, 2016년 8월 개봉)

- 해당 영화의 제작사인 AQ사 대표 LJ는 ‘2015년 6월~7월 경 공동제작사 중 한 회사의 제작 참여 직원 2명이 문체부에 상주하는 국정원 직원의 연락을 받아서 광화문에 소재하는 정부종합청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고, 국정원 직원이 다른 설명 없이 ‘<덕혜옹주> 시나리오를 관심을 두고 읽어보았다’는 얘기를 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정원의 관심 자체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사전 검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같은 사전 검열이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 ‘<덕혜옹주> 시나리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생각하여 당초 분량에서 줄이게 되었고, 결국 자기검열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변경한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덕혜옹주> 편딩 과정 중 창업투자회사와 계약 직전에 불분명한 이유로 투자가 철회되었고, 개인 투자자로부터도 투자에 난색을 표하는 등 투자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후에 전해들은 이야기로 (... 출처 불분명 진술로 비공개...)’며, ‘MB 정부 및 박근혜 정부 기간 영화에 대한 검열이 극심했는데 지난 기간 보수 정권의 문화 콘텐츠 관련 간섭과 개입이 지나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 03. 14.).

(다) 영화 <밀정>(김지운 감독, 2016년 9월 개봉)

- (진술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비공개)

(라) 영화 <판도라>(박정우 감독, 2016년 12월 개봉)

- 당시 청와대 행정관 신OO은 “<판도라>는 원전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영화라고 하면서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책이 적시된 국정원 IO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5.04.).
- 문체부 사무관 박OO는 “영화 <판도라>가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어느 날, 신OO 행정관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영화에서 ‘여자 대통령을 비하한다는 내용이 나온 다더라’ 면서 확인하라는 전화를 전달받았고 시급하게 요청을 해 와서 그날 저녁 마지막 편을 관람했고 다음 날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방역본부장이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산자부에서 이 영화가 원전 폭발 주제로 하는 영화라 관리하고 있는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개봉일을 비롯한 내용 관련해서 몇 번 문체부에 문의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05.02.).
- 산자부의 연락을 직접 받은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박OO은 “<판도라> 라는 영화가 제작되고 있는데 문체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벤투에 연락해 보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 보기도 했다. 당시 제작 초기 단계였고 주연배우가 누구인지 언제 크랭크인 되는지 정도의 상황이었다. 산자부의 우려에 대해 ‘우리는 벤처투자를 통해서 운용사에서 투자를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운용사에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능력되면 니들이 한번 투자회사 다니면서 투자 못하게 하든지 말든지 는 모르겠고,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끝냈었다. 제가 느끼기에 BH에서 질책은 받은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녹취록, 2018.04.12.).
- 한편, 청와대에서 작성한 2015. 04. 20.자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의 콘텐츠 분야에 재난영화 <판도라> 예의주시 중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정OO은 “산업자원부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심각해진다며, 이OO 사무관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중략...) 기조실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이것은 상업영화고 제작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영화 내용이 재난을 극복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예의 주시하겠다고만 보고를 했습니다 (...중략...) 나중에 국무조정실에서 <판도라> 영화 관련 회의를 한

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위 정OO은 “산자부는 정보기관 같은 것을 통해서 만약 이 영화가 개봉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보고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결국 이 영화를 AT라는 곳에서 제작하겠다고 하였는데 모태펀드로는 최종 지원받지 못하고 AT가 전액 투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2017고합102 녹취서, 2017.06.05.).

- 위 KJ는 “KD 전문위원이 모태펀드에 부임하고 처음 언급한 영화가 <판도라>였는데 ‘판도라 투자 못한다’ 이런 얘기를 모태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했다(2회 조서, 2018.03.09.).
- 위 KN은 “보통 영화 개봉 한 달 전에 투자업무는 다 끝납니다…중략… AT의 본계정과 즉 자기 돈과 모태펀드와 상관없는 회사에서만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엔딩 크레딧을 보면 공동투자 항목이 있는데 그걸 보면 투자사가 다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투자 관계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100억짜리 영화는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를 유지하려면 창투사가 큰 회사여야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제작비에 투자하는 창업 투자회사가 10개 내외기 때문에 투자 회사가 대부분 뻥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판도라> 투자사는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메인 투자 배급사가 투자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개봉도 일 년 정도 늦어졌습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4.09.).
- 위 진술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의 영화 분야 사전검열이 해당 콘텐츠 사업 담당부처인 문체부를 비롯한 영진위 뿐 아니라 원전 소재의 영화인 <판도라>를 통해서 산자부에서도 진행하였다. 원전 사업 담당부처인 산자부의 자발적 보고인지 국정원의 요청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기적인 동향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로 보고가 되고, 산자부는 문체부에 모태펀드 투자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한벤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시를 받고, 창투사에 해당 영화에 대한 배제 지시를 하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영화 ‘판도라’의 모태펀드 투자 배제는 관철됐다. 즉, 영화 <판도라> 모태펀드 배제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문체부, 한벤투 만이 아니라 산자부까지 동원되어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관여 아래 실행되었다.

3) 그 결과

위와 같이 정부기관이 개입하여 특정 영화 지원 및 배제한 작품들을 일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년도	계정	영화명	회사명 및 사업명	지시사항	결정사항
2013		0000	영진위 2010년 3D 영화제작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불이행으로 지원 취소 결정 과정 중 문체부와 청와대 개입 	계속 지원
2015		000	AH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벤처에서 투자 배제 지시 청와대, 국정원, 산자부, 문체부 개입 사실 확인 	배제 ※ 사유: 원전의 부정적인 면 부각
2015		0000	AQ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벤처에서 투자 배제 지시 정황 국정원에서 시나리오 검열 	배제 ※ 사유: 시나리오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
2016	문화	000000	AN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배급사 계약 시 한벤처 개입 정황 	계약
2016		000	AH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벤처에서 투자 배제 지시 	배제 ※ 사유: 박찬욱 감독의 정치적 성향
2016		00	AH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벤처에서 투자 배제 지시 	배제 ※ 사유: 투자배급사 대표 최재원의 정치적 성향
2015~ 2016	문화/ 영화	0000	AS사 AA사 AF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벤처에서 투자 지원 지시 정황 	지원
2016	문화	000	AH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벤처에서 투자 지원 지시 	지원
2016	문화	00 0000	AR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벤처에서 투자 지원 지시 정황 	지원

이는 당시 정부가 영화 및 영화인의 정치적 성향을 구분하여 관리 대상으로 두고,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의도적인 지원 및 배제를 실행했다고 인정된다.

라. 그 외 피해 사실

1) 외압 피해 영화 및 영화인

(가) 영화 <광해>(CJ E&M 제작/배급, 추창민 감독, 2012년 9월 개봉)

- (1) (진술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비공개)
- (2) 위 KN은 “영화 <광해>도 전해들은 것이 있는데 광해 시사회에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왔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관람을 했고, 이 상황이 언론화 되었고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남는 바람에 박근혜 진영에는 나쁜 영화로 찍히는 바람에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것으로 부터 영화 투자업계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4.09.).

(나) 영화 ‘변호인’(위더스필름 제작, ㈜NEW 배급, 양우석 감독, 2013년 12월 개봉)

- (1) 특검 수사 기록 등
 - 위 이OO은 “문체부의 ‘모태펀드’가 출자한 투자조합(펀드)을 운용하는 창투사인 ‘AB사’의 경우 영화 <변호인>에 투자하였는데, 청와대에서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AB사’로 하여금 향후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변호인> 배급사인 ‘뉴(NEW)’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벤처투자’는 각종 정부의 ‘모태펀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위 김OO는 “AB사와 NEW, AH사의 경우 영화 <변호인> 제작에 참여한 이유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문제 제작사로 1순위 최재원, 2순위 NEW 이렇게 거론되곤 했는데 AH사도 마찬가지로요. (중략). (투자 심의를 통해서 배제된 영화 혹은 제작사로) 위더스 필름이 대표적입니다. <변호인>을 찍은 후, 노골적으로 모태펀드를 통해서 최재원 대표가 제작하는 영화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7.09.6.).
- (2) 제작사 대표 ‘최OO’
 - 영화 <변호인>을 제작한 위더스필름 대표 최OO은 ‘영화계를 정리하려는 고민을 했을 정도로 피해가 상당’했음을 밝혔다. ‘<변호인>의 성공 가능성 때문에 모태펀드와 개인 투자를 많이 받았지만 영화가 흥행하고 나서 오히려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원망을 많이 들었다. 이후 <조선 마술사>부터 <밀정>까지 제작한 영화는 모태펀드에서 모두 배제되는 등 정부기관의 배제 조치가 지속됐다. 자본이 움직이는 영화시장은 해당 시기 정권 정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즉, 영화 소재를 검토하면서 제작 여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검열은 정권의 정서와 맞지 않은 영화나 영화인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되었다. 그간 영화 제작 현장의 비상식적인 상황이 권력에 대한 암묵적인 인성이나 공포감 같은 것으로 드러난 것 같다³²⁾라고 했다(면담보고서, 2017.09.27.).

(3) 감독 ‘양OO’

- 영화 <소수의견>의 시나리오 작가인 손아람은 양OO 감독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내가 천만 영화를 찍은 감독인데 그 후 영화 투자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얘기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심정으로 자조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7.11.17.).

(4) CJ 규제

- KJ는 “제 회사가 CJ 계열사였는데, 당시 <변호인>은 AH사가 투자한 것 이었는데, CJ가 곤혹을 치렀던 시기였습니다. CJ에 AH사가 투자한 내용을 계속 리스트업 했었습니다. 다른 창투사에 비해, 엄혹한 상황을 겪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기억으로는 (... 출처 불분명 또는 추측성 진술로 비공개...) 생각합니다”라고 했고, “KD 전문위원이 ‘AH사가 CJ 계열이라 찍혀있어 너희가 선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이야기는 했고, (...출처 불분명 진술로 비공개...) 들었습니다.”라고 했다(1회 조서, 2017.10.17.).
- 특정 영화나 영화인 관련 배제 지시 여부에 대해서 위 KJ는 “전달들은 바는 있으나,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중간 생략). 한벤투 직원들이 모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통렬한 자기반성을 한다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1회 조서, 2017.10.17.).
- 위 KN은 CJ 계열사인 CJ E&M도 불이익이 있었다며 “14년도쯤에 우리 부서 전체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세금에 대해서 새로운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였어요. 창투사나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개인이나 법인회사가 영화를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원천징수세 27.5%를 적용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32) 최재원 면담보고서(2017.09.27.)

한다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이 조항이 왜 생겼나라고 나름대로 추측을 한 건데 변호인을 투자 배급했던 NEW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차 상장을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NEW가 세금 약 60억을 납부하고서야 나중에 2차에서 상장이 됐습니다. 당시 60억의 세금의 원인이 뭐냐고 추측하건데 법인인 NEW가 원천징수세 명목으로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어야 하는데 2차 상장이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타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CJ E&M은 위기 경영 상태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일단 납부를 하고 이후 세금 추징 관련해서 환수 조치를 취하든지 조치를 강구하자고 했었습니다. 변호인은 NEW가 투자 배급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CJ 그룹의 계열사인 AH사가 부분적으로 투자한 것인데 CJ E&M은 같이 불이익을 받았습다. 그 이후 그 세율에 대해서 정정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투자사의 경우 투자를 했다가 원금이 제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추징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다. 이 세금의 처음 시작을 NEW가 상장하기 전에 처음 납부했던 원천징수세 60억에서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어느 한 곳이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메인 투자사든 부문 투자사든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선례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업계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데 사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관례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업계에서는 정설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자 소득이 아니고 투자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 회사 사정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영세한 창투자 입장에서 원천징수 납부제도는 상당한 타격입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4.09.).

- (5) 위 영화〈변호인〉이 2013년 개봉한 이후 청와대에서 직접 영화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좌파향 문화예술계가 문화 권력을 잡고 있다며 지원 배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위 영화 제작에 참여를 했던 곳은 정부기관에 의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했다. 위 영화 투자사인 AB사는 모태펀드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2016년 까지 모태펀드 영화계정에서 노골적으로 배제 당했으며, CJ 그룹 계열사인 AH사에서 개인 명의로 투자에 참여 했는데도 이를 빌미 삼아 CJ 그룹 및 계열사

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등 정부사업에서 지원 배제를 당했다. 위 영화의 양OO 감독도 투자가 되지 않아 영화 연출이 불가능했고, 제작사 대표인 최OO은 이후 ‘제작되는 영화가 모태펀드에서 배제를 당하자 자신의 이름을 빼고, 제작했다는 사실 또한 비밀리에 부쳐야’³³⁾ 했다. 이처럼 정부 개입을 통한 영화 <변호인>에 대한 피해 사실은 관련 제작사, 투자사, 감독 등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영화 <소수의견>(김성제 감독, 2015년 6월 개봉)

(1) 개요

- 해당 영화는 같은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인 손아람이 ‘영화 <소수의견>이 CJ 투자로 2013년 초 크랭크업했으나 이재현 회장 구속과 동시 영화 개봉을 못하였으며, 2015년 개봉 당시 영화의 크레딧에서 투자에 참여했던 투자조합 및 단위의 요청으로 이름이 모두 삭제되고 영화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시네마서비스’ 명의로 개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의혹이 있던 차 영화인에 대한 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인들의 작품이 투자 관련 불이익을 받는 등 정치적 검열의 의도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2) 위 손아람 작가의 주장 중

- “영화 <소수의견> 작업하면서 영화촬영 뒤 개봉 준비하는 단계에서 CJ 에서 개봉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이상기류를 감지했습니다. 지연날짜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고 이재현 회장 선고 시점 직후로 개봉일자가 잡혔다가 폐소하니까 2심 선고 뒤로 확정되고, 대법원 항소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연기됐습니다.”라고 했다.
- 이어 위 손아람은 “2010년경 영화 제작 시작 단계에서 영화 <소수의견> 제작진인 김OO PD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영화산업진흥위에 신청하는 개발비가 있는데 처음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중간에 철회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압력을 받았나 보다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소수의견> 원작소설 경우 판권을 사겠다는 제작사가 경합할 정도로 많은 상황에서 CJ가 선정됐지만 그전에 CE사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소수의견> 소설이 대단하다고 칭찬하면서 앞으로 계속 일을 하자고 했었는데 정작 소수의견으로 투자를

33) 최OO 면담보고서(2017.09.27.)

못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CE사 내부에 투자심의회에 올라왔지만 선택을 못했던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왜 안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투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고 심지어 감독이 돈 많은 개인에게 부탁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영화 <소수의견> 원작 소설이 발표된 시점에서는 출간하자마자 큰 영화사 포함해서 열군데 이상 제작사로부터 판권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것은 상업성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수의견> 발표 후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 다른 시나리오를 써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선일보사가 주최하는 청룡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기도 했는데 투자를 못 받는다는 것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 저예산이다 보니 배우들 캐스팅도 힘들었고 스텝은 영화의 의미성을 보고 참여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7.11.17.).

- (3) 당시 해당 영화의 제작사인 CJ E&M 영화제작팀 과장으로 재직했던 위 KN은 “<소수의견>으로 창투사로부터도 아예 투자 제안 검토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당시 본래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창투사로부터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수익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투자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정치적인 이슈나 본래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다 피합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4.09.).
- (4) 당시 AH사 책임심사역인 위 KJ는 “당시 CJ 엔터테인먼트/E&M(이하 CJ 엔터) 상황에서는 이재현 회장 구속은 영화가 문제였다고 영화업계에서는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을 CJ엔터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계열 창투사에서 투자했는데도 ‘CJ 엔터가 했다’라고 밀어붙이고 진보적인 가치관의 영화를 양산한다면 이재현 회장을 밋본 것으로 영화계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소수의견>은 그전 상황에서 투자했지만 당시 CJ 엔터 투자 담당자들이 투자업계에 투자 제안을 하면 ‘과연 이것이 개봉할 수 있겠냐’ 하면서 우려의 얘기를 하면 투자 담당자들이 웃기만 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몸도 아픈데 빼내려면 ‘유화 제스처를 쓸 수밖에 없는데 개봉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 섞인 이야기만 오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서로가 구속력이 없었고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개봉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보다는 의문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시대가 개봉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후 CJ 엔터가 방법을 찾은 것이 메인투자사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시네마 서비스에 양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CJ 엔터가 투자한 것을 다 아는데 그런다고 모르겠냐면서 물었지만 그래도 할 수 없다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KD 전문위원

이 모태펀드에 부임하고 처음 언급한 영화가 <판도라>였는데 ‘판도라 투자 못한다’ 이런 얘기를 모태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판도라>는 가상이고 소수의견은 실화를 배경으로 한 실제 픽션인데 그러면 더 파급력이 큰 것은 <소수의견>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태펀드에서 의견을 주든 안주든 이 때문에 모태가 반정부적이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고 있구나 판단하고, 이 어려운 때에 힘든 상황에 들어갈 필요 없다 라는 판단과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했는지 모르게 크레딧에서 이름을 다 빼는 활동을 했습니다. CJ 엔터 입장에서는 소수의견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니다 (…중략…) CJ 엔터에서도 아주 큰 고민 속에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 입니다. 정상적인 시국이었으면 정상적으로 개봉했을 영화이고, 전체 들어간 총액이 50억 정도 되는데 이처럼 상당히 큰 액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했다(2회 조서, 2018.02.05.).

- (5) 위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영화 <소수의견>을 투자 배급했던 CJ E&M은 당시 정부기관의 CJ 그룹을 향한 직접적인 외압 부담과 영화 <판도라>에 대한 한벤투의 투자 배제 지시 직후에 자체 검열을 통해서 <소수의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그 외 창투사들 역시 정부 비판적인 영화에 대한 모태펀드 배제 지시의 하달을 받거나 자기 검열을 통해 투자를 회피했다고 볼 수 있다.

(라) 그 외 모태펀드 지원 배제 영화

- (1) (진술자의 요청에 의하여 비공개)
- (2) KN은 “탄핵 즈음하여 <재심>과 <보통사람> 영화가 있습니다. 투자 제안에 대해 창투사들이 난감해 했습니다. 하나는 모태의 분위기였고, 또 하나는 모태의 분위기를 빙자한 회피였습니다. 탄핵 이후에 창투사에서도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는지, 아니면 전문위원도 모태에서 사라진 것 때문인지, 몇몇 창투사가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다(2회 조서, 2018.02.05.).
- (3) 위 KJ는 “<터널>은 세월호를 연상된다고 해서 투자가 어렵고, <택시 운전기사>는 금기어로 알아서 투자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영화 <26년>을 제작할 당시 촬영 직전까지 진행이 됐었지만 투자가 전혀 조달이 되지 않아 영화가 중단됐고, 나중에 촬영 재개하면서 외부 투자가 안 될 것을 아예 각오하고 크라우드 펀드를 통해서 제작이 이루어 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영화 경우 전두환과 광주 5.18을 다루었기 때

문에 개봉 이후 발생할 법적 문제까지 조치를 취했으나 오히려 앞 단계에서 투자가 안됐던 영화입니다. 이걸 흔적이 남지 않는데 제작사가 제작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영화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최악인거죠. 그런데 이후 그 앞 단계로 모태펀드 투자가 안되게 하는 방법이 나오면서 더 흔적이 남지 않은 방법으로 외압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당시는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는데 증거가 남지 않고 시쳇말로 알아서 기는 것처럼 자기 검열을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04.09.).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내용

가. 국가기관의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 개입 배경

1) 이명박 정부 시기

2008. 8. 27. 이명박 정부 시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 기획관리실에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 작성되었는데, 문서의 내용을 보면 영화를 중심으로 국민의식 좌경화를 추진하고 있고, 영화 투자 자본들이 좌파 제작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면서 건전 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 및 좌파 자금줄을 차단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하고, 우파 영화가 영화시장을 주도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영진위 기금을 활용하여 약 300억 원의 영화펀드투자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한벤처 신규투자사업 과정에 정부가 직접 예산을 배정하고, 모태펀드 운용 중 정부기관의 최종의사결정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등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되었으며, 특정 영화인이 관련된 영화에 대한 모태펀드 배제 지시 정황이 확인되었다.

또한, 영진위 출자사업이 2008년 감사원에서 영진위의 출자사업 재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하여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과 2009년 국정감사 중 진성호 의원실

에서 영진위 출자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기하며 모태펀드로 병합할 것을 주문한 결과 영진위 출자사업은 2010년 모태펀드로 이관되었다.

다만, 한벤투와 영진위의 변동사항이 위 보고서 실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2) 박근혜 정부 시기

2013. 12. 18. 김기춘 비서실장이 영화 <변호인>의 엔딩 자막에 문체부가 투자했다고 나온 것 등을 질책하고, 'CJ'에 대한 제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이후, '모태펀드 개선방안' 및 '건전영화 육성방안' 보고(모철민, 2013.12.경), '민간단체보조금 TF' 운영 보고(청와대, 2014.4~5.하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중 모태펀드 관리 대책 강구' 문서(청와대, 2014.5.경), '건전 문화예술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영화지원 개선 방안 및 정부 출자 펀드의 영화 투자 관련 개선방안'(문체부, 2014.10.경) 등의 문서들이 순차적으로 작성되었다. 문서의 주요내용들을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대하여 문체부는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 대한 지원 현황과 조치사항 뿐 아니라 영화진흥기금 확충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자펀드 선정 시 심사위원 풀을 다변화하자라는 내용과 건전영화는 직접지원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모태펀드 관리 대책으로 펀드 운용사들을 관리하는 (주)한국벤처투자가 이러한 좌편향 투자관행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한국벤처투자의 임원진을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교체하겠다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체부는 영진위를 통해 2015.4.경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경 '좌파 모태펀드 운용사'를 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운용됐고, 2014. 10~2015. 1.경 (주)한국벤처투자의 임원진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교체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작동 경과

1)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운용 경위

청와대에서 모태펀드블랙리스트를 운용하게 된 경위는 김기춘 등 7명에 대한 의견서(특검 기록),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

심 공판기록), 신OO에 대한 2017. 1. 7.자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이OO에 대한 2017. 1. 3.자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1회) 및 2017. 1. 5.자(2회)(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참고인 신OO의 진술조서(2018.), 이OO의 진술조서(2018.), 박OO의 녹취록(2018.), 문OO의 진술조서(2017.),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중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 등을 통해 각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운용경과는 다음과 같다.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의 ‘3.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에서는 문화·영화 계정에 투자되는 모태펀드가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 창구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면서, CJ·롯데 등 대기업과 친노 창투사인 AB사 등이 참여정부의 후원으로 급성장하여 이러한 문화펀드 운용을 독식하고 있고 문체부가 독립성보장을 이유로 이를 용인하고 있으며 펀드 운용사들을 관리하는 (주)한국벤처투자가 이러한 좌편향 투자관행에 대한 개선의 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다.

실제 위 보고 자료에 언급된 모태펀드 운용 창투사인 AB사, AA사의 경우 모태펀드 운용사에서 배제되는 창투사 리스트에 오르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문체비서관 김소영, 문체비서실 신OO 행정관의 각 진술 및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정OO 과장, 이OO 사무관의 각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결국 위 문건을 기초로 하여 이러한 ‘좌파 모태펀드 운용사’를 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운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⁴⁾

2)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청와대에서 작성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는 영화인 <변호인>이 개봉한 후 2014. 초순경 처음 언급되었고, 같은 해 중순 경 문서화 되서 분명치 않은 사유에 따라 명단을 변경해온 것으로 보인다. 최초 문서화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는 2014. 5.경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서 언급된 모태펀드 운용 창투사인 ‘AB사’, ‘AA사’, ‘AG사’ 3개사인 것으로 보이고, 2014. 하순에서 2015. 초순 경 김소영 비서관이 문체부에 하달한 ‘AA사’, ‘AB사’, ‘AC사’, ‘AD사’, ‘AF사’, ‘AG사’ 등 6개 회사이고, 추가로 ‘AH사’가 포함됐다. 이어 2015. 6경. ‘AB사’, ‘AJ사’, ‘AC사’, ‘AA사’ 등 4개사로 변경되어 문체부 문산과로 하달된 사실은 청와대에서 2016년까지 정치성향과 정권의 정서에 맞지 않는 창투사를 선별하고 리스트화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34) 피고인 김기춘 등 7명에 대한 의견서(특검기록), 157쪽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는 청와대가 한벤투를 통해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 운용사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창투사를 배제하는데 활용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체부는 청와대 지시를 통해 영진위에 모태펀드 선정 배제 창투사를 하달하고, 영진위는 모태펀드 출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를 실행했다. 다만, 최초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경제수석실이라는 것 외에는 실제 작성자 및 배제 사유와 구체적인 배제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3)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선정 관련(문체부, 2015. 6. 경)

위 문서는 청와대가 직접 작성한 모태펀드블랙리스트를 활용하여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해 온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배제 리스트인 이른바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실과 청와대 경제수석실 중소기업비서관실 사이에 공유하였으며, 청와대에서 직접 문체부와 한벤투 등에 특정 영화인에 대한 지원 배제 및 특혜 지시를 하달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와 한벤투는 모태펀드 배제 창투사를 관리하며 배제 지시를 영진위에 하달하고 영진위는 이를 실행했다.

나아가 위 문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청와대가 주도하여 블랙리스트 대상 창투사를 해제하고 지원할 것을 지시한 내용으로써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가기관의 (주)한국벤처투자 개입

(가) 2015년 한벤투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선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문화 콘텐츠에만 해당하는 전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운용사를 선정하는 출자심의위원회 성원을 4인에서 7인으로 늘리며, 외부전문가 풀 구성 및 영화 인센티브 제도 등을 추진했다.

(나) 영화계정 출자심의위원을 4인에서 7인으로 늘려 그중 3인을 한벤투 임직원으로 구성하고, 3인은 출심위 풀에서 한벤투가 정하고, 나머지 1인만 영진위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구조는 한벤투 운용사 선정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에만 해당되는 전문위원이 영화 제작과 관련된 제작사 포트폴리오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전검열로 악용의 소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위 전문위원이 구상했다는 영화 인센티브 제도도 유의미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태펀드에서 이를 실행하려는 의도가 영화계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기왕에 조성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상생협약을 훼손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 (다) 한편, 투자심의 보고서를 출심위 일주일 전에 한벤투 ERP에 등록하는데 ERP에서 삭제되면 처음부터 등록한 적이 없는 상태가 되고, 제출자만 등록이 무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부결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시스템 구조는 모태펀드 투자를 통한 검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 (라) 2014년 영화 변호인 개봉 이후 청와대에서 문체부의 역할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자 문체부는 대응방안으로 모태개선 방안 및 건전문화예술생태계진흥세부실행계획 등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 체계와 옴저버 자격으로 투자조합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제도를 구축한다. 이는 문체부와 한벤투에서 창투사의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인바 청와대 보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명무실한 제도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박OO의 개입을 통해 외부전문가 풀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전문가 풀 구성원도 박OO의 역할에 의해 청와대 개입을 통해서 구성했다고 보인다. 외부전문가 풀 제도는 '정부출자 펀드의 영화 투자 관련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강화해서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기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실행 결과

이와 같이 제도화된 구조는 합법적으로 영화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와대의 좌파 성향 영화 및 영화인에 대한 구분과 배제 지시 하달은 국가정보원 및 관련 정부 부처의 사전검열을 통해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로 이어졌다.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태펀드 개선방안 및 건전영화육성화 방안 등을 기획하여 지원 배제 및 특혜를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문체부

는 직접지원방식의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을 영진위를 통해서 추진하였다. 아울러 한 벤투의 임원진을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개편하는 등 운용사 선정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결국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실행 방법이 비제도적 방법에서 제도적 방법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그 틈에서 특정인이 사익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모태펀드 출자심의과정에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여 특정 운용사를 배제하고, 한벤처 전문위원 제도를 통해 특정 영화 및 영화인에 대한 지원 및 배제를 제도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인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였다.

라. 지원 및 배제 사실 확인

1) 특정 창투사 지원 및 배제

- (가) 영진위 2009년 다양성영화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에서 AB사는 당시 공동대표인 유인택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펀드 운용사 선정에서 지원 배제 당했다. 이때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은 제18차 임시회의에서 9인 위원들에게 ‘AB사에 대한 지원배제는 문체부의 뜻이다’는 것을 전달했고, 배제를 실행했다.
- (나) 한국 모태펀드 2014년 1차 정시 출자사업 및 9월 수시 출자사업에서는 영진위가 문체부로부터 AB사에 대한 배제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였다. 해당 창투사가 영화 <변호인>에 투자한 이유였다. 2014년 4월에 시행된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AB사를 포함한 2개사가 신청하였으나 선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수시 출자사업에서 7개사가 신청하였으며, AB사는 1차 심의에서 탈락했다.
- (다) 한국 모태펀드 2015년 2차 정시 출자사업(2015. 6. 26. 선정)에서 모태펀드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던 AA사가 지원 선정되었다. 2015. 6. 19. 문체부 작성 보고서인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선정 관련’ 문서를 통해 청와대가 주도하여 AA사를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하려는 경위는 확인되었지만, 모태펀드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던 AA사가 어떠한 사유로 해제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위 문서는 청와대가 직접 작성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활용하여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해 온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청와대 경제수석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배제 리스트인 이른바 모태펀드 블랙리스트가 청

와대 교문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실과 청와대 경제수석실 중소기업비서관실 사이에 공유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는 모태펀드 배제 운용사를 관리하며 배제 지시를 영진위에 하달하고 영진위는 이를 실행했다.

(라) 한국 모태펀드 2016년 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도 AB사가 모태펀드 운용사 부적격 대상으로 배제됐다. 사전에 문체부와 영진위는 전임자로부터 AB사가 배제 창투사라고 전달받았다는 것에 대해 공유하였다. 당일 출심위원회 분위기는 AB사가 배제 창투사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듯했고, 영진위 의사와 관계없이 출심위 성원 중 3인이 한벤투 임직원이고 나머지 3인도 출심위 풀에서 한벤투에서 정하기 때문에 운용사 선정은 사실상 한벤투에서 정할 수 있다.

(마) 정부기관에서 문화·영화 계정에 투자되는 모태펀드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창투사에 대한 지원 및 배제 지시한 결과를 일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년도	사업명	창투사명	지시사항	결정사항
2009	영진위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AB사	문체부에서 영진위에 배제 전달	배제
2014	모태펀드 9월 수시 출자사업	AB사	문체부에서 영진위에 배제 전달	배제
2015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AA사	문체부에서 영진위에 지원 전달	지원
2016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AB사	문체부와 영진위 AB사 배제 대상 공유	배제

AB사는 2009년 영진위 출자사업에서 배제된 이래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부적격 운용사로 지목되어 펀드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배제 지시가 하달된 회사다.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2014. 5. 말경) 중 모태펀드가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 창구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사례로 영화 <변호인>, <부러진 화살>, <화려한 휴가>등을 정치편향적인 작품이라고 제시했다.

AB사는 영화 <변호인> 제작에 참여한바 있고, <화려한 휴가>는 위 공동대표였던 유인택이 영화사 대표로 재직 시 2007년에 제작한 영화다. 영화 <변호인>의 투자사는 AB사 외에도 4개의 회사가 참여했는데 부적격 운용사 중 유독 해당 투자사만 지속적인 피해를 받은 사유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배제 및 특혜는 한벤투 출자심의위원회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영화 '0000' KD 개입 여부

(가) 해당 영화가 영화명을 변경해 온 과정에서 원 제작자인 KD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KD가 대표였던 BB사 소속 직원들의 진술과 위 영화의 원작 계약서, 각색 계약서, 감독 계약서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제작사가 CD사에서 BA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KD의 역할은 확인되지 않으며, BA사 대표 KR이 2015년 9월 원작 '0000 00' 사용에 대한 계약 체결과 2015년 1월 LK 감독과 영화명 '000 00'로 시나리오 각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도 KD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고, 당초 영화명인 '000 0'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다만, 원작이 동일하고 저자가 '000'이라는 점, 초기 제작 단계에서부터 '000 0' 시나리오를 각색해 온 LK가 KR과 시나리오 각본 및 영화 감독 계약을 했다는 점, 다수의 진술인이 영화명이 '000 0'에서 '0000'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영화명을 최초 '000 0'에서 '000 00'로 변경하고, 다시 '0000'로 변경했다고 추정된다.

(나) 해당 영화의 국고 지원 및 투자받은 총액은 총 53억 원으로 파악됐다. 그 중 모태펀드 투자금액이 35억 원, 영진위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8억 원을 지원받아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부지원금은 43억 원에 이르며 별도로 10억 원의 기업투자펀드를 투자 받았고, 이 과정에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 및 실행을 위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년도	지원 및 투자 내역			지시사항	특이사항
	모태펀드	기업투자펀드	영진위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		
2016	35억 (문화계정: 21.3억 영화계정: 13.7억)	10억 (FD펀드)	8억	한벤투에서 AS사 및 AA사에 투자 지원 지시한 정황이 드러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이 감독에게 청와대 지원 언급(2012년) • 국정원이 영진위에 영화 정보 제공하며 제작현황 점검지시(2013년) • 문체부 영화 폴더에 관심 영화로 저장(2015년)
	총액: 53억				

① 영진위 '2016년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

- 위 사업에 신청 시 지원신청서에는 제작계획서, 시나리오, 원작사용계약서, 각색 계약서, 배급사의 계약서 또는 계약 의향서, 투자사의 투자 의향서 등을 필수 첨부

해야 한다. 위 영화의 제작사는 2015. 9. 1. 원작사용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1. 1. 각본 계약을 했다. 며칠 뒤 11. 6. AA사는 문화계정인 기획개발펀드를 통해 1.3억원을 투자 계약하고, 이어 같은 해 11. 10. 영화계정을 통해 16.3억원을 투자받았다. 2016. 5. 10~5. 12. 사이 AA사, AS사, AF사와 투자 의향서를 체결 하며, CG사와 투자배급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영화 'OOOO'는 가족영화제작 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 위 영화 <OOOO>가 KD가 2015년 1월 경 한벤투의 전문위원으로 취임하기 직전 까지 3년 이상 영화 제작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2015. 8 경부터 시작된 제작 준비 작업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됐다. 특히, 모태펀드 투자는 2015년 11월 6일 문화계정 기획개발 펀드를 통해 첫 투자가 이뤄지고, 2016. 5. 10~5. 12. 사이 3개의 투자사 및 투자배급사와 계약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 앞서 서술한바와 같이 KD가 LB 감독에게 청와대 지원을 언급한 점, 국정원이 영진위에 제작현황 점검 등의 동향보고를 요청한 점, 문체부의 관심 영화 폴더에 저장되었던 점, 위 OOO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위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지원 선정을 위한 부당한 지시가 실행됐을 것으로 보이나 사실 확인은 하지 못했다.

② 모태펀드 운용사 및 배급사 현황

- 영화 <OOOO>는 투자사로부터 2015년과 2016년에 총 45억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중 모태펀트 투자는 총 35억 원이고, 기업투자펀드는 10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계정	투자분야	출자 사업명	회사명	조합명	투자조합 선정일	영화 투자계약일	투자액
문화	기획개발 ³⁵⁾ (제작초기)		AA사			2015.11.06.	1.3억
문화	콘텐츠 영세기업	2015 1차 정시 출자사업	AS사	FA펀드	2015.03.30.	2016.06.29.	10억
영화	한국영화	2015 2차 정시 출자사업	AA사	FB조합	2015.06.26.	2016.08.01	13,7억
문화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2015 2차 정시 출자사업	AF사	FC조합	2015.06.26.	2016.08.05	10억

- 위 표를 보면 특이한 점은 해당 영화에 투자한 창투사 중 AA사와 AF사는 2014년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하달한 모태펀드블랙리스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다. 또한, 위의 모태펀드 운용사들이 모두 2015년도에 선정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구나 해당 영화에 최초 투자한 AA사는 2015년 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영화계 정 운용사로 선정되었는데 앞서 2. 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와대의 개입을 통해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위 영화에 2015. 11. 06. 1.3억 원을 선행 투자했고, 2016. 08. 01. 13.7억 원을 후행 투자하여 2회에 걸쳐 총 15억 원을 투자했다. 해당 투자계약서³⁶⁾를 살펴보면 ‘투자사는 총제작비로 투자한 13.7억 원과 기 투자한 기획개발 투자금 1.3억 원을 포함하여 해당 영화의 투자지분으로 전환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같은 출자사업에 문화계정 운용사로 선정된 AF사 역시 2016. 08. 05. 같은 날짜에 2개의 투자를 진행했다. 모태펀드를 통해 10억 원을 투자했고, 기업투자펀드를 통해 10억 원을 투자해서 총 20억 원을 투자했다. 기업투자펀드인 ‘FD펀드’는 2013년 KT그룹에서 영화, 드라마 등에 투자하는 영상투자펀드로 300억 원을 조성하였고, AF사가 운용³⁷⁾을 맡았다.
- 한편, 해당 영화는 2017년 말 경 모든 영화제작 작업이 끝났고, 미개봉인 상태다. 배급사와의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은 개봉 여부가 더욱 어려워 졌고, 투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이는 운용사가 당초 메인 투자사와 투자 배급사가 없는 작품에 투자하는 등 상업영화인데 전혀 상업적이지 않은 투자를 함에 따라 리스크 발생 우려가 높음에도 한벤투는 운용사가 제대로 투자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해당 영화에 투자한 운용사가 모태펀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점, 리스크 감당 여부가 불투명한 메인 투자사(제작사)인데도 투자한 점, 수익 창출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투자 배급사가 없는 데도 투자한 점, 한벤투 전문위원인 KD가 해당 영화에 투자를 지시한 점 등 위 진술을 종합해 보면 해당 영화의 투자 과정에서 KD는 한벤투 전문위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투자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

35) 한국 모태펀드 2015 1차 정시 출자사업에 해당회사가 접수한 사실은 한벤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선정결과는 미게시. 위 사항은 영화 <OOOO> 영화 투자계약서를 통해 확인함

36) 극영화 투자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투자사: FB조합 업무조합원 AA사, 제작사: 유한회사 OOOO문화산업주식회사)

37) ‘KT 1천억 펀드 조성으로 콘텐츠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K·BENCH, 2013.01.31. 기사

다. 다만, KD가 직접 투자 지시를 한 사실 및 사유 등에 대해서 해당 창투사로부터는 확인하지 못했다.

3) 특정 영화 지원 및 배제

(가) 지원 영화 현황

- 영화 <OOOO>(2015년 개봉)은 LD 감독을 비롯한 다수의 감독이 제작 설계를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LF 감독의 버전이 채택되어 촬영된 작품이다. 제작 초기부터 촬영 과정이 순탄치 않아 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정부, 기업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영진위 지원사업에서 영화촬영 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됨에도 문체부의 지시를 통해 2차례나 규정을 위반하고 지원이 이뤄졌다.
- 영화 <OOOOOO>(2016년 개봉) 제작 당시 AV사 대표인 LI가 AN사측에 한벤투에서 투자배급 지시가 있을 것을 언급하며 계약을 중용했다. 당시 AN사는 CJ 그룹이 정부의 외압에 상당한 부담이 있던 때로 계약할 경우 정부의 태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여기고 계약했다. 실제로 한벤투에서 직접 AN사측에 투자배급사 계약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영화 <OOO>(2017년 제작, 미개봉)은 이후 영화명이 <OOO>로 바뀌었다. 위 영화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제작자가 KD이고, KD는 직접 운용사 담당심사역에게 유선을 통해 자신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라는 연락을 취했다.
- 드라마 <OO OOOO>(2017년 방영)는 KD의 지시로 AR사에서 투자한 드라마다. 위 창투사는 2015년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문화계정 방송영상 분야에서 조합명 'FF펀드'로 선정되었고, 모태펀드 출자액은 150억 원이다. 위 드라마에는 2016. 8.경 2 차례에 걸쳐 총 59억 원을 투자³⁸⁾했다.

(나) 배제 영화 현황

- 영화 <아가씨>(박찬욱 감독, 2016년 6월 개봉)는 CJ E&M이 모태펀드에 투자를 신청했고, 모태펀드가 투입된 여러 투자조합 또한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한벤투

38) 한국모태펀드 2015년 1차 출자사업 계획 공고, 13~17.3. 문체부 출자 모태 자펀드 프로젝트 투자 현황

에서 박찬욱 감독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하며 배제 지시를 전달했고, 모태펀드 투자는 배제됐다.

- 영화 <덕혜옹주>(허진호 감독, 2016년 8월 개봉)는 해당 영화의 제작사에 국정원이 직접 연락을 해서 국정원의 시나리오 사전 검열 행위를 전달했다. 이 같은 사전 검열이 이루어진 사유에는 시나리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내용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자기검열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변경 했다. 투자 펀딩 과정 중 계약 직전에 불분명한 이유로 투자가 철회되었고, 개인 투자자로부터도 투자받기가 어려웠던 과정에서 제작사 대표는 창투사로부터 모태펀드에서 지원 배제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 영화 <밀정>(김지운 감독, 2016년 9월 개봉)은 워너브러더스 대표 최재원이 영화 <변호인>이후 제작했다. 한벤투에서 모태펀드 운영사 담당 심사역에게 영화 <밀정> 제작사가 외국자본으로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며 배제 지시를 했고, 모태펀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영화 <판도라>(박정우 감독, 2016년 12월 개봉)는 국정원의 영화 분야 사전검열이 해당 콘텐츠 사업 담당부처인 문체부를 비롯한 영진위 뿐 아니라 원전 소재의 영화인 <판도라>를 통해서 산자부에서도 진행하였다. 원전 사업 담당부처인 산자부의 자발적 보고인지 국정원의 요청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기적인 동향보고가 이루어진 정황은 확인되었다. 이는 청와대로 보고가 되고, 산자부는 문체부에 모태펀드 투자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한벤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시를 받고, 창투사에 해당 영화에 대한 배제 지시를 하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영화 '판도라'의 모태펀드 투자 배제는 관철됐다. 이러한 영화 <판도라> 모태펀드 배제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문체부, 한벤투 만이 아니라 산자부까지 동원된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관여 아래 실행되었다.

(다) 그 결과 영화 <OOOO>, <OOOOOO>, <OOOO>, <OOO>과 드라마 <OOOOOO> 등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특혜를 받았고, 반면에 영화 <아가씨>, <덕혜옹주>, <밀정>, <판도라> 등은 배제 조치를 당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영화 및 영화인의 정치적 성향을 구분하여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관리 대상으로 두고,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의도적인 지원 및 배제를 실행했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배제”, “특혜” 등은 청와대·국가정보원·문체부·영진위 등의 총체적 관여 아래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과 해당 창투사에 직접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 가. 이명박 정부 시기 영진위 출자사업이 모태펀드로 이관된 배경과 실행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 나.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실질적인 작성자 및 구체적인 실행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 다.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등재 사유 및 해제 사유 등 위 블랙리스트 배제 기준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지 못했다.
- 라.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작동과 관련하여 청와대 관계자 및 문체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 관계자들의 비위행위가 조사되지 않았다.
- 마. 모태펀드 출자사업 심사위원들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인지하였는지, 가담 정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바. 모태펀드 운용에 개입하기 위해 실행된 제도인 문화콘텐츠 전문위원 신설, 출자심 의위원회 구성원 추가 구성, 외부전문가 풀 제도 구상, 영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의 착안자와 착안 경위 등에 대해 보다 분명한 조사가 필요하다.
- 사. 문화·영화계정을 통한 배제 및 지원 지시에 대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영화시장은 자본이 움직이는 관계로 피해 사실 및 부당 행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해당계정을 통한 정부기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 아. 영화 <OOOO> 제작 과정 중 한벤투 전 전문위원 KD의 개입 여부에 대한 분명한 사실 및 모태펀드 배제 및 지시 실행 과정에서 비위 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 자.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벤투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 및 경위를 조사하지 못했고, 운용사에서 제대로 투자행위를 했는지, 투자행위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했는지 등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해태가 드러났으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

3. 추가 조사의 필요성

가. 모태펀드 투자 과정에 특정 영화 및 영화인에 대한 지원 및 배제 실행이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광범위한 개입이 추정되나 위원회 조사 한계 상 사실 확인을 위한 면밀한 접근이 어려웠다. 다만, 문화·영화계정을 통한 배제 및 지원 지시에 대한 사실이 일부 확인된 만큼 추후 해당계정을 통한 정부기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 한벤투 전문위원으로 취임한 KD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정부의 영화 정책에 편승하고 제도화를 꾀하여 유선 통화 및 구두만을 통해 지원 배제 활동을 정교하게 실행하였다.

특히, 2014년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로 등재된 창투사를 2015년에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하고, 자신의 이해가 걸린 영화에 투자하도록 지시하여 사익을 추구하였다. 일부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대부분 유선으로 진행되는 지시는 사실 입증이 어려웠고,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는 사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였다. KD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분명한 사실 관계 조사가 필요하다.

다. 한벤투의 모태펀드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위 KD만을 통해서 실행했다고는 볼 수 없다. 청와대 및 문체부를 비롯한 타 부처 소관 담당자 등을 통해 한벤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의 협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벤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었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사실상 한벤투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자료 조사 뿐 아니라 대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체부와 중기부의 답변도 동일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의 자금도 함께 출자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시장에서의 영업 비밀을 사유로 들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변이다. 심지어 관리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한벤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보다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체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 조사가 필요하며 한벤투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00

최00 등의 인사개입을 통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100

최OO 등의 인사개입을 통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8직특2[최OO 등의 인사개입을 통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의 취지

이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인 최OO이 인사개입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실제로 특정인을 위한 부정한 인사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제기되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 ① 최OO이 작성한 다빈나오 문건이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된 후 연극단체 다빈나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었다.¹⁾ 다빈나오 문건의 경우는 최OO이 사적으로 가까운 인물을 특정 자리에 배치하기 위해 만든 문건이라고 판단되

1) 이에 대해 최OO은 ‘사실과 다르며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와 지원사업 배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18.11.6.)

나, 당시 사업부서의 인사추천서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② 최OO은 문체부 김종덕 장관의 부처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 선임과 관련한 인사권 행사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인사권 행사는 인사권자의 재량범위 내에 있으며, 최OO은 정책보좌관으로 인사결정권자를 보좌하는 역할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최OO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인사권 행사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청와대 등 외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붙임 : [최OO 등의 인사개입을 통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8직특2, 최OO 등의 인사개입을 통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이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인 최OO 등이 인사개입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실제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부정한 인사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제기되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 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8. 3. 2. 제27차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의결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최OO이 문체부의 부처 내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사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및 이를 통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정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어떤 경위를 통해 블랙리스트가 전달되고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수사보고 [문체부 영상·예술분야 관계자,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 문건 관련 정OO 영상콘텐츠과장 통화내용보고]	1심 ²⁾ 형사소송기록 17609~17614	2018. 2. 10.
2	영상 예술분야 관계자,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	1심 형사소송기록 17615	2018. 2. 10.
3	최OO 진술조서 (2016. 11. 29.)	1심 형사소송기록 23361~23387	2018. 2. 10.
4	고OO 진술조서 (2016. 12. 01.)	1심 형사소송기록 25260~25281	2018. 2. 10.
4	고OO, 최OO, 김OO 녹취서	사건번호 2016형 제90143호	2018. 2. 10.
5	현안참고자료(3.27)_장애인 연극단체 '다빈나오' 관련	1심 형사소송기록 23388~23395	2018. 2. 10.
6	감1-1_++감사원 문체부 감사 보고서	감사원	2018. 2.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2017고합102(김기춘 외 3인 직권남용권리방해등 사건)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OO	문화체육관광부 前 예술정책과 과장	참고인 진술조서 (2018. 1. 12.)
2	강OO	문화체육관광부 前 예술정책과 사무관	참고인 진술조서 (2018. 1. 12.)
3	양OO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개발부장	참고인 진술조서 (2018. 1. 25.)
4	이OO	문화체육관광부 前 공연예술과 사무관	참고인 진술조서 (2018. 2. 8.)
5	임OO	문화체육관광부 前 공연예술과 과장	참고인 진술조서 (2018. 2. 8.)
6	김OO	문화체육관광부 前 운영지원과 과장	사실확인서 (2018. 3. 9.)
7	강OO	문화체육관광부 前 운영지원과 과장	참고인 진술조서 (2018. 3. 12)
8	나OO	문화체육관광부 前 운영지원과 사무관	참고인 진술조서 (2018. 3. 13.)
9	OOO	문화체육관광부 前 게임콘텐츠산업과 주무관	참고인 진술조서 (2018. 3. 16.)
10	김OO	문화체육관광부 前 예술정책국 국장	전화면담보고 (2018. 4. 30.)
11	방OO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회장	전화면담보고 (2018. 5. 2.)
12	OOO	문화체육관광부 前 예술정책과 주무관	전화면담보고 (2018. 5. 2.)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정책보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³⁾

(1) 정책보좌관의 직무

제3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 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2. 해당 부 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3. 관계 부 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나. 최OO

최OO은 2014. 10. 2.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으로(3급)에 임용되어 김종덕 장관(2014. 8. 29.경 ~ 2016. 9. 4.경 근무) 및 조윤선 장관 부임(2016. 9. 5. 부임) 시기를 거쳐 2017년 1월 20일까지 장관의 정책보좌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최OO의 인사개입 의혹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수사보고 [문체부 영상·예술분야 관계자,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 문건 관련 정 OO 영상콘텐츠과장 통화내용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김OO 내부망 PC에서 발견된 「단체징계 0206.hwp」 파일(첨부1)
 - 파일경로 : G\지옥의 문(예술)\김OO(2014-2015)\징계\0206.hwp
 - 작성일자 : 2015. 2. 6. 13:52:00
 - 수정일자 : 2015. 2. 6. 13:52:00

3) 대통령령 제24985호, 2013. 12. 11.

- 접속일자 : 2016. 12. 27. 03:27:52
- 주요내용
 - 영상분야, 예술분야 업무추진 과정에서 책무를 소홀히 하여 정책품질의 저하 및 불필요한 혼선(불신)을 초래한 관계자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
- 조치내용
 - ① 정OO(영상콘텐츠산업과장) : 서면경고 * 인사 조치는 별도검토
 - ② 윤OO(5급, 문화산업정책과) : 서면 경고, 인사 조치 (3월)
 - ③ 강OO(5급, 예술정책과) : 서면 경고
 - ④ 이OO(5급, 공연전통예술과) : 서면 경고
- 조치 개요
 - ① 영상콘텐츠산업과 정OO(4), 윤OO(5)
 - 영상자료원 등 소관 산하단체 지도감독 미흡
 - 산하단체 관련 업무추진(보고) 과정에서 내용의 객관성, 체계성 미흡으로 인해 불필요한 혼선 초래
 - ② 예술정책과 강OO(5)
 - 예술인복지재단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대상자의 경력확인 미흡, 보도자료 오기 등 행정절차 부실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초래
 - ③ 공연전통예술과 이OO(5)
 - 국립오페라단장 선임 과정에서, 대상자의 경력확인 미흡, 보도자료 오기 등 행정절차 부실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초래
- 정OO 영상콘텐츠과장 통화 주요내용

정OO, 윤OO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2015. 1.경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이사 선임안’을 올렸는데 그 중에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고, 이 때문에 징계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징계지시는 장관을 통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사 선임안을 받아본 최OO 장관정책보좌관이 개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청와대에서 교문수석실을 통해 징계지시를 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 강OO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예술정책과 소관인 연극인복지재단 건으로 문제가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문건 기재대로 서면 경고를 받지는 않고 저작권정책국으로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이OO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한예진 국립오페라단장 선임 시 이력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조치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문건 기재대로 서면 경고를 받지 않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이OO은 블랙리스트가 아닌 별개 징계사유로 인한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OO, 윤OO, 강OO는 블랙리스트건과 관련하여 징계조치가 논의된 것이며, 위 조치는 모두 최OO 장관정책보좌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⁴⁾

(2) 최OO의 진술조서 (2016. 11. 29.), 1심 형사소송기록 23361~23387

최OO은 2016. 1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02호 검사실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장애인 연극단체 ‘다빈나오’와 ‘방OO’에 대해 2015. 3.경 문체부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특히 예술국에서 그런 면이 많이 있다고 하여 이를 조사하게 되었다. 조사한 결과 예술국 OOO 주무관과 김OO 예술국장이 지원한 연극단체 ‘다빈나오’가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는 결국 ‘방OO’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김종덕 장관에게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장관이 평상시 보조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었고, 보고를 받은 김종덕 장관은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장관에게 보고를 하였지만 바로 피드백이 없어서 고OO를 통해 보조금 비위를 바로 잡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평소 고OO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하였기에 김OO과 고OO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자료를 보면 ‘다빈나오’, ‘방OO’가 좌파 성향을 갖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성향을 주로 나열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행태도 적발할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현 정권을 비판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문화계 종사자들에 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문체부 내부 문건을 고OO나 김OO에게 유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진술하였다.

고OO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김OO에게 주었는데 이후 김OO이 고OO에게 줬을 것이

4) 이에 대해 최OO은 ‘오히려 징계만류를 건의했고 정OO 과장의 경우 공연전통예술과장으로 보직이 동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19. 1. 31.).

고, 고OO에게 준 이유는 최순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줬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다빈나오’나 ‘방OO’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고OO의 진술조서 (2016. 12. 1.), 1심 형사소송기록 25260~25281

고OO는 2016. 1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02호 검사실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평소 진보성향이나 현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최OO에게 알아오라고 시킨 적이 있으며 최순실이 평소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는 사람들을 항상 좌파라고 표현하였는데, 그런 사람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보라는 말을 하였고, 누구에게 듣고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특정하여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녹취록 캡처부분 비공개)

녹음된 대화에서 연극단체 ‘다빈나오’와 ‘방OO’에 대해 언급하고, 최OO은 위 단체와 방OO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고OO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에 대해 인정하였다. 최순실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고 평소 최순실의 말을 최OO에게 해 냈으니까, 그래서 가져온 것 같다고 하였다. 최순실에게 보고할 수 있게 김OO에게 표로 작성하라고 시켰는데, 당시 최순실에게 보고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최순실과의 관계와 상관 없이 독자적으로 누구를 알아보고 뒤를 캐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녹취록 캡처부분 비공개)

또한 녹음된 대화는당시 문체부 1차관인 박민권을 교체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는데, 어떠한 질문에 최OO이 박민권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차은택과 관련하여 나쁜 짓을 많이 하니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최OO은 2015년 말경, 차은택이 하는 업무 중에 문체부 1차관 소관 업무가 많았는데, 진술인이 차은택을 싫어하여 문체부 1차관을 진술인 쪽 사람으로 앉혀서 차은택을 견제하자는 취지로 나눈 대화라고 하는데, 어떠한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고, 최OO이 와서 푸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고OO, 최OO, 김OO 녹취서, 사건번호 2016형 제90143호

고OO, 김OO, 최OO이 나눈 대화의 녹취서 일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대화는 2015. 4. 7.경에 녹음된 것이다.

최OO : 형, 그리고 하나 얘기할게. 장, 그 소장한테 ***장애인예술원이 하나 생겨요. 장애인예술센터가 생기는데 거기 지금 움직임이 좌빨을 임명하는데

(중간생략)

최OO : 그러니까 내가 뭘 이야기하는지 잘 봐요. 이 사람을 심으면 K가 ** 그러니까 장애인 예술단 관련해 갖고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교수인데, 진보의 좌빨들이 방OO라는 애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들도***

(중간생략)

김OO : 검증이 올라갔어요?

최OO : 지금, 어. 검증 올라갔어. 1순위가 방OO가 된 거야.

김OO : 지금 올라갔으면은...

최OO : 까야지. 예를 들어서 VIP***왜 그러겠어.

김OO : 그거는, 그거는 정리해서 드리래요. 그냥, 그냥, 그거, 그거, 형이 인선된 거 어떻게, 어떻게, 절차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만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최OO : 그래, 어.

김OO : 제가 여기서,

최OO : 예술, 예술국장, 김OO이를 쳐야 돼, 김OO이를. 지금 현 예술국장.

고OO : 예술국장이 다야?

최OO : 어.

고OO : 그제 지금 임명됐어?

최OO : 어, 어.

김OO : 예술국장이 있는데, 예술국장이 그 자리를 임명하는 걸 했는데, 방OO를 1순위로 올렸다는 거 아니야, 지금 장관이 밀어서, 그런데 장관 후보.

최OO : 어 개가 계속 민 거야

김OO : 장관도 나중에, ‘아, 어떻게 하라고. 자네마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예술국에서 추천해갖고 한 걸 강력하게 국장이 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데, 내가 먹는 상황에서, 어? 그럼 그 사람 말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그 예술국장 **를 쳐야 되는 거야, 김OO **를.

고OO : 김OO을 떠나서 지금 들어오려는 사람을 다 막으면 되니까.

최OO : 아니, 그러니까 김OO이.

김OO : 김OO이라는 사람이,

최OO : 방OO를 추천한 거야.

김OO : 추천을 해서 방OO라는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게 1순위인데 그 사람이 좌고 애도 좌니까.

최OO : 아니, ** 뭐 옆에 짝 깔려있어. 우라,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옹호해 주기 위해서 방OO가 ***

김OO : 장애인예술센터

고OO : 무조건 ***일단 그거 하나만 자료, ‘그게 뭔데? 누군데?’ 하고 자료 하나만 딱 던져주면 개는 모가지야.

최OO :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아, ** 보수정권에서, **, 좌, 좌빨 애들을 데리고 와 봐. 일단은 그거 내가.

(5) 현안참고 자료 (2015. 3. 27.), 다빈나오 관련 문건

이 문건은 최OO이 2015년 3월 27일 작성하여 김종덕 장관과 최순실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

1. 장애인 연극단체 ‘다빈나오’ 지원 관련

- 본인 트위터에 좌파 성향 정치 게시물 게재 및 리트윗
 - 박근혜 대통령과 신천지 연관 리트윗, 세월호 관련 리트윗, 표창원의 국정원 관련 언급 리트윗
 - 불법집회에 참가한 경험을 트윗하여 팔로워들에게 자신의 좌편향된 정치적인 성향을 은근히 공개. 세월호 광화문 집회 참가를 강조
 -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예술가들에게 접근하여 의식화를 통한 80년대식 운동권 문화예술을 전파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법 활용
 - 야당의 주요정치인과 집중적으로 팔로잉 되어 있음(권영길,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등)
- 김OO과 방OO의 연결고리는 고OO / 심사위원회는 방OO 마피아로 구성

5) 이에 대해 문체부 김OO 국장과 OOO 주무관은 ‘최OO의 주관적 판단이며, 당시 다빈나오를 아는 공무원이 없었고 방OO 마피아도 ‘허구’라고 주장함(19. 1. 31.).

- 김OO과 방OO는 페이스북 친구로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이지만 직접적인 관계 노출보다는 대리인을 통한 관계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
- 예컨대 2015년 '다빈나오' 공연예정작품은 고OO의 '아주 특별한 우리 형'으로 결정
- '다빈나오'에 2,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방OO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하여 사실상 '방OO마피아'를 형성함
- 심사위원의 프로필이 잘못 기재되거나 과장된 내용도 다수 발견

분야	성명	분야	기재된 직위	실제 직위
분야심의	조OO	소설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소설가
분야심의	고OO	소설, 동화	한국장애인고용안정 협회장	소설가 동화작가
분야심의	조OO	미술평론	성결대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	미술평론가 동국대 겸임교수
분야심의	곽OO	사회복지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강사

- 심사위원 조OO은 사회비판적인 성향의 작품을 주로 무대에 올리는 이OO 연출자나 연희단거리패와 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심사위원 조OO은 문체부 장애인 체육과장 재직 시절 현 장애인문화예술담당자 OOO 주무관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으며, OOO 주무관은 2012년 1년간 방OO씨의 문화특보시절(이명박 정부) 비서로 일한 바 있어 조OO, OOO, 방OO 삼자의 관계가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심사위원인 고OO은 자신의 작품을 올릴 연극단체를 자신이 직접 선발하는 절차적인 불합리함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심사위원의 구성은 '방OO마피아'라 칭할만한 장막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방OO와 고OO의 관계

- 2011년 (사)한국장애인문화진흥회에서 활동하면서 방OO가 회장뿐 아니라 장애인식바로잡기연구소를 맡아 활동을 할 때 고OO도 함께 그 역할을 맡음
- 구상숯대문학상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방OO는 위원을, 고OO은 심사위원을 맡아 함께 활동하고 있음
- 2011년 '그래도 행복해지기' 저술에 공동 참여
- 방OO 저 '한국장애인사' 편찬회에 고OO 참여
- 계간지 '연인' 공동참여
- 각종 세미나 프로그램에 좌장 및 토론자로 공동참여
- 결국 방OO와 고OO은 문학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철저히 공생 및 연대관계에 놓여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방OO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노무현 정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는 방OO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철학과 함께

할 수 없는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하여 송실대학교 사회복지 쪽의 인맥과 일부 작가와 예술가들을 통하여 인의 장막으로 철저히 이를 은폐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문화예술정책 담당 주무관인 000를 활용하여 문체부 내의 주요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장애인예술 관련단체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

(6) 감사원, 문체부 기관 운영 감사(2017. 1. 19. ~ 3. 10.) 보고서

2017. 1.경 실시된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빈나오(김00 대표)는 2015. 6. 17. 마감인 ‘기초공연예술 활성화(대학로예술극장 3관대관)’ 사업에 <서울 특별한 병구씨>로 지원하였으나 지원 배제되었다.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방00회장)은 장애인문화예술 향수지원-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 지원 사업에 <한국장애인문학 정체성 확립과 경제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를 과제로 지원하였으나 지원배제 되었다.

(7) 2017고합102 김기춘 외 3인 판결 중 ‘다빈나오’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는 2017. 7. 27. 김기춘 외 3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판결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2015년 사업 순번 154에서 다빈나오의 ‘서울 특별한 병구씨 배제 등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 2015년 사업 순번 154에서 다빈나오 부분, 판결문 226면

154	2015-06-13	2015-07-08	대학로예술극장 3관 대관	서울 특별한 병구씨	다빈나오	공연예술전통과 이00 등/ 공연기획부 이00 등	유죄
-----	------------	------------	---------------	------------	------	----------------------------	----

특검은 이와 관련하여 당시 공연예술센터 공연운영부장 이00으로부터 범죄일람표 152번부터 155번까지 배제 사업에 대한 진술을 받았고, 범죄 증거기록으로 삼았다.

이00은 특검 진술서(2017. 11. 10.)에서 ‘다빈나오’ 배제가 포함된 152번부터 155번까지 사업(대학로예술극장 3관 대관)에 대하여 대상자 선별을 위해 지원신청자 명단을 보내라는 지시를 유선으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이00 사무관으로부터 받았고 2015년 5월 20일, 6월 16일에 신청자 명단을 메일로 발송했으며 6월말 이00으로부터 배제

지시를 유선으로 받았다고 기재하였다. 한편, 동 사업은 “상시 공모 사업으로 4월 27일 공모 공지가 나간 후 6월 경 발표 예정 사업이었는데, 배제 지시로 선정 발표가 늦게 진행되어 6월 14일 경 극장에 한 단체가 심의 지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이를 근거로 이OO 사무관에게 ‘심의가 지연되면 일 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 하였으나 이OO은 ‘일단 기다려라’는 대답을 듣기도 하였음. 152번부터 155번까지 채점 결과 탈락 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이OO(진술조서 2018. 1. 17.)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대학로예술극장 3관 대관 배제 사건과 관련하여 “제 기억에는 위 사업 신청자 목록을 청와대 김OO 국장님 등에게 메일로 보냈고, 이후 관광정책과로 옮기게 되었기 때문에 배제 지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가벼운 마음이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 사업에 대한 배제 지시를 이OO 부장에게 하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참고인 김OO의 진술조서 (2018. 1. 12.)

참고인 김OO 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과장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인의 PC에서 발견된, 2015. 2. 6. 작성 ‘단체징계 0206.hwp’ 파일에 따르면 강OO 사무관은 예술인복지재단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대상자의 경력확인 미흡, 보도자료 오기 등 행정절차 부실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서명 경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하였고, 2015. 상반기 강OO 사무관은 예술인복지재단 심사위원, 평가위원 추천 과정에서 좌파 인사를 추천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정책실로 인사조치 된 것이냐는 질문에 문제가 된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위원이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 강OO의 진술조서 (2018. 1. 12.)

참고인 강OO 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추측 진술로 비공개).

(3) 참고인 양OO 진술조서 (2018. 1. 25.)

참고인 양OO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개발부장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6년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에 대해 당시 예술위 고OO 전문위원이 이 사업 담당자여서, 제가 고OO 전문위원에게 심사위원을 미리 만나서 배제 명단을 드리라고 지시했으며, 고OO 전문위원이 연극 분야 박OO, 문화일반 분야 이OO 위원과 심사 전에 미리 만나 배제 명단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이 사업 역시 문체부에 심사위원 후보를 미리 송부한 후 문체부가 최종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었으며 역시 협조가 가능한 심사위원을 미리 구성하는 방식이었다고 진술하였다.

(4) 참고인 이OO의 진술조서 (2018. 2. 8.)

참고인 이OO 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 당시 최OO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국립오페라단장 선임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고, 나중에 국립오페라단장 선임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김종덕 전 장관이 최OO에게 '이제 국립오페라단에서 손을 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하었는데, 이에 대해 아는바가 있는가요

답 : 네.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최OO이 한예진에게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했고, 최OO은 국립오페라단장 선임 건뿐만 아니라 문체부의 인사 조치에 전반적으로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OO이 문체부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 번은 김종덕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임OO 과장에게 "심OO 팀장(국립오페라단)을 자르기로 했냐"고 묻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장관이 심OO 팀장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 알아보았더니, 한예진의 밑에서 수족처럼 일했던 심OO 팀장이 김OO 팀장에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최OO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들었습니다.

문 : 최OO과 김OO은 어떤 사이인가요

답 : 원래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압니다. 임OO 과장님이 공연예술과장으로 계실 2015년 쯤, 최OO과 김OO이 술을 먹고 싸워서 경찰이 온 적도 있었는데⁶⁾, 당시 최OO이 김OO에게 '국립오페라단장 자리에 앉혀주면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굴더니, 이제 내 등에 칼을 꽂는 구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김OO이 국립오페라단장으로 선임되는데도 최OO이 굉장히 많은 힘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오페라 일은 최OO이 관여했는데, 김OO이 최OO을 건너뛰어 장관에게 '너무 시어머니가 많아서 일을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최OO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알고, 최OO이 김OO에게 감정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6) 이에 대해 최OO은 '싸워서 경찰이 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18. 1. 31.).

이어서, 이OO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체부로 발령이 났다가 취소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임OO 과장님은 제가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원래는 산하 기관장 인사 건에 대해 사무관이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과장이 나가게 되면 김종덕 등의 잘못된 인사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니, 저를 문책함으로써 인사실기를 희석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날 무렵, 임OO는 최OO에게 접촉하여, ‘관례적으로 1년이 지나면 문체부 본부로 돌아와야 한다’고 20분가량 소위 ‘머리 하얀 사람이 머리 검은 사람에게 비는 정도’로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OO이 굉장히 어렵게 승낙을 해주었다고 들었습니다.7) 그래서 당시 인사팀장인 나OO이 관광정책과장인 강OO에게 저의 인사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예술정책국장인 김OO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저는 1년 만에 관광정책과로 돌아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김OO 과장에게도 연락이 가, 김OO 과장이 저에게 ‘관광정책과로 가게 되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제 송별식 일정까지 잡아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부로 발령 나기 전날, 나OO 팀장에게 저만 본부로 발령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임OO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셨습니다. 저는 이후 임OO 과장님이 당시 운영지원과의 강OO 과장에게 문의하니, 다시 생각해보니 지금 이OO이 돌아오는 것은 김종덕 장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인사권이 없는 최OO이 인사를 쥐고 흔들었다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5) 참고인 임OO의 진술조사 (2018. 2. 8.)

참고인 임OO 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과장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 당시 이OO 사무관은 한OO 국립오페라단장의 경력 오기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최OO에게 듣기로는 언론보도자료를 2013년이 아닌 2003년으로 오기하여 인사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정OO은 위 인사 조치에는 최OO 장관정책보좌관이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관해 아는바가 있는가요.

답 : 네 있습니다. 실제로 최OO이 인사 조치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문 : 진술인이 간곡히 부탁하여 이OO 사무관은 1년 뒤 다시 문체부로 복귀할 예정이었지요.

7) 이에 대해 최OO은 ‘직원의 인사권과 관련된 내용은 저의 권한 밖의 사안이라고 명확하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함(19. 1. 31.).

답 : 네. 저는 제가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좌천되었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 1년이 다되어가니 복귀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냐고 간곡히 부탁했고, 인사과에서 구두내락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그전에 최OO이 반대하지 않을까하는 인사과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직접 최OO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OO이 ‘안된다. 그 당시 이런 일을 한 사무관을 장관님이 계시는데 다시 불러오는 건 안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무릎만 안 꿇었지, 젊은 사람에게 간곡히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사과장인 강OO가 최OO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OO에게 간신히 허락을 받고 그 이야기를 인사과에 전달하여, 인사과에서 관광국으로 이OO 사무관을 발령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인사과에서 이OO사무관에게 연락을 하여 관광국에 발령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후 발령이 있기 1일 전쯤 갑자기 인사과에서 이OO에게 연락하여 발령이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 강OO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최OO이 안된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OO는 최OO과 매우 친해서 인사과장까지 올랐다는 이야기가 무성한 자입니다.8)

문 : 그러나 재발령 당일, 최OO이 재발령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이OO 사무관은 2년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되었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국립오페라단 한예진 전 단장 선임에도 최OO이 관여하였지요.

답 : 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김OO의 선임에는 최OO이 관여했던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김OO은 제가 담당과의 실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저가 아닌 최OO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 공연과장 이야기를 잘 안 들어도 된다. 우습게 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OO 임명 후에 김OO 국장이 좌천되기도 했는데, 실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김OO 국장과 최OO이 사이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문 :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답 : 최OO이 국립오페라단 사무국장(본부장, 이하 ‘사무국장’) 인사에 관여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페라단 사무국장은 행정 뿐 아니라 예술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인사들이 맡곤 했습니다. 저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OO이 자기가 원하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최OO과 상의를 했는데, 뮤지컬을 했던 사람을 후보로 생각하여, 저와 최OO은 위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인사적합성을 고려했지만, 나중에 보니 최OO은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OO은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김OO이 원하는 사람도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행정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장관은 저에게 그런 것도 있지만 김OO 단장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김OO 단장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본인은 외부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쓰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최OO은 자신의 얘기를 임OO도 안 듣고, 김OO도 안 들었다는 생각에 짜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OO이 다시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서 문체부 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내려 보내라고 했습니다. 김OO도 위 사람을 검토해보니 외부 사람보다 좋은 것 같다고 하여 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 김OO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여, 최OO이 국립오페라단 일에 관여하지 않게 하고, 공연과장으로 일원화해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종덕 장관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B 국장 등에게 해당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B가 최OO에게 해당 내용을 보내어, 최OO이 제가 장관에게 자신을 배제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오해를 하여 저에게 전화해서 성질을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김OO과 저, 최OO 셋이 만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OO이 장관에게 직접 그런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 참고인 김OO의 사실확인서 (2018. 3. 9.)

참고인 김OO 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과장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인은 정OO, 윤OO, 강OO, 이OO의 인사조치 계획은 장관(및 때로는 장관의 지시를 전달 받은 당시 기획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조치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당시 장관은 “위 인사들의 문제가 있으니 징계 내지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4인에 대한 징계수위가 문건에는 서면경고로 되어있었는데 반해 실질적으로 좌천성 인사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 초기에 장관께서 동 인사들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징계를 하라, 인사 조치를 하라 등 지시가 오락가락 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밟기가 곤란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최종적으로는 장관이 거명한 일부 인사에 대해 현재 부서에서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하는 선에서 정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인사 조치는 장관의 강한 뜻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에는 장관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의 개입이 있었다 없었다는 생각하지 못했고, 다만, 사무관급에 대해 이름까지 거명하며 직접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관계자로부터 무슨 이야기 내지는 문제제기를 들은 것이 있는 모양이라고만 추정할 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최OO 정책보좌관의 인사개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고, 최OO 보좌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최OO 보좌관이 실제 어떤 활동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다만 최OO 보좌관이 각 실국의 정책 등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파악과 분석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때로는 각 실국의 활동과 업무에 과도한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8) 이에 대해 최OO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함(19. 1. 31.).

(7) 참고인 강OO의 진술조서 (2018. 3. 12)

참고인 강OO 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과장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OO 사무관 인사발령 시 최OO의 개입 여부에 대해 “이OO 사무관은 오페라단장 선정 시 보도자료를 잘못 처리하여 제가 부임 전에 이OO이 징계성으로 인사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징계성 인사로 인한 인사조치의 경우 본부에 복귀하기 어렵다. 이것은 인사원칙에도 부합하며 보통의 경우 2년 전보제한에 걸려 2년 안에 본부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하였다.

OOO의 경우 진술인이 근무할 시기는 아니었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별정직으로 근무 중 일반직 전환 후 국민소통실로 전보되었고 진술인의 생각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최OO의 경우 문제가 되는 인물의 경우에만 말을 했지 임의로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최OO 보좌관의 직접적 인사개입 여부에 대해 시스템상 최OO의 인사개입은 불가능하고 당시 인사담당자들이 그것을 따라준다면 금세 들통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불법적 인사개입 및 인사지시는 따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정책보좌관으로서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을 지키는 수준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관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8) 참고인 나OO의 진술조서 (2018. 3. 13.)

참고인 나OO 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사무관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지옥의 문’이라는 문건에 대해 아마 그런 문건이 있다면 복무파트에서 작성되었을 거라 생각되고, 정황상 과장의 위치에서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당시의 기억으로는 서면경고 부분이 복무파트에서 상신되었으나 전보 조치하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고, 이OO 사무관의 경우 김OO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소속기관으로 인사발령이 있었고 서면경고는 정식기록으로 남아 있기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경력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무관의 인사이동까지 관여하는 경우가 드문데도 불구하고 OOO 주무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당시 김OO 과장으로부터 지시가 있었고, 당시 계임

과에서 이미 문화산업과로 보직이 있었는데, 향후 콘텐츠와 관련 없는 부서로 이동시키라고 해서 콘텐츠와 관련 없는 부서로 전보시킨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000에 대한 인사 조치는 게임업계의 민원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였다.

최00 보좌관의 인사개입에 대해서는 차관주재로 실장들이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행되기에 누군가의 임의개입이 힘든 게 사실이고 승진인사의 경우 시스템 상 외부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9) 참고인 000의 진술조서 (2018. 3. 16.)

참고인 000 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주무관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화산업정책과로 전보되었다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소통실로 전보된 이유에 대해 2012년~2013년 경 웹보드게임 관련하여 규제도입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추진을 하면서 관련 산업계 관련자들이 국회 등을 방문하여 제가 업체를 압박하고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며 소문이 와전이 되었다. 최00 보좌관이 국회 근무할 때 섰다운 제도와 관련하여 마찰이 있었다. 향후 최00 보좌관이 문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 후 게임과 강00 과장을 만나 000이란 사람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강하게 압박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강00 과장은 제도도입 당시 관련업체와의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고 진술하였다.

여명숙이 게임물관리위원장으로 취임한 첫날 장관과의 티타임을 가지며 000이라는 사람이 관련업체를 압박하고 부적절한 일을 많이 했다고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했으며, 그 이야기를 들은 장관은 담당국장과 과장을 불러 부적절한 이야기가 나오는 직원은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했고, 그 후 문화산업정책과로 옮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문화산업정책과는 같은 국 소속이니 관련 없는 부서로 옮길 것을 지시해 다시 소통실로 전보되었다고 한다. 6급 이하 직원 인사에 포함되어 미디어국 소속의 방송광고과로 가게 되어있었으나 인사발령 당일 오전 인사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들었으며, 미디어국 역시 같은 콘텐츠실 소속이니 더 멀리 보내라고 해서 홍보협력과로 가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진술인은 최00 보좌관과 한 번도 이야기 해 보지 않았으며,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6월 4일 인사의 경우 홍보협력과의 직원과 진술인 둘만 인사발령이 있었기에 모두 의아해하는 인사발령이었다고 진술하였다.9)

(10) 참고인 김OO의 전화면담보고 (2018. 4. 30.)

참고인 김OO은 위원회 전문위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최OO이 2015. 3. 27.자 작성·보고한 현안참고자료(다빈나오 언급 문건)와 관련해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이음센터’)가 출범할 때 문체부(해당부서)에서는 1대 이사장으로 방OO를 추천했으나, 최OO은 김OO 한빛맹학교 교장을 추천하려 했다. 방OO는 당시 장애인 단체 8곳의 추천을 받았고 그동안의 장애인 관련 활동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음센터 이사장으로 1번 방OO, 2번 OOO를 추천하자, 최OO이 방OO를 내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방OO를 좌파인사로 몰아간 것이다. 당시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하러 가면 매번 아침에 한 시간 가량을 최OO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었고, 이음센터 이사장 관련 보고를 하러 갔을 때도 최OO의 보고 후 장관이 나를 심하게 질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왜 좌파 인사를 추천하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최OO이 OOO를 1순위로 추천했으나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OOO는 낙마했다. 나 역시 최OO이 다빈나오 문건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¹⁰⁾

강OO 사무관 역시 최OO이 장관에게 보고를 해 인사 조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를 장관이 알 수도 없으며 이런 이유로 인사 조치를 한다면 버틸 사람이 누가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 장관이 시시콜콜 알 수 없는 것들과 청와대에서 알 수 없는 내용들조차 최OO이 보고를 한 것이다. 해당 부서에서만 아는 내용을 장관과 청와대에서 알고 있어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기관 단체장 선임건의 경우도 해당 부서에서 1, 2, 3 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순위가 바뀌어 있거나 순위 밖의 인물로 결정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장관 보고 전에 최OO의 입맛에 맞게 바뀌어 보고된 것이다. 장관의 입을 통해 인사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지만, 최OO이 인사부분에 거의 관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11) 참고인 방OO의 전화면담보고 (2018. 5. 2.)

참고인 방OO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은 위원회 전문위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9) 이에 대해 최OO은 ‘강OO에게 물어본 적도 없으며 OOO 주무관의 보직 이동은 본인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함(‘18.11.6.)

10) 이에 대해 최OO은 ‘김OO이 당시 심한 허리디스크 증상 등 여러 요인으로 더 이상 당시 보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한 것을 감안해 장관께서 보직 조정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함(‘18.11.6.). 반면 김OO은 ‘허리디스크는 인사조치 전에 이미 완치된 상태’였다고 반론 주장함(‘19. 1. 31.).

같이 진술하였다.

다빈나오 문건에서 언급된 김OO 대표는 블랙리스트가 터진 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나와 묶어서 좌파로 몰아갔는지 억울할 뿐이다. 이음센터 설립 시 문체부 윤OO사무관으로부터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관련 문건을 받아 2014년 3월 10일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2014년 3월 24일 응모 하였지만, 결정이 미뤄지더니 2015년 11월 2일 예상 밖의 인물이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 후일 다빈나오 문건으로 인한 블랙리스트 등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음센터 이사장으로 추천되던 당시 최OO은 OOO를 밀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최OO과 OOO는 국회 의원실에 근무할 당시부터 안면이 있던 사람이었고 같은 동네에 살아 친분이 두텁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음센터에는 최OO이 쫓은 직원들이 현재도 근무하고 있고, 최OO이 정책보좌관을 그만둔 이후에도 센터를 자주 방문한다고 들었다.¹¹⁾

11개의 장애인문화예술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대표 방OO) 사무실이 이음센터에 입주하기로 되어있어서 건물 2층 룸을 사용하기로 하고, 2015년 8월 28일 이사 날짜를 잡아놓았었는데 입주 전날 입주 불가 통보를 받은 일도 있었다. 갑작스런 통보로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길바닥에 짐들을 내려놓고 겨우 얻은 곳이 장애인 편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사무실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2013년~2015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애인 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배제된 바 있다. 25년 전통을 가진 국내 유일의 장애인문학지 <숙대문학(발행인 방OO)>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한 ‘우수문예지 발간지원 사업’으로 연 1,600만원 지원해 오던 것을 2015년에 지원 중단을 통보하여 2015년 말 폐간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12) 참고인 OOO의 전화면담보고 (2018. 5. 2.)

참고인 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주무관은 다빈나오 문건과 관련된 인사 조치에 대해 위원회 전문위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체부에서 계약직으로 수년간 근무한 후 퇴사하고, 시험을 통해 행정직으로 재입사를

11) 이에 대해 최OO은 ‘다빈나오 문건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거나 센터에 최OO이 쫓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함(18.11.6.)

했었다. 당시 윤OO 사무관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했고, 자료 만들어 달라면 이것저것만 들었던 기억밖에 없다. 입사 후 계약에 따라 3년 8개월은 인사이동 없이 근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른 채 2015년 6월 14일 경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지원근무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보통 장애인의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인사 발령이 났어야 하는데 그 때는 금요일 날 통보를 받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하라고 했었다. 윗분들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두려움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이 인사 조치는 최OO이 가라고 해서 가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별 이유도 없이 장거리 출장을 여러 번씩 보낸다거나 하는 일들이 잦았고, 최OO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다.¹²⁾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다빈나오 문건으로 인한 블랙리스트 실행 여부

김OO 진술에 따르면 최OO은 이음센터 센터장으로 최OO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김OO이 이음센터 센터장 후보 1순위로 방OO를 추천하자 최OO은 OOO를 앉히려 했고, OOO이 1순위 방OO, 2순위 OOO로 추천을 하자 이에 반대하여, 방OO와 다빈나오를 묶어서 좌파성향으로 몰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다빈나오 문건이 작성된 후 최OO이 밀었던 OOO가 1순위로 이음센터장에 추천되었으나 검증과정에서 낙마하였다. 최OO이 작성한 다빈나오 문건이 보고된 후 연극단체 다빈나오와 방OO는 각종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었다.¹³⁾

(1) 2017. 1. 19. ~ 3. 10. 실시된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빈나오(김OO 대

12) 이에 대해 최OO은 'OOO주무관에 대한 인사조치 및 출장 명령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권한도 없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함('18.11.6.)

13) 이에 대해 최OO은 '다빈나오 문건은 예산지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부당지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김OO를 1순위로 밀기 위해 작성한 문건은 아니며, 배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 문건과 지원사업 배제는 잘못된 인과관계'라고 주장함('18.11.6, '19. 1. 31.).

표)는 2015. 6. 17. 마감인 ‘기초공연예술 활성화(대학로예술극장 3관대관)’ 사업에 <서울 특별한 병구씨>로 지원하였으나 지원 배제되었다. (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방OO회장)은 장애인문화예술 향수지원-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 지원 사업에 <한국장애인문학 정체성 확립과 경제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를 과제로 지원하였으나 지원배제 되었다.

(2) 2017고합102 김기춘 외 3인 판결 중 ‘다빈나오’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는 2017. 7. 27. 김기춘 외 3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죄 판결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2015년 사업 순번 154에서 다빈나오의 <서울 특별한 병구씨> 배제 등을 ‘유죄’로 보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2, 2015년 사업 순번 154에서 다빈나오 부분, 판결문 226면.

154	2015-06-13	2015-07-08	대학로예술 극장 3관 대관	서울 특별한 병구씨	다빈나오	공연예술전통과 이OO 등/ 공연기획부 이OO 등	유죄
-----	------------	------------	----------------------	---------------	------	-------------------------------------	----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가. 최OO의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문체부 인사개입 여부

- (1)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배제지시명단이나 신청후보자들의 정치적 성향 검증 등을 간과하거나 누락한 행위를 하여 청와대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담당 실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전보인사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 (2) 관련하여, 정OO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전보인사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최OO이 김종덕 장관의 인사권 발동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다.¹⁴⁾
- (3) 그러나, 인사권 행사는 인사권자의 재량범위 내에 있으며, 최OO은 정책보좌관으로 인사결정권자를 보좌하는 역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고인들도 김종덕 전 장관이 강력

14) 이에 대해 최OO은 ‘본인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문체부 직원의 징계 및 인사조치에 적극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18.11.6.)

하계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종덕 전 장관의 인사조치 지시가 부당하였는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최OO과 김종덕 전 장관 및 고OO 등 국정농단 세력 간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김종덕 전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청와대 등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추후 진상규명 되어야 할 과제다.

나. 조사의 한계

최OO과의 대질 신문이나 최OO의 입장을 듣지 못한 부분은 조사의 한계이다.¹⁵⁾

15) 이와 관련하여 최OO의 이의제기 및 반론내용을 해당부분에 각주로 병기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0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0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 심의사항

사건번호 2017직특6[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신청인 이영철·성완경·임인자, 사건번호 2017특29·2017특30·2017공33 병합)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2. 관련규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35조, 제36조

3.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요지

가. 신청 취지

1) 신청인 이영철(사건번호: 2017특29)

신청인 이영철은 2013. 6. 1.부터 3년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전시예술감독으로 근무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15. 1.10.자로 계약 해지되었다. 신청인은 M 연세대 교수를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으로 임용 하려고 했고, 본인이 주도했던 문화창조원 개관 전시 <나의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동 전시를 중단시키기 위해 신청인을 계약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신청인 성완경(사건번호: 2017특30)

신청인 성완경은 2014. 12.부터 2015. 10.까지 아시아문화개발원 문화창조원 개관 전시 <나의국가>의 책임큐레이터로 계약하였다. M 교수가 문화창조원 예술 감독으로 임용된 후 <나의국가> 기획과 관련한 문화창조원 내부 회의가 진행되었다. 2015. 5. 26. <나의국가> 최종 기획안이 제출된 후 동년 6. 15. 신청인은 <나의국가>의 전시 중단을 통보받았다. 신청인은 <나의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노순택, 홍성담, 임훈순 등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전시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 신청인 임인자(사건번호: 2017공33)

신청인 임인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에서 추진하는 예술인 레지던스 사업 프로젝트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예술감독으로 2012. 10.경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광천시민아파트’ 관련 프로젝트, ‘유랑축제’ 관련 프로젝트, ‘5·18 증언 맵: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등 3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2013. 2. 초순경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G 과장이 ‘5·18 증언 맵: 말로는 다 할 수 없는’의 계속 진행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속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 동 프로젝트 홍보물에서 5·18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신청인은 이 증언 맵이 5·18을 담았다고 사람들이 이해할 거라고 판단해서 이 프로젝트 홍보물에서 5·18을 삭제하고 ‘증언 맵: 말로는 다 할 수 없는’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직권조사 취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착공부터 현재까지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5·18’ 관련 프로젝트 홍보물에서 ‘5·18’ 삭제 지시 의혹, 문체부 차관·청와대 수석비서관·국회의원의 아시아전당 직원 채용 청탁 의혹 등이 발생했고, 특히 전 김종덕 장관 취임 이후 프로그램 중단 및 예술감독 해지 의혹, 김종덕 장관 측근 인사 임명 의혹 등이 발생했다.

국립아시아전당에 제기된 많은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행정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붙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사 건] 2017직특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 조사신청 사건번호 2017특29, 2017특30, 2017공33 병합

[신청인] 이영철(2017특29), 성완경(2017특30), 임인자(2017공33)

제1절 | 조사 개요

1. 조사 취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은 착공부터 현재까지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5·18관련 프로젝트 홍보물에서 ‘5·18’문구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차관·청와대 수석비서관·국회의원이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에 직원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이 발생했다. 특히 김종덕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 프로그램 중단 및 예술감독 계약 해지 의혹, 김종덕 장관 측근 인사 임명 의혹 등이 발생했다.

문화전당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조사하여, 원인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재발방지책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행정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 근거

본 사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제1호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 제20차 전원위원회(2017. 12. 22.)에서 직권조사개시결정으로 의결되었다(의안번호 17-132).

나. 조사 목적

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규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들의 신청 내용 확인

신청인 이영철과 신청인 성완경은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개관 전시 <나의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신청인 이영철은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에서 계약 해지되고, <나의국가>의 전시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의 사실 여부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신청인 임인자는 문화전당에서 추진하는 5·18광주민중화운동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관련 홍보물에서 5·18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5·18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람과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2) 문화전당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

문화전당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인 아시아문화원 간부진의 블랙리스트 등재, 문화전당에 대한 인사 개입과 인사 청탁, 문화창조원 플라스틱 신화들 라이브이벤트 특정인사 배제, 아시아예술극장 영상물 상영 취소 등의 과정과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검토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게재일/작성일
1	보도자료 - '아시아예술극장 창작 레지던시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개최	문체부		2013. 2. 13.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관련 외부평가회의 결과보고 및 비용 정산	아시아문화개발원		2015. 1. 20.
3	김종덕 장관과 '팔목흥대', 아시아문화전당까지 장악?	오마이뉴스		2015. 2. 5.
4	문화창조원 예술감독 창·제작센터장에 M 연세대 디자인예술학부 교수 임명	무등일보		2015. 3. 3.
5	플라스틱 신화들 라이브이벤트 기획서	아시아문화원 문화창조원		2015. 11. 5.
6	[단독]"내 말 한마디면 김종덕 장관이 빨리 해결해줄 것"	뉴스1		2016. 11. 8.
7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박민권에 대한 2016. 12. 18.자 진술조서 일부	박민권		2016. 12. 18.
8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희범에 대한 2016. 12. 31.자 진술조서 일부	김희범		2016. 12. 31.
9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7. 1. 16.자 진술조서 일부	김OO		2017. 1. 16.
10	서울지검의 오OO 진술조서 일부	오OO		2017. 10. 15.
11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
12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결과보고서	아문단		2018. 1. 23.
13	「문예 6-5_리스트 '16.2.1 현재」	문체부		2018. 3. 26.
14	「문예 6-11_리스트 '16.9.27 현재」	문체부		2018. 3. 26.
15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업무수첩			2018. 3. 26.
16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업무수첩			2018. 3. 26.

나. 신청인 임의 제출 자료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2] 신청인 제출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작성자	게재일 / 작성일
1	용역표준계약서	성완경	아시아문화개발원	2014. 12. 29.
2	회의 녹취록	성완경		2015. 1. 20.
3	전시기획위원회 회의 녹취록	이영철		2015.1. 20.
4	문화창조원 연구원급 이상 회의 대화 녹취록	이영철		2015.1. 20.
5	문화창조원 전시 콘텐츠 협의를 위한 간담회 결과보고	성완경		2015. 4. 17.
6	<나의국가> 전시기획안 및 예산안	성완경	성완경	2015. 5. 26.
7	<나의국가>(가제)전 관련 전시계획변경(알림)	성완경	아시아문화 개발원장	2015. 6. 15.
8	광주고등법원 2016나15746(신청인 이영철 2심 재판 판결문)	이영철		2018. 1. 5.

2.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신청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대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조사 형태	일자
1	이영철	신청인	진술녹음	2017. 12. 11.
2	임인자	신청인	진술조서	2017. 12. 11.
3	강OO	참고인	진술녹음	2018. 1. 5.
4	OOO	참고인	진술녹음	2018. 1. 10.
5	성완경	신청인	진술녹음	2018. 1. 11.
6	김OO	참고인	진술녹음	2018. 1. 25.
7	박OO	참고인	진술녹음	2018. 1. 30.
8	나희덕	참고인	진술녹음	2018. 2. 6.
9	장OO	참고인	진술조서	2018. 3. 30

제3절 | 조사 내용

1. 사건 배경

가. 문화전당

1) 문화전당 설립 경과

[표-4] 문화전당 설립 경과

시기	내용
2002. 12. 14.	노무현 대통령 후보 '광주문화수도 육성' 선거공약 발표
2004. 9. 9.	건립 예정 부지 발표(구 전남도청 일원)
2006. 9.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2005. 12. 7.	착공
2014. 10.	완공
2015. 9. 4.	부분 개장
2015. 11.25.	전체 개장

2) 문화전당 개괄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문화전당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복합문화시설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중심지인 옛 전남도청 일대에 위치해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물이 지하에 배치되어 있다.

문화전당은 아시아의 과거-현재의 문화예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념이 만나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교류기관이며, 5.18 민주화운동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다고 문화전당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¹⁾

문화전당은 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어린이문화원·아시아예술극장·민주평화교류원의 5개 원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정보원은 아시아 문화연구를 기반으로 출판과 포럼, 저널 등 다양한 지식을 생산한다. 문화창조원은 인문, 예술, 첨단과학이 결합된 융·복합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랩(LAB) 기반의 콘텐츠 창·제작 공간과 전시 콘텐츠의 상상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6개의 복합관과 3개의 스튜디오에서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1) 문화전당 홈페이지(https://www.acc.go.kr/ac_c/intro/view)

창작품들을 제작·전시하고 있다. 어린이문화원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린이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며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시아예술극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공연예술 작품들이 열리는 곳이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아시아 문화교류·협력 네트워크의 허브를 지향하는데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아시아에 전파하기 위한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이 있다.

[그림-1] 문화전당 배치도



3) 문화전당 운영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를 두고 문체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아문단)을 편성하고, 아시아문화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전당은 아문단과 개발원이 운영하였는데, 아문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관리하고 아문단 조직 중 전담 기획과가 주로 문화전당과 관련한 사업들을 관리하였다. 개발원은 문화전당의 콘텐츠·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을 비롯해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 및 문화 콘텐츠 유통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문화전당 개관 준비 업무에 주력하였다.

2015. 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5. 7.경 문체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아시아전당) 조직이 설립되고 특별법에 따라 개발원이 해체되고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이 2015. 10. 설립되었다.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는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해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했다. 또 문화전당 운영 주체와 지원범위에 대해 문화전당은 5년간 문체부 소속으로 두되, 성과 평가를 한 후 위탁 경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위탁 경영은 아시아문화원이 맡기로 하였다. 문화전당의 운영은 문체부 조직인 아시아전당과 문화전당을 위탁 경영하는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 2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문화전당은 특별법 개정(2015. 3.) 이후 아문단 → 아시아전당으로, 개발원 → 아시아문화원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신청인 주장과 확인 사항

가. 신청인 이영철

1) 신청인 이영철의 주장

신청인 이영철은 2013. 6. 1.부터 3년간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으로 근무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15. 1. 10.자로 계약 해지되었다. 신청인은 문화창조원 개관 전시〈나의국가〉를 처음 기획하였고 신청인 성완경을 〈나의국가〉의 책임큐레이터로 선임토록 하였다. 신청인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후배인 M 연세대 교수를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으로 임용 하려고 했고, 〈나의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전시를 중단시키고 위해 개발원에서 신청인을 계약 해지했으며, 계약 해지를 위해 김종덕 전 장관의 지시로 감사 청구와 내부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본인이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에서 계약 해지 전, M 연세대 교수의 문화창조원 예술감독 사전 내락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M 교수의 예술감독 임용을 위해 개발원 이사회를 통해 개발원 정관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였다.²⁾

2) 신청인 이영철 진술녹음(2017. 12. 11.)

2) 확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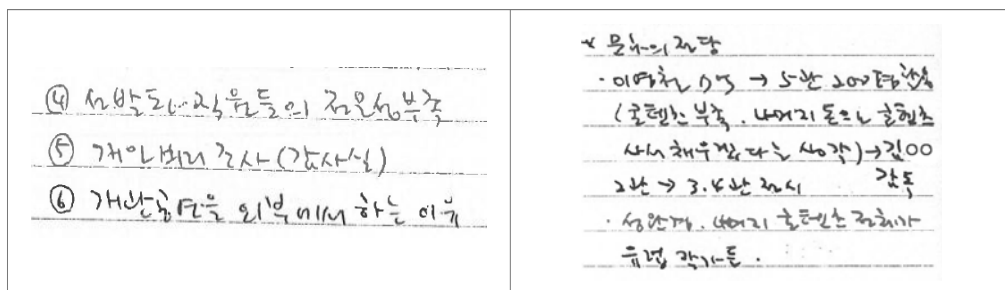
가) 신청인이 문화창조원 예술 감독에서 계약 해지된 이유

- 개발원이 신청인 이영철을 계약해지한 사유는 주요업무 추진일정 지체, 문화창조원 개관일정 차질 판정, 결과보고서 기한 내 제출의무 불이행 등이다. 신청인 이영철은 개발원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하였는데 2심 재판부는 신청인의 계약해지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이영철의 계약해지통보는 무효라고 선고하였다.³⁾
- 신청인 성완경이 제출한 <나의국가>의 전시 기획안에는 세월호 관련 전시가 포함되어 있고, 노순택, 홍성담, 임흥순 등의 작가들이 <나의국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⁴⁾ <나의국가>는 2015. 6. 15. 전시 취소가 결정되었다.⁵⁾
- 2015. 문화창조원 팀장이었던 참고인 강OO은 <나의국가>는 좌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처음 계획 수립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신청인의 문화창조원 예술감독 계약 해지의 한 이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⁶⁾

나) 감사 청구·내부 회의 진행

-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업무 수첩에는 개인비리조사(감사실)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 신청인을 언급한 메모가 적시되어 있다.

[그림-2] 김종덕 전 장관의 업무수첩



3) 광주고등법원 2016나15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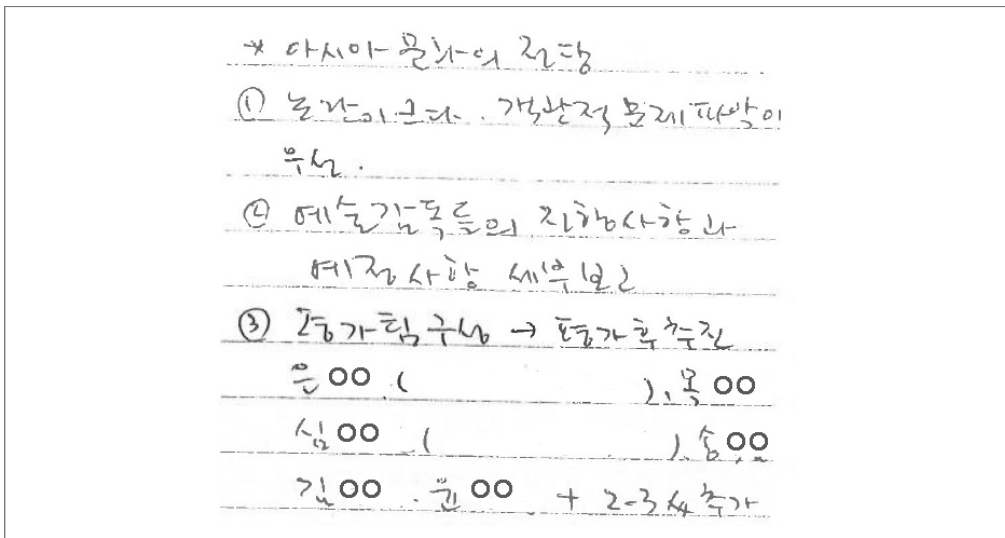
4) <나의국가> 전시 기획안(2015. 5. 26.)

5) 아시아문화개발원장 공문_나의 국가(가제)전 관련 전시계획 변경 알림(2015. 6. 15.)

6) 참고인 강OO 진술녹음(2018. 1. 5.)

- 김종덕 전 장관의 특별지시로 개발원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부평가위)가 구성되어 개발원의 평가를 진행하였다.7) 김종덕 전 장관은 외부평가위 위원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명(은OO, M, 심OO, 송OO, 김OO, 윤OO+2~3인 추가)하면서 ‘평가 후 추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실제 외부평가위 위원으로 은OO, M, 심OO, 송OO, 김OO, 윤OO이 참여하였다.8)

[그림-3] 김종덕 전 장관 수첩



다) M 연세대 교수 문화창조원 예술감독 사전 내락

- M 연세대 교수는 김종덕 전 장관과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문화창조원 팀 장급 이상 직원들과의 회의(2015. 1. 20.)에서 하였는데 M 교수는 창제작센터 내정자 신분으로 이 회의에 참여하였다.9) 2015. 3. M 연세대 교수는 문화창조원 예술감독 겸 창제작센터장에 임명되었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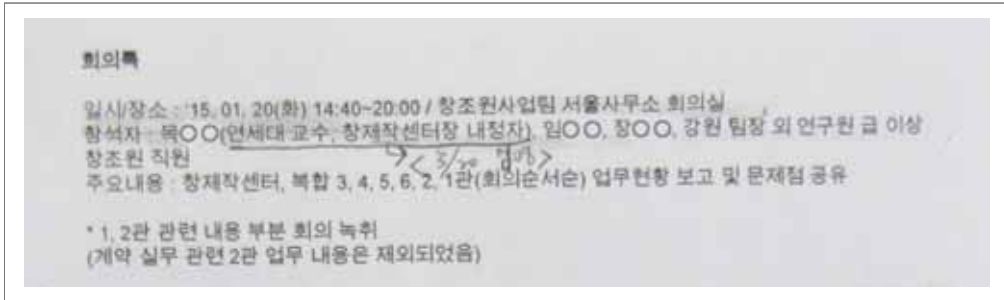
7) 2015. 1. 20. 전시기획위원회 녹취록. 아시아문화개발원 기획운영팀-172(2015. 1. 2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관련 외부평가회의 결과보고 및 비용 정산

8) 아시아문화개발원 기획운영팀-172(2015. 1. 2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관련 외부평가회의 결과보고 및 비용 정산

9) [단독] “내 말 한마디면 김종덕 장관이 빨리 해결해줄 것”, 뉴스1, 2016. 1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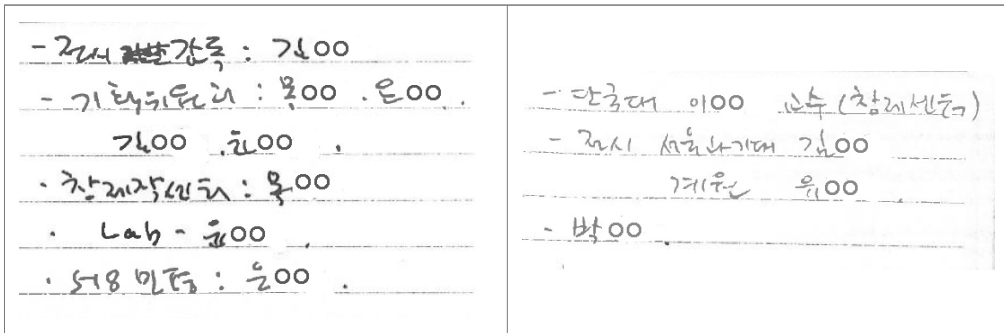
10) 문화창조원 예술감독 겸 창제작센터장에 M 연세대 디자인예술학부 교수 임명, 무등일보, 2015. 3. 3. M 교수는 1994.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시각디자인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그림-4] 신청인 성완경이 제출한 2015. 1. 20. 회의록



- 개발원장 최OO은 2015. 1. 20. 전시기획위원회 회의에서 M 연세대 교수가 창제작 센터장에 내정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¹¹⁾
- 2015. 1. 8. ~ 1. 11.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종덕 전 장관의 업무수첩에는 ‘창제작센터 : M’로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에도 김종덕 전 장관의 업무수첩에는 문화전당의 인사와 관련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그림-5] 김종덕 전 장관 업무수첩



라) M 교수 임명 위해 개발원 정관 일부 수정

- 2015. 2. 5. 오마이뉴스는 개발원이 2015. 1. 이영철 개발원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을 해임하고, 같은 해 1. 30. 문화창조원 내 창제작센터장을 예술감독에 준하도록 정관을 바꾼 뒤 그 자리에 홍익대 출신의 M 연세대 디자인예술학부 교수를 앉히려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¹²⁾

11) 2015. 1. 20. 전시기획위원회 녹취록

3) 소결

신청인 이영철은 M 연세대 교수를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으로 임용 하려고 했고, 〈나의 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전시를 중단 시키기 위해 신청인을 개발원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에서 계약 해지했으며, 계약 해지를 위해 감사 청구와 내부 회의가 진행되었고, 신청인이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에서 계약해지 전 M 연세대 교수를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에 사전 내락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나의국가〉의 전시기획안에 세월호 전시와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인 노순택, 홍성담, 임흥순 등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 참고인 강OO은 〈나의국가〉는 좌파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계획 수립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신청인 이영철의 예술감독 계약 해지의 한 이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당시 개발원 원장이던 최 OO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M 연세대 교수 등 참고인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 이영철의 주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신청인 성완경

1) 신청인 성완경의 주장

신청인 성완경은 2014. 12.부터 2015. 10.까지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개관 전시 〈나의국가〉의 책임큐레이터로 계약하였다. 2015. 1. 이영철 문화창조원 예술 감독이 계약 해지되고 2015. 3. M 교수가 문화창조원 예술 감독으로 임용된 후 〈나의국가〉 기획과 관련한 문화창조원 내부 회의가 진행되었다. 같은 해 5. 26. 〈나의국가〉의 최종 기획안이 개발원에 제출되었고 같은 해 6. 15. 신청인은 〈나의국가〉의 전시 중단 공문을 받았다. 신청인은 〈나의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노순택, 홍성담, 임흥순 등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전시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나의국가〉 기획안 변경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는 없었지만, 주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전시 주제는 국가, 자본)를 제시했고 예산 축소 요구와 전시 준비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개발원과 〈나의국가〉의 책임큐레이터로 계약하면서 개발원은 신청인 성완경에게 3천만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1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¹³⁾

12) 「김종덕 장관과 ‘팔목홍대’, 아시아문화전당까지 장악?」, 오마이뉴스, 2015. 2. 5.

2) 확인 사항

가) <나의국가>의 전시 취소 이유


- 개발원은 <나의국가>의 전시 취소 이유에 대해, 문화창조원 개관 총괄 콘텐츠가 예산 및 시설 등의 이유로 문화창조원 전체 개관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나의국가>는 전시내용, 전시 면적, 예산안 및 계약 방식에 대한 개발원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아 <나의국가>를 전시 콘텐츠로 수용하기 적절치 않고, 변경된 새로운 개관 콘텐츠와 맥락화의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¹⁴⁾

이를 정리하면 개발원은 예산 및 시설 등의 이유로 문화창조원의 개관 총괄 콘텐츠를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개관 총괄 콘텐츠에 맞게 <나의국가>의 전시내용과 전시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응하지 않아 <나의국가>를 전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13) 신청인 성완경 진술녹음(2018. 1. 11.)

14) <나의 국가>(가제)전 관련 전시계획변경(알림)(2015. 6. 15.)

[그림-6] <나의국가>(가제)전 관련 전시계획변경(알림)



아시아문화개발원

수신 : 성완경님

제목 : <나의 국가>(가제)전 관련 전시계획변경(알림)

관련 협의 일정

- 2015년 5월 26일 <나의 국가> 최종 전시기획안 수령
- 2015년 6월 4일 아시아문화개발원 제4차 전시기획위원회 회의 부의


주요 내용

상기와 같이 <나의 국가>의 전시기획안을 수령하고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전시기획위원회에 부의하여 전시관련 기획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동 전시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바 이를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기 문화창조원 개관 총괄 콘텐츠로 기획 추진되었던 '레빗홀 아시아'가 예산 및 시설 등의 이유로 창조원 전체 개관 계획의 변경
2. 따라서 저희 개발원에서는 기 계획된 프로그램 중 <미술/근대성> 외에 모든 콘텐츠에 대해 담당 책임 큐레이터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수용하여 개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지 않은 한편, 그간 진행된 연구 성과를 실비 정산하여 당원 소프트 콘텐츠로 아카이빙 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향후 활용하기로 합의
3. <나의 국가>(가제)는 전시내용, 전시 면적, 예산안 및 계약방식에 대한 당 원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전시콘텐츠로 수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변경된 새로운 개관콘텐츠와 맥락화의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됨
4. 이에 개관 전시로서 <나의 국가>(가제)의 콘텐츠 개발 및 발전을 중단하고, 기 연구 성과를 창조원 콘텐츠로 아카이빙하여 추후 구체적인 전시로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5.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나의 국가>(가제) 전시관련 연구 성과물과 부대 산출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6. 제출받은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에 따른 제반 비용을 실비 정산하고자 함

아시아문화개발원장 (인)



- <나의국가>의 최종 기획안에는 제1장 <지금 여기>에서 박민규(소설가)의 세월호 관련 오디오, 뉴스타파(언론)의 세월호 관련 영상, 4·16기억저장소(사회단체)의 세월호 관련 사진 전시를 기획하였고 노순택, 임흥순, 홍성담 등의 작가들이 <나의국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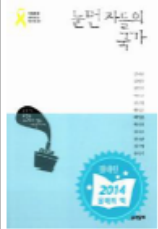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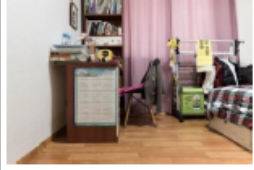
15) <나의국가> 전시 기획안(2015. 5. 26.)

[그림-기] <나의국가> 전시 기획안

1) 제 1장<지금, 여기>

성찰의 장이자, 혹은 역사의 상처와의 대면의 장이다. 그 첫 장면에서 이 상처는 정치의 문제만도, 경제의 문제만도 아니고 한 배를 탄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역사적 진실의 문제라는 담담하고 절절한 소설가 박민규의 목소리를 만난다(박민규, <눈 먼 자들의 국가>). 또한 희생자 아이들의 그 체취와 웃음이 배인 적막한 텅 빈 방을 만난다(416기억 저장소 <빈 방>). 그것은 참사 1주기를 맞이해 제작된 진지하고 엄격한 저널리즘 영상물(<뉴스타파> 특집영상)로도, 슬프고 연약한 자의 화신이 되는 광대짓의 퍼포먼스(한반, <구루부 구루마>)로도 끝내 위로 받을 수 없는 '국가'라는 텅 빈 부피다.

: 제1장은 총 4작가의 6작품으로 구성된다.

작가명	실명/국적	주요작품/ 전시 및 수상경력	작품명(연도)	매체 정보	작품설명	작품이미지
박민규 (1969 외 12명 +신형철	소설가/ 한국	-저서 『땅콩』, 2006 『가스태라』, 2005 『삼이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2008 수상 제34회 이상문학상 대상, 2010 황순원문학상, 2009 제8회 이효석문학상, 2007	신형철 문학 동네팟캐스트, 14회 문학 과 공생 박민규 <눈 먼 자들의 국가>	오디오(60 30)	문인들이 바라보는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전하는 세월호의 진실과 그 날의 사건을 쓴 책 『눈 먼 자들의 국가』에서 신형철 평론가가 읽어주는 박민규 작가의 세월호 에세이	
NEWS7APA (뉴스타파)	방송/ 한국	구성 정재홍, 진행 박혜진	세월호 1주기 특집 영상 "참혹한 세월, 국가의 거짓말", '목격자들' 1, 2부, 2015	영상 각55 27,4f	취재진은 당시 수중수색의 핵심담당자들을 빠짐없이 만나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부실한 수색의 전말을 확인하며, 수색 작업, 선제인양 이슈, 특조위 문제를 차례로 검토하며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416기억 저장소	사진가들/ 한국	세월호를 생각하는 사진가들	<빈 방>	사진	텅 빈 희생 학생 아이들의 방을 찾아 그 체취와 웃음소리와 겪은 회상의 흔적을 찾는 사진가들의 사진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한다.	

[그림-8] <나의국가> 전시 기획안

<나의 국가> (가제) 전시기획안 및 예산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제출안: 책임큐레이터 성완경
제출일: 2015. 5. 2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개관전 <나의 국가> (가제)

전시 제목: <나의 국가> (가제)
책임큐레이터: 성완경

연구협력자: 이○○, 박○○, 이○○, 최○○

전시 장소: 문화창조원 복합5관
전시 기간: 2015년 11월 - 2017년 10월 (2년)

참여 작가 및 연구자: 박민규, 신형철, 뉴스타파(정재홍, 박혜진), 416 기억저장소, 한반, 노순택, 최영숙, 김용태, 야마시로 치카코Yamashiro Chikako, 박경훈, 김동만, 야오루이중YAO Rui-chung, 임홍순, 김남태, 최원준, 여다함, 황영창Huang Rongcan, 신학철, 창차오탕 Chang ChaoTang, 이행준, 홍철기, 이욱경, 이태호, Vann Nath, 박건웅, 황세준, 박찬경, 김진혁, 서현석, 쿠와바라 시세이Kuwabara Shisei, 송상희, 진계인Chen Chieh Jen, 파견미술, 홍성담, 박경주, 최규석, 정택용, 김종대, 최진욱, 안해룡, 타링 파다Taring pad, 전국문화예술인행동, 홍연식, 지로와 유선, 리스투더시티, 김영미, 박불동, 이강현, 양영희, 임순례, 변영주, 박사유, 경순, 임인애, 김재환, 정윤석, 김경만, 조슈아 오펜하이머Joshua Oppenheimer, 강용주, 서승, 마루카와 테츠시Marukawa Tetsushi, 서동진, 이재성, 송경동, 조정환, 김성훈, 구수정, 우정수, 김찬호, 엄기호, 김종철, 최정수

[그림-9] 문체부 제출자료 「문예 6-5_리스트 '16.2.1 현재」 중 「6」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미술동맹의시상 개최지원 - 7명		①권리래(아트레토리 출판 작가), ②양옥경(제이드갤러리 갤러리 대표), ③강홍구(원앤제이 갤러리 출판 작가), ④우원규(학교계 갤러리 대표), ⑤이세현(학교계 갤러리 출판 작가) ⑥노순택(출판 작가), ⑦박관경(출판 작가)	⑧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제외	-전원제외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위 촉('15.3월) - 6명 2015 예술인 맞춤형 교육		①박래순(방송), ②안성주(방송), ③홍정선(문학), ④강홍구(사진), ⑤임계광(미술), ⑥김희경(음악)		-전원제외
연극: ①강동호(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주요 관리 대상)				

[그림-10] 문체부 제출자료 「문예 6-5_리스트 '16.2.1 현재」 중 「5」 시각예술분야(2015 공모사업)

5 시각예술분야(2015 공모사업) - 3명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개요 및 검토내용	진행상황
시각예술비평연구확성회지원	스페이스빌	김종희	미술공인투량 창립30주년 기념 연구사업	달력	계획
		민준기	2015 스페이스 빌 공간 운영 및 활동	2012.9 야권연대 공동연대회, 시민사회 연토탄, 2014.5 6.2거방선거범야권단일후보, 인권지회 중심 안보적 활동가 심의 파포주 홍보활동, 세검포 요청했으나, 위위(2인)의 부정의견 채택 (평가결과 : '14년 3등상 (26개중 8위))	선정후 홍보양해됨
		김홍순	2015 국제 비평날래 평가 <환생/위로공간>	2015에디스비평날래 본진시 작가포 초청받는 등 국제적 교류도 높음 - 정기공모에서는 제외하고, 비너스비평날래 예산에서 지원할안됨	계획

[그림-11]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붙임 16.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75	미술	홍선웅	10.10 「노나메기재단」 설립 추진위원	B
76	미술	홍성담	前민족민중미술운동 전국연합 공동대표	A
77	연극	권병길	임수경 후원사업회 회원	B
78	연극	김경원	08.2 MB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C

- M 교수가 2015. 1. 20. 문화창조원 팀장급 이상 직원들과 문화창조원 서울사무소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나의국가>에 참가한 작가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며 <나의국가>의 취소를 신청인 성완경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¹⁶⁾
- 2015년 아문단 전당기획과에서 근무한 참고인 박OO은 <나의국가> 기획안에 세월호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참여하는 작가들이 문제여서 <나의국가>의 전시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¹⁷⁾
- 2015년 아시아예술극장 예술감독이었던 참고인 김OO도 <나의국가>의 참여 작가가 문제가 되었고, 세월호를 다루어서 <나의국가> 전시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¹⁸⁾

16) 20150120 M 회의 녹취(신청인 성완경 제출)

17) 참고인 박OO 진술녹음(2018. 1. 30.)

18) 참고인 김OO 진술녹음(2018. 1. 25.)

나) 신청인 성완경의 <나의국가> 계약금 미지급

- 2014. 12. 29. 작성된 신청인 성완경과 개발원 원장 최OO과의 용역표준계약을 보면 개발원은 신청인 성완경에게 책임큐레이터 사례비로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사례비의 30%인 9백만원을 계약서 서명 시점에, 사례비 35%인 1천5십만 원을 2015. 1. 30.에, 사례비 35%인 1천5십만원을 2015. 10. 31.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¹⁹⁾
- 2015. 4. 17. ‘문화창조원 전시 콘텐츠 협의를 위한 간담회 결과 보고(2015. 4. 17.)’를 살펴보면 ‘현재 책임큐레이터 계약(2014. 12. 29.) 이후 계약금 집행이 계약서에 명기된 일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으로 적시되어 있다.²⁰⁾

3) 소결

신청인 성완경은 개발원 문화창조원 개관 전시 <나의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노순택, 홍성담, 임흥순 등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전시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세월호 관련 전시와 노순택, 임흥순, 홍성담 등의 작가들이 참여가 <나의국가> 전시기획안에 적시된 것을 확인되었다. 또 위 3명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나의국가>의 전시 취소를 통보한 개발원 최종만 원장과 개발원 간부진들, 아문단 소속 문체부 공무원들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 성완경의 주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참고인 박OO·김OO는 <나의국가>에 참여하는 작가들 때문에 <나의국가>의 전시가 취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M 연세대 교수가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5. 1. 20. <나의국가>에 참가하는 작가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며 <나의국가>의 취소를 신청인 성완경에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회의 녹취록을 볼 때, <나의국가>에 참여한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와 세월호 등을 다룬 전시내용이 <나의국가>의 전시 취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신청인 성완경의 <나의국가> 책임큐레이터 사례비 3천만원 중 2015. 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1천9백5십만원을 개발원이 2015. 4. 17.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19) 용역표준계약서(2014. 12. 29.)

20) ‘문화창조원 전시 콘텐츠 협의를 위한 간담회 결과보고(2015. 4. 17.)’.

다. 신청인 임인자

1) 신청인 임인자의 주장

신청인 임인자는 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에서 추진하는 예술인 레지던스 사업 프로젝트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예술감독으로 2012. 10.경 5·18광주민중화운동 관련 ‘광천시민아파트’ 관련 프로젝트, ‘유랑축제’ 관련 프로젝트, ‘5·18 증언 맵: 말로는 다 할 수 없는’(이하 5·18 증언맵)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013. 2.초순경 아문단 G 과 장으로부터 5·18 증언맵을 계속해야 하나는 질의를 받았는데 신청인 임인자는 5·18증언맵을 계속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 5·18증언맵 홍보물에서 5·18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신청인은 이 증언 맵이 5·18을 담았다고 사람들이 이해할 거라고 판단해서 홍보물에 5·18을 삭제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²¹⁾

2) 확인 사항

가) 5·18 증언맵의 홍보물에서 5·18삭제 지시

- 2013. 5·18 증언맵의 아티스트 겸 연구자로 참여한 참고인 장OO(필명 장OO)는 5·18 증언맵의 홍보물에서 5·18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문단 G 전당기획 과장이라고 진술하였다. 또 5·18 증언맵의 홍보물에서 5·18을 삭제된 이유는 문체부의 검열 때문이며, 아문단에서 제작한 5·18 증언맵 SNS 홍보문에서는 5·18이 삭제되지 않았지만 문체부에서 작성한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의 보도자료에는 5·18 증언맵에서 5·18을 삭제했다고 진술하였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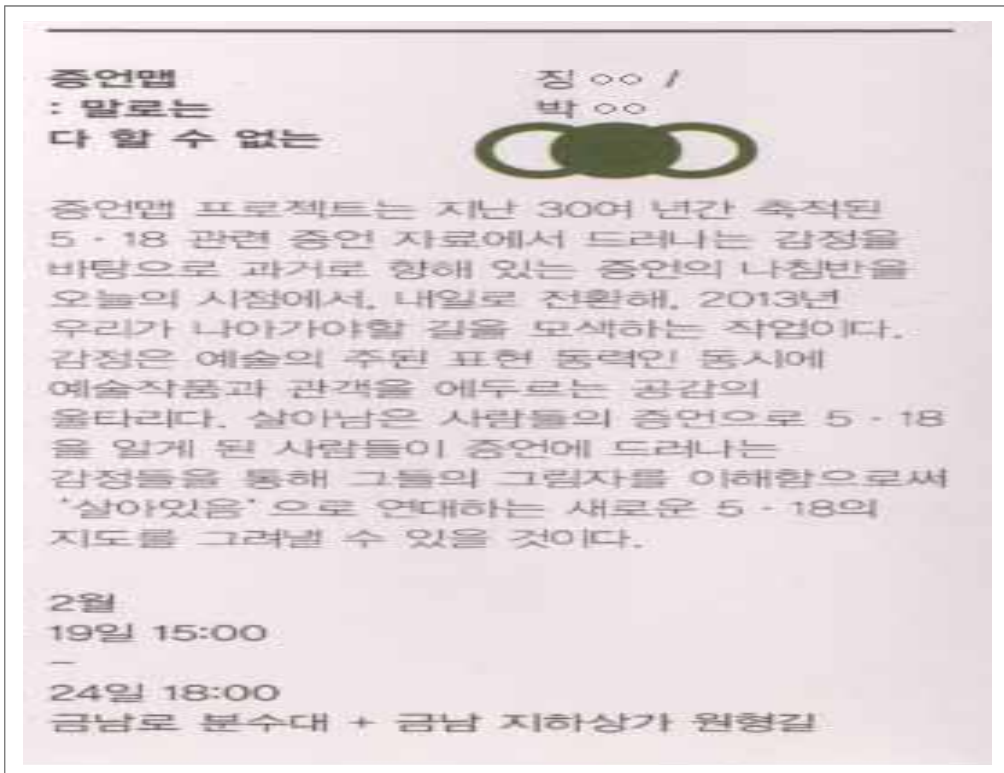
21) 신청인 임인자 진술조서(2017. 12. 11.)

22) 참고인 장OO 진술조서(2018. 3. 30.)

[그림-12] 참고인 장OO이 제출한 5·18 증언맵 SNS 홍보문



[그림-13]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팸플릿



[그림-14]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결과보고서

5) 증언맵: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5-1) 개요		
<u>일정</u>		
<u>구분</u>	<u>일정</u>	<u>장소</u>
셋업 및 퍼포먼스	2월 12일(화)	금남 지하상가 원형길, 금남로 분수대
전시	2월 12일(화) ~ 24일(일) 10:00-18:00	금남 지하상가 원형길, 금남로 분수대
<u>연출</u>		
장OO		

- 문체부 공문 ‘아시아예술극장 창작레지던시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관련 협조요청’(2013. 1. 21.)에는 ‘5·18 매핑:감정의 순환도시(전시)’라고 적시되어 있다.²³⁾ ‘5·18 매핑:감정의 순환도시(전시)’는 5·18증언맵이 진행되기 전 명칭이다.
- 문체부의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의 보도 자료(2015. 2. 13.)에는 ‘증언맵:말로는 다 할 수 없는(장OO 연구원)’으로 적시되어 있다.²⁴⁾

3) 소결

신청인 임인자, 참고인 장OO의 진술과 5·18증언맵의 SNS 홍보문, 2013. 1. 21.자 문체부 공문 ‘아시아예술극장 창작레지던시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관련 협조요청’을 살펴보면 5·18을 명시하여 5·18증언맵을 기획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5·18증언맵 팸플릿과 5·18증언맵 보도자료에 5·18을 삭제하여 적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5·18증언맵 홍보물에서 5·18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문단

23) ‘아시아예술극장 창작레지던시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관련 협조요청’(2013. 1. 21.)

24) 문체부 보도자료 ‘아시아예술극장 창작 레지던시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개최(2013. 2. 13.)

G 전당기획과장과 아문단 소속 관련자 등을 조사하지 못하여, G 과장이 5·18을 삭제하라고 한 지시 여부와 삭제를 지시한 이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 문화전당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

가. 아시아문화원 간부진의 블랙리스트 등재

1) 문체부 전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의 서울지검 진술

- 문체부 전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이 서울지검에서 아시아문화원 간부진의 블랙리스트 등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확인되었다.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전당 내에 위치한 준정부기관으로 2015. 10.경 설립 되었는데 그 기관의 주요 간부진들을 임명하기 위해 2016. 1. 19.경 간부진 후보자들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주었다. 이후 국정원에서 참고하라고 하면서 유선으로 김OO, 박OO, 성OO, 조OO의 검토 내용을 불러주었다. 이중 OOO는 민주통합당과 임수경의 방북을 지지하고 노무현 추모공연을 기획하였으며 남편이 친노 성향이고 한겨레신문에 기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국정원에서 유선으로 불러 주었다고 한다. 이중 박OO, 성OO은 간부진에서 배제되었고 김OO, 조OO은 간부진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박OO, 성OO이 간부진에서 배제된 이유는 국정원에서 배제 대상으로 회신이 되었기 때문이며, 김OO, 조OO이 간부진으로 선정된 이유는 알지 못하며 위 4명을 오OO에게 의뢰한 당시 F 문화전당 전당장 직무대리에게 국정원 배제대상자를 알려주었다고 한다.²⁵⁾

[그림-15] 오OO이 서울지검에 제출한 문서

사업명	검토내용
아시아문화원 간부진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OOO :민주통합당, 임수경방북지지, 노현추모공연기획, 친노/남편, 한겨레 활동 등)-1.27-K ○②박OO :경향, 미디어오늘 등 필진활동, 홍성담의 그림 옹호, 박정희시대 비판 등 ○③성OO :2009소고기반대 시국선언 1건-양해가능 ○④조OO :광주사태 연루, 복원됨 - 문제없음

25) 서울지검의 오OO 진술조서(2017. 10. 15.)

2) 아시아문화원 공연사업본부장 000의 진술

- 현재 아시아문화원 공연사업본부장인 000은 2015. 12.에 아시아문화원 공연사업본부장에 지원을 했고, 같은 해 12월 말에 공연사업본부장으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선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선임이 미루어져 이유를 알아보니 국정원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000의 아시아문화원 공연사업본부장 선임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후 아시아문화원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아시아문화원의 내부 분위기가 있어서, 문화전당에서 문체부와 협의를 하여 어렵게 2016. 3.에 아시아문화원 공연사업본부장에 선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000은 임수경과 지인 관계이지만 임수경의 방북을 지지한 일이 없으며 민주통합당은 물론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⁶⁾

3) 소결

문체부 전 예술정책과 000의 진술과 관련 자료, 참고인 000의 진술을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 간부진 선임 과정에서 아시아전당(문체부 조직)측은 000을 통해 국정원의 인사 검증을 요청하였고, 국정원의 배제대상자를 통보받은 아시아전당측은 국정원 배제대상자 중 일부는 아시아문화원 간부로 선임하였고, 일부는 선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F 문화전당 전당장 대리과 아시아전당 소속 공무원들, 아시아문화원의 관련자들을 조사하지 못해 아시아문화원 간부진 선임과정에서 국정원 배제대상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문화전당에 대한 인사 개입과 인사 청탁

1)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 김OO 전 아문단장이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조성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확인되었다. 조성위원회 위원 교체 시기에 청와대 정무수석 조운선이 김OO 아문단장에게 조성위원회 위원에 포함될 사람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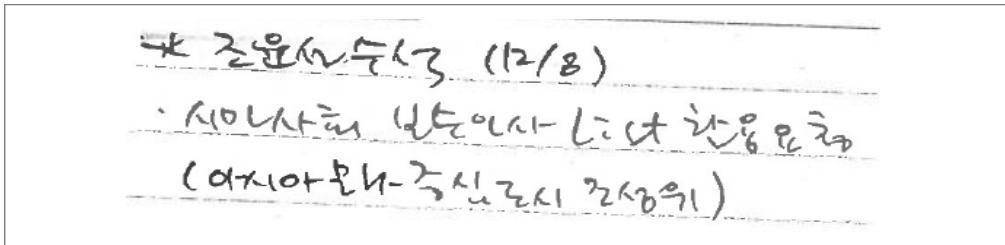
26) 참고인 000 진술녹음(2018. 1. 10)

명을 전달하였고, 이에 김OO 아문단장은 김종덕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운선 정무수석이 전달한 7명을 조성위원회 위원에 선임토록 하였다. 또 김OO 아문단장은 문체부 고위급 인사에게 들었는데 조성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호남지역의 보수 인사들을 선임토록 요청하였고 민주화 운동 세력이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조운선 정무수석이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 김OO 아문단장은 김종 문체부 차관, 모철민 청와대 교문수석, 이OO 국회의원 으로부터 특정 인사를 문화전당이나 개발원에 취업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을 확인하였다.²⁷⁾

- 2014. 12. 8. 조성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 조운선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시민사회 보수인사 리스트를 활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림-16] 김종덕 전 장관 업무수첩



- 박민권 문체부 차관이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2015. 7~8.경 정관주 청와대 비서관이 김소영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아시아문화원에 특정 인사 13명을 채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당시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을 대행하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들 13명을 전원 탈락시켜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확인하였다.²⁸⁾
- 김희범 문체부 차관이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2014. 9. 11. 청와대 김동국 비서관이 개발원 원장 후보로 최OO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개발원 원장 후보와 영진위 등 문체부 산하 기관장 후보들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재검토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확인하였다.²⁹⁾

27)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7. 1. 16.자 진술조서. 김OO은 2014. 3. ~ 2015.7.까지 아문단 단장을 지냈다.

28)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박민권에 대한 2016. 12. 18.자 진술조서

다. 나라를 주제로 2015. 12. 4. ~ 5. 강영민의 눈꽃산행 퍼포먼스, 밥을 주제로 같은 해 12.12. ~ 13. 심보선 시인의 시낭송, 사랑을 주제로 2016. 1. 16. ~ 17. 임의진·나희덕 시인의 시낭송, 꿈을 주제로 2016. 1. 23. ~ 24. 최고은의 콘서트 등이 기획되었다.³⁰⁾ 2015. 12. 13. 밥을 주제로 한 심보선 시인의 시낭송이 진행되었고 2016. 1. 17. 사랑을 주제로 임의진·나희덕 시인의 시낭송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임의진·나희덕 시인의 시낭송이 취소되었다. 이 시낭송이 취소된 후 라이브이벤트 홈페이지에는 ‘추최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라이브이벤트 가운데 ‘사랑’과 ‘꿈’ 일정은 취소되었습니다. 너른 양해 바랍니다.’라고 공지하였다.³¹⁾

2) 참고인 진술

- 현재 조선대학교 교수이자 시인인 나희덕은 2015. 11.경 아시아문화원에서 라이브이벤트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승낙하였다. 라이브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인보다 먼저 진행된 심보선 시인의 시낭송에 갔었는데, 관객이 너무 적어서 의아하게 생각되어 담당 큐레이터에게 라이브이벤트 홍보에 대해 물어보니 개별 부서에서 홍보를 못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본인의 시낭송이 진행되기 일주일전 쯤 시낭송을 취소한다는 담당 큐레이터의 메일이 왔고, 일방적 취소에 항의하는 메일을 그 큐레이터에게 보냈는데 전화 통화인지 문자 메시지인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죄송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본인의 시낭송이 갑자기 취소된 이유에 대해, 그 당시에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와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지만,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과 시낭송 취소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³²⁾ 또 문화전당에서 2016 ACC 인문강좌 강연을 6월에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승낙하였는데 이후 일정이 연기 되었으며 연기된 이유는 소방 공사 때문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 후 KBS 기자가 강연이 연기된 이유는 소방 공사 때문이 아니고 F 문화전당 전당장 직무대리가 ACC 인문강좌의 강연자 중 일부가 부적합하다며 일부 강연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본인에게 알려 주었다.

30) 플라스틱 신화들 라이브이벤트 기획서(2015. 11. 5.), 플라스틱 신화들 라이브이벤트 홈페이지 (<http://plasticmyths.com/live-events>)

31) 플라스틱 신화들 홈페이지(<http://plasticmyths.com/live-events>)

32) 참고인 나희덕 진술녹음(2018. 2. 6.)

이에 F 전당장 직무대리를 만나 정치적 이유로 본인의 강연을 연기한 것이냐구 문자 F 전당장 직무대리는 오해라면서 일정을 조정해서 연락을 할 거라고 얘기했고, 그해 10월에 강연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³³⁾

[그림-18] 문예6-5_리스트-'16.2.1현재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2014 예술위 책임심의위원회(2014년도) - 19명	
사업명	검토내용
2014 책임심사위원 ('14.3월)	(1차) ○문학: 황현산(45년생), 방민호(65년생), 신익봉(55년생), 김사인(56년생), 최수철(58년생), 정문범(64년생), 나희덕(66년생), 방현성(양재지, 61년생)-최수태군기지반대, 국보법폐지 등

[그림-19] 문예6-11_리스트-'16.9.27현재

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15.12.2)	○K-17명(16.2.23) -문학: ①안현미 ②박범신 ③은희경 ④강은교 ⑤이문재 ⑥이승하 ⑦북효근 ⑧나희덕 ⑨이명재 ⑩임영천 ⑪홍정선 ⑫구모룡 ⑬정홍수 ⑭유성호 ⑮김형중
-------------------------	--

- 당시 라이브이벤트 담당 큐레이터인 문OO는 사랑, 꿈의 라이브 이벤트가 취소되었던 것은 전당 측에 행정 상의 이유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문화전당 측에 홍보 인력이 충분치 않아 나라, 밤의 관객참여가 저조했는데 문화전당 측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로 사랑, 꿈의 이벤트를 취소했다고 답변하였다. 또 나OO, 임OO이 블랙리스트 대상이었기 때문에 취소되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플라스틱 신화들에 임옥상, 강영민 작가가 참여했는데 이 2명 때문에 제재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였다.³⁴⁾
- 임옥상, 강영민 작가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들로, 이 2명은 플라스틱 신화들에 참여하였다.³⁵⁾

33) 참고인 나희덕 진술녹음(2018. 2. 6.)

34) 참고인 문OO 이메일 조사보고(2018. 3. 9.)

35) 플라스틱 신화들의 홈페이지(<http://plasticmyths.com/live-events>)에서 임옥상, 강영민 작가가

[그림-20]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68	미술	이철수	민예총 부회장	B
69	미술	임옥상	93년 민족미술협의회 대표	B
70	미술	임정화	문화연대 공동대표	A

(붙임 17)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연번	성명	기재 내용	출처
1	강영민	팝아트조합 대표	院 보고서
2	강영민		문체부 자료

[그림-21] 라이브이벤트 주제별 행사 내용

나라 DAIRY 밥 MEALS 사랑 DREAMS

12월 4일 (금)
Dec 4th 2015 (Fri)

외국인스 /
강영민, 눈꽃산방
Performance /
KANG, Young mean, Snow Hiking

12월 5일 (토)
Dec 5th 2015 (Sat)

올로키움 /
최-천 시야오, 토니 시, 다리우허 쑹 루스훈, 제이슨 바커, 이택광
외국인스 /
홍알 마이, 동쪽 강태 속의 신화
콘서트 /
박병오-김영민, 발명왕 아시아
Colloquium /
Li-chun HSIAG, Tony SEE, Darzush M DOUST, Jason BARKER, Alex Taek-gwang LEE
Performance /
TUAN Mami, Myth in East Mist
Concert /
Byongh O PARK-KANG, Young mean, Invented Asia

12월 6일 (일)
Dec 6th 2015 (Sun)

백제 퍼포먼스 /
위래야스 카를
외국인스 /
최-천 시야오, 토니 시, 다리우허 쑹 루스훈, 제이슨 바커, 이택광
Lecture Performance /
Shreyas KARLE
Round Table /
Li-chun HSIAG, Tony SEE, Darzush M DOUST, Jason BARKER, Alex Taek-gwang LEE

12월 12일 (토)
Dec 12th 2015 (Sat)

백제 /
강수미, 황두, 나카무라 마사토
콘서트 /
한희정
Lecture Performance /
Sumi KANG, Huang Du, NAKAMURA Masato
Concert /
Heejung HAN

12월 13일 (일)
Dec 13th 2015 (Sun)

시낭송 /
심보선
백제 /
최유준
콘서트 /
이희문
Poetry Reading /
Bosoon SIM
Lecture /
Yujun CHOI
Concert /
Haemoon LEE

1월 16일 (토)
Jan 16th 2016 (Sat)

백제 퍼포먼스 /
김남서, 김규환, 발명왕
콘서트 /
방백 (방준석·박정진)
Lecture Performance /
Nameee KIM, Gyuhan KIM, Hyssi YANG
Concert /
BanBaek (Joonsuk BANG-Hyunjin BAEK)

1월 17일 (일)
Jan 17th 2016 (Sun)

시낭송 /
임미진, 나희백
퍼포먼스 /
이슬기
Poetry Reading /
Eujin LIM, Heuduk NA
Performance /
Seulgi LEE

1월 23일 (토)
Jan 23rd 2016 (Sat)

백제 /
이주연, 최성환, 우정아
콘서트 /
최고문
Lecture /
Jubin LEE, Sunghwan CHOI, Jung-Ah WOO
Concert /
Goon CHOI

1월 24일 (일)
Jan 24th 2016 (Sun)

백제 퍼포먼스 /
박진경, 사사키 아타루
퍼포먼스 /
조문자
Lecture Performance /
Chankyong PARK, SASAKI Ataru
Performance /
Eunji CHOI

플라스틱 신화들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3) 소결

참고인 나희덕의 진술과 라이브이벤트의 기획서, 라이브이벤트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면, 참고인 나희덕의 시낭송이 계획 되었다가 취소된 것이 확인되었다.

참고인 나희덕은 본인이 블랙리스트 등재와 시낭송 취소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였지만 참고인 문OO 외에 라이브이벤트 관련 참고인들과 당시 문화창조원 소속 직원들을 조사하지 못해 참고인 나희덕의 시낭송이 취소된 이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라. 아시아예술극장 영상물 상영 취소 요청

1) 참고인 김OO 진술

- 2015. 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 예술감독이었던 김OO는 임민욱 작가의 ‘네비게이션 ID-X가 A에게’를 2015. 7. 4. 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에서 상영하기로 하였다. ‘네비게이션 ID-X가 A에게’는 광주의 오월 어머니들이 함평, 진주, 경산의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현장과 유해 발굴지를 방문하는 여정을 담은 영상물이다. 2015. 6.말경 이OO 아문단 전당기획과장이 위에서 불편하니까 위 영상물을 상영을 취소해 달라는 얘기를 3~4번 하였다. 이에 김OO 예술감독은 임민욱 작가에게 위 영상물의 상영을 취소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임민욱 작가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 영상물은 2015. 7. 4. 상영되었다. 김OO 예술감독은 이OO 전당기획과장이 이 영상물의 상영 취소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이 영상물의 주제도 문제가 되었지만 임민욱 작가도 문제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³⁶⁾ 임민욱 작가는 문체부가 제출한 ‘문예 6-11_리스트-’16.9.27현재’에 등재되어 있다.

[그림-22] 문예6-11_리스트-’16.9.27현재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지	’15.10.11.4)	
원('15.10.13) - 1명	0 추가 없음. 우리 체크한 것 제외-B('15.10.19)	
국어시외회 외외 - 1명	0 임민욱(설치미술가)-K('15.11.4)	

36) 참고인 김OO 진술녹음(2018. 1. 25.)

2) 소결

김OO 전 아시아예술극장 예술감독은 이OO 과장이 위에서 불편해 한다며 ‘네비게이션 ID-X가 A에게’의 상영 취소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OO 아문단 전담기획과장과 임민욱 작가, 아문단 소속 공무원 등을 조사하지 못해 이OO 과장이 ‘네비게이션 ID-X가 A에게’의 상영 취소를 요구한 사실과 취소를 요청한 이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가. 신청인의 신청 내용

1) 신청인 이영철·성완경

신청인 이영철은 M 연세대 교수를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으로 임용하고 문화창조원 개관 전시 <나의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나의국가>의 전시를 중단시키기 위해 본인을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에서 계약 해지했으며, 계약 해지를 위해 감사 청구와 내부 회의가 진행되었고, M 연세대 교수를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에 사전 내락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 성완경은 개발원 문화창조원 개관 전시 <나의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노순택, 홍성담, 임흥순 등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전시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나의국가>의 전시 기획안에 세월호 관련 전시와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들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참고인 강OO은 <나의국가>가 신청인 이영철의 예술감독 계약 해지의 한 이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참고인 박OO·김OO는 <나의국가>에 참여하는 작가들 때문에 <나의국가>의 전시가 취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M 연세대 교수는 <나의국가>에 참가하는 작가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세월호 관련 전시와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가 포함되어 <나의국가>가 전시 취소되고, <나의국가> 때문에 신청인 이영철이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에서 계약 해지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개발원 원장이던 최OO,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M연세대 교수, 아문단 소속 공무원들, 개발원 간부진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 이영철·성완경의 주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신청인 임인자

신청인, 참고인 장OO의 진술과 5·18증언맵의 SNS 홍보문, 2013. 1. 21.자 문체부 공문 ‘아시아예술극장 창작레지던시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관련 협조요청’을 살펴보면 5·18을 명시하여 5·18증언맵을 기획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5·18증언맵 홍보물과 5·18증언맵 보도자료에는 5·18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5·18증언맵 홍보물에서 5·18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아문단 G 전당기획과장과 아문단 소속 관련자 등을 조사하지 못하여 5·18을 삭제 지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문화전당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

1) 아시아문화원 간부진의 블랙리스트 등재

문체부 전 예술정책과 오OO의 진술과 관련 자료, 참고인 OOO의 진술을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 간부진 선임 과정에서 아시아전당(문체부 조직)은 오OO을 통해 국정원의 인사 검증을 요청하였고 국정원의 배제대상자 중 일부는 아시아문화원 간부로 임명되었지만, 일부는 임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F 문화전당 전당장 대리wa 아시아전당 소속 공무원들, 아시아문화원의 관련자 등을 조사하지 못해 아시아문화원 간부진 선임과정에서 국정원 배제대상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2) 문화전당에 대한 인사 개입과 인사 청탁

조성위원회 위원 선임, 아시아전당 혹은 개발원의 인사 청탁, 개발원 원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하지 못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 문화창조원 플라스틱 신화들 라이브이벤트 특정 인사 배제

참고인 나희덕의 진술과 라이브이벤트의 기획서, 라이브이벤트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면, 참고인 나희덕의 시낭송이 계획 되었다가 취소된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라이브이벤트 관련자들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고인 나희덕의 시낭송이 취소된 이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4) 아시아예술극장 영상물 상영 취소 요청

당시 이OO 아문단 전당기획과장과 아문단 소속 공무원 등을 조사하지 못해 ‘네비게이션 ID-X가 A에게’의 상영 취소를 요청한 사실과 취소를 요청한 이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가. 조사활동 기간의 부족

위원회는 최초 6개월 및 3개월의 기한 연장 등 총 9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은 2017. 12. 22. 조사 개시되어 자료 및 진술인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조사 기간의 부족으로 신청인들의 주장 내용과 관련한 아문단, 아시아전당 관련자들과 개발원, 아시아문화원 관련자 등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또 문화전당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관련자들의 조사와 자료 조사가 조사 기간의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02

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관련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102

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관련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특7[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관련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사건번호 2017공29, 2017공30 병합)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조사 취지

이 사건은 문체부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기도하고, 아울러 이들 기관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거나 공모사업에서 배제시킨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 및 사건 경위 파악을 통해 국가기관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 1) 국정원의 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左편향 행태 시정 필요’ 보고에 대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대책 지시에 따라 문체부는 16개 광역시·도(문화재단 포

함)를 대상으로 ‘지자체 대상 문예진흥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2013. 11. 11.~12. 13.)하고, 2014. 2. 17.에 「각 지역별 현안 및 조치계획 결과」를 보고하였다.

- 2) 문체부는 또한 김기춘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계획」,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 향후 조치 방안」 등의 방안을 수립, 보고하였다. 위 조치계획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예술위가 배분하던 예산을 기재부가 지자체에 직접 배분하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지역특별회계)으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직접 사업심사와 예산배분 등에 관여하고자 하였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로 블랙리스트의 등재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역특별회계의 인센티브 제도나 신규 기획사업 등으로 지자체를 길들이려 시도한 점도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3) 문체부의 배제 실행 결과로 일부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거나, 공모사업에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6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에서는 야당 출신 자치단체장이 있는 안산, 전주, 충북, 성남시가 배제된 사실이 문체부 블랙리스트에서 확인되었다.
- 4) (사)한국민예총대구지회가 조사신청한 <2013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및 ‘대구문화재단의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은 조사 대상인 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붙임 : [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관련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사 건] 2017직특7[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관련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병합 : 2017공29 [대구문화재단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2017공30 [2013 컬러풀대구페스티벌 ‘대구민예총’ 선정 배제 의혹 사건]

[신청인] (사)한국민예총대구지회 (이대우)

제1절 | 조사 개요

1. 조사 취지

이 사건은 문체부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지자체 및 지역 문화재단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기도하고, 아울러 이들 기관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거나 공모사업에서 배제시킨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 및 사건 경위 파악을 통해 국가기관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 근거

본 사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제1호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 결정 등) 제2항 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제20차 전원위원회(2017. 12. 22.)에서 조사개시 결정되었다(의안번호 17-133).

나. 조사 목적

- 1) 이 사건 조사를 통해 국가기관이 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을 통제하려 하고, 공모사업 등에서 배제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 2) (사)한국민예총대구지회가 조사신청한 2017공29 및 2017공30의 두 건이 2017직특기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관련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에 병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 또한 규명하고자 한다.

제2절 | 조사 방법

1. 자료 조사

자료 조사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1] 자료 조사 주요 목록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생산시기
1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2017.10.30.
2	김기춘 외 6인에 대한 제2심 형사 판결[2017노2425, 2017노2424(병합)](2018. 1. 23.)	서울고등법원	2017.
3	「2013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2.20.
4	「지자체 대상 지역협력형 사업 실태조사 보고(인천, 강원, 경남, 서울, 충북, 대구, 광주, 대전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5	「건전생태계 진흥방안(수정) 대외비」	문체부	2014.10.22
6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대외비1-1)	문체부	2015.5.21.
7	리스트 - '16.9.27.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6.
8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5.
9	「2010~2016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	대구문화재단	2018.

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목록

연번	성명	관련 사항	조사 내용
1	한OO	신청인	녹취록(2018.4.20.)
2	심OO	전 대구문화재단 대표	진술조서(2018.4.12.)
3	OOO	대구문화재단 직원	면담 보고(2018.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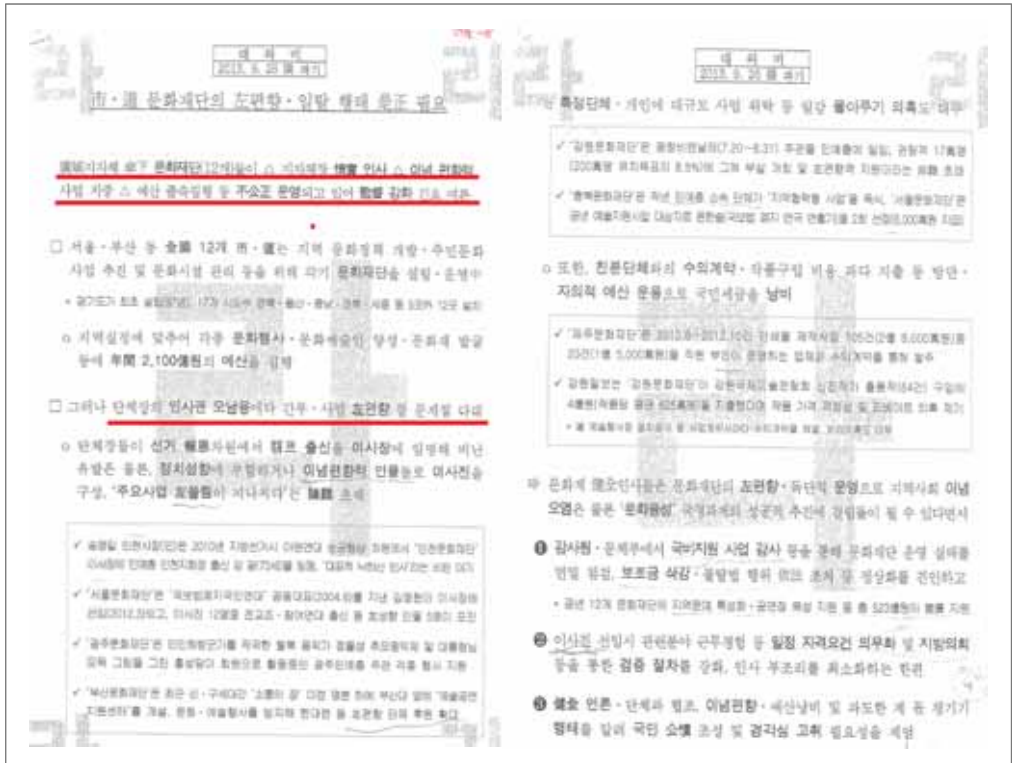
제3절 | 조사 결과

1. 사건 배경 - 청와대의 '左성향 문예계 정상화 대책' 요구

가.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좌편향 실태' 보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부임(2013. 8.)을 계기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左성향 세력 활동 실태(2013. 8. 16.)」 △「市·道 문화재단의 左편향·일탈 행태 是正 필요(대외비, 2013.9.26.限 파기)」 △「문예계內 左성향 再확산 시도 차단 건의(2013. 10. 2.)」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들은 '左성향 문예계 인물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조직 재건의 好機로 보고 勢 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1)

[그림-1] 「市·道 문화재단의 左편향·일탈 행태 是正 필요(대외비, 2013.9.26.限 파기)」



1)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2017. 10. 30.

특히 위 「市·道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是正 필요(대외비, 2013.9.26.限 파기)」에서는 각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좌편향’을 지적하며, △ 인천시 - 지방선거 논공행상으로 민예총 출신 임명 △ 서울문화재단 -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출신 이사장 선임 △ 광주문화재단 - 정율성 추모음악제 및 홍성담 지원 △ 부산문화재단 - 한대련 등 좌성향 단체 후원 확대 등을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 행태로 적시하였다.

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대책 지시

위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보고가 잇따르자, 김기춘은 2013. 8월경 ‘특정 편향(좌편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보고를 문체부에 지시하였고, 문체부는 이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을 마련하고 A 교문수석실 행정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하였다(동년 9. 3. 보고). 이 보고는 ‘특정한 정치적·사회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순수예술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²⁾ 이러한 보고는 추후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다시 확인된다.

[그림-2] 제20차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상황보고 - 교문수석실, 2013. 9. 30.)³⁾

<p>④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극단의 일부 정치 편향적 작품 제작, <u>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이념성 사업 지원과 부실 운영 등 지속적 논란 행태에 대한 대책 마련·실시</u> ● 국립극단체는 국민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작품을 우선 제작 ● 간접지원 및 책임심의제도를 강화, 좌편향 작품은 지원 배제 ● 9.30일 부터 문체부에 감사반을 구성, <u>지역문화재단 등에 대한 서면·현장 감사(~11.29) 실시 후 제도개선 추진(12월) 등</u> ● 민간지원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자 등에 협조 당부 ● 보수적 시민운동 단체 등 대안단체 육성
--

2) 위와 같음.

3) 「제20차 수석비서관 회의자료(2013.9.30.)」,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2017노2425(병합), 항소심 증거기록, 2017.

2. 청와대 지시에 대한 문체부의 대책

가. 초기 조치

위와 같이 문체부는 청와대에 「문화예술 분야 左편향 대응책」을 보고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문화예술정책 점검T/F’를 구성(2013. 9. 9.)하는 등 기금 보조사업에서 특정인에 대한 지원 배제책을 마련·실시하였다. 이는 △ 문체부 장관, 左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강구 지시(2014. 1. 24.) △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 추진(2014. 2. 24.) 등 당시 국정원의 보고·첩보에서 확인된다.

한편 「市·道 문화재단의 左편향·일탈 행태 是正 필요(대외비, 2013.9.26.限 파기)」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16개 광역시·도(문화재단 포함)를 대상으로 ‘지자체 대상 문예진흥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2013. 11. 11.~12. 13.)하고, 2014. 2. 17.에 「각 지역별 현안 및 조치계획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 결과 각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에서 ‘특정 단체’에 예산이 편중되는 등의 ‘특이사항’이 ‘청와대의 바램’과 달리 대부분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2013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제도적인 보완과 철저한 관리 필요성 등의 문제만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

【표-3】 「2013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

〈 조사 결과 〉

- 지역협력형 사업운영의 전문성, 체계(시스템) 등의 상이성 및 격차 존재
- 지역의 ‘자율성’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업의 ‘특성화’를 적극 유도(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필요
- 국가 보조금 사업 운영·관리
 - 보조대상 지원대상 심의(선정)
 -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규정·지침 제정, 정보 공개, 재단이사 관련 지원, 다건 지원 등) 필요
 - 철저한 보조금 정산 관리의 필요성
 - 지자체·문화재단·예술인들의 인식 제고, 지침, 자체 점검 시스템(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정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4) 「2013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2. 20.

- 보조금 정산기준(지침)이 있으나 해석과 적용(예 : 원천징수 기준금액, 견적서 등 증빙서류)이 상이함. 보다 명확하고 통일된 정산 지침 마련, 보조사업자(지자체, 재단) 및 최종보조사업자(예술가) 대상의 교육·홍보 등이 필요
-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시스템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지자체 감사기구에 의한 정례·수시 감사 등이 작동하고 있음

참고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서울시·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5)

[그림-3] 「지자체 대상 지역협력형 사업 실태조사 보고(서울)

지자체 대상 지역협력형사업 실태조사 보고 (서울)

1

조사 개요

가. 조사대상 : 서울시·서울문화재단
 나. 조사기간 : 2013년 11월 11일(월) ~ 11월 15일(금) <5일간>
 다. 조사장소 :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3층 회의실
 라. 조사 참여자

- 문화체육관광장부 : 최OO 사무관, 000 주무관
- 예술위원회 : 고OO 전문위원, 차OO 차장, 000

매. 조사방법 : 관계자 인터뷰, 시면 자료 조사 등

2

조사 결과

< 총 평 >

- 서울문화재단은 2004. 3.15일 설립하여 정원 72명 계약직포함 133명이 근무하는 단체로서 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의 공모 및 보조금 집행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음.**
- 재단 임원진 구성의 경우 조례와 정관상 서로서장이 원형하도록 되어 있어 시정의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임원진이 구성되는 것으로 사료됨.
- 사업공모와 관련하여 매년 외부 심사위원을 변경하고 3차례 걸친 심사를 통해 선정하므로 특정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윤현숙의 경우 2011~2013년간 창작지원 공모사업으로 2회 지원되었으나, 동 기간 공모비 이상 지원된 경우가 약 40명(3회 이상 지원 15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예총, 민예총 소속 단체에 대한 지원은 2011~2013년간 전체 사업중 각각 4건, 2건에 불과하여 특정 단체 편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개인회원에 대한 지원 여부는 파악 불가).
- 다만, 서울시장이 이사장과 대표이사 등 임원진에 대한 일말권과 재단이 서울시 위탁사업 수행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재단과 마찬가지로 재단 사업 목표나 내용에 대한 서울시의 영향력이 강할 것으로 판단됨(예: 서울시 저소득층 피식 활동 지원 등).

5) 문예6-32_「지자체 대상 지역협력형 사업 실태조사 보고(인천, 강원 경남, 서울, 충북, 대구, 광주, 대전 등)」

나.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1) ‘진흥계획’ 수립의 배경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문체부가 위와 같이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이 의구심을 표현했다고 한다. 김기춘은 2013. 12. 10. 김종 문체부 제2차관에게 “문화예술, 미디어 부분에 左派가 많다. 심지어 공직 내부에도.”라고 하였고, 황우여는 2014. 2월 말 경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에게 “문화예술계에 左派가 여전히 많다”고 언급하였다 으며, 이에 문체부는 ‘이념문제에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위와 같은 외부 인식을 확인’하고 위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체부, BH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 예정」(2014. 3. 21. 국정원 조사결과, 붙임 7 문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문창1_141022) 등의 국정원 보고에서 확인된다.⁶⁾

2) ‘진흥계획’ 中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부분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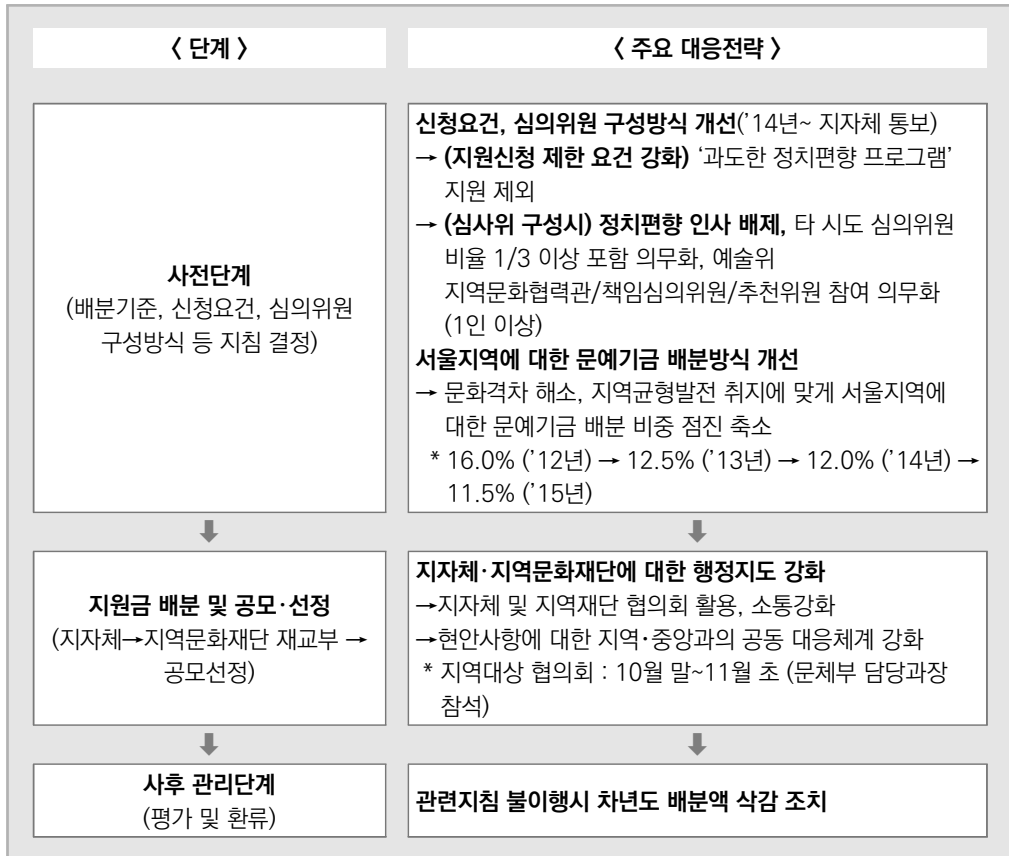
2014. 10. 22. 경 작성된 이 ‘진흥계획’에는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⁷⁾

[표-4] 「건전생태계 진흥방안(수정) 대외비」

- **문예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 15년 정부예산안 기준 24,590백만 원
- **(지원현황)** 배분기준(전년사업 평가결과, 인구수, 공연장 및 단체수, 재정의존도 등)에 의거 **17개 시도에 지원금 배분 + 지방비 매칭 → 지역문화재단 재교부, 공모 지원**
- * '15년 기준, 시도당 평균 14억원 규모 지원(**서울 33억원**, 경기 23억원, 부산 17.5억원, 전북 15.5억원, 전남 14.8억원/ 세종 1.5억원, 제주 9.7억
- **(개선방안)** 신청요건, 심의위원 구성방식 개선, 지자체·지역문화재단행정지도 강화, 서울지역에 대한 문예기금 배분방식 개선 등

6)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2017. 10. 30.

7) 문창1_141022 「건전생태계 진흥방안(수정) 대외비」



위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기존의 방식은 문예기금을 지역 배분 기준인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인구수, 공연장 및 단체수, 재정의존도’ 등에 따라 17개 시도에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원금 배분하고 이를 지역문화재단 재교부하게 하고 공모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변경하여 ‘3단계 구분’으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조치하였다.

단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단계에는 신청요건 및 심사위 구성 강화, 서울시 등 특정 지역 지원 축소하고, 지원금 배분 및 공모·선정 단계에는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며, 사후 관리단계에서는 지침 불이행시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⁸⁾

문체부는 또한 2015. 5. 21. 그간의 지원배제조치 실적을 보고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향후 조치 방안을 보고하였다.

[그림-4]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대외비1-1)」

□ 향후 조치방안

2. 지역 편향단체의 관행적 공적자금 지원 제한 강화

- 지역에 배분하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지역특별회계**로 이양 검토
 -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오명을 제거하기 위해 현재 배분방식을 지역특별회계로 완전 이양하여 지역의 자율성 부여 명분
 -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술위 개입 배제 및 문예기금 재원 절감
- (필요시) 예술위에서 공모 또는 기획사업을 주관하여 **지역단체를 직접 선정, 지원하는 등 지역에 대한 주도권 확보**
 - 지역문화예술지원(총 248.2억) 중 지역특성화지원(161.9억) 이양/ 일부예산은 지역 대상 직접공모사업 검토중
 - 248.2억: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161.9억),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84억), 지역협업체운영 및 사업평가(2.3억)

이러한 문체부의 정책 변화에서 나타나는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산지원 방식 변경으로 예산 직접 통제 목적

문체부는 그동안 예술위가 배분하던 예산을 기재부가 지자체에 직접 배분하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지역특별회계)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즉 ‘문화예술위 → 지자체 → 광역문화재단’에서 ‘기재부 → 지자체 → 광역문화재단’으로 예산지원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문예진흥기금의 고갈에 대비하고, 세부사업계획을 확인하지 않는 예술위의 관행적 배분에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배분을 추진한다는 명분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8) 문예6-1_「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대외비1-1)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변경에는 첫째,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교체·선임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체부가 직접 사업심사·예산배분 등에 관여하겠다는 의도와 둘째, 실제로는 문체부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지침을 직접 적용하여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등재자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이러한 예산 직접 배분 결과, 각 광역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의 입맛에 맞는 선심성 행사나 이벤트성 대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매칭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등은 아예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산업 기반이 더욱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2) 지자체·지역문화재단에 대한 관리·통제의 강화

또한 문체부가 매년 문체부 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지역대상 협의회 개최하는 등 지자체·지역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지특회계의 인센티브 제도나 신규 기획사업 등으로 특정 지자체에 지원을 추가하거나 당시 야당 관련 지자체에는 예산 삭감 조치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길들이기를 시도하였다는 점도 변경된 정책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지자체·지역문화재단 사례

다음은 문체부 블랙리스트의 관리리스트 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배제리스트에 지자체·지역문화재단이 등재된 사례들이다.

가. 관리리스트 등재 사례

서울·인천·광주 등 광역문화재단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5] 「리스트-2014 2015(654명)」 中 ⑥ 기존관리리스트149명

지역문화재단 (13년.10월경) 5명	①인친문화재단:민예총 출신 강광 임명 -> 낙하산 서울문화재단 -②김정현 이사장 및 전교조, 참여연대 등 5명 이사 포진 -③윤한술(국보법 폐지 연극 연출가) 2회 선정(6,000만원 지원) 광주문화재단 -④월북 음악가 정윤성 추모음악제 -⑤홍성담 활동 중인 광주민예총 지원 부산문화재단 : 예술공연지원센터 개설하여 최면향 단체 후원 확대
----------------------------	--

나. 공모 사업 관련 등재 사례

공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등재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지자체 등재 사례

- <2016년 공연예술창작산실(음악)> 사업에서 안산, 전주, 충북, 성남시가 탈락한 사례가 확인된다. 모두 야당 출신 자치단체장인 지역이다.

[그림-6] 「리스트 '16.9.27. 현재」 -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음악-김민 감독	○윤이상평화재단 이사(2013), 예술의전당 사장 응모(2009) 및 내정권희 등
공연예술창작산실(음악) (8.8)	○B(8.10)-안산,전주,충북,성남시 등
아트원씨어터 수시대관(8.8)	○B(8.10)-이재진, 변경주, 박호산-동맹이인 확인후 조치할 것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오세영,김예란,최훈: 특이없음(7.25) ○고해선:특이없음(7.26) ○신경림(X), 박범신(X), 정호승(O)

② 지역문화재단 대표 등재 사례

- 대전문화재단 대표 박찬인으로 인하여 배제된 사례이다.

[그림-7] 문예6-5 리스트 '16.2.1.현재 - 2016년 공모사업리스트

지역대표공연예술제(L8)	○이건없음(L21/B) ○2건 양해 재요청(L21) - 양해받(B) - ①이종호(2012년 대선시 문제인 변호-K/ 문화미래포럼 발기인) - ②이광택(밀양어름축제) ○ 추가정보(B) - 박찬인, 이계성, 박석규: 동맹이인어부 확인후 조치할 것 - 홍미영, 계중길, 정순기 : 자체판단 - 한선숙 : 제외할것
---------------	--

- ③ 지자체장 성향 때문에 지역문화재단이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사례
 - 군포문화재단은 군포시장 김윤주와 예술진흥본부장 서강석이 등재되었는데, 공모 결과가 2016. 8. 5.경 공지되었으므로 청와대 확인 후(B/7.22.) 배제시켰고, 국정원(K)은 추후(8.22.) 예술진흥본부장 서강석까지 검토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8] 문예 6-11리스트 - '16.9.27.현재-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창작유거민 해외공동제작지원(7.20)	○ 특이없음(B/7.22) ○ K(B.22) - 박정희
문화예술소 운영사업(7.21)	○ 군포문화재단(군포시장 김윤주)-(B/7.22) ○ K(B.22) - 서강석
문화예술 정책교사(B.21)	○ B(B.29)-류승원(감독), 이기호(소설), 정희성(시인), 장철훈(애니메이션감독), 변동평(서양화가), 임진택(연극연출, 국악인) ○ K(7.11)-장철훈(애니메이션감독), 정희성(시인), 오동민(영화평론가), 임진택(연극연출, 국악인), 장강명(소설), 류승원(감독), 이기호(소설), 박영택(미술평론가, 교수)
문화예술 명예교사 추가(B.8)	○ B(B.12)-김경주(시인) ○ K(B.5)-김광호, 한만주(만화평), 김병권

4. 대구 민예총 신청사건 조사 결과

가. 신청인 주장 요지

1) 사건 신청 요지

(사)한국민예총대구지회(이하 대구 민예총)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7. 11. 27. 우리 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였다.

가) 2013.10.13.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위 축제의 메인행사에서 대구민예총이 탈핵을 소재로 퍼레이드에 나가려고 하자, 대구시 공무원과 대구문화재단 직원, 축제사무국 직원 등이 용역을 동원하여 퍼레이드를 막고, 현수막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방해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에 대한 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조사

나) 대구문화재단의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2017. 11. 27.자 <대구신문>에 따르면, 대구문화재단의 원OO 본부장이 수년 전부터 다수의 직원들에게 '대구민예총은 좌파이며 대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했으며, 블랙리스트 작가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함. 또한 대구민예총은 2014

년부터 지금까지 대구문화재단의 집중지원 사업에 지원했으나 한 차례도 지원받지 못하였고, 300만원 한도의 작은 사업들에만 선정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지역문화재단까지 전파되고 활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2) 신청인 진술 요지

대구민예총 사무처장 한OO은 2018. 4. 20. 면담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요지를 설명하고 추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⁹⁾

가)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관련

- 퍼레이드 시 반핵을 주제로 한 ‘핵 싫어 해 좋아’를 가지고 2013.10.12.에는 예심에서 2위를 했으나, 본심인 다음 날 위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이유로 퍼레이드를 방해함
- 퍼레이드를 방해한 사람들은 행사 용역, 대구문화재단 직원, 시청 공무원이었고 몸싸움이 크게 일어 경찰까지 출동했음
- 나중에 대구시청 측과 대구문화재단 간부 등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회유하기도 하였으나, 대구민예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하는 등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음
- <2013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사건 이후, 그 전에 대구민예총이 주로 담당했던 한 세션이 해당 축제에서 아예 사라졌음

나) 대구문화재단의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 <대구일보>의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가 나온 후,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을 했다는 대구문화재단 원OO 본부장과 면담을 했지만, ‘자신의 직을 걸고 블랙리스트는 없다’라는 말만 들었고, 이에 대해 대구문화재단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자, 신임 대구문화재단 대표가 부임한 후 공문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일절 부정하는 공문을 보내음
- 개인적으로 대구문화재단 내부 직원들에게 탐문하였으나, 블랙리스트가 실행됐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하였으며, 이전부터 ‘예산배분표’ 같은 게 있어서

9) 한상훈 녹취록, 2018.4.20.

예산 배분 해 줄 때 참고했었다는 말은 전해 들음

- 대구문화재단 내부 직원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위 블랙리스트 발언과 관련한 재단 간부는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차별적인 언사가 늘 있었으며, 직장 내에 ‘민예총에 대해서 편파적인 반응 같은 거는 일상화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들었다고 함

나. 조사 결과

1) 대구문화재단의 대구민예총 및 신청인 지원 내역(2010~2016년)

위 자료 검토 결과, 2010~2016년의 7년간 대구민예총 및 신청인 3인(이대우, 한상훈, 최수환) 이름으로 대구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것은 총 29건에 1억 7,400만 원이었다(년 평균 약 2,485만 원).¹⁰⁾

[표-5] 대구문화재단의 대구민예총 및 신청인 지원 내역(2010~2016년)

연번	년도	지원사업명	분야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지원액 (천원)
1	'10	(자체)문화 예술진흥 사업비	다원예술	(사)대구민예총 문화예술연구원	이대우	2010대안예술시장형성과활성 화를위한세미나 자급자족자립예술2	4,000
2	'10	(자체)문화 예술진흥 사업비	연극	(사)대구 민예총 연극위원회	강신욱	저소득층어린이, 청소년을 위한<신나는연극교실>	3,000
3	'10	(자체)문화 예술진흥 사업비	다원예술	문화나눔 옷골	최수환	예술가들 동네에서 놀판을 벌이다	5,000
4	'10	(자체)문화 예술진흥 사업비	다원예술	사)청소년교육. 문화센터 “우리세상”	김민남	12회 청소년영화,영상제작캠프	3,000
5	'10	찾아가는 문화마당	다원예술	문화나눔 옷골	최수환	21세기 문화보부상-노인정에 벗집을 풀다	7,000
6	'11	창작진흥 사업	연극	(사)대구 민예총 연극위원회	강신욱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신나는 연극교실	4,000
7	'11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대구민예총 문화예술연구원	이대우	자급자족자립예술	4,000

10) 「2010~2016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 대구문화재단, 2018.

연번	년도	지원사업명	분야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지원액 (천원)
8	'11	집중기획 지원사업	다원예술	사)한국민족예 술인총연합 대구지회	최수환	2011대구자립예술가축제 - 예술가들의 집단지성과 별난감성으로 만드는 '소셜 아트워킹 페스타	50,000
9	'11	창작진흥 사업	다원예술	문화나눔 옷골	최수환	동네예술가들 상상공장을 차리다	5,000
10	'11	창작진흥 사업	다원예술	문화나눔 옷골	최수환	동네예술가들 상상공장을 차리다	5,000
11	'11	찾아가는 문화마당	다원예술	문화나눔 옷골	최수환	노인정어르신과 동네예술가들의 재미난 데이트	6,000
12	'12	창작진흥 사업	연극	(사)대구 민예총 연극위원회	강신욱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신나는 연극교실	4,000
13	'12	창작진흥 사업	다원예술	다원예술위원회	이호근	대구 민예총 송연연대판굿 흔들리며 피는 꽃 14	4,000
14	'12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대구민예총 문화예술연구원	이대우	2012 대안예술시장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자급자족자립예술4'	4,000
15	'12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대구문화예술 현장실무자정책 네트워크	한상훈	2012대구문화예술현장실무자 정책네트워크 정기포럼	3,000
16	'12	공연활동 지원사업	다원예술	문화나눔 옷골	최수환	2012로컬아트페스티벌	12,000
17	'12	찾아가는 문화마당	다원예술	문화나눔 옷골	최수환	21세기문화보부상 마을에 벗짐을 풀다	4,000
18	'13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대구민예총 문화예술연구원	이대우	2013 대안예술시장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자급자족자립예술5'	4,000
19	'14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한국민족 예술단체총연합 대구지회	이대우	대구자립예술생태지도 그리기 PART1	4,000
20	'14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대구민예총 문화예술연구원	이대우	2014 대안예술시장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자급자족자립예술6'	6,000
21	'14	창작진흥 사업	다원예술	대구문화예술 현장실무자정책 네트워크	한상훈	2014 대구 문화예술현장실무자 정책네트워크 예술행동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2"	4,000
22	'14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대구문화예술 현장실무자정책 네트워크	한상훈	2014대구문화예술현장실무자 정책네트워크 정기포럼	4,000

연번	년도	지원사업명	분야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지원액 (천원)
23	'15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대구민예총 문화예술연구원	이대우	2015대안예술시장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자급자족자립예술7'	4,000
24	'15	창작진흥 사업	다원예술	대구문화예술 현장실무자정책 네트워크	한상훈	2015 대구 문화예술현장실무자 정책네트워크 예술행동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3"	3,000
25	'15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대구문화예술 현장실무자정책 네트워크	한상훈	2015대구문화예술현장실무자 정책네트워크 정기포럼	3,000
26	'15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한국민족 예술단체총연합 대구지회	이대우	대구자립예술생태지도 그리기 PARTO	6,000
27	'16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한국민족 예술단체총연합 대구지회	이대우	대구자립예술생태지도 그리기 PARTO	3,000
28	'16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대구민예총 문화예술연구원	이대우	2016 대안예술시장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자급자족자립예술8'	3,000
29	'16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대구문화예술 현장실무자정책 네트워크	한상훈	2016대구문화예술현장실무자 정책네트워크 정기포럼	3,000
합 계							174,000

2) 진술 조사

가) 전 대구문화재단 대표 심OO 진술¹¹⁾

심OO은 대구문화재단 대표로 2015. 6. 25.~2017. 9.경까지 근무하였으며, 자신이 부임한 2년째 되던 날,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익명으로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된 문서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한 이유는 대구문화재단이 아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조직을 변화시키고자 했으나 실패했다고 한다. 또한 그 중심에는 원OO 본부장이 있었고,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은 본인이 부임하기 전인 2015. 6월 이전의 발언이었다는 것을 직원들을 통해서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문체부나 대구시에서 혹시 배제되지

11) 심OO 진술서, 2018.4.12.

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만약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더라도 대구 지역의 특성 상 절대 입을 열지 않았을 것이고, 다만, ‘민예총이나 민족작가회의 같은 단체를 지원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대구민예총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쪽에 안 줄 수는 없고,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씩은 줬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2015년에는 이미 예산 운용 계획이 확정되어서 어쩔 수 없었고, 2016년도는 ‘그러지 말고 좀 지원해 주는 게 어떡냐’ 라는 뉘앙스로 지시를 해서 상황이 조금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나) 대구문화재단 직원 000 진술¹²⁾

대구문화재단 직원인 000은 <대구신문> 블랙리스트 기사와 관련하여, 그 내용은 직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진행된 결과이며, 기사에 언급된 간부의 개인적인 성향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있는 단체 등은 행정적으로 배제시킨 경우는 있으나, 대구문화재단 내에 블랙리스트는 없었고, 그러한 지시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규명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에서 위원회의 권한 부족, 조사 시간의 제한, 관계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미처 조사하지 못하였거나, 규명하지 못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전체 피해 사실

둘째,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등재 경위 및 관련자

셋째, 대구민예총 신청건과 관련한 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 관계자

12) 000 면담 보고, 2018.4.20.

제4절 | 결론

이 사건은 문체부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지자체 및 지역 문화재단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기도하고, 아울러 이들 기관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거나 공모사업에서 배제시킨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정원의 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左편향 행태 시정 필요’ 보고에 대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대책 지시에 따라 문체부는 16개 광역시·도(문화재단 포함)를 대상으로 ‘지자체 대상 문예진흥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2013. 11. 11.~12. 13.)하고, 2014. 2. 17.에 「각 지역별 현안 및 조치계획 결과」를 보고하였다.

둘째, 문체부는 또한 김기춘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계획」,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 향후 조치 방안」 등의 방안을 수립, 보고하였다. 위 조치계획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예술위가 배분하던 예산을 기재부가 지자체에 직접 배분하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지역특별회계)으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직접 사업심사와 예산배분 등에 관여하고자 하였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로 블랙리스트의 등재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역특별회계의 인센티브 제도나 신규 기획사업 등으로 지자체를 길들이려 시도한 점도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문체부의 배제 실행 결과로 일부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거나, 공모사업에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6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에서는 야당 출신 자치단체장이 있는 안산, 전주, 충북, 성남시가 배제된 사실이 문체부 블랙리스트에서 확인되었다.

넷째, 대구민예총이 조사신청한 <2013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및 ‘대구문화재단의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은 조사 대상인 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03

배우 유정숙 (가극단 미래 대표)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103

배우 유정숙(가극단 미래 대표)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15[배우 유정숙(가극단 미래 대표)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유정숙은 2006년부터 가극단 미래에서 배우로 활동하였는데,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등에서 공연을 해왔고,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여하였다. 같은 해 6. 1. '통일토크 콘서트'로 구속된 사회운동가 '황선'에 대한 석방문화제를 하는 등 현대사의 사회적 문제와 통일 등을 주제로 한 공연을 펼쳐 왔다.

2016. 4. 24.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열람해 본 결과, 2015. 12. 28.부터 2016. 6. 24.까지 8회에 걸쳐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본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글문화큰잔치'에 지원신청을 했는데 자꾸 예산이 깎였고, 같은 해 10월에 언론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보도될 때 자신도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이 있기에 인터넷으로 언론을 검색해 본 결과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속하게 된 경위와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 자료를 확인한 사실과의 인과관계 여부, 또 한글문화큰잔치에서의 예산 삭감과의 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은 문체부 등에서 차별 배제를 위해 관리하여 온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감시 사찰 차별 배제의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붙임 : [배우 유정숙(가극단 미래 대표)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사 건] 2017특15, 배우 유정숙(가극단 미래 대표)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신청인] 유정숙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유정숙은 2006년부터 가극단 미래에서 배우로 활동하였는데,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등에서 공연을 해왔고,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여하였다. 같은 해 6. 1. ‘통일토크 콘서트’로 구속된 사회운동가 ‘황선’에 대한 석방문화제를 하는 등 사회적 문제와 통일 등을 주제로 한 공연을 펼쳐 왔다.

2016. 4. 24.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열람해 본 결과, 2015. 12. 28.부터 2016. 6. 24.까지 8회에 걸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에서 본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

하였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관 ‘한글문화큰잔치’에 지원신청을 했는데 자꾸 예산이 깎였고, 같은 해 10.에 언론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보도될 때 자신도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이 있기에 인터넷으로 언론을 검색해 본 결과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위와 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이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확인한 사실과의 인과관계 여부, 또 한글문화큰잔치에서의 예산 삭감과의 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 사건에 대해 「15차 전원위원회」(2017. 11. 17.)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①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 ② 국가기관에 의한 신청인의 통신자료 확인 이유 ③ 블랙리스트 등재로 인한 피해 여부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검토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게재일/작성일
1	2013. 3. 15.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국정원		2013. 3. 15.
2	「201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공모계획 보고	문체부		2016. 6. 3.
3	201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공모 선정 심사계획	문체부		2016. 7. 15.
4	「201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공모 선정 결과보고	문체부		2016. 7. 28.
5	교부금 교부 신청서	가극단 미래		2016. 8. 5.
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문체부		2016. 8. 26.
7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예술인 명단	한국일보		2016. 10. 12.
8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 일부	김OO		2016. 12. 19
9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진술조서 일부	오OO		2016. 12. 27.
10	국고보조사업 정산확정·통지(가극단 미래)	문체부		2017. 3. 6.
11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
12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결과	국정원		2017. 10. 30.
13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오OO	2018. 1. 31.	
14	[리스트 - '16. 9. 27.현재]	문체부	2018. 3. 26.	

나. 신청인 임의 제출 자료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2] 신청인 제출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입수일	비고
1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	유정숙	2017. 10. 23.	

2.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신청인,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대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조사 형태	일자
1	유정숙	신청인	진술조서	2018. 3. 9.
2	OOO	참고인(문체부 국어정책과)	조사보고	2018. 3. 13.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문건

[그림-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명단

(영화감독) 우재준(배우) 우중필(공연축제기획) 우해림(배우) 원예리(문화기획) 원용진(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유진(공연 기획) 원유진(기획) 원중찬(평론가) 원현숙(영화인) 유대수(화가) 유명상(배우) 유상우(전북민예총사무처장) 유성엽(영화감독) 유성욱(음악인) 유영봉(서울괴담 대표) 유용주(시인) 유정민(배우) 유정숙(배우) 유정은(영화인) 유정탁(시인) 유희중(배우) 윤가현(영화배우) 윤기호(영화프로듀서) 윤덕현(영화인) 윤만식(한국민예총광주지회회장) 윤보경(연극인) 윤수중(유지선유니온 운영위원) 윤정모(소설가) 윤진서(영화배우) 이강민(울산민예총이사장) 이광석(문화연대 집행

이 문건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문화예술인 4,110인, 경남 문화예술인 869인, 전북 문화예술인 115인, 부산 문화예술인 423인, 서울연극협회 1,000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문화예술인 909인, 문화예술인 71인, 여성 문화예술계 628인)’ 총 9,473명에 대한 언론보도, 블로그 포스팅을 스크랩한 목록이다.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에 신청인이 적시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유정숙(배우)’로 적시되어 있다.

위 문건 표지의 표를 작성하고, 관련 기사를 스크립한 사람은 전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〇〇서기관이다. 오〇〇은 위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2015. 5.경¹⁾ 당시 김〇〇 청와대 행정관이 저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알려주며,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서 장관한테 보고하고 교문수석실로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더니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인,

1) 단,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15. 5. 11.) 문건에서 “15.4월 현재 9,473건”이라는 표현이 확인되며, 공판에서 오〇〇이 9,473명의 확인 시기가 4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여(공판 기록 1412), 9,473명에 대한 최초 파악시기가 5월이 아닌 4월일 가능성이 있다.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으로 확인이 되어 이 표로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²⁾

한편 전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은 위 문건에 대하여, 2015년 5월 경 김OO이 오OO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관련 문화예술인 명단을 뽑아서 장관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오OO에게 위 문건을 작성하게 하여 김OO이 당시 문체부 장관 김종덕에게 이를 보고한 뒤 오OO을 통해 교문수석실로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³⁾

즉, 오OO은 김OO으로부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정부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 문건을 작성한 후 예술정책관 김OO에게 보고하였다. 김OO은 위 문건을 직접 장관 김종덕에게 보고하였고, 오OO으로 하여금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인 김OO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게 하였다.⁴⁾

위 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된 한국일보는 2016. 10. 12. 보도에서,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 6.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2012.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 총 9,473명의 예술인에 대하여 청와대가 검열 용도의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보도된 내용과 실제 문건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다.).⁵⁾

2) 특검의 오OO 진술조서(2016. 12. 27.)

3) 특검의 김OO 진술조서(2016. 12. 19.)

4) 특검의 오OO 진술조서(2016. 12. 27.)

5)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2016. 10. 12.

2) 문체부 예술정책과가 2015. 5. 11. 작성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그림-2] 문예6-6_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대외비1-2)

-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자료 관리('15.4월현재 9,473건)
 -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선언(문화예술인 594인) *15.5월초 추가
 - 세월호 시국선언(문학인 754인)
 -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6,517인/문화예술인, 경남·전북·부산예술인, 서울연극협회)
 -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1,608인/문화예술인, 여성예술인)

위 [그림-2]는 전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이 2015. 5. 11. 작성하여 문체부 과장, 국장, 장차관, 청와대까지 보고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소위 '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단체에 대한 주요 조치⁶⁾ 실적, 주요 조치에 대한 평가, 블랙리스트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향후 조치방안, 추진일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의 제1쪽에 '주요 조치 실적'으로 '문학, 연극 등 주요 분야 단체 및 개인 자료 관리('15.4월 현재 9,473건)'를 내세우고 있으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이 분류 항목 중 하나로 되어 있다.

2. 조사 내용

가.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

신청인 유정숙이 대표로 있는 가극단 미래는 사회적 문제와 통일 등을 주제로 한 공연을 하는 극단이다. 가극단 미래는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대회' 등의 집회에서 문화 공연을 하였다.

신청인은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여하였는데 2016. 10. 12.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예술인 명단'에서 신청인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선언 관련 9,473명 명단'에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

6) 배제 조치,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업구조조정 및 개선, 일부 사업 양해조치 등을 포함한다.

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선언 관련 9,473명 명단'은 문체부에서 소위 '좌파' 문화예술인·단체에게 차별대우를 하기 위해 작성하고 관리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해당하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에 포함된 신청인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 문체부가 제출한 [리스트 - '16. 9. 27.현재] [2016. 기타사항 확인 리스트(K)]에 '가극단 미래(유정숙)-(K/8.4)'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K는 국정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국정원에 의해 이 리스트에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3] [리스트 - '16. 9. 27.현재] [2016. 기타사항 확인 리스트(K)]

지역전통한식문화사업 기획감독	○특이없음(K/7.7)
우수상품 2차 심사위원 후보자	○승효상(K/7.4)
세종학당파견교원 무기계약직	○특이없음(K/7.12)
2016 인생나눔교실(5.24송부)	○남성순(수도권)(K/7.15)
한국문화관광지 문화예술행사(7.21)	○가극단 미래(유정숙)-(K/8.4)
융복합융합프로젝트(7.26)	○아이디어박스(박진배), 유에프오소프트(권오현) (K/8.22)
오르카이티브 리그 융복합콘서트(9.26)	○특이없음(K/9.28)

나. 국가기관에 의한 신청인의 통신자료 확인 이유

1) 신청인 주장 및 통신자료 확인 내역

신청인은 국정원과 경찰청, 서울경찰청에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2014년 '신은미, 황선 전국순회 토크문화콘서트, 북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이하 '토크콘서트')로 2015년 구속된 사회운동가 황선⁸⁾의 석방문화제인 '사랑의 옥탑'을 준비하면서 황선의 남편인 000과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였는데 이 이유로 국정원과 경찰에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거 같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불상의 사람이 와서 '사랑의 옥탑'을 보고 갔는데, 불상의 사람이 경찰이나 국정원 관계자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⁹⁾

7) 000 진술조서(2018. 2. 7.) 000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K는 국정원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8) 황선은 대학생이던 1998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로 밀입북,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9) 신청인 유정숙 진술조서(2018. 3. 9.)

신청인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2016. 4. 24.)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2015. 6. 24.부터 2015. 12. 28.까지 8차례에 걸쳐 국정원, 경찰청, 서울경찰청이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통신사에서 국정원,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제공한 신청인의 통신자료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통신자료 제공 내역

번호	제공일자	요청기관	통신자료 제공 내역
1	2015. 6. 24.	서울지방경찰청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2	2015. 6. 24.	서울지방경찰청	상동
3	2015. 6. 25.	국정원	상동
4	2015. 6. 26.	서울지방경찰청	상동
5	2015. 7. 22.	경찰청	상동
6	2015. 9. 7.	국정원	상동
7	2015. 12. 7.	경찰청	상동
8	2015. 12. 28.	서울지방경찰청	상동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¹⁰⁾라는 북한 여행기를 펴낸 재미동포 신은미와 황선은 2014. 11. 토크콘서트를 시작하였는데 이 토크콘서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¹¹⁾ 이 토크콘서트는 중복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같은 해 11. 19. 서울, 12. 9. 대구, 12. 10. 전북 익산에서 진행되었는데 전북 익산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중 한 고교생이 인화물질을 던져 토크콘서트 관객이 화상을 입었고 토크콘서트는 중단되었다. 그 후 신은미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1. 10. 미국으로 강제 출국됐고, 황선은 2015. 1. 14.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한편 황선의 남편인 000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이던 199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되어, 10년간 수배 생활을 했고 2008. 2. 구속되어 2011. 2.에 3년 만기 출소하였다. 출소 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에서 활동했다.

황선의 석방 문화제인 ‘사랑의 옥탑’은 2015. 6. 1. 서울 대학로에서 열렸는데 신청인

10) 신은미가 지은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는 문체부가 2013. 6.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하였다가 2015. 1. 우수문학도서 선정을 취소하였다.

11) 경찰 “토크쇼 발언 국가보안법 위반내용 있는지 내사”, 연합뉴스, 2014. 11. 21.

이 이 ‘사랑의 옥탑’ 준비를 위해 000을 만난 시기는 2015. 4~5.경으로 추정된다. 국정원 등에서 신청인의 통신 자료를 요청한 시기는 2015. 6. 24.~2015. 12. 28.로, 000을 만나고 석방문화제가 열린 후,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수사기관의 답변

국가기관이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와 활용 내역에 대해 공문으로 질의하였다.¹²⁾

이에 경찰청은 신청인의 통신 자료 2건(2015. 7. 22, 2015. 12. 7.)을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았는데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다른 수사대상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중,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수사대상자 주변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안’이며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수사 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¹³⁾

서울경찰청은 신청인의 통신 자료 4건(2015. 6. 24, 2015. 6. 24, 2015. 6. 26, 2015. 12. 28.)을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았는데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다른 수사용 의자에 대한 내사 중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용의자 주변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안’으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수사 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없고, 위 4건 이외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¹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답변을 정리하면, 수사 대상자(용의자)와 신청인이 통화한 사실이 있어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했지만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수사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위의 수사 대상자(용의자)는 황선의 남편 000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000과 전화 통화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소결

신청인은 황선의 석방문화제를 준비하면서 황선의 남편 000과 전화 통화하고 만나기도 하였는데, 이 때문에 국정원과 경찰에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수사 대상자(용의자)와 신청인이 통화한 사

12) 기획행정담당관-1813(2018. 3. 22.), 기획행정담당관-1882(2018. 3. 26.)

13) 경찰청 보안3과-864(2018. 4. 10.)

14) 서울경찰청 보안2과-1864(2018. 4. 12.)

실이 있어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했지만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수사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수사 대상자(용의자)는 황선의 남편 000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000과 전화 통화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블랙리스트 등재로 인한 피해 여부

1) 신청인 주장 및 교부금 축소 사실

신청인은 가극단 미래가 한글문화큰잔치 공모에 선정된 후 교부금이 축소되었는데, 가극단 미래의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 축소와 신청인과 가극단 미래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¹⁵⁾

가극단 미래는 한글문화큰잔치 공모 과정에서 교부금 5백2십만원으로 신청하였다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교부금 3백5십만원을 신청하였다. 교부금을 축소 신청한 것에 대해 신청인은 문체부 담당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축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¹⁶⁾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가극단 미래는 2016년 문체부에서 주관한 ‘201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이하 한글문화큰잔치) 공모에 참여했다. 가극단 미래의 한글문화큰잔치 공모 과정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가극단 미래 한글문화큰잔치 공모 과정

시기	내용	비고
2016. 6. 7. ~ 7. 1.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공모 ¹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 1억6천만원 내외 • 공연, 전시 등 (5백만원 내외)/ 학술대회(천만원 내외)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2016. 7. 15.	한글문화큰잔치 심사 ¹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예산: 1억8천만원 내외 (지원규모) 공연, 전시 등(5백만원), 학술대회(천만원) • 접수현황 : 총 103개 사업(공연 58, 전시 11, 체험행사 30, 학술회의 4) • 가극단 미래 지원액 - 국고 5백2십만원, 자부담 1백만원, 합계 6백2십만원
2016. 7. 28.	한글문화큰잔치 공모 지원대상 선정결과 발표 ¹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결과 : 가극단 미래 등 35개 단체 선정 - 공연(18개), 전시(4개), 체험(10개), 학술회의(3개)

15) 신청인 유정숙 진술조서(2018. 3. 9.)

16) 신청인 유정숙 진술조서(2018. 3. 9.)

시기	내용	비고
2016. 8. 5.	가극단 미래, 한글문화큰잔치 보조금 교부 신청 ²⁰⁾	• 예산 350만원
2016. 8. 26.	가극단 미래,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 결정 통지 ²¹⁾	• 교부금 350만원
2017. 3. 6.	가극단 미래, 한글문화큰잔치 국가보조사업 정산 확정 ²²⁾	• 교부액 350만원 - 집행액 320만원 - 집행잔액 30만원

[표-5]에서 보듯이 가극단 미래의 교부금이 5백2십만원에서 3백5십만원으로 축소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2) 문체부 답변

한글문화큰잔치 담당자인 문체부 국어정책과 000 주무관은 당시 한글문화큰잔치 공모에는 공연은 5백만원 내외로 고시하였지만, 공모 지원대상 선정 발표 후에는 공모에 선정된 단체의 수와 공연에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기준이 정해져서, 그 기준을 지원 대상에 선정된 단체에 통보하였고, 그 기준에 맞춰 교부금을 교부하였다고 답변하였다.²³⁾

먼저 한글문화큰잔치에 대해 알아보면, 문체부는 한글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한글 주간’을 지정하여 10. 9. 한글날을 전후로 1주일 동안 기념기간을 설정하여 매년 전시, 공연, 학술대회 등의 행사를 진행해 왔다. 한글문화큰잔치는 2013.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 되면서 문체부가 ‘한글 주간’을 ‘한글문화큰잔치’로 변경하여 문화축제로 진행해 오고 있는 행사이다.

가극단 미래의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 축소가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글문화큰잔치 공모에 공연부문으로 선정된 단체(18개)들의 교부금 축소 유무에

17) 국어정책과-1736(2016. 6. 3.) 「201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공모계획 보고

18) 국어정책과-2189(2016. 7. 15.) 「201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공모 선정 심사계획

19) 국어정책과-2329(2016. 7. 28.) 「201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공모 선정 결과보고

20) 가극단 미래 교부금 교부신청서(2016. 8. 5.)

2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2016. 8.)

22) 국어정책과-842(2017. 3. 6.) 국고보조사업 정산확정·통지(가극단 미래)

23) 참고인 000 조사보고(2018. 3. 13.)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6]과 같다.²⁴⁾

[표-6] 한글문화큰잔치 공연 부문 선정 단체 예산액, 교부액 비교(단위: 백만원)

번호	선정 단체	예산액			교부액			예산액 교부액 증감
		국고	기타	합계	국고	기타	합계	
1	가극단 미래	5.2	1	6.2	3.5	-	3.5	▽1.7
2	류무용단	5	0.8	5.8	4.5	-	4.5	▽0.5
3	극단 찰리	5	0.5	5.5	4.5	-	4.5	▽0.5
4	극단 즐거운사람들	3.8	-	3.8	3.8	-	3.8	0
5	국제예술기획	6	0.6	6.6	6	-	6	0
6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5	0.7	5.7	4.5	-	4.5	▽0.5
7	밀물 현대무용단	8.2	2.1	9.8	6	-	6	▽2.2
8	(주)와이킵엔터테인먼트	4.8	-	4.8	4.5	-	4.5	▽0.3
9	(주)극단 민들레	4.3	-	4.3	4	-	4	▽0.3
10	청사국악관현악단	4.9	-	4.9	4.9	-	4.9	0
11	아트컴퍼니 행복자	5	0.15	5.15	4.5	-	4.5	▽0.5
12	진조쿠르	5	-	5	4.5	-	4.5	▽0.5
13	아트스테이지 다울	4.8	-	4.8	4.5	-	4.5	▽0.3
14	엠스타그룹	5	-	5	4	-	4	▽1
15	(사)농어촌문화미래연구소	6	0.6	6.6	6	-	6	0
16	뮤지컬 러브러브	5	-	5	4.5	-	4.5	▽0.5
17	나누리무용단	5.5	1.5	7	5	-	5	▽0.5
18	제이스타컴퍼니	5	-	5	4.5	-	4.5	▽0.5

위 [표-6]에서 나타나듯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단체의 교부금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가극단 미래를 제외하고 공연 부문 공모에 선정된 단체 중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단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으로 신청인과 가극단 미래의 블랙리스트 등재와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 축소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은 2017. 10. 15. 서울지검에서 [리스트 - '16. 9. 27.현재] [2016. 기타사항 확인 리스트(K)] 문건에서 실제 배제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행사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운데 줄을 그어 표시를 하여 서울지검에 제출하였다.²⁵⁾ 오OO이 제출한 문건을 보면 가극단 미래에는 가운데 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것을

24) 국어정책과-2608(2016. 8. 2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확인할 수 있다. 오OO이 서울지검에 제출한 문건은 다음 [그림-4]와 같다.

[그림-4] [리스트 - '16. 9. 27.현재] [2016. 기타사항 확인 리스트(K)](오OO이 서울지검에 제출한 문건)

지역전통한식문화사업 기획감독	○특이없음(K/7.7)
우수상품 2차 심사위원 후보자	○승효상(K/7.4)
세종학당과학교원 무기계약직	○특이없음(K/7.12)
2016 인생나눔교실(5.24송부)	○남상순(수도권)(K/7.15)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7.21)	○가극단 미래(유정숙)-(K/8.4)
융복합업업프로젝트(7.26)	○아이디어박스(박진배), 유에프오소프트(권오현) (K/8.22)
오크리에이티브 리그 융복합콘텐츠(9.26)	○특이없음(K/9.28)

3) 소결

신청인은 가극단 미래가 한글문화큰잔치 공모에 선정된 후 교부금이 축소되었는데, 가극단 미래의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 축소와 신청인과 가극단 미래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가극단 미래의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이 신청한 액수 보다 축소되어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가극단 미래를 비롯해 한글문화큰잔치 공연 부문 공모에 선정된 대부분 단체의 교부금이 축소되었고, 가극단 미래를 제외하고 공연 부문 공모에 선정된 단체 중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단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과 가극단 미래의 블랙리스트 등재와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 축소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신청인이 블랙리스트 등재된 이유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은 문체부 등에서 차별 배제를 위해 관리하여 온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감시 사찰 차별 배제의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가기관에 의한 신청인의 통신자료 확인 이유

신청인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2015. 6. 24.부터 2015. 12. 28.까지 8차례에 걸쳐 국정원, 경찰청, 서울경찰청에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와 활용 내역에 대해 질의한 바, 수사 대상자(용의자)와 신청인이 통화한 사실이 있어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했지만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수사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여기에서 수사 대상자(용의자)는 000을, 수사 대상자(용의자) 주변인은 신청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블랙리스트 등재로 인한 피해 여부

가극단 미래의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이 공모 당시보다 축소되어 교부받은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가극단 미래만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한글문화큰잔치 공연 부문에 선정된 대부분의 단체가 교부금이 축소되었고, 선정된 단체 중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단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가극단 미래의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 축소는 블랙리스트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04

대전문화관 운영팀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104

대전문화관 운영팀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16[대전문화관 운영팀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권미강은 2013. 10. 21.부터 대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전문화관의 운영팀장(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근무시작일로부터 2년 후 일반직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대전문화관에서 세월호 추모 활동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16. 근무실적 'D'등급을 받아 일반직 전환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비우호적인 국민을 감시, 통제, 차별, 배제 등을 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단순히 명단에 등

재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활동 경력 등과 인사조치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는바, 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가 블랙리스트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별도로 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청, 법원 등 관련 기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붙임 : 1. 책임심의위원 검토의견서 사본 1부

2. [대전문화관 운영팀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진상조사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 (책임심의위원)	
사건번호/사건명	2017특16 대전문화관 운영팀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담당팀(전문위원)	4팀 김세진 전문위원
심의 일정	1. 전담위원의 전체위원 실의서 취합 기간 : 2018. 3.13-16. 2. 책임심의위원 심의 기간 및 방법 : 2018.3.13.-3.16 3. 진상조사 소위원회의 만찬 상정일 : 2018.3.19
조사 내용 등에 대한 검토 내용	이견 없음
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 내용	이견 없음
종합 의견	보고서상 의견란을 제외하고 전담위에 결과보고서로 상정하기로 삼각할 (보고서상 기관이나 개인의 내부정보가 기술되어 있는 경우 결과보고서 및 보고서 통지에 있어서 정보공개법위에 대한 기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부기)
책임심의위원	김준현 (서명 또는 날인) 김용삼 (서명 또는 날인) 송경동 (서명 또는 날인) 이우성 (서명 또는 날인)

[사 건] 2017특16, 대전문화관 운영팀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신청인] 권미강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¹⁾

신청인 권미강(이하 ‘신청인’)은 2013. 11. 21. (재)대전문화재단(이하 ‘대전문화재단’)과 사이에 ‘신분 : 다급, 계약기간 : 2013. 10. 21.~2014. 10. 20.’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도과 후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채용계약 당시 2년 도과 후 일반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신청인은 2013. 10. 21.부터 대전문화재단 산하 대전문화관의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10. 갑자기 대전문화재단 교육지원팀장으로 발령이 났으며, 한편 대전문화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2015. 9. 18. 근무실적 D등급 평가를 받아 일반직 전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국회의원 도종환으로부터 대전문화관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대전문화관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와 그림 등을 전시하였고, 자신이 대전문화관의 운영팀장이었기에 블랙리스트로 인해 위와 같이 일반직 전환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해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7. 11. 24. 제16차 전월위

1)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조사기록 제1쪽)

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의결되었다.)²⁾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위와 같이 근무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일반직 전환이 불가하였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리스트-'16.2.1 현재	오OO	2017. 8. 17
2	제350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2017. 11. 25.
3	월간 토마토 인터뷰	월간 토마토	2017. 11. 28.
4	권미강과 대전문화재단 사이의 채용계약서	권미강·대전문화재단 이사장	2017. 11. 28.
5	관련 사진	권미강	2017. 11. 28.
6	대전에 세월호 참사 추모, 안전 다짐하는 '소망의 벽', <아시아경제>, 2015. 4. 13.	아시아경제	2017. 12. 13.
7	(재)대전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대전문화재단	2018. 1. 22.
8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논술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전문화재단	2018. 2. 1.
9	직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대전문화재단	2018. 2. 1.
10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한국문학관협회	2018. 2. 1.
11	'2015 생동하는 문학과 조성'사업 지원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2018. 2. 1.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홈페이지 사업공모 및 관련 서류	예술위	2018. 2. 1.
13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찬인교수 내정에 문화예술계 이견, <일요신문>, 2015. 2. 24.	일요신문	2018. 2. 1.
14	대전지역 교수 52명 "박정현 후보지지" 선언, <오마이뉴스>, 2014. 5. 30.	오마이뉴스	2018. 2. 1.

2) 제16차 전원위원회 의결서 (조사기록 제5쪽)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5	근무실적 결과 통보 및 붙임	대전문화재단	2018. 2. 7.
16	성과목표평가서	대전문화재단	2018. 2. 7.
17	대전문화재단 인사 규정	대전문화재단	2018. 2. 7.
18	대전문화재단 근무평가 내규	대전문화재단	2018. 2. 7.
19	2015년 제5차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	대전문화재단	2018. 2. 7.
20	2015년 제6차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	대전문화재단	2018. 2. 7.
21	대전문화재단 팀장(다급) 일반직 전환비율	대전문화재단	2018. 2. 7.

2. 신청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권미강	신청인	진술조서 (2017. 11. 28.)
2	박찬인	前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진술조서 (2017. 12. 14.)
3	OOO	前 대전문화재단 경영지원팀원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6.)
4	OOO	前 대전문화관 직원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6.)
5	임OO	前 대전시청 문화예술과장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14.)

제3절 | 조사 사항·내용

1. 신청인의 채용 및 근무실적평가 등

가. 대전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및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등

대전문화재단은 2013. 9. 12. 재단 홈페이지에 ‘직급 : 다급, 채용직위 : 팀장, 담당업무 : 대전문화관 업무 총괄, 문학조사, 연구, 창작활동 지원, 기타 문화예술행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에는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며, 2년간 근로한 자는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일반직 전환 후 대전문화관 운영 이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이 기재되었다.³⁾

3) (재)대전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조사기록 제85쪽)

이후 신청인은 서류전형, 논술시험 및 면접을 거쳐 2013. 10. 8. 위 채용직위에 최종합격하였다.⁴⁾

나. 2013. 11. 21.자 채용계약서

대전문화재단과 신청인은 2013. 11. 21. '신분 다급, 계약기간 2013. 10. 21.~2014. 10. 20.'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⁵⁾

다. 대전문화재단 인사 규정(2014. 10. 14. 규정 제56호로 개정된 것)⁶⁾

대전문화재단 인사 규정은

- '제5조(임용권자) : 모든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임용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채용방법) 제4항 : 신규 직원채용은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으로 하며 근무실적평가결과에 의하여 1년 연장가능하고, 2년 이상 재직하게 될 경우 근무실적평가결과에 의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일반직으로 전환 시에는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근무실적평가) 제4항 :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다만 평가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항 :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대전문화재단 근무평가 내규(2015. 5. 27. 개정된 것)⁷⁾

대전문화재단 근무평가 내규는 제7조(평가영역) 제2항에서 '평가요소는 다음 각호에 의거 구성한다. 1. 업무성과 평가 : 사업·업무관련 달성 수준, 일정수준, 업무비중을 감안 평가하고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2. 수행능력 평가 : 기획능력 및 결과활용도, 사업관리능력, 근무태도로 구분 평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30점을 만점으로 한다.'고 규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논술시험 시행계획 공고 (조사기록 제89쪽), 직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조사기록 제90쪽)

5) 채용계약서 (조사기록 제40쪽)

6) 인사 규정 (조사기록 제119쪽)

7) (재)대전문화재단 근무평가 내규 일부개정(안) (조사기록 제134쪽)

정하고 있으며, <별표4>에서 평가등급을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A등급(100점 이상)·B등급(85점~100점 미만)·C등급(70~85점 미만)은 연장 가능, D등급(55~70미만)·E등급(55점 미만)은 연장불가로 규정되어 있다.

마. 근무평가실적 관련 자료

(1) 신청인에 대한 2015. 8. 20.자 성과목표평가서(평가기간 : 2014. 10. 20.~현재)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찬인(3차 평정)은

- 위 성과목표평가서 제3항 업무성과 평가내역에서 가)문학관 운영 및 시설관리 총괄 항목(20%)에서 50점, 나) 문학관 기획전시 및 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시확산시민운동 전개 항목(30%)에서 60점, 다)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로서의 안정적인 업무 총괄 항목(30%)에서 50점, 라)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지속적인 연구 통한 대전문화예술교육의 비전 마련 및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 항목(20%)에서 35점을 주었고,
- 위 성과목표평가서 제4항 수행능력 평가내역에서 기획능력 및 결과활용도 항목에서 5점, 사업관리능력 항목에서 5점, 근무태도에서 5점을 주었고,
- 위 성과목표평가서 제5항 가점 항목(업무제안/업무량)에서 2점을 주어, 종합평가에서 67점(50⁹⁾+15+2)이 되었다.

8) 성과목표평가서 (조사기록 제169쪽)

9) 대전문화재단 근무평가 내규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업무성과 평가'는 7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사건 업무성과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서 총합을 50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내규에 따라 70점 만점으로 하여 계산한다면 총합이 35점{0.7(50*0.2+60*0.3+50*0.3+35*0.2)}이 되어 종합평가 점수는 52점으로 'F등급'(연장불가)에 해당하게 된다.

3. 업무성과 평가내역

① 단위목표	②성과측정기준 (달성수준)	③측정 기준별 추진 일정	④업무 비중	평 정 자		
				1차	2차	3차
계						
가) 문학관 운영 및 사실 관리 총괄	- 문학관 안전사고 정기 시설점검을 통 한 시설 파손 및 노후 방지 - 전기 소광 송강기 무인경비 소독 청소 6개 사실 관리 만전 -문학콘서트 매마수와 연계 지속 추진	'15년 1월- 6월 지속추진 매월 마사라 주 수 요일	20%			50
나)문학관 기획전시 및 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시화산시민운동 전개	- 개관 2주년 행사 및 월로문인회고선 - 여성문화단체초대전 기획전시 - 아동문학전 기획전시 - 문학교육 '토요일은 문화과 놀자'추진 - 시화산시민운동 콘텐츠 제작 및 순회 전시 계획수립	'14년 12월 26일 ~'15년 2월 3일5일 4일2일 5월 5일 ~ 3월 14일- 5월 30 3일-	30%			60
다)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로서의 안정작인 업 무 총괄	- 문화예술사(프라자, 아트페스티벌)사립 으로 홍보기반 구축 - 전문문화인력양성교육 가정기관 선정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교육 - 아티스트캠프 통한 특성화된 문화에 술교육 확산 -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 일환 안센터 브사업 추진	6월 17일 7월 22-8월 11일 8월 25-26일	30%			50
라)문화예술교육정책의 지속적인 연구 통한 대전 문화예술교육의 비전 마련 및 문화소외계층 문화에 술교육 기반 마련	- 문화예술정책연구-융역업체 선정 추진 -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7월 30일 지속추진	20%			35

4. 수행능력 평가내역

평 가 항 목(내용)	배점	평 정 자			비 고
		1차	2차	3차	
계	30			15	
기획능력 및 결과활용도	11			5	
사업관리능력	11			5	
근무태도	8			5	

5. 가감내역

○ 가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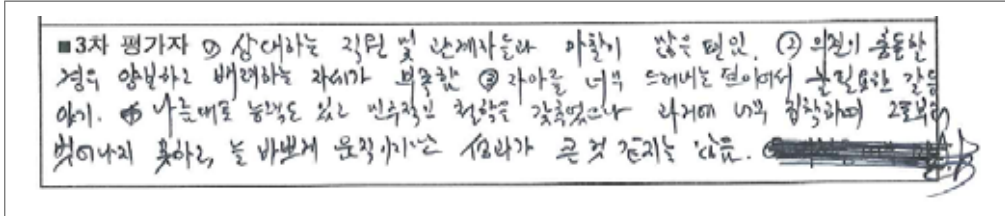
해당목표 및 업무	가점사유(일시 또는 기간과 구체적 실적 기재)	가점(점수)
1)문학콘서트 매마수와 연계 전체 기획 및 연출 진행 총괄	문학콘서트 기획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여서 전문기획자에 의뢰해야 하는 등, 예산이 소요되 는 분야이나 상기 본인이 기획과 연출, 사회까 지 총괄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문학콘서트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었음	3

평 가 항 목(내용)	배 점	평 가 자	점 수
가점항목 - 업무제안 / 업무량	5점 이내	대표이사	2
감점항목 - 징계 / 경고 등 처분	5점 이내	평가시스템	

6. 종합평가

계	업무성과 평가	수행능력 평가	가감점
67.00	50.00	15.00	2

한편 박찬인은 위 성과목표평가서 제8항 평가자 평가의견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2) 2015. 9. 15. 대전문화재단 인사위원회 회의 및 의결 등

대전문화재단은 2015. 9. 15.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한 근무실적 최종평가를 위 성과목표평가서와 같이 ‘총점 67점, 평가등급 D, 일반직 전환여부 : 불가’로 의결하였다(의결자 : 인사위원회 위원장 박찬인, 위원 김OO, 위원 이OO).¹⁰⁾ 이후 대전문화재단은 신청인에게 2015. 9. 18.자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통보하였으며¹¹⁾, 신청인은 이에 대해 2015. 9.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¹²⁾, 위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바. 신청인의 진술¹³⁾

신청인은 2017. 11. 28.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계약기간 만료 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근무평점 D를 받았고, 재계약이 거부되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세월호 추모 관련 전시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신청하게 되었다.
- 블랙리스트에 직접 등재된 것은 아닌데, 前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찬인이 등재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 같다.
- 교육지원팀장으로서 평가는 3개월 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위와 같이 근무평점 D가 나온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10) 2015년 제5차 인사위원회 의결서 (조사기록 제150쪽)

11) 근무실적 결과통보 (조사기록 제148쪽)

12) 이의신청 접수개요 (조사기록 제181쪽)

13)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서 (조사기록 제19쪽)

2. 신청인과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가. 문체부 사무관 000 관리의 리스트

2015년도 문체부 관련 지원사업 중 ‘생동하는 문학관(2015. 5. 공고)’ 관련 검토내용 명단에 ‘박찬인’이 기재되어 있고, 2016년도 문체부 관련 지원사업 중 ‘지역대표공연예술제(2015. 12. 14. 공고)’ 관련 검토내용 중 청와대에서 추가통보한 명단에 ‘박찬인’이 기재되어 있다.¹⁴⁾

생동하는 문학관(보조 / '15.6월) - 5명 블랙리스트이외로 2차	· 추가확인자, 김순영(최대인원), 민태성(최대인원) ①김성중, ②장성수, ③강형철, ④ 박찬인 , ⑤소재호(단순가담) ○ 심사위원: ①최희규(문학아카데미) ②김소영
지역대표공연예술제(18)	○ 이견없음(1.21/18) ○ 2건 양해 제요청(1.21) - 양해됨(B) - ①이종호(2012년 대선서 문제인 변호-김/ 문화미래포럼 참가인) - ②이윤택(말안여름축제) ○ 추가통보(B) - 박찬인 : 이계성, 박석규: 동명이인이후 확인후 조치할 것 - 홍미영, 계종길, 장순기: 자체판단 - 한선숙: 제외할 것
사회예술공사(복지기관)	선발 ○ K-1인원 초과로 과잉분기(1월초)

나. 2017. 3. 2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¹⁵⁾

2017. 3. 2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도종환 위원은 “이것도 보세요, 문화부 내부 대외비 문건 보세요. ‘생동하는 문학관’ 거기 보니까 저기 5명이 나와요, 김성중·장성수·강형철·박찬인·소재호. 이 사람들 누구냐면 김성중 추리문학관 관장이예요. 장성수 최명희문학관 관장이고요. 강형철 신동엽기념사업회 이사장이고 신동엽문학관 운영하는 데 관여하고 있고요. 박찬인 대전문학관 관장이고 소재호 신석정문학관 관장이는데, 그 뒤에 보면 ‘단순 가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 가담이 뭘니까? 이 문학관이 무슨 이적단체입니까? 그리고는 저렇게 다 탈락시켰어요. 블랙리스트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라고 발언하였다.

14) 리스트-'16.2.1 현재 (조사기록 제14, 16쪽)

15) 제350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조사기록 제18쪽)

다. 前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찬인 진술¹⁶⁾

박찬인은 2017. 12. 14.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5. 3. 11.부터 대전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세월호 관련 교수 시국선언 참여한 적이 있다.
- 대전시청, 문체부, 국정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시받거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
- 대전문화관에서의 신청인의 세월호 추모활동 때문에 자신이 리스트에 등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신청인의 세월호 추모 활동이 대전문화재단 내·외부에서 문제된 적은 전혀 없었다. 재단 내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 한 적이 없었다. 또한 시청에도 빈소가 있고, 유성구청 앞에도 있어 대전시청,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관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였다.

라. 관련 기사

(1) <대전에 세월호 참사 추모, 안전 다짐하는 '소망의 벽'> 아시아경제 2015. 4. 13.자 기사¹⁷⁾

대전시에서 2015. 4. 13.~19.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추모주간을 운영하면서 대전시청 로비 동편 벽면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안전을 다짐하는 '소망의 벽'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2) <시국선언 대전·충남지역 교수 216명> 한겨레신문 2009. 6. 9.자 기사¹⁸⁾

대전·충남지역 교수 216명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로서 위 216명의 명단에 박찬인이 포함되어 있다.

16) 박찬인에 대한 진술조서 (조사기록 제46쪽)

17) 대전에 세월호 참사 추모, 안전 다짐하는 '소망의 벽' (조사기록 제80쪽)

18) 시국선언 대전·충남지역 교수 216명(6월 9일) (조사기록 제110쪽)

(3) <대전지역 교수 52명 “박정현 후보 지지” 선언> 오마이뉴스 2014. 5. 30. 기사¹⁹⁾

김선진 등 대전지역 교수 52명이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온 박정현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로서 위 52명의 명단에 박찬인이 포함되어 있다.

마. 참고인 전화 진술

- (1) 대전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인사관리 직원이었던 000은 대전문화재단에서 2014~2015년 세월호 추모 활동 관련 갈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⁰⁾
- (2) 대전문학관 직원이었던 000는 오히려 대전시청은 세월호 추모 빈소를 마련한 이후 대전문학관에 연락하여 추모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고, 다만 신청인과 대전지방 원로 송00, 前 대학문학관 관장 박00, 대전시청 문화예술과 공무원 이00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청인이 대전문학관을 젊은 사람들과 함께 혁신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시도한 반면 송00, 박00는 원로로서 그들이 대전문학관 운영을 주도하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¹⁾
- (3) 대전시청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이었던 임00은 자신이 박찬인에게 신청인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당시 대전시장이 야당 출신이었고, 박찬인도 시민단체 출신이었기에 신청인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진술하였다.²²⁾

3. 대전문학관과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가. 문체부 2015. 5. 6.자 ‘2015 생동하는 문학관 조성’ 사업 공모안내²³⁾

문체부 예술정책과는 2015. 5. 6. 수신자를 ‘한국문학관협회 회원, 한국문학관협회’

19) 대전지역 교수 52명 “박정현 후보지지” 선언 (조사기록 제113쪽)

20) 조사보고(000 전화통화결과보고) (조사기록 제195쪽)

21) 조사보고(이00 전화통화결과보고) (조사기록 제196쪽)

22) 조사보고(임00 전화통화결과보고) (조사기록 제198쪽)

23) ‘2015 생동하는 문학관 조성’ 사업 공모안내 (조사기록 제75쪽)

로 하여 '2015 생동하는 문학관 조성 사업 공모안내 공문을 시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명 : 2015년도 생동하는 문학과 조성사업
- 사업내용 : 2015년도 올해의 좋은 문학관 프로그램 선정 및 문학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 사업기간 : 2015년 5월 ~ 2016년 3월
- 공모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후 한국문학관협회에 제출

나. 한국문학관협회 2015. 8. 13.자 2015 생동하는 문학관 조성 사업 선정공고²⁴⁾

한국문학관협회는 2015. 8. 13. 협회 홈페이지에 '2015 생동하는 문학관 조성' 사업 선정 공고를 게시하였는데, 김달진 문학관 등 11개 지원대상이 선정되었으며, 11개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금은 총 189,780,000원이 책정되었다.

※ 대전문학관은 위 선정대상에 없었는데, 박찬인은 대전문학관 담당 팀장에게 확인해 보니 대전문학관은 위 사업에 지원한 바가 없다고 진술함²⁵⁾

4. 신청인의 근무실적평가에 대한 조사

박찬인은 2017. 12. 14.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신청인은 일을 잘 하는 편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무평점 D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하다.
- 인사권자가 저인데 지역 여론이 있어도 좋은 인사권자라면 그걸 당장에 뿌리치고 지켜주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 시청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저 스스로 재계약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장비서실이 전화가 와서 시장님이 다른 일로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시장비서실장이 재계약할 때가 되었는데 신청인은 안되지 않겠냐고 했고,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말하는 정도였다. 과장님은 원만하지 못하게 계속 시끄럽지 않더냐고 했다.

24) '2015 생동하는 문학관 조성' 사업 선정공고 (조사기록 제77쪽)

25) 박찬인에 대한 진술조사 (조사기록 제54쪽)

- 송OO 교수는 저에게 수차례 신청인은 안되겠다고 이야기했을 정도고, 문학관에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원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아마 그 자문위원회와 계속적으로 충돌을 했을 것이다. 신청인은 신청인대로 내가 팀장이고 문학관이 재단 소속이니까 자신 뜻대로 가고 싶었을 거고, 문학관을 만들 때부터 박현오 관장을 지지했던 원로들은 우리가 만든 건데, 새파란 애가 뭘 그렇게 아냐 이러면서 문학관을 이끌고 나가는 방향에 관한 갈등이 있었을 거 같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신청인과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

신청인은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지만 자신의 세월호 참사 추모 활동으로 인해 위와 같이 근무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이 부당한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는 박찬인의 진술, 세월호 참사 추모활동에 대해 대전시청, 대전문화재단 등이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사정, 신청인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세월호 참사 추모 활동으로 인해 신청인이 근무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2. 대전문화관과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

문체부 사무관 오OO 관리의 리스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전문화관이 아닌 ‘박찬인’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박찬인의 시국선언 참가 등 그의 사회활동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박찬인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시절 지속적으로 그 정권들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리스트에 박찬인이 올라가게 된 것은 박찬인 개인 사회활동 때문인 것으로 보여 대전문화관 단체 자체와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신청인의 근무평가실적에 관하여

신청인이 비록 블랙리스트로 인해 근무평가실적에서 D등급을 받은 것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무실적평가는 크게 업무성과 평가내역과 수행능력 평가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면 지역 여론은 평가내역 항목으로 삼아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또한 대전문화재단 인사 규정 제16조의 취지에 의하면 근무실적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평정자인 박찬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박찬인은 신청인에 대한 근무실적평가 과정에서 그 기준인 업무수행 평가내역과 수행능력 평가내역보다 지역 여론을 우선시한 것으로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근무실적평가가 재량권을 넘은 위법·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법원 등 관련 기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

제5절 | 결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국민을 감시, 통제, 차별, 배제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인가,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자인지 여부는 일정한 개인 내지 단체가 단순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정권에 비우호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감시, 통제, 차별, 배제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세월호 참사 추모 활동과 대전문화재단의 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는바, 신청인이 세월호 참사 추모 활동 등 박근혜 정권에 비우호적인 행위를 한 바는 확인되나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었다거나 대전문화재단의 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행의 결과라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05

충북문화재단 대표 내정자 강태재에 대한사찰 및 탄압 사건



105

충북문화재단 대표 내정자 강태재에 대한 사찰 및 탄압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19[충북문화재단 대표 내정자 강태재에 대한 사찰 및 탄압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강태재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동대표로 활동한 바 있고, 2011. 5. 2.경 충북문화재단의 대표로 내정되었으나, 1979년 청주상공회의소 입사 당시 자신의 학력을 허위 기재했던 사실을 지역 언론에서 보도하며, 당시 여당(한나라당)에서도 사퇴를 촉구하여 같은 해. 6. 1. 사퇴하였다.

이후 2017. 9. 28.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명박 정부 당시 야당(당시 민주당) 지지체장들에 대해 '주요 국정 저해 사례' 명목으로 경찰, 국정원 등이 청와대에 보고를 하였고, 내용 중 강태재에 대해 '중복 좌파 강태재 충북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도 문화재단 이사장에 내정'이라고 보고되어 있는 등의 내용으로 보아 '중복좌파 제어 공작'의 의혹이 있기에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강태재 대표이사의 자진 사퇴 경위에 있어 명확히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현상적으로는 과거 강태재가 ‘허위 학력’ 기재로 취업한 사실이 부각되어 사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당시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더 주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의 요지

당시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기관에서 강태재에 대하여 사찰을 하였는지 여부와 신청인이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처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직에서 강태재를 퇴임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어 공작’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한정된 조사 기한 등으로 인해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였다.

붙임 : [충북문화재단 대표 내정자 강태재에 대한 사찰 및 탄압 사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사 건] 2017특19 충북문화재단 대표 내정자 강태재에 대한 사찰 및 탄압 사건
[신청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인의 공동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강태재가 2011. 5. 2.경 같은 해 7. 1. 출범 예정인 (재)충북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는데, 당시 한나라당 충북도당으로부터 이시중 충북도지사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한 데 이어 과거 강태재가 1979년 청주상공회의소에 취업할 당시 고교 중퇴임에도 ‘1964년 대전 D고교 졸업’이라고 이력서에 허위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허위 학력’ 논란에 휩싸였고 그 결과 6. 1. 자진사퇴한 사실

이 있다고 했다.

이후 신청인은 2017. 9. 28.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 경찰, 청와대 등에서 KBS에 대한 언론탄압과 당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주요 사례’를 보고한 문건을 봤다면, 위 문건 내용 중 ‘이시종 충북지사(민)’의 ‘주요 국정 저해 사례’에 대한 보고 내용에 ‘• 좌편향 인사 → 허위학력 기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충북·좌파 강태재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도 문화재단 이사장 내정 강행, 문화예술계 등 지역사회 통합 저해로 빈축 야기’, ‘※강태재는 지역언론에서 허위학력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6. 1. 자진사퇴’라고 보고되어 있다고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신청인은 당시 강태재에 대해 ‘중북·좌파’로 명기하여 보고하게 된 경위와 2011년 사건 당시 강태재가 자진 사퇴를 하기 까지 일련의 사건에서 국가기관과 지역 언론사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중북좌파 제어 공작’을 했을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원회는 본 건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기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2017. 12. 6.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의결하였다.

나. 조사 목적

2011. 5. 2.경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 당시 정부 기관에 의해 소위 ‘중북 좌파’로 분류되어 보고되게 된 경위와 과거 ‘허위 학력’ 기재 논란으로 사퇴하게 된 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규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위원회는 본 사건 조사에 있어서 한정된 조사활동기간과 권한, 인력 등의 이유로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없었기에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충북도 등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 등에 기초하여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안을 정리하는 데 노력했다.

1. 자료조사

연번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수집일자
1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 보도자료 - 이명박정부의 언론탄압과 관권선거 의혹 사실로 밝혀져	더불어민주당	2017. 9. 28.	
2	MB정부 안희정·염홍철·이시종 사찰했나	금강일보	2017. 9. 28.	
3	'전국 최초 충북 무상급식'이 국정 저해 사례?	뉴스1	2017. 9. 29.	
4	충북문화재단 초대 대표 강태재씨 내정	충북넷	2011. 5. 2.	
5	한나라당 충북도당 "강 대표이사 사퇴하라"	충북일보	2011. 5. 31.	
6	강태재 '자격미달 이력서'로 4년째 대학 출강	충북일보	2011. 5. 31.	
7	학력파문 강태재씨 "자진사퇴하겠다"	충북일보	2011. 6. 1.	
8	한나라 충북도당 "사퇴만으론 부족, 이사진 구성 원점부터"	충북일보	2011. 6. 1.	
9	서원대, '학력논란' 강태재씨 강사 해촉	충북일보	2011. 6. 13.	
10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유제 해법없나	충북일보	2011. 10. 13.	
11	충북도 "문화재단 대표 합의하라" 통첩	충북일보	2011. 10. 31.	
12	(재)충북문화재단 정관	충북문화재단	2011. 11. 23.	
13	충북예술계 숙원 문화재단 '출범'	충북일보	2011. 11. 23.	
14	충북도청 보도자료	충북도청		
	① "충북문화재단 설립 자문위원회" 오늘 첫 회의 열려		2009. 4. 8.	
	②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첫 공청회 열려		2009. 5. 21.	
	③ 6월22일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 열려		2009. 6. 19.	
	④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 열려		2009. 7. 8.	
	⑤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총21명으로 구성		2011. 5. 11.	
	⑥ 충북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도지사 입장 표명		2011. 5. 24.	
	⑦ 충북도, 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술단체에 합의추천 요청		2011. 11. 1.	
	⑧ 충청북도, (재)충북문화재단 설립 본격 추진		2011. 11. 16.	
	⑨ (재)충북문화재단 창립총회 개최		2011. 11. 23.	
	⑩ 충북문화재단, 20일 공식 출범		2011. 12. 21.	

2. 신청인 등 진술조사

연번	진술인	사건관계	방식	일자
1	강태재	신청인	전화통화	① 2017. 12. 7. ② 2018. 4. 8.
2	이OO	신청인의 고교 동창	전화통화	2018. 3. 16.

제3절 | 조사 내용

1.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 경위

충청북도는 과거 관(官)주도 문화예술행정에서 벗어나 민간 문화예술계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민선4기인 2009. 2.경부터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당시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2009. 2. 19.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4. 9. 충북문화재단 설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에 강태재를 위촉하였다. 이후 강태재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청취를 진행하였고, 2009. 12. 21. 발기인대회를 하는 등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¹⁾

충청북도는 2011. 5. 2. 강태재를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내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그 동안 예총, 민예총 등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결과 여러 대안 중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 하였다며, 그 이유로 ‘민선 4기인 2009년 정우택 지사로부터 충북문화재단 설립 자문위원장을 위촉받아 지금까지 도내지역 순회 공청회, 토론회, 발기인대회 등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업무의 연속성을 기한다는 점’과 ‘각계각층과 많은 교감을 해온 점’, 그리고 강태재가 ‘충북아트페어 조직위원장, 청주직지축제 집행위원장,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 특히 충북문화예술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문화예술포럼 대표 등의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는 점 등을 중시하여 적임자라 판단’ 하였다 했다.²⁾

2011. 11. 23. 문화재단 설립 당시 정관 제8조(대표이사) 조항에 ‘① 대표이사는 이사

1) 충청도청, 보도자료 「충북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도지사 입장 표명」, 2011. 5. 24.

2) 충청도청, 위 보도자료.

장(도지사)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2. 내정자 강태재의 자진사퇴 경위

가.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구성

(1) 정관의 규정

2011. 11. 23. 문화재단 설립 당시의 정관에는 제9조(이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① 이사는 대표이사,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도지사
 2. 도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 ③ 선임직 이사는 도의회 추천자 1명, 문화예술단체(충북예총, 충북민예총, 충북문화원) 추천자 3명, 도 추천자 11명, 부시장·부군수 3명(2년마다, 권역별 직제순 윤번제)으로 이사장이 선임하며,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자는 재선임할 수 없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⑤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2) 이사진 구성에서 정치적 편향성 여부

충청북도는 2011. 5. 9.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19명의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점과 관련해 일각에서 ‘순수문화예술 단체가 정치색을 띠 수도 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이사진만큼은 철저히 문화예술에 열정을 품은 인물만으로 구성했다”고 발표했다.³⁾

그러나 이튿날인 5. 10. 충북도 문화예술과의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검토의견 보고’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었다. 당시 언론에는 ‘문건에는 한나라당 성향 인물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민주노동당 성향 예술인들은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분석’되어 있었고, 충북도에서 해당 이사진들을 잘 아는 ‘도의원들에게 성향분석을 의

3) 충북일보,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검토의견 보고’ 물의」, 2011. 5. 10.

뢰하고, 의원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검토의견을 만들었다는 반증'이라고 보도되었다.⁴⁾

다음날인 5. 11.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시종 지사는 도민에게 석고 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문건에는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성향의 인사가 배제되고 ‘선거조력, 정무적 도움 가능’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는 이 지사와 민주당의 코드에 맞는 인사만을 내정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충북문화재단 대표 이사와 이사진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예술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⁵⁾

이어 5. 19. 한나라당 충북도당 당원·당직자 등 80여 명이 결의대회를 열고 “코드 인사”에 대한 이시종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5. 24.에는 성명을 통해 “이 지사는 해명 아닌 해명을 늘어놓았다”며 “문화재단 인선을 ‘엽관제’(충성도나 전과를 통해 자리를 내주는 관행을 의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도 있지만, 이 지사는 지나친 정치적 코드인사는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즉각 철회했어야 마땅하다”며 “어설픈 변명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⁶⁾

이에 대해 충북도는 5. 24.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진 총21명 중 공무원 5명(도지사, 담당국장, 부군수 3)을 제외한 민간인 16명은 예총 소속 8명, 민예총 소속 5명, 문화원 소속 2명, 기타 1명으로 예총·보수인사를 더 많이 안배”하였다면서, “후보는 도의회, 예총, 민예총, 문화원에 공식적 추천을 받고 시장·군수, 도의원 등에게 의견을 다각도로 들어 선정”하였다며, “정당의 공식적인 추천은 받지 않았으며 실무 검토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검토되었다 해도 이는 철저히 배제”하였다고 설명했다.⁷⁾

나. 내정자 강태재의 자진사퇴 경위

(1) 언론 보도 내용

당시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4) 충북일보, 위 기사.

5) 충북일보,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성향조사’ 파문 확산」, 2011. 5. 11.

6) 충북일보, 「한나라당 충북도당 “문화재단 코드인사, 변명말라”」, 2011. 5. 24.

7) 충북도청, 보도자료 「충북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도지사 입장 표명」, 2011. 5. 24.

(가) 「충북문화재단 대표자 허위 학력 '파문」⁸⁾

- 충북도가 '정치성향 조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면서 충북문화재단 출범을 강행했지만 대표이사의 허위학력 파문이 불거져 새 국면을 맞게 됐다.
-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된 강태재(65)씨는 그 동안 청주중, 대전고를 졸업한 것으로 돼 있었지만, 청주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대전중으로 전학한 뒤 대전고(2년)를 중퇴한 것이 그의 실제 학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 그는 1978년 청주상공회의소에 취직할 당시 학력을 '대전고 졸업'이라고 표기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강 대표는 "고백할 게 있다"고 운을 뗀 뒤 "상공회의소가 당시 경력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고교 중퇴라고 밝히긴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 강 대표는 이어 "젊은 시절 치기로 그 같은 실수를 했는데, 그게 수십년 사회생활에 멍에가 돼 버렸다"며 "하지만 이번(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정)에는 '고교 중퇴'를 떳떳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 앞서 도는 27일 충북문화재단 첫 임시이사회를 열고 강 대표이사 등 민간이사와 당연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임명장을 줬다.
- 재단은 다음달 10일 창립총회를 갖고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밟은 뒤 7. 1. 자로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강 대표가 사직서를 낼 경우 후임자 인선 등을 다시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

(나) 「충북문화재단 대표 '허위학력' 논란(종합)」⁹⁾

- 30일 충북도와 강 대표이사 등에 따르면 강 대표는 1979년 청주지역 모 경제단체에 취업할 당시 1964년 대전 D고교 졸업이라는 내용의 '자필이력서'를 제출했으나 강 대표는 가정형편 때문에 2학년때 이 학교를 중퇴했다.
- 강 대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등 당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취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력직으로 스카우트되는 상황에서 고교 중퇴라는 게 창피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 이어 "어쨌든 부끄러운 일이다. 학벌 때문에 멍에를 안고 살아 왔는데 언젠가는 이

8) 충북넷, 2011. 5. 30.

9) 연합뉴스, 2011. 5. 30.

- 문제를 털고 가려고 했다”며 “(이사회 의결 등 정식절차를 거쳐 임명된 만큼)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이시종 지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강 대표이사가 도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청주 C중 입학, 대전 D중 전학, 대전 D고교 중퇴’라고 밝히는 등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재단 대표이사를 학력이 아닌 창의성과 예술혼을 바탕으로 뽑았기 때문에 ‘허위학력 게재’ 문제는 재단 대표이사 임명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 또 다른 관계자는 강씨가 이달 초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될 당시 ‘1964년 D고 졸’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언론사 인명록, 위원회 활동 기록 등을 토대로 실무자가 브리핑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강씨가 허위학력 의혹에 휩싸인 것은 자신이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도덕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라며 “이 지사는 만신창이가 된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이사진 구성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다) 「‘고퇴’ 강태재씨 ‘고졸’ 이력서 냈나」¹⁰⁾

- 이시종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단 대표이사 공모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고교중퇴’라고 기록돼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해 인사를 번복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라) 「한나라당 충북도당 “강 대표이사 사퇴하라”」¹¹⁾

- 이날 윤경식 도당위원장은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해서 많이 시끄럽다”며 “이시종 지사의 독선과 아집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도민과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꼬집었다.
- 그는 이어 “급기야 시민단체 대표였던 사람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학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허위 학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며 “학력이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 것이 문제다. 시민단체 대표의 도덕적 문제가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10) 뉴시스, 2011. 5. 30.

11) 충북일보, 2011. 5. 31.

(2)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2011년 지역 신문에서 대전고 졸업이 아닌 중퇴라는 사실을 보도하여 학력 위조 논란'을 일으켰다며, 당시 강태재는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1979년 청주 상공회의소 입사 시 이력서에 대전고 졸업으로 기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충북문화재단 이력서에는 '대전고 중퇴라고 기재'했다고 한다. 또한 '평소 사석이나 강의 시에도 고등학교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다수 사람이 고교 중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갑자기 학력위조 논란이 불거지고 지역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방기사와 사퇴를 촉구하는 기사를 쏟아냈다'고 주장했다.¹²⁾

신청인은 강태재의 고교 중퇴 사실은 '이미 새로운 것이 없는 사실'이고 강태재 본인이 과거에도 공공연히 밝힌 사실임에도 지역 언론과 한나라당 충북도당에서 지속적으로 사퇴할 것을 촉구하여 2011. 6. 1. 자진사퇴를 결정했다고 한다.

3. 내정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동향보고 여부

가. 자료조사 내용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적폐청산특위'라 한다)는 2017. 9. 28.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 및 경찰, 청와대 등에서 작성한 문건을 확인'하였다며, 해당 문건은 '김효재 전 이명박대통령 정무수석의 보좌관 김성준이 유출한 문건으로 김성준은 이중 일부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을 받았으며,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가 유출한 기록물들은 국가정보원, 경찰청에서 생산된 문건임이 적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위 문건 내용 중에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의 제목으로 일부 야권 지자체장(광역 8명, 기초 23명)들은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제어'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문건에는 이시종 당시 충북지사의 경우 '세금급식(무상급식) 추진'과 '좌편향 인사'를 주요 국정 저해 사례로 보고되어 있는데, 구체적 내용으로 '좌편향 인사 → 허위학력 기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충북·좌파 강태재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도 문화재단 이사장 내정 강행, 문화예술계 등 지역사회 통합 저해로 빈축 야기', '※ 강태재는 지역 언론에서 허

12) 조사신청서, 별지 1(사건경위).

위화력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6. 1. 자진사퇴'라고 보고되어 있다.¹³⁾

나. 국가정보원 자료 요청 결과

위원회는 위 민주당 적폐청산특위가 확인한 문건을 기초로 국가정보원에 2011년 당시 '충북문화재단'과 '강태재', 충북도지사 '이시종' 등에 대한 동향보고 내지 정보보고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국정원은 민주당 적폐청산특위가 공개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주요 사례' 문건은 국정원에서 생산한 문건으로 확인되나, 위원회가 요청한 동향보고 내지 정보보고와 관련된 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¹⁴⁾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태재가 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2011. 5. 2. 직후에는 강태재의 과거 '허위 학력' 기재 사실이 바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가, 5. 9. 이사진 19명의 명단 발표 후 바로 다음 날, 충북도 문화예술과의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검토의견 보고'라는 제목의 내부분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소위 '코드인사',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총 21명의 이사진을 구성하는 데 있어 사전에 '도의회, 예총, 민예총, 문화원에 공식적 추천을 받고 시장·군수, 도의원 등에게 의견을 다각도로 들어 선정' 하였으며, 16명의 민간인 선임직 이사 구성에서 '예총 소속 8명, 민예총 소속 5명, 문화원 소속 2명, 기타 1명으로 예총·보수인사를 더 많이 안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5. 27.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이후에는 6. 10. 창립총회를 한 데 이어 7. 1. 출범할 계획이었던 상황에서 대표이사 강태재의 과거 '허위 학력' 기재 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고, 한나라당 충북도당 등으로부터 대표이사

13)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이명박정부의 언론탄압과 관권선거 의혹 사실로 밝혀져』, 2017. 9. 28. 21쪽.

14) 『조사보고 - 국정원 관계자 전화통화 보고』, 2018. 4. 10.

및 이사진 구성 철회 요구를 받고 6. 1. 강태재가 자진 사퇴한 것이다.

위원회의 충분하지 못한 조사 내용을 기초로 강태재 대표이사의 자진 사퇴 경위에 있어 명확히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현상적으로는 강태재의 과거 ‘허위 학력’ 기재로 취업한 사실이 부각되어 사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당시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더 주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 (1) 국정원이 작성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에 의하면 강태재는 중복좌파로 분류되어 관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위 문건 이외에는 다른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국정원이 어떤 사유로 강태재를 중복좌파로 분류하였으며, 언제부터 강태재를 사찰 관리하였는지 여부 등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 (2) 신청인이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처럼 2011. 5. 2.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이후 한나라당의 사퇴압박과 일부 언론 등에서 ‘허위학력논란’ 기사가 나오는 등 신청인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음은 확인된다. 그러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직에서 강태재를 퇴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이 언론 등을 통한 ‘제어 공작’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정된 조사 기한 등으로 인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06

문화재위원 임명자 김규호의 임명 취소 사건



106

문화재위원 임명자 김규호의 임명 취소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20[문화재위원 임명자 김규호의 임명 취소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김규호는 2015. 4.경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부문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3일 후, 문화재청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문화재위원 위촉 검토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아 당시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 박강섭에게 질의하였는데, ‘청와대 인사 검증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청 담당자가 성급하게 통보’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청인이 2012.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과 문화재위원 위촉 취소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문화재청이 신청인에게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2) 청와대가 문화재위원 인사 검증을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붙임 : [문화재위원 임명자 김규호의 임명 취소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특20, 문화재위원 임명자 김규호의 임명 취소 사건

[신청인] 김규호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김규호는 2015. 4.경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부문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3일 후, 문화재청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문화재위원 위촉 검토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아 당시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이하 관광비서관) 박강섭에게 질의하였는데 ‘청와대 인사 검증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청 담당자가 성급하게 통보’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청인이 2012. 대통령 선거(이하 ‘2012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과 문화재위원 위촉 취소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 사건에 대해 「20차 전원위원회」(2017. 12. 22.)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① 신청인의 문화재위원 위촉 통보 여부 ② 문화재위원 인사 검증의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 ③ 신청인의 문화재위원 위촉 불가 이유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검토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게재일/작성일
1	“대운하 반대” 교수 2466명, 최대규모 지식인 집단행동	경향신문	2008. 3. 25.
2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시국 선언 참가자	노컷뉴스	2008. 12. 19.
3	대학 교수 1000명, 문재인 적극 지지 선언	미디어스	2012. 12. 18.
4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대선개입, 용서 못할 범죄”	오마이뉴스	2013. 7. 17.
5	서강대 교수 28명 시국선언 “민주주의 백척간두의 위기에”	민중의 소리	2013. 9. 12.
6	[세월호 참사]서울대 교수 204명 시국선언 “진상규명 우선, 책임자 엄중 문책하라”	중앙일보	2014. 5. 30.
7	[시국선언] 서강대 교수 45명(6월7일)	한겨레	2014. 6. 9.
8	[시국선언] 전주·전북지역 대학교수 254명(6월10일)	한겨레	2014. 6. 15.
9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시국선언문	한겨레	2014. 6. 22.
10	문화재위원 추천서	한국관광학회	2015. 1.
11	새 문화재위원 68명 위촉	한겨레	2015. 5. 1.
12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선출	이뉴스투데이	2015. 5. 4.
1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문화재청	2015. 9.
14	국회회의록 19대 337회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2015. 9. 17.
15	국회회의록 19대 337회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2015. 10. 7.
16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	2016. 5.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게재일/작성일
17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박준우에 대한 2017. 1. 12.자 진술조서 일부	박준우	2017. 1. 12.
18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

나. 신청인 임의 제출 자료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2] 신청인 제출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입수일	비고
1	문화재위원 자격 관련 주요 연구실적 (신청인 김규호)	김규호	2017. 11. 2.	
2	신청인 김규호 이력서	김규호	2017. 11. 2.	
3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김규호	2017. 11. 2.	
4	「U's Line」 기사 ‘대학교수 1000명 문재인 후보지지’(2012. 12. 18)	김규호	2017. 11. 2.	

2.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신청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대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조사 형태	일자
1	윤OO	참고인	진술녹음	2018. 1. 2.
2	김규호	신청인	진술녹음	2018. 3. 7.
3	박강섭	참고인	조사보고	2018. 3. 26.
4	OOO	참고인	조사보고	2018. 4. 3.
5	이OO	참고인	조사보고	2018. 4. 6.
6	박OO	참고인	조사보고	2018. 4. 16.
7	최OO	참고인	조사보고	2018. 4. 16.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먼저 문화재청의 연혁을 살펴보면, 1948. 정부수립 이후 1961. 9.까지 문화재관리 업무는 문교부 문화국 소속의 과에서 관장하였다. 그러나 1961. 10.부터 문교부의 외국(外局)으로 문화재관리국이 발족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졌다. 문화재관리국은 그 뒤 정부조직개편으로 문화공보부(1968년)·문화부(1989년)·문화체육부(1993년)·문화관광부(1998년)의 외국으로 변경되었다. 1999. 5.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문화재관리국(국장: 2급)이 문화재청(청장: 1급)으로 승격 개편되었고 2004. 차관급으로 승격했다. 문화재청은 기획조정관·문화재정책국·문화재보존국·문화재활용국을 두고 있으며, 소속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표-4] 문화재청 문화위원회

구분	내용
설치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설치 목적 ¹⁾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설치된 행정위원회
분과 ²⁾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대상 국가지정문화재 ³⁾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 등
문화재위원 구성 ⁴⁾	문화재청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문화재위원 임기 ⁵⁾	임기는 2년으로 출수해 5. 1.부터 다음 출수해 4. 30.까지이며 연임 가능
문화재위원 추천 ⁶⁾	학회, 대학, 관계기관에서 추천
문화재위원 자격요건 ⁷⁾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문화재위원 위촉 권한 ⁸⁾	문화재청장

나. 문화재위원 위촉 절차

문화재위원 위촉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문화재위원 위촉과 관련한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보았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 문화재청은 2015년 국정감사요구자료에서 ‘2015년 문화재위원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위원회의 위촉 절차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문화재청은 학회, 대학, 관계기관 등의 외부추천을 받아 각 분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담당부서별로 문화재위원 자격요건과 해촉 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전문성, 관련분야 경험, 재임횟수, 출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¹⁰⁾

우리 위원회는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 위촉 절차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의 위촉은 정부기관, 각 분야의 협회·대학·단체 등으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아 각 분과위원회 운영부서에서 추천자 명단과 기존의 인력풀(위원·전문위원 포함) 등을 활용하여 위촉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정 한 후 인사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위촉하고 있는데,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문화재위원회 위촉 시 신원조회 등의 인사검증을 실시(후보자에게 신원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받음)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법에는 관련 근거가 부재하여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검증을 요청한다’고 답변하였다.¹¹⁾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과 관련해 국회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2015. 9. 17. 2015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인태 의원은 당시 나선화

-
- 1)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 2)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 3)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고
 - 4)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2조(구성)
 - 5)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2조(구성)
 - 6) 문화재청 정책총괄과-1267(2018. 4. 2.)
 - 7)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②항
 - 8)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②항
 - 9)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 설치) ②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 10) 문화재청-2015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2015. 9.)
 - 11) 문화재청 정책총괄과-1267(2018. 4. 2.) 공문에는 문화재위원 인사 검증은 인사검증기관에서 했다고 적시하였는데, 공문을 작성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00 주무관은 인사검증기관은 청와대라고 얘기하였다(참고인 000 조사보고(2018. 4. 3.).

문화재청장에게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결정을 문화재청장 혼자서 결정했냐고 질의하였다. 이에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각 학회, 기관에서 문화재위원을 추천하면 추천자 중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촉되며 문화재위원 구성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¹²⁾ 하지만 같은 해 10. 7. 국정감사에서 유인태 의원은 심의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선화 문화재청장의 9. 17.자 발언을 반박하자,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정식 심의위원회는 없다고 답변하였다.¹³⁾

이에 국회는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2016. 5.)에서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 10배수의 과다추천 문제 및 문화재위원의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방안을 강구할 것’, ‘문화재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시,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⁴⁾

한편 문화재위원 위촉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데 지적이 있어 왔는데 2014. 4. 8. 서울신문은 ‘문화재위 권력화 실상과 해법’이라는 기사에서 전직 문화재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하였다. 전직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 인선은 1999년 문화재청 승격 이후에는 문화재청장 주도로 인선이 이뤄졌으나,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의 입김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인선에 학회 등 수백 곳이 넘는 단체에서 추천서를 받지만 최종 선임 이후에는 “정치권과 밀접한 교수들이 권력의 지시에 따라 선임됐다”거나 “학맥과 주관적 판단만으로, 반대 논리를 전개한 전문가를 빼버렸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고 보도하였다.¹⁵⁾

2. 조사 내용

가. 신청인의 문화재위원 위촉 통보 여부

신청인은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촉장을 받으려 오라는 연락을 문화재청 사무관에게 받았는데, 그로부터 3일 후 문화재위원 위촉 재고 대상이라는 연락을 다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¹⁶⁾

신청인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을 문화재위원

12) 국회회의록_19대_337회_국정감사_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9.17)

13) 국회회의록_19대_337회_국정감사_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10.7)

14)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2016. 5.)

15) [문화재 관리 현주소] (중) 문화재위 권력화 실상과 해법, 2014. 4. 8. 서울신문

16) 신청인 김규호 진술녹음(2018. 3. 7.)

으로 추천한 한국관광학회에 신청인의 추천서를 요청하였다.17) 한국관광학회는 문화재청에서 보낸 공문 양식에 맞춰서 2015. 1.경 신청인을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으로 추천하였다.18) 신청인의 문화재위원 추천서는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문화재위원 추천서

문화재위원 추천서(양식)									
추천 분과	성명 (한자)	성 별	생년 월일	현직	전문 분야	학력 (대학이상)	주요경력	주요저서(논문포함)	시도 위원회 겸직
시적	김구호 (金奎濤)	남	'56	경주대학교 관광레저학과 교수	관광학	학사: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 박사: 경기학교 대학원 (관광경제학)	'88.03~현재 : 경주대학교 관광레저학과 교수 '04.03~'06.02 : 한국관광학회산하 관광자원개발분과회회장 '09.02~'11.02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특별위원회위원	'12 :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관광자원화(한국관광학회) '12 : 지역관광 어디로 가야하 나(백산출판사) '97 : 관광산업의 지역경제적 효과분석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여부, 위촉이 반복된 사실 여부와 이유에 대해 문화재청에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문화재청은 위 사항에 대해서 다음 [표-5]와 같이 답변하였다.19)

[표-5] 문화재청 정책총괄과-1267(2018. 4. 2.) 정리

신청인에게 문화재위원 위촉 통보 사실 여부	2015. 4. 27. 통보
신청인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 되지 못한 이유	2015. 4. 27일까지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일정(2015.5.4.) 상 참석대상자에게 사전에 회의일정을 통보하는 관례에 따라 각 위원 후보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으로 확정된 것처럼 문서가 시행됨 ※ 최종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위원 위촉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17) 신청인은 현재 경주대학교 관광레저학과 교수이다.

18) 한관 18-007(2018. 3. 14.). 2015년 문화재위원 추천 접수기간은 2015. 1. 12. ~ 2015. 1. 30.으
로 2015. 1.경 신청인을 추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 문화재청 정책총괄과-1267(2018. 4. 2.)

**신청인에게 문화재위원 위촉
통보 사실 여부**

2015. 4. 27. 통보

공지할 계획이었으나, 문서 작성 시 누락
문화재위원으로 최종 위촉되지 못한 이유는 인사검증기관으로부터
확인할 수 없었기에 우리 청에서도 명확한 사유는 알 수 없음

위 공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문화재청은 신청인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4. 27. 신청인에게 문화재위원 위촉 통보를 하였고, 2015. 5. 4. 문화재위원 전체회의²⁰⁾ 전까지 신청인의 인사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신청인은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신분으로,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림-2]로 인용한 문화재청의 공문에 의하면 문화재청은 2015. 4. 27. 신청인을 포함한 79명을 문화재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5. 5. 4. 위촉장을 수여하겠다고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문화재청은 신청인에게 문화재위원 위촉 통보를 하였다. 문화재청은 신청인에게 문화재위원 위촉 통보를 하면서, 인사 검증이 끝나지 않아 신청인이 문화재위원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하나, 위 공문에 의하면 신청인은 문화재청장의 결정에 따라 위촉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의하여 위촉대상자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나. 문화재위원 인사 검증의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

1) 신청인과 참고인의 주장

신청인 김규호는 2015. 4.경 문화재청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문화재위원 위촉 재고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당시 박강섭 청와대 관광비서관에게 이를 질의하였는데, 박강섭 관광비서관이 ‘청와대 인사 검증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청 담당자가 성급하게 통보’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²¹⁾

박강섭 전 관광비서관도 신청인에게서 ‘본인이 문화재위원 위촉 검토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 행정관에게 물어보았는데, 이 행정관은 ‘청와대 인사 검증절차가 끝나지 않은

20) 이날 문화재위원 위촉장이 수여되었다.

21) 신청인 김규호 진술녹음(2018. 3. 7.)

상태에서 문화재청 담당자가 성급하게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전해 주었다고 답변하였다.²²⁾

2014년 광주비엔날레 책임 큐레이터로 홍성담 화백의 그림 <세월오월>의 전시를 주도했던 참고인 윤OO는 2015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에 위촉되었으니 임명식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문화재청 담당자로부터 수차례 받았는데, 임명식 하루 전에 그 담당자가 갑자기 임명식에 오지 말라는 연락을 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2~3개월 후 그 담당자에게 문화재위원 임명식에 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청와대에서 참고인을 제외하라고 해서 임명식에 오지 말라는 연락을 했다고 진술하였다.²³⁾

2) 문화재청의 답변

문화재청은 공문(문화재청 정책총괄과-1267)에서 문화재위원 위촉시 문화재위원 후보자들에게 신원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고 신원조회 등의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에는 관련 근거가 부재하여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인사 검증을 요청한다고 기재하였다.²⁴⁾ 이에 위 문화재청 공문을 작성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00 주무관에게 문화재위원을 인사 검증한 기관은 어떤 기관이냐고 질의하자 청와대라고 답변하였다. 또 문화재위원이 청와대 인사 검증 대상이냐고 질의하자, 문화재위원이 청와대 인사 검증 대상이라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하였다.²⁵⁾

그리고 2015년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주무관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담당한 이OO 사무관(현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 과장)에게 2015년 문화재위원에 대한 청와대 인사 검증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OO 사무관은 2015년 문화재위원으로 추천 받은 대상자 중,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을 선별하여 2015. 4. 초순경 청와대에 명단을 제출했는데 2015. 4. 말경 청와대 인사 담당이 전화로 11명을 제외하라고 하여,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에서 청와대 인사 담당이 불러준 11명을 제외한 68명을 2015. 5. 4. 2015

22) 참고인 박강섭 조사보고(2018. 3. 26.)

23) 참고인 윤OO 진술녹음(2018. 1. 2.) 참고인 윤범모는 우리 위원회 직권사건인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의 참고인으로 당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책임큐레이터로서 '세월오월'의 전시를 찬성하였으나 '세월오월'의 전시가 취소되자 책임큐레이터를 사퇴하였다.

24) 문화재청 정책총괄과-1267(2018. 4. 2.)

25) 참고인 000 조사보고(2018. 4. 3.)

년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답변하였다. 전화로 11명을 제외하라고 한 청와대 인사 담당이 어떤 비서관실 소속인지는 알지 못하고, 문화재위원의 청와대 인사 검증은 2013년 이전부터 있어왔는데, 2015년은 특히 심하게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조사과정에서 답변하였다.²⁶⁾

이OO 사무관의 답변과 문화재청 공문(정책총괄과-1267)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2015년 문화재위원 추천자(800여명²⁷⁾) 중에서 문화재청은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을 결정하였다. 문화재청은 관례에 따라 2015. 4. 초순경 청와대에 이 79명 명단을 제출하여 인사검증을 요청하였으나 2015. 4. 27.까지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청와대 인사 검증에 대한 통보는 없었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2015. 4. 27.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일정(2015. 5. 4.)을 회의 참석대상자(신규 위촉 문화재위원 79명)에게 사전통보하여 참석대상자(신규 위촉 문화재위원 79명)에게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요청을 하였다. 사전 통보이후인 2015. 4. 말경 청와대는 문화재청에 신규 위촉 문화재위원 79명 중 11명을 제외하라고 전화로 지침을 주었으며,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이 11명에게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2015. 5. 4. 68명만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청와대가 문화재위원 인사검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재청 공문(정책총괄과-1267)과 신청인 김규호, 참고인 000·이00·윤00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6]과 같다.

[표-6]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과정

시기	내용	비고
1. 12 ~ 1. 30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추천 접수 ²⁸⁾	• 각 학회, 대학, 관계 기관 등에서 800여명 추천
4. 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을 선별하여 청와대에 인사 검증 요청 ²⁹⁾	
4. 27.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에게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일정(2015. 5. 4.) 통보 ³⁰⁾	• 전화 통화와 이메일로 전체회의 일정 통보 • 이 전체 회의에서 문화재위원 위촉장 수여 예정

26) 참고인 이00 조사보고(2018. 4. 6.)

27) 앞에서 언급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2016. 5.)에서 문화재위원 10배수의 과다추천 문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을 80명 이내 위촉하므로 800여명이 추천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기	내용	비고
4. 말	청와대,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 중 11명을 문화재위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 ³¹⁾	• 이 11명 중에 신청인 김규호, 참고인 윤OO 포함
4. 말 ~ 5. 초	문화재청, 청와대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11명에게 문화재위원회 회의 참석 불가 통보 ³²⁾	• 신청인 김규호, 참고인 윤OO에게 회의 참석 불가 통보
5. 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진행하여 68명에게 문화재위원 위촉장 수여 ³³⁾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열렸으며 위촉된 68명의 문화재위원 중 56명이 참석

3)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중 청와대 인사검증 탈락자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 중 신청인과 참고인 윤OO를 포함하여 11명이 청와대의 문화재위원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였다.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가 79명이라는 사실은 문화재청 공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요청’ 문서를 2015년 문화재위원 신규 위촉자들에게 통보하였는데, 이 문서는 다음 [그림-2]와 같다.

28) 문화재청 공문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대상자 추천 의뢰’

29) 참고인 이OO 조사보고(2018.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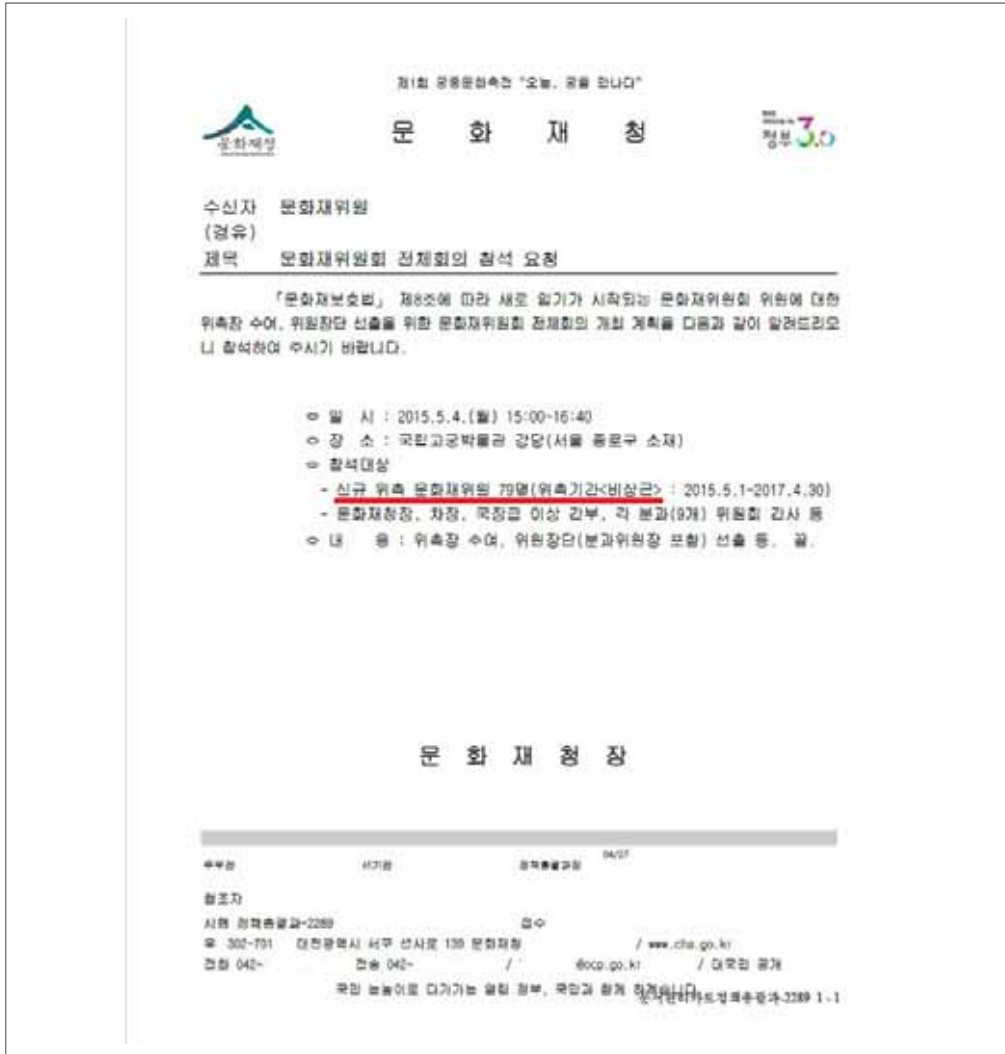
30) 문화재청 정책총괄과-2289(2015. 4. 27.)

31) 참고인 이OO 조사보고(2018. 4. 6.)

32) 신청인 김규호 진술조서, 참고인 윤OO 진술녹음(2018. 1. 2.)

33)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선출, 이뉴스투데이, 2015. 5. 4.

[그림-2]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요청



이 문서에는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대상으로 '신규 위촉 문화재위원 79명(위촉기간<비상근>)'으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인원수는 68명인데, 이는 문화재청에서 제공한 '2015~2017 문화재위원 명단'(2015년 문화재위원 68명)과 2015. 5. 1. 한겨레신문 보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2015년 신규 문화재위원 위촉자 68명).³⁴⁾

34) 새 문화재위원 68명 위촉, 한겨레신문, 2015. 5. 1.

문화재위원회는 홀수해 5월에 위촉되는데 문화재위원회는 80명 이내로 구성된다.³⁵⁾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문화재위원 인원수는 다음 [표-7]과 같다.

[표-7]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문화재위원 인원수

연도	문화재 위원수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위원 (80명) 건축문화재분과(11명), 동산문화재분과(11명), 사적분과(7명), 무형문화재분과(12명), 천연기념물분과(12명), 매장문화재분과(8명), 근대문화재분과(9명), 민속문화재분과(4명), 세계유산분과(6명)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위원 (78명) 건축문화재분과(8명), 동산문화재분과(12명), 사적분과(11명), 무형문화재분과(9명), 천연기념물분과(13명), 매장문화재분과(7명), 근대문화재분과(8명), 민속문화재분과(5명), 세계유산분과(5명)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위원 (68명) 건축문화재분과(7명), 동산문화재분과(8명), 사적분과(9명), (구)무형문화재분과(9명), 천연기념물분과(9명), 매장문화재분과(6명), 근대문화재분과(7명), 민속문화재분과(6명), 세계유산분과(7명)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위원 (78명) 건축문화재분과(10명), 동산문화재분과(11명), 사적분과(12명), 천연기념물분과(11명), 매장문화재분과(9명), 근대문화재분과(10명), 민속문화재분과(8명), 세계유산분과(7명)

위 [표-7]을 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재위원수는 2011년 80명, 2013년 78명, 2015년 68명, 2017년 78명이다. 2011년, 2013년, 2017년과 비교해서 2015년 문화재위원수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에 언급한대로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자 79명중 11명이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탈락했기 때문이다.

우리 위원회는 청와대 인사 검증에 탈락된 11명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문화재위원 신규 위촉자 79명 명단을 문화재청에 요청하였다. 2018. 4. 13.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00 주무관이 ‘문화재위원회 위원 추천현황’ 79명 명단을 우리 위원회 대표 메일로 보내왔다. 이 ‘문화재위원회 위원 추천현황’ 79명 명단을 2015년 문화재위원 명단과 비교하여 2015년 신규 위촉 문화재위원 중 청와대 인사 검증 탈락자 11명을 확인하였다. 이 11명의 명단은 다음 [표-8]과 같다.

35)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2조(구성) ①「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표-8] 2015. 4. 27.자 2015년 신규 위촉 문화재위원 중 청와대 인사 검증 탈락자

연번	분과	전공분야	추천대상	문화재위원 경력
1	건축문화재분과	건축사	전OO(서울대, 63년)	신규
2	동산문화재분과	불교사	정OO(숙명여대, 54년)	신규
3		보존과학	강OO(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54년)	신규
4	사적분과	관광	김OO(경주대, 56년)	신규
5	무형문화재분과	국악	홍OO(한국국악협회, 45년)	신규
6	천연기념물분과	문화관광	정OO(배재대, 64년)	신규
7	매장문화재분과	고고학	하OO(세종대, 60년)	신규
8		법률	박OO(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52년)	역임
9	근대문화재분과	근대사	최OO(서강대, 57년)	신규
10		미술사	윤OO(경원대, 51년)	역임
11	민속문화재분과	건축·입지환경	김OO(우석대, 59년)	신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발표한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를 보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부임(2013. 8.)이후 이념 온상이 되어온 ‘문예계 정상화’를 위하여 문·관이 협력하여 ‘좌성향’ 단체·인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뿌리 뽑아 나갈 것을 제안하는데, 그 제안 내용에는 공공분야에서 철저한 신원검증으로 좌성향 인물의 침투를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³⁶⁾

공공분야에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한 시기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임한 2013. 8. 이후로 판단된다. 문화재위원 임기는 홀수해 5.1부터 다음 홀수해 4. 30.까지로 문화재위원의 청와대 인사 검증이 철저하게 진행한 때는 201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위 [표-6]에서 나타나듯이, 2015년 문화재위원수가 2011년, 2013년, 2017년보다 감소한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철저하게 진행된 결과로 풀이되는데, 참고인 이OO는 2015년 문화재위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특히 심했다고 답변하였다³⁷⁾

그리고 2017년 문화재위원수가 2015년보다 증가한 것은, 2015년 청와대 인사 검증이 늦어져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수가 감소한 것을 고려하여 2017년에는 문화재위원에 대한 청와대 인사 검증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발표한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는 국정원이 2014. 2.~2016. 9.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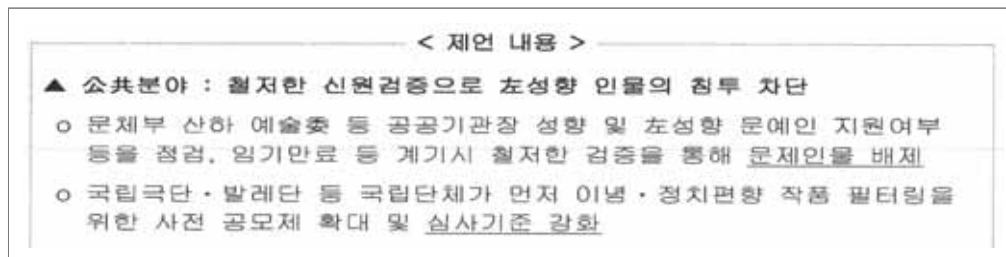
36)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

37) 참고인 이OO 조사보고(2018. 4. 6.)

인물 검증을 요청 받아 민주당·구 통진당 당원, 정부비판·시국선언 참여,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을 문제인물로 선별·통보하였다.³⁸⁾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발표한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중 제언 내용은 다음 [그림-3]과 같다.

[그림-3]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4) 소결

2015. 4. 초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을 선별한 문화재청은, 이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 하였다. 4. 27.까지 위 79명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 결과가 하달되지 않자, 문화재청은 관례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79명에게 통보하였다. 4월말경 청와대는 문화재청이 인사 검증을 요청한 79명 중 11명을 문화재위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문화재청은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이들 11명에게 문화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하였다.

5. 4. 문화재청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 중 11명을 제외한 68명을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하여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다. 신청인의 문화재위원 위촉 불가 이유

1) 신청인·참고인의 주장과 문화재청의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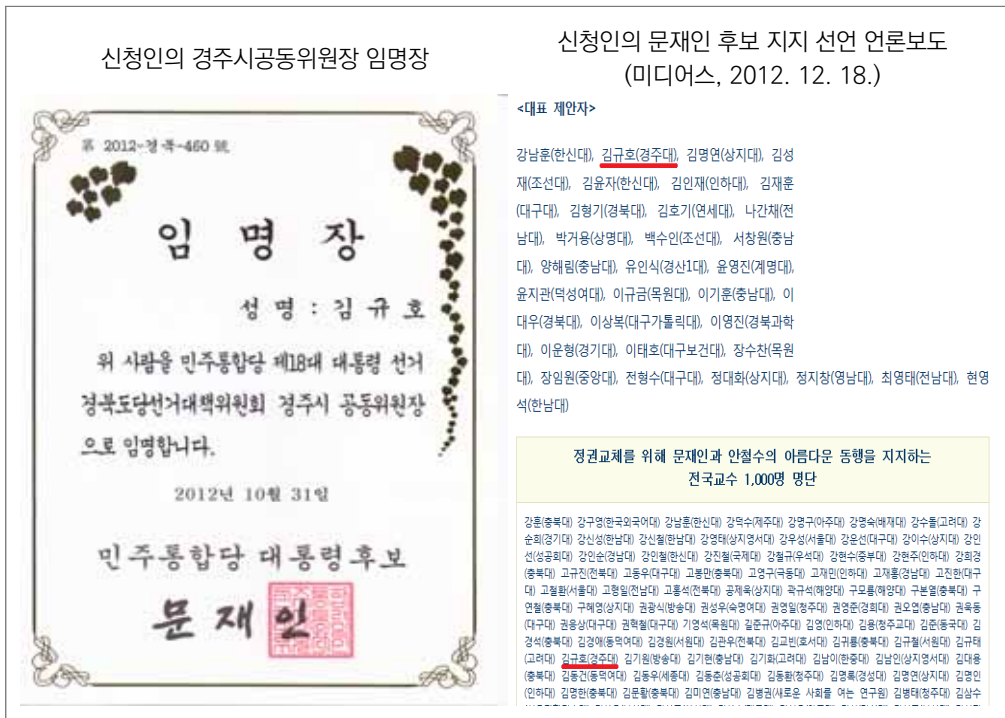
신청인은 본인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 이유는, 2012 대선에서 민주당 문제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³⁹⁾

38)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발표한, 2017. 10. 30.

신청인은 2012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경북선거대책위 경주시공동위원장으로 2012. 10. 31. 임명되었다.⁴⁰⁾ 신청인이 2012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주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하였다.⁴¹⁾ 신청인은 2012. 12. 17. 전국의 대학교수 1,000명과 함께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였는데, 신청인은 대표 제안자 중에 한 사람이다.

신청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위원으로⁴²⁾, 2013. 7. 23. 민주당 추천으로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되었다.⁴³⁾

[그림-4] 신청인의 경주시공동위원장 임명장과 신청인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언론보도



39) 신청인 김규호 진술녹음(2018. 3. 7.)
 40) 민주당통합당 경북도당선거대책위원회 경주시공동위원장 임명장(2012. 10. 31.)
 41) 대학 교수 1000명, 문재인 적극 지지 선언(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교수 1,000명 명단), 미디어스, 2012. 12. 18.
 42) 민주당 경북도당 홈페이지 참조
 43)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신청인이 2012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 하였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에 탈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이 내용을 질의하였다. 문화재청은 신청인을 인사 검증한 청와대로부터 인사검증에 탈락한 이유를 확인 할 수 없어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⁴⁴⁾

한편 박강섭 전 관광비서관은 신청인이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탈락된 이유는 알지 못하고, 문화재위원이 청와대 인사 검증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⁴⁵⁾

2)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문화재위원 추천자 11명의 신원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2015년 문화재위원 추천자 11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현직과 과거 행적을 조사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9]와 같다.

[표-9]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탈락한 2015년 문화재위원 추천자 신원

연번	성명	현직	비고
1	전OO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한국건축역사학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3. 25.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 참여 • 2014. 5. 30. 세월호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 204명에 참여
2	정OO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6. 22.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숙명여대 교수 일동에 참여
3	강OO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재보존관리학과 객원교수	
4	김규호	경주대 관광레저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2012.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경북도당 선대위 경주시위원장
5	홍OO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리스트 등재(문예6-11_리스트-'16.9.27현재) • 2000. 12. 10. 故김대중 前대통령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축하공연. • 2008. 12. 18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
6	정OO	배재대 관광축제호텔대학원장	
7	하OO	세종대 역사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부위원장

44) 문화재청 정책총괄과-1267(2018. 4. 2.)

45) 참고인 박강섭 조사보고(2018. 3. 26.)

연번	성명	현직	비고
8	박OO	국민권익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 2013. 7. 17.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 128명 에 참여
9	최OO	서강대 사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6. 7.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서강대학교 교수 45인 일동에 참여 • 2013. 9. 12.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선언 서강대 교수 28명에 참여
10	윤OO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홍성담 화백의 그림 <세월오월>의 광주비엔날레 전시 주도
11	김OO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6. 1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지역교수 연대시국성명에 참여

[그림-5] 문예6-11_리스트-'16.9.27.현재

문화예술기관 인수단원 지원사업 ('15.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K(1.7)-결과가 늦어지므로 먼저 진행할 것 ○K-5.23 피신 - 시각예술: 대한공간아트포럼(이훈희) - 전통예술: (사)경기악회(천계현), 임실원불농악보존회(양진성), (사)한국국악협회(홍성덕) ○ 추가 일용(1.13/E)
------------------------------	--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취소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위 [표-10]의 11명 중 참고인 박OO과 참고인 최OO을 조사 하였다.

참고인 박OO은 2015년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니 문화재위원 전체 회의에 참석 하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2~3일 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본인이 참여연대 공동대표 역임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⁴⁶⁾

참고인 최OO은 2015년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니 문화재위원 전체 회의에 참석 하라는 공문을 메일로 받았으나 며칠 후 문화재청 담당 과장으로부터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본인이 문화재위원에 위촉되지 못한 이유는 2009. 6. 7.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서강대 교수 45명과 하였는데, 이 시국선언 때문에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했으며, 2015년 문화재위원에 위촉되지 못한 사람들도 시국선언 때문에 위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⁴⁷⁾

46) 참고인 박OO 조사보고(2018. 4. 16.)

47) 참고인 최OO 조사보고(2018. 4. 16.)

참고인 최OO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2009. 6. 7. 시국선언을 조사하였는데, 최OO은 2009. 6. 7.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서강대학교 교수 45인 일동'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위 시국선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을 즈음하여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을 즈음하여 이명박 정부의 사정 권력기관 중립화를 촉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전국 93개 대학의 교수 4,500명 이상을 포함하여 각계 인사 1만명 이상이 이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

위 11명중 2009. 6.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람은 정OO, 최OO, 김OO로 확인되었다. 11명중 8명은 2009년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결과여서 위 8명의 시국선언 참여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위 11명중 전OO는 2008. 3. 25.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 2014. 5. 30. 세월호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 204명에 참여하였고, 홍OO은 2008. 12. 18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하였고, 박OO은 2013. 7. 17.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 128명에 참여하였다.

위 [표-8]의 11명 중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정권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람은 6명으로 확인되었고, 신청인 김규호와 참고인 윤OO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로 보여진다. 위 11명중 8명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로 추정된다.

3)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문화재위원 추천자가 탈락한 이유

청와대 전 정무수석 박준우의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는, 청와대 문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2페이지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에 대해 좌파 인사들이 정부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어, 정부 위원회 위원들을 보수인사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반영된 결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⁴⁸⁾

2014. 5.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은 다음 [그림-6]과 같다.

48)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박준우에 대한 2017. 1. 12.자 진술조서

[그림-6]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

- 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총 70명의 좌편향인사가 66개 위원회에서 활동(중복제외)중임을 확인

* 대통령(16개), 국무총리(64개) 소속위원회를 제외한 중앙부처 위원회 전체 대상

- ⇒ 관계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위원회 특성 상,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단계별로 해촉할 예정 (첨부#3)

- 비서관실별로 해당부처 핵심인사(차관, 기획조정실장 등)를 통해 통보

<정부위원회 위원 확인 결과(2014.5)>

구분	계	기재	미래	교육	통일	법무	안행	문화	농림	산통
위원(명)	79 (중복활동자 제외한 총70명)	3	1	3	1	1	7	5	8	3
		복지	환경	노동	여성	국토	해양	법제처	보훈처	삭처
		7	9	12	2	11	1	1	2	2

- 좌편향인사가 다수 포진한 정부위원회는 회의개최를 지양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개최횟수가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 검토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는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이 첨부되어 있다. 여기에는 66개 정부 위원회 위원 70명을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전원 교체할 예정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70명의 정부위원회 위원 특이사항에 2012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그리고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선언과 단체 참가 여부가 적시되어 있다.

위 70명 중 23명이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교수 1000인'(이하 '지지선언', 위 [그림-4] 참고)에 참여하였고, 신청인 김규호도 이 지지선언에 참여하였다(박능후, 박병헌, 조만형, 전형수, 이재은, 양현미, 김종연, 우희종, 임운택, 문진영, 백도명, 조우, 류장수, 어수봉, 장영철, 조우현, 김창록, 손희하, 이우진, 이찬원, 임승빈, 홍진택, 김선일). 이 지지선언이 정부 위원회 위원 교체 이유가 된 것이다.

또 이 70명중 2012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인 담쟁이 포럼과 문재인 캠프에 참가한 인사는 11명이다(박능후, 조만형, 최경실, 김옥영, 양현미, 문진영, 어수봉, 조명래, 이찬원, 김선일, 최정우).

교체 예정인 정부 위원회 위원 70명 중 2012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인사가 27명이라는 것이 확인 되었다(중복된 7명 제외).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은 다음 [그림-7]과 같다.

[그림-7]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

첨부 3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				
※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전원 교체할 예정 : 66개 위원회 70명(중복 9건 포함)				
번호	위원 (직함)	정부위원회		특이사항
		부처	위원회	
1	박능후 (경기대 교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교수 1000명 • 담쟁이포럼 발기인
2	박병현 (부산대 교수)		복권위원회	•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교수 1000명
3	윤순진* (서울대 교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미국산쇠고기 협정파기 촉구선언 • 서울대교수 124명 MB정부 비판 시국선언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시국선언 • 서울대교수 204명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선언
4	조만형 (한남대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해융합위원회	• 담쟁이포럼 발기인 •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교수 1000명
5	전형수 (대구대 교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교수 1000명 • 전교조를지지하고사수하는 전국교수연구자모임 • 미국산쇠고기 협정파기 촉구선언

2012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교체 대상이 된 정부 위원회 위원이 27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신청인도 같은 이유로 문화재위원에서 탈락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신청인이 문화재위원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어떤 이유로 탈락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에 포함된 70명 중, 위 [표-9]에 나타난 시국선언과 관련된 인사 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시국선언 관련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과 문화재위원 추천자 중 청와대 인사 검증 탈락자 비교

시국 선언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	문화재위원 추천자 중 청와대 인사 검증 탈락자
2009. 6. MB정부 시국선언	윤OO, 최OO, 백OO	정OO, 최OO, 김OO
2013. 7. 17.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시국선언	윤OO, 박OO, 최OO, 우OO, 백OO	박OO
2014. 5. 30. 서울대 교수 204명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선언	윤OO, 최OO	전OO

위 [표-10]를 보면, 교체 대상이 된 정부 위원회 위원과 문화재위원 추천자 중 청와대 인사 검증 탈락자가 동일한 시국선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된 이유가 시국선언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참고인 윤OO는 청와대의 문화재위원 인사검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참고인은 2014년 광주비엔날레 책임 큐레이터로 있었는데, 홍성담 화백의 그림 <세월오월>의 전시를 찬성했다가 전시 취소가 결정되자 책임 큐레이터를 사퇴했다. 참고인은 홍성담 화백의 그림 <세월오월>의 전시를 주도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자신을 문화재위원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진술하였다.⁴⁹⁾ 위 [표-9]의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홍성담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예6-11_리스트-'16.9.27현재).

신청인을 포함해 2015년 문화재위원 추천자 11명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 중 11명을 제외하라고 유선으로 지시한 청와대 인사 담당과 문화재위원 인사 검증과 관련한 청와대 문서를 조사해야 하지만, 위에 언급한 청와대 인사 담당과 청와대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 지금 상황에서 조사를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신청인은 본인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 이유는, 2012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을 포함해 2015년 문화재위원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 11명 중 8명이 이명박·

49) 참고인 윤OO 진술녹음(2018. 1. 2.)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로 보이는데,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청와대 문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 첨부된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에는 신청인과 같이 지지선언을 한 인사 23명을 포함해 27명이 2012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신청인의 문화재위원 위촉 통보 여부

문화재청 공문(정책총괄과-1267)을 통해 문화재청이 신청인에게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문화재청은 신청인의 청와대 인사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신청인은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신분으로,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화재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위원 자격 요건⁵⁰⁾에 부합되고 문화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79명을 2015년도 문화재위원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위촉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규정에도 없는 청와대 인사 검증을 통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으면서도 이들을 문화재위원에서 탈락시켰다.

50)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②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문화재위원 인사 검증의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

문화재청 공문(문화재청 정책총괄과-1267)을 작성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00 주무관은 문화재위원을 인사 검증한 기관은 청와대이며, 문화재위원이 청와대 인사 검증 대상이라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2015년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에서 문화재위원회를 담당한 이00 사무관은 2015년 문화재위원으로 추천 받은 대상자 중,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을 선별하여 2015. 4월초순경 청와대에 명단을 제출했는데 2015. 4월말경 청와대 인사 담당이 전화로 11명을 제외하라고 하여,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에서 청와대 인사 담당이 불러준 11명을 제외한 68명을 2015. 5. 4.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답변하였다.

박강섭 전 관광비서관은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청와대 인사 검증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청 담당자가 성급하게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인에게 전해 주었는데 신청인이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탈락한 이유는 알지 못하고, 문화재위원이 청와대 인사 검증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또 참고인 윤범모는 홍성담 화백의 그림 <세월오월>의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주도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자신을 문화재위원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청와대가 문화재위원 인사검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2015년 문화재위원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은 신청인과 참고인 윤00를 포함해서 11명으로 확인되었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가. 신청인의 문화재위원 위촉 불가 이유

신청인의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2015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관련 인사검증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재청이 위촉했으나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제외된 11명의 탈락사유가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사유였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3.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가. 조사권한의 한계

위원회는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조직이 아니라 문체부 훈령(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2017. 7. 31.)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 타 부처나 기타 공적기관, 개인에 대한 강제조사권한이 없어 대상기관 및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 이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신청인의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2015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청와대 문서를 조사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을 정하기 어렵고, 문화재위원 인사검증과 관련한 청와대 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4. 5월경 정부 위원회 위원 70명을 좌편향 인사라는 이유로 전원 교체할 예정이라고 적시된 청와대 문서를 확인하였고, 청와대가 문화재위원 인사 검증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와대 문서에 적시된 정부 위원회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좌편향 인사라는 이유로 정부 위원회 위원 교체가 진행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관계자와 청와대 문서를 조사해야 한다.

나. 조사활동 기간의 부족

위원회는 최초 6개월 및 3개월의 기한 연장 등 총 9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은 2017. 12. 22 개시되어 자료 및 진술인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로 대상자 및 대상기관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어 실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간 부족을 초래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07

임정희 및 문화연대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107

임정희 및 문화연대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22[임정희 및 문화연대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은 문화연대 대표로서, 신청인과 문화연대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와 블랙리스트로 인한 신청인과 문화연대 활동의 직·간접적인 제약과 탄압에 대한 조사 및 블랙리스트로 인한 시민들의 문화 기본권 축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은 문체부 등에서 차별 배제를 위해 관리하여 온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감시 사찰 차별 배제의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붙임 : [임정희 및 문화연대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특22, 임정희 및 문화연대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신청인] 임정희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문화연대 대표로서, 신청인과 문화연대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와 블랙리스트로 인한 신청인과 문화연대 활동의 직·간접적인 제약과 탄압에 대한 조사 및 블랙리스트로 인한 시민들의 문화 기본권 축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 사건에 대해 「18차 전원위원회」(2017. 12. 8.)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① 신청인과 문화연대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② 블랙리스트로 인한 문화연대 활동의 직·간접적인 제약과 탄압 ③ 블랙리스트로 인한 시민들의 문화기본권 축소 ④ 블랙리스트로 인한 신청인의 활동 피해 여부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검토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게재일/작성일
1	2013. 3. 15.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국정원		2013. 3. 15.
2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예술인 명단	한국일보		2016. 10. 12.
3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 일부	김OO		2016. 12. 19
4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 일부	오OO		2016. 12. 27.
5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
6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결과	국정원		2017. 10. 30.
7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오OO	2018. 3. 26.	
8	문예 6-5_리스트 '16. 2. 1.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2018. 3. 26.	
9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	2018. 3. 26.	

2.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신청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대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조사 형태	일자
1	임정희	신청인	진술조서	2018. 3. 8.
2	오OO	참고인(전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진술조서	2018. 2. 7.
3	최OO	참고인(문화연대 사무처장)	조사보고	2018. 3. 19.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문건

[그림-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명단

사장) 이충렬(영화감독) 이하(미술인) 이한구(사진가) 이한일(배우) 이혜성(작가) 이현순(한국민예총대구지회지회장) 이현경(사진가) 이현주(한국민예총사무국장) 이혜규(가수) 이홍재(배우) 이황의(배우) 이훈규(영화인) 임성찬(영화인) 임순례(영화감독) 임승묵(음악인) 임영선(미술인) 임옥상(미술인) 임인자(연출) 임인출(일과 놀이 대표)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임종진(사진가) 임찬익(영화감독) 임창재(영화인) 임철빈(영화인) 임태훈(사진가) 임하나(작가) 장미미(출근) 장성희(문화기획) 장순항(한국민예총부이사장) 장용철(배우) 장재승(영화배우) 장준현(영화감독) 전계수(영화감독) 전

위 문건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문화예술인 4,110인, 경남 문화예술인 869인, 전북 문화예술인 115인, 부산 문화예술인 423인, 서울연극협회 1,000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문화예술인 909인, 문화예술인 71인, 여성 문화예술계 628인)' 총 9,473명에 대한 언론보도, 블로그 포스팅을 스크랩한 목록이다. 위 문건 중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에서 신청인의 이름이 확인되었는데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로 적시되어 있다.

위 문건 표지의 표를 작성하고, 관련 기사를 스크립한 사람은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술정책과 000 서기관이다. 000은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위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2015. 5.경¹⁾ 당시 김00 청와대 행정관이 저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알려주며,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서 장

1) 단,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15. 5. 11.) 문건에서 "15.4월 현재 9,473건"이라는 표현이 확인되며, 공판에서 000이 9,473명의 확인 시기가 4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여(공판 기록 1412), 9,473명에 대한 최초 파악시기가 5월이 아닌 4월일 가능성이 있다.

관한테 보고하고 교문수석실로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더니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으로 확인이 되어 이 표로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²⁾

한편 전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은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본 문건에 대하여, 2015년 5월 경 김OO이 오OO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관련 문화예술인 명단을 뽑아서 장관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오OO에게 위 문건을 작성하게 하여 참고인 본인이 김종덕에게 이를 보고한 뒤 오OO을 통해 교문수석실로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³⁾

즉, 오OO은 김OO으로부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정부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 문건을 작성한 후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에게 보고하였다. 김OO은 위 문건을 직접 문체부 장관 김종덕에게 보고하였고, 오OO으로 하여금 전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인 김OO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게 하였다.⁴⁾

이후 청와대는 문체부에 위 문건을 ‘지원배제명단’으로 활용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문건이 활용되었다.⁵⁾

위 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된 한국일보는 2016. 10. 12. 보도에서,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 6.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화인 754명, 2012.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 총 9,473명의 예술인에 대하여 청와대가 검열 용도의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보도된 내용과 실제 문건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다).⁶⁾

2)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4973~4974쪽)

3)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1313쪽)

4)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4973~4974쪽)

5)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7. 4. 21.자 녹취서 일부

6)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2016/10/12 04:40, <http://www.hankookilbo.com/v/0abb634242a64afca79799b09f8564f4>

2) 문체부 예술정책과가 2015. 5. 11. 작성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그림-2] 문예6-6_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대외비1-2)

<p>○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자료 관리('15.4월현재 9,473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선언(문화예술인 594인) *'15.5월초 추가 - 세월호 시국선언(문학인 754인) -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6,517인/문화예술인, 경남·전북·부산예술인, 서울연극협회) -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1,608인/문화예술인, 여성예술인)
--

오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위 문건은 본인이 2015. 5. 11. 작성한 것이며, 과장, 국장, 장·차관, 청와대까지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 위 문건에는 소위 '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단체에 대한 주요 조치8) 실적, 주요 조치에 대한 평가, 블랙리스트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향후 조치방안, 추진일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위 문건의 제1쪽에서 '주요 조치 실적'으로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자료 관리('15.4월 현재 9,473건)'를 내세우고 있는데, 분류항목 중 하나인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 참여자로서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은 1) 향에서 살펴본바와 같다.

3) 대1-7_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그림-3]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

구분	단체	조직 현황 및 주요동향
문화 예술	<p>인예총 이시경 : 공자환 영남대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미협(미술)·인공협(영화)·인극협(연극) 등 10개 단체, 문화예술·홍사자 3종 5,000명으로 구성 ○ 범민련·실천연대 등과 연대해, 병행거지 이견·4대강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반대 활동. 反美·反정부 투쟁을 통한 문화선봉대 역할
	<p>작가회의 이시경 : 소설가 이시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광협·조광래·공자환 등 작가 1,700여명으로 구성 ○ 인예총 상하 단체이자 사상적 토대를 담당하며 거거시 정부비판 시국선언·강원 특별 총회 대정부에 요구된 입장 견제 • 작가 137명은 정병교채 요구 광고 게재(경향, 2012.12.14)
	<p>문화연대 공자환 대표 김내희 총무대 교수·김정희 연세대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공사자구'를 표방, 문화정책센터 등 8개 분과 문화예술계 교수 등 3,000명으로 구성 ○ 1.16 용산사건 4년 추모경제로 '꽃피는 봄산' 주도 ○ 지역사회 저소득·소외계층 대상 문화화 사업 전개 • 대표 소재 '성미산 학교' 등 사회주의공동체 건설 추진

7) 오OO에 대한 2018. 2. 7.자 진술조서 제21쪽, 이OO에 대한 2018. 2. 1.자 진술조서 17쪽
 8) 배제 조치,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업구조조정 및 개선, 일부 사업 양해조치 등을 포함한다.

위 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하여 2013. 3. 15. 전 대통령인 박근혜에게 보고하고, 전 비서실장 허태열, 민정·정부·교문수석에 전달한 것이다.⁹⁾ 위 문건에는 “문화예술계 좌파(左派)들은 편중지원과 내부 결속력을 토대로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는 내용과 함께, <붙임> “左派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표 중 “민예총”의 “조직 현황 및 주요동향”에서 문화연대가 문화정책센터 등 9개 분과 문화예술계 교수 등 3,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4) 국정원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보고서

[그림-4] 주요 좌 성향 문화예술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대표
1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 정지창
2	문화연대	공동대표 : 강내희
3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 이시영
4	서울연극협회	회장 : 박장렬
5	민족미술인협회	회장 : 박진화

국정원은 2014. 3. 19. 위 보고서를 통해 대표자 경력활동(정부비판 작품저술·시국선언·야권 인사지지 등) 등에 따라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단체 15개, 인물 249명’을 열거·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근절 미흡 원인’을 분석하고, 문예기금 선정기관에 좌성향 인물 배제,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을 통한 자금줄 차단 등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문체부 등을 통해 실행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의 기준점을 제시하였다.¹⁰⁾ 위 문건의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단체 15개 중 하나로 문화연대가 등재되어 있다.

9) 2018. 1. 4.자 국정원 ‘업무협조 요청 회신’

10) 국정원 적폐청산 T/F 작성의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2017. 10. 30.)

2. 조사 내용

가. 신청인과 문화연대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신청인은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여하였는데 2016. 10. 12.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예술인 명단'에서 신청인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선언 관련 9,473명 명단'에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 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선언 관련 9,473명 명단'은 문체부에서 소위 '좌파' 문화예술인·단체에게 차별대우를 하기 위해 작성하고 관리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해당하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에 포함된 신청인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과 문화연대는 문체부에서 제출한 「문예 6-5_리스트 '16. 2. 1. 현재」[6] 기준관리 리스트-149명」과 2017. 10. 30.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에서 발표한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붙임 16.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을 통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문예 6-5_리스트 '16. 2. 1. 현재」[6] 기준관리 리스트-149명」과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붙임 16.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다음 [그림-5], [그림-6]과 같다.

[그림-5] 「문예 6-5_리스트 '16. 2. 1. 현재」[6] 기준관리 리스트-149명」 중

6 기준관리 리스트 - 149명			
문예	단체명	사업개요 및 검토내용	진행상황
공동 - 15명	①민예총, ②지역민예총, ③분부합작협동조합(민예총소관), ④작가회의	예술위 보조금사업 확충으로 고발 및 환수조치(2010년) - 492백만원 중 5천만원 변제상태, 전역반납시까지 지원중단 민예총산하 민족문제연구소(대표 조성래, 이사장 채희원), 민미협(박용순) 2010년 소고기과용 시국선언서 참여단체	
		작가회의 소속 ⑤고명철, ⑥박종구, ⑦신용우 / ⑧광주전남소설가협회 ⑨광주문화재단 정윤성 음악계(인민해방가 등 작곡, 중국에서 영웅) ⑩부산국제영화제 구림비, ⑪시네루프(정지영, 문성근) ⑫민족극운동협의회, ⑬전국민족극원마당, ⑭느티나무도서관재단(박영숙관장) ⑮문화연대(가내회, 임경희, 황재우)	

[그림-6]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붙임 16.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중

69	미술	임옥상	93년 민족미술협의회 대표	B
70	미술	임정희	문화연대 공동대표	A
71	미술	정인숙	민예총 상임이사,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C
72	미술	주재환	10.10 「노나메기재단」 설립 추진위원	B
73	미술	최영민	청년 민노총 회원	C

나. 블랙리스트로 인한 문화연대 활동의 직·간접적인 제약과 탄압

신청인은 문화연대 활동가들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단체의 사회적 활동이 직간접적인 제약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용산참사가 일어났을 때 문화연대 활동가들이 1년 동안 파견 형태로 용산에 가 있으면서 피해를 입었고, 희망버스·한미 FTA 반대 투쟁에서도 활동가들이 벌금형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¹¹⁾

이에 문화연대 사무처장 최OO을 조사하였다. 참고인 최OO은 본인이 알고 있는 문화연대 활동가 중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은 4명 정도이며, 이중 2명은 희망버스, 울산 노동자 집회와 관련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으로 2017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위 2명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¹²⁾

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시민들의 문화기본권 축소

신청인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시민들의 비판 의식이 많이 무뎠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활성화 되기 시작한 시민 사회 영역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민들의 협업과 자율 능력·자기 결정권이 많이 약해졌다고 주장하였다.¹³⁾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들의 직접적 배제와 피해를 넘어 시민들에게 권력·체제에 순응 하도록 하고 내면까지 강제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1) 신청인 임정희 진술조서(2018. 3. 8.)

12) 참고인 최OO 조사보고(2018. 3. 19.)

13) 신청인 임정희 진술조서(2018. 3. 8.)

라. 블랙리스트로 인한 신청인의 활동 피해 여부

신청인은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 사회문화예술교육분과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방식 연구, 교육 커리큘럼 연구를 했는데 교육진흥원에서 2015년경 신청인을 이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담당자가 부서 이동 되어 ‘사회문화예술교육’(시민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지 못하고 신청인이 진행했던 성과들이 방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⁴⁾

이에 교육진흥원의 ‘시민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관련 사항을 문의하였는데 교육진흥원 기획협력실 김OO 과장이 2018. 3. 29.에 우리 위원회 대표 메일로 문서를 회신하였다. 김OO 과장은 신청인이 연구한 ‘시민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답변하였다.

〈교육진흥원 회신 문서〉

□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경과

사업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회적기업 지원				(종료)		
시민문화공간 지원	(연구)			(종료)		
시시콜콜						(종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11년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사업으로 시작하여 첫 해에는 사회적기업 지원과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추진
- 2011년 연구과제로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연구를 추진했고, 2012년부터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내 세부 사업으로 시민문화공간 지원사업 추진
- 사회적기업과 시민문화공간 지원은 최대 3년간 연속지원으로 지원주체의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4년부터는 지원주체와 방식의 변화를 꾀함
- 사회적기업과 시민문화공간 지원은 전년도 지원받은 단체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만 지원하고, '14. 5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시콜콜 사업 추진함
- 시시콜콜 사업은 '16년까지만 진행되어,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자체가 공식적으로 종료됨

14) 신청인 임정희 진술조서(2018. 3. 8.)

□ 제보자(임정희 교수) 참여 이력

- 2011년 : 시민문화공간 관련 연구의 연구진 참여
 - 연구기관은 와우책문화예술센터로 임정희 교수는 연구기관의 섭외로 참여
- 2012년 : 지원사업 관련 자문(3회), 심사(2회), 컨설턴트(연간) 참여
 - 심사와 자문은 기관 자체 섭외로 추진
 - 컨설턴트는 컨설팅 주관기관인 바람부는 연구소 섭외로 참여
- 2013년 : 지원사업 관련 심사(1회), 컨설턴트(연간), 아카데미(기획) 참여
 - 심사는 기관 자체 섭외로 추진
 - 컨설턴트는 컨설팅 주관기관인 희망제작소 섭외로 참여
 - 아카데미는 주관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 섭외로 참여하여 커리큘럼 구성 및 강사진으로 참여
- 2014년 : 지원사업 관련 콘텐츠 개발(사례집 제작) 참여
 - 콘텐츠 개발은 주관기관인 티팟 섭외로 참여

□ 시민문화공간 및 시시콜콜 심사위원 구성

시민문화공간			시시콜콜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2015년	2016년
김OO (내용연구소 대표)	이OO (바람부는 연구소장)	이OO (바람부는 연구소장)	송OO (활동가)	송OO (활동가)	송OO (활동가)
이OO (바람부는 연구소장)	이OO (경기대 교수)	이OO ((사)마을 상임이사)	이OO (바람부는 연구소장)	이OO (바람부는 연구소장)	이OO (바람부는 연구소장)
이OO (지역활성화센터 팀장)	임정희 (연세대 교수)	최OO (문화연대 사무국장)	이OO ((사)마을 상임이사)	이OO (경기대 교수)	이OO (경기대 교수)
이OO (경기대 교수)			장OO (카이스트 교수)	임정희 (연세대 교수)	장OO (카이스트 교수)
임정희 (연세대 교수)			정OO (there 기획처장)	장OO (카이스트 교수)	장OO (카이스트 교수)

위 문서를 정리하면,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하였는데 사회적 기업 지원은 2011년부터, 시민문화공간 지원은 2012년부터 추진되었다. 사회적 기업 지원과

시민문화공간 지원은 최대 3년간 연속지원 사업으로 계획되었는데 2014년 지원주체와 방식의 변화를 주어 2014.5월부터 시시콜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업 지원과 시민문화공간 지원은 2014.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것이다.

위 문서를 보면 신청인 임정희는 2011년 시민문화공간 관련 연구의 연구진으로 참여하였고, 2012년 지원사업 관련 자문, 심사, 컨설턴트에 참여했고, 2013년 지원사업 관련 심사, 컨설턴트, 아카데미 기획에 참여했고, 2014년 지원사업 관련 콘텐츠 개발(사례집 제작) 참여했다. 또 2012~2013년 시민문화공간 심사위원에 참여했고, 2015년 시시콜콜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2014년 시민문화공간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참고인 최OO(당시 문화연대 사무국장)은 2014년 신청인이 시민문화공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블랙리스트와는 상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심사위원 선정에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었다면 문화연대 사무국장이던 본인도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고, 심사위원으로 같이 참여했던 이OO, 이OO도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¹⁵⁾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2015년부터 배제되었다는 주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민문화공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가 2014년에 시민문화공간 심사위원에서 제외된 사실은 확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신청인과 문화연대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청와대, 문체부는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감시 사찰 차별 배제하기 위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정부 지원사업 등에서 실제로 배제하여왔다.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은 문체부 등에서 차별

15) 참고인 최OO 조사보고(2018. 3. 30.)

배제를 위해 관리하여 온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 신청인과 문화연대는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감시 사찰 차별 배제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블랙리스트로 인한 문화연대 활동의 직·간접적인 제약과 탄압

신청인은 용산참사, 희망버스, 한미 FTA 반대 투쟁을 한 문화연대 활동가들이 벌금형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문화연대 사무처장 최OO은 문화연대 활동가 중 2명이 집시법 위반으로 2017년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 이 2명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참고인 최OO의 주장을 볼 때, 문화연대 활동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문화연대 활동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경위가 블랙리스트 등재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블랙리스트로 인한 시민들의 문화기본권 축소

신청인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시민들의 문화기본권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들의 직접적 배제와 피해를 넘어 시민들에게 권력·체제에 순응 하도록 하고 내면까지 강제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신청인의 활동 피해 여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2015년부터 배제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민문화공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가 2014년에 시민문화공간 심사위원에서 제외된 사실은 확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3.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가. 조사권한의 한계

위원회는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조직이 아니라 문체부 훈령(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2017. 7. 31.)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 타 부처나 기타 공적기관, 개인에 대한 강제조사권한이 없어 대상기관 및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교육진흥원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조사활동 기간의 부족

위원회는 최초 6개월 및 3개월의 기한 연장 등 총 9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은 2017. 12. 8. 조사 개시되어 자료 및 진술인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로 대상자 및 대상기관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어 실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간 부족을 초래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08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집회·시위 불참 조건부 지원 요구 사건



108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집회·시위 불참 조건부 지원 요구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25(문15 병합)[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집회·시위 불참 조건부 지원 요구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재)한국작가회의와 (재)민예총대구지회는 2010. 1월경 예술위에서 실시하는 2010년 문예진흥기금 집행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선정되었으나,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었으나 적극 가담하지 않았음’과 ‘향후 불법 폭력 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신청인은 이러한 조치는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화적 행정’이라며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당시 예술위에서 ‘확인서’를 요청하였던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해 규명하여 줄 것을 주요 취지로 위원회에 조사 신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예술위는 ‘확인서’를 요구하게 된 것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따른 조치라 했다. 이는 국회에서 보조금 지원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2008년 당시 전국적인 미국산소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 등에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려 했으나 무산되자, 2009년도 예산을 의결하면서 56건의 부대의견을 통해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보조금 지원 제한 사유로 불법시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데서 근거한 것이다.

이후 박근혜 정권에까지 이 지침은 유지되다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8년도 집행 지침에서 문제 조항은 삭제되었다.

첨부 :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집회·시위 불참 조건부 지원 요구 사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사건번호] 병합 2017문15·2017특25

[사 건 명]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집회·시위 불참 조건부 지원 요구 사건

[신 청 인] (사)한국작가회의·(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대구지회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가. (사)한국작가회의의 신청 취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 한다)는 2010. 1. 20. 공문을 통해 2010년 문예진흥기금 집행과 관련하여 신청인 (사)한국작가회의(이하 ‘한국작가회의’라 한다)에게 “본 단체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었으나 실제 불법 시위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불법 폭력 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은 물론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요지가 담긴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한국작가회의는 내부 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예술위의 행위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화적 행정’이라고 입장을 정리하고,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와 언론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제의 ‘확인서’ 제출 요구 경위 등에 대해 밝히고, 예술위 위원장의 사과와 문제의 ‘확인서’ 제출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그간 발행해오던 『내일을 여는 작가』의 발행을 중단하는 한편 예술위로부터의 보조금 지원을 거부하며, ‘저항의 글쓰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부터 작가회의는 2017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였으며, 그간 대표적인 문인단체로서 활동해 왔음에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대한 차질을 빚었고, 한국 문학의 확장성과 다양성, 민주적 가치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문제의 ‘확인서’ 요청 경위와 지시자와 실행자, 지시 배경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 관계와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조사 신청하였다.¹⁾

나.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대구지회의 신청 취지

2010. 1. (일자미상)경 예술위 직원 000이 신청인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대구지회(이하 ‘민예총대구지회’라 한다) 사무처장 한00에게 전화를 하여 ‘메일로 보내 준 확인서를 작성하실 것이냐’고 물어보기에 한00이 ‘그러한 메일을 받은 바 없는데 다시 보내달라’고 하여, 같은 달 28일경에 이메일로 위 확인서를 받았다.

확인서에는 앞서 한국작가회의에 요구한 내용과 동일하게 “2008년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었으나 실제 불법 시위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불법폭력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문예진흥기금지원금관리규정」 및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은 물론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에 서명해서 회신해 줄 것이 명기되어 있었다.

이에 민예총대구지회는 위 ‘확인서’를 작성해서 회신해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후부터 예술위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례가 없다며 예술위에서 위 확인서를 요구하게 된 경위와 이후 민예총대구지회의 지원배제 및 불이익을 당한 내용, 나아가 대구문화재단에 대한 지원 배제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규명하여 줄 것을 조사 신청하였다.²⁾

1) 2017. 11. 15. 조사신청.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두 개의 신청사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예술위 등의 공공기관이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 집회·시위 불참이라는 조건을 전제한 ‘확인서’를 요구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경위와 그에 따른 피해 내용 및 관련자에 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7. 12. 15. 「제19차 전원위원회」와 2017. 12. 22.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²⁾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각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2010년 당시 예술위에서 확인서를 요구하게 된 이유와 실행 경위, 이를 거부한 신청인이 입은 피해 내용 등에 대해 규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자료조사

가. 신청인 제출자료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한국작가회의 기자회견 현장 사진 4매	한국작가회의	2010. 2. 8.
2	보도자료 - 예술위 문예진흥기금 ‘확인서’에 대한 작가회의의 입장	한국작가회의	2010. 2. 6.
3	‘저항의 글쓰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0.

2) 2017. 11. 27. 조사신청.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4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절차 안내(공문 사본)	예술위	2010. 1. 19.
5	기자회견 참석 기자 명단	한국작가회의	2010.
6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 확인서 제출일자 연장 알림(공문 사본)	예술위	2010. 1. 25.
7	김OO 작가 메시지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반문화적 행태에 대한 한국작가회의의 입장	한국작가회의	2010. 2. 8.
9	확인서(사본)	예술위	2010.
10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 확인서 제출>에 대한 답변	한국작가회의	2010. 2. 8.
11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안내	예술위	2010. 1. 19.
12	계간 『내일을 여는 작가』발행 중단에 대한 사과의 글	한국작가회의	2010. 2. 24.
13	계간 『내일을 여는 작가』편집위원회 비상회의 결과	한국작가회의	2010. 2. 24.
14	‘저항의 글쓰기’ 서명자 명단	한국작가회의	2010.
15	‘저항의 글쓰기 실천위원회’ 회의록	한국작가회의	2010.
16	계간 『내일을 여는 작가』편집위원회 결의문	한국작가회의	2010. 2. 25.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집회불참 확인서 요구 사태 경과보고	한국작가회의	2010.
18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	한국작가회의	2010.
19	유인촌 장관 “작가회의에 확인서 요구는 무리”	한국작가회의 블로그	2010. 2. 12.
20	문화예술위 황OO 예술진흥실장, 작가회의 방문	한국작가회의 블로그	2010. 2. 12.
21	문화예술위, 확인서 요청 철회 공문 보내	한국작가회의 블로그	2010. 3. 8.
22	예술위의 확인서 철회 공문 내용 사본	한국작가회의 (전OO)	
23	예술위, 확인서 제출일자 연장알림 공문 사본	한국작가회의 (전OO)	

나. 위원회 수집 자료

(1) 예술위 자료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 안내	예술위	2010. 1. 19.
2	확인서	예술위	2010. 1. 19.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3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 확인서 제출일자 연장알림	예술위	2010. 1. 25.
4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 관련 알림(철회)	예술위	2010. 3. 8.
5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 관련 알림(철회)	예술위	2010. 3. 12.
6	불법 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 요청(경찰청)	예술위	2009. 11. 9.
7	회의록(예술위, 2009. 12. 28.)	예술위	2009. 12. 28.
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 제출(추가)	예술위	2018. 1. 23.
9	제85차 위원회 회의(위원회 전체회의 자료)	예술위	2009. 12. 28.
1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 제출	예술위	2018. 4. 2.
11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절차 알림	예술위	2010. 1. 19.
12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예술위	2005. 9. 2.
13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예술위	2010. 1. 1.
14	(사)한국작가회의의 지원금 수령여부 확인	예술위	2018. 4. 2.
15	민예총 대구지회 지원금 수령여부 확인	예술위	2018. 4. 2.
16	2010~2017 민예총대구지회의 공모신청건에 대한 심의 결과 및 근거	예술위	2018. 4. 2.
17	2010년도 분야별 채점표	예술위	2010.
18	2011년도 분야별 채점표	예술위	2011.
19	2014년도 분야별 채점표	예술위	2014.

(2) 경찰청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07. 1. 1.~'07. 12. 31.)	경찰청	2009. 12. 3.
2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08. 1. 1.~'08. 12. 31.)	경찰청	2009. 12. 3.
3	한국진보연대 가입단체 현황	경찰청	2009. 12. 3.
4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 현황	경찰청	2009. 12. 3.
5	조영택 의원이 2009. 2.경 경찰청에 자료제출 요청 내역 및 회신 내용	조영택 의원	2009. 2.
6	'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 통보	경찰청	2009. 2. 2.
7	경찰, 천정배 의원실까지 “불법폭력단체” 낙인	노컷뉴스	2009. 5. 12.

(3) 기획재정부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2008년도~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민간단체보조사업」 해당 지침	기재부	(해당연도)
2	2017,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민간단체보조사업)	기재부	(해당연도)
3	[보도자료]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통보	기재부	2017. 12. 28.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재부	2018. 4. 4.
5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제2016-132호)	기재부	2016. 7. 28.
6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제2017-78호)	기재부	2017. 5. 22.
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 공고(제2017-185호)	기재부	2017. 12. 29.
8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 통보	데일리연합뉴스	2017. 12. 29.

(4) 국회 자료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지호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8. 7. 24.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신지호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9. 2.
3	제281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중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최연호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대한 검토보고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9. 2. 20.
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8. 8. 27.
5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지호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8. 9. 30.
6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8. 11.
7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8. 12.
8	제278회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회의록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8. 12. 2.
9	제279회국회, 본회의 회의록 -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8. 12. 13.
10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8. 12.
11	방통위, 경찰의 '불법폭력단체리스트'에 속한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대상에서 모두 색출	최문순 의원	2009. 5.

(5) 법원 판결문 및 관련 기사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서울행정법원 판결서(2009구합36170)	서울행정 법원	2009. 12. 10.
2	'촛불집회 참여 이유 보조금 취소는 부당' 법원 '여성의 전화' 승소 판결	세계일보	2009. 12. 11.
3	서울행정법원 판결서(2009구합22973) (원고 :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행정 법원	2010. 1. 19.
4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10누3253)	서울고등 법원	2010. 7. 21.
5	-대법원 판결(2010두17113)	대법원	2010. 11. 12.
6	-'불법폭력단체' 지목된 시민단체들 행정소송	경향신문	2009. 6. 17.
7	-法 "여성노동자회에 보조금 중단 부당"	중앙일보	2010. 7. 21.
8	-대법 "촛불집회 참가 시민단체 보조금 중단 위법"	한겨레신문	2010. 11. 26.
9	서울행정법원 판결서(2009구합35962) (원고 : 경기여성연대)	서울행정 법원	2010. 4. 23.
10	'촛불단체 옥죄기' 법원서 또 제동	한겨레신문	2010. 4. 26.
11	법원 "촛불집회 참가단체에 보조금 중단은 위법"	뉴스앤뉴스	2010. 4. 26.
12	"촛불집회 불참 확인서 안낸 시민단체 보조금 취소는 위법"	한국일보	2010. 4. 26.

(6)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자료 및 언론기사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시청자단체의 불법적인 집회·시위 참여여부 조회(수신자 : 경찰청장) 공문 사본	방송통신 위원회	2008. 8. 28.
2	2009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방송통신 위원회	
3	방통위, 시민단체 '집회·시위 참여' 여부 조회 물의	경향신문	2008. 9. 18.
4	방통위, 지원금 주기 전에 시민단체 '검열'	미디어스	2008. 9. 18.
5	방통위 '시민사회단체 옥죄기'에도 '행동대장'?	프레시안	2008. 9. 18.

(7) 문화재청 관련 자료 및 언론기사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2007년 ~ 2017년 문화유산방문교육 주관단체 모집 공고	문화재청	(해당연도)
2	문화재청, 교육사업 자격에 '불법시위 불참' 요구	한겨레신문	2010. 2. 16.

(8)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타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결정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6.
2	불법시위단체 지원배제 사례를 통해 본 블랙리스트 문제	김선휴	2017. 3. 8.

(9) 언론기사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작가회의 “굴욕적인 확인서 요구 거부”	연합뉴스	2010. 2. 8.
2	유인촌, “작가회의에 확인서 요구는 잘못”	노컷뉴스	2010. 2. 18.
3	유인촌, “작가회의에 확인서 요구는 무리”	YTN 뉴스	2010. 2. 12.
4	유인촌 문화부 장관 “작가회의 집회불참 확인서 요구 잘못”	경향신문	2010. 2. 13.
5	“유인촌 장관 시절 시위불참 각서 총용”	매일경제	2017. 9. 26.

2. 참고인 등 진술조사

연번	진술인	사건관계	방식	일자
1	박OO	당시 예술위 지원컨설팅부장	진술조서	2018. 1. 15.
2	정OO	당시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면담, 자술서	2018. 2. 25.
3	장OO	당시 문체부 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전화통화	2018. 2. 8.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직무

예술위는 2005. 8. 26. 설립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³⁾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와 제20조에 근거하고 있고, 문체부 주요 산하 기관 중 하나로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 등을 주요 직무로 하고 있다.

당시 예술위 지원컨설팅부가 예술위의 주요 업무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원 계획을 심의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매년 9월 경에 다음 해의 사업에 대한 사업 공고를 내고, 10월에는 신청 접수를 받고, 11월부터 12월 약 두 달 동안 각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하순 경에 최고 의사결정단위인 전체 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을 하는데, 이에 따른 모든 실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지원컨설팅부였다.⁴⁾

나. 확인서의 내용

신청인 한국작가회의는 위원회 조사신청 과정에서 2010. 1. 20. 예술위로부터 요구받은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예술위로부터 2010년 당시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에 요구한 공문과 확인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확인서에는 “2008년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었으나 실제 불법 시위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불법폭력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문예진흥기금지원금관리규정」 및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은 물론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1972. 8. 14.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처음 제정되었다.


4) 참고인 박OO 진술조서, 3쪽.

2. 확인서 요구 및 철회 경위


가. 확인서 요구 단체 및 일자

[그림-1] 예술위가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에 발송한 공문 사본

한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예술현장의 동반자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




수신자 수신자창조
(경유)

제목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 안내

1. 귀 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특별 지원조건을 안내하오니 절차에 따라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의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불법폭력시위를 주화·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한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 유감스럽게도 우리 위원회는 귀 단체가 2008년도 불법폭력시위단체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어 있음을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바 있습니다.
4. 우리 위원회는 귀 단체가 불법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의 여부를 귀 단체로부터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확인서(붙임양식)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0년 1월 31일까지(소인 유효)
 - 제출방법 : 우편 발송 또는 내방제출
 - 제출처 : 서울시 중로구 동송동 1-1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컨설팅부

붙임 확인서(양식) 1부, 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인봉

수신자 (사)한국작가회의, (사)민예총대구지회

작성 000 지원컨설팅부장 전결 01/19
박 00

협조자

시행 지원컨설팅부-256 (2010.01.19.) 접수
우 110-766 서울 중로구 동송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전화 02- 전송 02- / @arko.or.kr / 비공개(6)

[그림-2] 예술위의 공문에 첨부된 확인서(양식) 사본

확인서

본 단체는 2008년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었으나 실제 불법 시위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불법폭력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문예진흥기금지원금관리규정」 및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은 물론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단체명 : _____ (직인)

2010 년 월 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계	경수일자	경수번호	공	담당부서	담당자	부장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수	2010.		합						

예술위는 위 [그림-1]과 같이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 조건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에 각 발송하였다. 한국작가회의는 2010. 1. 22. 내부 논의를 위해 '2. 6. 한국작가회의 이사회 이후로 답변 기한을 늦춰 줄 것'을 예술위에 요구하였고, 이에 예술위는 1. 25.자 공문으로 '2010. 2. 10.까지' 확인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다고 알렸다.

한국작가회의는 2. 6. 이사회 논의를 통해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2. 8.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반문화적 행태에 대한 한국작가회의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우리 한국작가회의는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한 적이 없다. 불법 폭력 시위를 한 적이 없는 단체에 불법 폭력 시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라고 요구하거나, 미래의 시점에 불법 폭력 시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미 지급한 문예진흥기금 보조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화적 행적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1,800여개의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불법 과격 폭력 단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며 정권 위주의 편파적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예술위의 이러한 행태는 자신의 설립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중략…) 예술위는 한국작가회의의 회원들을 잠재적 피의자로 간주하는 반인권적 행정폭력을 자행하고 있으며,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와 언론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작가회의는 위 입장문을 통해 ▲예술위가 확인서를 요구하게 된 경위 ▲예술위 위원장의 사과 ▲확인서 제출 요구 취소 등의 요구사항과 함께 ‘예술위가 몇 푼의 보조금을 미끼로 문예단체와 활동가들을 길들이려는 물신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당초의 설립 목적에 맞는 순수한 지원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2010. 2. 8. 예술위에 공문으로 답신했다.⁵⁾

예술위는 위 2010. 1. 19.자 공문을 민예총대구지회에도 보내 같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수신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1. 28.에 이메일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일이 촉박하면 기한을 연장’ 해주겠다는 안내와 함께 다시 보냈다. 이에 민예총대구지회는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중간지원기관의 월권 행위’라 생각하여 한국작가회의와 마찬가지로 확인서를 작성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나. 확인서 요구 철회 경위

예술위는 2010. 3. 8. 한국작가회의에, 같은 해. 3. 12.에는 민예총대구지회에 ‘확인서의 요청을 철회’함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⁶⁾ 공문을 통해 예술위는 확인서를 요청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부의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에 근거한 행정적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하며, 이 지침이 ‘법규명령의 일종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예술위도 이 지침에 따라 문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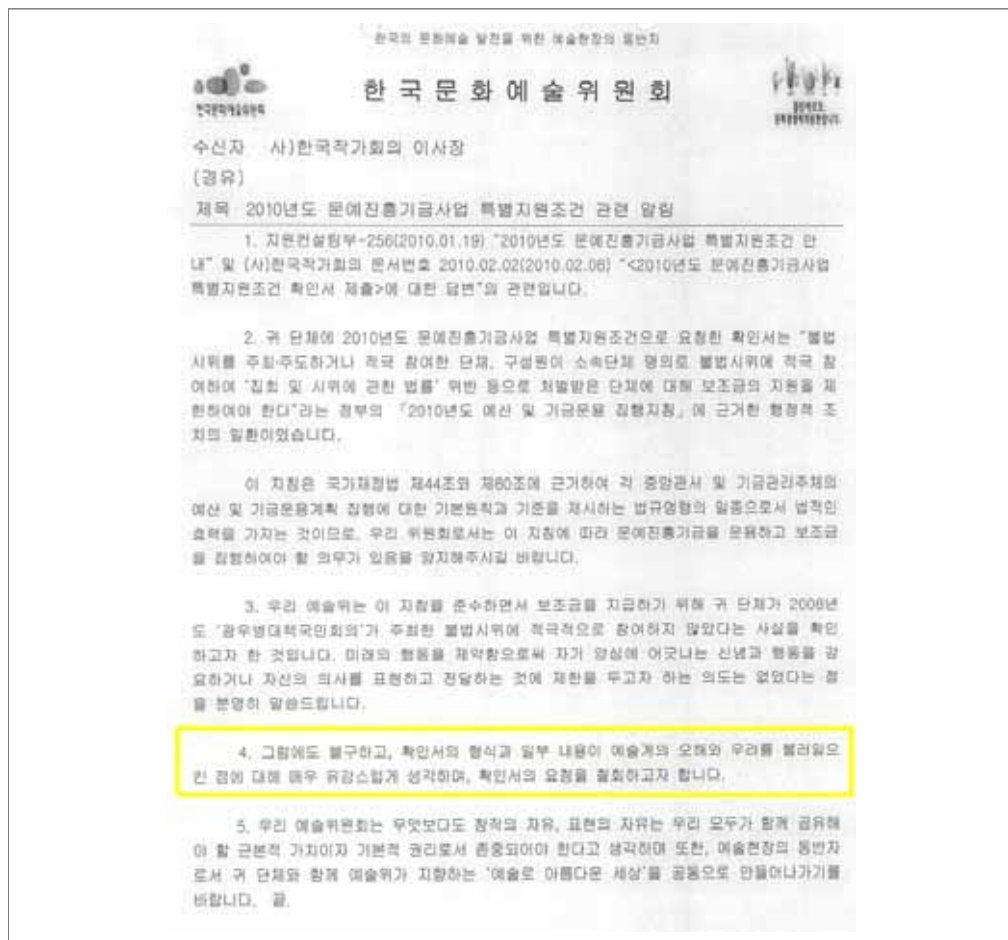
5) 한국작가회의,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 확인서 제출〉에 대한 답변」(2010. 2. 8. 시행)

6) 예술위 공문, 문서번호 지원심의실-5, 지원심의실-26

의무가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더불어 ‘확인서의 형식과 일부 내용이 예술계의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확인서의 요청을 철회’한다고 두 단체에 알렸다.

확인서 요구 철회에 앞서 2. 12.에 예술위 황OO 예술진흥실장이 한국작가회의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시작, 기획재정부를 거쳐 시달된 지침’임을 설명하고,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지원금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과 확인서 내용의 문제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 설명과 그 부분의 내용을 완화된 내용으로 다시 쓰면 어떻겠는가’고 제안했다.⁷⁾

[그림-3] 예술위가 2010. 3. 8. ‘확인서’ 제출 요구를 철회함을 통지한 공문 일부 사본.



7) 한국작가회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집회불참 확인서 요구 사태 경과보고」

같은 날 YTN뉴스에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위원회의 행정적인 입장은 있겠지만 장관인 자신도 예술가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며, “방법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하고, “행정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면 섬세하게 접근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되었다.⁸⁾

같은 날, 유인촌 장관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불법시위를 하거나 반정부적 행위를 할 경우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정부방침은 맞지만, 꼭 그렇게(확인서를 쓰라고) 할 필요는 없었다”며 “나에게 하라고 해도 신경질이 났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⁹⁾

2. 17.에는 예술위 윤OO 사무처장과 황OO 예술진흥실장, 박OO 지원컨설팅부장 등이 한국작가회의 사무실을 방문, 당시 도종환 사무총장, 이OO 부이사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한국작가회의는 당시 대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했다.¹⁰⁾

윤OO : 도와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되었다.

도종환 : 작가들이 이 사태로 느끼는 모멸감 배신감이 크다.

황OO : 모멸감, 배신감을 느꼈다면 미안하다. 사려깊지 못했다. 문장을 완화된 확인서 요청도 없던 걸로 하겠다. 꼭 문건으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이OO :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

윤OO : 꼭 공식적으로 해야 되겠냐. 공식화해도 좋고 비공식화 해도 좋다. 작가회의를 예술위 파트너로 삼아 일하겠다. 사려 깊지 못하고 세심하지 못했던 것은 사과한다.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제언해 달라.

박OO : 국회, 기획재정부(예산·기금의 주체), 문화부를 거쳐 옴. 행안부에 물어보고 경찰청에 공식 확인한 것이다.

도종환 : 지침 자체도 철회되는 것이냐?

박OO : 지침은 살아있다.

도OO :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박OO : 그렇다. 국회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8) 「유인촌, “작가회의에 확인서 요구는 무리”」, YTN뉴스, 2010. 2. 12.

9) 「유인촌 문화부 장관 “작가회의 집회불참 확인서 요구 잘못”」, 경향신문, 2010. 2. 13.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집회불참 확인서 요구 사태 경과보고」, 한국작가회의

이어 유인촌 장관은 2. 18. 기자 간담회에서 “사실 예술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입장이라도 기분 나쁜 거다. 말로 해도 되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도 마치 종이에다 결재하듯이 사인해서 하라는 것은 잘못되었다. 물론 불법에 대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하되, 방법론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도되었다.¹¹⁾

결국 유인촌 장관까지 나서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확인서’ 요구와 관련하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으나, 사태의 발단이 된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명기된 해당 지침이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조치는 없었고, 2. 17. 예술위 박OO 부장 또한 한국작가회의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지침은 살아있다’고 대답한 사실을 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예술위가 확인서 요구를 철회한 상태로 상황은 일단락 되었다.

3.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 중 보조금지원 제한 규정 신설 경위

가. 국회에서 ‘보조금지원 제한’을 입법화하기 위한 경과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촛불집회 이후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 주최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게 국민세금으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보조금 제도의 취지나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워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자 했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국회에서 먼저 나타났다.

2008. 7. 24.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신지호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였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단체나 구성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 신지호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1) 노컷뉴스, 「유인촌, “작가회의에 확인서 요구는 잘못”」(2010. 2. 18.)

“사실 정권 교체가 됐지만 우리 사회의 세력 교체는 요원하다. 지난 10년간 물적 기반을 쌓은 좌파세력의 진지는 곳곳에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여권이 이런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한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예산에도 좌파 세력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대를 꽂고 있다. 김대중 정부 전만 하더라도 시스템 밖에 머물며 배고픔에 익숙해 있던 좌파세력이 지난 10년간 ‘배부른 좌파’가 돼 버린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좌파세력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이제 저들은 라면과 강소주를 먹으며 일을 못한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빨대를 뽑으라고 하면 정치보복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빨대를 뽑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¹²⁾

약 한 달 뒤인 2008. 8. 27. 같은 당의 한선교 의원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회계연도에 한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음 회계연도에 한해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제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소위원회’에서 ‘보조금법에 따른 사업수행의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집시법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 교부를 금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측면 등을 감안, 이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2009. 2. 3.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 결정되었다.

신지호, 한선교 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에는 “보조금법에 따른 사업 수행의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집시법 위반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³⁾

대신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56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기재부에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2) 위클리조선, 「“정부에 빨대 꽂고 먹고살면서 ‘정부 타도’ 주장은 이율배반”(2008. 8. 3.)」

13) 제278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08. 12. 2.)

나. 제18대국회 예결특위, 보조금지원 제한 부대의견 제출

유인촌 장관은 2010. 2. 18.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확인서 요구)는 작년에 국회 예결위가 불법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기획재정부에 보냈고, 행정절차에 따라 예술위가 작가 회의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예술위의 방법은 틀렸다”고 발언했다.¹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 한다)는 1983년부터 예산집행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요비목별 집행지침’을 시달한 이래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작성해 오고 있다.¹⁵⁾ 이는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와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36조에는 기재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회 회의록 및 의안정보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2008. 11. 19.부터 제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 회에 걸쳐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56개의 부대의견을 첨부¹⁶⁾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2008. 12. 13. 국회 본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일괄 상정, 의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56개의 부대의견 중에 ‘(4) 정부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첨부되었다.

14) 노컷뉴스, 위 기사.

15) 기재부, 보도자료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 통보(2017. 12. 28.)」

16) 제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2008. 12.)」

다. 신설 보조금지원 제한 규정의 내용

[그림-4]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 중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 내용

<p>2. 세부지침</p> <p>○ 각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p> <p>-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p> <p>-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p> <p>○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p> <p>-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p>

예술위는 2010. 3. 10.과 3. 12. 공문을 통해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에 확인서 제출 요구를 철회함을 알리면서, 확인서를 요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라는 “정부의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근거한 행정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위 집행지침의 「II. 세부사업유형별 지침」 중 「15. 민간단체보조사업」에는 [그림-4]와 같이 ‘세부지침’으로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의 경우에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¹⁷⁾

4.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를 특정하게 된 경위

가.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예술위의 업무 집행 경과 내용

당시 예술위 지원건설팀부장 박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본 사건은 2010. 1.에 문제의 ‘확인서’를 요청하면서 발생”한 건이지만, “그 전년도에 국회에서 불법시위를 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주지 말아라 하는 지침을 결정했고, 그에 따라서 2009년 하반기에 2010년 보조금 지원 단체를 결정해야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 지침에 근거해서 일을 하다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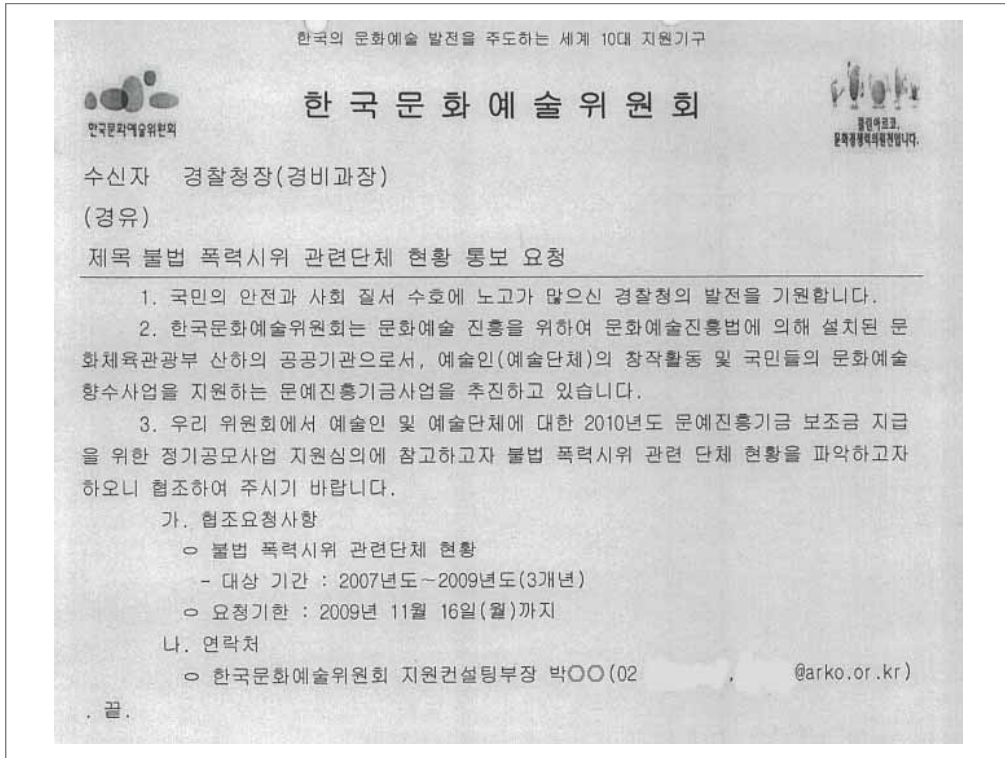
또한 박OO은 “2009년도에 언제쯤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기획재정부의 지침대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한다는 연락을 문체부로부터 받았다”며, “문체부 예술정책과와 일상적인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 기재부 지침에 ‘불법시위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라는 지침이 있으니,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제가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몇 몇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눈에 띄어서 제가 그 단체에 전화를 해 보니, 우리는 명의만 빌려준 거고 뭐 적극 참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서 그 때는 그냥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나, 2009년 하반기가 되어 2010년도 보조금 지원 업무를 준비해야 하는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었다 하더라도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 예술위의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가 정해졌는데, 그 단체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단체이긴 하지만 ‘불법시위’를 한 단체인지 아닌지, 또 그 단체 구성원이 불법시위에 참여해서 집시법 위반을 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저희 예술위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에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 받았다”고 하였다.¹⁹⁾

17)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82~83쪽.

18) 참고인 박OO 진술조서, 4쪽., 2018. 1. 15. 진술청취.

19) 위 박OO 진술조서, 5~6쪽.

[그림-5] 2009. 11. 9. 예술위에서 경찰청에 보조금지원 제한을 목적으로 경찰청에 발송한 공문 일부 사본.



위원회가 확인해본 결과, 예술위 지원컨설팅부에서는 2009. 11. 9. 경찰청에 「불법 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 요청」 제목의 공문으로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개년의 '불법 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에 대해 2009. 11. 16.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²⁰⁾ 경찰청은 이에 대해 같은 해. 12. 3. 공문으로 회신했다.²¹⁾


20) 예술위, 「불법 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 요청(문서번호 : 지원컨설팅부-1522. 2009. 11. 9. 시행)」

21) 경찰청, 「'07~'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문서번호 : 경비과-11621, 2009. 12. 3. 시행)」

나. 경찰청,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

[그림-6] 경찰청이 예술위에 통지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현황」 일부 사본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경찰청

수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경유)
제목 '07~'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

1. 관련근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컨설팅부-1522('09.11.9),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정부보조금 지원업무에 참고바랍니다.(대상기간 : '07.1.1~'08.12.31).

1) 불법폭력시위로 구속자가 있는 불법폭력시위의 주최단체 : 불임 #1 참조

2) 구속자의 소속단체 : 불임 #1 참조
※ 사법처리된 시위자의 소속단체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임

3) 위와 관련된 참여단체
- 한국진보연대 가입단체(불임 #2 참조)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참여단체(불임 #3 참조)

불임 : 1. 2007-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자료 1부
2. 참고 1) 한국진보연대 가입단체 현황 1부
3. 참고 2)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참여단체 현황 1부
※ 단체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외보안에 유의. 끝.

경찰청은 위 회신 공문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참여단체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2008. 7. 22. 기준 1,842여개 단체 명단을 첨부해서 제출했다. 참고인 박OO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단체 리스트와 예술위에서 보조금 지원 결정한 단체를 비교해 보니까 딱 2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한국작가회의와 대구민예총(민예총대구지회), 두 군데여서 어떻게 할까 문체부와 내부 협의를 하다가, 그 확인서에 명기한 대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기는 했지만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 사안을 2009. 12. 말경. 예술위

전체위원회 회의에 ‘2010년도 정기공모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이라는 제목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한국작가회의와 대구민예총 등 2개 단체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회의에서 결정이 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즉, 경찰청으로부터 회신 공문을 받기 전에 예술위의 2010년도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로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및 예산 국회 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정OO은 “실무자 입장에서, 시위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라며 “이 과정은 보조금 집행 실무 단위의 논의였으며, 본인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과 본 사안을 두고 협의한 적 없음”이라고 진술서를 제출했다.²²⁾

또한 그는 진술서에서 “〈예산집행지침〉을 지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 정당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기재부가 마련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절차를 준수한 것이지만, 예산 지원을 빌미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가치라는 ‘실질적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라 언급하면서, “예술인 입장에서, 확인서 징구 사건은 지원을 빌미로 사상과 행동을 제한하려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바,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서 행정편의주의와 보신주의로 실질적 정의를 외면한 행위에 대해 자성하며, 예술가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²³⁾

5. 신청인들의 피해 내용

예술위는 2009. 12. 28. ‘제85차 위원회회의’에서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는 ‘지원대상 우선순위’ 단체에 올라 있었고, 지원 배정액은 한국작가회의에 총 3천4백만원, 민예총대구지회에 1천5백만원이 배정되어 있었다. 한국작가회의는 ‘제17회 세계작가와의대화’와 계간 기관지 『내일을 여는 작가』발간, 정기 문학세미나 ‘4·19혁명 50주년에 돌아보는 한국문학’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고, 민예총대구지회는

22) 참고인 정OO 진술서, 2018. 2. 25. 제출

23) 정OO, 위 진술서.

‘2010 열린예술놀이터 <오만가지 예술상상, 예술가 텐트촌>’의 사업에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다.

아래 [그림-7]의 내용과 참고인 박OO의 진술 내용과 같이 당시 지원컨설팅부에서는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는 취지에서 ‘확인서’를 받는 전제조건으로 지원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²⁴⁾

[그림-7] 2009. 12. 28. 예술위 제85차 위원회 회의 안건자료 일부 사본

㉔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조치

○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2009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 금회 지원심의대상 중 검토대상 단체

- 2008년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중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포함
-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참여단체 중 금회 지원대상 우선순위 단체에 ‘한국작가회의’, ‘민예총대구지회’가 있음

단체명	지원사업유형	사업명	배정액(안)
(사)한국작가회의	예술의국제협력증진	제17회 세계작가와의 대화	10,000,000원
	창작예개활동지원(우수 문예지 발간지원)	계간 『내일을 여는 작가』 기관지 발간	20,000,000원
	창작예개활동지원(문화 예술공간활발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제1회 한국작가회의 정기 문학세미나 : 4.19혁명 50주년에 돌아보는 한국문학	4,000,000원
(사)민예총대구지회	실형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지원(프로젝트)	2010열린예술놀이터 ‘오만가지 예술상상, 예술가텐트촌’	15,000,000원

- 위 단체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단체나 주최·주도하거나 소속 단체의 회원이 사법처리 되지 않음(경찰청 경비과-11621 공문 참조)

○ 조치사항

- 52 -

- 위 단체로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며, 향후 불법폭력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은 물론 관련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한 확인서를 받고 지원

- 지원대상단체의 지원금 교부조건에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및 관련 법규정 준수 조건을 명시하여 지원금 교부

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85차 위원회 회의자료(2009. 12. 28.)』, 52~53쪽.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작가회의는 확인서 작성 제출과 지원 결정된 보조금 3천4백만원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술위에 지원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민예총대구지회는 2010년도 지원 결정된 보조금 1천5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²⁵⁾

민예총대구지회는 이후 2011년도에 「2010 팔자넷 예술난장(팔도자립예술가네트워크 예술난장)」과 2014년도에 「2014 대구자립예술가축제 - 예술가들의 집단지성과 별난감성으로 만드는 '소셜아트캠핑페스타」라는 제목의 사업으로 각 응모했으나 심의 결과 미선정되었다. 예술위에서는 당시 채점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²⁶⁾

6. 다른 정부기관의 유사한 사례

참고인 정OO은 위원회 조사에서 “기재부 지침 운용상의 어려움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 동일”했다며, “동 사안의 명확한 성격 규명을 위해서는 기재부, 행자부, 노동부 등의 전부처의 지침 운영 과정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나 위원회에 주어진 조사활동 기한 및 권한의 제약 등의 이유로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어도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타 정부 부처와 그 산하 기관에서 실시한 유사 사례를 정리해보았다.

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당시 위원장 : 최시중, 이하 ‘방통위’라 한다)가 2008. 8. 28. 경찰청에 「시청자단체의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여부 조회」 제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을 빚은 사실이 있었다.²⁷⁾

당시 국회의원 최문순이 2008. 9. 18. 위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최 의원은 공개 당시 “장차 정부에 반대하는 시청자 단체를 사업비 지원을 매개로 길들이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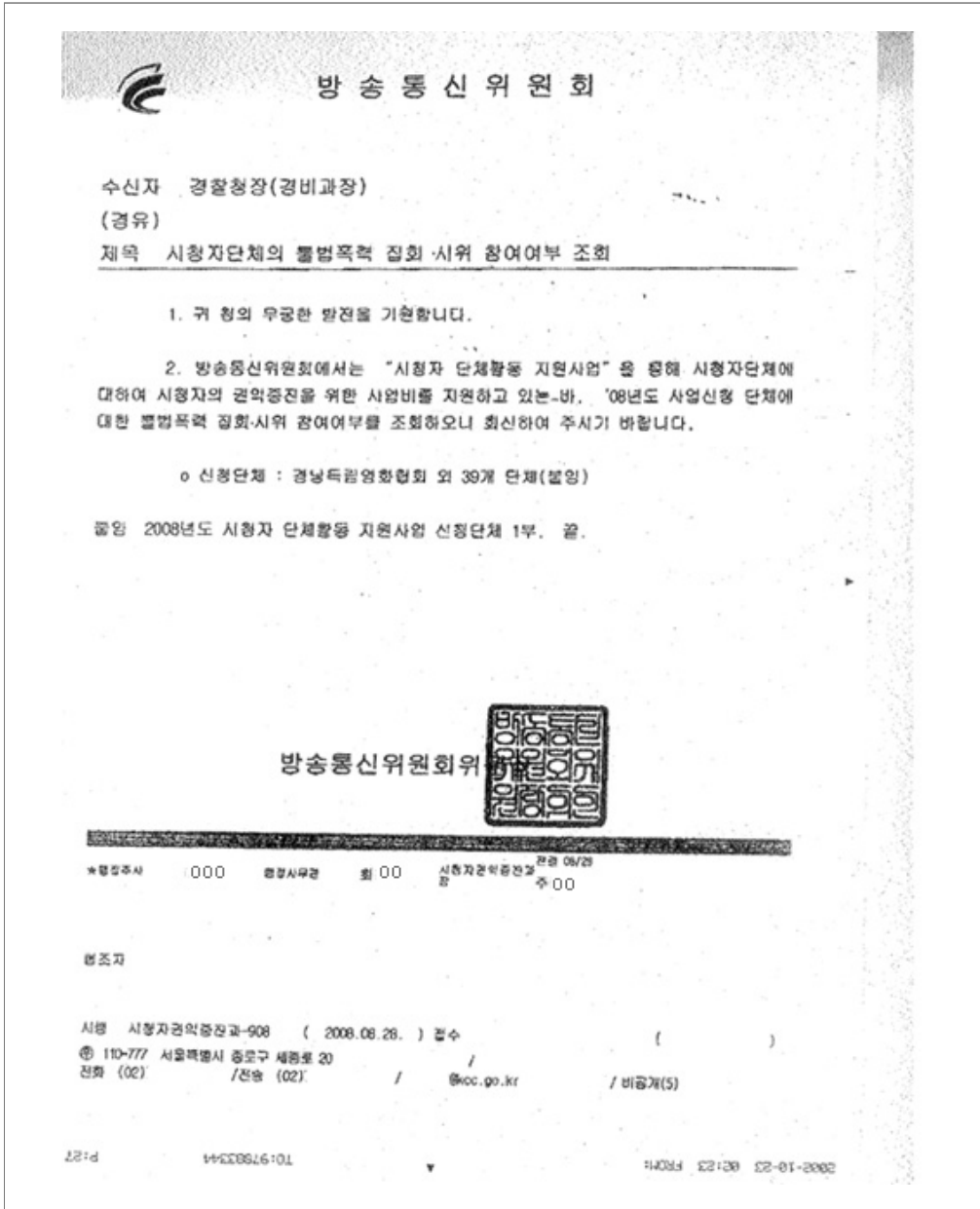
방통위는 공문으로 경찰청에 ‘2008년도 시청자 단체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남독립영화협회’ 외 39개단체를 첨부하여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여부’ 조회 요청했다.

25) 예술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 제출(기획조정부-003747, 2018. 4. 3.)」

26) 예술위, 위 문서, 2018. 4. 3.

27) 경향신문, 「방통위, 시민단체 ‘집회·시위 참여’ 여부 조회 물의(2008. 9. 18.)」, 방통위 공문은 언론사 프레스안과 미디어스 등에 보도되었다.

[그림-8] 2008. 8. 28. 방통위가 경찰청에 보낸 공문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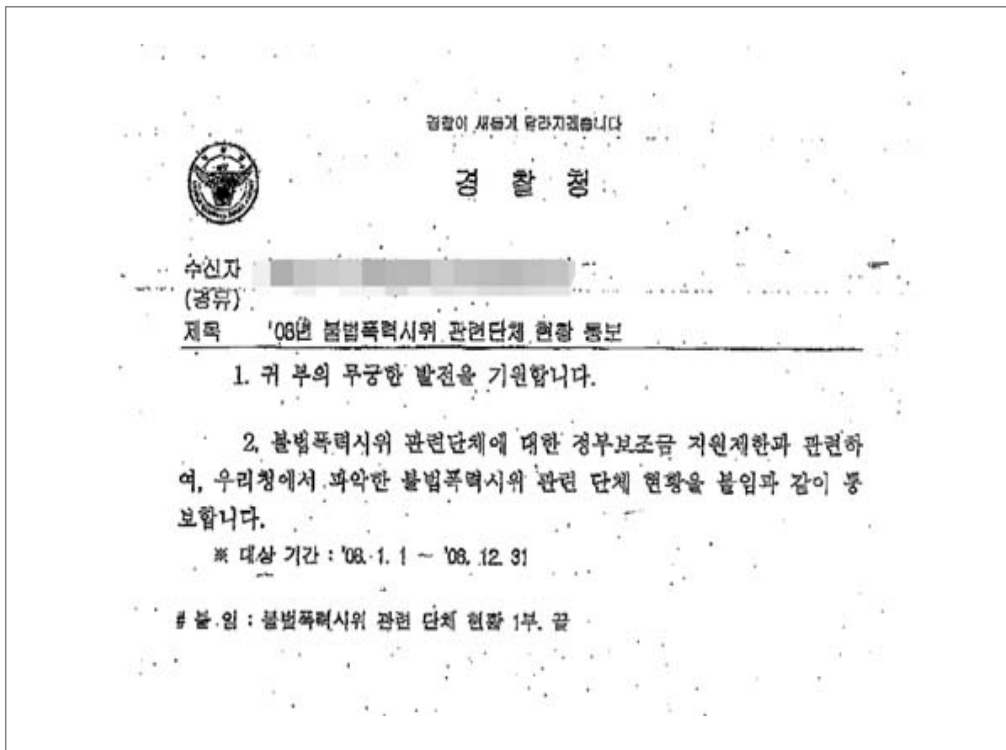
같은 해 9. 12. 최종 선정 결과 40개 신청 단체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 인복지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징검다리 지역아동센터'가 제외된 37개 단체가 선정됐다. 사업신청 단체 대부분이 선정된 결과인데 이에 대해 당시 신청단체

중 하나인 ‘언론인권센터’의 최성주 상임이사는 “예산이 미리 책정돼 있어서 신청 단체 대부분을 선정한 것 같다”며 방통위의 경찰청 공문 의뢰 사실에 대해 “방통위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중 하나라고 본다”고 말했다.²⁸⁾

방통위가 경찰청에 지원사업 신청단체 40개에 대한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 여부를 조회한 건은 본 사건 예술위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기 약 1년여 전에 발생한 일이다. 경찰청은 다음해인 2009. 2. 에 정부 각 부처에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나. 경찰청, 정부 부처에 '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

[그림-9] 경찰청의 '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 공문 일부 사본



2009. 5. 12. 국회의원 조영택(민주당)은 경찰청으로부터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 제목의 자료를 제출받았다.²⁹⁾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08년 ‘광우병

28) 미디어스, 「방통위, 지원금 주기 전에 시민단체 ‘검열?’(2008. 9. 18.)」

국민대책회의'에 연대했던 1천800여개 단체를 모조리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규정하였다. 공문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통보 목적은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제한과 관련'한 것이다. 이 가운데는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PD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연예인협회 등 문화예술단체와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국제영화제 진행 기관을 포함하여 심지어 천정배·문국현 등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내어 “이명박 정부가 야당과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까지 폭력 단체로 폄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³⁰⁾ 또한 당시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폭력을 행사했는지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불법 꼬리표부터 붙이는 무책임한 낙인찍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고,³¹⁾ 당시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결국 이명박 정권이 촛불 운동에 보복하고자 경찰과 행정안전부를 동원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촛불을 싫어하는 이명박 정권이 사적 감정으로 권력을 유용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³²⁾

한편, 2008. 7. <문화방송> 앞에서 과격 시위를 벌인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와 정당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특수임무수행자회(HID) 등은 이 목록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로 구속된 회원이 있는 단체들을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 단체들을 선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에 붙잡힌 고엽제전우회 회원 2명은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도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³³⁾

다. 문화재청, 방문교육 주관단체 모집에 '불법시위 불참' 요구

문화재청은 2007년부터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를 모집,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문화유산 방문교육'은 문화유산 보호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로 하

29) CBS 노컷뉴스, 「경찰, 천정배 의원실까지 “불법폭력단체” 낙인(2009. 5. 12.)」

30) 한겨레신문, 「경찰, 폭력단체 규정 '무원칙'(2009. 5. 12.)」

31) 미디어오늘, 「촛불 든 언론단체 등 1800곳도 '불법낙인'(2009. 5. 13.)」

32) 프레시안, 「사제단·문국현 의원도 폭력단체? ... '씩씩이 낙인' 논란(2009. 5. 12.)」

33) 한겨레신문, 「경찰, 폭력단체 규정 '무원칙'(2009. 5. 12.)」

여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방문교사를 위촉, 초·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³⁴⁾ 매년 1월~2월 사이에 공고하여 지역별로 1~3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2007. 1. 9. 문화재청장 명의로 처음 공고를 낸 이후 매년 실시하던 사업에서, 2010년 모집공고에 '신청자격'에 기존에는 없던 요건이 추가되었다. 내용은 '※ 불법시위를 주취·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신청불가'로 제한한 것이다. 그리고, 제출 서류에 예술위가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 대구지회에 요구한 내용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공고 단계에서부터 공개적으로 시행했다.

위원회는 문화재청의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매 년도 사업에 대한 공고문을 파악해본바, 이처럼 신청 단계에서 자격을 제한한 사항은 박근혜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그 근거로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상기 사항에 대한 위반 사례 적발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지·환수 할 수 있음'을 같이 안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라. 영화진흥위원회, 촛불집회 참석을 이유로 단체 지원 배제 의혹

[그림-10] 2009년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의원이 공개한 것으로 보도된 자료 일부 사본.
(미디어오늘, 2009. 10. 16.)

<2009 영화단체사업지원 예비심사 및 최종지원결과>

신청단체	신청사업	예비심사 경수	결정심사 지원대상여부	최종결과	최근 5년간 신청경수 (2005~2009)
(사)전북독립영화협회	2009 전북독립영화제	78	지원	탈락	2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인디포럼 2009	81	지원	탈락	4
노동자뉴스 제작단	제 13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77	지원	탈락	4
인권운동사당 (사)한국영화기 획프로듀서협회	제 13회 인권영화제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 연기대상	79 59	지원 불가	탈락 지원	4 1
비상업영화기구	제 1회 2009 찾아즈시네마 페스티벌	58	불가	지원	1
서울국제초단편 영상제	제 1회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60	불가	지원	1
(사)한국영화인 협회 안산지회	제 3회 상록수 단편영화제	64	불가	지원	1

34) 문화재청, 「2007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모집공고(공고 제2007-5호)」

영화진흥위원회(당시 위원장 : 조희문, 이하 ‘영진위’라 한다)가 실시하는 2009년 「영화단체사업지원」에서 지원 신청한 일부 단체가 2008년 ‘미쇠고기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거 배제되었다는 의혹이 2009. 10. 16.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영화단체사업지원」은 영진위가 ‘영화 관련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단체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촉진’을 목적으로 매년 1회, 통상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사업이다. 2009년에는 3월에 공고가 났고, ‘정책사업’과 ‘자유공모사업’ 두 개 부문에서 총 사업비 10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당시 김부겸 의원은 영진위를 상대로 ‘영화단체지원 사업에서 불이익 받은 단체들이 질적 저하인지, 다른 이유로 탈락했는지를 확인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영진위는 이에 대해 ‘2009년도 영화단체지원사업은 총 69개의 사업이 접수되어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으며, 9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심사를 통해 33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답하면서 ‘최종 결정심사에서는 예비심사결과, 단체의사업내용, 사업수행능력,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집행지침 이행여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감사원 감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결정’을 하였는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운영계획지침」 이행여부 및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제기된 사업은 지원을 보류’하였으며,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 후 재심의’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³⁵⁾

이와 관련하여 당시 김부겸 의원은 위 [그림-10]의 자료를 공개하며, “예비심사과정에서 평균 70점 이하 점수를 얻었고, 사전 진행경험도 전혀 없어서, 결정심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못한 신규사업인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비상업영화기구,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사)한국영화인협회 안산지회의 신청 사업은 최종지원목록에 대신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영진위 내부 인사로 구성된 ‘결정심사위원회’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판정을 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가 영진위에 ‘외압’을 행사해 촛불 집회 참여 단체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³⁶⁾

당시 국정감사에 같이 참여했던 조영택 의원은 “감사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가 5월

35) 『2009년도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부록)』 2009. 10. 16., 75쪽.

36) 미디어오늘, 「‘촛불’ 영화단체, 정부사업 ‘대거 탈락’ -인권운동사랑방 등 ‘적합’ 판정 받고도 탈락 (2009. 10. 16.)」

18일부터 시작되면서, 영진위가 ‘2009년도 영화단체지원사업’ 선정과 관련, 강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³⁷⁾

이에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디포럼’은 ‘불법시위 주도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라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이 배제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0. 1. 28. 영진위의 ‘선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영진위는 이들 단체가 선정에서 탈락한 것이 불법시위단체를 배제하는 기획재정부 지침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법원도 기획재정부 지침의 이행여부를 거부처분 사유로 삼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³⁸⁾

마. 여성의 전화, 여성부 상대로 승소

여성부는 2009. 3. ‘공동협력 사업 지원단체’로 ‘(새)여성의 전화’를 선정해 4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경찰청이 작성한 촛불집회 관련 단체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보조금을 시위에 사용하면 지원이 취소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성의 전화가 이를 거부하자 여성부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였고, 여성의 전화는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다른 단체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가입하는 바람에 명단에 포함됐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009. 12. 10. “여성의 전화가 경찰청이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단체 명단에 포함됐지만, 불법 시위를 주최하거나 여기에 참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에 관한 확인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 시위단체로 규정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을 뿐, 이와 무관하게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을 문제로 삼아 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³⁹⁾

37) 미디어오늘, 위 기사.

38)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불법시위단체 지원배제 사례를 통해 본 블랙리스트 문제 (2017. 3. 8.)」

39)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사건 : 2009구합36170), 2009. 12. 10., 6~7쪽., 세계일보, 「촛불집회 참여 이유 보조금 취소는 부당(2009.12. 11.)」

바. 여성부, '경기여성연대' 보조금 지원 결정 뒤 확인서 제출 요구

경기여성연대는 2009. 3.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라 한다) 주관 '여성정치아카데미 사업-여성정치참여를 위한 조사 및 교육사업' 협력단체로 선정돼 1천4백만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보름 뒤 경찰청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 위주로 작성한 불법시위단체 명단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경기여성연대에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고, 단체가 이를 거부하자 보조금 지급을 취소했다.

이에 경기여성연대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10. 4. 25. "이 사건 확인서 요구는 기본행위인 이 사건 선정 통지 이후에 부가한 사후부관"으로 "사후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원고도 이 사건 확인서의 제출과 같은 사후부관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제출 요구는 위법한 사후부관"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⁴⁰⁾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선정통지 이후 철회처분이 있을 때까지 새롭게 발생한 사유는 피고의 이 사건 확인서 제출요구와 원고의 불이행인데, 이와 같은 사오는 철회를 정당화할 정도의 새롭게 발생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근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경기여성연대가 대책회의에 참여한 약 1,800여개 단체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불법시위를 주최하거나 주도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사. (사)한국여성노동자회, 행정안전부에 승소

(사)한국여성노동자회는 "새로 쓰는 여성 노동자 인권 이야기"라는 사업명으로 2008. 5. 1.부터 2010. 12. 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여성노동자 김경숙의 삶과 죽음을 재조명하여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라 한다)에 제출하였고, 행안부는 이를 '계속지원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행안부는 2009. 1. 30. 다시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시행공고를 하면서 특별선정기준을 명시하였는데, 2009. 2. 17.경 경찰청장으로부터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이른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라는 통보를 받고 같은 해 5. 7.경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0)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사건 : 2009구합35962). 2010. 4. 23. 8쪽, 한겨레신문, 「'촛불단체 옥죄기' 법원서 또 제동(2010. 4. 26.)」

1심에서 원고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패소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승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단년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매년 신청과 선정 절차를 반복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계속사업의 특성과 계속지원사업 선정 대상자의 신뢰를 도외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면서, 행안부의 이러한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일부 철회로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한국여성노동자회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⁴¹⁾

7. 관련 법규의 개정 경위

가. 국가인권위원회, 기재부에 「예산및기금운용집행지침」 개정 권고

기재부는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2009년 예산및기금운용집행지침에 신설한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매 년마다 집행지침에 삽입했다. 문구 등이 일부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규정 자체를 삭제하거나 변동하지는 않았으며, 2018년도 집행지침에 이르러서야 삭제했다. 기재부는 2017. 12. 28. 보도자료를 통해 그 삭제 이유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행지침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반영’하여 삭제하였다고 설명했다.⁴²⁾

위원회 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2. 6. 기재부장관에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제한 및 교부조건에서 집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고,⁴³⁾ 기재부는 이를 수용하여 2018년도 집행지침부터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권고를 하면서, ‘집회의 자유 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제한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예산집행지침」에서 불법시위의 주최·주도를 이유로 하여 보조금 지원 제한을 규정하는 것은 그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예산집행지침」은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보조금 지원 제한을 규정하면서

4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사건 2010누3253), 2010. 7. 21., 8~10쪽.

42) 기재부, 위 보도자료 3쪽.

4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개선 권고 (2017. 12. 6.)>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침에서 정하는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모호하여 자의적 적용 여지가 있음에도, 지침에서는 ‘불법시위’에 대한 판단 시점, 판단 주체, 판단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고, 불법시위의 개념에 있어서도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지, ‘경찰서장이 옥외집회 등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⁴⁴⁾

나.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폐지 경위

참고인 박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로 바뀌고 나서 보조금 지원 관리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며, “당시 문체부에서 없던 규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기억”한다며, “거기에 보면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예산·기금 집행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고 진술했다.⁴⁵⁾ 그가 지적한 부분은 위 관리 규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가 보조금법시행령 제7조의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를 검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통보받는 「예산·기금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는 부분이다.

문체부 훈령 제118호인 이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2010. 1. 1.부터 제정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종전에 없던 규정을 새로 신설한 이유가 비단 이것 때문인지 위원회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이 규정은 2016. 8. 29. 폐지되었다. 이유는 ‘기재부에서 보조금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신규 제정(2016. 8. 1.)함에 따라 폐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⁴⁶⁾

44) 국가인권위원회, 위 결정문, 6~7쪽.

45) 참고인 박OO, 위 진술조서 4~5쪽.

46) 문체부 훈령 제295호(2016. 8. 29.). 문화재보호법 제95조(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에 근거한다.

다.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잔존했던 ‘보조금 제한’ 규정 삭제

기재부는 2016. 7. 2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공고했다. 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의 경우’를 명시하면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를 규정되어 있었고, 지침은 2017. 5. 22. 개정된 바 있고, 2018. 1. 2.에도 개정되었지만, 위 규정은 수정·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12. 2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확정·통보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행지침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반영하여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발표했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까지 일괄적으로 정비하지는 못했다.

기재부는 2018. 3. 말경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지침에 대한 개정 논의를 하였고,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서 기존 ‘제외’의 경우였던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조항을 삭제하고, 2018. 4. 4. 공고와 동시에 시행했다.⁴⁷⁾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한 사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 전국적인 미국산소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있었다. 2008. 8. 경부터 당시 여당(한나라당)이 주도하여 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취지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 했으나, ‘집시법 위반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 등이 고려되어 관련 법률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18대 국회 예결산특위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보조금 지원 제한’ 의견이 포함된 56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국회 본회의에

47)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18-67호)」, 2018. 4. 4.

상정하였고, 2008. 12. 13.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기재부는 위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도 「예산 집행지침」에 보조금 지원 제한 사유로 불법시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이는 문체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 부처에 지침으로 작용하였고, 이 지침 내용은 박근혜 정부로도 이어져 2017년도 지침에까지 유지되었다.

위 지침에 따라 예술위에서는 2010년도 보조금 지원 집행 과정에서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에 ‘불법폭력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 등의 책임지도록 하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예술위는 2010. 3. 8. 공문을 통해 ‘확인서’ 제출 요청을 철회함을 알렸으나, 한국작가회의는 당시 정해진 보조금 지원 수령을 거부한 데 이어 이후부터 예술위에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고, 민예총대구지회는 2010년도 보조금을 수령한 이후 두 차례 예술위에 지원 신청했으나 심사에서 탈락했다.

본 건 외 여성부와 행자부 등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위와 유사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던 사실이 있고, 해당 단체에서 이를 거부하자 보조금 지원을 철회, 내지 취소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재판을 통해 위법한 행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기재부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2018년도 예산 집행지침부터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에서 문제의 ‘불법시위’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이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2. 이 사건의 성격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2008. 8. 27. 당시 대통령 비서실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당시 이전 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단체 등에 대해 ‘좌파’라 규정하며 ‘지난 10년’간 ‘문화 권력’을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 권력을 ‘균형화’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할 전략으로 ‘좌파 자금줄 차단’을 계획했음이 문건에 나타나 있다.

본 건의 경우 위와 같은 이명박 정부 문화 정책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에서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해 배제를 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순응하게끔 하려는 의도에서 발현된 사건이다.

3. 권고사항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로 인해 문화예술 작품의 창작과 향유를 위한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해 사과를 하고, 적절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할 것을 권고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09

박근혜 정부의 마을라디오 활동 외압 의혹 사건



109

박근혜 정부의 마을라디오 활동 외압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26[박근혜 정부의 마을라디오 활동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 (1) 신청인(송덕호)은 지난 2016. 10. 19.자 한국일보 기사를 통해 2015. 6.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에서 '마을라디오'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좌파적이고 반정부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 (2) 신청인은 이를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맥락의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문체부와 그 산하 여러 문화예술, 교육, 미디어 관련 재단에서 이루어진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에 청와대와 정부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 (1) 2015. 6. 3.경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마을라디오 개설이 활발한데 일부 라디오 방송국이 좌파지지 기반구축, 일부 정치인 의정홍보 등에 활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 부적절한 대상은 없는지 조사해보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은 없는지도 점검할 것’을 미래수석과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었다.
- (2) 마을라디오와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에 부적절한 사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지시를 받은 미래수석실이 소관 방통위를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방송 허가 사항 대상인 7개 공동체라디오사업자이다. 방통위의 허가 대상인 공동체라디오 7 곳은 위원회 입수자료 「공동체라디오 일반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2017년 재허가 과정에서 7곳 모두 재허가를 받았으며, 최초의 공동체라디오 개설 허가사항 변동 없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방송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은 2006년 시업사업 추진 시부터 본방송 시작과 함께 기금 지원을 종료한다는 ‘운영계획’의 의결에 따라 본 방송이 시작된 2009년 지원을 종료하였다. 공동체라디오의 수입은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라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방송광고수입금, 협찬고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사업자 자체조달로 운영하고 있다.
- (4) 마을라디오는 방송법상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성격상 인터넷 방송으로 자유로이 설립이 가능하다. 서울시 예술진흥팀에서 입수한 <201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 리스트>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실수비 회의 전후인 2015년~2017년 기간 계속하여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병기 前 비서실장의 지적이 있는 다음해인 2016년에도 서울시에서는 마을미디어에 5억5천9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결국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마을미디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시 등을 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공동체라디오나 마을미디어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체부 미디어정책국 소속 미디어정책과 김OO 사무관 및 방송영상광고과 차OO 사무관과 통화한 결과 “마을라디오는 문체부의 업무 사항이 아니라 관련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하였으며, 방송영상과나 미디어정책국의 업무 분장표를 살펴봐도 관련한 업무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붙임 : [박근혜 정부의 마을라디오 활동 외압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특26, 박근혜 정부의 마을라디오 활동 외압 의혹 사건

[신청인] 송덕호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 취지

가. 사건 경위

신청인 송덕호[(사)마포공동체라디오 대표 /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하 ‘신청인’)]는 지난 2017년 10월 19일자 『한국일보』 기사¹⁾를 통해 사건 경위를 알게 되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2015. 5. 11.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포털사이트 등의 정부 비판 기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모니터링을 지시하였다.
- ② 2015. 6. 3.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에서 “(팟캐스트 기반)일부 라디오 방송국이 좌파 지지기반 구축, 일부 정치인 의정홍보 등에 활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마을라디오 방송 중)부적절한 대상이 없는지 조사해 보고,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은 없는지도 점검”하도록 조신²⁾ 당시 미래전략수석과 정무수석실 관계자(당시 정무수석 공석)에게 지시하였다.

신청인은 이와 같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가 이후 어떻게 실행되고 작동되었는지, 그리고 공동체라디오와 마을미디어 등에 대한 피해사례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알고 싶다는 취지로 2017. 11. 28.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하였다.

1) 「朴 청와대, 포털 압박해 여론 통제 시도」, <한국일보>, 2017년 10월 19일, 제1면

2) 조신: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미래전략수석으로 재직함. 현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 피해 내용

- ① 박근혜 정부 시절 각 시·군·구 단위에서 주민들이 인터넷 기반의 팟캐스트 방식으로 직접 지역사회와 관련된 이슈 등을 방송하는 마을라디오가 널리 퍼졌다.
- ② 2015. 6. 당시 실수비에서 ‘마을라디오’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마을라디오가 좌파적이고 반정부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 ③ 이는 기본적인 시민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자유로운 표현과 의사소통,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맥락의 사건이다.

다. 진상규명 대상

- ① 박근혜 정부에서 논의되고 지시된 마을라디오에 대한 부당한 감시, 통제, 압박 등의 내용과 관련 의혹을 조사해주시기 바란다.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지시된 위 내용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서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상부로 보고가 되었는지 추적·확인이 필요하다.
- ② 각 지자체의 재정 지원으로 다양한 마을미디어, 마을라디오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 여러 문화예술, 교육, 미디어 관련 재단에서 이루어진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청와대와 정부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규명과제

가. 조사개시 근거

위 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 「제23차 전원위원회」(2018. 1. 19.)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제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의안번호 제 18-019호).

나. 진상규명 과제

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규명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마을라디오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의 실행 또는 실현 여부
- ② 신청인 및 피해자 소속단체의 피해 여부
- ③ 마을라디오에 대한 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연관성 유무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검토 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비고
1	2015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결과 자료집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2016. 2. 제작
2	2016 마을미디어 연간 보고서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2017. 2. 제작
3	201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설명회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2017. 3.
4	2017 마을미디어 활성화 운영매뉴얼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2017. 3.
5	2017 네트워크숍 자료집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2017. 3.
6	공동체라디오 일반현황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2018. 2. 26. 입수보고
7	공동체라디오[시범사업자] 방송발전기금 지원현황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2018. 2. 26. 입수보고
8	공동체라디오 방송통신기금 사업 지원현황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2018. 2. 26. 입수보고
9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 관련 법령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2018. 2. 26. 입수보고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비고
10	201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	서울시 예술진흥팀	2018. 2. 26. 입수보고
11	2016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 리스트	서울시 예술진흥팀	2018. 2. 26. 입수보고
12	보조금 반환 사유서 (15. 11. 13. 은평사진방)	서울시 예술진흥팀	2018. 2. 26. 입수보고
13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15. 6. 3.)	정책조정수석(기획비서관)	2018. 1. 29. 입수보고

2.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신청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대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조사 형태	일자
1	송덕호	신청인	진술조서	2018. 1. 3.
2	양승열	참고인 (동작공동체라디오 대표)	진술조서	2018. 1. 3.
3	김OO	참고인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유선 통화 보고	2018. 3. 9.
4	차OO	참고인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유선 통화 보고	2018. 3. 9.
5	OOO	참고인 (서울시 예술진흥팀 주무관)	유선 통화 보고	2018. 3. 9.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마을미디어(마을라디오)

마을미디어(마을라디오)사업은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소관 부서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단년간 사업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례사업이다.

3) 시민 누구나 마을에서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⁴⁾ 마을라디오는 『방송법』상 방송통신위원회(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승인·등록 등)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신청인은 조사신청 자료에서 2012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마을미디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활동이 시작된 ‘마을라디오’는 지난 5년 간 서울 전역에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며 확장되고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국내 최초 그리고 유일한 레즈비언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인 마포FM의 ‘L양장점’, 사고 잦은 삼거리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달고 성서지역에 공공도서관을 만든 대구시 성서공동체FM의 ‘주말발언대’, 두리반 철거, 아현뉴타운 개발 반대 투쟁의 목소리를 방송으로 퍼뜨린 마포FM ‘송덕호의 씬박시사’ 같은 방송들은 1)공동체의 소유와 통제, 2)비영리적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비영리적 운영, 3)사회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마을라디오의 세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영역의 방송에서는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마을라디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봉제 미싱사 방송 창신동 라디오의 ‘동대문 그 여자’, 파킨슨병 환우들의 사연과 정보를 담은 가재울라디오의 ‘라디오파킨슨사랑방’, 성북동 가로수 지키기에서 시작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론장 역할을 한 와보송과 성북마을TV,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투쟁을 함께 한 용산FM의 ‘굿바이, 용산화상경마장’, 지역주민이 찾아나서는 동작구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 동작FM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 등 지역 밀착형, 주민주도형 콘텐츠로 마을라디오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나.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라디오는 기존 FM주파수 대역에서 10W 이하의 소출력으로 소규모지역(시·군·구 일부)을 대상으로 하여 음악, 문화, 지역 정보 등을 제공하는 라디오방송이다.

공동체라디오 사업자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어)를 보면 ‘안테나 공급 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제11항을 보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외의 공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영상미디어센터(미디어액트)가 운영하고 있다.

4) 서울시에서는 마을미디어 지원 관련 근거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3. 3. 15.)를 제정하였다.

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피해 관련 단체

(1)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이하 ‘마포FM’)

- ① 신청인이 속해 있는 마포FM은 『방송법』(이하 ‘법’)과 『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허가⁵⁾를 받아 설립을 하고,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통상 3년) 만료 전에 재허가⁶⁾를 받아야 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이다.
- ② 신청인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로부터 “마포FM 방송의 주제나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듣거나 재허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방통위 차원의 지원(정책적이든 재정⁷⁾적이든)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마침 올해도 재허가 심사연도인데 최근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은 방통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고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였다.⁸⁾

(2) 동작공동체라디오 (이하 ‘동작FM’)

- ① 또 다른 피해자(양승열, 이하 ‘피해자’)가 속한 동작FM은 법에 따른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를 지향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마을라디오로, 현재는 법상 방통위의 허가에 따라 설립된 것은 아니다.
- ② 피해자⁹⁾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주관(서울특별시 주최)의 “마을라디오 활성화 사업” 공모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되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겪은 바는 없

5) 법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제11항 / 영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6) 법 제17조(재허가 등) 제1항 / 영 제16조 제3항

7) 다만, 영 제13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운영을 위해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음. “1. 기부금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방송광고수입금 4. 협찬고지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8) 신청인 진술조서(2018. 1. 3.) 및 조사보고(2018. 1. 4.)

9) 피해자는 신청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동의에 따라 동석자로 참여하여 함께 진술하였다.

으나, 마을라디오 실무진의 차원에서는 공모사업에서의 탈락 또는 배제과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하였다.¹⁰⁾

(3)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 ① 신청인은 마포FM의 대표 겸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피해자도 동작FM의 대표 겸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 ②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는 2014년에 발족하여 2017년 7월부터 4기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및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협력하면서 서울마을미디어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 공동체라디오 및 마을라디오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의 실행 또는 실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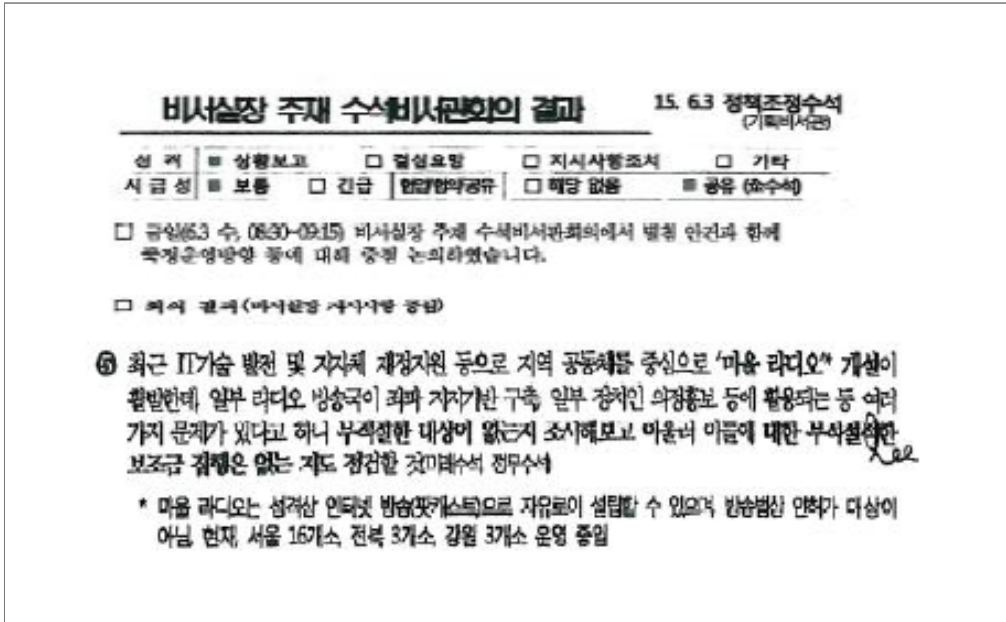
가. 실수비 회의 자료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병기 비서실장이 마을라디오와 관련한 조사와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은 없는지의 점검 등을 지시한 여부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하여 입수한 실수비·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이하 ‘대수비’)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 6. 3. 실수비에서 이병기 비서실장이 아래와 같이 지시한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¹¹⁾

10) 신청인 진술조서(2018. 1. 3.) 및 조사보고(2018. 1. 4.)

11) 우리 위원회 입수, 실수비·대수비 회의자료, (2018. 1. 29.)

[그림-1]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병기 비서실장은 '마을라디오 개설이 활발한데 일부 라디오 방송국이 좌파 지지기반 구축, 일부 정치인 의정홍보 등에 활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 부적절한 대상이 없는지 조사해보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은 없는 지도 점검할 것'을 관련 미래수석과 정무수석에게 지시하였다.

당시 미래전략수석은 조신이었으며 정무수석은 조운선 이후 현기환이 임명될 때까지 공석이었다. 이때 정무비서관은 신동철이었으며,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이OO이었고, 국민소통비서관은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오OO이었다.

나. 공동체라디오 관련 방통위 입수자료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공동체라디오와 관련한 자료를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에서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방통위 입수 자료 「공동체라디오 일반현황」을 보면 2004년 11월 관악·마포·분당·공주·성서·영주·광주·나주FM 등 공동체라디오방송 8개 시범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2009년 8월 7개 정규 사업자 선정하고 방송국 허가를 의결하였다. 2011년 11월, 2014년 12월, 2017년 12월 등 3차례에 걸쳐 공동체라디오 7개사에 대한 재허가¹²⁾ 의결을 하

였다. 현재 방통위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공동체라디오 7개 방송사업자는 아래 표와 같다

[표-3]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현황

방송국명	법인명	대표자	방송구역	방송사항	허가일자 (유효기간)	출력
관악FM	(사)관악 공동체라디오	안병천	관악구 일부			
마포FM	(사)마포 공동체라디오	송덕호	마포구, 서대문구 일부			
성남FM	(사)문화복지 미디어연대	정호연	성남시 일부			
공주FM	(사)금강 에프엠방송	황성하	공주시 일부	음악, 문화, 정보제공(지역관 련 소식에 한정)	'09. 8. 11. ('22. 12. 31)	1W
성서FM	(사)성서 공동체에프엠	정수경	대구 달서구 일부			
영주FM	(사)영주 에프엠방송	최성해	영주시 일부			
광주FM	(사)광주 시민방송	유영주	광주 북구 일부			

다. 마을라디오 관련 서울시 마을미디어 입수자료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마을라디오에 관한 자료를 서울시 예술진흥팀으로부터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2016년 2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펴낸 「2015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결과자료집」 '3부. 2015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마을별 사례'에는 'I. 거점형'으로 관악구의 (사)관악공동체라디오가 수록되었고, 'IV. 매체형'으로 동작구의 동작 FM, 마포구의 마포FM 등 서울시내 소재 12개 마을미디어 활동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2017년 2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2016년 마을미디어 연간보고서」에는 서울시 각 자치구 활성화 사업 지원을 받는 마을미디어가 라디오·팟캐스트 26곳 등 65곳, 지원받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곳 38곳을 포함해 전체 103곳으로 파악하고 있다.¹³⁾ 이 보고서 '201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에는 관악구

12) 8개 시범사업자 중 나주FM은 사업수행능력 부족 판단으로 불허되었다.

의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동작구의 동작FM, 마포구의 마포FM 등이 참여단체로 수록되어 있다.

3. 신청인 및 피해자 소속단체의 피해 여부

가. 마포FM 등 공동체라디오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위원회의 진술조사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로부터 “마포FM 방송의 주제나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듣거나 재허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방통위 차원의 지원은 없을 것이며, 방통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고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¹⁴⁾ 또한 공동체라디오에서는 3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범사업에서 정규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방통위로부터 지원 사업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¹⁵⁾

(2) 공동체라디오 관련 방통위 입수자료

방통위의 「공동체라디오 방송발전기금 지원현황」¹⁶⁾을 보면 2005년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시범사업 초기에 8개 시범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시설 구축비로 총 시설 설치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총 7억2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사업자 당 월5백만 원(연간 6천만 원) 수준, 총 17억3천5백만 원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였다.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시범사업자에 한해서만 제작비를 지원하며, 본방송 시작과 함께 기금 지원을 종료한다’는 (구)방송위의 ‘시범사업 운영계획’ 의결에 따라 본 방송이 시작된 2009년 지원을 종료하였다.

13) 서울마을미디어센터, 「2016 마을 미디어 연간보고서」 8쪽.

14) 신청인 진술조서(2018. 1. 3.) 및 조사보고(2018. 1. 4.).

15) 신청인 진술조서(2018. 1. 3.). 7쪽.

16) 우리 위원회 입수(2018. 2. 26.),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체라디오 방송발전기금 지원현황」

[그림-2] 방송발전기금 지원 정책 경과

□ 방송발전기금 지원 정책 경과

-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은 '06년 (구)방송위의 시범사업 추진시 부터 본방송 시작과 함께 기금 지원을 종료하는 입장을 정하여 일관되게 정책을 유지('09년부터 기금지원 종료)

< 공동체라디오 제작비 지원 관련 정책 결정 내용 >

- ◆ '06.1.17. (구)방송위, 시범사업자에 한해서만 제작비를 지원하며, 본방송 시작과 함께 지원 종료 결정(시범사업 운영계획 의결시)
- ◆ '08.1.22. (구)방송위, 시범사업자에 한해서만 제작비를 지원하며, 본방송 시작과 함께 지원 종료 확인(시범사업 제작지원 의결시)
- ◆ '08.8.14. 방송위, 기금 지원 종료에 따른 자체 자원 조성방안 마련을 시범사업 연장 조건으로 부과 결정(시범사업 기간연장 의결시)
- ◆ '09.6.10. 방송위, 정규사업 도입 시 방송사업에 필요한 자원은 사업자 자체조달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의결

이후 방통위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사업 응모 등을 통해 제작비 등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 방송발전기금 지원현황」 자료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2년 7천8백만 원, 2013년 7천만 원, 2014년 7천5백만 원, 2015년 8천1백만 원, 2016년 1억5백만 원, 2017년 1억7천3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현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영 제13조의 2에 따라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방송광고수입금, 협찬고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사업자 자체조달로 운영하고 있다.

나. 동작FM 등 마을라디오

(1) 피해자의 주장

신청인과 동석하여 위원회의 진술조사를 받은 피해자 양승열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주관(서울특별시 주최)의 “마을라디오 활성화 사업” 공모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되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겪은 바는 없으나, 마을라디오 실무진의 차원에서는

공모사업에서의 탈락 또는 배제과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하였다.¹⁷⁾

(2) 마을라디오 관련 서울시 마을미디어 입수자료

서울시 예술진흥팀에서 입수한 <2015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참여단체>에 따르면 유형별로 거점형 2곳, 교육형 15곳, 매체형 12곳, 복합형 9곳, 아이템형 5곳, 체험형 10곳 등 총 53곳이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지원을 받았다.

[표-4] <2015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참여단체> 중 일부

유형	자치구	단체명	총사업비(원)
거점형	관악구	관악공동체라디오	25,000,000
매체형	동작구	동작FM	15,000,000
매체형	마포구	마포FM	11,000,000

또한 <201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 리스트>에 따르면 동작공동체 라디오와 (사)마포공동체라디오를 포함 유형별로 거점형에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2곳, 교육형에 12곳, 매체형에 동작FM, 마포FM 등 17곳, 복합형에 14곳, 아이템형에 10곳, 지정 공모형에 10곳 등 총 65곳에 5억5천9백만 원이 지원되었다.¹⁸⁾

[표-5] <201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 리스트> 중 일부

유형	자치구	단체명	사업명	총사업비(원)
거점형	관악구	관악공동체 라디오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생태계 지원 및 콘텐츠 강화 지원 사업	45,000,000
매체형	동작구	동작FM	동작공동체라디오, 조직의 단맛을 느끼다	15,000,000
매체형	마포구	마포FM	마포 청소년 라디오 습격사건 - 내가 만드는 라디오방송	11,000,000

2017. 8. 25.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펴낸 「2017 서울마을미디어 네트워크 1박 2일 워크숍 BOOM UP! 자료집」에 따르면 ‘2017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참여단체(1

17) 신청인 진술조서(2018. 1. 3.) 및 조사보고(2018. 1. 4.)

18) 서울시 예술진흥팀, (2018. 2. 26. 입수보고), 「201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 단체 리스트」

차 공모)’에도 거점형에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2곳, 복합형에 20곳, 매체형에 동작 FM, 마포FM 등 23곳 등 총 45곳이 선정되어 있다.

제4절 | 조사 결과

1. 공동체라디오 및 마을라디오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의 실행 또는 실현 여부

위원회 입수 실수비 회의결과를 보면 2015. 6. 3.경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을라디오 개설이 활발한데 일부 라디오 방송국이 좌파지지 기반구축, 일부 정치인 의정홍보 등에 활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 부적절한 대상은 없는지 조사해보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은 없는지도 점검할 것’을 미래수석과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병기 비서실장이 언급한 마을라디오는 법상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 더군다나 마을라디오는 형식 및 성격상 자유로이 설립이 가능하며, 지역공동체에서 인터넷 등을 매개체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설립 및 폐지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2015. 6. 3. 실수비 회의 자료에도 적시되었다.

마을라디오와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에 부적절한 사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지시를 받은 미래수석실이 소관 방통위를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방송 허가 사항 대상인 7개 공동체라디오사업자이다. 방통위의 허가 대상인 공동체라디오 7곳은 위원회 입수자료 「공동체라디오 일반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2017년 재허가 과정에서 7곳 모두 재허가를 받았으며, 최초의 공동체라디오 개설 허가사항 변동 없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방송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위원회 조사권한 및 조사기간의 한계 등으로 마을라디오에 대한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 여부 조사를 지시한 이병기 비서실장 및 이 지시를 받은 조신 미래전략수석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조사·점검 지시의 실행 또는 실현 여부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2. 신청인 및 피해자 소속단체의 피해 여부

가. 마포FM 등 공동체라디오

신청인은 위원회 진술조사에서 ‘공동체라디오 방송 사업은 방통위의 차원의 지원은 없을 것이며, 방통위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고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과정에서 방통위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에서 입수한 자료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공동체라디오에 지원하는 기금은 2006년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 때부터 본방송 시작과 함께 지원을 종료하는 결정을 하여 일관되게 정책 결정을 유지하는 사항’임을 밝히고 있다.¹⁹⁾

방통위에서 공동체라디오에 보조금을 중단 한 사항은 이병기 前 비서실장의 지적으로 방송기금이 중단된 사항이 아니라 2009년부터 지원을 종료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 제13조의 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2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의 재원은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방송광고수입금, 협찬고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사업자 자체조달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가 2012년~2017년 기간 동안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사업 응모 등을 통해 제작비 등을 간접 지원하였는데, 신청인이 소속한 마포FM이 지원 사업에 응모하거나 배제된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나. 동작FM 등 마을라디오

서울시 예술진흥팀 000 주무관에 따르면 “마을라디오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정책 과제인 마을 살리기 사업의 일환이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012. 3. 15.에 제정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²⁰⁾ 고 한다.

서울시는 2012년 설립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통해 마을 소통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에서 미디어를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다.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19) 우리 위원회 입수 (2018. 2. 26.), 「공동체라디오 일반 현황」, 「공동체라디오 방송발전기금 지원현황」

20) 유선통화 보고, 마을라디오 관련 문체부 및 서울시 공무원과의 통화보고, 2018. 3. 9.

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제안서를 받아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매년 수행하고 있다.²¹⁾ 서울시 예술진흥팀에서 입수한 <201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 리스트>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실수비 회의 전후인 2015년~2017년 기간 계속하여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시기 前 비서실장의 지적이 있던 다음해인 2016년에도 서울시에서는 마을미디어에 5억5천9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결국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마을미디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시 등을 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과 동석하여 위원회의 진술조사를 받은 피해자 양승열의 “마을라디오 활성화 사업” 공모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되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겪은 바는 없다는 진술에서도 뒷받침된다.

3. 마을라디오에 대한 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연관성 유무

이시기 비서실장의 공동체라디오와 관련한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지시사항이 문체부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5년 6월경 교문수석실에 파견되어 미디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신OO 행정관에게 이시기 실장의 마을라디오 지시와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마을라디오는 교문수석실 소관이 아니고 경제수석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실 업무라고 진술하였다.²²⁾

문체부의 마을미디어와 관련된 업무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정책국 소속 미디어정책과 김OO 사무관 및 방송영상광고과 차OO 사무관과 통화한 결과 “마을라디오는 문체부의 업무 사항이 아니라 관련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하였다.²³⁾ 방송영상과나

21)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5 서울시 마을미디어 사업결과 자료집」, 2~4쪽.

22) 우리 위원회 참고인 신OO 행정관 진술조서, 2018. 1. 30., 11쪽.

23) 유선통화 보고, 마을라디오 관련 문체부 및 서울시 공무원과의 통화보고, 2018. 3. 9.

참고 자료: 「2017년도 문체부 업무 계획」 미디어 정책국 업무 분장표.

부서명	주요업무내용
미디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산업 진흥관련 기본 계획 • 신문·잡지산업 진흥 관련 법·제도 정비, 조사·연구, 유통구조 개선 • 뉴스통신 진흥, 정간물 등록관련 업무, 언론피해 구제 관리 •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위 관련 업무 • 뉴미디어·뉴스통신사업 진흥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미디어정책국의 업무 분장표를 살펴보아도 관련한 업무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5절 | 결론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마을라디오 보조금에 대한 조사 지시여부는 문체부와 관련성이 없는 방통위 업무이다. 위원회 조사권한의 한계 등으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및 미래전략수석 등 관계자와 방통위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조사·점검 지시의 실행 또는 실현 여부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마을라디오 피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주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특히 신청인과 피해 단체들은 2012년 서울시에서 제정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병기 실장의 지시이후 문체부 등에서 공동체라디오 및 마을라디오에 대하여 정치적 견해 등에 따라 지원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부서명	주요업무내용
방송영상 광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영상산업 및 광고산업 진흥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방송영상산업 및 광고산업 진흥관련 법·제도 정비, 조사·연구 • 방송영상산업 네트워크 구축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및 인프라 확충(융복합·뉴미디어 콘텐츠 포함), 독립제작사 육성·지원 등 • 방송영상산업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지원 • 국제방송교류재단 업무
출판인쇄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인쇄산업 진흥 관련 종합계획 수립·시행, 법·제도 정비 • 우수도서 출판 장려 및 출판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출판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전자출판산업 육성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관련 업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10

한국예술종합학교 최현수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110

한국예술종합학교 최현수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27[한국예술종합학교 최현수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최현수는 2015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점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다. 이후, 신청인은 제자에게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의 입시를 위한 전공실기 시험 지정곡을 사전 유출했다는 혐의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15. 9. 16. 형사 기소되었고, 2015. 12. 9. 한예종에서 해임되었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비판활동에 참가하여 본인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의해 무리한 형사 기소를 당하였으며 한예종에서 해임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문체부 장관 김종덕의 지시로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을 비판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위 리스트가 김종덕에게 보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체부에서는 신청인의 이름을 장관의 인사정책에 반대하는 인물로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덕은 문체부 소속 공무원인 임OO, 원OO, 김OO 등을 통해 신청인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비대위 활동을 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비대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청인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으로 인해 형사기소, 해임처분 등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는 진상규명할 수 없었다.

붙임 : [한국예술종합학교 최현수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사 건] 2017특27, 한국예술종합학교 최현수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신청인] 최현수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최현수(이하 '신청인')는 1993년부터 2015. 12.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성악과 교수로 재직한 자이다. 신청인은 2015년 한OO(2015. 1. 2. ~ 2. 24.), 김OO(2015. 7. 3. ~ 2017. 7. 7.)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자,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점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비판활동에 참가한 이후, 신청인은 제자 OOO에게 한예종의 '2015년 예술영재 선발'과 '2016학년도 예술사 신입생 모집'을 위한 전공실기 시험 지정곡을

2015. 3. 17. 사전 유출했다는 혐의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15. 9. 16. 형사 기소되었고, 2015. 12. 9. 한예종에서 해임되었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비판활동에 참가하여 본인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의해 무리한 형사 기소를 당하였으며 한예종에서 해임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제3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7. 12. 22.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되었다.

나. 조사의 목적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 비판활동을 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이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는지, 블랙리스트에 신청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지, 블랙리스트에 신청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무리한 형사 기소 및 한예종 교수직에서 해임을 당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서울고등법원 2017누75332 관련 기록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2	대법원 2017도11523 관련 기록	대법원	2017. 11. 29.
3	신청인이 2017. 11. 29. 작성한 진술서	신청인	2017. 11. 29.
4	국립오페라단장 내정 반발... '김종덕 장관 사퇴' 촉구, <뉴스1>, 2015. 7. 2.	뉴스1	2018. 1. 4.
5	[박홍근 의원실]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임명	문체부공연전통예술과	2018. 2. 8.
6	1월 26일 오전 예술의 전당 앞 시위 피켓 내용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2018. 2. 8.
7	1월 30일자 SBS 영상토크 - 오페라인들, 무대 밖으로 나온 이유(26일 시위현장)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2018. 2. 8.
8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관련 주요 언론보도 현황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2018. 2. 8.
9	비대위 성명서	비대위	2018. 2. 8.
10	2014. 6. 1. ~ 2015. 11. 12. 예술위 조직도	예술위	2018. 3. 2.
11	前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김OO 약력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2018. 3. 2.
12	라벨라오페라단 예술위 지원 내역	라벨라오페라단	2018. 3. 2.
13	라벨라오페라단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 내역	라벨라오페라단	2018. 3. 2.
14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7. 4. 25.자 녹취서 일부	김OO	2018. 4. 2.
15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 일부	김OO	2018. 4. 2.
16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2015. 8. 1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 4. 4.
17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 통보(2015. 8. 31.)	한예중	2018. 4. 4.
18	인사발령통지(교육공무원 직위해제, 2015. 8. 31.)	한예중	2018. 4. 4.
19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2015. 8. 31.)	한예중	2018. 4. 4.
20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2015. 9. 1.)	한예중	2018. 4. 4.
21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2015. 9.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 4. 4.
22	교원일반징계위원회 개최 통지(2015. 10. 14.)	한예중	2018. 4. 4.
23	교원일반징계위원회 출석 통지(2015. 10. 14.)	한예중	2018. 4. 4.
24	탄원서(2015. 10. 26.)	한예중 성악과 교수일동	2018. 4. 4.
25	교원일반징계위원회 결과(2015. 10. 28.)	한예중	2018. 4. 4.
26	교원일반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2015. 10. 29.)	한예중	2018. 4. 4.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27	교원일반징계위원회 개최 통지(2015. 11. 18.)	한예중	2018. 4. 4.
28	교원일반징계위원회 심의 자료(2015. 11. 27.)	한예중	2018. 4. 4.
29	교원일반징계위원회 결과(2015. 11. 27.)	한예중	2018. 4. 4.
30	교원일반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2015. 12. 7.)	한예중	2018. 4. 4.
31	인사발령 통지(해임, 2015. 12. 9.)	한예중	2018. 4. 4.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최현수	신청인	진술조서 (2018. 1. 4.)
2	박현준	한국오페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 참여자	진술조서 (2018. 1. 9.)
3	탁계석	비대위 등 참여자	진술조서 (2018. 1. 10.)
4	김OO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위원	녹취서 (2018. 1. 23.)
5	최OO	한예중 음악원 성악과 교수	진술서 (2018. 2. 4.)
6	임OO	前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진술조서 (2018. 2. 8.)
7	이OO	前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오페라단 담당 사무관	진술조서 (2018. 2. 8.)
8	김OO	前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오페라단 담당 사무관(이OO 후임)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2. 22.)
9	김OO	예술위 위원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2. 22.)
10	최지형	비대위 참여자	진술조서 (2018. 3. 2.)
11	이OO	前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창작지원부 과장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3. 2.)
12	이강호	비대위 참여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3. 2.)
13	장수동	비대위 참여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3. 5.)
14	김봉렬	한예중 총장	녹취서 (2018. 3. 21.)
15	김OO	前 문체부 예술정책관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3. 20.)
16	양OO	前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3. 27.)
17	장OO	前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3. 27.)
18	김OO	前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3. 27.)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2015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 및 이에 관한 비판활동 개요

(1) 국립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은 ‘오페라 공연을 통하여 우리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공연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할 목적¹⁾’으로, 1962. 1. 15. 국립극장 산하단체로 창단되어 2000. 1. 31.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계·오페라계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2)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 절차

국립오페라단 정관은 제6조 제1항2)에서 ‘예술감독은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 제1항3)에서 ‘예술감독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 절차 등에 관한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문체부는 ① 공연전통예술과에서 적임자에 대한 평판조회 및 복수추천, ② 운영지원과에서 후보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인사검증 과정을 거쳐 ③ 장관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을 임명한다고 밝혔으나⁴⁾, 실제로는 소위 ‘윗선’에서 후보자를 지정하여 실무자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⁵⁾ 前 문체부 예술정책관인 김OO은 문체부 장관인 김종덕의 지시를 받아 한OO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후보자로 올렸다고 진술하였다.⁶⁾

- 1) 국립오페라단 정관 제3조(목적)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페라 공연을 통하여 우리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공연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국립오페라단 정관 제6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 예술감독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 3) 국립오페라단 정관 제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4)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작성한 ‘박홍근 의원실 요청자료(국립오페라단장)’
- 5)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 6)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7. 4. 25.자 녹취서

(3) 前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한OO 선임에 대한 비판활동

국립오페라단 제9대 예술감독이었던 김OO이 일신상의 이유로 2014. 3. 31.자 면직 하자, 문체부는 2015. 1. 2. 국립오페라단 제10대 예술감독으로 한OO을 임명하였다. 임명 과정에서 국내 성악·오페라계가 후보를 추천하거나, 국내 성악·오페라계 인사가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OO의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임명은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실무자들은 당시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인 박OO, 작곡가 이OO, 한양대학교 성악과 박OO 교수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⁷⁾

한OO의 약력은 아래와 같다.

〈한OO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약력〉

- 생년월일: 1971년 0월 00일
- 학력
 - 밀라노 0000 국립음악원 학사 졸업('00)
 - 00여자고등학교 졸업('90)
- 주요 경력
 - 00대·00대·00대학교 강사('04 ~'08)
 - 현 00대 산학 협력단 특임교수('14 ~)
- 수상 경력
 - 0000 국제콩쿠르 음악평론상 심사위원장 특별상('07)
 - 000 국제콩쿠르 우승 및 Best voce pucciniana 수상('00)

한OO은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국내 성악·오페라계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⁸⁾ 그래서 국내 성악·오페라계 인사들은 한OO의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임명을 ‘순경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청장이 되는 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⁹⁾

한OO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자, 국내 성악·오페라계는 “이번 신입단

7)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8)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

9) 참고인 박현준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장 인선은 활동 경력과 오페라의 세계 정상급 무대 경험 어느 것 하나 납득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점을 낳는다”고 밝히며,¹⁰⁾ 한OO이 경력과 경륜 면에서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직에 적합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였다.

이후 국내 성악·오페라계 주요 단체들¹¹⁾은 비대위를 조직하여 한OO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직에서 자진 사퇴한 2015. 2. 24.까지 53일간 문체부의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비대위는 토론회, 한OO 및 前 문체부 장관 김종덕의 형사고발, 릴레이 1인 시위, 국립오페라단 신년 기자회견장 난입 등의 비판 활동을 하였고, 당시 문체부 장관 부임 초기였던 김종덕은 본건으로 인해 언론 및 국회의 질타를 받게 되자, 비대위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으로 판단된다.¹²⁾

탁계석, 박현준을 포함한 일부 비대위 참여자는 한OO이 자진 사퇴한 이후에도 “한국 오페라계와 음악계의 새로운 환경과 성장 비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며 한국 오페라의 세계화와 민간 주도의 새로운 오페라시장 개척”하기 위해 2015. 3. 24. 한국오페라용성위원회(이하 ‘용성위’)를 조직하였다.

2015. 7. 3. 국립오페라단 제11대 예술감독으로 임명된 김OO도 오페라 연출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문체부의 졸속 행정과 측근 인사가 해당 예술분야의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심지어 김OO이 당시 문체부장관 정책보좌관인 최OO과 친했기 때문에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다는 소문도 문체부 내외에 파다했다.¹³⁾ 결국, 용성위는 2015. 7. 1. 서울 청담동 프리마호텔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및 정책 실패에 관한 대책을 위한 토론회(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오페라단장,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예술단체의 장관 측근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으며, 2015. 7. 3. 서울연극협회 회장 박장렬, 국립현대미술관장 공모에서 탈락한 前 경기도립미술관장 최효준 등 문체부 인사정책을 비판해온 일부 문화계 인사들과 함께 ‘문화주권찾기 범예술혁신연대(이하 ‘범예혁’)'를 발족하고, 문체부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였다.

10) 오페라계, 한OO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임명철회 요구, <국민일보>, 2015. 1. 14.

11) 대한민국민간오페라연합회, 예술비평가협회, 한국오페라연출가포럼, 소극장오페라연합회, 대한성악동호인협회, 대한민국오페라포럼 등

12)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3. 20.자 전화통화결과보고, 참고인 임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1월 26일 오전 예술의 전당 앞 시위 피켓 내용, 1월 30일자 SBS 영상토크 - 오페라인들, 무대 밖으로 나온 이유(26일 시위 현장),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관련 주요 언론보도 현황, 한국오페라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13) 참고인 박현준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참고인 임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나. 2016년도 한예중 음악원 성악과 신입생 선발 과정 및 신청인에 대한 형사기소·해임 처분 개요¹⁴⁾

(1) 2016년도 한예중 음악원 성악과 신입생 선발 과정

한예중 음악원 성악과는 2차에 걸친 전공실기 시험 등을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1차 전공실기 시험은 이탈리아 가곡 남/여 각 지정곡 5곡 및 오페라아리아 또는 오라토리오아리아 자유곡 1곡, 2차 전공실기 시험은 독일 가곡 남/여 각 지정곡 5곡 및 오페라아리아 또는 오라토리오아리아 자유곡 1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악과 입시에 있어 입시 지정곡을 포함한 전공실기 시험 비중은 전체의 90%를 넘는다.

한예중의 신입생 입학전형은 일반적으로 ① 입학관리과에서 각 원에 신입생 모집요강안 제출 요청 문서 발송, ② 각 원에서 신입생 모집요강안을 입학관리과에 제출, ③ 신입생 모집요강에 대한 입시정책위원회 의결, ④ 신입생 모집요강의 확정 및 공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예중 음악원 성악과 교수들은 2014. 12. 5.경 비공개 회의를 거쳐 입시지정곡 총 20곡(이하 '1차 입시지정곡')을 선정하였다. 위 교수들은 성악과 지원 학생들에게 연습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다른 학과와 별도로 2015. 1.초까지 입시지정곡을 공지하여 줄 것을 한예중에 요청하였으나, 한예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예중 음악원 성악과 교수들은 1차 입시지정곡의 난도가 높다는 이유로 다시 비공개 회의를 거쳐 2015. 3. 9.경 위 입시지정곡 중 독일 가곡을 대부분 변경하여 총 20곡을 입시지정곡(이하 '2차 입시지정곡', 2014년 및 2015년 입시지정곡과 대부분 다름)으로 선정하였다.

한예중은 2차 입시지정곡을 2015. 4. 8. '2015년 예술영재 선발'을 위한 입시지정곡, 2015. 5. 7. '2016학년도 예술사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지정곡으로 각 공지하였다.

한예중은 위 공지 이후 입시지정곡이 사전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책회의를 거쳐 2015. 8. 10.경 성악과 입학전형 일정을 10월에서 11월로 변경하고, 당초 지정된 입시지정곡을 전부 자유곡으로 변경하여 재공지한 후 전형을 실시하였다.

14) 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64654 판결, 한예중 2018 신입생 모집요강

(2) 신청인이 형사기소·해임처분을 받은 경위와 내용

신청인은 조교로부터 위 공지 이전 입시지정곡 목록을 문서로 전달받고, 2015. 2. 17. 1차 입시지정곡을, 2015. 3. 17. 2차 입시지정곡을 자신의 제자이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시레슨을 하고 있는 000에게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다.

한예종의 '2015년 예술영재 선발'과 '2016학년도 예술사 신입생 모집'을 위한 전공실시 시험 지정곡 사전 유출 사건이 2015. 7.말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접수되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5. 8. 18. 한예종과 문체부 장관에게 '신청인이 위 전공실기 시험 지정곡을 공식 공지일 이전에 유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피의사실로 신청인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를 하였다.¹⁵⁾

한예종은 2015. 8. 5. ~ 27.까지 위 사건에 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5. 8. 31. 한예종 교원일반징계위원회에 신청인에 대한 징계결의결을 요구하였다.¹⁶⁾

한예종은 2015. 10. 28. 처음 신청인에 대한 교원일반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징계양정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여 2015. 11. 27.까지 징계결의결은 연장하였다.¹⁷⁾ 이후 위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이 2015. 2. 17. 000에게 2014. 12. 중순경 한예종 성악과에서 선정한 2015년 예술영재 선발 및 2016학년도 예술사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지정곡 20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 2015. 3. 17. 위 성악과에서 다시 정한 입시지정곡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000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다'라는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¹⁸⁾, 제60조¹⁹⁾, 문체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²⁰⁾, 한예종 윤리강령 제13조²¹⁾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²²⁾에 해

15)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16)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 통보, 교육공무원 징계결의결 요구

17) 한예종 교원일반징계위원회 결과(2015. 10. 28.), 교원일반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

18)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20)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비밀의 유지)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의 자료·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직급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이외의 목적

당한다는 이유로 2015. 11. 27. 신청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다.²³⁾

한예종은 2015. 12. 9.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인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은 위 해임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제2심 진행 중이다.

한편, 신청인은 위 사건으로 인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²⁴⁾, 공무상비밀누설죄²⁵⁾로 형사기소되어 제1, 2심에서 각 죄에 관해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2. 신청인의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에 대한 비판활동

신청인은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2015. 1. 2. 임명된 한OO 및 2015. 7. 3. 임명된 김OO이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한바 있다.²⁶⁾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오페라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인사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대위 활동에 심적으로 지원을 하였고, 또 성의 표시 취지에서 활동비를 제공하는 등 뒤에서” 비대위 활동에 일조하였다.²⁷⁾ 또한 신청인은 2015. 7. 1. 프리마호텔에서 이루어진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이끌 수장직을 뽑을 때는 검증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21) **한예종 윤리강령 제13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교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총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2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23) 교원일반징계위원회 심의 자료(2015. 11. 27.), 한예종 교원일반징계위원회 결과(2015. 11. 27.), 교원일반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2015. 12. 7.), 인사발령 통지(2015. 12. 9.)
- 24)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5)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26) 신청인에 대한 2018. 1. 4.자 진술조서 제10쪽
- 27) 참고인 박현준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3. 블랙리스트 존재에 관한 점

가. 비대위 참여자의 주장

(1) 참고인 최지형의 진술²⁸⁾

비대위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최지형은 예술위 4기 위원이었던 김OO이 2015. 가을경 최지형을 찾아와 ‘비대위에 참여한 인물 중 탁계석, 박현준, 이강호, 장수동 및 최지형 총 5명의 이름이 예술위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문체부 관계자들의 주장

(1) 참고인 이OO의 진술²⁹⁾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오페라단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참고인 이OO은 “비대위는 문체부 장관 김종덕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며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김종덕은 비대위에 대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김종덕은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을 통해 이OO에게 비대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OO은 기사를 참조하여 비대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 장짜리 자료로 만들어 김OO에게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이OO은 비대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 동향보고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OO은 위와 같은 보고가 김종덕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이OO의 진술에 따르면, 김종덕은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에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SNS와 비대위 페이스북 ‘좋아요’ 누른 사람들까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실제로 문체부에서 SNS와 비대위 페이스북 ‘좋아요’ 누른 사람들까지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페이스북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조차도 자문위원 등에 위임할 때 평가근거로 사용되어 위임배제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지

28) 참고인 최지형에 대한 2018. 3. 2.자 진술조서

29)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참고인 이OO 작성의 2018. 3. 14.자 문자메시지

시를 받은 이OO은 위 지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김OO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고 걱정이 되어 김OO에게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에 비판하는 내용을 내리라는 조언을 하였다.

또한 이OO은 최지형, 장수동, 박현준, 탁계석, 이강호 등 비대위 참여자의 명단이 한 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이나 예술위로 전달되었다고 듣기는 하였으나, 문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참고인 임OO의 진술³⁰⁾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이었던 참고인 임OO는 문체부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 건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시하는 자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참고인 김OO의 진술³¹⁾

이OO의 후임으로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국립오페라단을 담당했던 참고인 김OO은 본인이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오페라단 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한 것은 맞으나, 위와 같은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위와 같은 리스트를 본 일은 없고, 신청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참고인 김OO의 진술³²⁾

당시 문체부 예술정책관이었던 참고인 김OO은 비대위 참여자들이 누구인지는 인터넷에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대위 참여자들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문체부 장관 김종덕이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왜 이렇게 한OO 선임에 관해 시끄럽냐. 너는 왜 이렇게 떠드는 것을 못 막느냐”라고 본인을 질책하여 쫓겨날 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문체부 차관인 박민권이 직접 본건 해결에 나섰다, 박민권으로부터 “김종덕이 널(김OO) 쫓아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30) 참고인 임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31)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2. 22.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32)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3. 20.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나. 예술위 관계자들의 주장

(1) 참고인 김OO의 진술³³⁾

예술위 4기 위원으로 재직했던 참고인 김OO은 클래식 음악계와 관련된 블랙리스트는 거의 없지만,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 비판활동을 했던 최지형, 장수동, 박현준, 탁계석, 이강호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김OO은 비대위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몇 번 눌렀는데, 이OO이 김OO을 몰래 찾아와, “김종덕 장관이 SNS 다 뒤져가지고 국립오페라단하고 관련된 사람들 다 찾아서 리스트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뒤지다 보니까 교수님이 나왔는데, 교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삭제하시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김OO은 이후 비대위에 참여했던 최지형, 장수동, 박현준, 탁계석, 이강호를 블랙리스트로 예술위에 내려왔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른 사람들까지도 조사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또, 당시 문체부에서 “문화예술위원회 리스트에 다섯 명을 내려라. 껌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블랙리스트가 문서로 내려왔는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참고인 이OO의 진술³⁴⁾

2015년 예술위 창작지원부 과장이었던 참고인 이OO은 직접 블랙리스트를 듣거나 본 적은 없으며, 다만 당시 위와 같은 블랙리스트가 있지 않겠냐는 소문은 무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참고인 장OO³⁵⁾ 및 양OO³⁶⁾의 진술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이었던 장OO(2014. 1. 10. ~ 2015. 8. 23.) 및 양OO(2015. 8. 24. ~ 11. 22.)은 예술위 창작지원부가 오페라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맞으나, 비대위 관련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3)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23.자 녹취서 및 2018. 2. 22.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34)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2.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35) 참고인 장OO에 대한 2018. 3. 27.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36) 참고인 양OO에 대한 2018. 3. 27.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4.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에 관한 점

가. 문체부 관계자들의 주장

(1) 참고인 이OO의 진술³⁷⁾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오페라단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참고인 이OO은 비대위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다는 사안에 대해 동향보고를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동향보고에도 신청인의 이름이 있었고, 신청인이 비대위 활동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김종덕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참고인 임OO의 진술³⁸⁾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이었던 참고인 임OO는 당시 신청인이 비대위 활동에 앞장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만나게 되었고, 신청인과는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예종 관계자의 주장

(1) 참고인 김봉렬의 진술³⁹⁾

당시 한예종 총장이었던 김봉렬은 신청인이 비대위 활동에 앞장서서 김종덕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7)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38) 참고인 임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39) 참고인 김봉렬에 대한 2018. 3. 21.자 녹취서

5.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한 점

가. 문체부가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 비판활동을 방해한 정황

(1) 신청인의 주장⁴⁰⁾

신청인은 한예중 총장 비서실로부터 2015. 4. 하순경 한예중 총장 김봉렬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OO 교수와 함께 김봉렬을 만나러 갔는데, 김봉렬로부터 “김종덕이 한예중에 국립오페라단장 인사에 비판적인 교수들이 있는데 고생 좀 시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으며, 2015. 5.경 김봉렬을 두 번째로 만났을 때는 김종덕이 신청인을 해임하거나 파면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2015. 6.말경에 임OO가 요청하여 원OO와 임OO를 만났는데, 원OO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면 음악계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며, 2015. 7. 1. 계획된, 교수들의 성토대회에 나가지 말라고 기분 나쁜 어조로 경고했다. 심지어 임OO는 2015. 7. 1. 오전에 또다시 전화를 해서 “최 교수님, 안 나가시는 게 좋을 텐데요. 꼭 나가셔야겠습니까?”라고 경고를 했다. 그래서 신청인은 “나가서 당신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는 나중에 결정하라”고 대답했다.

(2) 용성위 참여자들의 주장

(가) 국립오페라단장 내정 반발…‘김종덕 장관 사퇴’ 촉구, <뉴스1>, 2015. 7. 2.

신청인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인사 15명은 2015. 7. 1. 오전 프리마 호텔에서 국립오페라단장에 김OO이 내정된 것에 반발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위 기자회견에 참가한 최효준 국립현대미술관장 최종후보자는 “불이익이 걱정되니(토론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고 나도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경색된 분위기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40) 신청인에 대한 2018. 1. 4.자 진술조서 및 신청인이 2017. 11. 29. 작성한 진술서

(나) 참고인 박현준의 진술⁴¹⁾

비대위, 용성위, 범예혁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박현준은 이 사건 기자회견 경위에 대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에 김OO이 임명될 것이라는 정보를 확인하고는, 2015. 7. 1. 프리마호텔에서 32명 정도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모임을 소집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박현준은 그 전날 이OO에게 이 사건 기자회견이 내일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임OO 등이 위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던 연세대 성악과 교수인 강무림, 최효준 현 서울시립미술관장 등에게 밤에 전화를 해서 “거기 나가면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박현준은 “‘불이익 조치’라고 하면 성악가로서는 무대에 설 수 없게 되거나, 각종 공연의 캐스팅에서 배제되는 것, 또 문체부나 산하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 또 공연을 위한 공연장의 대관 등에서 배제되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처음에 모이기로 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약 30여명이었는데, 문체부로 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는 약속한 사람의 절반 정도인 15명 정도가 최종적으로 모였다. 그 중에 신청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박현준은 당시 프리마호텔 부근에 임OO 과장을 비롯한 문체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모임에 나왔는지 확인했다고 알고 있다고 하였다.

(다) 참고인 탁계석의 진술⁴²⁾

비대위, 용성위, 범예혁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탁계석은 비대위에서 2015. 7. 1. 강남의 프리마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문체부에 노출되자, 문체부에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신청인 외에도 박장렬, 최효준 등 여러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들었으나,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참고인 최OO의 진술⁴³⁾

한예중 음악원 성악과 교수인 참고인 최OO는 “2015. 3. 15. 한국(오페라)용성위원회가 발족했고, 그 다음날 신문에 기재된 이후 하루 이틀 지난 뒤에 총장으로부터 면담요청

41) 참고인 박현준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42) 참고인 탁계석에 대한 2018. 1. 10.자 진술조서

43) 참고인 최OO가 작성한 2018. 2. 4.자 진술서

이 와서 그 주중에 서초동 교사에서 개별적 면담을 갖게 되었음. 김총장은 내게 어떻게 그 모임에 가게 되었고 무슨 이유로 가담하게 되었느냐며 물었고 대학교수가 신념을 갖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도 말하기도 함. 그 후 저는 그 모임에 대해 사전에 아는바 없이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그들과 함께 행동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대답하였음”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참고인 장수동의 진술⁴⁴⁾

비대위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장수동은 당시 공연전통예술과 임OO 과장으로부터 “한 OO은 청와대에서 뽑았다. 국립오페라단장 선임에 대한 비판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김종덕 장관까지는 거론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김종덕 장관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비판활동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 김종덕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문체부 관계자들의 주장

(가) 참고인 임OO의 진술⁴⁵⁾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이었던 참고인 임OO는 2015. 7. 1. 오전에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문체부에서도 당시 비대위 활동 때문에 우려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고 김OO이 반드시 사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김종덕이 결심을 해야 김OO이 물러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자회견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한 것이지, 회유하려고 전화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임OO는 “김종덕이 저, 원OO, 김OO을 불러서 이 건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임OO는 이 사건 기자회견 당일 문체부 공무원들은 프리마 호텔 인근에서 누가 이 사건 기자회견에 참여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44) 참고인 장수동에 대한 2018. 3. 5.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45) 참고인 임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나) 참고인 이OO의 진술⁴⁶⁾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오페라단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참고인 이OO은 임OO가 2015. 7. 1. 프리마호텔에서 진행된 이 사건 기자회견을 말려야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지는 않고, 김종덕 장관 때문에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청인은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예종의 교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신청인이 비대위 활동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김종덕 장관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임OO 역시 걱정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예종 관계자의 주장**(가) 참고인 김봉렬의 진술⁴⁷⁾**

당시 한예종 총장이었던 김봉렬은 신청인이 특히 앞장서서 비대위 활동을 한다는 사실과 김종덕이 신청인 때문에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듣고, 신청인과 최OO 교수를 만나 “이게 소신이면 열심히 싸우시고 그렇지 않고 오해 같으면 좀 빠지셔라. 혹시 이게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어떻게 얽혀가지고 오해를 받아 괜히 밋보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김봉렬은 “첫 번째는 걱정이 돼서 한 얘기고, 두 번째는 결국 또 장관하고 관계도 어느 정도는 가야 되니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봉렬은 김종덕에게 직접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문체부·예술위 등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에게 불이익을 가한 정황**(1) 비대위 참여자들의 주장****(가) 참고인 박현준의 진술⁴⁸⁾**

비대위, 용성위, 범예협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박현준은 “한문연과 문진위 등에 기금을

46)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47) 참고인 김봉렬에 대한 2018. 3. 21.자 녹취서

48) 참고인 박현준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신청했는데 선정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선정할 때 아예 처음서부터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파크콘서트, 서울오페라단 이름으로 지원한 것도 있고 했는데 하나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고 부족한 지원 작품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었는데, 객관적으로 그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으로 지원을 했는데도 선정되지 않아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들었습니다. 또, 2015년에 대한민국을 빛낸 세계적인 성악가들로 지원 신청을 했는데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인지 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15년 공연 때 최OO 교수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 신청을 하며 제 이름도 기재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지원 시에도 최OO 교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탁계석의 진술⁴⁹⁾

비대위, 용성위, 범예혁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박현준은 “제가 문화예술계에서 다양한 업적을 쌓은 원로임에도 어떤 기관에서도 저를 심사위원 등으로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로부터 직접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고보다는 제가 비판적 발언을 많이 하고, 원로이기 때문에 한 번 비판하면 영향력이 커서 공공기관 등에서 안티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 최지형의 진술⁵⁰⁾

비대위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최지형은 2015. 10.경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김OO으로부터 2015. 12월초에 진행될 오페라 연출을 맡아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위 오페라에 참여할 사람들에 대한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위 오페라 진행과 관련하여 김OO을 3~4차례 만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최지형은 위 오페라의 연출을 맡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케줄도 비워둔 상태였는데, 김OO은 갑자기 ‘시간이 너무 조급하고,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위 오페라를 무산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난 뒤, 김OO은 최지형에게 연락하여 2016년

49) 참고인 탁계석에 대한 2018. 1. 10.자 진술조서

50) 참고인 최지형에 대한 2018. 3. 2.자 진술조서

봄 오페라 갈라 연출을 맡아달라고 다시 부탁하였는데, 김OO은 이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위 오페라 갈라의 연출을 맡겼고, 최지형은 이 사실을 기사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최지형은 본인이 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김OO은 최지형에게 연락을 하여 2016년 가을에 진행될 오페라 연출을 맡아달라고 다시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OO이 2016년 여름경 다시 최지형에게 연락을 하여 국립오페라단장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여, 김OO을 만나러 갔더니, 김OO이 ‘아시다시피 위에서 자꾸 반대가 심해서 지금까지 어렵게 되었다. 지금 자신이 노력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최지형은 “그 ‘위’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문체부라는 건 너무 빠른 일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최지형은 사실 오페라계의 관행상, 계약서 작성 자체는 공연 직전 무렵에 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 구두로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내가 그 오페라를 연출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오페라계의 관행상 구두로 약속을 한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덕이 사임한 이후, 최지형은 이제는 뭔가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였고, 2017년에 국립오페라단에서 오페라 연출을 맡게 되었는데, 김종덕 장관이 구속되고 김OO이 사임한 이후에는 최지형을 배제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참고인 장수동의 진술⁵¹⁾

비대위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장수동은 비대위 참여 이후 이전과 달리 예술위와 한문연의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여도 지원을 받지 못해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장수동은 3년 전, 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 ‘모세’를 연출할 때, 사해가 갈라지는 장면에서 세월호가 드러나는 장면을 연출하였는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추정되는 자가 위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위 오페라를 관람할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고, 이후 국정원 직원이라고 추정되는 자가 위 오페라를 관람한 후, “별 거 아니네요. 잘 봤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1) 참고인 장수동에 대한 2018. 3. 5.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마) 참고인 이강호의 진술⁵²⁾

비대위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이강호는 비대위 참여 이후 이전과 달리 예술위와 한문연의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여도 지원을 받지 못해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문체부 관계자의 주장**(가) 참고인 이OO의 진술**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오페라단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참고인 이OO은 2018. 3. 14. 우리 위원회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현준은 진짜 배제 많이 된 인물이에요. 예술가 중 대표적인 배제인물이죠.”라고 진술하였다.

(3) 예술위 관계자의 주장**(가) 참고인 이OO의 진술⁵³⁾**

2015년 예술위 창작지원부 과장이었던 참고인 이OO은 201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오페라분야] 사업의 경우 심사단계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위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지 않았고, 비대위에 참여하였던 장수동이 실제 지원을 받았으며, 장수동이 재공연 지원에서 탈락한 것은 심사결과 작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당시 201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오페라분야] 사업에는 정은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정은숙은 문익환 목사의 며느리라 블랙리스트가 작동하였으면 정은숙 역시 심사위원에서 배제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52) 참고인 이강호에 대한 2018. 3. 2.자 전화면담 결과 보고

53)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2.자 전화면담 결과 보고

(4) 국립오페라단 관계자의 주장

(가) 참고인 김OO의 진술⁵⁴⁾

2015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이었던 참고인 김OO은 비대위 관련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바가 없으며, 문체부로부터 비대위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적도 없고, 국립오페라단은 문체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국립오페라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체부가 지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신청인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정황

(1) 신청인의 주장⁵⁵⁾

신청인은 한예종 측에서 진술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인 2015. 8. 10.에 언론을 통해 본건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 이유는 문체부의 외압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아마 장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사가 나면 검찰 측에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형사재판의 기일이 있을 때마다 당일 아침에 “한예종 입시 비리”로 인해 신청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기사가 나갔는데, 그런 기사 역시 한예종이나 문체부에서 개입해서 나가게 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고 하였다. 한예종에서도 계속 재판을 방청석에서 모니터링했다.

한편, 신청인이 한예종 음악원 성악과 교수인 송OO에게 듣기로는, 당시 학과장인 임OO 교수가 2015. 1월경 원장인 황OO에게 신청인은 곧 학교를 나가게 될 것이니까 성악과장으로 임명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황OO가 송OO 교수를 성악과장으로 임명했다고 하였다. 2015. 1월경은 신청인이 국립오페라단장으로 내정된 한OO에 대해 비판활동을 하던 때였다. 그래서 신청인은 문체부 등에서 이에 대한 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하였다.

54)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3. 27.자 전화면담 결과 보고

55) 신청인에 대한 2018. 1. 4.자 진술조서 및 신청인이 2017. 11. 29. 작성한 진술서

(2) 비대위 참여자들의 주장

(가) 참고인 박현준의 진술⁵⁶⁾

비대위, 용성위, 범예혁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박현준은 “신청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등 국보급의 음악계 인사에 해당하고, 특히 세계적인 대회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여 김연아 선수보다도 대단한 업적을 이룬 성악가인데,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는 입시곡 사전 유출을 문제 삼아 신청인을 한예종에서 해임하고,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립오페라단장 건에 대해 비판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박현준은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예종 교수가 김종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 때문에 김종덕은 당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탁계석의 진술⁵⁷⁾

비대위, 용성위, 범예혁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탁계석은 “신청인은 성악계의 히딩크이자, 국보급 인사인데, 이런 사람을 입시요강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탁계석은 지정곡은 매년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바뀌고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라 20일 정도 먼저 알았다고 해도 입시에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파면된 것은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 최지형의 진술⁵⁸⁾

그러나 비대위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최지형은 신청인은 비대위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연관된 사건과 비대위로 인해 촉발된 블랙리스트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최지형은 입시곡이 미리 유출되어도 크게 영향이 없을 수는 있으나, 공식발표가 나기 전에 유출하였으면 규칙을 어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6) 참고인 박현준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57) 참고인 탁계석에 대한 2018. 1. 10.자 진술조서

58) 참고인 최지형에 대한 2018. 3. 2.자 진술조서

(라) 참고인 최OO의 진술⁵⁹⁾

한예종 음악원 성악과 교수인 참고인 최OO는 지정곡은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지정곡을 미리 고지 받는 과정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문체부 관계자의 주장**(가) 참고인 이OO의 진술⁶⁰⁾**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오페라단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참고인 이OO은 “신청인이 형사기소되고 해임된 것이 김종덕과 확실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돈을 받고 한 사람들도 많은데,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꼬투리 잡아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비대위 참여자들 중 김종덕이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한예종 교수인 최OO였기 때문에, 이OO의 후임자인 김OO이 일을 처리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예종 관계자의 주장**(가) 참고인 김봉렬의 진술⁶¹⁾**

당시 한예종 총장이었던 김봉렬은 신청인이 지정곡 유출로 인한 형사기소 및 해임처분된 것은 비대위 활동과는 관계가 없고, 김종덕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히려 김봉렬은 신청인이 입시 지정곡을 두 번이나 유출시킨 점, 이로 인해 지정곡을 없애고 자유곡만으로 입시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던 점, 지정곡 유출 사건으로 한예종의 위상이 격하된 점, 입시공정성을 지켜야 할 교수인 신청인이 지정곡을 유출한 점, 이후에도 신청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처분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

59) 참고인 최OO가 작성한 2018. 2. 4.자 진술서

60)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사서

61) 참고인 김봉렬에 대한 2018. 3. 21.자 녹취서

(5) 한예종 교원일반징계위원회 회의록(2015. 11. 27.)

2015. 11. 27.자 교원일반징계위원회 회의에서는 신청인을 해임할 것인지 정직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일부 위원들은 ① 신청인이 교수로서의 능력이나 역량이 뛰어나고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점, ②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제자를 위해 한 일인 점, ③ 금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①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한예종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결과적으로 입시에 영향을 미친 점, ③ 입시요강을 두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유출한 점, ③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회적 파장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위 위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투표가 이루어졌고, 해임 4명, 정직3월 2명으로 신청인에 대한 해임결정이 이루어졌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이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청와대·국정원의 개입 없이,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문체부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관리·감시하고, 차별대우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 특징적이다. 대법원 2017도11523 사건에서 문제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청와대·국정원·문체부·경찰·문체부 산하기관 등 국가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 등⁶²⁾으로 개인이나 단체를 부당하게 차별대우하였다면, 이 사건은 문체부·문체부 산하기관 등이 문체부와 견해가 다르거나 문체부를 비판한다는 이유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를 부당하게 차별대우하였다는 의혹이 있

62)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이 ‘좌파’, ‘종북’, ‘이념 편향’, ‘문제단체’ 등의 용어로 지칭하면서 지원배제를 강조하거나 지시하였던 대상은 단지 반국가단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등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개인·단체뿐만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박근혜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개인·단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는 사건이다. 즉, 이 사건은 대법원 2017도11523 사건에서 문제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개입된 국가기관의 범위는 좁으나, 국가기관, 특히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김종덕의 인사정책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 사건을 통해 문체부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진상규명 사실

가. 블랙리스트 존재

(1) 문체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임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이OO이 ‘김종덕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오라고 지시하여, 언론에 비대위에 참여한 인물로 보도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여 A4용지 한 장짜리 자료로 정리해 김OO 국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OO이 ‘비대위에 참여한 인물들의 성향이 어떻다는 점에 대해서 동향보고를 작성해 올리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실제로 이OO은 김종덕의 지시로 비대위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까지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이 이OO의 진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당시 예술위 위원이었던 김OO이 이OO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문체부 장관 김종덕의 지시로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이OO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을 비판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위 리스트가 예술정책관 김OO을 통해 김종덕에게 보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예술위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 장OO, 양OO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예술위 위원 김OO이 ‘비대위 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사람 5명(최

지형, 장수동, 탁계석, 박현준, 이강호)이 이후 블랙리스트로 예술위에 내려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② 최지형이 김OO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김OO의 진술을 부인하지 않는 취지의 예술위 창작지원부 과장 이OO의 진술, ④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구두로 전해 들었다는 이OO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비대위 참여자 중 최지형, 장수동, 탁계석, 박현준, 이강호의 이름이 '블랙리스트'로서 예술위에 통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여부

① 이OO이 '문체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실제로 신청인은 비대위 활동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음에도 문체부 소속인 이OO 및 임OO, 한예종 총장인 김봉렬은 신청인이 비대위 활동에 앞장섰다고 알고 있었던 점, ③ 문체부 장관인 김종덕은 신청인이 비대위 활동에 앞장섰다고 알고 있어 신청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한예종 교수였기 때문에 예술위에 지원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아 예술위에 이름을 구두로 전달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인의 이름은 예술위로 통보되지 않았지만, 문체부에서는 장관의 인사정책에 반대하는 인물로 관리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적용에 관한 점

(1) 문체부가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을 방해한 정황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각 진술 및 관련 기사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前 문체부 장관인 김종덕은 문체부 소속 공무원인 임OO, 원OO, 김OO 등을 통해 신청인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비대위 활동을 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비대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임OO, 원OO 등 문체부 공무원은 신청인을 비롯하여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하려 하였으며, 이 사건 기자회견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이익 조치'를 언급하며 위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신청인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신청인은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으로 인해 형사기소, 해임처분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박현준, 탁계석 역시 같은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한예중 총장 김봉렬은 문체부 장관 김종덕으로부터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가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신청인에게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바 없고, 오히려 신청인의 입시요강 사전유출로 인해 한예중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한예중 음악원 성악과 교수인 최○○ 역시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보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으로 인해 형사기소, 해임처분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관한 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으로 인해 형사기소, 해임처분 등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는 진상규명할 수 없었다.

나. 문체부·예술위 등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에게 지원배제 등 불이익을 가하였는지 여부

이○○은 비대위 관련 블랙리스트가 자문위원 위임 배제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김○○은 실제로 비대위 관련 5명의 배제 명단이 문체부에서 예술위로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비대위에 참가하였던 박현준, 탁계석, 최지형, 장수동, 이강호는 실제로 지원배제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 장○○, 양○○,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김○○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그러므로 블랙리스트 실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현재까지는 달리 문체부·예술위 등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에게 불이익을 가한 구체적인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11

(재)국악방송 사장 선임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111

**(재)국악방송 사장 선임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28[(재)국악방송 사장 선임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가. 신청 취지**

신청인 유은선(이하 '신청인')은 2016. 6.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국악방송 사장 후보로 추천되어 현 (재)국악방송 사장인 송혜진과 함께 1순위 유은선, 2순위 송OO으로 후보자에 올랐으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상률의 지시로 순위가 변경되었고, 민정수석실 행정관 김OO가 남편 OOO의 한국작가회의 활동을 문제 삼는 전화를 했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의해 사장 선임에서 탈락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비우호적인 국민을 감시, 통제, 차

별, 배제 등을 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단순히 명단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진술과 관련 문서 및 담당 실무자의 진술을 대조하였는바, 신청인의 국악방송 사장 선임 탈락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붙임 : [(재)국악방송 사장 선임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특28, (재)국악방송 사장 선임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신청인] 유은선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¹⁾

신청인 유은선(이하 ‘신청인’)은 2016. 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재)국악방송(이하 ‘국악방송’) 사장 후보로 추천되어 현 사장인 송혜진과 함께 1순위 유은선, 2순위 송혜진으로 후보자에 올랐다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하 ‘교문수석’) 김상률의 지시로 순위가 변경, 보고되었다는 것을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임OO에게 들었다.

검증과정 중인 6. 30.경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김OO가 전화해 “남편(김치영)이 한국작가회의 활동하는 거 알고 있냐?”며 이력을 물었고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7. 22. 미르재단 이사였던 송혜진이 국악방송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송혜진이 사장으로 임명되고 국악계에는 송혜진이 근무했던 숙명여자대학교 전통예술대학원 자리에 김상률 교문수석의 부인 OOO가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 그렇게 실행되었다.

또한 신청인은 2016. 10. 10. 국정감사장에서 송혜진과 문체부 예술정책관 B의 대화를 들었는데, 송혜진이 “그냥 국장님이 추천한 거라고 할까요?”라는 질문에 B이 “네. 무조건 제가 추천했다고 하세요.”라고 했으며 B이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1) 신청인 유은선 조사신청서(2017. 11. 30.)

신청인은 남편 000의 이력으로 국악방송 사장 선임에서 탈락한 블랙리스트 피해자이자, 송혜진의 사장 선임과 김상률 수석 부인 000의 교수 임용 과정에 주고받기식 거래에 의한 피해자라며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제3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8. 1. 5.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의결되었다.²⁾

나. 조사의 목적(규명과제)

신청인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국악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서 탈락하였는지 여부를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표-1] 문건 등 자료 조사 목록

연번	서명	작성자	작성일	입수일
1	기존 리스트-149명	오OO		2017. 8. 17.
2	국악방송 정관	국악방송	2015. 1. 22.	2017.12.26.
3	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 계획(안)	공연전통예술과	2016. 2. 19.	2018. 3. 16.
4	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계획	공연전통예술과	2016. 3. 29.	2018. 3. 16.

2) 제21차 전원위원회 의결서(2018. 1. 5.)

연번	서명	작성자	작성일	입수일
5	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계획	공연전통예술과	2016. 6. 1.	2018. 2. 19.
6	국악방송 사장[문체부 소관]	공연전통예술과 황OO	2016. 7. 1.	2018. 2. 19.
7	국악방송 사장 임명계획 보고	공연전통예술과	2016. 7. 19.	2018. 1. 6.
8	(재)국악방송 사장 임명	공연전통예술과 황OO	2016. 7. 20.	2018. 1. 6.
9	미르재단 이사 지낸 송혜진 후임교수에 김상률 부인 추천	동아일보	2016. 11. 3.	2018. 3. 20.
10	제346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국회사무처	2016. 11. 16.	2017. 11. 25.

2. 신청인 등 대인조사

[표-2] 신청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유은선	신청인	진술조서 (2017. 2. 8.)
2	임OO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진술조서 (2017. 2. 8.) 2차 면담보고 (2018. 3. 16.)
3	B	예술정책관	진술조서 (2018. 1. 5.) 2차 면담보고 (2018. 3. 23.)
4	이OO	KBS PD, 국악방송 사장 선임 후보자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2. 6.)
5	황OO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면담보고 (2018. 2. 20.) 2차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27.)
6	정OO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면담보고 (2018. 3. 5.)
7	김OO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면담보고 (2018. 3. 5.)
8	OOO	공연전통예술과 주무관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13.)
9	OOO	공연전통예술과 주무관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13.)
10	김OO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행정관	면담보고 (2018. 3. 15.)
11	오OO	교문수석실 행정관	면담보고 (2018. 3. 20.)
12	나OO	운영지원과 서기관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27.)

제3절 | 조사 내용

1. 국악방송 사장 선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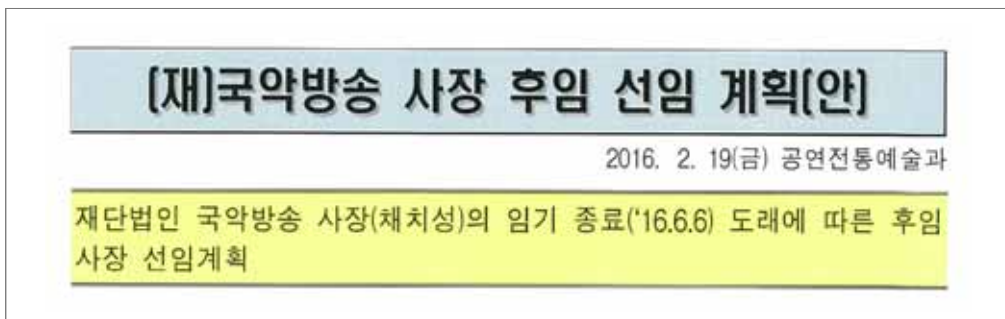
가. 정관 및 절차

(재)국악방송(이하 ‘국악방송’)은 전통 및 창작 국악 보급 교육과 국악의 대중화를 위하여 2000년 2월 설립된 국악 전문 공영라디오 방송국으로 문체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다. 국악방송 정관 제7조(임원의 임명) 제1항은 “사장과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³⁾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모 절차 없이 문체부 장관이 사장을 선임한다. 국악방송 사장 선임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후보자를 복수로 지정해 장관에게 보고하고 최종안을 작성,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인사협의서를 발송하여 인사 검증을 받아 결정한다. 국악방송 사장은 정관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장관의 재량이 큰 영역이다.

나. 국악방송 사장 선임 과정

국악방송 채치성 사장의 임기가 2016. 6. 6.로 만료되면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는 2016. 2. 19. 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채치성 사장은 당시 연임을 원했으나 문체부 내부 협의를 거쳐 연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후임자 선임을 시작하였다.

[그림-1] 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 계획(안)



3) (재)국악방송 정관(2015. 1. 22.)

공연전통예술과는 이OO KBS PD, 유은선 국악방송 본부장, 서OO 고려대 명예교수 등 7~8명 정도에 대한 국악계, 방송계 평판 검증을 거쳐⁴⁾ 2016. 3. 29. 1차 후보자로 유은선 국악방송 본부장, 송OO MBC 전PD, 이OO KBS 전PD, 박OO KBS 전PD를 선정, 보고하였다.

[그림-2] 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계획

(재)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계획						
결심요망	지시조치	상황보고	긴급	보통	보고일	보고자
					'16.3.29(화)	공연전통예술과
붙임 (재)국악방송 사장 후보(안)						
후보자	주요 경력 사항		비 고			
유은선 (1962년,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국악과 졸업(작곡) ○ 이화여대 음악대학원(이론) ○ 중앙대 예술대학원(예술경영) ○ 한양대학교 박사(한국음악학) ○ 前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 前 백남준문화재단 사무국장 ○ 세종문화회관 상청각 전문위원 ○ 현, 국악방송 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전공자(작곡·이론)로서 국악분야 이론은 물론 풍부한 현장 경험(국악연주단 운영, 작곡)을 가지고 있는 국악전문가 ○ 현재 국악방송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국악방송 조직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국립국악원 연구실장을 역임하여 조직관리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 			
송OO (1956년, 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고등학교 졸업 ○ 한국OOO대학교 영어과 졸업 ○ MBC문화방송 프로듀서 ○ MBC문화방송 예능국 국장 ○ 제12회 언론상 기획취재상 ○ 공로상, 우수상, 특별상(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PD출신으로 공연예술분야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는 실력자로서, 방송분야 전반에 관한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 공연과 사업 기획능력을 가지고 있음 ○ MBC예능국장(프로듀서 총괄국장)을 역임하여 조직 통솔 및 관리 운영 경험이 풍부함 ○ 			
후보자	주요 경력 사항		비 고			
이OO (1952년,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O고 졸업 ○ OOO대 윤리대 졸업 ○ TBC 근무 ○ 前 KBS 1TV 프로듀서 ○ 前 대구방송총국 차장 ○ 前 국립극장 공연기획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예술 관련 공연, 방송 등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전통예술분야 기획가로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KBS에서 국악분야 전문PD로 활동하여 국악과 방송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 			

4) 김OO 전화통화보고(2018. 3. 14.)

<p>박○○ (1955년 경북 성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 작곡과 졸업 ○○○대 대학원 의공학 박사 ○前 KBS 프로듀서 ○前 한국방송작가아카데미 원장 ○前 국악방송 자문위원 ○前 서울시립 노원청소년수련관 관장 ○前 국악방송 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곡을 전공하고 KBS PD로 근무하여 국악과 방송 분야에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음 ○ ○
-------------------------------------	---	--

공연전통예술과는 2016. 4. 19.에도 후보군을 작성, 보고하였다. 이○○, 박○○는 제외하고 1순위 유은선, 2순위 송○○으로 압축, 검토되었고 신청인은 이 때 1순위 후보자였다.

[그림-3] 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계획

(재)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계획						
결심요망	지시조치	상황보고	긴급	보통	보고일	보고자
					'16.4.19(화)	공연전통예술과

<p>검토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대상자 : 2명
----------------------	--

대상자	학력	주요 경력	추천순위
<p>유은선 (62년생, 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국악과(작곡) ○이화여대 음악대학원 (이론) ○한양대 박사한국음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백남준문화재단 사무국장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전문위원 ○현, 국악방송 본부장 	1순위
<p>송○○ (56년생, 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대 영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MBC문화방송 피디 ○MBC문화방송 예능국장 	2순위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국악방송 사장 선임 실무를 맡았던 사무관 김○○에 따르면 당시 공연전통예술과장 임○○가 신청인을 사장 후보자로 추천했고 후보군을 작성해 청와대 교문수석실과 협의했다. 임○○도 신청인이 국악방송 사장으로 적격이라고 판단해 추천하였다고 진술했다.5) 통상 소속기관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최종안을 작성할 때까지 교

문수석실과 협의하고 최종 협의가 끝나면 운영지원과를 거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인사 검증을 보낸다. 검증이 끝나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인사협의안을 올려라’는 통보가 운영지원과로 오면 관련 과에서 인사협의서를 송부한다. 최종 결정은 인사수석실에서 운영지원과로 “OOO으로 결정됐다. 혹은 OOO을 선임하라.”고 알려오면 운영지원과에서 내용을 관련 과에 통보,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⁶⁾

[그림-4] 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계획

(재)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계획

결심요망	지시조치	상황보고	긴급	보통	보고일	보고자
					16.6.1(수)	공연진통예술과

보고 개요

- 계단별인 국악방송 사장(재차남)이 임기종료(16.6.6) 도래에 따른 후임 사장 선임계획 보고

검토 대상자

- 검토대상자 : 3명

대상자	학력	주요 경력	추천순위
유은선 (52년생. 여)	○서울대 국악과작곡 ○이화여대 음악대학원 (이론)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백남준문화재단 사무국장 ○서울문화회관 상임각 전문위원 ○현. 국악방송 본부장	1순위
송해진 (50년생. 여)	○충남여지고등학교 ○서울대 국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수료	○숙명여대 전통예술대 교수 ○숙명가야금 연주단 대표 ○현.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2순위
이○○ (52년생. 남)	○경남고등학교 ○서울대 문리대	○현. 국립국악 공연기획부장 ○현. KBS 피디 ○현. 대구방송총국 차장	3순위

검토의견

- 유은선 후보자의 경우
- 송해진 후보자는
- 이○○ 후보자의 경우

5) 김OO 면담보고(2018. 3. 5.), 임OO 진술조서(2018. 2. 8.)

6) 나OO 전화통화보고(2018. 3. 27.)

문체부 내부 논의와 교문수석실 협의를 거쳐 2016. 6. 1. 최종안을 작성, 1순위 유은선, 2순위 송혜진, 3순위 이OO을 후보안으로 한 선임계획서를 공연전통예술과에서 작성해 정관주 차관, 김종덕 장관 보고까지 마쳤다. 보고서에는 각 후보자의 장단점을 두루 적시하였고, 검토의견까지 기술하였다. 제외되었던 이OO 후보자가 포함되었고 현 국악방송 사장인 송혜진이 새로운 후보자로 등장했다. 장관 보고를 마칠 때까지 1순위는 여전히 신청인이었다. 이후 최종안을 인사수석실에 송부해 인사 검증을 거쳤다.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황OO은 인사검증에서 ‘문제없다’고 통보되었기 때문에 인사협의서에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인사검증 통보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⁷⁾ 주무관 OOO 또한 당시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통보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⁸⁾

인사 검증이 완료된 인사협의서는 2017. 7. 1. 인사수석실로 송부되었는데 이때 순위가 바뀌었다. [그림-5]와 같이 1순위 송혜진, 2순위 유은선으로 순위가 변경되었고 3순위였던 이OO은 청와대 보고 최종안에서는 제외되었다.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6. 1.자 문체부 내부 보고에서는 두 후보 모두 장단점이 적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와대 인사협의서에는 송혜진의 “방송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계” 부분이 제외되고 장점만 적시되었다. 유은선은 내부 보고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였다.

[그림-5]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사협의서

<p>1. [재]국악방송 사장 (문체부 소관)</p>
<p>가. 인선 배경</p> <p>○ 채치성* (재)국악방송 사장 임기만료(16.6.6.)</p>
<p>나. 추천 후보자</p> <p>○ 문체부장관이 관련 전문성과 경험 및 문화계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국악 및 전통예술과 방송 관련 기관 경험자를 추천</p>

7) 황OO은 인사수석실 인사 검증시 이력서, 정보공개동의서 등을 메일로 송부한다고 진술했다. 황OO 2차 전화통화보고(2018. 3. 27.)

8) OOO 전화통화보고(2018. 3. 12.)

성명	주요 학력	주요 경력	검증결과
① 송혜진 (55세, 충남)	충남여고 서울대 국악과	·前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前 국악방송 편성제작팀장 ·現 숙명가야금 연주단 대표 ·現 숙명여대 전통예술대 교수	
② 유은선 (54세, 인천)	국악고 서울대 국악과	·前 여성국악실내악단 다스름 대표 ·前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前 (재)백남준문화재단 사무국장 ·現 국악방송 본부장	

다. 검토의견 :

- 1순위 송혜진 후보자는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89-01년)을 역임하여 행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통예술분야의 학문적 연구, 공연 기획, 후학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전반적인 국악전문가로 알려져 있음
- 수상이력 : 동아일보 신춘문예(음악평론, 87년), KBS 국악대상(출판미디어부문, 06년), 관재국악상(11년), 난계악학대상(15년)
 - 특히 숙명여대 전통예술대 교수(01년-) 및 숙명가야금연주단 대표로 학계뿐만 아니라 공연기획 및 공연활동을 하여 대중적 인지도가 비교적 높으며, 차분한 성격에 언변이 뛰어나 타인에 대한 설득력이 높으며 조직관리 능력도 확보하고 있다는 평.
 - 향후 국악방송의 개혁을 통해 국악방송을 국악 및 한국전통문화 예술의 보급과 진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선순위로 추천함

○ 2순위 유은선 후보자는 국악전공자(작곡·이론)로서 국악분야 이론은 물론 풍부한 현장 경험(국악연주단 운영, 작곡) 및 국립국악원 연구실장을 역임(11~13년)한 국악전문가로, 현재 국악방송 본부장으로 근무(14년~)하고 있어 국악방송 조직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이해와 국악방송 조직관리 능력에 강점이 있음

· 경력사항 : 여성국악실내악단 다스름 대표 역임, KBS·MBC·EBS·KTV·아리랑 TV 진행 및 구성작가 활동, 국립극장 창극단 기획, 서울시국악관련 악단 기획, 남산국악당 기획, 백남준문화재단 사무국장 등

- 특히, 오랜기간 동안 방송 및 공연 관련 활동(90년~)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인맥 및 대외소통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다만, 프리랜서 기간이 길고 조직생활이 짧은 한계로 인해 조직을 장악하고 직원들을 이끌고 나가는 행정적인 능력 및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 후순위로 추천함

담당 실무자 황OO은 2016. 7. 1. 인사협의를 작성해 운영지원과 인사 담당 사무관 나OO에게, 나OO은 인사수석실 행정관 신OO에게 각각 송부하였다. 나OO은 국악방송 사장 선임권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통상 해당 과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OO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종 결과 또한 신OO에게 유선으로 통보받았는데 그 내용은 “OOO으로 결정됐다. 혹은 OOO을 선임하라”였다. 국악방송 현 사장이 송혜진인 것으로 미뤄볼 때, 송혜진으로 결정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것이라고 했다.⁹⁾ 인사협의를 작성한 황OO은 운영지원과에서 유선으로 통보를 직접 받긴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간혹 둘 중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변이 오기도 하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지 않는 것으로 볼 때 1순위였던 송혜진으로 통보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¹⁰⁾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연전통예술과는 2016. 7. 19. 송혜진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국악방송 사장으로 선임한 임명계획을 보고하였고 7. 22. 문체부장관은 송혜진을 국악방송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9) 나OO 전화통화보고(2018. 3. 27.)

10) 황OO 2차 전화통화보고(2018. 3. 27.)

[그림-6] 국악방송 사장 임명계획 보고


(재)국악방송 사장 임명계획 보고

결심요망	지시조치	상황보고	긴급	보통	보고일	보고자
					'16.7.19(화)	공연전통예술과

보고 개요

- (재)국악방송 사장 후보자(송혜진, 숙명여대 전통예술대 교수)의 인사검증이 완료되었기에 사장 임명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 우리 부 추천배경
 - 국립국악원 연구사 및 연구관(89-01년) 역임, 행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 전통예술분야의 학문적 연구, 공연 기획, 후학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반적인 국악전문가로 국악방송 개혁의 적임자
- 경찰청 신원조회 및 경력사유 조회 결과 이상없음 회신

*** 후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임기	학 력	주요경력
	송혜진 1960.0000	2016.7.24.~ 2019.7.23. (3년)	충남여고 서울대 국악학과(가야금)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학박사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원	숙명여대 교수 숙명가야금연주단 대표

2. 신청인 유은선과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가. 신청인 남편 김치영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신청인은 남편 000의 작가회의 활동이 문제되어 국악방송 사장 선임에서 탈락되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남편 000은 한국작가회의의 소속 회원이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000이 소속한 한국작가회의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다. 한국작가회의는 “2010년 소고기 파동 시국선언서 참여 단체”로 분류되어 문체부 예술정책과 “기존 리스트-149명”으로 관리되었다.

[그림-7] 예술정책과 오진숙이 관리하던 「기존 리스트 149명」

6 기존관리 리스트 - 149명

구분	내용
④작가회의	2010년 소고기파동 시국선언서 참여단체 작가회의 소속 ⑤고명철, ⑥박몽구, ⑦신용목 / ⑧광주전남소설가협회

(가)관주무현제라던 김희진, 유은선(시라비레)이 드림, 조국(대안연수)

이에 따라 남편 000의 이력이 신청인의 국악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문제가 되었을 개연성은 있다.¹¹⁾ 하지만 남편 000의 이력이 문제되어 사장 선임에서 탈락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다. 실무자 황00은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와 연관성이 있다면 후보자에도 오르지 못했을 것으로 송혜진의 화이트리스트 연관성은 차치하고 적어도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은 없을 것이라고 진술했다.¹²⁾

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행정관 김00 개입 여부

신청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김00가 2016. 6월말쯤 남편 000의 작가회의 활동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전화해 남편의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았고 이 통화를 계기로 선임 과정에서 탈락을 예상했다고 진술했다.¹³⁾

조사 결과, 김00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14. 7.부터 2017. 6.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문체부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알고 있던 것과 달리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아닌, 특별감찰반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김00은 면담조사에서 유은선에게 그런 전화를 한 바 없고, 유은선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했다. 소속기관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주로 담당하며 세평 작성 작업을 간혹 하기는 했으나, 정보 수집 시 통상 대상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반대편에 있는 사람·관리자 정도를 접촉하지,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 설명을 하거나 정보를 흘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소속기관 기관장 후보자라면 민간인인데,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과 이런 형태의 통화를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¹⁴⁾ 신청인으로부터 실제로 이런 내용을 들었다는 임00은 상대방이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특정해서 들은 바는 없고, 누군가 남편의 이력을 문제 삼는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신청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¹⁵⁾

위원회는 2017. 12. 4. 청와대에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근무자의 명단과 연락처를

1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DB 중 순번 304, 한국작가회의

12) 황00 면담보고(2018. 2. 20.)

13) “남편(000)이 작가회의 활동하는 거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제가 남편과 같이 안 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고 대답했고 김행정관이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한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냐?’라고 했더니 그냥 얼버무리고 끊었습니다.” 유은선 진술조서(2017. 12. 18.)

14) 김00 면담보고(2018. 3. 15.)

15) 임00 2차 면담보고(2018. 3. 16.)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개인정보보호와 조사 권한 미비를 이유로 거부되어 신청인에게 전화했다던 행정관의 실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김상률 교문수석, B 예술정책관의 개입 여부

가. 김상률 수석의 순위 변경 지시 여부

[그림-4],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6. 1.자 공연전통예술과에서 작성해 김종덕 장관의 보고까지 마친 문체부 내부보고 순위와 2016. 7. 1.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낸 인사협의서의 후보자 순위가 바뀌었다.

신청인은 진술에서 송혜진이 갑자기 후보자로 추천된 것은 김상률과의 친분이 작용한 것이며 실제로 임OO로부터 김상률이 1순위 유은선, 2순위 송혜진의 순위를 바꾸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임OO의 조사 결과, 김상률이 인사협의서의 후보자 순위 변경 지시를 했다고 말한 바 없으며 당시 김상률, 송혜진, 김소영 문체비서관이 모두 숙대 교수로 재직해, 김상률 수석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 것을 신청인에게 전했다고 진술했다.¹⁶⁾

당시 언론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 동아일보 <[단독] 미르재단 이사 지낸 송혜진 후임교수에 김상률 부인 추천> 기사¹⁷⁾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음악과 교수 출신인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56)이 자신의 후임 교수 자리에 김상률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56)의 부인인 차OO 씨(55)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사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측근인 차OO 주도로 설립된 미르재단에서 이사를 지냈다. 숙명여대 교수인 김 전 수석은 차 씨의 외삼촌이고, 김 전 장관은 차 씨의 홍익대 영상대학원 재학 시절 스승이다. 국악계의 한 인사는 “송 교수가 국악방송 사장으로 가는 대신 김 전 수석의 부인을 교수로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았다”고 말했다. … 숙명여대 측은 차 씨의 교수 임용이 당시 송 교수의 추천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송 교수가 국악방송 사장으로 임명된 배경을 놓고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 씨와 김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6) 임OO 진술조서(2018. 2. 8.)

17) <동아일보>, 2016. 11. 3.자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은 쟁점이 되었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¹⁸⁾

유은혜 의원 :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의 오 모 씨가 가야금 산조 전공 주임 교수이고 2016년 8월에 초빙교수로 임용이 됐는데요. 이 전임자가 송혜진 현재 국악방송 사장님이지요. 이 분은 미르재단 이사였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나가면서 김상률 전 수석의 부인을 교수로 추천해서 임용이 됐습니다. 임용과정을 보니 까 이 규정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전임 교수가 추천하면 임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편, 공연전통예술과 실무자들은 인사 과정에서 후보자가 바뀌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진술했다. 공연전통예술과장 정OO은 문체부 내부 결재와 달리 청와대 인사협의서 순위가 바뀌어 올라간 것은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종종 있는 일로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¹⁹⁾ 당시 교문수석실 선임행정관 오OO 또한 협의 과정 중 순위가 바뀌는 것은 인사 일련의 과정일 뿐, 문제될 것은 없고 현 정부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다.²⁰⁾ 다만, 정OO, 황OO 등은 신청인이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실장 시절 인사 문제로 징계건이 있어 장차관 보고가 올라가면서 후보자 순위가 바뀐 것이 아닌가 추정했다. 조사 결과, 신청인은 실제로 2011. 2.부터 2014. 2.까지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했고 2011. 8. 26.자 무용감독 채용부적정으로 견책, 2013. 5. 3.자 겸직허가위반으로 견책 등 2건의 징계건이 있었다.²¹⁾ 김OO, 황OO, OOO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신청인이 처음 후보자로 오를 때부터 과에서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었고 통상 징계건은 서류에 올리지 않고 보고 과정에서 구두로 전달된다고 진술했다.²²⁾ 신청인을 추천했던 임OO는 징계건을 당시 인지하고 있었으나 후보자로 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후보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했다.²³⁾

위원회는 공연전통예술과에서 최종 보고안을 작성하고 운영지원과를 거쳐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인사협의서가 넘어가는 한 달 사이에 후보자 순위가 바뀐 구체적인 이유는

18) 20대 346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회의록(2016. 11. 16.)

19) 정OO 면담보고(2018. 3. 5.)

20) 오OO 면담보고(2018. 3. 20.)

21)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OOO과 통화(2018. 3. 15.)

22) 황OO 면담보고(2018. 2. 20.), 김OO 면담보고(2018. 3. 5.), OOO 전화통화보고(2018. 3. 12.)

23) 임OO 면담보고(2018. 3. 16.)

밝힐 수 없었다. 징계건이 문제가 되어 인사협약서의 순위가 바뀌었는지, 외부의 압력이 작동하여 순위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장관 임면인 소속기관 기관장 선임 과정은 장관의 재량이 큰 영역이고, 공식적인 서류를 남기지 않고 유선으로 결정이 통보되기 때문에 유력한 참고인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국악방송 사장 선임 실무를 담당했던 김OO은 애초에 송혜진을 후임 사장으로 염두에 두었다면 문체부 내부 결정에서 1순위로 송혜진을 올렸을 텐데 인사협약서에서 순위가 바뀐 것으로 볼 때 청와대의 지시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²⁴⁾ 하지만, 현재 유의미한 진술을 해 줄 교문수석 김상률이 구속되어 있는 등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어 더 이상의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나. B 예술정책관의 개입 여부

신청인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송혜진이 “그냥 국장님이 추천한 거라고 할까요?”라고 묻자 “네, 무조건 제가 추천했다고 하세요.”라고 대답했다며 문체부 내부에서는 예술정책관 B이 국악방송 사장 선임에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장 임OO는 1순위 유은선, 2순위 송혜진으로 직접 보고했는데 B이 순위를 없애고 ‘가나다’ 순으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황OO에게 해 송혜진을 상위에 두게 했다고 진술했다.

B은 채치성 사장의 임기 만료로 후임자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압력 없이 송혜진을 직접 추천했다고 했다. 채사장에게 이OO KBS 전 PD를 추천받아 만나봤으나 조직의 장으로서 맞지 않다고 판단, 이PD에게 송혜진을 추천받았다고 진술했다. 국감장에서의 대화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라고 했다.²⁵⁾ 이에 대해 이OO은 B의 진술이 맞다고 했다. 이OO에 따르면 당시 B은 송혜진을 모르는 상황이었고, 미르재단 이사, 문화융성위원이었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했을 뿐더러 당시에는 미르재단 이사직이 문제가 되던 시점도 아니었다고 했다. 사람 중심으로 봤을 때 송혜진이 적격이라고 판단해 추천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²⁶⁾

인사협약서 발송 전 B은 김종덕 장관에게 송혜진을 최종 보고했고 장관은 ‘B국장이 직접 만나보니 괜찮았다면 청와대 인사검증만 통과되면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아 송혜

24) 김OO 면담보고(2018. 3. 5.)

25) B 진술조서(2018. 1. 5.)

26) 이OO 통화보고(18. 2. 6.)

진을 상위에 두도록 하기 위해 ‘가나다’ 순 지시를 했을 수는 있겠으나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다.²⁷⁾ 황OO은 사장 선임 과정 중 B이 ‘가나다’로 순서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기는 하지만, 최종 인사협의서에는 1순위 송혜진, 2순위 유은선으로 직접 작성해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송부하였다고 진술했다.²⁸⁾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상률이 청와대 인사협의서에 후보자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상률 전 교문수석이 당시 미르재단 이사, 문화융성위원이었던 송혜진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의 당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상률 전 교문수석의 조사가 필수이나 위원회의 한계상 조사를 하지는 못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신청인과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신청인은 남편 OOO의 한국작가회의 활동이 문제되어 국악방송 사장 선임에서 탈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OOO이 소속된 한국작가회의는 “2010년 소고기 파동 시 국선연시 참여 단체”로 분류되어 예술정책과에서 관리되고는 있었으나 OOO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OO가 전화해 남편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고는 하나 김OO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청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인사 검증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인사협의서에 올라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인사검증 과정 및 문체부의 선임과정에서 탈락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27) B 2차 면담보고(2018. 3. 23.)

28) 황OO 면담보고(2018. 2. 20.)

2. 김상률 교문수석, B 예술정책관의 개입 여부

김종덕 장관의 보고까지 마친 문체부 내부보고 순위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낸 인사 협의서의 후보자 순위가 바뀐 것은 사실이었다. 신청인은 송혜진이 교문수석 김상률과의 친분으로 갑자기 후보자에 올랐고 김상률의 순위 변경 지시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임OO는 순위 변경 지시를 직접 들은 바 없고 추정된 것을 신청인에게 전달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문체부 내부에서는 예술정책관 B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B은 이OO PD의 추천으로 송혜진을 만나 김종덕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였다고 했고 이상흡 또한 송혜진을 B에게 추천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B이 후보자로서 송혜진을 추천한 것만으로는 후보자 순위변경이나 신청인의 선임 탈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다만, 김상률을 조사하지 못한 점과 사장 선임 과정의 공식적인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한계가 있어 후보자 순위가 외압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없었다. 신청인의 주장과 언론 보도처럼 교문수석 김상률의 개입으로 송혜진이 사장이 되었다면 이는 화이트리스트에 의한 피해 사례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위원회 조사 권한의 한계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12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의혹 사건



112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공34[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12년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던 중, 같은 해 7. 4. 놀이패 ‘신명’의 ‘일어서는 사람들’을 서울 광화문북측광장에서 공연하기 약 1주일 전에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공연 내용, 수입 등’ 등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를 2~3차례 받은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문화연대’ 등의 단체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공연 취소’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7. 4. 공연 당일 공연장에 사복 차림의 기관원이 공연장에 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고, 이후 청와대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으나 당시 공연을 준비하던 중에 예기치 않은 전화를 청와대로부터 받아서 연극제 및 연극제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공연에 대한 사찰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규명하여 줄 것을 주요 취지로 위원회에 조사 신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2012. 7. 4.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의 공연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해서 ‘공연 내용’과 ‘공연 수입’ 등을 문의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와 당시 전화를 한 업무담당자는 ‘광화문 북측광장은 경호구역은 아니지만, 바로 인접한 구역’이기에, ‘경호임무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인사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도로로 주변 지역의 상황에 대해 경호상 취약성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했다는 이유로 전화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당시 경호담당자가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소속 신분을 밝힌 데 이어 본인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신청인에게 문의한 자료를 수령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신청인이 의혹으로 제기하는 사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붙임 :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공34,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의혹 사건

[신청인] 임인자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임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연극인으로서 2005년부터 ‘서울변방연극제’의 사무국장으로서, 2010년부터는 예술감독으로서 활동했다. 2012년 신청인은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기간 : 7. 4.~7. 20.)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면서 놀이패 ‘신명’의 ‘일어서는 사람들’을 연극제의 개막작으로 초청하였다. 연극 ‘일어서는 사람들’은 1980년 5월 ‘광주민중화운동’을 다룬 작품으로서, 1988년에 초연된 이래 계속 각색되어 2012

년에 재공연 하게 된 ‘마당극’ 작품이다. 서울변방연극제에서의 공연은 2012. 7. 4. 광화문북측광장에서 개막 공연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개막 공연이 있기 며칠 전 ‘청와대 경호실’이라며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공연 내용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와서 신청인은 매우 당황했고, 이후 또 전화가 왔기에 신청인은 ‘왜 이런 전화를 하는가’ 하고 따지고 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문화연대’ 등의 단체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공연 취소’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연이 있기 전 같은 경호실에서 또 전화가 와서 ‘공연 소득은 어떤지’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 신청인은 전화통화 후 놀이패 ‘신명’ 관계자에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공연은 계속 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을 경우 저항’하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연을 진행하였다.

7. 4. 공연 당일, 신청인은 ‘공연장에 사복 차림의 기관원이 공연장에 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고, 이후 ‘청와대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신청인은 당시 공연을 준비하던 중 예기치 않은 전화를 청와대로부터 받아서 연극제 및 연극제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공연에 대한 사찰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규명하여 줄 것을 주요 취지로 2017. 11. 30. 위원회에 조사 신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원회는 본 건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기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2017. 10. 20.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의결하였다.

나. 조사 목적

2012. 6월말~7월경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관계로 청와대 경호실에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는지 여부와 전화를 하였다면 그 이유와 목적 등을 조사하여 사찰 여부를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자료조사

연번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수집일자
1	연극 정치와 만나다	한겨레신문	2012. 7. 1.	2017. 10. 13.
2	연극 없는 연극, 정치 없는 정치 -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팸플렛 사본	서울변방 연극제	2012.	2017. 10. 13.
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2011. 9. 29.	2018. 3. 22.
4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2009. 10. 8.	2018. 3. 22.
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경호처	2012. 2. 2.	2018. 3. 22.
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경호처	2012. 5. 1.	2018. 3. 22.
7	대통령 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 경호처	2015. 1. 6.	2018. 3. 22.
8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소개(신청인 이메일)	신청인	2012. 7. 3.	2018. 3. 26.
9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초청 아티스트 및 전 스텝 여러분께 올리는 글(신청인 이메일)	신청인	2012. 7. 3.	2018. 3. 27.
10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행사계획서(서울시 제출)	신청인	2012. 6.	2018. 3. 27.
11	'일어서는 사람들' 공연장 배치 도면	신청인	2012. 6.	2018. 3. 27.
12	광화문광장 시설사용 허가 알림(제14회 변방연극제 개막작 공연)	서울특별시	2012. 6. 8.	2018. 3. 27.
13	광화문광장 시설사용 허가서	서울특별시	2012. 6. 8.	2018. 3. 27.

2. 신청인 등 진술조사

연번	진술인	사건관계	방식	일자
1	임인자	신청인	전화면담	2018. 3. 22.
2	정OO	당시 놀이패 신명 기획실장(현 대표)	전화면담	2018. 3. 22.
3	S	당시 청와대 경호관	서면 답변서	2018. 3. 30.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개요

서울변방연극제는 지난 1999년 봄 젊은 연극 연출가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무대언어의 개발’, ‘예술과 사회의 접속’을 표방하며 사회적 강한 연극제를 연 데서 시작하였고, 14회를 맞이하는 2012년에는 ‘연극 없는 연극, 정치 없는 정치’를 주제로 연극과 정치, 연극과 사회의 관계와 쟁점들을 다루었다.¹⁾

프로그램 일정표는 아래 표와 같다.²⁾

[표-1]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프로그램 일정표

작품명	공연단체/ 연출가	일정	장소	예매
오월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	놀이패 신명 (박강의 연출)	7. 4(수) 오후6시 7. 5(목) 오후6시	광화문광장	무료
개막전 특별상영회 ‘너의 현대 나의 현대’	조희경	7. 3(화) 오후8시 7. 8(일) 오후1시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무료
써클(a circle)	제니 사비지 & 제임스 타이슨	7. 4(수) 오후 5시~10시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무료
이야기 - 드라마 혹은 미스터리*	조희경	7. 6(금) 오후8시 7. 7(토) 오후3시, 6시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전석 20,000원
움직이는 집* (A Mobile House)	사카구치 교헤	7. 7(토)~8(일) 오후 7. 10(월)~20(금) 전시	아르코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무료
기이한 마을버스 여행 - 성북동*	서울괴담 (유영봉 연출)	7. 7(토) 오후7시~ 8(일) 오후7시	성북동 (한성대입구역)	무료
new home*	차지량	7. 7(토) 오후8시 7. 14(토) 오후8시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10,000원 5,000원
Three ways to Elis	전소정	7. 8(일) 오후5시~ 7. 9(월) 오후8시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전석 5,000원
인터뷰 프로젝트 연작 시리즈*	이현정	7. 10(화) ~ 12(목) 오후 6시~9시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전석 5,000원
공상의 뇌 2012*	장애인극단판 & 류세이오 류	7. 11(수)~12(목) 오후 8시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무료

- 서울변방연극제 공식초청작 (*)표시는 초연작품

1) 한겨레신문, 「연극 정치와 만나다」, 2012. 7. 1.

2)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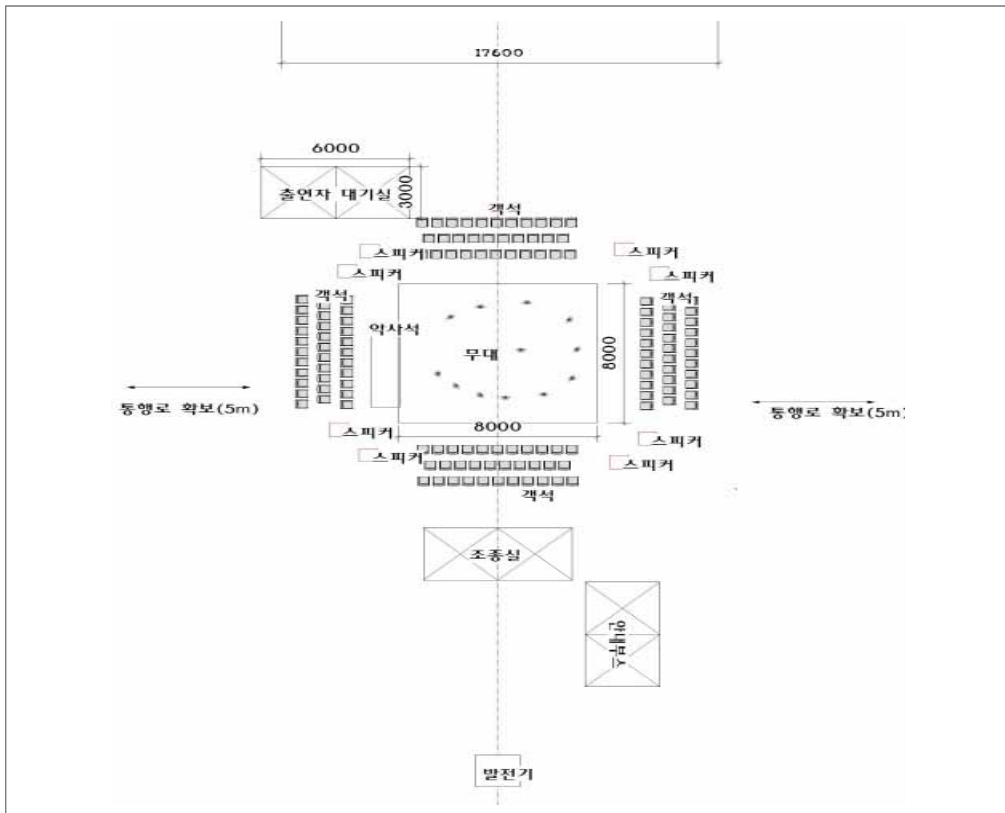
서울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목적으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자는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도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시에서는 검토 후 사용허가 사항을 통지하게끔 되어 있다.

신청인은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를 준비하면서 광화문광장 인터넷홈페이지(<http://plaza.seoul.go.kr/gwanhwamun>)를 통해 신청하였고, 서울시로부터 사용허가 통지를 받았고 일정 액의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의 공연 장소인 광화문북측광장은 [그림-1]에 표기한 위치와 같다.

라.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 공연장 배치도면

[그림-2] '일어서는 사람들' 공연장 배치도면



2. 대통령 경호처에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한 경위

가. 신청인 진술 내용

신청인은 2012. 7. 4.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밝힌 곳으로부터 한 번이 아닌 2~3회 전화를 받았으며,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전화를 건 상대방 측에서 먼저 소속을 밝혔고, 자신의 휴대폰에 찍힌 번호에도 일반 유선전화 번호여서 청와대 경호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⁵⁾

신청인은 2017. 11. 30. 위원회 조사신청 시에는 사건 당시 대통령 경호처(신청인은 ‘청와대 경호실’로 표현)에서 전화를 한 담당직원에 대해 특정을 하지 못했으나, 당시 신청인이 사용하던 인터넷 이메일의 과거 사용 내역을 검색하여 2012. 7. 3. 14:55에 ‘S 경호관’의 이메일로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소개자료’와 ‘일어서는 사람들 공연장 배치도면’, ‘행사계획서’, ‘광화문광장사용승인서’ 등을 첨부하여 송부한 내역이 있음을 확인 해주었다.⁶⁾

같은 날 08:59, 신청인은 위 S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하기에 앞서 당시 서울변방연극제에 참여한 예술가들 30여명에게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초청 아티스트 및 전 스태프 여러분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연극제 개막에 앞서 감사의 인사와 안내 등의 내용을 발송하였다. 내용 중에는 ‘올해 개막작인 놀이패 신명 오월 마당굿 <일어서는 사람들>은 (대외비공개입니다) 모 경호처에서 공연 내용을 보고하라고 유선 연락을 지난 주에 받았습시다. 여기저기 상담한 결과 ‘무대응’해도 되는 건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무응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⁷⁾

나. 대통령 경호처 담당직원 답변 내용

당시 신청인이 보낸 이메일을 수령한 S은 위원회 조사에서 본인이 당시 “청와대 외곽 경호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며, 당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게 된 이유

5) 「신청인 전화통화 결과보고」, 2018. 3. 22.

6) 「조사보고 - 신청인 추가 자료제출 보고」, 2018. 3. 26.

7) 「조사보고 - 신청인 추가 자료제출 보고」, 2018. 3. 26.

에 대해 “귀하께서 공연하신 광화문 북측 광장은 경호구역은 아니지만, 바로 인접한 구역이고, 이를 연하는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는 경호임무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인사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도로로 주변지역의 상황에 대해 경호상 취약성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⁸⁾

3. 대통령 경호처의 전화통화 목적

가. 신청인의 의혹 제기 내용⁹⁾

신청인은 조사 신청서에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서 “공연 내용에 대해” 물은 이후에 또 다시 전화하여 “공연 소득은 어떤지 등에 대해 문의”하였기에, “변방연극제를 진행하며 개인 수입이라는 것은 거의 없이 활동했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다.”고 답변하였던 사실을 기재했다.

2012. 7. 4. 공연 당일에는 소위 ‘사복’ 차림의 정부 기관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공연장에 왔었던 것으로 추정”했으나, 공연 당일은 물론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고 기재했다. 그럼에도 조사 신청한 이유에 대해 당시 자신의 핸드폰 정보는 “서울시에 기재한 것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청와대에서 어떻게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았는지 의문스럽다.” 며 당시 청와대와 서울시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념이나 성향 등의 내용으로 작품을 판단하여, 예술가들의 작품에 대해 정보 보고되고 사찰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통해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대통령 경호처 담당직원 답변 내용

위원회는 당시 광화문북측광장이 경호구역이었는지 대통령경호구역에 공문을 통해 문의한 바, 경호처는 “경호구역은 아니나, 광화문 북측광장은 대통령 행차로(기동로) 상의 중요한 목지점으로 동 장소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호영향요소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음.”이라 답변했다.¹⁰⁾

8) S, 「답변서」, 2018. 3. 30.

9) 임인자, 조사신청서, 2017. 11. 30.

10) 대통령경호처, 「자료 및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 2018. 3. 30.

당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던 위 S은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공연내용관련 문의는, 공연관련 인원과 참석 예상인원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전체 인원규모를 파악, 기동로상 영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고 했고, “둘째 공연소득 관련 문의는 상세보고를 위한 내용파악 과정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질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불쾌함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차후에라도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전파를 통해 삼가도록 하겠습니다.”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S은 “이러한 과정은 경호구역 인근의 행사에 대한 경호상 취약성 여부의 검토과정이었을 뿐 다른 어떤 목적도 없었으며, 블랙리스트 문제와 전혀 무관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며 “저의 불찰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드리고 누가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답했다.¹¹⁾

다. 참고인 진술내용

현재 놀이패 ‘신명’의 대표를 맡고 있고,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공연에 참여했던 참고인 정OO은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개막공연 참여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실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가 직접 당시 그러한 전화를 받은 기억은 없고, 다른 단원들을 일일이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단원 중에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기억은 없다”고 답변했다.¹²⁾

4. 과거 광화문북측광장에서 서울변방연극제 공연 여부

가. 신청인 진술 내용

신청인은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2012년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외에 과거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공연을 준비하던 중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2010년에 광화문북측광장은 아니고 ‘이순신 동상’ 맞은편의 광장에서 「크리에이티브 바키」와 「서울 변방연극제」가 공동주최하여 연극 공연을 한 적이 있고, 당시에는 청와대나 여타 정부 기관에서 공연 내용 등에 대해 문의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¹³⁾

11) S, 위 답변서.

12) 참고인 전화통화 결과보고, 2018. 3. 22.

13) 신청인 전화통화 결과보고, 2018. 3. 22.

나. 대통령 경호처 담당직원 답변 내용

당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던 위 S은 이와 관련하여 “광화문북측광장 외에도 경호구역 인접지역(예 : 분수대광장, 경복궁 등)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행사 관계자와 사전에 전화통화를 하여 행사의 내용과 참석 예상인원 등을 파악”하기도 한다고 답변했고, 그러한 경우에도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소속을 사전에 밝힌다”고 답변했다.¹⁴⁾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신청인은 2012. 7. 4.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의 공연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공연 내용’과 ‘공연 수입’ 등을 문의하는 전화를 받은 후, 특별히 전화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기에 사전에 연극제를 앞두고 정부 기관에서 사찰을 한 것은 아닌지 의혹 등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 경호처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바, 당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문의한 경호처 직원 S은 ‘청와대 외곽 경호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광화문 북측광장은 경호구역은 아니지만, 바로 인접한 구역’이기에, ‘경호임무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인사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도로로 주변 지역의 상황에 대해 경호상 취약성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했다는 이유로 전화했다고 답변했다.

신청인은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와 특별히 연관이 없는 ‘공연 내용’, 특히 ‘공연 수입’에 대해 문의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의혹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위 S은 공연 내용은 ‘참석 예상인원’에 대한 파악을 통해 ‘기동로상 영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함’이라 답변하면서, ‘공연 소득’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질문이었기에 사과의 뜻을 표했다.

먼저 신청인이 제기한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당시 전화를 받을 때 상대방이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소속 신분을 밝혔다 했고, 또한 2012. 7. 3. 14:55에 신청인이 S

14) 「조사보고 - 참고인 전화통화 결과보고」, 2018. 3. 27.

의 인터넷 이메일로 ‘2012서울변방연극제 소개자료’, ‘일어서는 사람들 공연장 배치도면’, ‘광화문광장 행사 계획서’, ‘광화문광장 사용승인서’ 등을 송부한 점 등을 보면 당시 S이 이 신청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신분, 인터넷 이메일을 알려주며 자료를 요청했기에 신청인이 의혹으로 제기하는 사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이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같은 시민들을 상대로 문화 예술 행사의 취지나 이유, 목적 등을 문의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데 있어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했던 정황은 있어 보이나, 당시 근무자가 ‘불찰’이 있었기에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 ‘내부 전파’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며, 새 정부 들어서도 ‘낮은 경호’를 표방하며 과거 정부와는 다른 경호 정책을 행하고 있기에 특별히 권고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다. 2017. 9. 1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9. 2.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후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을 퇴출’ 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¹⁵⁾ 문화계 6명, 배우 8명, 영화감독 52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등 퇴출 대상이었던 8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위 보도 자료를 보면, 2009. 7. 당시 김OO 국정원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팀장 : 기조실장)」를 구성,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조치 유도 등 쏠방위적으로 퇴출을 압박’ 하였고, 2010. 10.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촛불 집회 적극 가담 연예인 A급 15명, 단순 동조자 B급 18명으로 구분, A급 연예인은 연예활동에 대한 실질적 제제조치를 시행하고, B급은 계도 조치’라고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국회 부대의견’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2008년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 되었으나 실제 불법 시위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과 ‘향후 불법 폭력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은 물론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

15) 국정원 개혁위,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결과 발표』, 2017. 9. 11.

되었다. 지원금을 통해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활동을 제어하겠다는 방침이 표면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때문에 신청인이 2012. 7.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위와 같은 공연을 하기 전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위축’감을 갖고, ‘공연’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갖게 되는 것은 당시 정치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보기관, 행정부처와 산하기관까지 동원되어 벌어진 국가 정책범죄로서 문화예술인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그 확장성과 파급력으로 인해 문화예술인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함으로써 해당 시기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게끔 하는 국가폭력의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건 신청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문화예술인과 단체들 상호간에 발생한 정신적·심리적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13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블랙리스트 배제 의혹 사건



113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블랙리스트 배제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공38[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블랙리스트 배제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임인자는 2015. 7.~9.경 서울연극협회(회장 박장렬) 측으로부터 신청인을 (사)여성·문화네트워크 주최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신진여성문화인상 연극부문’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수락하였고, 당시 서울연극협회 측으로부터 위상의 ‘신진여성문화인상 연극부문’의 경우 대체로 서울연극협회 추천 후보자가 수상자가 되어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러나 2015년 연극부문 수상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라 부당하게 위 시상에서 배제된 것은 아닌지 진상을 알고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조사신청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이 사건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른 신청인의 시상배제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못했으나, 이 사건 사업 구조상 수상자 선정과정에 문체부의 개입 혹은 관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2015년 이 사건 사업 수상자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간 소위 ‘진보인사’로 분류된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선정 논의가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이 확인되는 등 신청인 등 당시 블랙리스트 대상이었던 후보자들이 이 사건 시상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해 수상 탈락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붙임 :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블랙리스트 배제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공38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블랙리스트 배제 의혹 사건

[신청인] 임인자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임인자(이하 ‘신청인’)는 독립기획자이자 서울변방연극제 전(前) 예술감독으로, 2015. 7.~9.경 서울연극협회(회장 박장렬) 측으로부터 신청인을 (사)여성·문화네트워크 주최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신진여성문화인상 연극부문’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수락하였고, 당시 서울연극협회 측으로부터 위 상의 ‘신진여성문화인상 연극부문’의 경우 대체로 서울연극협회 추천 후보자가 수상자가 되어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러나 2015년 연극부문 수상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라 부당하게 위 시상에서 배제된 것은 아닌지 진상을 알고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에 2017. 11. 30. 조사신청 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 건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제3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8. 1. 5. 조사개시 결정되었다.

나. 조사의 목적(규명과제)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신청인의 부당한 시상 배제가 있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13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함.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입수일	비고
1	한국일보, 2016. 10. 12.자 “세월호 선원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기사	2017. 8.	
2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2.1.현재」	2017. 8.	
3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작성 2014. 12. 22.자 「연극(12/22) - 8명(통보)」 수기 명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4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작성 ‘150624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5	(사)여성문화네트워크 유슬기 발송 2017. 12. 27.자 이메일(수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2017. 12.	

연번	서명	입수일	비고
6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포스터	2017. 12.	
7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후보신청접수 안내	2017. 12.	
8	문체부 2015. 10. 2.자 보도자료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에 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원장 선정'	2017. 12.	
9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_ 전체 후보(분야별)	2017. 12.	
10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_ 신진여성문화인 후보리스트	2017. 12.	
11	20150924_심사위원회 회의록	2017. 12.	
12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임인자 신청서 및 서울연극협회 후보 추천서 각 1부	2017. 12.	
13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 작성 9,473명 명단	2018. 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4인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조사함.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유OO	(사) 여성문화네트워크 과장	유선면담 보고(2017. 12. 8.)
2	임인자	사건 신청인	진술조서(2018. 1. 23.)
3	오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서기관 (2012. 4.~2016. 8.)	진술조서(2018. 2. 7.)
4	이OO	이 사건 당시 문체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유선면담 보고(2018. 4. 24.)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이하 '여성문화네트워크')는 사회 속 다양한 여성문화를 창달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립에 기여하고 여성문화의 질적 향상에 대한 연구와 문화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주)여성신문사가 주축이 되어 2009년 설립한 문체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¹⁾²⁾이다. 문체부 등록 지정기부금단체로 전국에 4개 지회(경북, 구리, 성남, 안산)가 있으며³⁾, 2015. 6.부터 여성학자 박OO이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다.

나. 여성문화네트워크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은 여성문화네트워크 주최, 여성신문사 주관, 문체부가 후원하는 양성평등 문화사업으로, 우리나라 문화발전과 여성문화인의 창작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 여성문화인 등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여성의 문화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⁴⁾⁵⁾⁶⁾ 위 상은 문체부장관 표창인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및 ‘여성문화예술인 후원상’을 비롯해, ‘신진 여성문화인상’, ‘문화예술특별상’, ‘청강문화상’ 5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수상자는 매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문화 관련 단체, 공공기관, 일반 시민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⁷⁾ 위 5개 부문 가운데 ‘신진 여성문화인상’은 ‘국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여성문화인으로 향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여성 문화예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부여되는 상으로, 2015년에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출판·대중예술, 문화기획, 문화지원 5가지 분야로 분류되어 시상⁸⁾되었고, 포상으로 ‘여성신문 사장상’ 및 상금 1백만원이 부여되었다.

신청인은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공연예술’(이하 ‘이 사건 사업’) 분야에서 탈락하였다고 하며 조사신청하였다.

1) 문체부 홈페이지-비영리법인현황,

http://www.mcst.go.kr/web/s_data/corporation/corpView.jsp?pSeq=2819

2) (사)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단체소개, http://www.networkwin.org/wp/?page_id=475

3) (사)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단체소개, http://www.networkwin.org/wp/?page_id=475

4) (사)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WIN 사업-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http://www.networkwin.org/wp/?page_id=2420

5) 문체부 2015. 10. 2.자 보도자료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에 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원장 선정’

6) 2014.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는 등 사회환경 및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2016.부터는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으로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다

7) 문체부 2015. 10. 2.자 보도자료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에 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원장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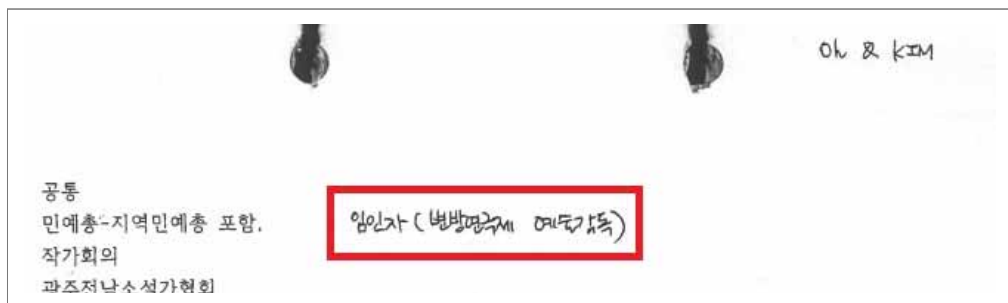
8)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후보신청접수 안내’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사실

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h & KIM 수기 가필 문건」,

특정 예술인 혹은 단체 이름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수기로 추가 예술인 혹은 단체를 가필한 위 「Oh & KIM 수기 가필 문건」에 ‘임인자(변방연극제 예술감독)’이 기재돼 있다.

[그림-1]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h & KIM 수기 가필 문건」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은 위 「Oh & KIM 수기 가필 문건」에 대해, 원래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에 본인이 국정원 혹은 청와대에서 알려준 추가명단을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사무관이 전달받아 부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2015. 7.경 자신으로 블랙리스트 명단관리 창구가 단일화되면서 김OO 사무관에게 위 문건을 달라고 해 복사하여 본인이 보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⁹⁾

나.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2.1.현재」 문건 ‘6.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중 ‘연극-35명’ 부분에 ‘⑧임인자(변방연극제)’가 기재돼 있다.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4972면

「그림-2」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2.1.현재」

6 기존관리 리스트 - 149명		사업개요 및 검토내용	진행상황
공통 - 59명	①민예충, ②지역민예총 ③문화탈라워 동조협(민예충소문) ④작가회의	예술위 보조금사업 필립오르 크랄 및 환수조치(2019년) - 492백만원 중 5월만원 변경상대, 관매반납시까지 지원중단 민예충산하 인종문제연구소(대표 조성래, 이사장 채희원), 민미협(박홍순) 2010년 소프기파동 시국선언서 필립단체 작가회의 소속 ⑤고명철, ⑥박동우, ⑦신용복 / ⑧광주전남소설가협회 ⑨광주문화재단 광음채 음악제(인민레퍼가 등 작곡, 광주에서 일용) ⑩부산국제영화제 구림미, ⑪사태루브(정지영, 문성근) ⑫민족극운동협의회, ⑬전국민족극한마당, ⑭스티나루도서관재단(박영수관장) ⑮문화연대(안내희, 임정희, 황필우) ⑯자근호(대전대학교수), ⑰한지은(호서대학교수), ⑱해화동1번지, ⑳극단어해자, ㉑내빅, ㉒극단 활죽집, ㉓그린피그(윤한순), ㉔임인지(변방연극제)	
연극 - 36명		○ 추가(2014.10월) ①극단 환과무늬 ②극단 사니네비 ③극단 그림연학 ④광작집단 사마멸의 오로라 ⑤극단 선수유 ⑥극단 해를 보는 마음 ⑦극단 비연 ⑧극단 로타KOTTD ⑨부문화어이온 ⑩극단 길현 ⑪극단 꼬레 ⑫극단 백수왕구 ⑬극단 꾸미술 ⑭극단 수수파브리 ⑮극단 상노네임제어터키피니 ○ 추가(15.1월) ①권호원(아남로그앤더저널), ②백장진(천남대산학협력단), ③서익진(AOC프로젝트), ④윤사중(화양사), ⑤김종보(한일연극교류회), ⑥김소희(연희단거리패), ⑦한국민족극운동협회, ⑧도모장작스튜디오(이유택), ⑨동승무대(임경희), ⑩연극심형실 해화동 1번지, ⑪송복민예총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은 2018. 2. 7. 위원회 조사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으로부터 청와대 및 국정원에 지원사업의 신청자명단을 보내기 전에 문체부 자체적으로 1차 확인하여 문제 있는 명단에 표시를 해서 보내도록 지시받았고, 이에 1차 확인 작업을 위한 용도로 위 「리스트-」16.2.1.현재」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8. 2. 7.자 오OO 진술조서 3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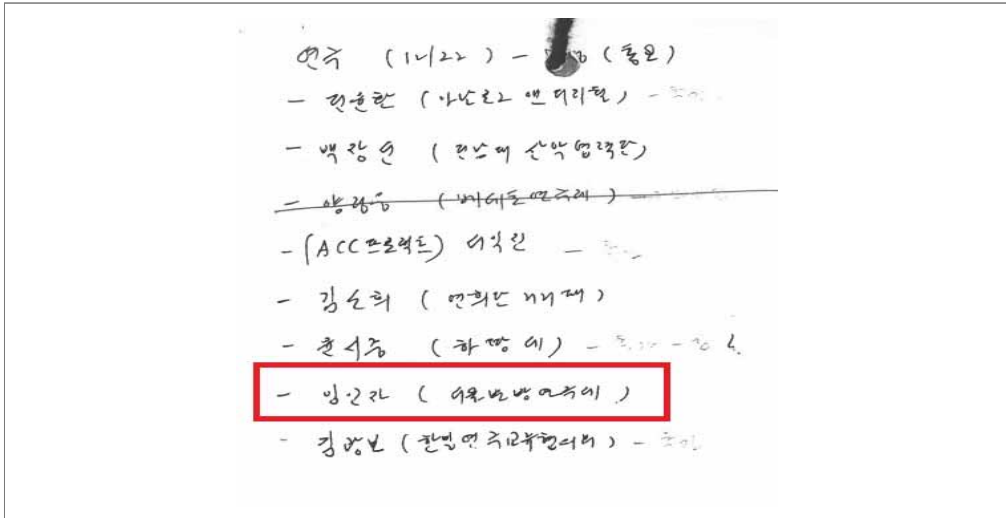
한편,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 증거기록 중 특검의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문건 중 '6.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부분은, 2015 문예진흥기금 사업 이외에 청와대에서 지원배제 대상으로 언급된 민예충, 작가회의, 지역문화재단 등 인물이나 단체를 공연전통예술과 김OO 사무관 등이 보관하고 있던 명단을 오OO이 받아 정리한 자료라고 진술한 내용¹⁰⁾이 확인된다.

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4. 12. 22.자 「연극(12/22) - 8명(통보)」 수기 명단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4. 12. 22.자 「연극(12/22) - 8명(통보)」 수기 명단」에 '-임인자(서울변방연극제)'가 기재돼 있다.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4985면

[그림-3]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4. 12. 22.자 「연극(12/22) - 8명(통보)」 수기 명단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 증거기록 중 오OO의 2017. 4. 12.자 증인신문 녹취서에 의하면 참고인 오OO이 위 문건에 대해,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이며, 위 명단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OO 예술진흥본부장, 장OO 창작지원부장, 류OO 국제교류부장에게 전달하여 심사과정에서 지원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¹¹⁾이 확인된다.

라.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150624 리스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150624 리스트」에 ‘서울변방연극제(임인자)’가 기재돼 있다.

[그림-4]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150624 리스트」

단체(개인)	비고	단체(개인)	비고
서울변방연극제 (임인자)		극단 산울림 (임영웅)	BH 제외 (지원해도 됨)
한민연극교류협회 (가오남)		극단 서울괴담 (오영복)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 공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7. 6. 5.자 증인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1405면

신문 녹취서에 의하면,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사무관이 위 문건에 대해,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에게 보낸 배제대상자 명단을 본인이 전달받아 업데이트하며 정리한 문건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¹²⁾이 확인된다. 위 문건에는 총 126개 단체 및 인물이 도표에 기재돼 있다.

마.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진숙 사무관 작성 9,473명 명단

한국일보는 2016. 10. 12. 보도에서, 청와대가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2012년 대선 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시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 총 9,473명의 예술인에 대하여 검열 용도의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고 보도하였다.¹³⁾ 한편 위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¹⁴⁾에서 ‘임인자(연출)’이,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문화예술인 909인)’ 명단¹⁵⁾에서 ‘임인자(연극)’가 각 확인된다.

김기춘 외 3인 1심 형사판결 증거기록 중 특검의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오OO이 위 9,473명 명단에 대하여 “2015. 5.경¹⁶⁾ 당시 김OO 청와대 행정관이 저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알려 주며,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서 장관한테 보고하고 교문수석실로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더니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으로 확인이 되어 이 표로 작성했습니다”라고 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6453-6455면

13)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2016. 10. 12. 04:40, <http://www.hankookilbo.com/v/0abb634242a64afca79799b09f8564f4>

14)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예술인 명단”, 한국일보, 2016. 10. 12. <http://www.hankookilbo.com/v/41c20368edff4c1f99096bd448561a3e>

15)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예술인 명단”, 한국일보, 2016. 10. 12.

16) 입수 문건의 출력일자는 2015. 5. 7.로 표기되어 있으나,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15. 5. 11.)문건에서 “15.4월 현재 9,473건”이라는 표현이 확인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 102 2017. 4. 12. 오OO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오OO이 9,473명의 확인 시기가 4월이라고 한 진술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여(조사기록 제289쪽), 9,473명에 대한 최초 파악시기는 5월이 아닌 4월로 판단된다.

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어 오OO은 자신이 작성한 위 문건을 김OO 국장이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하였고, 보고 후 자신이 메일로 김OO 행정관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7) 위 증거기록 중 특검의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에서 김OO 역시 오OO과 같은 내용을 진술한 사실18)이 확인된다.

3. 이 사건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가. 신청인의 이 사건 사업 수상후보자 접수 및 탈락 사실

(1)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_전체후보(분야별)’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_전체후보(분야별)’ 문건에 의하면,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의 ‘공연’, ‘국악’, ‘기획’ 등 19개 분야 총 250인의 후보자 접수명단이 기재돼 있고, 이 중 ‘연극(10)’ 부분에 ‘임인자’가 기재돼 있다.

[그림-5]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_전체후보(분야별)’

2015 제27회 코리아 베스트드레서 스타인 어워드 포털부분			
연극 (10)			
1	연출	김수희	제34회 서울연극제 연가설, 우수설/제1회 리태일의 문화대상 작가 겸 연출가 연극, 작/연출 <당신들은> <우사김은희브레타를읽는다> <괴물여선다> 등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2	희곡출연사 대표	김재희	희곡전문 출판사 '자문북스' 대표, 극단 재봉전에서 <일요일에는> <조연출> <우르른 날에> 시인권 역할 출연 <우, 임지>, <그녀에게>, <우주인>, <사동철날 희망날>, <재말미>, <국상 위 카우보이> 등 희곡집 출판 SCOT 소속 배우, 김원준 공연 극단 '한국시화' 단원, 프로젝트그룹 '출거문우대' 멤버, 프라한서 연극단
3	연출가	분류형	속초 극단 '달빛상' 및 '소울시어터' 객원 연출 담당 제 28회 전국연극제 은상(연극장에서), 제1회 전국연극제 금상(삼도봉 극스리리) 제31회 전국연극제 연출상 (한양을 공연) 등 수상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학사), Indiana University(MA), University Of Pittsburgh(Ph.D)
4	연극평론가	허미쁨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극학과 교수,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이사, 한국연극학회 이사, 한 경희대학교 교수(1986.3-2002.2) 매식기 연극평론상(2001), 문론집 <포스트모던 시대와 한국연극>, <세계화시대/세계화연극>, <일출성 연극의 모색> 등
5	예술감독	임인자 (미 기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연극학과(연출/연출 전공),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석사 졸업 서울연방연극제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일단 전국연극 연합회원 활동 중

(2)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_신진여성문화인 후보리스트’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_신진여성문화인 후보리스트’에는 ‘신진여성문화인상’ 최종후보에 오른 24인 명단이 기재돼 있고, 이 중 신청인은 기재돼 있지 않다.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4973-4974면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1313-1314면

(3)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9. 24.자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심사회의록'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9. 24.자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심사회의록'에는, 참석자 명단으로 '김OO 심사위원장/전 여성가족부 장관', '박OO 심사위원/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서OO 심사위원/WIN 문화포럼 대표', '조OO 심사위원/단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이OO 심사위원/청강문화산업대학교 기획실장', '박OO (사)여성문화네트워크 대표', '김OO 여성신문사 대표', '이OO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차OO 여성신문사 전무', '김OO 여성신문사 사업국 과장' 10인의 명단이 기재돼 있다.

[그림-6]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9. 24.자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심사회의록' 1

· 참석자	김OO	심사위원장 / 전 여성가족부 장관
	박OO	심사위원 /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서OO	심사위원 / WIN 문화포럼 대표
	조OO	심사위원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이OO	심사위원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기획실장
	박OO	(사)여성문화네트워크 대표
	김OO	여성신문사 대표
	이OO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차OO	여성신문사 전무
	김OO	여성신문사 사업국 과장

위 문건 '3.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후보 소개' 부분에는 '18개 분야의 총 195명의 후보', '1차 예비심사 결과 총 53명의 후보', '신진여성문화인상 24건' 등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한편 '신진여성문화인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기재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여성문화인상 너무 연륜있는 분은 제외하고, 상을 역량있게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이OO 문체부 사무관)', '연극분야의 세 후보(손숙, 박정자, 김성녀)는 누가 받아도 무난하다(김OO 대표)' 등 일부 심사위원 발언내용이 확인된다.

[그림-7]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9. 24.자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심사회의록’ 2

1. 개회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 소개)
: 김OO 여성신문사 대표님의 진행으로 시작되어 심사위원 소개와 심사위원을 대표로 김OO 심사위원장의 인사말로 심사위원회가 시작됨.

2. 여성문화네트워크 소개 및 취지
: 박OO 여성문화네트워크 대표의 여성문화네트워크 소개 및 여성문화인상의 취지 역대 문화인상 수상자에 대한 소개 및 설명

3.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후보 소개
: 18개분야의 총 195명의 후보
: 1차 예비심사 결과 총 53 명의 후보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13건 / 여성문화예술인후원상 3건 / 청강문화상 10건
문화예술특별상(울주상) 3건 / 신진여성문화인상 24건
후보들중 심사분야별 이동이 가능하며, 접수는 분야가 다르게 했어도, 유연하게 후보들을 생각해보면서 심사를 하자.

4.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여성문화예술 후원상, 청강문화상, 문화예술특별상
신진여성문화인상 선정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후보]
-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이니 올해의 공적 , 기간을 정하자 . 후보들의 편차가 심하다.
분야별로 한 명씩 가려내자. (박OO 심사위원)
- 여성문화인상 너무 연륜있는 분은 제외하고, 상을 역량있게 발휘 할 수 있는 분으로 (이OO 문체부 사무관)
- 후보중 한복려가 좋다고 생각한다. 업적에 비해 상을 많이 받지 못했다.
(서OO 심사위원)
- 연극분야의 세 후 보 (손숙, 박정자, 김성녀)는 누가 받아도 무난 하다. (김 OO 대표)
- 상이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수상자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정하자

(4) 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 게시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게시물¹⁹⁾에 의하면,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신진여성문화인상 공연예술’ 부문에 ‘극단 놀품’ 대표인 천은영 극작가가 수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19) http://www.networkwin.org/?page_id=2420

[그림-8] 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 게시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중 '신진여성문화인상-공연예술' 부분



나. 이 사건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1)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8.자 유OO 유선면담 보고)

참고인 유OO는 여성문화네트워크 사무국 과장으로, 2017. 12. 8. 위원회 유선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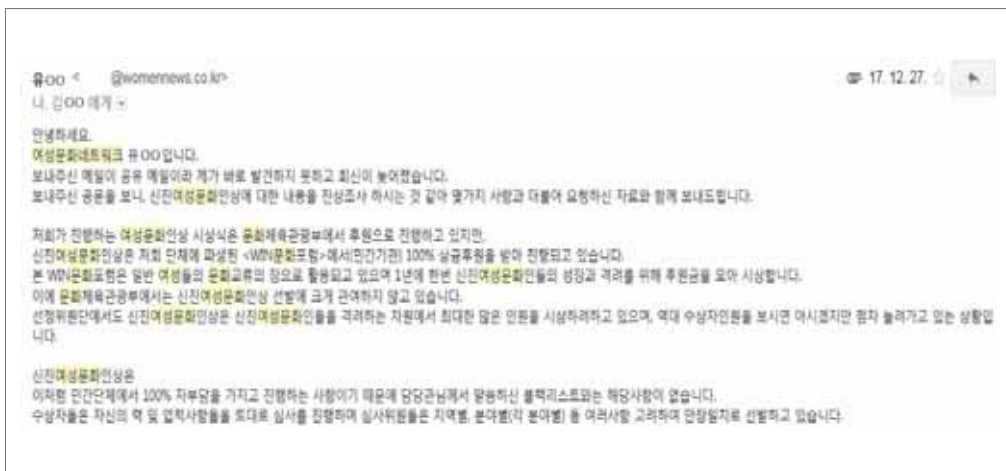
- 여성문화네트워크는 여성신문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문화전문 사단법인으로, 여성신문사와 여성문화 창달, 여성인력 네트워크 구축 등 취지·목표는 유사하나 여성신문사가 영리법인인데 반해 여성문화네트워크는 비영리·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것이다.
-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재원은 크게 여성문화네트워크 및 여성신문사의 기부금, 문화예술인들의 후원금, 문체부 후원금 3가지로 구성되며, 문체부는 수상부문 중 문체부 표창에 관련된 상금비용 및 시상에 필요한 일부비용을 후원해주고, 보도 자료 작성·배포, 행사장소 대관 등 행사진행 관련한 협조를 해주고 있다.
- 이 사건 사업 심사위원 선정은, 여성문화네트워크 사무국에서 각계각층 20인 정도의 리스트를 취합하고, 문체부가 보유하고 있는 심사위원, 자문단 등으로 리스트를 보완한 뒤, 문체부 문화여가정책과(현재는 '문화인문정신정책과'로 변경)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방식이다.

- 이 사건 사업 심사는 최종 5-10인의 심사위원(교수, 각 분야 문화계 현장인(소설가, 영화감독 등) 등으로 구성)이 각 후보자들의 문화예술 활동실적, 중복수상 여부, 상금 필요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점수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2) 참고인 유OO 발송 2017. 12. 27.자 이메일

참고인 유OO가 2017. 12. 27. 위원회에 발송한 이메일에는, “저희가 진행하는 여성 문화인상 시상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신진여성문화인상은 저희 단체에 파생된 <WIN문화포럼>에서(민간기관) 100% 상금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WIN문화포럼은 일반 여성들의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1년에 한번 신진여성문화인들의 성장과 격려를 위해 후원금을 모아 시상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신진여성문화인상 선발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정위원단에서도 신진여성문화인상은 신진여성문화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시상하려고 하고 있으며, 역대 수상자인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진여성문화인상은 이처럼 민간단체에서 100% 자부담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블랙리스트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상자들은 자신의 경력 및 업적사항들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들은 지역별, 분야별(각 분야별) 등 여러 사항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선발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그림-9] 참고인 유OO 발송 2017. 12. 27.자 이메일



(3) 참고인 이OO의 진술(2018. 4. 24.)

참고인 이OO는 이 사건 사업 당시 문체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으로 이 사건 사업 2015. 9. 24.자 최종심사에 참여(본 보고서 8면, ‘(3)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9. 24.자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심사회의록’ 중 ‘참석자’ 명단 참조)한 자이다.

참고인 이OO는 2018. 4. 24. 위원회 유선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여성문화네트워크는 여성신문사에서 만든 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에 문체부가 후원하고 일부 상을 표창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성신문사에서 주도적으로 심사위원 선정 등 행사를 진행한다.
- 여성신문사, 여성문화네트워크 측에서 수상계획 및 후원요청을 해와 2008.부터 문체부가 이 사건 사업에 후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가 사업의 구체적 진행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으며, 큰 틀에서 사업 방향에 맞는 수상분야나 자격요건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다.
- 이 사건 사업 심사 참여 당시 배제리스트를 전달받거나, 배제지시를 받는 등 직접적인 블랙리스트 특이사안은 없었으나, 당시 정부 분위기상 잡음이 생길만한 사람이 선정될 경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심사위원 참여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문체부 관련자가 특별히 관여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심사위원들 자체적으로 소위 문제 소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알아서 걸러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가령, 당시 류승완 영화감독 부인인 강혜정 외유내강 영화사 대표가 수상후보에 올랐었는데, ‘류승완 감독이 소위 진보인사로 분류된다’, ‘그 부인이 후보로 올랐다’는 등 심사위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했던 기억이 있다²⁰⁾.

20)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_전체후보(분야별)’ 문건에 의하면,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영화(20)’ 부분에 ‘영화제작자 강혜정(만 44세)’이 후보에 오른 사실이 확인되고, 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 게시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http://www.networkwin.org/wp/?page_id=2420)에 의하면, 강혜정 외유내강 대표는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에 선정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h & KIM 수기 가필 문건」,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4. 12. 22.자 「연극(12/22) - 8명(통보)」 수기 명단,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150624 리스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 작성 9,473명 명단,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 증거기록 중 특검의 오진숙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 각 기재내용과 참고인 오OO의 진술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청와대 배제 지시에 따라 문체부 예술정책과 및 공연전통예술과 등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되어 관리되었으며, 신청인의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참여전력이 위 블랙리스트 등재사유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신청인 후보자 접수 및 수상 탈락 사실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_전체후보(분야별)’,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_신진여성문화인 후보리스트’, 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 게시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의 ‘연극’ 부문 후보자로 접수됐으나, ‘신진여성문화인상’ 최종후보에 오르지 못했고, ‘2015 신진여성문화인상 공연예술’ 부문은 ‘극단 늘품’ 대표 천은영 극작가가 수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이 사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 및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해서는 이 사건 사업에서의 신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 혹은 작동에 대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이 사건 조사를 통해, 문체부가 이 사건 사업 채용 일부를 후원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업 심사위원 선정은 문체부 협의를 거쳐 이뤄진다는 사실 등이 확인된 바, 이 사건 사업 구조상 수상자 선정과정에 문체부의 개입 혹은 관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

되고, 한편, 2015년 이 사건 사업 수상자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간 소위 ‘진보인사’로 분류된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선정 논의가 있었다는 참고인 이OO 진술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을 포함해 당시 블랙리스트 대상이었던 후보자들이 이 사건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해 탈락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14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114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예1[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정책공감 뉴미디어 홍보 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정치 성향을 이유로 문체부가 홍보업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입찰에 제한을 두어 사업 영위가 힘들어져서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 (1) “청와대측이 김은경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홍보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인물임을 알게 되어 용역사업 업체로 부적당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문체부 온라인소통과장 김OO을 비롯한 다수의 참고인 진술로 볼 때 박근혜 정권 청와대 비서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들이 신청인 및 신청인 업체 직원의 정치적 성향이나 SNS 게시글의 정치적 내용을 문제삼아 공공입

- 찰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 (2)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 1월, 국민소통실 전체의 외주 용역업체 선정 과정 및 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에 제출하였고 온라인소통과의 경우, 외주 업체 및 문화융성 온라인 참여프로그램의 사업자 선정 경위,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김OO 진술과 온라인소통과 사무관 정OO, 이OO의 진술 등으로 볼 때, 당시 청와대가 외주 용역업체 현황자료를 수집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단,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 시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다.
- (3) 신청인과 ㈜더혜움 직원들의 페이스북 글을 살펴보면 몇 줄의 정치적 견해와 감정 표현이 전부이다. 이를 사유로 신청인과 신청인의 업체를 공공입찰 부적격업체로 선정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청와대와 문체부 등 국가기관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이다.
- (4) 신청인이 계약했던 KT 사보 발간이 2014년 여름경부터 폐간된 사실은 KT 자체의 판단으로 보이며, 신청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청와대 등 외부의 외압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붙임 :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예1,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신청인] 김은경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인 취지

신청인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 함) 정책공감 뉴미디어 사업 홍보 대행 사업을 수주하여 운영하던 중, 정치 성향을 이유로 문체부가 홍보업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입찰 사업에 제한을 두어 2015년도 입찰을 포기하였고 결국 사업 영위가 힘들어져서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뉴미디어 홍보

업계 블랙리스트 의혹’, ‘더혜움 입찰 탈락 지시 및 심사과정 의혹’, ‘각 정부부처 온라인 대변인 모임에서 뉴미디어 홍보 대행업체 블랙리스트 공유 유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 사건은 2017년 11월 3일 「13차 전원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제를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조사 목적이다.

- (1) 신청인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문체부 및 청와대 등이 신청인에게 2015년도 문체부 정책공감 블로그 운영사업 입찰참여를 제한하였는지 여부
- (2) 정부부처 온라인대변인 모임에서 뉴미디어 홍보대행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 또는 공유되었는지 여부
- (3) 신청인이 KT로부터 계약을 수주해 발간하던 KT사보가 2014년 여름호부터 폐간된 사실이 신청인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문체부 등 기관 제출 및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모두 36건의 문건 및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입수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업무 인계·인수서(2014. 3.21.)	문체부(온라인소통과)	2017.10.30.	
2	2013 ~2016년도 년도 온라인대변인 회의 현황	위 같음	위 같음	
3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명단 (2013. 4.30.)	위 같음	위 같음	
4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명단 (2015.10. 5.)	위 같음	위 같음	
5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명단 (2016. 7. 8.)	위 같음	위 같음	
6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명단 (2017.10.)	위 같음	위 같음	
7	블로그 업체 심사위원 명단 (2013~2016)	위 같음	위 같음	
8	여가부 온라인 홍보제고를 위한 컨설팅 입찰 (캡처) 자료	나라장터	2017.11. 6.	
9	문체부 정책공감 관련 입찰(캡처) 자료	나라장터	위 같음	
10	조윤선 전 장관 페이스북 폐쇄 등 자료	위 같음	위 같음	페이스북
1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전(2013.11.11.)	뉴스와이어	위 같음	이OO 문자 관련
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전 조윤선 여가부장관 참석(2013.11.12.)	뉴시스	위 같음	이OO 문자 관련
13	관련 공무원 및 관련자 인사자료	위 같음	위 같음	나루망 및 인터넷
14	온대끼리 기사 자료(2011.12.19.)	THEPR	위 같음	
15	문체부 정책공감 블로그 자료(2009. 1.20.)	문체부	위 같음	보도자료
16	일반용역(들씩들씩)계약서(2013. 9.10.)	문체부(운영지원과)	2017. 2. 9.	나무온 관련
17	문화융성 온라인 참여프로그램 협조공문 (2013.12. 2.)	문체부(온라인소통과)	위 같음	나무온 관련
18	모바일 콘텐츠 제작비용지급요청 공문 (2013. 5. 1.)	위 같음	위 같음	더혜움 관련
19	정책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비용 지급공문 (2012.11. 8.)	위 같음	위 같음	더혜움 관련
20	용역계약(들씩들씩)추진(2014.10. 6.)	위 같음	위 같음	쥬스컴퍼니 관련
21	일반용역(정책공감)계약서(2013.12.26.)	위 같음	위 같음	더혜움 관련
22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2014. 9.25.)	온라인소통과	위 같음	수의계약 관련
23	2014~2016 외주용역업체 현황자료	온라인소통과	2017.12.12.	나무온 관련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24	배신이 낳은 폭로와 자살. 총북판 '더러운 공천전쟁'(2012.10.26.)	한겨레	2017.12.29.	허민규 관련
25	반기문 총장님과 함께한 내 생애 최고의 20일 (2017. 2. 4.)	허민규블로그	위 같음	위 같음
26	김모은 대표 페이스북 자료(2013.12.경)	페이스북	2018. 1. 3.	들썩들썩 관련
27	정책공감 용역 입찰공고(2008, 2012, 2015)	나라장터	2018. 1. 4.	
28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7608호(2011.10.10.)	행안부	위 같음	온라인 대변인
29	온라인대변인 관련 사진(2014. 3. 1.)	페이스북	위 같음	온라인 대변인
30	ON대끼리 화면 자료(2017.12. 2018. 1.)	온라인소통과	위 같음	
31	최민희 '청와대 퇴직자 13명 '취업제한기관' 낙하산 재취업(2015.10.22.)	경향신문	2018. 1. 8.	
32	'최순실-청와대 연결고리' 의혹-김한수 행정관은 누구? (2016.10.27.)	JTBC	2018. 1.10.	
33	2016년 여가부 온라인 홍보 운영 위탁 (2016. 1. 3)	나라장터	위 같음	
34	민정수석 청와대비서관 도대체 워 하는 자리이고?	조선닷컴	위 같음	
35	팔담회·上成下高.(2013. 3. 1.)	매일경제	2018. 1.16.	
36	김기춘 등 3인 1심공판 기록, 제25권, 수사보고 14233-24240쪽	법원	2018. 1.18	
37	대기업부터 공공기관까지...디지털매거진 확산 (2014.11.17.)	ZD넷 코리아	2018. 1.22	
38	'종이사보 안녕'(2016.10. 5)..	디지털타임즈	2018. 1.22	

나. 참고인 등 임의 제출 자료

아래와 같이 모두 15건의 신청인 및 참고인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2] 참고인 제출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입수일	비고
1	조운선 수행비서와 이OO 문자메세지 (2013. 1.12., 11.13., 11.21.)	이OO	2017.10.28. 2017.11. 6.	진술서 첨부
2	이OO과 임OO 문자 메시지 (캡처, 2016.11. 3.)	김은경 이OO	2017. 9.14. 2017.10.28.	진술서 첨부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입수일	비고
3	감사원 제보 문자통보(2016. 5.20.)	이OO	2017.10.28.	진술서 첨부
4	이OO과 백OO 문자 메시지 (2013.11.12., 11.26.)	이OO	위 같음	진술서 첨부
5	허OO 전화 송신 사실 확인 캡처 (2017.10.26.)	김은경	2017.11. 6.	진술서 첨부
6	2013년 여성가족부 정OO 홍보전문관과 이OO 문자메세지 (2013.11.21., 11.25., 11.28.)	이OO	위 같음	폐북관리 지시
7	조윤선 페이스북 관리자 계정 역할 삭제 관련 이메일(2016. 5.13.)	이OO	위 같음	폐북 관리 계정 소유
8	여성가족부 제안서 제출관련 이메일 (2013. 3.19.)	이OO	위 같음	
9	2014 여성가족부 온라인 홍보효과 제고를 한 컨설팅 위탁사업 제안서(2013. 3.19.)	이OO	위 같음	퍼플프렌즈 생산 제안서
10	여성가족부 포털사이트 노출 개선 결과 보고(2013.12.26)	이OO	위 같음	퍼플프렌즈 생산 보고서
11	감사원 제보내용과 제보처리현황 이미지 캡처 자료(2016. 3.21.~ 5.20.)	이OO	2017.11. 9.	접수 및 종결
12	이OO과 윤OO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2017.11. 8.)	이OO	위 같음	여가부 백현석 관련
13	온라인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2013. 8.)	이OO	위 같음	여가부
14	소명서 '총리실 감사관 제출문서' (2014.11.18.)	김OO	2017.11.28.	
15	더해움 직원 과거 페이스북 캡처 (2012.12.)	김은경	2018. 1.15.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16인에 대하여 24회에 걸쳐 대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대인 조사자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은경	신청인	진술조서(2017. 9.27.)
2	이OO	참고인(전 OOOOO 직원)	이메일 서면진술(2017.10.24.)
3	이OO	위 같음	진술조서(2017.10.28.)
4	조OO	참고인(KT팀장)	면담조사(2017.11. 1.)
5	OOO	참고인(당시, OOOOO 직원)	서면진술(2017.11. 8.)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6	김은경	신청인(당시, 더혜움 대표)	전화면담(2017.11. 9.)
7	김은경	신청인(당시, 더혜움 대표)	전화면담(2017.11.13)
8	정OO	참고인(당시, 문체부 온라인소통과 사무관. 현, OO 직원)	전화면담(2017.11.16.)
9	안OO	참고인(당시, 온라인소통과 과장. 현, 동일)	진술조서(2017.11.21.)
10	김OO	참고인(당시, 온라인소통과 과장. 현, 헝가리 문화원장)	이메일서면진술(2017.11.21.)
11	김OO	위 같음	이메일서면진술(2017.11.22.)
12	김OO	위 같음	이메일서면진술(2017.11.23.)
13	김OO	참고인(당시, 산림청 온라인대변인. 현, 문체부 뉴미디어소통과)	전화면담(2017.11.27.)
14	오OO	참고인(당시, 문체부 온라인대변인. 현, 문체부 홍보담당관)	전화면담(2017.11.27.)
15	이OO	참고인(당시, 금융위 온라인대변인. 현, 동일)	전화면담(2017.11.28.)
16	정OO	참고인(당시, 행안부 온라인대변인. 현, 휴직중)	전화면담(2017.11.28.)
17	이OO	참고인(당시, 문체부 온라인소통과 사무관. 현, 동일)	진술조서(2017.11.28.)
18	박OO	참고인(당시, 문체부 홍보정책관. 현, 국민소통실장)	전화면담(2017.11.28.)
19	OOO	참고인(전 더혜움 직원)	이메일서면진술(2017.11.30.)
20	박OO	참고인(당시, 청와대 국정홍보실 행정관. 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 본부장)	진술조서(2017.12. 1.)
21	백OO	참고인(당시, 청와대 국정홍보실 비서관. 전, KISA원장)	전화면담(2017.12. 4.)
22	정OO	참고인(당시 문체부 온라인소통과 사무관. 현, OO 직원)	전화면담(2017. 2. 8.)
23	김OO	참고인(전 OOO 공동대표)	전화면담(2018. 1. 3.)
24	OOO	참고인	문자(2018. 1. 4.)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정책공감 블로그 사업' 개요

신청인 김은경(이하 신청인)이 대표로 있었던 (주)더혜움이 2013년 12월 수주¹⁾하고 2014년 1월부터 1년간 운영하였던 문체부 정책공감 뉴미디어 사업은 정부대표SNS 운영매체 중 '대한민국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²⁾'에 관한 것이다. 정식명칭은 '정책공감 블로그 사업³⁾'이며 2008년 9월 1일 공식 시작⁴⁾되었다. 이 사업은 매년 10월경 문체부가 '정책 공감' 블로그 사업 제안 요청서(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을 통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게 된다.

블로그는 '네이버',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데, 정책관련 기사형 콘텐츠 작성사업이 핵심이며 기술, 가격 평가를 통해서, 조달청이 우선 협상당사자를 선정해주면(1순위, 2순위) 협상을 통해서 선정한다.⁵⁾

한편, 2015년(2014년 10월 발주)에 운영되는 '정책 공감' 블로그 사업 제안 요청서(과업지시서) 부터는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의 최종감수를 거친 콘텐츠만 인정하고..'라는 내용이 박근혜정부에서 새롭게 추가되었다⁶⁾.

'정책공감 블로그 사업'은 2010년~2011년 (주)OOOO그룹, 2012년 주식회사 OOOO, 2013년 (주)OOOOO⁷⁾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4~2016년은 아래와 같다.

-
- 1) 문체부, 나루망 자료 입수보고, 일반용역계약서(최종) 계약일자, 2013.12.26. 조사편철기록(이하 조사기록) 546쪽
 - 2) 온라인소통과, 업무 인계·인수서, 2014. 3.21. 77쪽
 - 3)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공감' 블로그 사업 제안 요청서, 2008.10~2015.10. 조사기록 267~344쪽
 - 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100만 돌파, 2009. 1.20. 조사기록 155쪽
 - 5) 안OO 진술조서, 2017.11.21. 조사기록 470쪽
 - 6) 조사기록 308쪽
 - 7)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자료입수 보고, 2017.11. 6. 조사기록 121~127쪽

[표-4] '정책공감 블로그 매체 운영 현황('14~'16)', 2017년 온라인소통과

연도	위탁 업체명	위탁운영기간	사업금액(천원)	계약방식
2014	(주)더혜음	2014. 1. 1.~2014.12.31.	213,600	제한경쟁
2015	(주)OO	2015. 1. 1.~2015.12.31.	219,839	제한경쟁
2016	(주)OOOOOO	2016. 1. 1.~2016.12.31.	218,761	제한경쟁

정책공감 블로그 사업을 2회 수주한 업체는 2010~2011년 한차례 있었으며 사업 금액은 약 2억 1~2천만원 선이다. 블로그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는 심사위원 4~5인으로 구성되며 1~2명의 문체부 국민소통실 과장급 공무원과 타 부처 온라인 대변인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⁸⁾

나. '온라인대변인'과 'ON대끼리(온대끼리)' 개요

2010년 10월 10일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 제23204호, 제23205호, 제23206호, 제23207호, 제23208호, 제23209호 등으로 각 부처 직제에 '온라인대변인'을 지정·운영하는 법적 근거⁹⁾가 생겼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44개부처, 44명의 온라인대변인이 존재한다. 온라인대변인회의는 2013년 15회가 열렸지만 2014년부터는 24회로 격주 개최 되었으며 회의는 문체부 온라인소통과에서 주관하였다. 국정과제, 정책현안 이슈 등에 관한 범부처 온라인 협업홍보 전개가 주요 운용 목적이다¹⁰⁾. '현안 관련 온라인 소통토론 2014. 4.30.¹¹⁾'이라고 하여 '세월호' 현안 관련해서 온라인대변인회의가 진행된 적도 있다.¹²⁾

'ON대끼리'는 온라인대변인들의 SNS 그룹을 지칭하며 페이스북 비밀그룹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체부 온라인소통과의 분장업무들 중 하나로 운영중이다. 주로 교육, 행사 콘텐츠 내용 등의 공유가 중심이라고 이OO 사무관은 진술한바 있다.¹³⁾

'ON대끼리' 페이스북 그룹 메뉴는 정보, 토론, 멤버, 사진, 동영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1월 현재, 정혜승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비서관¹⁴⁾이 참여하고 있는

8) 온라인소통과, 블로그 업체 심사위원명단(2013~6), 조사기록 94쪽

9)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7608호, 2011.10.10. 자료입수 보고, 2018. 1. 4. 조사기록 623쪽

10) 온라인소통과, 업무 인계·인수서, 2014. 3.21. 조사기록 69쪽

11) 온라인소통과, 2014년 온라인대변인 회의 현황, 조사기록 80쪽

12) 안OO 진술조서, 2017.11.21. 조사기록 6쪽

13) 이OO 진술조서, 2017.11.28. 조사기록 513쪽

것으로 보아 참여자의 폭이 온라인대변인만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알수 있다.

다. ‘들씩들씩’ 문화융성 온라인 참여프로그램 개요

문체부 문화융성 온라인 참여프로그램(문화융성 온·오프라인사업 들씩들씩, ‘들씩들씩 페스티벌’ 온라인 국민참여프로그램 등으로도 불림)은 계약금액이 2억7천3십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2013년 9월 10일 주식회사 000(지분율 60)과 주식회사 00000(지분율 40)의 컨소시엄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¹⁵⁾ 2013년 10월 14일~12월 15일까지 오프라인 공연도 진행되었다. 이후 2014년 10월경 000은 제외되고 00000와 2천2백만원에 계약하였으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되었다. 두 계약 모두 수의계약 방식이었다.

수의계약 등과 관련하여 온라인소통과 김OO 과장(이하 김OO)은 “2013년 7월 22일 조달청 사업 공고에 이어 8.13.에 1차 기술심사를 하였으나, 참여업체(6개 업체 참여) 모두 온라인 프로모션과 오프라인 공연의 결합이라는 동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한 사업제안을 하지 못해 ‘사업적격자 없음’으로 유찰되었고,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2013년 8월 28일 2차 기술심사 결과 ‘000(공동대표 석OO, 김OO)·00000(대표 이OO)’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000’이 온라인 플랫폼 구성 및 운영(jumpingfestival.kr, 현재 폐쇄됨), ‘00000’는 세종로(역사박물관 앞 광장) 및 나루아트센터 공연(광진구), 광명시 가학광산 동굴 공연장 등 오프라인 문화공연을 진행하는 등 양사가 온오프라인 행사를 분담¹⁶⁾하여 추진” 하였다고 총리실 감사관에게 진술¹⁷⁾한 바 있다.

2.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가. 신청인 주장

2013년 12월 수주하여 2014년 1월부터 더혜움(대표 김은경)은 정책공감 블로그를

14) ON대끼리 자료입수 보고, 2017. 1. 8. 조사기록 653쪽

15) 문체부, 나루망 검색 자료입수보고, 용역 계약관련 자료 등, 2017.12. 9. 조사기록 548~549

16) 문화융성 온라인참여프로그램 오프라인공연 협조요청, 온라인소통과, 2013.12. 2. 조사기록 551~554쪽

17) 김OO, 총리실 감사관 제출 소명서, 2014.11.18. 조사기록 492쪽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 2월경 온라인소통과 김OO 과장으로부터 ‘청와대가 김은경 대표에 대하여 2009년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 등 색깔이 다른 사람¹⁸⁾이 정책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며 김은경 대표의 ‘이력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들었다. 그리고 당시 김OO 과장이 헝가리 문화원 부임 관련하여 연수중이었기 때문에 정OO 사무관을 통해 이력서를 보낸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11월경 안OO 과장과 식사자리가 있던 날 “김은경 대표는 색깔이 달라서 이후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며 좌파 색깔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책 홍보를 하느냐”는 말을 들었고,¹⁹⁾이후 특허청, 식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도 유사한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판단하여 회사를 폐업하였다. 더혜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비공식적 흡수합병²⁰⁾을 (주)OOOOO와 하게 되었고 자신은 비정규직 상태의 부사장으로 2년간 재직하다가 활동하고 2017년 1월 퇴사했다고 주장 하였다.

당시, 참여배제가 된 다른 업체도 있는가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에 “OOO 대표가 대통령 비판을 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홍보쪽 업체들 조사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 회사 김모은 대표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판들을 올려서 문제가 되었다고 압니다.²¹⁾”라고 하였다.

2016년 9월경 신청인은 경쟁 업체 홍보업체 대표였던 허OO의 OOOOO 전 직원 OOO과 OOOOO 전 직원 OOO이 나누는 카톡 문자 메시지를 OOO로부터 전해 받았다. 그 내용은 허OO가 김은경과 더혜움 직원들의 박근혜 비판 SNS 캡처글을 OOO의 심부름으로 여의도연구원에 전달했는데 그 결과 청와대가 알게 되어 문체부가 난리가 났었고 온라인대변인들에게도 소문이 퍼졌었다는 내용이었다.²²⁾

신청인은 위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조사에서 “홍보업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밝히는 것, 성향조사를 한바가 있는지, 입찰과정에서 어떻게 배제가 된 것인지?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입찰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치색으로 배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²³⁾”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4년 KT 사보 제작을 진행 중이었

18) 신청인 김은경 진술조서, 2017. 9.27. 조사기록 6쪽, 9쪽

19) 위 조사기록 7쪽

20) 위 조사기록 11쪽

21) 위 8쪽

22) 위 7~8쪽, 임의제출 문자, 조사기록 16쪽

23) 신청인 김은경 진술조서, 2017. 9.27. 조사기록 11쪽

는데, 봄호만 진행하고 이후 폐간되어 사업을 진행 못했는데 이것 또한 청와대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시점과 맞물려 있어서 의혹이 있다²⁴⁾”고 하고 있다. 또한 “온대끼리 멤버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배제 정보가 공유되면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²⁵⁾”라고 진술하여 ‘온대끼리’에 관한 의혹도 제기하였다.

신청인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정부부처 뉴미디어 홍보 담당자(문체부, 특허청, 식품안전처)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고, 결국 뉴미디어 공공입찰에서 제한을 받았다”라고 하며 “이후 업체를 폐업하고 타 업체에 인수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⁶⁾

나. 뉴미디어 홍보 업체 블랙리스트와 배제 의혹

(1) 청와대 개입 의혹

(가) 김OO 진술

2014년 2월 경 까지 온라인소통과장이었던 김OO은 “2013년 12월 경 정책공감 블로그 위탁운영 사업자를 공모하여 (주)더혜움이 선정되었으며, 그후 2014년 1월 경,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로부터 더혜움의 대표 김은경의 블로그에 동 대표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홍보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인물로서 용역 사업 업체로 부적당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같은 사실은 청와대측이 김은경 대표의 개인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고 파악한 것으로 안다²⁷⁾”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당시 업체 선정은 업체 대표의 페이스북이 아니라 ‘제안서’를 통해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고 업체별 제안 설명을 들은 뒤에 평가하는 것으로서, 본인은 개인 페이스북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다고 청와대 측에 밝혔다²⁸⁾”고 하고,

“당시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에서는 백기승 비서관이 담당과장인 본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동 내용을 통보함은 물론, 업체 선정의 부적절성을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였다²⁹⁾” 하고,

24) 위 8쪽

25) 위 12쪽

26) 위 9쪽, 11쪽

27) 김OO 서면진술서, 2017.11.22. 조사기록 485~486쪽

28) 위 동일

29) 위 동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에서 동 문제에 대해 본인 및 소통실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실무를 담당한 행정관은 박OO 행정관, 오OO 행정관, 김OO 행정관 등으로서 특히, 오OO 행정관은 본인에게 헝가리 문화원장에 파견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³⁰⁾” 하고,

“청와대 측에 동 업체에 대한 문제제기 소식을 김은경 대표에게 2014년 1월 경 구두로 통보하였다³¹⁾” 라고 하고,

“그러나, 문체부 온라인소통과의 위탁운영 사업은 이미 사업자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대로 2014년 연말까지 사업자로 위탁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³²⁾”고 하고,

“헝가리 문화원장 재직중인 본인에 대한 청와대 측의 문제제기는 홍보수석실 선임 행정관이었던 이OO 행정관³³⁾ 개인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2014년 11월 18일 국무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의 방OO 감사관 등 3인이 헝가리에 파견되어 ‘들썩들썩 페스티벌’의 사업자 선정과정, 박근혜 정부에서 비판적인 포털로 판단하고 있는 ‘OO’이 참여하게 된 과정, 헝가리문화원장인 본인의 세월호 관련 페이스북 포스팅, 대학원 동기 카페의 게시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그 후 본인에 대해 아무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사안이 종료되었다³⁴⁾” 진술했다.

(나) 이OO 진술

OOO은 “자신이 허OO의 지시로 2014. 1.~2. 경, 여의도연구소측에 (주)더혜움 직원들의 정부 비판 포스팅을 전달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서류봉투가 밀봉되어 있어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허OO의 발언에 의하면 (주)더혜움의 간부직원이 박근혜 정부를 욕하고, 그에 (주)더혜움 대표와 직원들이 공감하는 댓글을 남긴 페이스북 게시물 스크린샷이었다.”라고 하고 “위 사건 직후 허OO는 자랑하듯이 저에게 수차례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전달한 내용으로 인해 문화부 정책공감 선발 담당 부서의 과장

30) 김OO 서면진술서, 2017.11.22. 조사기록 486쪽

31) 김OO 서면진술서, 2017.11.22. 조사기록 4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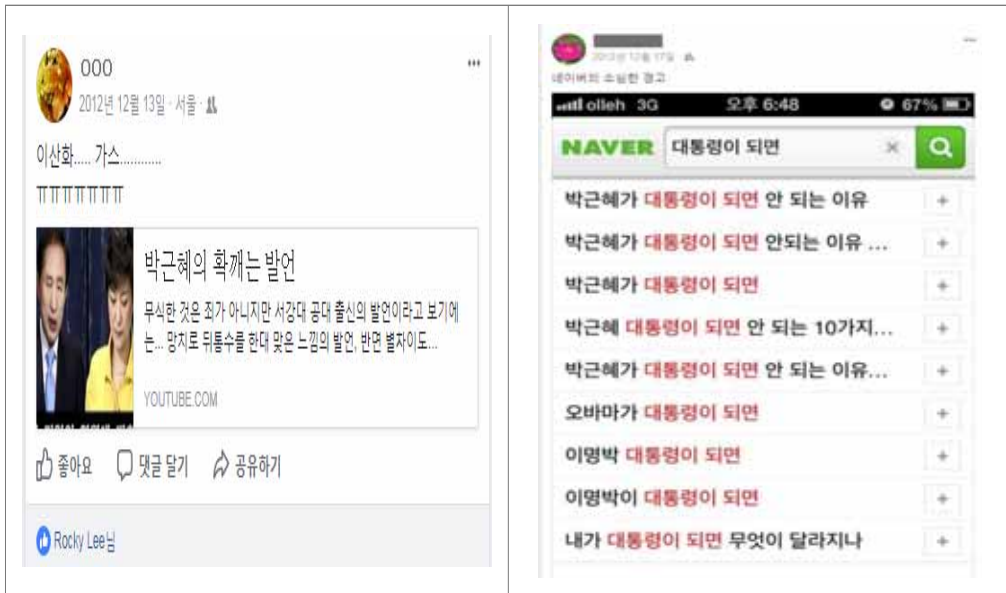
32) 위 동일

33) ‘팔답회’ 친박 실세 보좌관 조어 만발, 매일경제 2013. 3. 1. 안중범의원실 출신 홍보수석실 행정관, 672쪽

34) 위 488쪽

과 팀장이 모두 크게 문책을 당했으며, 이후 더혜움은 공공입찰에서 모두 떨어질 것' 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³⁵⁾

[그림-1] 당시, 청와대가 문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더혜움 직원 페이스북 2012.12.³⁶⁾



(다) 백OO 진술

백OO은 정책공감 및 들썩들썩 관련하여 “당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이정현 홍보수석³⁷⁾ 지시를 받아 알아 본적이 있다”³⁸⁾라고 진술하였다.

(라) 박OO 진술

박OO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국정홍보비서실 행정관(이하 박OO)³⁹⁾은 “2014년 김OO 과장이 헝가리에 가기 전, 문체부 온라인 소통과가 진행하는 사업을 잘못 처리하여

35) 000 진술조서, 2017.10.28. 조사기록 32, 33쪽

36) 청와대 캡처 자료는 입수하지 못했다. 자료입수 보고, 2018. 1.15. 조사기록 668~669쪽

37) 2013.02. ~ 2014.06.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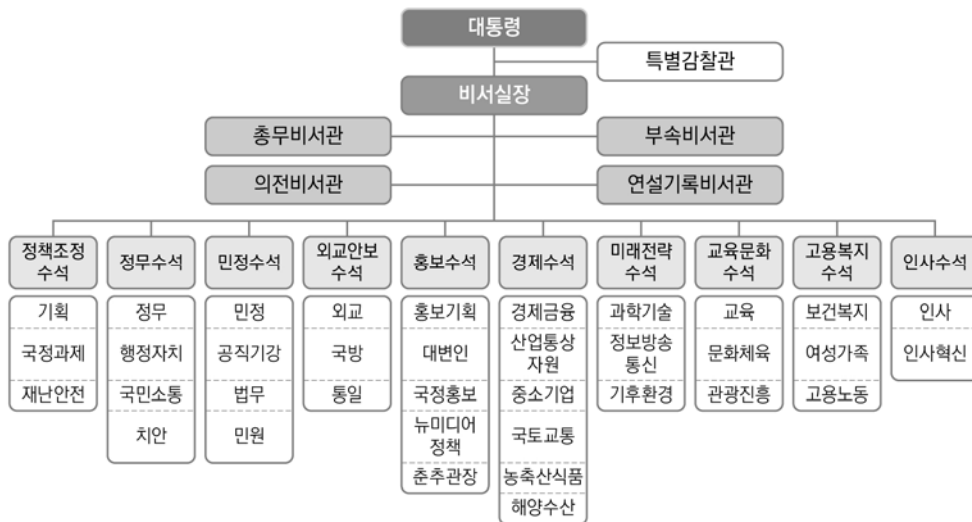
38) 백OO과의 전화면담보고, 2017.12. 4. 조사기록 533, 534쪽

39) 박OO 참고인 진술조서. 2017.12. 1. 조사기록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헝가리 못 갈 뻔 했다는 이야기 등을 이OO 행정관에게서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박OO은 당시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문체부)국민소통실 대변인 협의회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대변인은 국장급이구요, 예전 공보관 협의회가 비슷한 것입니다. 42개 부처, 부 중심으로 24여개 정도 됩니다. 언론 보도 관련 이슈가 생기면 관련부처에서 처리 협의를 하고 토론도 합니다.”라고 하며 상급자 백OO의 업무에 대하여 “대변인들 대상으로 언론보도에 문제가 생기면 처리방안을 보고 받는 역할이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는지 대응 방안을 지시하기도 하고, 문체부 국민소통실 홍보협력과에서 협업도 했습니다. 백기승 비서관은 주로 구두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받아 (문체부)국민소통실에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부처 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들을 상대하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라고 하고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좌파 책동에 적극 대응’하라는 등의 지시 등 지시사항이 비서관실에 전달이 되었나요” 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당연히 전달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⁴⁰⁾

[그림-2]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조선닷컴, 2016.11.26.)⁴¹⁾



40) 박OO 진술조사. 2017.12. 1. 조사기록 523, 527쪽

41) 민정수석·청와대 비서관..도대체 뭐 하는 자린고? 조선닷컴 - 큐레이션. 2016.11.26. 조사기록 663쪽

조사관이 ‘그러면 위와 같은(김기춘) 지시와 관련 진술인이 속한 비서관실에서 수행한 업무 중 특기할 만한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박OO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각 언론사의 광고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지원 규모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주지 않는 것으로 사업을 수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저희가 각 부처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아도 이미 부처에서 이미 알아서 광고를 줄여서 청와대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비서관을 통해 직접 각 부처에 내려가기도 하여서 저를 경유하지 않고도 부처에 전달이 되어서 그리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⁴²⁾”라고 진술했다.

(마) 이OO 진술

이OO 문체부 온라인소통과 사무관(이하 이OO)은 2014년 1월 경 당시 상황에 대하여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고 다만, 김OO 과장과 BH측이 서로 좋지 않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과장님이 출국 준비 등으로 바빠서 그런지 이야기를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신청인에 대해 청와대측에서 정치성향에 대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아는데, 정치성향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⁴³⁾”라고 진술했다.

(바) 허OO 조사

한편, 조사관은 허OO에게 10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아 허OO에 대한 조사는 수행하지 못하였다.⁴⁴⁾

(사) 청와대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상황

당시 2013년 12월, 2014년 1월 청와대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은데, 당시 김기춘의 지시사항 중 ‘일선 과장까지도 철학 공유가 필수’라는 말이 나온다.

42) 박OO 진술조서, 2017.12. 1. 조사기록 527쪽

43) 이OO 진술조서, 2017.11.28. 조사기록 514쪽

44) 허OO 조사불능 보고, 2017.12.29. 572쪽

(2) 청와대의 외주용역업체 현황자료 수집 의혹

(가) 김OO 진술

김OO은 “2014년 1월 경, 국민소통실 전체의 위탁운영 업체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된 것은 정책공감 블로그 운영 사업자, 그리고 역시 담당과장이었던 2013년의 문화융성 관련 ‘들썩들썩 페스티벌’의 위탁운영 사업업체만이 문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⁴⁶⁾

김OO은 이미 앞서 2014년 11월 18일, ‘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제출 소명서’를 통하여 “동 사업(들썩들썩 페스티벌) 관련하여 2014년 1월, 온라인소통과 및 국민소통실 전체의 외주 용역업체 선정 과정 및 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에 제출하였고 온라인소통과의 경우, 외주 업체 및 문화융성 온라인 참여프로그램의 사업자 선정 경위,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 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OOO 공동대표 김OO의 정부 비판 페이스북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한 바가 있다.⁴⁷⁾

(나) 이OO 진술

외주 용역업체에 대한 조사와 자료 요구에 대하여 이OO은 “청와대의 일상적인 것이 라면 모를까 당시 그것을 수행했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대행업체 현황은 수시로 점검하는 편인데, 어떤 차원에서 그런 조사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이OO은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하여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반 청와대에 보낸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회신하며 다만, 매년 현황자료는 작성되었기 때문에 당시 작성했었던 ‘콘텐츠 제작 현황’, ‘정책공감 블로그 매체 운영 현황’(2013~14년 온라인소통과 발주 용역)을 제출하였다.⁴⁸⁾

(다) 정OO 진술

정OO 전 온라인소통과 사무관(이하 정OO)은 “청와대에 보고 문서를 종종 보낸바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⁴⁹⁾하였다.

46) 김OO 진술조서 2017.11.22. 조사기록 486쪽

47) 김OO, 총리실 감사관 제출 소명서, 2014.11.18. 조사기록 491~496쪽

48) 온라인소통과 자료입수 보고, 2017.12.12. 조사기록 566~571쪽

(라) 박OO 진술

이와 관련하여 박OO은 “온라인 분야 회의에는 안 들어가고 오프라인 분야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 회의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며 온라인 분야 외 주 용역업체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아는바 없다고 하고 “다만, 내부적으로 들었던 말인데, 당시 오OO⁵⁰⁾ 행정관이 김OO 과장이 BH 말을 안 듣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OO 과장이 청와대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느낌을 안고 있었습니다.⁵¹⁾”라고 하며 “백OO 비서관이 들썩들썩 내용이 좌파적이지 않냐며 물은 적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⁵²⁾

(마) 이OO 진술

‘들썩들썩 페스티벌’에 대한 청와대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OO은 “2013년 말에 사업은 끝났고, 2014년 페이스북 글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사업적으로 다 끝난 일이었기 때문에(취소 상황이 아니었지만) BH에서 문제를 삼았다고 하는 부분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⁵³⁾하였다.

(3) 온라인대변인 및 ON대끼리⁵⁴⁾의 특정 업체 배제 관련 역할 의혹**(가) OOO 진술**

OOO(전 OOOOO)은 온대끼리 오프 모임에서 특정 홍보대행업체 배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나는 의혹에 대하여 “논의 보다는 업체 평을 이야기하며 암묵적으로 이런 저런 업체는 안 되겠네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듯 했습니다. 이는 같이 들었던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⁵⁵⁾ 또한 “허OO는 정부 부처 온라인대변인 출신들의 모임인 ‘온대

49) 신청인 김은경 대표 전화 진술 및 정OO 진술 건, 2017.12. 8. 조사기록 537쪽.

50) 현재, KT 파워텔 재직, 최민희 ‘청와대 퇴직자 13명’ 취업제한기관‘에 낙하산 재취업, 2015.10.22. 657쪽

51) 박OO 진술조서, 2017.12.23. 조사기록 526쪽

52) 위 동일

53) 이OO 진술조서, 2017.11.28. 조사기록 517쪽

54) 본 보고서에서 ‘ON대끼리’는 온라인 공식 모임 의미로 ‘온대끼리’는 비공식 사적 모임의 의미임

55) OOO 진술조서, 2017.10.28. 조사기록 38쪽

끼리'의 총무 역할을 하는 사실상의 주도자입니다. 이곳에서는 각 정부부처의 온라인 홍보 담당자들과 허OO가 자주 만났습니다. 저 또한 허OO의 초대로 몇차례 해당 모임의 멤버들과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임 멤버는 대부분 호형호제 하는 사이로 입찰에 관한 사전 정보와 수의계약 정보 등을 주고받았으며, 대부분 허OO가 돈을 내고 현직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접대를 받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MB정부때 뉴미디어비서관이었던 김철균을 중심으로 하는 '푸우동산'이라는 모임도 함께 하였는데 두 모임의 멤버가 대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이 인맥을 통해 허OO는 공공 입찰에서 사전에 로비나 접대, 정보취득을 하곤 했습니다.” 라는 진술을 하였다.⁵⁶⁾

이 진술과 관련하여 2014년 2월 27일 경 허OO(OOOO 대표, 전 OOOOO 부사장), 김철균(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당시 문체부 홍보담당관 김OO⁵⁷⁾, 특허청 대변인 실 사무관 서OO 등이 함께 있는 사진 자료⁵⁸⁾를 입수하였다.

(나) 안OO 진술

“안모 과장은 온대끼리 멤버로 허OO와 친해서 따로 본적은 있습니다.⁵⁹⁾”라는 OOO의 진술과 관련하여 조사관이 안OO에게 “허OO를 아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자 “모른다”고 하여 “허OO 관련하여 다른 참고인과 대질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안OO은 참고인과의 대질을 거부하였다.⁶⁰⁾

(다) 이OO 진술

이OO은 “온대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ON대끼리에는 참여하고 1~2년에 한번 다모이는 자리가 있으며 사적 모임은 자주 없는 듯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김OO 과장으로부터 들었는데, ‘(허OO)평이 그닥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허OO를 기억하는 듯합니다. 만나면 조심해야 하니깐요.⁶¹⁾”라는 진술을 하였다.

56) 위 조사기록 34쪽

57) 나루망에서 퇴직자 검색 사진과 T-cafe 2014. 2.27. 사진 대조 결과 일치하였다. 조사기록 648~649쪽

58) 페이스북, 체리스 T-cafe 2014. 3. 1. 조사기록 647쪽

59) OOO 진술조서, 2017.10.28. 조사기록 38쪽

60) 안OO 진술조서, 2017.11.21. 조사기록 474쪽

61) 이OO 진술조서, 2017.11.28. 조사기록 516쪽

(라) 김OO 진술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김OO은 “부처의 온라인 담당자는 2주에 1회씩 온라인대변인 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었으며, 상호간의 인지나 네트워크가 활발하여 이 같은(청와대의 분위기 및 방침) 정보 교환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⁶²⁾ 고 진술하였다.

(4) 주식회사 나무온'과 '(주)더혜움' 배제

(가)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2014년 11월 경 당시 온라인소통과장 안OO으로부터 “색깔이 달라서 이후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과, 좌파색깔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책홍보를 하느냐”⁶³⁾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정부 공공 입찰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후 타 업체와 합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OOO 진술

(주)더혜움 전 직원 OOO(이하 OOO)은 “2014년 7월에 입사하여 1~2월 상황은 모르지만, 당시(2014년 11월 7일 회식⁶⁴⁾)에는 온소과 직원 3명(안OO, 정OO, OOO)이 자리했습니다. 식사하고 회식을 갖는 자리에서는 특별한 말없이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고, 식사도 중 안OO, 정OO, 김은경 3인이 담배 피러 나갔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을 그때 들었다고 저도 김은경 대표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15년 정책공감 입찰 준비 중이었는데, 도중에 그만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더혜움은 15년 사업을 위해 국가보훈처, 인천항만공사, KT&G 등의 공공입찰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더혜움이 소위 ‘찍혔다’는 말을 들은 후 김은경 대표는 더혜움으로 입찰 들어가는게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더혜움의 재정상황도 극도로 안 좋았던터라, 회사를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조금씩 한거 같습니다.”라고 하며 “입찰 준비 전부터 ‘해도 안될거라’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공공입찰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문체부 온라인소통과’는 전 부처 온라인의 최상위 부서였으니, 다른 부처의 수주는 애초에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진술⁶⁵⁾하였다.

62) 참고인 김OO 과장 서면진술, 2017.11.22. 조사기록 487쪽

63) 신청인 진술조서, 김은경 2017. 9.27. 조사기록 7~8쪽

64) 신청인 김은경 대표 전화 진술 및 정OO 진술 건, 2017.12. 8. 조사기록 540쪽(이후 +2)

(다) 정OO 진술

정OO은 안OO 과장 발언에 대하여 “안OO 과장에게 물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당시 안OO 과장의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정OO은 ‘당시 문체부 근무시 <들썩들썩>, <정책공감> 관련하여 김OO 과장이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에, “당시 알고 있었다”고 답하고, ‘그렇다면 안OO 과장도 이 사실을 아는가’에 대하여 “그렇다 안 그렇다 답할 수 없다”고 하고, ‘당시 김OO 과장이 이 문제로 헝가리 문화원장 부임 문제와 더불어 11월경에는 총리실 감사까지 받았던 사안이었는데, 안OO 과장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 해주거나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안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고 재차 진술⁶⁵⁾했다.

(라) 안OO 진술

조사관은 안OO에게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을 김은경 대표에게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안OO은 “3년 전의 일이고 술자리여서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⁶⁷⁾”라고 진술하고 “김은경 대표가 OOOOO 합병 후 정부 입찰 수주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제되었다면 이후 3년간 공공입찰에 배제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 ‘정책공감 블로그’ 할 때는 호흡 잘 맞추었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제기를 받으니 안타깝습니다.⁶⁸⁾”라고 하여 더혜움이 ‘2014년 정책공감 블로그’ 운영을 문제없이 수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2014년 부임 이후 당시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백기승과 ‘정책공감’ 등 문체부 주관 용역사업에서 특정 정치성향 업체 배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안OO은 “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업체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조사관이 “업체가 성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자 안OO은 “저희가 하는 일이 정책홍보인데 콘텐츠제작 등의 과정에 정치적 성향이 보여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조사관이 “더 혜움의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정치적 문제가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안OO은 “없

65) OOO과의 서면진술, 2017.12. 9. 조사기록 560~561쪽

66) 신청인 김은경 대표 전화 진술 및 정OO 진술 건, 2017.12. 8. 조사기록 536~538쪽

67) 안OO 참고인 진술조서, 2017. 1.21. 조사기록 470쪽

68) 위 조사기록 474쪽

었습니다.”라고 진술⁶⁹⁾하였다.

(마) 김OO 진술

김OO은 “당시의 청와대 분위기로 보아 해당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는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되며, 그후 김은경 대표와의 통화에서도 타 부처의 온라인 사업 담당자로부터 지원 불가 등의 방침을 전해 들었다.”⁷⁰⁾라고 진술하였다.

(바) 김OO 진술

‘OOO’ 김OO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당시 경쟁업체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문제 삼아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이 정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맞냐’며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다고 알고 있으며 당시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정부와 관련된 일은 안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그 이후 당시 정부쪽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다”⁷¹⁾라고 진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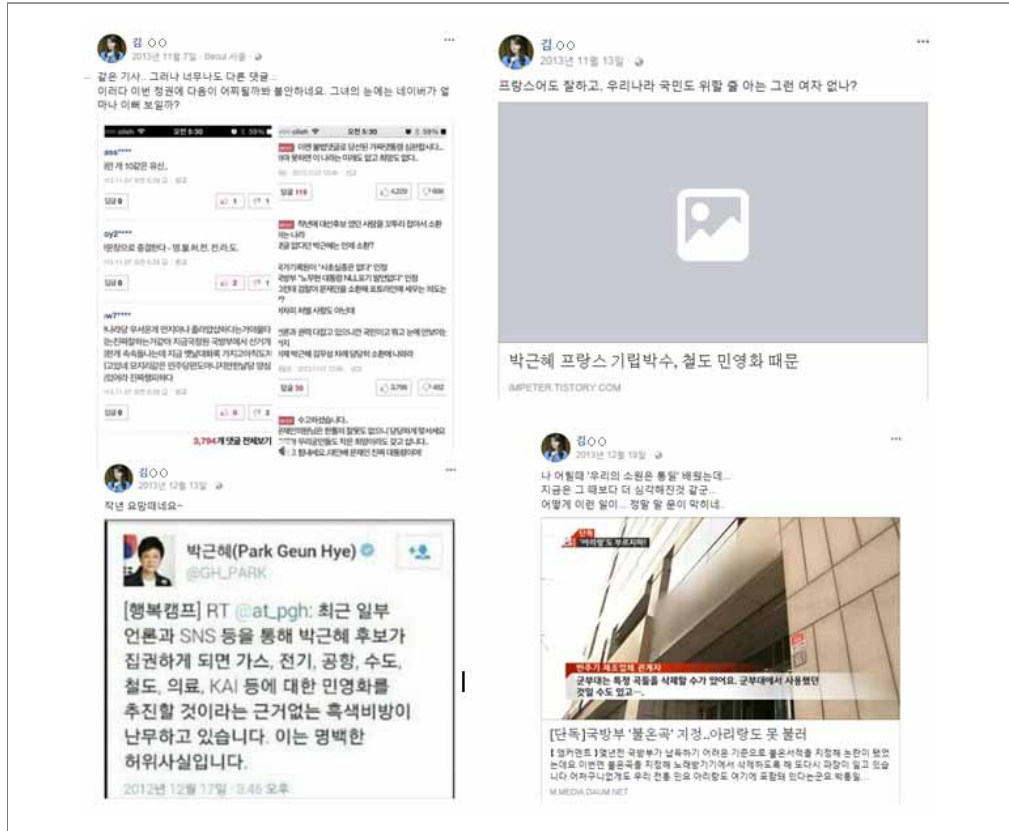
또한 이후 정부 프로젝트를 거의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것은 제가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조사관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자가 허OO냐’라 묻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69) 안OO 진술조서, 2017.11.21. 조사기록 471쪽

70) 참고인 김OO 과장 서면진술, 2017.11.22. 조사기록 487쪽

71) 김OO 전화면담보고, 2018. 1. 3. 조사기록 592~593쪽

[그림-4] 김OO 대표 정부비판 페이스북 내용. 2013년 11~12월 4건



(사) 김OO 과장 소명서

‘OOO’은 ‘들썉들썉 페스티벌’ 사업이 2013년 12월 끝난 이후 청와대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2014년 10월 경 ‘들썉들썉 페스티벌’ 사업 및 문체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OOO’이 2014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김OO 과장은 2014년 11월 18일 총리실 감사관들에게 2013년 상황을 소명해야 했다.

(아) 더혜움 문체부 수주 현황

(※더혜움은 2014년 이전에도 문체부 온라인소통과 발주용역 ‘2012 온라인소통 점검 및 강화방안 연구용역’(1천5십만원), ‘2013 내 손안의 대한민국 앱 모바일 콘텐츠 제작’(1천4백6십만원)등을 수행했던 곳이었다.⁷²⁾

(자) 업체 블랙리스트 사례

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아래 블랙리스트 관련 문서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유일한 의혹은 아니다. 게임 및 미디어 관련 IT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2016년에도 발견되었다.

[그림-5]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9.27 현재」 문서, 11쪽

회(4.6)	
세계최의날 기념 페드립콘서트 초 청작가(4.6)	○K-연세대 교수(이명현), 영화감독 이준익, 문학작가 박시백, 소설가 천명관
한국다문화예술협회명인실업(정동주)	○특이없음(K/6.10)
토크콘서트 “청춘수업” 강사(1차)	○특이없음(K/5.2)
토크콘서트 “청춘수업” 강사(1차)	○특이없음(K/6.23)
토크콘서트 “청춘수업” 강사(2차)	○특이없음(K/7.4)
토크콘서트 “청춘수업” 강사(3차)	○특이없음(K/7.11)
토크콘서트 “청춘수업” 강사(4차)	○특이없음(K/8.22)
토크콘서트 “청춘수업” 강사(5차)	○연리목(K/9.22)
지역전통한식문화사업 기획감독	○특이없음(K/7.7)
우수상용 2차 심사위원 후보자	○승효상(K/7.4)
세종학당과전교원 무기계약직	○특이없음(K/7.12)
2016 인생나눔교실(5.24송부)	○남상준(수도권)(K/7.15)
한글문화관광청 문화예술행사(7.21)	○가극단 미래(윤정순)(K/8.4)
음북합업업프로젝트(7.26)	○아이디어박스(박진태), 유에프오소프트(권오현)(K/8.22)
오디에이티브 리그 음북합업업(7.26)	○특이없음(K/9.28)

다. KT 사보 폐간 의혹

(1)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2014년 봄호 KT 사보를 만들었는데, 청와대 사건 후 사보가 폐간, 마지막 사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폐간의 이유는 모릅니다. 사보계약은 계간 개당,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었죠. 보통은 2년 정도 하는 편인데, 아예 폐간되는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2014년 1월 황창규 사장이 바뀐 후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조OO 진술

이에 대하여 당시 조OO KT 팀장은 “부서 상급자가 인터넷 매체가 우위인 시대에 사보 제작은 더 이상 불필요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과업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하며, “만약

72) 온라인소통과, 정책용역 완료 비용지급 요청, 모바일 콘텐츠 제작 비용 지급 요청, (2012.9. 2013.3.) 조사기록 555~556쪽

황창규 회장 선에서 이루어진 지시라면 알아챌 수 있는데, 그런 낚새는 없었다”라고 하며, “어떤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보를 없애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업체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사보⁷³⁾ 폐지 같은 방법으로 특정 업체를 배제 시켰겠는가⁷⁴⁾”라는 진술을 하였다.

(3) 사보 폐지 흐름

당시, 많은 기업들에서 사보를 폐간⁷⁵⁾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도 관련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이유는 온라인 정보 유통이 강해지는 반면 인쇄 매체는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4절 | 결론

1. 주요 쟁점에 대한 진상규명 사실

가.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1) 청와대가 페이스북 글 및 정치성향을 문제 삼은 사실

신청인은 2014년 2월 경 문체부 온라인소통과장(김OO)으로부터 청와대가 ‘색깔이 다른 사람이 정책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조사기록 7쪽)’고 문제 삼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청와대측이 김은경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홍보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인물임을 알게 되어 용역 사업 업체로 부적당하다는 통보를 받았다(조사기록 479쪽)’라는 취지의 김OO 진술로 사실임이 확인된다. 이는 이OO(조사기록 514쪽), 정OO(조사기록 537쪽), OOO(조사기록 33쪽)의 진술에서도 뒷받침 된다.

73) ZD코리아, 대기업부터 공공기관까지, 디지털 매거진 확산. 2014.11.17. ‘KT 사보 폐간 기사는 찾지 못했으나 당시, 사보 폐간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조사기록 681쪽

74) 조OO로부터의 KT사보 관련 득문 보고, 2017.11. 1. 조사기록 58쪽

75) 디지털타임즈, 종이사보 안녕, 2016.10. 5. 조사기록

2013년 12월 ‘들썩들썩’ 관련하여 000 대표 김00의 정부 비판 페이스북 글이 청와대 및 문체부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김00(조사기록 486~8쪽), 김00(조사기록 592~3쪽)의 진술과 박00(조사기록 526쪽), 안00(조사기록 473쪽), 이00(조사기록 512~3쪽) 진술로 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김00이 총리실 감사관에게 제출한 소명서(조사기록 494~5쪽)에 관련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2) 청와대가 외주 용역 업체 현황을 수집한 사실

김00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 1월, 국민소통실 전체의 외주 용역업체 선정 과정 및 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에 제출하였고 온라인소통과의 경우, 외주 업체 및 문화융성 온라인 참여프로그램의 사업자 선정 경위,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였다(조사기록 495쪽)’라는 취지의 진술을 2014년 11월 18일 국무총리실 감사관에게 했고, 2017년 11월 22일 진술(조사기록 486쪽)에서도 ‘국민소통실 전체의 위탁 운영 업체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된 것은 <정책공감 블로그 운영사업자(더혜움)>, <들썩들썩 운영사업자(000)> 두 곳’이라고 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진술에 대하여 이00, 정00은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조사기록 512쪽, 537쪽)’라고 하지만 정00은 ‘청와대에 종종 문서를 보냈다(조사기록 537쪽)’라고 하고 이00은 ‘대행업체 현황은 수시로 점검했다(조사기록 512 쪽)’라고 하여 김00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를 종합하면 당시 청와대 비서실이 외주용역 업체 현황자료를 수집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3) 온라인대변인 및 ON대끼리에서 홍보대행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전파된 사실

신청인이 문체부 및 특허청, 식품안전처의 담당자에게 들었다는 ‘입찰에 참여해도 안 될 것이다’라는 진술(조사기록 6쪽, 11쪽), 김00이 ‘온대’에서 특정 온라인대변인 퇴출 관련 소식을 들었다는 진술(조사기록 490쪽), 김00의 진술(조사기록 487쪽), 000의 진술(조사기록 38쪽), 푸우동산 모임에 온라인대변인, 뉴미디어 담당자들, 업체 관계자가 참여했던 사실(조사기록 647쪽)을 보면 온라인 대변인 모임에서 특정업체나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성향 등 정보가 공유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 이러한 정보 공유만으로는 청와대 비서실이나 문체부가 홍보대행업체 전반에 대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 시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다.

(4) 청와대 비서실 및 문체부의 '입찰 참여 제한' 영향력 행사 사실

'색깔이 달라서 이후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과, 좌파색깔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책홍보를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신청인 진술(조사기록 7쪽)에 대하여 안OO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⁷⁶⁾"라는 취지(조사기록 470쪽)로 적극적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안OO은 신청인의 정치성향을 알지 못하며, (주)더혜움이 운영한 정책공감 블로그 운영에서 정치적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업체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갖으면 안된다"라고 진술(471쪽)하였다. 이는 신청인이 안OO에게 들었다는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그 자리에 배석했던 목격자 정OO이 "안OO 과장에게 물어 봐야 하는 것 아니냐⁷⁷⁾"며 답변을 회피한 부분(조사기록 537~538쪽), 김OO의 진술(487쪽), OOO의 진술(조사기록560~1쪽) 등을 종합하면 청와대비서실 및 문체부 담당자가 신청인의 정책공감 블로그 운영사업 입찰 신청여부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5) 피해 사실

(주)더혜움 직원들의 2012년 말경, 페이스북 글(조사기록 669쪽)을 살펴보면 몇 줄의 견해와 표현이 전부이다. (주)더혜움 직원들의 페이스북 글들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호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정치적 활동 경력을 이유로 정부 위탁 용역 사업에서 참여 배제를 사실상 강요받았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신청인은 아니지만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주)OOO 대표 김OO의 2013년 말경 페이스북 글을 살펴보면 몇 줄의 견해, 감정 표현이 전부이다(조사기록 597~600쪽). 그러나 청와대는 문체부 온라인소통과를 통하여 정치성향을 문제삼았다. 이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은 것이다.

76) "색깔이 달라서 이후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 좌파 색깔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책 홍보를 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김은경 대표에게 2014.11. 7. 회식 모임에서 한바가 있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안OO 과장 답변. 조사기록 470쪽

77) 신청인 김은경 대표 전화 진술 및 정OO 진술 건, 2017.12. 8. 조사기록 537~538쪽

나. KT 사보 폐간 의혹 문제

2014년 초반에 KT 사보 폐간으로 영업 손실을 본 신청인은 이 부분이 청와대 외압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조사기록 8쪽)했으나, 이에 대하여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보를 없애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업체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는데..”라는 KT 직원의 진술(조사기록 58쪽) 등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정치적 성향 등과 KT사보 폐간과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우리 위원회 기능과 조사 기간의 한계, 법적인 한계(강제소환 및 경찰 신원조회 협조 등)로 강제 조사가 어려워 다수 진술을 받지 못하고, 자료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첫째, 여의도연구소에서 누가 청와대로 관련 민원을 보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허OO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당사자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타 부처 공무원인 특허청, 식품안전처 온라인대변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지 못하였다. 현재, 민간인인 오OO, 이OO에 대한 연락처를 확보 못해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 못하였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백기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진술을 확보 못 했다.

둘째, 청와대가 정치성향이 다른 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광범위하게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했다. 2014년 1월 경 온라인소통과에서 청와대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진 ‘외주 용역업체에 대한 조사 자료’ 문서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온라인소통과의 입장은 ‘문서를 발견할 수 없음’이었다.

셋째, KT 사보 폐간과 관련 하여 KT 내부 문서 등을 입수할 수 없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15

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인사농단 의혹 사건



115

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인사농단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산2 [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인사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의 취지

2015년 3월, 당시 포항공과대학교 대우교원이었던 여명숙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 중 문체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정 정치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 절차 및 제도를 악용하여 원하는 사람을 특정한 자리에 앉혀 문화예술 기관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인사농단을 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직권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문체부장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덕 장관이 게임과 강OO과장에게 지시하여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지시했고, 강OO과장은 이OO사무관에게 이OO사무관은 예술정책과 오OO서기

관에게 오OO서기관은 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달하여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게 하였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당한 인사 개입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붙임 : [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인사농단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산2, 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인사 농단 의혹 사건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2015년 3월, 당시 포항공과대학교 대우교원이었던 여명숙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 중 문체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정 정치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 절차 및 제도를 악용하여 원하는 사람을 특정한 자리에 앉혀 문화예술 기관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인사농단을 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직권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 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8. 1. 12.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되었다.

나. 조사의 목적

포항공과대학교 대우교원이었던 여명숙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 중 문체부가 문화예술기관에 가한 인사농단의 사례를 밝히고 개선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게임물관리위원회 제12차 등급분류 회의록	게임물관리위원회	2017. 9. 8.
2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문화예술위원회	2018. 1. 20.
3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제출	문화예술위원회	2018. 1. 20.
4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2018. 2. 5.
5	여명숙 위원장 위촉 관련 서류	문화체육관광부	2018. 2. 5.
6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진행상황	강OO 이메일	2018. 3. 6.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오OO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사실확인서 (2018. 2. 7.)
2	강OO	문화예술위원회 기획예산부 부장	사실확인서 (2018. 3. 5.)
3	송OO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전화면담보고 (2018. 3. 6.)
4	강OO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이메일 (2018. 3. 6.)
5	전OO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사실확인서 (2018. 3. 9.)
6	강OO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사실확인서 (2018. 3. 12)
7	이OO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사실확인서 (2018. 3. 14.)
8	김OO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영지원부 부장	전화면담보고 (2018. 4. 25)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후보의 추천 단체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1.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관련 단체
2.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 2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3.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문화예술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단체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기관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2.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

가. 참고인 및 대인조사

(1) 참고인 강OO의 사실확인서 (2018. 3. 12.)

참고인 강OO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5년 3월 경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진술인이 여명숙 위원 추천에 대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원 추천을 진행했으며, 누구에게 지시를 해 예술정책과에 전달 했다고 진술하였다. 여명숙 위원 선임 과정에 대해 본인은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지시받고, 담당자인 이OO 사무관에게 문화예술위원회에 여명숙을 포함하여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위촉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추천과정과 위원 선임결과는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 이OO의 사실확인서 (2018. 3. 14.)

참고인 이OO 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5년 3월 경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진술인이 강OO과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예술정책과에 전달한 과정과 관련해 진술인은 강OO 당시 게임콘텐츠산업과장으로부터 김종덕 장관의 지시사항이니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아 예술정책과 또는 문화예술위원회와 통화를 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후보로 여명숙도 포함하여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추천문서를 접수받은 후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 여명숙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오OO의 사실확인서 (2018. 2. 7.)

참고인 오OO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서기관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여명숙을 위원으로 추천하라고 지시한 자는 누구이며 이력서는 누구로부터 받아서 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달했는가에 대해 당시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사무관인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4) 참고인 강OO의 사실확인서 (2018. 3. 5.)

참고인 강OO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예산부 부장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5년 3월 경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여명숙의 위원 추천에 대해 문체부의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문화예술위원회 내부에서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2015년 2월말 경 직원 중 OOO 대리로부터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이 들어왔고, 관련 법령에 예술위원회가 추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시다. 며칠 뒤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직원 중 누군가(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문체부 예술정책과로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 할 때 특정인(포항공대 여명숙 교수)을 포함시켜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OOO 대리에게 문체부가 추천하는 인물에다가 사업부서에서 추천된 인사 중 2명을 추가하여 제출하자고 의견을 내어 처리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OOO 대리는 당시 문체부 예술정책과의 예술위원회 담당자인 OOO 주무관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여명숙 교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여명숙 교수와 함께 사업부서에서 확인된 다른 인사 2명을 추가하여 총 3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품의하였으며, 제가 전결권자로서 결재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발송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5) 참고인 송OO의 전화면담보고 (2018. 3. 6.)

참고인 송OO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정OO 전문위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여명숙 위원을 언제 처음 알았으며, 여명숙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위원장 호선을 하는 날 처음 알았으며, 이력서를 보니 게임산업과 관련한 왕성한 활동을 해온 전문가라고 생각했기에 추천하게 되었으며, 문체부의 지시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참고인 김OO의 전화면담보고 (2018. 04. 25.)

참고인 김OO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영지원부 부장은 정OO 전문위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여명숙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회의에서 여명숙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위원이 누구인가에 대해 송OO 위원이 여명숙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여명숙이 위원으로 임명되고 한 번정도 회의에 참석 했으며, 그 다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되었다, 송OO 위원 역시 위원장 호선 전에 여명숙을 만났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

(7) 참고인 전OO의 사실확인서 (2018. 3. 9.)

참고인 전OO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2015년 3월 경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여명숙 위원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아님니다만 대략 2015년 3월경, 등급위원회 회의 중간 휴식시간에 여명숙이 문체부직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회의 장소에 들어와서 위원들과 수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여명숙 위원의 위원장 내정 소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정해서 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는 사전 소문이 있었고, 다른 위원 한 분이 인맥을 통해 알아본 결과 청와대 라인이라고 잡담 수준에서 위원들끼리 몇 명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설기환 위원장 해촉과정의 문제점과 여명숙 위원장 호선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설기환 위원장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해촉이 아니라 사임이다. 그러나 설위원장의 사임은 버티다가 스스로 사직을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한다. 그 당시 설위원장이 제게 끝까지 버틴다고 했었고 만약 위원회에서 해임을 하면 법정투쟁까지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사직하겠다고 말하였다. 저로서는 이런 일년의 과정들이 석연치 않았고 설위원장의 변한 태도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설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특별한 또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위원장의 경우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문체부의 압력에 늘려 늘 힘들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의 입장에서는 설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이나 결정 등이 무척 답답하게 느껴졌다. 무슨 말만하거나 회의를 하면 사사건건 문체부가 개입을 해서 이건 된다 저건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부연으로 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설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설위원장이 무엇을 잘못해서 문체부가 그렇게 사임을 하라고 협박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구조상 문체부와 관계가 소

원할 경우 업무상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협의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담당 국,과장 또는 담당자들의 힘이 엄청 세다고 느꼈다, 설위원장의 사임은 누군가를 위원장으로 내세워야 했기 때문에 설위원장을 사임 또는 해임시키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 간다는 느낌이었다. 그 이유는 문체부의 국장이 설위원장이 사임을 하지 않자 위원들 일부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설득하였다고 위원들이 내게 전했다. 그래서 대략 5명 정도의 위원만 찬성하면 해임이 되니까 5명 이상의 위원들을 설득하여 해임 쪽으로 방향이 기울었는데 어느 날 설위원장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해임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여명숙 위원장의 호선과정에 대해 이미 내정된 사람을 형식상 그냥 통과시키는 통과 의례였고, 우리 위원들 중 위원장을 선임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이미 문체부 또는 다른 기관 또는 사람을 통해 여명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통과시키는데 사전 동의가 있는 느낌이었다. 나만 여명숙 교수를 이사나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사전교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느껴 나 스스로 내가 왕따고 불화의 씨앗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가끔 회의 때 위원들 대부분이 문체부와 자주 교감이 있구나 라고 느꼈다. 그 당시 공공기관장은 대부분 라인을 타고 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여명숙 교수에 대한 소문은 여교수가 청와대라인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집안끼리 막역한 사이다라는 정도의 소문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문건 및 자료조사

(1) 문화예술위원회 답변서

문화예술위원회는 여명숙 위원장을 위촉한 근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2015. 3월 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여명숙 당시 포항공대 교수를 포함하여 3명을 추천한 사실이 있음. 특히 추천자 중 여명숙의 경우 가상현실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이므로 추천자 명단에 포함하여 줄 것을 문체부로부터 요청 받았고, 추천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이력서도 문체부로부터 받았음. 나머지 추천자 2인은 위원회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함'.

(2) 문화체육관광부 답변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 26.자로 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2015. 3. 4.자로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여명숙을 포함한 3인의 위원 후보에 대한 추천서를 공문으로 제출 받았고, 2015. 3. 25.자로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 결정을 하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을 통보했다.

(3)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진행상황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서 작성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진행상황을 보면 법적근거와 관련경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관련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자료를 만들어 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일부의원(유기홍, 유인태)보좌진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을 장관과의 친소관계 등으로 부적절하게 위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자료 요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위와 같은 사실은 인지하시고 계시다가 필요시 다음과 같이 사실 인정 발언을 해 주시면 됨

15.3월쯤 문체부로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요청이 있어서 여명숙 위원장 등 3명을 추천한 사실이 있음. 당시 포항공대에 재직중이었던 여명숙 위원장은 가상현실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됨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여명숙 위원장 선임 과정에 대해

김종덕 장관의 지시로 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추천과정이 시작되었음이 강OO의 진술로 확인되었고, 강OO은 이OO에게, 이OO은 오OO에게, 오OO은 문화예술위원회에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것을 전달하고 지시한 일련의 과정이 확인되었다.

나. 여명숙 위원장 선임 과정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진행상황을 보면 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김종덕 장관의 지시 부분이 빠져있다. 이 문건을 보면 당시 문체부에서도 여명숙의 위원 추천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김종덕 장관의 개입 여부를 숨기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④항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있다. 당시 김종덕 장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것을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 문화예술위원회의 답변서에서도 여명숙을 포함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한 바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 위촉할 권한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명숙의 위원 위촉과정에 있어 문체부장관이 위원 후보 추천기관에 특정 인사를 위원 후보로 추천할 것을 지시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벗어난 부당한 인사개입이라고 판단된다.

■ 기획·편집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집 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백서 편집위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부록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인 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2019 문화체육관광부

※ 백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누리집(www.blacklist-free.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비매품/무료

94300



9 791163 570370

ISBN 979-11-6357-037-0

ISBN 979-11-6357-035-6 (세트)